23-8

2000 인구주택총조사

지 도 지 침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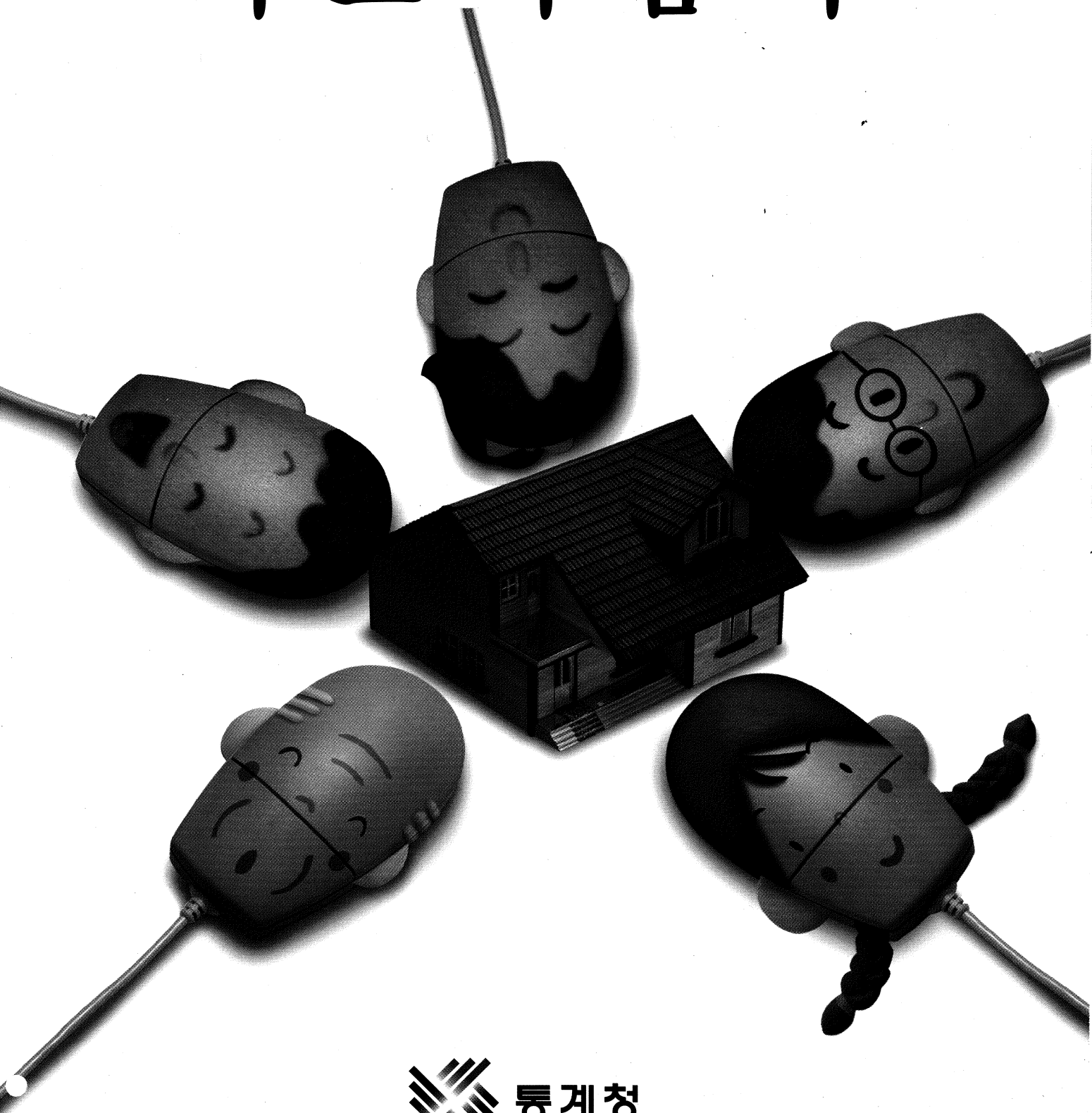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nso.go.kr/census2000)를 방문하시면 용어 해설, 사례, 보충설명 등 더 상세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는 2000인구주택총조사 포스터 현상공모 우수 당선작임.

"나 하나의 참여가 바른 통계를 만듭니다."

목 차

Ⅰ. 지도원의 업무 3

Ⅱ. 지도공무원의 업무 9

Ⅲ. 단계별 지도 · 감독사항 13

Ⅳ. 지도요령 21

1. 조사개요 22

2. 조사일정 30

3. 조사대상 32

4. 조사업무 수행 47

5. 조사용품 53

6. 준비조사 56

7. 조사표 작성 67

8. 외국인 조사 101

9. 빈집 조사 106

10. 조사표류 검토 110

11.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116

■ 부록 117

Ⅰ. 지도원의 업무

Ⅰ. 지도원의 업무

1. 지도원의 채용기간 : 총17일

- 교육(2일간) : 읍 · 면 · 동 공무원 교육시 참석
- 행정 사항 전달(1일간) : 2000. 10. 28
- 조사원 업무 분장(1일간) : 2000. 10. 29
- 준비조사(2일간) : 2000. 10. 30 ~ 10. 31
- 본조사(10일간) : 2000. 11. 1 ~ 11. 10
- 조사표 정리(1일간) : 2000. 11. 11

2. 지도원 담당업무 : 조사원 10명을 관리 및 지도

3. 지도원 수행사항

- 읍 · 면 · 동 공무원의 지휘하에 조사원 관리 및 지도업무를 수행
- 「조사 지도수첩」을 작성하여 제출
- 담당업무
  ① 조사원의 업무를 읍 · 면 · 동 공무원과 함께 분장
  ② 조사용품 관리 및 배부
  ③ 조사 현장 지도
  ④ 노숙자 조사
  ⑤ 외국인 조사지원
  ⑥ 조사원 관리
  ⑦ 조사표류의 접수

4. 업무 수행요령

① 조사원의 업무를 분장

- 담당 구역 전체 조사구(조사원 10명분)를 10. 29일 소집시 읍 · 면 · 동 직원에게 할당받아 소관 조사원별로 분장
- 조사원 업무기준
  - **아파트 조사구 전수**는 3개 조사구 배정 : 지역적으로 인접한 조사구를 배정하되 3개 조사구를 합친 가구수가 너무 많지 않도록(가능한 180가구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아파트 이외지역의 전수조사** 지역은 2개 조사구를 배정

- **표본조사** 지역은 1개 조사구를 배정
- 기숙시설 조사구(특성번호 3),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특성번호 4),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번호 5) 담당 조사원 배정

  ※ 기타 아파트 전수조사구가 1개 남거나 2개 남는 경우, 일반조사구 전수가 1개만 남는 경우, 소규모 기숙시설 및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에 대한 조사원 배정은 읍 · 면 · 동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수행

② 조사용품 관리 및 배부

- 담당 지도원은 소요 수량을 읍 · 면 · 동 공무원으로 부터 지급받아 관리하고 배부 : 읍 · 면 · 동 사무소에 보관
  - 조사용품의 종류는 53쪽 참조
- 분실이나 훼손은 물론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관리
  - **조사표**는 한 번에 다 배부하지 말고 일정량으로 나누어서 배부
  - **조사구 요도**는 1부만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한 부는 조사가 완료된 후 옮겨 쓰도록 함
    ※조사구 요도가 칼라 원도라 흑백복사 불가
  - **빈집 조사표**는 배부하지 말고 조사원의 요청이 있으면 배부

③ 조사 현장지도

- 준비조사 지도
  - 담당 지역을 순회하며 조사원의 준비조사 업무를 지도
    - 10. 30일 : 전수조사 조사원을 지도
    - 10. 31일 : 전수 및 표본조사 조사원을 지도
  - 조사구 경계확인
  - 조사구 요도상 경계 및 주요 지형지물 보완

    ※ 특히, 경계 구분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원과 동행하여 확인해 줌
  - 조사구 요도상의 거처 및 가구번호 표시
  - 가구 스티커 부착
  -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
  - 가구명부 작성
  - 지역 홍보물 부착 :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조사구 입구 등 공공장소
- 일일 조사진도 파악 : 「조사 지도 수첩」 참조
  - 조사구별로 준비조사 기간중 파악한 조사대상 가구 대비 조사완료 가구 비율을 매일 파악하여 읍 · 면 · 동 공무원에게 보고
  - 조사진도가 부진한 조사원 지원 및 독려

• 취약 조사구에 대한 지원
  – 홍등가, 유흥가 등 취약 조사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조사를 지원

• 야간조사 지도
  – 동행을 희망하는 조사원 위주로 지원
  – 조사원이 원하는 경우 2인1조로 조를 편성해 줌

• 불응가구 및 비협조 가구 설득
  –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하는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설득
  – 설득이 어려운 가구는 먼저 통 · 반 · 이장의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설득이 안 되는 가구는 읍 · 면 · 동에 보고

• 장기 부재가구 현황 파악
  – 장기 부재가구로 조사가 어려운 가구는 그때그때 현황을 파악
  – 조사기간중 수시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부재여부를 확인하며 반드시 담당 조사원이 조사를 끝내야 함을 알려 줌
  – 조사기간중 끝내 조사할 수 없게 되는 가구는 미리 읍 · 면 · 동 공무원에게 보고

• 조사표류 작성상태(조사내용 및 부호기입) 점검(매일)
  – 착오 조사표에 대한 재조사 지도
    ※ 제출한 조사표에 대한 시정 사항이나 조언의 제시는 가능한 조사가 끝나고 빠른 시점에서 조사원의 기억이 생생할 때 하도록 함
    ※ 조사원의 착오, 실수, 문제점 등은 민주적이며 사무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조사원의 사회적 명예와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산업 · 직업항목 기입상태 검토(세분류가 가능한지)

• 가구 및 가구원 등 조사대상의 누락 및 중복조사 여부 확인
  – 고의적인 조사누락이 있는지 주의
  – 개념 미숙에 따른 조사대상의 착오 및 누락조사 여부 수시 확인

• 조사원 수행업무에 대한 현장지도
  – 조사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고 동기부여를 위해 잘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음

④ 노숙자 조사

• 담당지역내에 노숙자 상주지역이 있는 경우 읍 · 면 · 동 공무원의 지휘하에 11. 1일 0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전수 조사표 사용)
  – 무단가출 1개월 이상자만 조사
    ※ 반드시 읍 · 면 · 동 공무원과 함께 행동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

⑤ 외국인 조사 지원

- 시 · 군 · 구의 외국인 등록명부를 활용하여 담당지역내의 외국인 소재 정보를 사전에 조사원에게 제공
  - 단, 이 명부는 조사에 참고만 하고 반드시 담당 조사구내의 모든 외국인을 등록명부에 관계없이 찾아 내어 조사해야 함
    → 등록명부에 있는 외국인만 확인하여 조사해서는 안됨
    ※ 외국인 등록명부의 활용은 외국인의 조사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⑥ 조사원 관리

- 조사원을 매일 소집하여 조사진도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
  - 「조사 지도 수첩」에 조사원 연락처를 사전에 기록

- 중도 포기 조사원 파악 및 보고
  - 중도 포기를 했음에도 통보를 하지 않아 조사가 방치된 지역이 있는지를 수시로 파악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읍 · 면 · 동 직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체되는 예비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지도 실시
  - 결혼, 초상,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도 포기 여부를 빨리 파악하여 대처

- 대리조사 여부 파악
  - 반드시 교육받은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
  -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읍 · 면 · 동 공무원에게 보고 조치

- 조사기간중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
  - 학업, 행락, 여행 등으로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의깊게 관찰하여 필요시 조치

- 탁상조사 여부 파악
  -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조사표를 작성하는지 수시로 파악

⑦ 조사표류의 접수

- 조사가 완료된 담당 조사원이 11월 10일 조사표류를 제출하면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읍 · 면 · 동 공무원에게 인계인수
  - 잘못 조사된 조사표류에 대해서는 접수받지 말고 보완을 요구

〈조사원이 제출해야 할 조사표류〉

① 조사표(일반 조사표, 외국인 조사표, 빈집 조사표)

② 조사구 요도 2부

③ 가구명부 3부

④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⑤ 조사원증

※ 각종 지침서는 조사가 완료된 후 내용검토시 사용할 계획인 바, 가능한 회수토록 함 : **각종 분류 부호집, 조사지침서(표본 조사원), 산업 · 직업 기입요령(표본 조사원)**

- 조사가 끝난 11. 11일에는 읍 · 면 · 동 공무원을 보조하여 제출된 조사표류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
  -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해 반려된 조사표를 최종 수령
  - 조사구 및 조사원별로 조사표류를 최종 정리하여 읍 · 면 · 동 공무원에게 제출

Ⅱ. 지도공무원의 업무

Ⅱ. 지도공무원의 업무

1. 지도 공무원의 구분

• 통계청 지도 공무원, 시 · 도 지도 공무원, 시 · 군 · 구 지도 공무원, 읍 · 면 · 동 지도 공무원으로 구분

2. 동원기간 : 2000. 10. 30 ~ 11. 10일(12일간)

3. 지도원 공무원의 구성

• 통계청은 중앙 실사지도반, 지자체는 지방 실사지도반으로 편성
  - 중앙 실사지도반 : 약 1,420명(본청 300명, 지방 1,120명)

• 지방 실사지도반
  - 시 · 도 : 255명(시 · 군 · 구당 1명)
  - 시 · 군 · 구 : 3,505명(읍 · 면 · 동당 1명)
  - 읍 · 면 · 동 : 10,515명(읍 · 면 · 동당 3명)

4. 임 무

• 조사기간중 현장조사의 지도 관리

〈참 고〉

지도공무원은 교관단 요원(통계청은 중앙 교관단, 지자체는 지방 교관단)으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함

• 중앙 교관단
  -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지도공무원(지도원 포함) 교육
  - 전국 표본조사구 담당 조사원의 교육
  - 인구 30만이상 시의 전수조사구 담당 조사원 교육

• 지방 교관단 : 군부 지역 및 인구 30만미만 시의 전수조사구 담당 조사원 교육

5. 수행사항

통계청 실사지도 공무원

■ 훈련실시 및 조사기간중 해당지역에 상주하면서 조사의 진행사항을 점검
■ 담당 실사지도 지역 조사구를 순회하며 조사원의 업무진척 사항을 파악
■ 조사원, 지도원, 시 · 도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확인 및 협조
■ 해당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 조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및 동 결과 보고
■ 담당 지역의 취약 조사구를 집중 지도 및 지원

시·도, 시·군·구 공무원

■ 자체 인력동원 계획에 의거 지정된 지역을 순회지도하면서 해당 기관의 관심도 파악
■ 홍보 추진사항 점검 및 국민의 조사협조에 필요한 읍·면·동의 수행상태 점검
■ 조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동 결과 보고
■ 관내 취약지역 집중 지도

〈중점 수행 사항〉

①조사부진 지역에 대한 독려
- 매일 지역별, 조사원별, 조사구별 조사진도(준비조사시 파악한 대상가구중 조사를 완료한 가구의 비율)를 파악
- 조사부진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②탁상 및 대리조사 방지
- 주민등록 공부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교육받은 조사원이 아닌 자가 조사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③각종 조사표류 작성상태 확인 및 지도
- 각종 조사표류 작성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시정 요구하고 작성요령을 지도

④관할 공무원의 업무 수행상태 확인
- 조사기간중 관할 공무원이 총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를 강구

⑤행정 보조자료 준비
- 외국인 등록명부 및 건축물 대장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 지도원 및 조사원에 대한 관리 철저로 차질없는 현장조사 수행
■ 조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동 결과 보고
■ 주민홍보 활동 수행

〈중점 수행 사항〉

①조사원, 지도원 관리
- 읍·면·동 공무원 ↔ 지도원 ↔ 조사원의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도 및 지시사항(행정 및 조사요령) 전달시 활용
- 지도원의 활동사항 지원 및 문제점 해결
- 지도원의 업무수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
- 조사원에 대해서도 지도원에게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수시로 직접 확인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원을 즉시 투입
  -중도 포기 지도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원중 적격자를 선별하여 교육실시 후 투입

② 조사구 특성 변경 대처

- 보통조사구와 기숙시설 및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간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조사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시 · 군 · 구에 보고하여, 조사구 특성 및 조사원수 등을 변경

③ 조사구 경계 수정시 확인

- 조사원이 조사구 경계를 수정코자 할 때 이를 최종 확인
- 조사구 경계 수정이 인접조사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조치

④ 중복 · 누락 및 착오 조사 방지

- 조사원이 고의나 조사개념 미숙 등으로 조사대상(가구원, 가구, 주택)을 중복조사하거나 누락시키지 않는지 파악

⑤ 조사가 어려운 취약조사구의 대책

- 홍등가, 철거예정지역 등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
- 기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

⑥ 노숙자 조사

- 관내 노숙자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여, 11. 1일 0시를 기준으로 지도원을 동원하여 일시에 조사(전수조사표 사용)

⑦ 참고자료 준비

- 시 · 군 · 구에 보관중인 관내 외국인 등록 자료를 조사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사용
-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내거주 유력인사 명단 확보 및 조사여부 모니터링

⑧ 비협조 가구 및 불응가구 설득

- 지도원이 동원되어서도 해결되지 않는 조사 비협조 및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읍 · 면 · 동 공무원이 직접 설득해야 함

⑨ 조사 진척상황 파악

- 조사원 및 조사구별 조사진척률(준비조사에서 파악한 가구 대비 조사완료 가구 비율)을 매일 파악하여 문제 조사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일일 조사 진척률은 시 · 군 · 구 및 시 · 도를 통해 통계청에 보고

⑩ 주민 홍보활동

- 관내 자체 홍보 실시
- 조사기간중 가구로부터의 조사문의에 성실히 응답
-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 등에 대해 외국인 조사 협조요청 등

Ⅲ. 단계별 지도·감독 사항

1. 조사원 훈련(10.16 ~ 28일중 전수 1일, 표본 2일)

가. 훈련전 준비사항

■ 조사원의 훈련을 준비해야 하는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담당 공무원은 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훈련용 자재의 준비 사항을 재점검하고 교육용품을 모든 조사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

- 훈련장소와 준비물 점검
  - 각급 훈련시 훈련장 정면에 현수막, 정문에 입간판 설치
  - 책상, 의자, 분필, 흑판, 흑판지우개, 확성기, VTR 등
- 훈련 30분전까지 입실완료 및 출석점검 :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 훈련교재 및 사무용품 배부
  - 조사원 서약서
  - 임명장
  - 조사원증 및 조사원 마크
  - 기타 실습용 조사표류 각 1부 : 가구명부 , 가구 스티커, 가구 홍보용 전단, 전수(또는 표본)조사표, 전수(또는 표본)조사표 기입요령, 각종 분류 부호집, 산업 · 직업 기입요령(표본조사원의 경우), 외국인 조사표, 빈집 조사표, 조사표 편철표지, 비밀 보호용 봉투, 조사원 연락전 등
- 훈련기관의 기관장 훈시 준비
  - 훈련 식순에는 국민의례, 임명장수여, 조사원 서약서에 의한 선서, 읍 · 면 · 동장 인사말 등이 포함되도록 준비
  - 사전에 선정된 대표 조사원이 임명장을 수여받고 읍 · 면 · 동장 앞에서 선서

나. 훈 련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조사구별로 조사원을 점검하여 훈련 불참자, 대리 참석자 등을 파악한 후 반드시 조사원 본인이 훈련에 참석하도록 조치
  - 훈련 불참자는 당일 훈련이 불가능한 자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 구분 파악하여 당일에 한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준비조사 시작전 특정 일을 정하여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체후 즉시 시 · 군 · 구에 보고

(2) 훈련실시

- 상세한 내용은 교관요원에게 별도로 배부되는 교재 참고

2. 조사원 관리 및 지도

가. 조사원 관리업무 내용

- 교육받은 조사원이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기간중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
- 일정별 수행업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여부
- 반드시 가구를 방문하여 책임있는 응답자를 만나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 여부
- 아파트 전수조사구, 부재가구 또는 적합한 응답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조사표를 배부하여 조사하며, 이 경우 조사표 회수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표 회수시 부실기재 내용을 찾아 철저히 보완하고 있는지 여부
- 응답거부 가구 발생시 지도원에게 제때에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애경사, 와병 등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조사원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 조사시간을 잘못 선택하여 응답가구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는지 여부
- 가구 방문시 응답가구와 불미스런 일이 없는지 여부
- 응답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이나 언행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현장조사시 발생된 문제점을 조사원이 숨기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 취약 조사구의 누락 가능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조사는 적절히 하는지 여부
  (다방, 식당, 주점, 공장 숙직실, 교회, 사찰 등에 거주하는 가구 색출)
-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단체,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위한 언행이나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 조사 과정중에 알게된 가구 및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은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
- 기존의 기록자료에 의하여 탁상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사원 마크 및 조사원증을 제대로 패용하고 조사에 임하는지 여부

나. 준비조사(전수 10. 30 ~ 10. 31, 표본 10. 31)

① 준비조사전

■ 읍·면·동에서는 준비조사가 시작되는 첫날 09:00까지 조사원을 모두 소집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

(1) 조사원 점검

- 조사원을 지정된 장소에 소집 점검하여 조사업무 수행태세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조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원을 대체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⑵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의 배부

●읍 · 면 · 동 지도공무원은 조사원별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의 배부 일람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준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와 사무용품을 지도원에게 일괄 배부한 후 지도원이 다시 담당 조사원에게 배부

〈조사원에게 배부할 조사표류와 사무용품 : 55쪽 참조〉

① 조사구 요도(조사구당 2부)

- 통계청에서 조사구별로 2부씩 전산으로 출력하여 읍 · 면 · 동에 일괄 배부
- 읍 · 면 · 동에서는 조사구별로 2부씩 지도원에게 분할 배부
- 지도원은 조사구 요도의 훼손 및 분실 방지를 위해 조사구별로 1부씩만 조사원에게 배부
- 조사원이 조사 완료후 2부를 모두 완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조사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환기가 필요(조사구 요도가 칼라 원도로 되어 있어 흑백 복사 불가)

② 가구명부

- 조사구별로 3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부

③ 가구 스티커

- 모든 가구마다 부착할 수 있도록 가구수를 기준으로 배부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
- 가구스티커는 5종의 색상을 사용하므로 조사구별로 다른 색상이 사용되도록 배부
-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와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에는 부착하지 않도록 지도

④ 사무용품

- 조사원 1인당 필기도구 1세트(흑 · 청색 볼펜, 연필, 지우개, 연필깎이), 가방 1개, 받침대 1개

⑤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 조사구별로 1부씩 배부

⑥ 가구 홍보용 전단

- 가구수 만큼 배부

⑶ 준비조사 업무 지도

●준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와 사무용품을 배부하고 난 후 다시 한 번 조사표류의 작성방법과 준비조사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히 설명

⑷ 조사원과의 업무연락 체계구축

●읍 · 면 · 동 직원 ↔ 지도원 ↔ 조사원

●조사기간중에 매일 정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해 조사진도 및 문제점을 파악 : 「조사 지도 수첩」에 기록

② 준비조사 기간중

- 준비조사 기간중 가구명부 작성상태, 가구 스티커 부착여부,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조사구 요도의 작성상태를 점검 지도
- 관내를 순회하면서 조사원의 조사활동 상태를 확인
- 준비조사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
- 조사원의 일일업무 점검을 실시하여 기간내 준비조사 작업이 완료토록 독려
- 반드시 조사구경계, 지형지물 등 특정사항들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조밀지역에서 인접지역 조사구와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 반드시 기본도를 기준으로 조사원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여 착오가 없도록 함
- 취약 조사구를 일일이 현지 답사하여 누락 및 중복 등이 없는지를 확인 지도
- 준비조사중 누락된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이 발견되면 당해 시·군·구의 맨 마지막 조사구번호 다음에 이어지는 번호를 부여하고 조사하도록 조치
- 부진조사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 조사원 동태를 매일 파악
- 조사원 유고시 예비조사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③ 준비조사가 완료된 후

- 준비조사가 끝나면 조사구별로 요도작성 상태, 가구명부 작성상태를 반드시 점검한 후 해당 조사원에게 돌려줌
- 준비조사가 완료된 조사구에 대해서는 가구명부상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조사원별 조사표 소요량을 산출하여 배부, 기재하고 조사표를 11월 1일 지도원에게 일괄 배부
- 지도원은 조사원별로 소요량을 산출하되 분실방지를 위해 일정량만 배부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사무소에 보관
- 준비조사 결과 적정가구를 현저히 초과 혹은 미달되는 조사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보관된 기본도를 지참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구 경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찾아 즉시 시·군·구경유 시·도 상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함

다. 실지조사(11. 1 ~ 11. 10)

① 실지조사전

■ 읍·면·동에서는 본 조사가 시작되는 첫날 09:00까지 조사원을 소집하여 조사가 시작되도록 조치

(1) 조사원 점검

- 조사구별로 조사원을 점검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는지를 재점검

(2) 실지조사 업무설명

- 읍·면·동장이 직접 조사원에게 실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명감을 고취

② 실지조사 기간중

(1) 조사구별 조사상황의 일일 점검

- 지도원은 조사구별로 조사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읍·면·동 공무원에게 보고
- 이를 위하여 담당 조사원의 연락처, 전화번호, 호출번호를 「조사 지도 수첩」에 기록

(2) 부진 조사구의 집중적인 지도

- 일일 점검결과 부진 조사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

(3) 조사원 유고시의 조치

- 조사원이 유고되었을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는 지체없이 예비조사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보고

(4) 비협조 가구 및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조치

- 비협조 가구 발생을 조사원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지도원은 즉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협조토록 설득
  - 계속 비협조할 때는 통·반·이장을 동원하여 협조를 의뢰하고, 최종적으로는 읍·면·동 공무원이 해결
- 맞벌이·단독가구 등으로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가구는 조사원 연락전에 기입된 약속 날자에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면접이 불가능하거나 응답자가 조사내용의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조사표와 조사표 기입요령을 넣은 비밀 보호용 봉투를 활용하여 기입을 의뢰토록 지도

(5) 조사표류의 검토

- 지도원은 매일 담당 조사원의 완료된 조사표 상태(기입누락 및 착오 여부, 부호기입 상태, 사선처리 상태 등)를 확인

(6) 취약 조사구에 대한 방문지도

- 조사누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유흥가, 공장 숙직실, 기숙사, 빌딩, 사찰, 여관, 호텔, 특수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 혹은 지도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 또는 가구원(식구)의 누락 여부를 확인
- 특히 공장내에서 기거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조사대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7) 장기 부재가구에 대한 조사

- 원칙적으로 모든 가구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부재가구의 경우에도 조사기간중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
- 다만, 준비조사 및 본조사기간(10.30~11.10)동안 친지방문, 여행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가구가 발생된 경우에는 읍·면·동 공무원의 승인하에 그 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인근사람을 찾아 조사해야 하며 잘 모르는 항목은 공란으로 둔다(가구원수, 이름, 성별, 개략적인 연령(예, 30대 초반)은 반드시 기입)
  - 사전에 홍보하여 미리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한 조사표를 작성토록 유도

(8) 조사기간중 전입·전출한 가구에 대한 조치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조사기준일 이후에 전출이 예상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먼저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고, 조사가 완료된 거처라도 조사기간중 타지에서 전입해온 가구의 유무와 조사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9) 조사원 동태 파악

-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또는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구 요도의 거처번호순으로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지도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건강 혹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있거나 대리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매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함
- 특히 조사원이 탁상에서 작성하는 사례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조사원이 조사업무에 전념치 않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10) 노숙자 조사

- 관내 노숙자 상주지역에 대해서는 11.1일 0시 지도원과 읍·면·동 공무원이 일시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
  - 단, 가출한지 1개월 미만자는 조사하지 않음

(11) 외국인 조사지도

- 시·군·구의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 외국인 예상 거주지 정보를 조사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12) 기 타

-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내 유력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보된 명단에 따라 빠짐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

3. 조사표류의 수집·검토 및 제출(11. 10 ~ 11. 30)

가. 조사원의 조사표류 검토(11. 10)

-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원이 조사표류를 제출하게 되면 지도원이 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읍·면·동 공무원의 최종 확인을 받음
-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조사표류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 조치토록 반려
  → 이 경우 최종 제출일을 11.11일로 하루 연장

<검토요령>

① 조사구 요도

- 인접된 조사구 요도와 대조하여 조사구 경계의 정확성 여부와 누락, 중복 가구의 유무 등을 검토
- 조사구 요도에 표시된 지형 · 지물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
- 거처 및 가구번호 표시, 빈집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 난외사항의 조사구번호, 가구수 기입이 제대로 되었는지, 가구명부 및 조사표상의 수치와 일치되는지 확인

② 가구 명부

- 조사구 요도의 거처번호 및 조사표의 거처번호와 일치하는지 검토
- 가구명부에 기재된 가구주 및 거처번호 등의 기재 사항이 조사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
- 가구명부와 조사표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기준으로 가구명부를 수정
- 소계 및 합계란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입

③ 조사표

- 종류별 조사표류가 조사원들로부터 제대로 제출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
- 중점 내검사항
  - 기입누락 항목 확인
  - 항목별로 조사대상이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확인(13세이상, 16세이상 및 61세이상 조사항목, 주인 및 대표가구만 주택사항을 조사했는지 등)
  - 항목별 상호관련 체크 : 예(표본조사), 대학이상 수료 · 졸업→전공분야 조사 등
  - 조사표 표지 및 응답자 성명과 전화번호 기입 여부
  -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사선 처리 : 연필사용
  - 부호기입 상태 : 적색볼펜 사용

④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 공동주택 기본정보와 조사표 주택항목의 일치여부 등

나. 내용검토(11. 13 ~ 11. 30)

- 조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표류는 임시채용 내검요원을 동원하여 다음 기간동안 내용검토를 실시
  - 읍 · 면 · 동 : 11. 13 ~ 11. 22 (10일간)
  - 시 · 군 · 구 : 11. 23 ~ 11. 27 (5일간)
  - 시 · 도 : 11. 28 ~ 11. 30 (3일간)

Ⅳ. 지도요령

<사용방법>

- 본 「지도요령」은 표본조사지침서 내용을 추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작성
- 표시가 있는 부분은 지도지침서에만 추가된 내용
- 표 본 표시가있는 부분은 표본지침서에만 수록된 부분이며 그밖의 내용은 전수지침서 및 표본지침서 모두에 해당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 · 가구 · 주택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통계조사입니다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 통계 조사입니다.
- 인구주택총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43호)에 의거 실시합니다.

1925년이후 매 5년마다 조사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입니다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이래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에는 1949년부터 실시
-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인구총조사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연혁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총조사로는 16회(대한민국정부 수립후로는 11회), 주택총조사로는 8회에 해당

세계의 인구센서스

- 국가 전역에 걸쳐 근대적인 인구센서스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는 미국으로 1790년에 실시
  - 영국(1801년), 프랑스(1801년), 덴마크(1801년), 포르투갈(1801년) 등
- UN에 따르면 2000년 라운드(1995-2004년) 인구센서스는 전세계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20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임

200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2000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조사 : 2000. 10. 31(1일간) 표 본 (※ 전수 : 10. 30~10. 31일, 2일간)
  - 본 조 사 : 2000. 11. 1 ~ 11. 10(10일간)

전국의 모든 사람과 거처를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 조사지역에 상주하는 모든 내 ·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조사합니다.

조사원은 1개 조사구를 담당하여 조사합니다 (표 본)

- 조사원별 담당지역은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지정합니다.

■ **조사원 1인당 업무량 및 채용기간**

- 표본 조사지역 : 1개 조사구 담당(13일)
- 전수 조사지역 : 아파트 조사구는 3개, 기타 지역은 2개 담당(13일)
  ※ 잔여 조사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원에게 배정
-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은 별도 지정

■ **1개 조사구는 대개 60가구 정도로 설정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0가구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실제조사는 가구수와 관계없이 조사구 지역내의 모든 가구를 조사해야 함**

- 60가구만 조사하는 조사원이 없도록 지도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조사합니다 (표 본)

- 원칙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방식(**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조사합니다.
- 단, 부득이하게 가구원 면접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구에 조사표를 배부하고 가구에서 작성후 회수하는 방식(응답자 기입방식)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방법

- 센서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응답자를 질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면접방식**(canvasser method)과 응답자가 배부된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는 **응답자 기입방식**(self-enumeration method)으로 구분
-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조사원 면접방식**을 채택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원을 면접하는데서 야기되는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아파트 조사구(특성번호 A)의 전수조사에 한해 응답자 기입방식**을 적용

〈아파트 조사구에만 응답자 기입방식을 적용하는 이유〉

- 시험조사 결과 노인가구, 문맹 등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가구가 많아 전국적으로 모든 가구에 적용하기가 곤란
- 다만, 아파트 가구의 경우 응답자 기입방식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
  1) 조사표 배부 및 회수가 용이
  2) 주택사정이 유사하여 조사표 내용확인이 용이
  3) 동거가구가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조사누락 가능성이 적음

※ 조사원 면접방식 적용지역중에도 장기부재, 부정기적 출타나 가구에서 응답자 기입방식을 강력히 원하는 등 부득이하게 응답자 기입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표 배부 및 회수요령(50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전부 50개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가구원에 관한 사항(29개)

① 성명 ② 본관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성별
⑤ 나이 ⑥ 교육정도 ⑦ 전공분야 ⑧ 아동보육상태
⑨ 출생지 ⑩ 1년전 거주지 ⑪ 5년전 거주지 ⑫ 컴퓨터 활용상태
⑬ 인터넷 활용상태 ⑭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 ⑮ 통근·통학 여부 ⑯ 통근·통학 장소
⑰ 이용교통수단 ⑱ 통근·통학 소요시간 ⑲ 경제활동상태 ⑳ 종사상의 지위
㉑ 산업 ㉒ 직업 ㉓ 현직업 근무연수 ㉔ 혼인상태
㉕ 총출생아수 ㉖ 자녀거주장소 ㉗ 생계수단 ㉘ 주 부양자
㉙ 거동불편 여부

가구에 관한 사항(16개)

① 가구구분 ② 거주기간 ③ 사용방수 ④ 주거 시설 형태
⑤ 취사연료 ⑥ 난방시설 ⑦ 상수도 시설 ⑧ 식수 사용형태
⑨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⑩ 자동차 보유대수 ⑪ 주차시설 ⑫ 점유형태
⑬ 임차료 ⑭ 거처의 종류 ⑮ 단독주택 종류 ⑯ 주인·대표가구 여부

주택에 관한 사항(5개)

① 연건평 ② 대지면적 ③ 총방수 ④ 건축연도
⑤ 편익시설수

전수조사의 경우(총 20개)

가구원에 관한 사항(8개)

① 성명 ② 본관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성별
⑤ 나이 ⑥ 교육정도 ⑦ 출생지 ⑧ 혼인상태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12개)

① 가구구분 ② 사용방수 ③ 주거 시설 형태 ④ 점유형태
⑤ 거처의 종류 ⑥ 단독주택 종류 ⑦ 주인·대표가구 여부 ⑧ 연건평
⑨ 대지면적 ⑩ 총방수 ⑪ 건축연도 ⑫ 편익시설수

보충자료(조사항목)

■ 조사항목

●조사항목의 구분

- 전수조사표 : 전체 가구의 **90%**에 대해 적용하며 **기본항목**만 조사
- 표본조사표 : 전체 가구의 **10%**에 대해 적용하며 **기본항목 및 심층항목**을 조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수

- **전수조사표 : 20개** (인구 8개, 가구 7개, 주택 5개)
- **표본조사표 : 50개** (인구 29개, 가구 16개, 주택 5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 추이〉

	1980	1985	1990	1995	2000
계	45	30	45	28	50
전 수	26	30	33	17	20
표 본	19	-	12	11	30
인 구	25	16	21	16	29
가구 · 주택	20	14	24	12	2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신규조사항목 현황〉

분 야	신 규 항 목 내 역
● 지식기반사회 관련(2)	- 전공분야, 현직업 근무연수
● 정보화사회 관련(4)	- 컴퓨터 활용상태, 인터넷 활용상태,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보유 현황
● 복지관련(5)	- 아동보육상태, 자녀거주장소, 생계수단, 주부양자, 거동불편 여부
● 삶(주거)의 질(7)	- 자동차보유대수, 주차시설, 상수도시설, 식수사용형태, 취사시설, 난방시설, 단독주택종류
● 인구관련 기본항목(3)	- 1년전거주지, 본관, 총출생아수
●기타(1)	- 대표가구 여부

보충자료(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사유)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의의

- 2000년에 실시됨에 따라 지난 한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의 비젼을 제시하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 특히, 새로운 세기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여 우리의 미래설계를 위한 긴요한 국가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됨

■ 인구주택총조사는 왜 실시하여야 하는가?

-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및 주택에 대해 규모, 분포, 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기술해 주기 때문에, 각종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중요한 국가기본통계조사임
  - 인력, 교육, 주택, 보건, 복지, 교통, 환경, 에너지, 모자 보건, 농촌개발, 도시화 등 많은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에 필요
- 특히 인구, 사회 및 경제적 특성에 관한 상세한 개인 정보가 빠짐없이 동시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개인, 기업, 학술 단체 및 일반 대중의 계획 수립, 연구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목적에 유용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사업 및 산업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
  - 끊임없이 다양해지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소비자 수요 예측이 지역별 인구 규모와 성 및 연령별 분포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의존
  - 주택, 건축 및 설비, 가전제품, 음식물, 의복, 레크레이션 시설, 의료 공급 등 다양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결정
  - 아울러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한 가용 노동력의 분포는 기업의 위치선정과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중 하나
-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기초인구(base population)로는 물론 인구이동, 출산력 및 사망력 자료를 제공
- 가구추계를 위한 가구원수별 및 가구주 특성별(성, 연령, 혼인상태 등) 가구규모와 분포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학교, 연구소에서 교육이나 연구목적으로도 요긴하게 활용
  - 각급학교 교과서에 광범위하게 인용
- 각종 통계작성 및 분석에서 비교 또는 인용되는 기준통계(benchmark statistics)가 됨
- 표본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며, 조사의 모집단으로서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각종 표본조사를 가능케 하는 수단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공동적인 관심사항으로서 사회개발, 아동, 교육, 여성, 노인, 인구정책 등에 관해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결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임
  - 인구 및 발전 국제회의(카이로, 1994), 사회발전 세계정상회의(1995,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북경, 1995) 등

보충자료(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사유)

■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하는 인구규모나 인구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경제활동과 같은 경제·사회적인 특성은 그 사회의 경제·사회적 변동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없이는 인구현상에서 야기된 경제·사회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인구·가구·주택의 규모나 지역별 분포, 특성 변화를 파악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다면, 자칫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예) 현재 인구나 주간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지역에는 행정자료에 나타난 것보다 생산과 서비스 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인구주택총조사로만 파악이 가능

- 사업체의 합리적인 생산 및 경영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

- 표본조사시 다단계 집락추출에 의해 값싸고 합리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단순임의 추출하게 됨으로써, 각종 표본조사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뿐더러, 조사의 대표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어 통계가 정확하게 생산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등록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 대신 활용할 수 없는 이유

- 자료내용이 빈약
  - 주민등록자료는 사용 가능한 자료가 이름, 성, 생년월일, 가족관계, 전출·입지 정도에 불과해 **신분확인용** 증명서 발급이외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주택자료는 전무

- 등록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이용에 한계
  - 주민등록은 행정목적의 등록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을 조사하는 조사통계와는 달리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검증없이 등재
    -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등록
    - 실제는 동일한 가구원이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등록
    - 출생년월일이 제대로 신고되어 있지 않음(특히 고연령층)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변동사항의 지연신고 및 누락
    - 해외유학생, 해외취업자, 이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미정리
  - 주민등록자료 활용시 **지역별**(특히 소지역) **인구의 규모, 성·연령별 특성, 분포 및 이동**에 관한 현상 파악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자원배분의 비효율 및 낭비의 개연성 상존
  - **주민등록의 세대**는 사회학적인 생활단위인 가구와는 개념이 달라 가구를 기초로 파악해야 하는 각종 경제·사회지표의 작성이 곤란할 뿐더러 가족구조의 변동이나 핵가족화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불가능

보충자료(인구주택총조사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활용(예시)

•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 용 내 용	이 용 기 관
• 고용구조 및 인력대책 마련	• 재정경제부, 노동부
• 주택정책 및 주택개발계획 수립	• 건설교통부, 시 · 도, 대한주택공사
•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립	• 건설교통부
• 노인, 아동, 부녀 복지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 시 · 도
•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 농림부, 시 · 도
• 국방 병역자원 정책수립	• 국방부
• 교육 정책수립	• 교육부
• 문화예술 정책수립	• 문화관광부
• 교통 정책	• 건설교통부, 시 · 도
• 교통 안전대책 수립	• 경찰청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 시 · 도
• 주간행정수요 추정	• 시 · 도
• 실업 관련정책	• 노동부
• 농촌지역 소득, 주거편의시설 관련 정책	• 농촌진흥청

•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자료

활 용 내 용	이 용 기 관
• 가정부문 에너지 수요 분석 및 예측	• 에너지경제연구원
• 천연가스 수요예측	• 한국가스공사
• 한국경제 장기전망	• 한국개발연구원
• 인구 · 가족 · 여성 등 인구사회의 제방면에 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시장, 개인의 경제활동, 직업 등에 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여성관련 연구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 고속도로 분석시스템 구축	• 교통개발연구원
• 지역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 및 관리정책 등	• 국토개발연구원
• 직장, 거주지 관계 분석	•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 인구이동관련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문화 및 사회관련 정책 연구	• 부산발전연구원
• 보육교사 수요추정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지역 인구추계, 가구변동, 취업자 변화 연구 등	• 인천발전연구원
• 지역 통행 행태 분석	• 경기개발연구원
• 지역 인구추계, 인구이동, 산업구조 분석 등	• 충남발전연구원

보충자료(인구주택총조사의 활용)

활 용 내 용	이 용 기 관
• 전국 및 지역별 사회현상 분석 • 전세 거주자의 주거수준 평가 • 지역 통근, 통학권 구분 • 인력공급 전망, 가구규모 결정요인 등 • 통근학, 실업 · 고용구조 분석 • 지역별 인구추계, 인구이동 특성분석 • 지역 보건의료 정책 연구, 수도권 교통 실태분석 등 • 수도권 인구이동, 교외화 연구 등 • 서민 주거안정 대책 연구	• 제주대 • 강원대 • 대구대 • 연세대 • 동국대 • 한국교원대 • 서울대 • 아주대 • 중앙대

• 비교, 분석 자료

활 용 내 용	이 용 기 관
• 노동통계 비교 • 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 • 한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 • 전국 결핵 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 • 의료보험통계 비교분석 • 노령인구조사 비교분석 • GNP 작성 • 인적자원계정 및 지역소득추계 • 장래인구추계 • 가구추계	• 노동부, 노동연구원, 통계청 • 의료보험관리공단 • 한국건강관리협회 • 대한결핵협회 • 의료보험연합회 • 생명보험협회 • 한국은행 • 통계청 • 통계청 • 통계청

•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활 용 내 용	이 용 기 관
• 실업구조 및 실업자 동향 조사 • 국민 여행 실태 조사시 가중치 적용 • 기상 정보 이용 실태 조사 • 전국결핵실태조사 • 각종 시장 및 여론조사 표본 • 각종 여론조사 표본 • 경제활동조사 등 각종 가구단위 표본조사 • 농림어업 관련 각종 표본조사 • 농어업총조사의 조사대상 명부 • 학술, 정책연구 등 각종 표본조사	• 행정자치부 • 한국관광공사 • 기상청 • 대한결핵협회 • 한국응용통계연구소 • 서울대 • 통계청 • 농림부, 통계청 •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지침 교육(2일간) (전수는 1일간)

■ 조사원 교육시에 조사지침을 잘 익혀야 합니다.

- 조사업무 수행요령
- 조사용품 사용요령
- 조사표 작성요령
- 조사표류 검토요령 등

조사지침 숙지

■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집에서 조사지침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원 및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합니다.

준비조사(10.31) (전수는 10.30~10.31)

■ 준비조사 기간중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담당 조사구를 현장 방문하여 **경계를 확인**합니다.
- **조사구 요도**를 보완합니다.
- **가구명부**(거처번호, 가구일련번호, 주소까지만)를 작성합니다.
- **가구 홍보용 전단**을 배부합니다.
- **가구 스티커**를 붙입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기본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표에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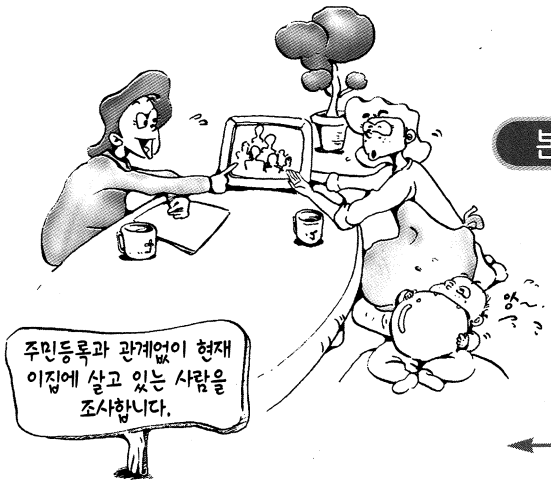

본조사(11.1~11.10)

-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어린이나 노인 등만 있어 적합한 응답자가 없거나, 모든 가구원이 부재중인 경우는 다시 방문합니다.
  - 「조사원 연락전」을 활용합니다.
- 읍 · 면 · 동에서 지정한 장소로 매일 출근하며, 지도원 및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조사표류 검토 및 부호기입

- 조사를 마친 조사표는 그날그날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잘못된 조사표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다시 방문하여 보완합니다.
- 검토를 마친 조사표는 「각종 분류 부호집」을 참고하여, 부호를 기입합니다.

제 출(11.10)

- 검토와 부호기입을 마친 조사표는 담당 지도원의 확인을 거쳐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조사표, 조사구 요도(2부), 가구명부(3부),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조사원증** 등
  - ※ 조사지침서(표본), 각종 분류 부호집, 산업 · 직업 기입 요령(표본)도 함께 제출(재활용)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대상에 대해 조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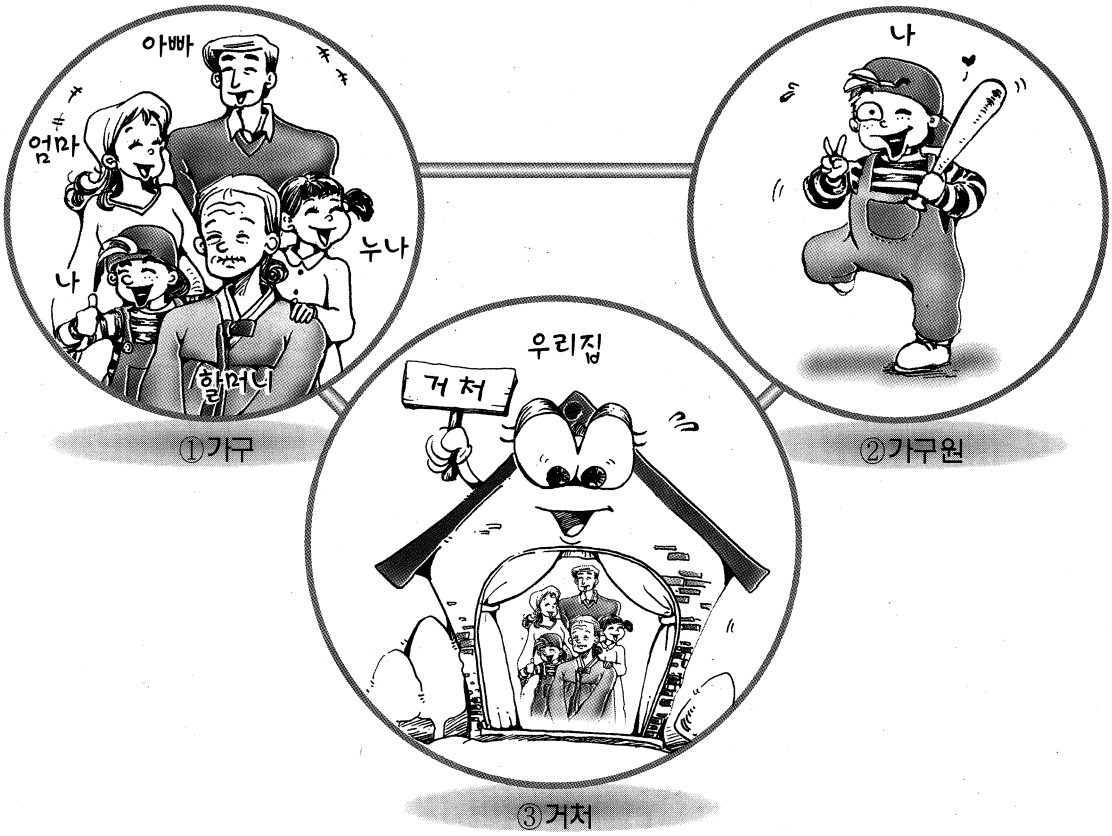

- 원칙적으로 조사표를 1가구에 1부(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사용하여 ①가구와 ②가구원 사항을 조사하고, ③거처는 주인(또는 대표)가구를 대상으로만 조사합니다.

보충자료(조사대상)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대상은 사람이지만 이들의 사회생활이 가구라는 틀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구가 조사단위가 됨

- 1960년부터는 주택총조사가 인구총조사에 병합되면서 이들 가구가 거주하는 장소(주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은 1) 가구원, 2) 가구, 3) 주택의 3가지가 됨

■인구, 가구 및 주택에 대한 규모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사대상을 어떠한 개념으로 조사할 것인지가 중요

- 사람은 늘 이동하는 객체라 어디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지 문제
- 가구나 주택은 몇 개로 세야 하는지가 문제

보충자료(조사대상)

- 인구를 어디에서 조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음

1) 상주(de jure) 개념
   - 이는 평소에 살고 있는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
   - 잠시 집을 떠나 있는 사람도 평소에 살고 있는 집에서 조사
   - **우리나라에서는 상주개념으로 조사(주로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서 사용)**

2) 현주(de facto) 개념
   - 조사당시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
   -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주로 사용

- 가구는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집합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하는 살림 단위(housekeeping)로 파악하는 방법과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가구 단위(household-dwelling)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음
  - 우리 나라에서는 **살림 단위**로 가구를 파악하는데, 이 개념에서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구수를 세는데 특히 유의해야 함

- 주택은 가구가 외부와 독립적으로 생활(취침, 식사, 외부로부터의 보호 등)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된 장소를 말함
  - 우리나라에서는 **1) 영구건물, 2)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 3) 독립된 출입구**를 갖고 있으면서, **4) 분리해서 사고 팔 수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
  -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의 수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함

가 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합니다.
  -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다릅니다.
  - 동거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가족**과 다릅니다.

- 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③ 혼자서 살림하는 1인가구
④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5인이하의 가구
⑤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6인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⑥ 집단 시설 가구 : 기숙시설, 보육원 등 아동시설, 양로원 등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기타 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⑦ 외국인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으면 외국인 가구 및 한국인 가구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합니다.

보충자료(가구의 유형)

■ 가구는 크게 **일반가구**와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

<일반가구>

- 일반가구는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
  - 혈연 가구원으로만 구성
  - 혈연+비혈연 가구원(종업원, 친구 등 동거인)으로 구성
  - 비혈연 가구원으로만 구성
- 몇 가구로 조사할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가구
    - 하숙 또는 5인이하 동거인이 있는 가구
    - 단, 혈연+비혈연가구에서 비혈연가구원이 6명이상이면 각각 분리하여 2가구로 조사(이 때 이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조사)
  - 혈연가구원이라도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
    - 형제와 한집(주택)에 살고 있지만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자취가구 등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6~19인이 모여 사는 집단가구와 시설(기숙시설이나 양로원 · 고아원 등 특수사회시설) 가구로 구분

  ※ 시설가구는 이미 조사구설정시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3)」「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4)」로 설정되어 있으나 요건이 변동된 경우는 읍 · 면 · 동, 시 · 군 · 구, 시 · 도를 거쳐 통계청에 보고후 재분류함(6. 준비조사(56쪽) 참조).

- 집단가구는 원칙적으로 1가구로 조사하지만
  - 관리인가구가 시설에 함께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2가구로 조사(집단가구 및 일반가구)
  - 기숙시설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취사 · 취침을 별도로 하는 경우는 그 수만큼 분리해서 조사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의 가구는 원칙적으로 1가구로 조사하지만
  - 한국인과 함께 사는 경우는 비록 혼인했더라도 분리해서 별도가구로 조사
  - 기숙사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분리해서 2개의 기숙시설 가구로 조사 : 거처번호는 1개 부여

●조사하려는 대상이 몇 가구인지를 구분하는 요령은 아주 중요하므로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총 1 가구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 가구로 조사

총 2 가구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조사

총 1 가구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은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 가구로 조사

총 2 가구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6인이상 19인이하인 경우에는 주인가구로부터 독립시켜 별개의 가구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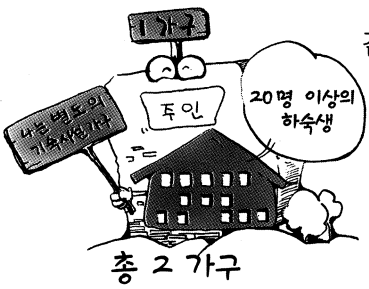

총 2 가구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인이상의 하숙생(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은 별개의 집단가구로 조사 (기숙시설 조사구)

총 5 가구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1인가구와 자취생은 자취 단위별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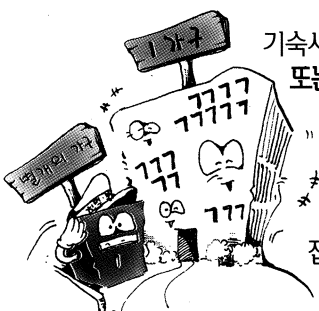

총 2 가구

기숙사와 사회시설내에 **관리인 또는 주인 가구가 독립 취사** 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이들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기숙생 또는 집단인원들은 일괄하여 하나의 집단가구로 조사

총 2 가구

외국인과 한국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은 외국인 가구로, 한국인은 한국인 가구로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가구로 조사

총 3 가구

보육원, 양로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 사회시설과 대사찰, 수녀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시설 가구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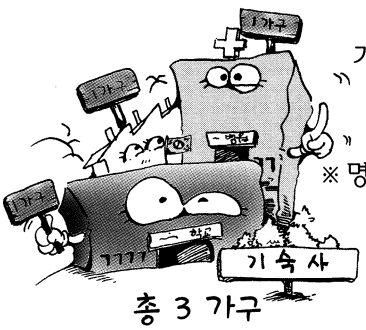

총 3 가구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

※ 명칭이 기숙사라도 각자 독립적인 취사, 취침을 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별개의 가구로 조사

가구구분 사례

[가정집]

사 례	가구수	이 유
같은 집에서 친척이 취사, 취침을 함께 하는 가구	1	보통의 가구로 취급
같은 집에서 친척이 취사, 취침을 달리 하는 가구	2	취사, 취침을 달리하면 별도의 가구가 됨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의 하숙생 또는 종업원	1	5인이하의 하숙생 및 종업원은 주인가구와 취사, 취침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
별도로 자취하는 2가구와 주인가구	3	자취하는 가구는 취사, 취침을 별도로 하므로 별개의 가구로 봄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6인의 하숙생	2	비록 하숙이더라도 그 인원이 6명-19명이면 집단가구로 분리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20인의 하숙생	2	비록 하숙이더라도 그 인원이 20명이상이면 기숙시설조사구 가구로 분리
외국인끼리 취사, 취침을 함께하는 가정집	1	비록 남남이라도 취사, 취침을 같이 하면 1가구로 취급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거 (부부, 친구, 동료 등)	2	한국인과 외국인을 별도의 가구로 분리 (비록 결혼 했더라도)

[집단가구]

사 례	가구수	이 유
보육원, 양로원, 영아원 등 사회시설에 거주하는 관리인이 독립 취사하는 경우	2	사회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1개의 사회시설조사구 가구로 하고 관리인은 별도의 일반가구로 분리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에 살고 있는 관리인이 독립 취사하는 경우	2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1개의 기숙시설조사구 가구로 하고 관리인은 별도의 일반가구로 분리
기숙사에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있는 경우	2	각각 분리하여 2개의 기숙시설조사구 가구로 조사
사찰,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	1	1개의 기숙시설조사구 가구로 하되, 수행차 일시적으로 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가구에서 조사해야 함

가구원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먼 친척, 친구, 가정부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상의 세대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집에서 조사해야 할 사람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가구원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 (기간불문)

예비군 훈련중인 가구원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근무요원으로 출·퇴근하는 가구원

미결수나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중인 가구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인 가구원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만의 부재중인 가구원

다른 곳에서 조사해야 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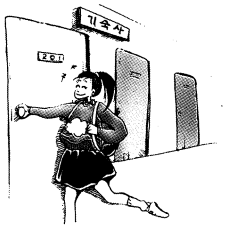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족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요양소,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중인 가족

군대,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가족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족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된 가족

군부대 밖에서 가족없이 혼자 별도로 살고 있는 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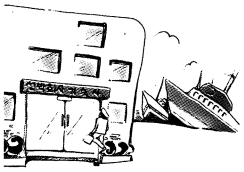

선박, 항공기, 철도, 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족

가구원의 유형으로 본 조사장소

[학 생]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	하숙, 자취 또는 기숙사 생활	타 지	통계청 (시 · 도)	하 숙 집 기 숙 사
	사관학교, 경찰학교 등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음	타 지	국방부 경찰청	해당 기관에서 조사
해외유학생	3개월미만 단기 유학생	이 집	통계청 (시 · 도)	
	3개월이상 중장기 유학생	조 사 안 함	해당국가 에서 조사함	해당국가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간주

[군 인]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군복무자(군대, 전투경찰대 등)	육, 해, 공군 등 군복무자 또는 전투경찰 복무자로서 잠시 휴가나온 사람	타 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휴가중이라도 해당 부처에 서 조사
직업군인으로 영내거주하는 자	혼자 군부대 막사에서 생활하는 자	타 지	국방부	직업군인이나 부대내 거주
	군부대 내의 아파트나 집에 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자 ※직업군인과 가족을 모두 조사함	이 집	통계청 (시 · 도)	
직업군인으로 영외거주하는 자	혼자 군부대 밖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는 자	타 지	국방부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 밖에서 집을 얻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자	이 집	통계청 (시 · 도)	
공익 근무요원(병역의무)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며 병역복무하는 자	이 집	통계청 (시 · 도)	

[사회시설에 있는 사람]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양로원, 요양원, 모자원 등 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자	타 지	통 계 청 (시 · 도)	사회시설 기숙사 조사
	사회시설을 이용하지만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자	이 집	통 계 청 (시 · 도)	주 생활거주지는 자기집임

가구원의 유형으로 본 조사장소

[교육, 훈련, 출장, 여행중인 사람]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직무교육, 예비군훈련, 출장,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자	사정으로 잠시 집을 떠나있음	이 집	통 계 청 (시 · 도)	생활거주지는 자기집임

[병원에 있는 사람]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의사 또는 간호사	집에서 출퇴근	이 집	통 계 청 (시 · 도)	주 생활거주지가 자기집
	병원기숙사에서 생활	타 지	통 계 청 (시 · 도)	주 생활거주지가 병원기숙사
일반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 가족	병실에서 먹고 잠	이 집	통 계 청 (시 · 도)	자기 집이 주된 생활거주지
요양원, 결핵병원 등 특수병원에 수용된 사람	시설에서 먹고 잠	타 지	통 계 청 (시 · 도)	주 생활거주지가 특수시설

[수감자]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교도소 또는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형이 확정되어 상당기간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생활	타 지	법 무 부	교도소, 소년원 등을 통해 조사
경찰서 보호실,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이 집	통 계 청 (시 · 도)	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자기집이 생활거주지
즉결심판에 의해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중인 자	구류는 보통 경범죄로 30일미만 경찰서에 수감	이 집	통 계 청 (시 · 도)	

[가정부, 자가용 운전기사]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가정부, 자가용 운전기사 등과 같은 남의 집에서 일하는 자	남의 집에 거주하지 않고 시간제로 일하며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생활하는 자	이 집	통 계 청 (시 · 도)	주생활 거주지는 자기집임
	남의 집에 거주하며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	타 지	통 계 청 (시 · 도)	주생활 거주지는 남의 집임

가구원의 유형으로 본 조사장소

[취 업]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외지에서 하숙 또는 자취하는 자	타 지	통계청 (시·도)	하숙집, 기숙사에서 조사
자기집을 떠나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주말마다 집에 들리는 자	부득이한 직장이동으로 주말 또는 한달에 가끔 집에 들림(예, 주말부부)	타 지	통계청 (시·도)	
평소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는 자	선박, 항공기, 철도, 관광버스 등의 승무원으로서 회사의 기숙사에 들어가 있음	타 지	통계청 (시·도)	회사기숙사
일상적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는 가족	선박, 항공기, 철도, 관광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일시 집을 떠나 있어도 주 생활거주지는 자기집임	이 집	통계청 (시·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자	대사관, 영사관, 군인 등 정부기관 파견자격으로 나가있는 자	타 지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을 통해 조사
	일반 기업체에서 해외지사에 파견되어 장기간 거주하는 자 또는 그의 가족	조사안함	해당 국가에서 조사함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것으로 간주
	출장, 교육, 여행 등으로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자	이 집	통계청 (시·도)	주된 생활지는 자기집으로 간주

[무단가출]

구 분	형 태	조사장소	조사기관	비 고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경우	발견장소	통계청 (시·도)	노숙자, 부랑아 등은 발견된 장소가 생활거주지임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안되는 경우	이 집	통계청 (시·도)	자기집이 주 생활거주지가 됨

보충자료(조사대상 가구원 Q&A)

Q 아들이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자취를 하는데, 주말이면 집에 와서 지내고, 주민등록도 이 집에 되어 있는데 어디서 조사해야 하는가?

A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상주하고 있는 자취집에서 조사해야 함

Q 부인이 출산을 위해 1달전부터 친정집에 가 있는데, 어디서 조사해야 하는가?

A 상주지인 이 집에서 조사해야 함

Q 병원에 몇 달 째 입원해 있는 가구원은 어디서 조사하는가?

A 상주지인 이 집에서 조사해야 함

Q 10월 31일 군에 입대한 아들은 어디서 조사하는가?

A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집에서 조사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조사함

Q 11월 2일 사망한 가구원은 조사해야 하는가?

A 11월 1일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었으므로 조사해야 하며, 반대로 1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조사하지 않음

Q 10월 1일 외국에 어학연수를 간 가구원은 조사해야 하는가?

A 3개월미만으로 외국에 나갔다면 조사하지만 3개월이상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나가 있다면 조사하지 않음

Q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열차,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승무원으로 탑승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자고 집에는 일주일에 2~3일 밖에 돌아오지 않는 승무원은 어디에서 조사하는가?

A 상주지(생활본거지)인 이집에서 조사함

Q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숙박자는 어디에서 조사하는가?

A 출장, 여행을 목적으로 잠시 투숙하고 있는 경우는 본가에서 조사하고, 취업·취학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3개월이상) 투숙한 경우는 숙박시설에서 조사함.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숙박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함

거 처

-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합니다.
- 거처는 크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나뉘어 집니다.

1. 주 택

주택 여부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가.주택의 요건

주택이란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 **첫째,** 영구 건물이며

임시 거처는 주택이 아닙니다.

■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부엌과 방이 있어야 합니다.

■ **셋째,**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나.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일반 단독주택

● 통상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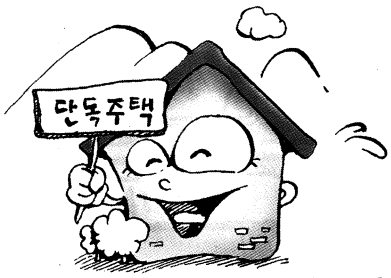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집은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 다가구 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집

"세든 가구용으로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다 갖추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팔거나 사지 않는 집입니다."

아 파 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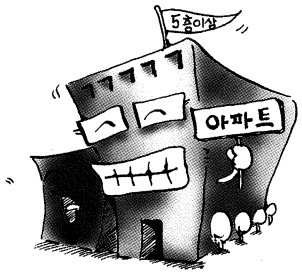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았으면 아파트로 봅니다."

연립주택

● 4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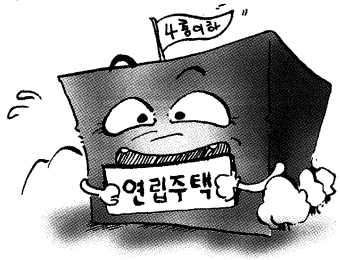

"2 ~ 4층의 빌라, 맨션이 포함됩니다."

다세대 주택

● 4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 동당 건물 연면적이 200평을 넘으면 '연립주택', 200평이하는 '다세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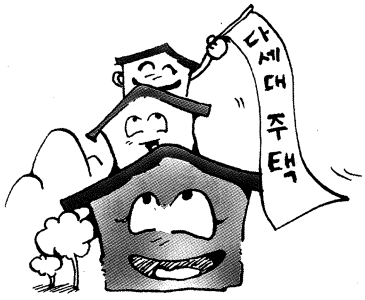

"다세대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릅니다."

영업용 건물내 주택

● 영업용 건물내에 사람이 사는 경우 그 거주 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는 주거 부분만 사고 팔 수 없어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내가 살림하는 부분은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됩니다."

문제 다음의 주택은 어떤 종류에 해당할까요?

"분리해서 분양하지 않는 원룸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에 해당합니다."(분리해서 분양하는 원룸주택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 원룸주택의 영업용 부분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이 됩니다."

"주거부분과 영업용 부분의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2.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단위를 말합니다.

오피스텔

- 사무실이지만 숙식이 가능한 거처를 말합니다.

호텔 ·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내고 숙박설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보육원, 수녀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이 해당됩니다.

"업소의 잠만 자는 방에서 살고 있는 경우 '주택이외의 거처'중 '기타'에 해당합니다."

기타

- 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잣집, 콘테이너, 움막, 암자, 건설 공사장의 임시막사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됩니다.

거처구분 사례

[원 룸]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호별로 매매 가능	• 다세대 주택	주택의 요건을 모두 만족
호별로 매매 불가	• 다가구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택의 요건에 벗어남

[주상복합아파트]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상가아파트 중 주거용 부분		• 아파트	주택의 요건을 모두 만족
상가아파트 중 영업용으로 사용중인 부분	주거전용의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가 있음	• 영업용 건물내 주택	주택시설을 갖추어 생활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함	•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요건 미비
	사람이 비상주	• 조사대상 제외	영업용 구조물

[여 관]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상주하여 생활하는 사람	주택시설을 갖추어 생활	• 영업용 건물내 주택	건물설계가 별도 가구가 살수 있도록 지어져 가족이 생활하는 경우에 한함
	객실을 얻어 생활	• 주택이외의 거처	취사를 밖에서 하므로 주택시설 요건에 충족하지 못함
사람이 상주하지 않음		• 조사대상 제외	영업용 구조물

[오피스텔]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주택시설 요건 모두 갖춤(사무실 겸용 주택)	•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 거처

[상가혼합주택]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연면적을 비교하여 결정(1층 상가, 2층 주거용) ※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분류	• 단독 주택	주거용(2층) 연면적이 큼
	• 영업용 건물내 주택	상가용(1층) 연면적이 큼

거처구분 사례

[노숙자]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현재 있는 곳이 생활 장소임	•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

[상가 및 점포]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종업원 등이 숙식하며 생활	주거전용의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가 있음	• 영업용 건물내 주택	주택시설을 갖추어 생활
	영업용을 병행 사용	• 주택이외의 거처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함
사람이 살고있지 않음		• 조사대상 제외	영업용 구조물

[공 장]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공장 관리인 등이 상주하여 생활	주거전용의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가 있음	• 영업용 건물내 주택	주택시설을 갖추어 생활
	공장내의 조그만 방(공장내의 취사도구 사용 등)	• 주택이외의 거처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함
사람이 살고있지 않음		• 조사대상 제외	영업용 구조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기 준	거 처 분 류	사 유
가족들이 생활	•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 중 영구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임시적 구조물임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조사기간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 교육받은 당사자가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23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담당 공무원이나 지도원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완성된 조사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도원에게 조사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조사원 안전수칙은 별도로 배부하는 책자 참조

가구방문 요령

- 조사구를 방문하기에 앞서 지참해야 할 용품이 빠지지 않았나 점검합니다.
  - 조사구 요도, 가구명부, 조사표, 조사지침서, 각종 분류 부호집, 산업 · 직업 기입요령(표본), 연필, 볼펜, 지우개, 받침대, 조사표 기입요령, 비밀 보호용 봉투, 조사원 연락전
- 원칙적으로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 순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가구 방문시에는
  - 조사원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바른 언행으로 가구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합니다.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은 가급적 피합니다.
  - 혼인이나 초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바쁠 때에는 방문을 피합니다.
  - 가구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구를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의 출타, 부재 등으로 적합한 응답자가 없는 경우는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 결혼식, 초상 등을 이유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는 가구원에게 방문 목적, 재방문 일자 등을 알려준 후, 재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 누락 또는 잘못 조사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방문하여 보완조사를 해야 합니다.

"부재가구의 경우는 「조사원 연락전」에 조사원 성명과 연락처 및 방문사유, 재방문 일자 등을 기입하여, 「가구 홍보용 전단」과 함께 배부합니다."

조사 요령

- 가구를 방문하면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밝힙니다.
  (예) "저는 ○○시(군 · 구)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러 나온 조사원입니다."

• 적격 응답자(가구사정을 잘 아는 가구주, 성인)인지를 확인하여, 조사목적과 소요시간을 알려 줍니다.

(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나라살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사는 평균 25분정도가 소요됩니다."

• 전수조사의 경우 : "이 조사는 평균 1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 적격 응답자가 부재중이면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조사원 연락전」에 조사원 이름 및 연락처와 재방문 일자를 기록하여 적격 응답자에게 전달토록 합니다.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문요령(조사원 면접방식)

• 조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집에서 조사해야 할 사람과 다른 곳에서 조사해야 할 사람을 파악해야 합니다[Ⅳ-3. 조사대상(32쪽)참조].

(예)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로 이 집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 다음은 가구 및 주택사항을 조사하지 않는 집단가구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고, 주인 및 대표가구 여부도 미리 파악하여 주택항목을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사항목 질문은 조사표 내용을 가능한 읽어 주며,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지 않고 정확히 조사합니다.

- 기억을 회상시켜 주거나 모르는 것은 추가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

• 조사항목별 특성을 사전에 알아 두는 것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표 본

- **응답자가 고의로 허위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 : 나이, 교육정도, 출생지, 통근·통학 관련 항목, 경제활동 관련항목, 혼인상태, 총출생아수, 점유형태, 임차료 등

  →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존심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항목이므로 질문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응답자의 기억력때문에 잘못 응답될 우려가 있는 항목** : 나이,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현직업 근무연수, 거주기간, 건축연도 등

  → 기억을 회상시켜 주는 사건이나 연도를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응답자의 이해도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 : 본관, 전공분야, 인터넷 활용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사용방수, 난방시설, 정보통신기기 보유, 총방수, 편익시설수

  → 필요하다면 항목의 개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합니다.

- **다른 가구원이 대리 응답시 잘못 조사될 수 있는 항목** : 본관, 나이, 교육정도, 전공분야, 출생지, 1년전거주지, 5년전 거주지, 컴퓨터 활용상태, 인터넷 활용상태, 통근·통학 장소, 통근·통학 소요시간, 산업, 직업, 현직업 근무연수, 총출생아수 등

  → 직접 해당 가구원에게 물어 보거나 메모하여 추후 전화로 확인합니다.

■ 전수의 경우

- **응답자가 고의로 허위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 : 나이, 교육정도, 출생지, 혼인상태, 점유형태 등

  →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존심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항목이므로 질문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응답자의 기억력때문에 잘못 응답될 우려가 있는 항목** : 나이, 건축연도 등

  → 기억을 회상시켜 주는 사건이나 연도를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응답자의 이해도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 : 본관, 사용방수, 총방수, 편익시설수

  → 필요하다면 항목의 개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합니다.

- **다른 가구원이 대리 응답시 잘못 조사될 수 있는 항목** : 본관, 나이, 교육정도, 출생지 등

  → 직접 해당 가구원에게 물어 보거나 메모하여 추후 전화로 확인합니다.

● 가구원에 대한 비슷한 유형의 조사항목을 한번에 묶어서 가구원 전체 또는 가구원별로 질문하는 것은 조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응답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표 본)

- **성명, 본관,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 **교육정도, 전공분야, 아동보육상태**
- **출생지, 1년전거주지, 5년전거주지**
- **컴퓨터 활용상태, 인터넷 활용상태,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현직업 근무연수**
- **혼인상태, 총출생아수**
- **자녀거주장소, 생계수단, 주부양자, 거동불편여부**

■ 전수의 경우

- 성명, 본관,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 교육정도
- 출생지
- 혼인상태

응답자 기입방식에 의한 조사표 배부 및 회수 요령

※ 아파트 전수 조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조사표 작성은 원칙적으로 가구원을 면접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재가구 등 부득이하게 조사표 작성을 가구에 의뢰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조사표 배부요령

- 가구원을 면접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표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특히 조사대상인 가구원과 제외되는 가구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부재가구인 경우에는 「조사표」, 「조사표 기입요령」 등을 「비밀 보호용 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은 '가구주 성명', 봉투 뒷면은 '조사원 연락전' 내용을 기입하여 배부합니다.
  - 이웃집에 양해를 구하고 대신 전달해 줄 것과 기입요령도 아울러 설명하도록 부탁합니다.
  - 관리인, 동(棟)대표, 통·반장에게 배부가 가능하면 대신 전달해 줄 것과 기입요령도 아울러 설명하도록 부탁합니다.

2. 조사표 회수요령

- 면접 회수 가구
  - 조사표 회수시에는 반드시 **조사대상 가구원**을 참고하여, 조사된 가구원중 누락·중복된 가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표를 검토하여 기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내용을 **보완**합니다.
  - 조사표 뒷면에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어린아이나 노약자만 있는 가구에서 조사표를 회수할 때 조사표에 착오 사항이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후 사무실에서 **전화 하거나 또는 추후에 재방문하여 보완** 합니다. (「조사원 연락전」 활용)
  - 비밀 보호용 봉투가 봉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면전에서 확인해도 괜찮다는 양해를 구하여 현장에서 조사표 내용을 확인 보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전화로 확인 보완합니다.

- 부재가구 회수
  - 관리인, 동(棟)대표, 통·반장, 이웃집 등을 통해 회수된 조사표는 전화로 확인·보완하거나 가구원을 면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재방문하여 보완합니다.

※ 부재가구에 대하여 조사표 배부시에는 우편함을 활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조사표 회수를 위해 가구에서 작성된 조사표를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조사표 분실의 우려가 많음).

응답 거부 가구 조사

- '가구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유형과 응답방법'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 비밀보호를 원하는 경우는 「비밀 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배부 및 회수합니다.
- 응답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지도원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합니다.

《가구 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질문 유형과 응답 방법》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① 인구주택총조사는 나라살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우리나라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②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수립과 기업의 경영분석, 학생들의 교육자료 등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③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다면 국가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자칫 국민들이 내는 아까운 세금이 잘못 쓰여질 수 있습니다.

※ 세부 항목별로 조사를 왜 하는지는 91쪽 참조

• 안하면 안되나요, 꼭 해야 하나요?

① 안하시면 비싼 세금을 들여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② 법(통계법 제12조)에 의해서도 모든 국민이 통계조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118쪽 참조).

• 어디서 조사합니까?

①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①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본 통계를 작성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② 통계청은 실업률, 물가통계, 경기지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국가 통계기관입니다.

• 이러한 조사는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①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가능한 경제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다른나라와 비교해 보면 적은 비용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③ 국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④ 조사결과는 나라에서는 물론 학자나 사업하시는 분, 학생들 모두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읍,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보면 될텐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면서까지 조사합니까?**

① 주민등록으로는 이름, 성별, 나이 정도만 파악이 가능해 실제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② 주민등록은 자기가 살지 않는 곳에 등재시켜 놓거나 세는 나이가 틀리는 등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기 싫은데……**

① 조사되는 내용은 엄격히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② 조사된 내용은 이름을 제외하고 전부 전산으로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③ 원하신다면 「비밀 보호용 봉투」를 이용해 조사표를 넣고 봉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① 조사표 작성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분(전수는 1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② 지금 바쁘시다면 다른 날에 시간 약속을 해 주시면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 **통계가 믿을 만 합니까?**

① 통계는 과학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응답자가 정확히 응답하지 않으면 통계가 정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믿을 만한 통계가 작성됩니다.

조사용품의 종류

조사휴대용품	준 비 조 사	본 조 사	부재가구 조사용
① 조사원증 ② 조사지침서 ③ 사무용품 (가방, 볼펜, 받침대 등)	④ 조사구 요도 ⑤ 가구명부 ⑥ 가구 스티커 ⑦ 가구 홍보용 전단 ⑧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⑨ 지역 홍보용 협조문	⑩ 조사표 ⑪ 비밀 보호용 봉투 ⑫ 각종 분류 부호집 ⑬ 표본 산업 · 직업 기입요령	⑪ 비밀 보호용 봉투 ⑭ 조사원 연락전 ⑮ 조사표 기입요령

조사용품의 용도 및 취급요령

① 조사원증

- 조사가구에서 신분확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조사지침서

- 「조사지침서」는 조사에 대한 상세한 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익혀야 합니다.
- 조사기간중 항상 휴대하여 현장조사시 수시로 활용합니다.

③ 사무용품

- 조사원 가방
  · 「조사원 가방」은 각종 조사표류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볼펜(흑 · 적), 연필, 지우개 : 각종 조사표류 작성에 사용
- 받침대 : '연령 조견표'와 '성씨 일람표' 수록

④ 조사구 요도

- 「조사구 요도」는 통계청에서 조사구 경계와 주요 지형지물이 표시된 전산출력 지도 형태로 배부됩니다.
- 준비조사 기간중에 조사구 요도를 보완하여 완성해야 합니다.

⑤ 가구명부

- 「가구명부」는 조사구의 거처번호, 가구 일련번호, 주소, 가구주 성명, 가구원수(남여별), 가구의 종류, 거처의 종류, 빈집 여부, 농 · 어가 구분 등을 기입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 **준비조사 기간**에는 **'거처번호, 가구 일련번호, 주소'**만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나머지 항목은 본조사 기간중에 작성합니다.

⑥ 가구 스티커

- 「가구 스티커」는 준비조사 기간중에 거처별 가구수만큼 출입구 오른쪽 위에 부착합니다.

⑦ 가구 홍보용 전단

- 총조사에 대한 홍보물로 준비조사 기간중에 가구에 배부합니다.

⑧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는 준비조사 기간중에 관리사무소나 주택사정을 잘 아는 주민, 경비원 등에게 문의하여 작성합니다.
- 수집된 기본정보는 조사표에 미리 연필로 기입한 후 가구에 배부하거나 조사에 임합니다.

⑨ 지역 홍보용 협조문

- 조사구 입구,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홍보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⑩ 조사표

- 조사표는 전수 및 표본이 다르므로 주의합니다(표본 : 연두색, 전수 : 청색).
  - 기숙시설 조사구(특성번호 3),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특성번호 4)는 표본 조사표를 사용하며, 노숙자는 전수 조사표를 사용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합니다.
- 빈집의 경우는 「빈집 조사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⑪ 비밀 보호용 봉투

- 「비밀 보호용 봉투」는 가구에서 비밀보호를 요구할 경우 배부하여 활용토록 합니다.
- 부재가구에 대한 조사표 배부 및 회수시도 「비밀 보호용 봉투」를 이용토록 합니다.

⑫ 각종 분류 부호집

- '성씨 및 본관'은 '성명, 본관' 항목의 부호기입시 사용합니다.
- '행정구역 번호'는 '출생지,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통근·통학 장소' 항목 및 '조사표 표지'의 부호기입시 사용합니다.
- '연령 조견표'는 '나이' 조사시 참고합니다.

  ※ '전공분야'는 별도 읍·면·동에 비치된 「전공학과」를 참고합니다.

⑬ (표 본) 산업·직업 기입요령

- '산업 및 직업' 항목을 조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⑭ 조사원 연락전

- 「조사원 연락전」은 부재가구에 조사표를 배부하거나, 부재가구를 재방문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⑮ 조사표 기입요령

- 부득이하게 가구에 조사표 기입을 의뢰하는 경우 가구의 조사표 작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사표 기입요령」도 함께 배부하도록 합니다.

조사표류 종류 및 활용

조사표류	배부기준	사용용도 및 활용	비 고
1. 사무용품(5종)			
1) 연필	1인당 1개	• 처음 조사 작성시 우선적으로 사용 • 조사표 사선(\) 처리시 사용 • 공동주택 기본정보를 조사표에 옮겨 쓸 때 • 조사구 요도에 가구수 표시할 때	
2) 지우개	1인당 1개		
3) 볼펜(흑, 적)	1인당 1개	• 흑색 : 조사표류 작성시 사용 • 적색 : 부호기입 및 조사구 보완시 사용	
4) 받침대	1인당 1개	• 조사표류 작성시 받침대로 사용	• 화일
5) 조사원 가방	1인당 1개	• 각종 조사표류를 넣고 다님	
2. 조사원 임명관련 유인물(5종)			
1) 임명장	1인당 1매	• 시군구의 장 명의	
2) 서약서	1인당 1매	• 조사원으로서의 의무를 서약	
3) 출근부	1인당 1매	• 조사기간동안 활동한 사실을 증명 • 수당지급 근거	• 매일 출근하여 날인
4) 조사원 마크	1인당 1개	• 조사원임을 표시	• 패용
5) 조사원증	1인당 1개	• 조사원 증명 및 응답자에게 제시	• 패용
3. 조사관련 유인물(14종)			
1) 조사지침서	1인당 1부	• 조사시 지침으로 활용	• 전수 또는 표본중 1종
2) 조사구 요도	조사구당 2매	• 제출 2매 • 조사용은 복사해서 사용	
3) 가구명부	조사구당 3매	• 준비조사기간에는 거처, 가구일련번호 및 주소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본조사중 완성	• 조사구 요도와 병행하여 작성
4) 가구 스티커	가구당 1매	• 조사대상 가구수 및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부착	• 준비조사시 사용
5) 가구 홍보용 전단	가구당 1매	• 총조사 취지설명 및 응답 협조문	• 준비조사시 사용
6)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조사구당 1매	• 조사구내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표 • 준비조사 기간중에 사용	• 공동주택이 없는 경우 불필요
7) 조사표	해당 가구 전부	• 가구원 5인이하 1매, 6인이상 10인이하 2매, 11인이상 15인이하 3매	• 전수 또는 표본중 1종
8) 조사원 연락전	재방문 가구	• 가구를 재방문해야 될 경우	
9) 비밀 보호용 봉투	필요가구	• 비밀보호를 원하는 경우 • 응답자 기입방식 조사가구	• 조사표, 조사표 기입요령, 가구홍보용전단을 함께 넣어서 배부
10) 조사표 기입요령	필요가구	• 응답자 기입방식 조사가구	
11) 외국인 조사표	외국인 가구	• 담당 조사구내의 외국인 가구에 대한 조사	
12) 빈집 조사표	빈집 10호당 1매	• 담당 조사구내의 빈집	•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
13) 조사표 편철 표지	조사구당 1매	• 일반조사표→빈집조사표→외국인조사표 순으로 편철	• 조사구단위로 묶음
14) 각종 분류 부호집	조사원당 1부	• 성씨 및 본관, 연령조견표, 행정구역번호 등 수록	• 조사시 활용

※ 표본조사의 경우 「산업 · 직업 기입요령」이 추가로 배부

■ 준비조사 기간중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조사구 요도 작성
2. 가구 홍보용 전단 배부
3. 가구 스티커 부착
4.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 및 조사표 옮겨적기
5. 가구명부 작성

1. 조사구 요도 작성

조사구의 종류

■ 조사구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읍·면·동 경계내에서 도로, 산, 강, 하천 등의 변화가 적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가구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지역 단위를 말합니다.

■ 일반 조사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아파트 조사구(특성번호 : A)
- 보통 조사구(특성번호 : 1)
- 섬 조사구(특성번호 : 2)
- 기숙시설 조사구(특성번호 : 3)
-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특성번호 : 4)
-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번호 : 5)

조사구의 개념

① 아파트 조사구(특성번호 : A)

아파트 조사구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내에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의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함

② 보통 조사구(특성번호 : 1)

보통 조사구란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맨션 등),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내에 살고있는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함 ※ 일부 아파트는 보통조사구에 편입

③ 섬 조사구(특성번호 : 2)

섬 조사구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는 조사구임

④ 기숙시설 조사구(특성번호 : 3)

기숙시설 조사구란 기숙시설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 공장, 학교, 병원, 수녀원, 대사찰 및 기타 단체 등이 소속 학생, 직원 등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단위별로 설정하는 조사구를 의미

⑤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특성번호 : 4)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란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시설 단위별로 설정하는 조사구를 말함

⑥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번호 : 5)

관광호텔은 3등급(무궁화 2개)이상에 대하여 호텔단위별로 설정하는 조사구를 말하며, 외국인 거주지역조사구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20인 이상 또는 10가구 이상 모여서 살고 있는 경우에 설정한 조사구를 말함

조사구 경계의 확인

- 통계청에서 전산 제작한 조사구 요도를 가지고 현장 답사하여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 다른 조사구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지역이 있으면 안됩니다.
- 조사구의 경계가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읍·면·동 공무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 청색으로「×」표시한 후 경계선을 적색으로 보완합니다.

지형지물과 건물의 확인 및 보완

- 주요 건물과 지형지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지정된 기호(요도상의 범례)를 사용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 조사구 요도에 신축 또는 누락된 건물은 ▭ 로 표시하며, 현재 신축중인 건물은 ⬚ 로 표시합니다.
  - 철거 등으로 없어졌거나 잘못 표시되어 있는 건물은「X」표시합니다.

거처 확인 및 가구수 파악

- 모든 건물(특히 다방,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와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건물)에는 출입구 표시를「||」와 같이 표시합니다.

거처번호 부여 및 거주가구수 표시

- 모든 거처(빈집 포함)에는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거처번호를 [3] 와 같이 기입한 후, 거처내의 가구수는 우측 상단에 [3 ②] 와 같이 ◯안에 연필로 표시합니다.
- 조사구내의 총가구수는 조사구 요도 위쪽의 가구수란에 기입합니다.
- 신축중인 건물과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예 : 관공서)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빈집은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거처내에 [5(빈집)] 으로 표시합니다(빈집은 연필로 표시).

제 출

- 조사구 요도 작성이 끝난 조사구는 나머지 1부에 베낀 후 조사구 요도 오른쪽 위의 조사원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조사표 제출시 지도원에게 제출합니다.

조사구 요도의 작성

■ 조사구 요도란 조사원이 담당해야 할 구역을 일정한 규격에 주요 지형지물과 명칭, 거처와 거처번호, 거처별 가구수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함

■ 조사구 요도는 1개 조사구에 2부씩 제공

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요도의 특징

- 종전까지의 총조사 조사구 요도는 종이지도(청사진) 또는 레스터 지도를 사용함에 따라 수작업으로 일일이 조사구 요도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요도는 전산으로 수정 · 보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산으로 출력이 자유로운 수치지도(Digital map)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고품질의 지도임
- 또한, 수작업으로 작성해 오던 아파트 지역은 정면에서 바라다 본 건물 모양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구 요도의 정확성이 매우 높아졌음
- 조사구 요도에 사용된 지도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
  - 대도시 또는 주택밀집 지역은 정확도가 높은 1/1,000축척의 지도를 대부분 사용하였고, 도심 변두리나 농촌지역은 1/5,000축척을, 산악지역이나 군사보호지역은 1/25,000축척을 사용

2. 조사구 요도의 배부

■ 통계청에서는 전산으로 작성된 조사구 요도를 A3크기로 출력하여 2부씩 제공

① 아파트 조사구(특성번호 A)

- 아파트 조사구는 정면에서 바라다 본 건물모양(출입구 형태, 층수, 호수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아파트 조사구에 포함된 상가 또는 기타 건물이 모두 표시

② 보통 조사구(특성번호 1)

- 보통 조사구는 면적과 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모양에 따라 작성 방법을 달리하였음

[면적이 넓은 조사구]

- 산간지역, 농촌지역 등과 같이 면적이 넓은 조사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확대도를 작성하여 제공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이 포함된 조사구]

- 공동주택의 정보(층수, 호수, 출입구형태 등)가 이미 파악된 경우에는 조사구 경계 밖이나 별지에 공동주택의 전개도를 표시

조사구 요도의 작성

③ 섬 조사구(특성번호 2)

- 작성기준은 보통 조사구와 동일하며, 2개 이상의 섬이 1개 조사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제거리와 관계없이 거리를 좁혀 조사구 요도에 최대한 크게 나타나도록 하였음

④ 기숙시설 조사구(특성번호 3),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특성번호 4),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특성번호 5)

- 주변지역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여 조사원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조사구 요도의 수령 및 확인

- 통계청에서 제공한 조사구 요도의 수량과 부수(2부)를 확인
- 제공된 조사구 요도를 검토하여 활용 가능여부를 판단

〈전산 조사구 요도의 활용 가능 판단 기준〉

☞ 출력된 거처(건물)크기가 거처 일련번호 및 거주가구수 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지형지물(도로, 하천, 건물 등)이 현상태와 비교하여 일부 수정·보완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전산 조사구 요도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조사구 요도 빈양식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조사구 요도를 작성한 후 조사원에게 배부

- 사용가능한 조사구 요도는 조사구 경계 및 번호가 기본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
- 지형지물의 상태가 기본도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공동주택이 포함된 조사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개도 유무를 확인하여 공동주택의 층수, 호수, 출입구 형태를 파악하여 조사구경계 밖에 그려야 함
- 조사구 요도의 상단에 위치한 소재지란에 조사구의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
  - 조사구 설정시 작성한 조사구 일람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입
    - 아파트 조사구는 아파트명, 동(棟), 호(戶)수를 기입하되, 복도식은 층(層)수를 기입
    - 나머지 조사구는 통, 반,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 조사구의 경계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조사원에게 1부를 배부
  - 조사 도중에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게 주의
- 조사구 요도 배부시 경계를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고, 조사원이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함

☞ 다음은 조사원이 현지답사하여 작성

■ 흑색은 작성전 상태이며, 예시는 작성이 끝난 상태입니다(조사구경계는 실물에서는적색).

[일반주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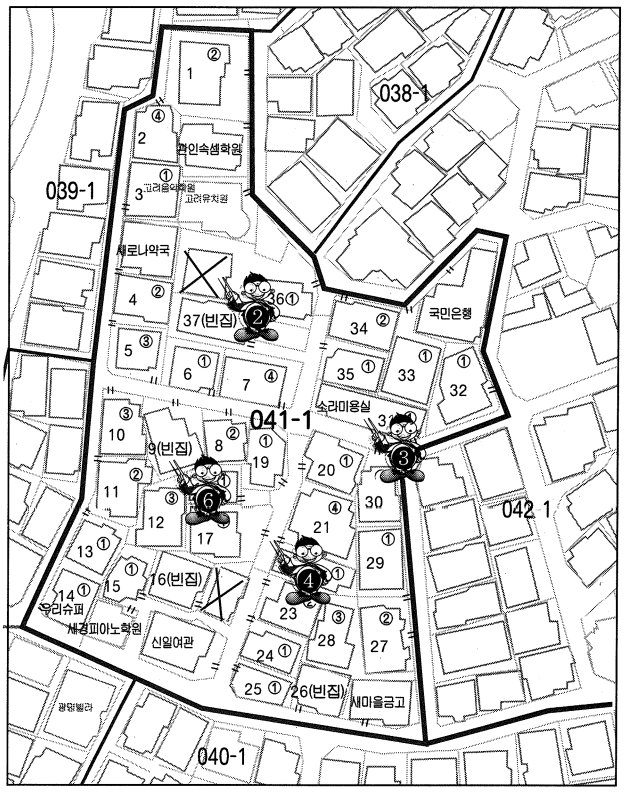

①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② 지형지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보완합니다.

③ 상가, 소형점포 등의 명칭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④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건물)에 출입구 표시를 「||」와 같이 합니다.

⑤ 거처내에 살고 있는 가구수를 확인합니다.

⑥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건물)는 가구수를 거처의 오른쪽 위에 기입하고, 빈집은 그대로 (빈집)이라 표시합니다.

⑦ 거처번호는 반드시 옆집이 인접 되도록 연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예 : 아파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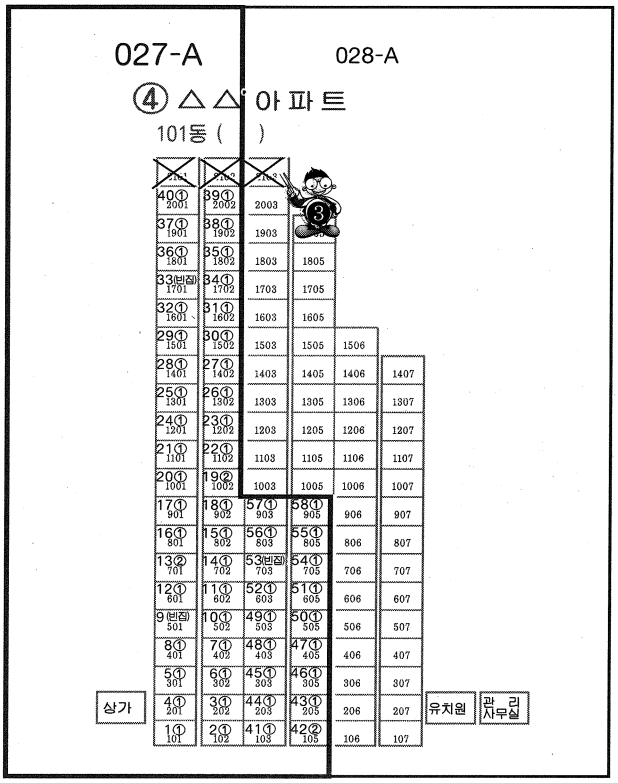

①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② 아파트 모양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현장 답사하여 확인합니다.

③ 아파트의 층(層), 호(戶), 출입구 표시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표시하고, 누락된 부분은 보완합니다.

④ 아파트 호(戶)별로 살고 있는 가구수를 확인합니다.

⑤ 아파트 형태가 계단식인 경우에는 거처번호를 출입구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아래 층부터 부여합니다.

⑥ 아파트 형태가 복도식인 경우에는 아래 층부터 부여하되, 호수가 빠른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이 혼합된 지역]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지역은 공동주택의 전개도가 조사구 경계 밖에 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맨션 등)의 전개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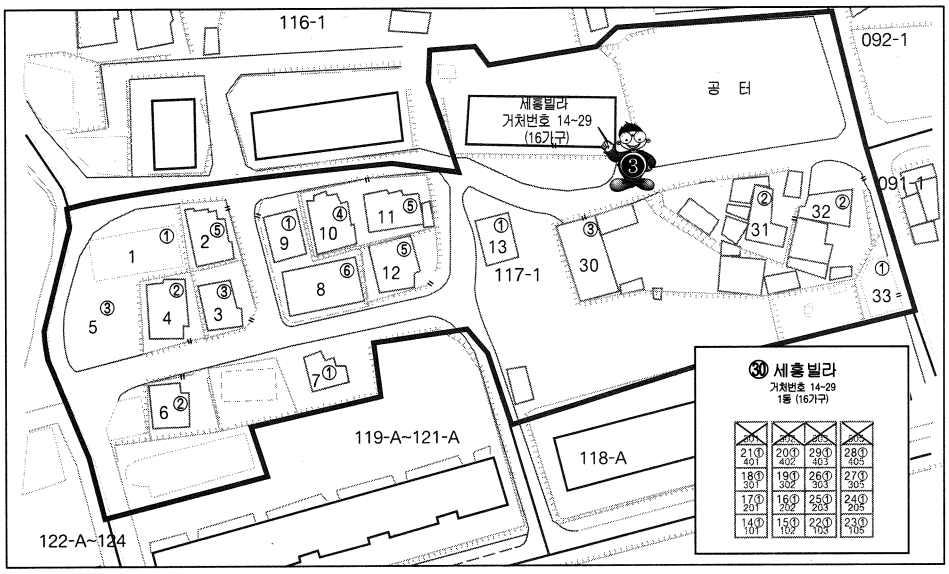

① 조사구 경계 밖에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형태가 실제와 맞는지 현지 답사하여 층(層), 호(戶), 출입구를 확인합니다.

② 전개도가 잘못 표시되어 있으면 아파트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완합니다.

③ 거처번호 및 가구수는 조사 진행순서에 따라 일반주택 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되, 조사구경계내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에는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표시하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총가구수를 기입합니다.

• 공동주택의 전개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조사 담당 지역내에 공동주택이 있지만 공동주택의 전개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답사하여 공동주택 전개도(층(層), 호(戶), 출입구)를 조사구 경계 밖에 그려야 합니다.

② 조사구 요도상에 공동주택 건물이 크게 표시되어 건물위에 층(層), 호(戶), 출입구의 표시가 가능하면 그 건물위에 직접 그려도 됩니다.

③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수 기입요령은 공동주택의 전개도가 표시된 경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조사 담당지역이 모두 공동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전개도 유무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구 요도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

■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관광호텔 같은 시설단위의 조사구는 집단시설 가구이기 때문에 조사구 요도의 위쪽에 위치한 가구수 기입란에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수를 기입합니다.

■ 규모가 큰 시설은 층(層)또는 호(戶)를 기준으로 조사지역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담당 지역을 명확히 확인하여 중복,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거처번호는 1개로 부여합니다.

[면적이 넓은 지역]

■ 조사지역이 비교적 넓어 건물이 작게 나타난 지역은 부분 확대도가 제공됩니다.

■ 부분 확대도가 제공된 경우, 조사구 전체가 표시된 도면(도면1) 지역은 부분 확대 지역을 제외한 곳에 모든 사항을 표시하고, 부분 확대 지역(도면2)은 해당 부분만 표시합니다.

● 조사구 전체가 표시된 도면(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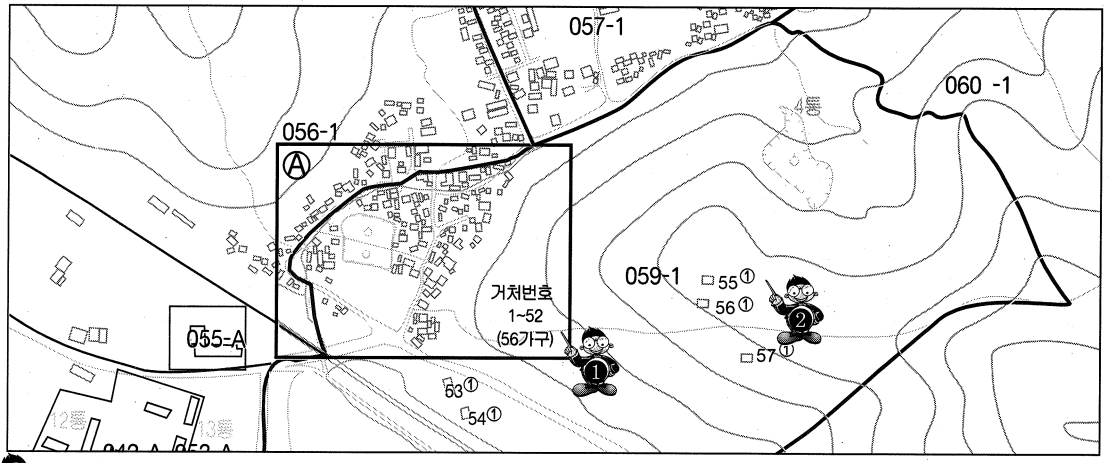

조사구경계가 모두 나타난 도면에는 그림과 같이 부분 확대도에 표시한 거처번호의 시작 번호와 끝 번호 및 가구수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부분 확대 이외의 지역에 거처(건물)의 신축 또는 누락이 있어서 보완할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그림과 같이 표시합니다.

● 부분 확대 지역(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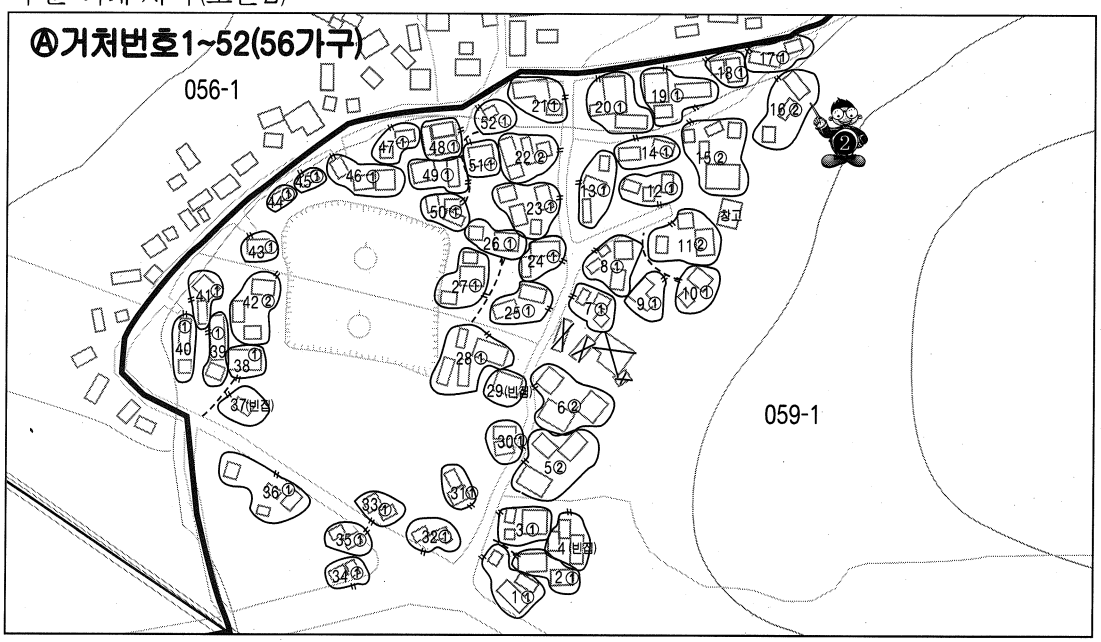

① 부분 확대도 부분은 부분 확대도상에 모든 사항을 기입합니다.

여러개의 건물이 한 개의 거처일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담장을 기준으로 건물을 묶어서 출입구를 표시합니다.

③ 거처번호 및 가구수는 거처의 묶음내에서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기입합니다.

제 출

- 조사구 요도 작성이 끝난 조사구는 나머지 1부에 베끼고 조사구 요도 오른쪽 위의 조사원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조사표 제출시 지도원에게 제출합니다.

조사구 요도 제출 및 관리

-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구 요도 2부를 확인
  - 조사구 요도 2부가 똑같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서로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원이 보완하여 제출

- 지도원은 담당 조사구의 수량과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조사구 요도의 우측상단에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후 지도공무원에게 제출

- 지도공무원은 조사구 요도의 수량(조사구당 2부) 및 작성상태를 확인한 후, 조사구 요도의 우측 상단에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또는 날인)

- 조사구 번호순에 의해 정리한 후 조사구 요도 간지(읍 · 면 · 동용)를 작성하여 1부를 시 · 군 · 구에 제출하고(가급적 깨끗한 조사구 요도를 제출) 나머지 1부는 보관

- 시 · 군 · 구는 읍 · 면 · 동별 조사구 요도를 취합한 후, 읍 · 면 · 동 순서에 따라 300매 기준으로 편철
  - 300매가 넘는 경우가 있더라도 1개 읍 · 면 · 동이 2개로 나누어 편철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편철이 완료되면 조사구 요도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

2. 가구 홍보용 전단 배부

- 「가구 홍보용 전단」은 조사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각 가구에 배부합니다.

3. 가구 스티커 부착

- 가구확인이 끝나면 거주가구별로 「가구 스티커」에 조사구 번호와 가구 일련번호를 기입한후 가구수만큼 출입구의 오른쪽 위에 부착합니다.
  - 준비조사 기간중에는 조사여부란을 비워둔 채로 부착한 다음, 조사가 끝난 후 조사여부에 ○표시합니다.
-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에는 스티커에 X표시 합니다.
- 조사구별로 다른 색상의 스티커를 사용합니다(총5색).

4.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 및 조사표 옮겨 적기

- 담당 조사구내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그 주택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거처의 종류 ② 연건평 ③ 총방수(방, 거실, 식당) ④ 건축연도
  ⑤ 편익시설수(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

- 같은 건물이더라도 주택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집된 기본정보는 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필로 수집된 정보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하여 본조사시 확인토록 합니다.
-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양식)

공동주택 종류			명칭 및 동·호수	연건평 (전용면적)	건축 연도	총 방 수			편익시설수			비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방 수	거실 수	식당 수	부엌 수	화장실수	출입구수	
○			대전아파트 201동 101호~2002호까지	24평	1998	3	1	0	1	2	1	<예시>

5. 가구명부 작성

준비조사 기간중에는 '①거처번호' '②가구 일련번호' '③주소'만 확인하여 작성하고 나머지 항목은 본 조사 기간 중에 작성합니다.

2000 가 구 명 부

(전수 · 표본)

통계청

㉮·도	시·군㉯	읍·면㉰	조사구번호	조사표부수			가구명부 매수	조사구요도 매수	공동주택 수집표매수	조사원	다세리 (인)
				한국인	외국인	빈 집				지도원	다세미 (인)
XX	OO	△△	007 - 11	42	1	1	1 매중 1 매	2 매	1 매	지도공무원	정남수 (인)

①거처번호	②가구일련번호	③주소 (통·리·동, 반, 번지, 아파트 동호)	④가구주 또는 대표자 성명	⑤가구원수 계	남	여	⑥가구의 종류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⑦거처의 종류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⑧빈 집	⑨농·어가 구분 농가	어가	농·어가	⑩비고
1	1	56번지 10통 1반	선주대	4	2	2	○			○										
2	2	57번지 10통 1반	윤형백	7	3	4	○			○										
3	3	58번지 10통 1반	박영주	5	2	3	○			○										
	4		장기천	6	4	2	○													
4	5	59번지 10통 1반	이상엽	3	2	1	○			○										
	6		한병권																	11.2전출
	7	60번지 10통 1반	박희경	2	1	1	○			○										
	8	61번지 10통 1반	현영기	6	2	4	○			○									○	
	9	62번지 10통 1반	김형석	3	2	1	○			○										
	10		이재원	3	1	2	○											○		
8	11	63번지 10통 1반	김원태	4	2	2	○			○										
9		64번지 10통 1반								○						○				빈집
10		89번지 10통 2반	정남수	3	2	1	○			○										
11		90번지 10통 2반	서병우	5	2	3	○			○										
12	14	91번지 10통 2	박성미	4	2	2	○			○										
13	15	99번지 10통 2	하봉채	4	2	2	○			○								○		
14	16	100번지 10통 2반	이기혁	4	1	3	○			○										
	17		김철주	3	1	2	○													
15	18	101번지 25호 10통 3반	임명선	6	3	3	○			○										
16	19	동아연립가동 101호 146번지 11통1반	고행준	7		0		○		○		○								
17	20	〃 102호 〃	이영보	4		2	○					○								
18	21	〃 201호 〃	John.k.D	4		2			○			○								
19	22	〃 1201호 〃	이정수	3	1							○								
29	32	〃 301호 〃	신지성	5	3	2	○					○								
30	33	〃 302호 〃	윤명준	6	3	3	○					○								
1	34	56번지 10통 1반	임철규	4	2	2	○													11.3전입
4	35	59번지 10통 1반	박윤영	3	2	1	○													준비조사시 누락
소 계				115	57	58	32	1	1	16	0	5	0	1	0	1	1	1	1	

(뒷면)

	가구수	가구원수 계	남	여
총 계	58	199	106	93
일반가구	55	170	82	88
집단가구	1	21	21	0
외국인가구	2	8	3	5

합 계	29	0	5	0	2	2	2	2	2	1

주택계	36
거처계	38

■가구명부는 조사구별로 3매씩 작성합니다(복사가능 : A3).

(앞면)

조사표 부수는 6인이상 가구인 경우는 2부로 계산하며, 외국인 및 빈집 조사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외국인이나 빈집 조사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0'으로 기입합니다.

거처번호는 주인 · 대표가구만 기입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을 칩니다.

가구 일련번호는 모든 가구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거처번호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주소는 주인 · 대표가구만 기입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을 칩니다. 번지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구원수는 계, 남,여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합니다.

가구의 종류는 '33쪽(가구)'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가구의 종류에 ○표 합니다.
※ 가구의 종류에서 ① ~ ④는 일반가구, ⑤ ~ ⑥은 집단가구, ⑦은 외국인가구에 해당합니다.

거처의 종류는 '42쪽(거처)'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거처의 종류에 ○표 합니다.
※ 같은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다른 가구는 사선(＼)을 칩니다.

빈집에 해당되면 ○표 합니다.
· **빈집인 경우라도 '거처번호' '주소' '거처의 종류' '빈집여부'는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칸은 사선(＼)을 칩니다.**

농 · 어가에 해당하면 ○표 합니다.
·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면 농 · 어가에 해당합니다.
· 농가이면서 어가인 경우 '③농 · 어가'에 해당됨에 주의합니다.
· 농 · 어가가 아니면 사선(＼)을 칩니다.

비고 · 전입가구는 전거주지에서 조사가 되지 않았으면 가구명부상에 마지막 가구로 추가하여 가구 일련번호를 부여(거처번호는 그 가구가 있는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전입일자를 기록**합니다.
· 준비조사 기간중에 현재 조사구내에 거주하였으나 조사가 안된 채로 타지로 전출간 가구는 두 줄(=)을 긋고 **전출일자를 기록**합니다.

조사가 누락된 가구를 발견하면 가구명부 마지막 가구로 추가합니다(거처번호는 그 가구가 살고 있는 거처번호를 기입하고 가구 일련번호는 가구명부상 마지막 번호 부여).

소계는 페이지별로 작성합니다.
· 가구원수(남여별), 가구의 종류별 가구수, 거처의 종류별 거처수, 빈집수, 농가수, 어가수, 농 · 어가수를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합계는 가구명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작성합니다.

(뒷면)

가구별(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로 조사구 전체의 남녀 가구원 총수를 기입합니다.

'⑦거처의 종류' '⑧빈집' '⑨농 · 어가구분'에 대해서 조사구 전체의 총수를 기입합니다.

주택계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영업용 건물내 주택을 합하여 기입하며, 거처계는 주택계+주택이외의 거처를 더합니다(빈집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 조사구의 가구가 많아 2매를 사용하는 경우, 2매중 2매에 해당되는 가구명부에도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조사구 번호'는 다시 기입하며 조사구별 가구수, 가구원 총수, 주택 및 거처 총수 등 총계란은 마지막 장에만 기입합니다.

일반적인 사항

- 조사표는 크게 '가구원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 **'가구원에 관한 사항'** 은 개인별로 작성합니다.
    · 연령에 따라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는 항목' (표 본) '13세이상만 응답하는 항목' '16세이상만 응답 하는 항목' (표 본) '61세이상만 응답하는 항목'으로 나누어 집니다.
  - **'가구에 관한 사항'** 은 모든 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작성합니다.
  - **'주택에 관한 사항'** 은 주인가구(또는 대표가구)만 작성합니다.

- 조사표는 1가구에 1부를 사용합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6명이상인 경우는 1부를 더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이 경우 조사표 부수는 가구주가 포함된 조사표는 '2부중 1부', 6번째 가구원이 포함된 조사표는 **'2부중 2부'**로 표시합니다.
  - '2부중 2부'에 해당하는 조사표는 가구 및 주택사항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 조사표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표로 표시하고, 내용을 기입하는 항목은 숫자나 문자로 기입합니다.
  - 잘못 기입하여 고칠 때는 **두 줄(=)**로 긋고 수정합니다
  - 해당되지 않는 문항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사선(＼)**을 긋습니다.

- 조사표는 3가지 필기도구를 사용합니다
  - **흑색 · 청색 볼펜** : 모든 조사표류 작성
  - **연필** : 사선(＼)을 치는 경우나 공동주택 기본정보를 조사표에 사전표시할 때
  - **적색 볼펜** : 부호를 기입할 때

    ※ 싸인펜, 수성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표 표지

㉮·도	시·군·㉯구	읍·면·㉰동	㉱통 리	428 번지 4 호
서울	마포	도화2	15	동 호
※행정구역번호 11	140	58	15	

■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 구 당 조사표부수	가구원수	농·어가 구분
0 3 1 - 1	7	9	총 1 부중 1 부	4	①농 가 ③농·어가 ②어 가 ④비농어가

- 주소
  - 번지, 호수, 통·리를 정확하게 기입하되 읍·면·동란에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관할 읍·면·동사무소명)을 기입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연립주택)명, 동, 호수까지 기입합니다.
  - 행정구역부호는 「각종 분류 부호집」을 참고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통·리에 대해 주소 아래 쪽에 적색으로 기입합니다.

-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 담당 조사구번호(4자리)를 매 조사표마다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가구명부상에 부여된 번호를 기입합니다.

- 가구당 조사표 부수
  - 몇 부중 몇 부인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
  - 조사된 조사표상의 가구원수를 기입합니다.

- 농·어가 구분
  - 가구원중 한 명이라도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면 '①농가' 또는 '②어가'에 해당합니다.
  - 농가이면서 어가인 경우는 '③농·어가'에 해당합니다.
  - 농·어가가 아니면 '④비농어가'에 표시합니다.

❶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번 가 구 원	2 번 가 구 원	3 번 가 구 원	4 번 가 구 원
1 성명	이 댁에서 살고 계시는 분의 성명(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안에는 성씨를 한자로 기입합니다. · 가구주, 배우자, 자녀의 순으로 기입합니다. · 가구주는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 혁 (李)	최 세 미 (崔)	이 민 기 (李)	박 간 난 (朴)
2 본관	본관은 어디입니까? (한글로 기입합니다)	본관 전 주	본관 예 산	본관 전 주	본관 밀 양
		299 285	348 186	299 285	194 145
3 가구주와의 관계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해당되는 한 곳에만 ○표 합니다.	①가구주 ②가구주의 배우자 ③자녀 ④자녀의 배우자 ⑤가구주의 부모 ⑥배우자의 부모 ⑦손자녀 · 그 배우자 ⑧증손자녀 · 그 배우자 ⑨조부모 ⑩형제자매 · 그 배우자 ⑪형제자매의 자녀 · 그 배우자 ⑫기타 친인척 ⑬기타 동거인	①가구주 ②가구주의 배우자 ③자녀 ④자녀의 배우자 ⑤가구주의 부모 ⑥배우자의 부모 ⑦손자녀 · 그 배우자 ⑧증손자녀 · 그 배우자 ⑨조부모 ⑩형제자매 · 그 배우자 ⑪형제자매의 자녀 · 그 배우자 ⑫기타 친인척 ⑬기타 동거인	①가구주 ②가구주의 배우자 ③자녀 ④자녀의 배우자 ⑤가구주의 부모 ⑥배우자의 부모 ⑦손자녀 · 그 배우자 ⑧증손자녀 · 그 배우자 ⑨조부모 ⑩형제자매 · 그 배우자 ⑪형제자매의 자녀 · 그 배우자 ⑫기타 친인척 ⑬기타 동거인	①가구주 ②가구주의 배우자 ③자녀 ④자녀의 배우자 ⑤가구주의 부모 ⑥배우자의 부모 ⑦손자녀 · 그 배우자 ⑧증손자녀 · 그 배우자 ⑨조부모 ⑩형제자매 · 그 배우자 ⑪형제자매의 자녀 · 그 배우자 ⑫기타 친인척 ⑬기타 동거인
4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남 자 ②여 자	①남 자 ②여 자	①남 자 ②여 자	①남 자 ②여 자
5 나이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 세는 나이를 모르실 경우에는 띠로 응답하셔도 됩니다. 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언제입니까?	40 살 소 띠 1961 년 9 월 15 일 ①양력 ②음력	38 살 토끼 띠 1963 년 6 월 8 일 ①양력 ②음력	13 살 용 띠 1988 년 5 월 4 일 ①양력 ②음력	63 살 범 띠 1938 년 8 월 16 일 ①양력 ②음력
6 교육정도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 교육으로 봅니다. · 검정고시 합격은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동은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에 ○표 합니다.	①안 받았음 (미취학 포함) ②초등학교 → ①졸업 ②재학 ③수료 ④휴학 ⑤중퇴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 (4년제 미만) ⑥대학교 (4년제 이상) ⑦대학원 석사 과정 ⑧대학원 박사 과정	①안 받았음 (미취학 포함) ②초등학교 → ①졸업 ②재학 ③수료 ④휴학 ⑤중퇴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 (4년제 미만) ⑥대학교 (4년제 이상) ⑦대학원 석사 과정 ⑧대학원 박사 과정	①안 받았음 (미취학 포함) ②초등학교 → ①졸업 ②재학 ③수료 ④휴학 ⑤중퇴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 (4년제 미만) ⑥대학교 (4년제 이상) ⑦대학원 석사 과정 ⑧대학원 박사 과정	①안 받았음 (미취학 포함) ②초등학교 → ①졸업 ②재학 ③수료 ④휴학 ⑤중퇴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 (4년제 미만) ⑥대학교 (4년제 이상) ⑦대학원 석사 과정 ⑧대학원 박사 과정
7 전공분야	(대학 이상 졸업 · 수료인 경우만 기입합니다) 최종 졸업 또는 수료한 학교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어문학 계열 ⑧가정학 계열 ②인문학 계열 ⑨의학 계열 ③사회 계열 ⑩약학 계열 ④이학 계열 ⑪예술학 계열 ⑤공학 계열 ⑫체육학 계열 ⑥농림학 계열 ⑬사범 계열 ⑦수산해양학 계열	①어문학 계열 ⑧가정학 계열 ②인문학 계열 ⑨의학 계열 ③사회 계열 ⑩약학 계열 ④이학 계열 ⑪예술학 계열 ⑤공학 계열 ⑫체육학 계열 ⑥농림학 계열 ⑬사범 계열 ⑦수산해양학 계열	①어문학 계열 ⑧가정학 계열 ②인문학 계열 ⑨의학 계열 ③사회 계열 ⑩약학 계열 ④이학 계열 ⑪예술학 계열 ⑤공학 계열 ⑫체육학 계열 ⑥농림학 계열 ⑬사범 계열 ⑦수산해양학 계열	①어문학 계열 ⑧가정학 계열 ②인문학 계열 ⑨의학 계열 ③사회 계열 ⑩약학 계열 ④이학 계열 ⑪예술학 계열 ⑤공학 계열 ⑫체육학 계열 ⑥농림학 계열 ⑬사범 계열 ⑦수산해양학 계열
8 아동보육상태	(세는 나이 1세~초등학교 아동까지만 기입합니다) 이 아이는 지난 일 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5시)에 누가(어느 곳에서) 돌보았습니까? · 초등학생은 방과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곳 2개만 ○표 합니다.	①자녀의 부모 ②조부모 (친가 · 외가) ③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파출부, 가정부, 이웃 사람 ⑤유치원 ⑥어린이집 및 기타 보육 시설 ⑦놀이방 ⑧학원(예 · 체능 포함) ⑨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⑩기타 ( )	①자녀의 부모 ②조부모 (친가 · 외가) ③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파출부, 가정부, 이웃 사람 ⑤유치원 ⑥어린이집 및 기타 보육 시설 ⑦놀이방 ⑧학원(예 · 체능 포함) ⑨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⑩기타 ( )	①자녀의 부모 ②조부모 (친가 · 외가) ③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파출부, 가정부, 이웃 사람 ⑤유치원 ⑥어린이집 및 기타 보육 시설 ⑦놀이방 ⑧학원(예 · 체능 포함) ⑨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⑩기타 ( )	①자녀의 부모 ②조부모 (친가 · 외가) ③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파출부, 가정부, 이웃 사람 ⑤유치원 ⑥어린이집 및 기타 보육 시설 ⑦놀이방 ⑧학원(예 · 체능 포함) ⑨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⑩기타 ( )

■ 이 댁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조사해야 합니다.
- 2000. 11.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11. 1일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망한 사람은 포함됩니다.

- 타지에 공부하러 나가있는 자녀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고 가구원으로 응답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

■ 가구주부터 작성하되,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는 그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가구주로 봅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도의상 가구주로 하여 먼저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생활능력이 있는 의사결정권자를가구주로 먼저 기입
- 남남끼리 살고 있는 경우 가구원 전원이 동거인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 중 한 사람을 대표로 하여 가구주를 선정하여 먼저 기입하고 나머지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

1 성명은 자녀의 경우도 성과 이름을 모두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 성씨에 대한 한자는 조사표 뒷면을 참고합니다.

- 자녀의 경우 아버지와 성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성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입양, 재혼 등의 사유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하여 기입
-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성명 기입을 기피하는 가구가 더러 있는 바, 이 항목은 전산 입력되지 않고 단순히 차후 조사착오나 내용검토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게 됨을 이해시켜 조사토록 함.
- 성명이 없는 갓난 아이는 "김○○", "김아기"등으로 기입

2 본관은 가구원별로 기입합니다. 고향이나 출생지가 아닌 '본관(本貫)'을 조사합니다.

- 성씨 및 본관에 대한 부호는「각종 분류 부호집」을 참고하여 ▭ 안에 성씨 및 본관부호를 적색으로 기입합니다(성씨 3자리, 본관 3자리).
- 본관 중 같은 음이라도 한자가 다른 경우는 한자로 기입합니다 : 예, ①영산(永山) 김 ②영산(靈山)김
  - 같은 본관이라도 달리 구분해야 하는 경우 : 김해 김, 안동 김, 죽산 안, 신평 송, 연안 송, 원주 이, 남양 홍 등

「각종 분류 부호집」에 수록되지 않은 희귀 성씨나 본관의 경우는 추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조사단계에서 재확인 한 후 특이사항을 함께 기록

3 '⑬기타 동거인'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하숙생, 가사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가구주의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 그 배우자'에는 배우자의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 그 배우자'도 같이 해당

- 가구주를 기준으로 '며느리, 사위'는 '④자녀의 배우자'에 '장인, 장모'는 '⑥배우자의 부모'에 '조카'는 '⑪형제자매의 자녀 · 그배우자'에 분류하며, '삼촌, 이모, 고모,사촌 등'은 '⑫기타친인척'에 해당

가구주와의 관계(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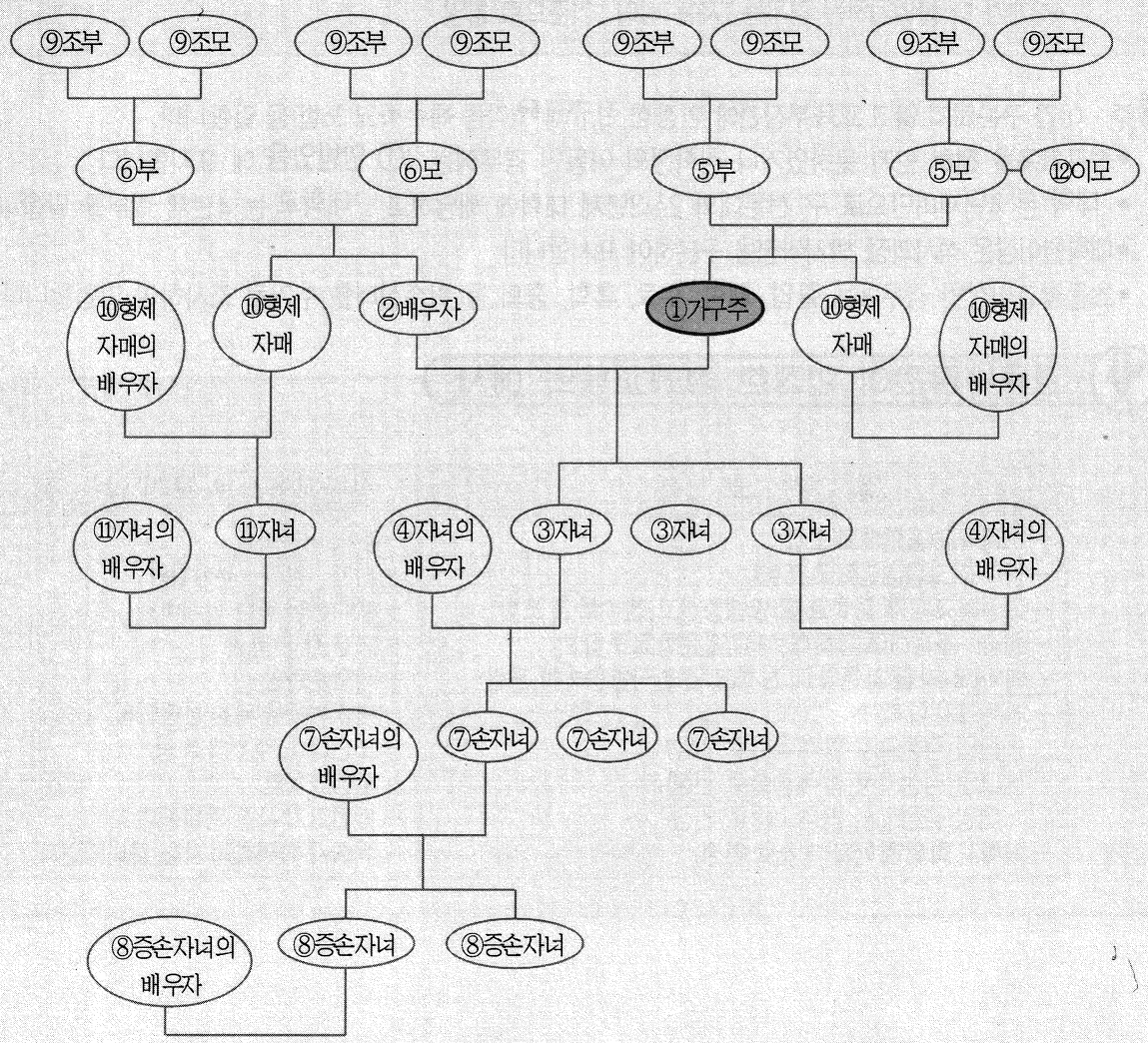

4 이름을 보고 성별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5 주민등록(또는 호적)상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하되, 양력인지 음력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

- 띠, 나이, 출생년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나 「각종 분류 부호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령조견표"**를 참조하여 다시 확인한 후 수정합니다.

- 양음력 구분이 많이 누락되어 정확한 만나이 환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고령자의 경우는 나이를 실제와 크게 다르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세는 나이' '띠' '출생년월'이 불일치할 때
- 이중 2개가 일치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통일
- 3개가 다 불일치하는 경우는 '세는 나이' 기준으로 통일

6 주 · 야간 구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말합니다.

-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취학전의 아동인 경우에는 **'① 안받았음'**에 표시합니다.
- **'대학'**은 4년제미만으로 구 전문대와 2~3년제 대학에 해당하고, **'대학교'**는 4년제 학부를 말합니다.
- 대학원이상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초등학교이상인 경우에는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등 이수상태를 추가로 조사하여 기입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의 예시

정 규 교 육	정규교육으로 보지 않는 것
– 초등학교(공민학교 포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 – 고등학교(구제 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수학교 포함) – 초급 · 전문대(초급대학, 구제 전문학교 포함) – 대학(교)(각급 사관학교, 신학교 및 한국방송대학 포함) – 검정고시 합격자 • 중입 검정고시 합격(국졸로 인정) • 고입 검정고시 합격(중졸로 인정) • 대입 검정고시 합격(고졸로 인정) – 독학사 학위 취득자(대졸로 인정)	– 양재, 미용학원 – 타자 · 경리 · 부기학원 – 재수생을 위한 입시학원 – 기술(정비)학원 – 직업훈련원 –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학원 – 노인대학, 주부대학 등 – 평생교육원 – 검정고시 시험 준비중인 자 – 독학사 학위취득 시험 준비중인자

7 **표 본** 대학(4년제미만 포함)이상의 졸업 · 수료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따라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이거나 대학 재학, 중퇴 및 휴학중인 사람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대학원이상에 재학중인 경우는 직전에 졸업한 학교의 전공분야(대학원 석사과정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③수료'에 해당
※ 교육정도는 실제 보다 높여서 응답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 필요

대학 재학, 중퇴 및 휴학중인 사람은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전공을 여러 개 가진 경우는 가장 나중에 수학한 전공을 기준
- 대학의 복수전공은 주전공만 기입
- 학과명만 알고 계열을 모를 경우는 「전공학과」목록을 참고하여 기입 : 읍 · 면 · 동에 보관

8 **표 본** 주로 돌보는 사람의 관계는 아동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 낮동안 교육 · 보육시설에도 다니고 부모도 돌보는 경우는 보육시설과 부모 2군데에 표시 합니다.
- 특히, 저녁때만 부모가 돌보는데 '①자녀의 부모'와 다른 곳을 동시에 표시하거나, 막연히 심리적으로 '①자녀의 부모'를 포함하여 응답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유치원이나 놀이방의 종일반처럼 대부분의 낮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경우는 보육시설중 하나에만 표시
- 오전반과 같이 보육시설에 서너 시간 갔다와서 대부분의 낮시간을 누군가 돌보고 있다면 보육시설과 돌보는 사람 모두(2개까지)에 표시

		1 번 가 구 원	2 번 가 구 원	3 번 가 구 원	4 번 가 구 원
		이 기 혁 李	최 세 미 崔	이 민 기 李	박 간 난 朴
9 출생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태어날 당시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을 말합니다. 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되는 시·도,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북한일 경우에는 당시의 시·도, 시·군명을,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	①현재 살고 있는 집 ②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③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북한 또는 외국 서울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동대문 시·군·구 11 060	①현재 살고 있는 집 ②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③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북한 또는 외국 경북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포항 시·군·구 37 010	①현재 살고 있는 집 ②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③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북한 또는 외국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시·군·구	①현재 살고 있는 집 ②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③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④북한 또는 외국 황해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해주 시·군·구 40 001
10 1년 전 거주지	1년 전(1999년 11월 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되는 시·도,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	①1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현재 살고 있는 집 ③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북한 또는 외국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시·군·구	①1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현재 살고 있는 집 ③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북한 또는 외국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시·군·구	①1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현재 살고 있는 집 ③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북한 또는 외국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시·군·구	①1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현재 살고 있는 집 ③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북한 또는 외국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시·군·구
11 5년 전 거주지	5년 전(1995년 11월 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되는 시·도,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	①5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현재 살고 있는 집 ③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북한 또는 외국 서울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영등포 시·군·구 11 190	①5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현재 살고 있는 집 ③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북한 또는 외국 서울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영등포 시·군·구 11 190	①5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현재 살고 있는 집 ③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북한 또는 외국 서울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영등포 시·군·구 11 190	①5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현재 살고 있는 집 ③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북한 또는 외국 경기 특별시·광역시·도 (국가명) 부천 시·군·구 31 050
12 컴퓨터 활용상태	평소 컴퓨터(PC)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직장, 학교, PC방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4개월 이상에 1번 사용하는 경우"는 「⑤ 사용하지 않음」에 ○표 합니다.	①매일(주 5일 이상) 사용 ②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사용하지 않음	①매일(주 5일 이상) 사용 ②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사용하지 않음	①매일(주 5일 이상) 사용 ②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사용하지 않음	①매일(주 5일 이상) 사용 ②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사용하지 않음
13 인터넷 활용상태	평소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직장, 학교, PC방 등에서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4개월 이상에 1번 사용하는 경우"는 「⑤ 사용하지 않음」에 ○표 합니다.	①매일(주 5일 이상) 사용 ②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사용하지 않음	①매일(주 5일 이상) 사용 ②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사용하지 않음	①매일(주 5일 이상) 사용 ②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사용하지 않음	①매일(주 5일 이상) 사용 ②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사용하지 않음
14 개인통신 휴대용기기	이동전화기나 무선호출기(삐삐)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동전화기나 무선호출기는 제외합니다.	①이동전화기 (휴대폰 또는 차량 전화) ②무선호출기(삐삐) ③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모두 ④없음	①이동전화기 (휴대폰 또는 차량 전화) ②무선호출기(삐삐) ③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모두 ④없음	①이동전화기 (휴대폰 또는 차량 전화) ②무선호출기(삐삐) ③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모두 ④없음	①이동전화기 (휴대폰 또는 차량 전화) ②무선호출기(삐삐) ③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모두 ④없음

9 출생지는 주민등록 또는 호적과 관계없이 출생 당시 어머니가 주로 살았던 곳을 말합니다.

- '③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나 '④북한 또는 외국'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명칭을 기입하며, 「각종 분류 부호집」을 참조하여 ☐안에 **행정구역부호를 적색으로 기입**합니다(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 국가는 5자리).
-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④북한 또는 외국'에 표시하고, 출생당시의 북한지역 도명과 시·군명을 기입합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④ 북한 또는 외국'에 표시하고, 출생한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

1990년 이후 주요 행정구역 변경일지

시·도	변경일시	변 경 내 용
부 산	95.3.1	경상남도 양산군의 기장읍, 장안읍, 철마면, 일광면,장관면→부산시 기장군
대 구	95.3.1	경북 달성군→대구시 달성군
인 천	95.3.1	경기도의 강화군, 옹진군→인천시로 편입 경기도 김포군검단면→인천시 서구 검단동
울 산	95.1.1	울산시+울주군→울산시
	97.7.15	광역시로 변경,울주군의 농소읍,강동면→북구로 편입
경 기	92.2.1	고양군→고양시로 변경
	95.1.1	남양주군+미금시→남양주시
	95.5.10	송탄시+평택시+평택군→평택시
	96.3.1	용인군→용인시(용인읍), 파주군→파주시(금촌읍), 이천군→이천시(이천읍)로 승격
	98.4.1	안성군→안성시(안성읍), 김포군→김포시(김포읍)로 승격
강 원	95.1.1	춘천시+춘천군→춘천시, 원주시+원주군→원주시 강릉시+명주군→강릉시, 삼척시+삼척군→삼척시
충 북	95.1.1	충주시+중원군→충주시, 제천시+제원군→제천시
충 남	95.1.1	공주시+공주군→공주시, 대천시+보령군→보령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서산시+서산군→서산시
	95.5.10	천안시+천안군→천안시
	96.3.1	논산군→논산시(논산읍)로 승격
전 북	95.1.1	군산시+옥구군→군산시, 정주시+정읍군→정읍시, 남원시+남원군→남원시, 김제시+김제군→김제시
	95.5.10	이리시+익산군→익산시
전 남	95.1.1	순천시+승주군→순천시, 나주시+나주군→나주시 동광양시+광양군→광양시
	98.4.1	여수시+여천시+여천군→여수시
경 북	95.1.1	포항시+영일군→포항시, 경주시+경주군→경주시 김천시+금릉군→김천시, 안동시+안동군→안동시 구미시+선산군→구미시, 영주시+영풍군→영주시 영천시+영천군→영천시, 상주시+상주군→상주시 점촌시+문경군→문경시, 경산시+경산군→경산시
경 남	95.1.1	창원시+창원군(대산,동,북면)→창원시 마산시+창원군(내서,구산,진동,진북,진전)→마산시 진주시+진양군→진주시, 충무시+통영군→통영시 밀양시+밀양군→밀양시, 장승포시+거제군→거제시
	95.5.10	삼천포시+사천군→사천시, 김해시+김해군→김해시
	96.3.1	양산군→양산시(양산읍)로 승격

10 11 **표 본** 1년전 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의 작성에서 부호기입이나 행정구역명 작성은 **"출생지" 항목**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합니다.

- 1년전(1999. 11. 1기준) 또는 5년전(1995. 11. 1 기준)에 현역으로 군복무중에 있었던 가구원은 가족의 1년 전 또는 5년전 거주지와 동일한 행정구역명을 기입합니다.
- **같은 가구원이라고 1년전 또는 5년전 거주지**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조사하는 사례가 있으나 가구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④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나 '⑤북한 또는 외국'에 해당하면 「각종 분류 부호집」을 참조하여 ☐☐☐☐☐ 에 **행정구역부호를 적색으로 기입**합니다(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 국가는 5자리).

1999년 1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① 1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에 표시

※ 1995년 1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에 표시

《행정구역명의 기입요령》

· 행정구역 개편으로 출생당시(1년전, 5년전)의 행정구역명이 현재와 다른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북한의 경우는 출생당시 행정구역으로 응답)

– '경기도 고양군' 출생자는 '경기도 고양시'에 해당

–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칭은 달라졌으나 출생지(1년전 거주지, 5년전거주지)가 실제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표시합니다.

일반시에 있는 구(시·군·구의 구에 해당 안됨)

※경기 수원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고양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마산시

사례(출생지, 1년전거주지, 5년전거주지)

- 현재 이 집에서 태어나 계속 살고 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경북 선산군 선산읍'에서 '경북 구미시 선산읍'으로 바뀐 경우에는 '①현재 살고 있는 집'에 표시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사는 주부가 안양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생하였다고 출생지를 안양시로 기입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머니의 상주지인 의왕시(포일동)로 기입해야 함
- 1997년에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 살았던 주부가 당시 친정집인 인천에서 첫딸(한아름)을 출산한 경우 딸의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 **서울시 노원구(상계동)**
  (해설) 어머니의 상주지인 도봉구 상계동이 출생지가 되나,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도봉구 상계동이 노원구 상계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출생지는 노원구(상계동)로 조사해야 함
- 현재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1990년에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지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집'에 표시**
  (해설) 현재의 고양시는 시로 승격하기 전에 고양군이었으므로 같은 시·군·구내로 간주하여 조사
- 상당수의 응답자가 시군구명을 모른채 읍·면·동명만 알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각종 분류 부호집」을 참고하여 조사해야 함
- 김팔용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생활을 하다가 1999. 12. 5일자로 제대했다면 1년전 거주지는 어디인가?
  ☞ 1년전인 1999. 11. 1일 김팔용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1년전 거주지가 됨
- 같은 가구원이라고 5년전 거주지를 무작정 동일하게 조사하는 사례가 있으나 가구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12 13 **표 본** 사용여부는 숙련도나 용도와는 관계없으며, 작동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부모가 아동용 교육프로그램을 틀어주고 아동이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부모나 아동 둘 다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 게임만 하는 경우에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14 **표 본** 부부가 1대의 핸드폰을 공동으로 사용(예, 주중에는 부인, 주말에는 남편)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사람만 '보유하고 있음'에 표시 합니다.

이동전화는 셀룰러와 PCS폰이 포함

	1 번 가 구 원	2 번 가 구 원	3 번 가 구 원	4 번 가 구 원
	이 기 혁 李	최 세 미 崔	이 민 기 李	박 간 난 朴

세는 나이 13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1 번 가 구 원	2 번 가 구 원	3 번 가 구 원	4 번 가 구 원
15	통근·통학 여부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①통근함 ②통학함 ③안 함 ➡ 19번으로 감	①통근함 ②통학함 ③안 함 ➡ 19번으로 감	①통근함 ②통학함 ③안 함 ➡ 19번으로 감	①통근함 ②통학함 ③안 함 ➡ 19번으로 감
16	통근·통학 장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③다른 시·군·구 경기 특별시·광역시·도 안양 시·군·구 3 1 1 4 0	①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③다른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①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③다른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①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③다른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17	이용 교통수단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 수단 2개에만 ○표 합니다.** ·「① 도보로만」은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도보로만 ②시내·좌석·마을버스 ③기타 버스(통근·통학 버스 등) ④고속·시외버스 ⑤전철·지하철 ⑥기차(지역 간 열차) ⑦승용차(개인 승합차 포함) ⑧택시 ⑨자전거 ⑩기타 (오토바이, 트럭 등)	①도보로만 ②시내·좌석·마을버스 ③기타 버스(통근·통학 버스 등) ④고속·시외버스 ⑤전철·지하철 ⑥기차(지역 간 열차) ⑦승용차(개인 승합차 포함) ⑧택시 ⑨자전거 ⑩기타 (오토바이, 트럭 등)	①도보로만 ②시내·좌석·마을버스 ③기타 버스(통근·통학 버스 등) ④고속·시외버스 ⑤전철·지하철 ⑥기차(지역 간 열차) ⑦승용차(개인 승합차 포함) ⑧택시 ⑨자전거 ⑩기타 (오토바이, 트럭 등)	①도보로만 ②시내·좌석·마을버스 ③기타 버스(통근·통학 버스 등) ④고속·시외버스 ⑤전철·지하철 ⑥기차(지역 간 열차) ⑦승용차(개인 승합차 포함) ⑧택시 ⑨자전거 ⑩기타 (오토바이, 트럭 등)
18	통근·통학 소요시간	**평소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하는데 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①오전 8 시 0 0 분 ②오후 시 분 시간 5 0 분	①오전 8 시 2 0 분 ②오후 시 분 시간 3 0 분	①오전 8 시 2 0 분 ②오후 시 분 시간 1 0 분	①오전 시 분 ②오후 시 분 시간 분

세는 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1 번 가 구 원	2 번 가 구 원	3 번 가 구 원	4 번 가 구 원
19	경제활동 상태	**지난 일 주일(2000년 10월 22일~10월28일) 동안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수입있는 일에는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돕거나 부업, 아르바이트 등 조금이라도(1시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한 것도 포함됩니다. **수입있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면 지난 달(10월)에 수입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 보았습니까?** ·「② 찾아 보았음」은 원서 제출, 취직 시험 응시, 전화 취업 상담, 직업소개소 등록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①있음 → 20번으로 감 ②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③없음 (가사, 학업 등)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번으로 감 ② 찾아보았음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 할 수 없었음 → 24번으로 감	①있음 → 20번으로 감 ②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③없음 (가사, 학업 등)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번으로 감 ② 찾아보았음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 할 수 없었음 → 24번으로 감	①있음 → 20번으로 감 ②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③없음 (가사, 학업 등)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번으로 감 ② 찾아보았음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 할 수 없었음 → 24번으로 감	①있음 → 20번으로 감 ②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③없음 (가사, 학업 등)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번으로 감 ② 찾아보았음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 할 수 없었음 → 24번으로 감
20	종사상의 지위	**수입이 있는 일에 어떠한 형태로 종사하였습니까?** · "자유직업인"은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해당됩니다.	①임금·봉급 근로자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무급 가족 종사자	①임금·봉급 근로자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무급 가족 종사자	①임금·봉급 근로자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무급 가족 종사자	①임금·봉급 근로자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무급 가족 종사자

15 **표 본** 살고 있는 거처 이외의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등을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에만 '①통근함' 또는 '②통학함'에 해당됩니다.

- 입시, 기술 등 각종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통학으로 봅니다.
- 논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①통근함'에 해당됩니다. 단, 집 울타리내의 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③안함'에 해당됩니다.
- 택시, 개인용달 운전사인 경우 차고지가 자기집이면 '③안함'에 해당됩니다.

13세부터 기입함에 주의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거처)내의 사업장(가게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③ 안함'에 해당
- '③ 안함'에 해당하면 "통근 · 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 · 통학 소요시간" 항목은 작성하지 않음

16 **표 본** 통근 · 통학장소가 '③다른 시 · 군 · 구'인 경우에는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기입합니다.

- 행상 등 근무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지난 1주일간 주로 활동을 한 지역을 선정하여 통근지로 기입합니다.
- '③다른 시 · 군 · 구'에 해당하면 「각종분류부호집」을 참조하여 ☐안에 **행정구역부호를 적색으로** 기입합니다.

통근 · 통학장소가 현재의 거주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예, 2개 시 · 도를 거쳐 통근 · 학하는 경우) 다시 질문

집 → 학원 →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는 최종 도착지가 통근장소가 되며 소요시간은 이동한 시간만을 계산

17 **표 본**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수단 2개에만 표시합니다.

'①도보로만'일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에 표시되어서는 안됨

18 **표 본** 평소 집에서 직장(일터 · 근무지) 또는 학교 · 학원으로 출발하는 시각을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몇 시 몇 분으로 기입합니다.

– 정기적인 2~3교대 근무자일 경우에는 2000년 11월 1일 출근시간을 기입합니다.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일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출발하였던 시각을 기입

- 소요시간이 불규칙적일 경우에는 평균적인 소요시간을 기입
- 통근 · 통학장소와 소요시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질문
  - 통근 · 통학 장소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이 너무 적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 통근 · 통학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데도 소요시간이 너무 많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사례(통근 · 통학)

- 학교내의 기숙사시설에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③ 안함'에 해당
-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의 승무원은 해당 사무실이 통근장소가 됨
- 평소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출장으로 지난 일 주일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였을 때 통근장소는 어디로 조사하는가?
  ☞출장전의 평상시 근무하고 있던 장소를 통근장소로 조사
- 농촌에서 운행되는 군내버스는 무엇으로 작성하는가?
  ☞시내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간주하여 '시내버스'로 분류
-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승용차로 통근할때 이용교통수단을무엇으로 기입하는가?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승용차'로 조사

19 **표 본** '③없음(가사, 학업 등)'은 가사일이나 학교(학원)에 다니는 경우로 수입있는 일을 한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말에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수입있는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가족의 수입있는 일(가게, 식당, 농사일 등)을 도운 경우도 수입있는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 '③없음'에 해당되면 지난주에 일자리를 찾아보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일거리를 찾아보았음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등록, 면담 또는 전화상담, 광고게재, 구인광고란을 찾아 봄,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노동관련기관에 일자리 알선의뢰, 일자리를 찾아 사업장 · 농장 · 건설공사장 등을 방문, 친구 · 친지에게 부탁 등

일시적으로 아팠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폭우등) 구해보지 못했더라도 '① 찾아보지 않았음'에 해당

• 구직활동이 '②찾아 보았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일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물어 보아야 합니다.

20 **표 본** "경제활동상태"항목의 '①'이나 '②'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업 또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지위(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입합니다.

종사상 지위

- '① 임금 · 봉급 근로자'는 일정한 직장(국가나 공공단체, 민간업체,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그 대가로 봉급, 급료, 임금 또는 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해당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해당 : 일정하게 어느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 또는 수수료를 받는 사람도 포함
-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급료를 주는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
- '④ 무급 가족 종사자'는 보수없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한 사람이 해당 : 단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① 임금 · 봉급 근로자'에 해당

사례(경제활동)

- 노름이나 매춘 등은 수입있는 일을 한 것으로 보는가?
  ☞불법적인 활동은 비록 수입이 있더라도 수입있는 일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예)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도박, 매춘 등),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경마 · 경륜 · 증권 · 선물 · 부동산 등 투자활동
- 사업으로 적자를 본 경우에도 수입있는 일을 한 것으로 봄
- 별도로 거주하는 딸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와 보수는 아니더라도 용돈을 받고 도와 주는 경우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수입있는 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모녀간에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무조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면 안됨
-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소속되어 기본급과 실적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 및 봉급근로자로, 보험대리점이나 영업소 등 독립적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영자 또는 사업주로 분류
- 행상이나 노점상 등은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분류
-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 등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분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①임금 · 봉급 근로자'로 분류하나, 원료자체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가내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가내수공업으로 보아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분류
- 외판원은 회사에서 봉급을(일부나마) 받는 경우는 '①임금 · 봉급 근로자'로 분류하나, 봉급을 전혀 받지 않고 실적급을 받는 경우는 자영자로 분류
- 승려, 목사, 신부 등 성직자는 '①임금 · 봉급 근로자'로 분류
- 가정에서 하숙을 치는 사람은 자영자로 분류

	1 번 가 구 원	2 번 가 구 원	3 번 가 구 원	4 번 가 구 원
	이 기 혁 李	최 세 미 崔	이 민 기 李	박 간 난 朴
21 산업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 장소를 기입합니다. **그 직장(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왼쪽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직장 · 사업체 이름: △△공업고등학교 주된 사업 내용: 고등학생 교육	직장 · 사업체 이름: ○○음악사 주된 사업 내용: 음반 및 음악 CD소매	직장 · 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 내용:	직장 · 사업체 이름: 주된 사업 내용:
22 직업 **일하는 곳의 부서 및 직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 부서 및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부서 및 직책: 교 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건축과목 지도	부서 및 직책: 매장에서 종업원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음악테이프 및 CD판매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부서 및 직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23 근무연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얼마 동안이나 하였습니까?**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위의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서 응답한 일을 말합니다. · 직장이나 사업체를 옮겼더라도 같은 일이면 포함됩니다.	① 6개월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⑧ 20년 이상	① 6개월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⑧ 20년 이상	① 6개월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⑧ 20년 이상	① 6개월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⑧ 20년 이상
24 혼인상태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상태에 ○표 합니다.	① 미 혼 ③ 사 별 ② 배우자 있음 ④ 이 혼	① 미 혼 ③ 사 별 ② 배우자 있음 ④ 이 혼	① 미 혼 ③ 사 별 ② 배우자 있음 ④ 이 혼	① 미 혼 ③ 사 별 ② 배우자 있음 ④ 이 혼
25 총출생아수 **(기혼 여성만 기입합니다) 지금까지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결혼한 자녀, 외지에 사는 자녀, 사망한 자녀도 모두 포함하며 입양한 자녀는 제외합니다.	딸 □□ 명 아들 □□ 명 계 □□ 명	딸 1 명 아들 1 명 계 2 명	딸 □□ 명 아들 □□ 명 계 □□ 명	딸 2 명 아들 3 명 계 5 명

세는 나이 61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26 자거주장녀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 ② 같은 읍 · 면 · 동 내 다른 집 ③ 같은 시 · 군 · 구 내 다른 읍 · 면 · 동 ④ 같은 시 · 도 내 다른 시 · 군 · 구 ⑤ 다른 시 · 도 ⑥ 해외 ⑦ 자녀 없음	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 ② 같은 읍 · 면 · 동 내 다른 집 ③ 같은 시 · 군 · 구 내 다른 읍 · 면 · 동 ④ 같은 시 · 도 내 다른 시 · 군 · 구 ⑤ 다른 시 · 도 ⑥ 해외 ⑦ 자녀 없음	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 ② 같은 읍 · 면 · 동 내 다른 집 ③ 같은 시 · 군 · 구 내 다른 읍 · 면 · 동 ④ 같은 시 · 도 내 다른 시 · 군 · 구 ⑤ 다른 시 · 도 ⑥ 해외 ⑦ 자녀 없음	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 ② 같은 읍 · 면 · 동 내 다른 집 ③ 같은 시 · 군 · 구 내 다른 읍 · 면 · 동 ④ 같은 시 · 도 내 다른 시 · 군 · 구 ⑤ 다른 시 · 도 ⑥ 해외 ⑦ 자녀 없음
27 생수계단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 · 단체로 부터 일부 지원 받아 생활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 · 단체로 부터 전부 지원 받아 생활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 · 단체로 부터 일부 지원 받아 생활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 · 단체로 부터 전부 지원 받아 생활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 · 단체로 부터 일부 지원 받아 생활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 · 단체로 부터 전부 지원 받아 생활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 · 단체로 부터 일부 지원 받아 생활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 · 단체로 부터 전부 지원 받아 생활
28 주부양자 **다른 사람이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그 사람(단체)은 누구이며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여러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경우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단체)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장남, 며느리 ② 그 외의 아들, 며느리 ③ 딸, 사위 ④ 기타 친척 ⑤ 정부, 사회단체 ⑥ 기타 ( )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① 장남, 며느리 ② 그 외의 아들, 며느리 ③ 딸, 사위 ④ 기타 친척 ⑤ 정부, 사회단체 ⑥ 기타 ( )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① 장남, 며느리 ② 그 외의 아들, 며느리 ③ 딸, 사위 ④ 기타 친척 ⑤ 정부, 사회단체 ⑥ 기타 ( )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① 장남, 며느리 ② 그 외의 아들, 며느리 ③ 딸, 사위 ④ 기타 친척 ⑤ 정부, 사회단체 ⑥ 기타 ( )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9 거동불편부여 **집안 활동(식사, 목욕, 화장실 출입 등)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바깥 출입(산책, 시장 또는 병원 가기 등)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① 혼자 할 수 있음 ② 혼자 할 수 없음 ① 혼자 할 수 있음 ② 혼자 할 수 없음	① 혼자 할 수 있음 ② 혼자 할 수 없음 ① 혼자 할 수 있음 ② 혼자 할 수 없음	① 혼자 할 수 있음 ② 혼자 할 수 없음 ① 혼자 할 수 있음 ② 혼자 할 수 없음	① 혼자 할 수 있음 ② 혼자 할 수 없음 ① 혼자 할 수 있음 ② 혼자 할 수 없음

21 (표 본)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사업체)명과 이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입합니다.

- **'직장 · 사업체이름'**에서 상호가 없이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기입합니다.

※ 사업체명은 생략해서 쓰지 말고 반드시 정식명칭을 써야 합니다.

- **'주된 사업내용'**은 조사 대상자가 속한 사업체가 어떤 일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 '사용된 원료', '생산시설', '생산공정', '산출물(재화 및 서비스)의 명칭이나 종류' 등을 자세하게 씁니다.

※ 95~98쪽 참고

"산업"은 조사대상자가 속한 사업체가 하는 일을 기입합니다.

22 (표 본) 조사대상자가 일하고 있었던 부서 및 직책과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일의 내용 또는 담당했던 업무가 무엇인지를 기입 합니다.

- **'부서'**는 부, 국, 과, 계, 반, 팀명을 기입하고, **'직책'**에는 사장, 전무, 부장, 사원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사무, 장사, 공무원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입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 99~100쪽 참고

"직업"은 조사대상자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직책'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기입합니다.

23 (표 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얼마 동안 해오고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 직장이나 사업체를 옮겼더라도 같은 종류의 일이면 그 이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한 기간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사례(현직업 근무연수)

- 김익선씨는 △△건설에서 도장일을 10년간 해오다가 현재는 태인건설에서 도장(페인트칠) 일을 2년간 해오고 있다면 '⑥ 10년이상~15년미만'에 표시

24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현재의 혼인상태를 기입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인 사람도 '배우자 있음'에 표시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도 이혼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유배우로 조사하거나 학생이라고 무조건 미혼으로 간주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이혼으로 봄
- 배우자가 2명인 경우도 모두 유배우로 봄

25 **표 본** 지금까지 직접 낳은 자녀로서, 결혼한 자녀 · 외지에 사는 자녀 ·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특히 사망한 자녀인 경우는 누락되지 않도록 사망자녀를 포함한 출생아수를 질문 하도록 유의합니다.
-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성의 출산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니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

- '딸, 아들, 계' 란을 모두 따로따로 질문하지 않고 3개중 2개 문항만 질문하여 나머지를 계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됨

☞3개 문항을 따로 물어 보는 이유는 허위응답이나 착오응답을 자연스럽게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반드시 계와 아들 및 딸의 수를 따로 물어 일치여부를 확인하면서 조사해야 함

26 **표 본**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혼인상태와는 관계없이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기입합니다.

미혼인 차녀와 살고 있으면서도, 결혼하여 분가해 살고 있는 장남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함께 살고있는 차녀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함

27 **표 본**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경우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연금이나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에 해당

28 **표 본** 불편하기는 해도 주위의 도움없이 할 수 있다면 '①혼자 할 수 있음'에 해당합니다.

② 가구에 관한 사항

1. 가구 구분 **이 댁은 아래의 ① ~ ⑩항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③ 혼자서 살림하는 1인 가구
④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⑥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⑦ 보육원 등 아동 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⑧ 양로원 등 노인 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⑨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⑩ 기타 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 14번으로 감

2. 거주 기간 **이 집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4) 3년 ~ 5년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⑧ 20년 ~ 25년 미만
⑨ 25년 이상

3. 사용 방 수 **이 댁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은 각각 몇 개입니까?**

·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1.8m, 넓이는 1평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는 식당이 벽 또는 문 등으로 거실과 차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사용 방 수 [3] 개
● 거실(대청마루) 수 [1] 개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0] 개

4. 주거 시설 형태 **이 댁의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부 엌 은 (1) 입식 / ② 재래식 / ③ 없음 이며 (1) 단독 사용 / ② 공동 사용
● 화 장 실 은 (1) 수세식 / ② 재래식 / ③ 없음 이며 (1) 단독 사용 / ② 공동 사용
● 목욕 시설은 (1) 온수 시설 / ② 비온수 시설 / ③ 없음 이며 (1) 단독 사용 / ② 공동 사용

5. 취사 연료 **취사 연료로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 2개 이상인 경우는 주된 것 하나만 ○표 합니다.

(1) 도시가스
② 유류
③ 프로판가스(LPG)
④ 전기
⑤ 연탄
⑥ 땔감 등 임산 연료
⑦ 기타 ( )

6. 난방 시설 **난방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2개 이상인 경우는 주된 것 하나만 ○표 합니다.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3) 도시가스보일러
④ 기름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⑦ 연탄보일러
⑧ 연탄아궁이
⑨ 재래식 아궁이
⑩ 기타 ( )

7. 상수도 시설 **8. 식수 사용 형태**

이 댁에는 상수도(간이, 자가수도 제외)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또 식수는 주로 어떻게 드십니까?

(1)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 ① 수돗물을 그대로 먹음 / ② 수돗물을 정수해 먹음 / (3) 수돗물을 끓여 먹음 / ④ 약수를 떠서 먹음 / ⑤ 생수를 사서 먹음 / ⑥ 지하수를 이용 / ⑦ 기타 ( )

9. 정보 통신 기기 보유 현황 **이 댁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보유하거나 이용 중인 것을 모두 ○표 합니다.

· 일반 전화기는 보유 회선을, 개인용 컴퓨터는 보유 대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팩스(모사전송기)
② 인터넷 회선(ISDN, ADSL등)
③ 케이블 TV
(4) 지역 유선 방송
⑤ 위성방송수신기
(6) 일반 전화기 [1] 회선
(7) 개인용 컴퓨터(PC) [1] 대

10. 자동차 보유 대수 **이 댁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차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1) 승 용 차 (1)대
② 승 합 차 ( )대
③ 트럭, 기타 ( )대
④ 없음 → 12번으로 감

11. 주차 시설 **주로 주차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주차하는 곳이 다르면 주로 주차하는 2곳에만 ○표 합니다.

① 자가 주차장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 내)
②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
③ 노상 주차장 (주차 구획 된 곳)
(4) 도로변, 골목길 (주차 구획 안 된 곳)
⑤ 공휴지 (공터)
⑥ 기타 ( )

12. 점유 형태 **13. 임차료** **이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 사글세인 경우에는 계약 개월 수와 한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1) 주거 전용
② 영업 겸용
→ ① 자기 집 / (2) 전세(월세 없음)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⑤ 사글세 (개월) / ⑥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전세 · 보증금: 억 [6 0 0 0] 만원
월세 (사글세): [ ] 만원

14. 거처의 종류 **15. 단독주택 종류**

이 댁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단독주택일 경우 일반단독 주택입니까, 다가구 주택입니까?

·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각 가구들이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나 가구 거주 단위별로 별도 매매는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 ① 일반 단독주택 / (2) 다가구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상가 · 공장 · 점포 · 여관 등)
⑥ 오피스텔
⑦ 호텔 ·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⑧ 기숙사 및 특수 사회 시설
⑨ 기타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 막사 등)

⑥~⑨에 해당되면 작성을 마칩니다.

1 '①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 3 가구주와의 관계(71쪽)"에서 '⑫기타친인척' '⑬기타동거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 '②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는 " 3 가구주와의 관계(71쪽)에서 '②~⑫'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서 '⑬기타동거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 표 본 가구원들이 전입해 온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오래 살아온 가구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표시합니다.

- 같은 장소에 계속 살았으나 재개발로 일정기간 다른 곳에 가 있었다면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m(6척)이상, 넓이가 1평(3.3㎡)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거실이나 식당도 방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사람이 실제로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시키며, 단순히 물건만 쌓아 둔 경우에는 방으로 보지 않음

- 거실, 식당도 반드시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각각 방으로 봄
  - 거실, 식당, 현대식 부엌이 서로 틔어 있는 경우에는 거실 1개로 간주
  - 식당과 부엌은 하나로 틔어 있으나 거실이 이들과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으면 2개로 간주
  - 거실과 부엌은 하나로 틔어 있으나 식당과는 벽과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으면 2개로 간주
-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

4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형태와 공동사용여부**를 각각 기입합니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은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으면 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

- 부엌 : '①입식'은 조리(취사)시설, 싱크대 등이 현대식(입식) 시설을 갖춘 부엌이 해당되며, '② 재래식'은 싱크대 없이 재래시 아궁이를 갖추고 있는 부엌이 해당
- 화장실 : '①수세식'은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을 말함
- 목욕시설 : 목욕시설은 샤워시설과 장소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온수시설 구비 여부를 조사

5 표 본 가구에서 사용하는 취사연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는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사용하는 것 하나에** 만 기입합니다.

취사용(식사준비용) 연료로서 일년 평균하여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를 물어 기입하되, 취사도구를 바꾸어서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새로운 연료를 기입

사례(취사연료)

- 밥은 전기밥솥으로 하지만 음식, 반찬 등은 프로판가스로 하는 경우는 주된 취사수단인 프로판가스에 표시

6 (표 본) 난방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는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사용하는 것 하나에만 기입합니다.

- **중앙난방**은 공동주택 단지별 중앙집중식 난방을 말하며, **지역난방**은 대규모의 열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일정지역 전체에 걸쳐 난방을 보급하는 방식입니다.

7 (표 본) 간이수도나 자가수도는 상수도로 보지 않습니다.

8 (표 본) 마시는 물(식수)의 형태가 2가지 이상이거나, 가구원별로 다른 경우에는 많이 마시는것 하나에만 표시합니다.

9 (표 본) 보유하거나 이용중인 것을 모두 기입하되, 일반전화기는 회선을 개인용 컴퓨터는 대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 '**케이블TV**'는 종합유선방송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로 제공되는 방송을 말하며, '**지역유선방송**'은 난시청해소 등을 위한 중계유선으로 일부 위성 방송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팩스겸용 전화기인 경우는 팩스와 전화기 모두에 표시

10 (표 본) 목적에 관계없이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승합차는 7인승이상의 승용차를 말합니다.

지프형 승용차는 7인승이상 탑승여부에 따라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분류

11 (표 본) 주·야간 여부에 관계없이 운행하지 않을때 가정에서 주로 주차하는 장소를 기입하되,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이상이며 주차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소 2곳에만 기입합니다.

12 전수 13 표본 조사대상 가구가 살고 있는 거주부분이 '①주거전용'인지 또는 '②영업겸용'인지를 표시합니다. 점유형태가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사글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차료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 '사글세'는 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개월수를 기입하고 **월세는 1달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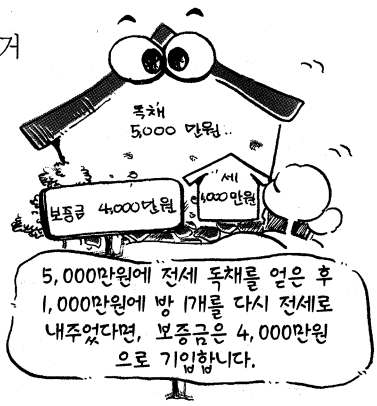

점유형태

- '①자기집' :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
- '②전세(월세 없음)'는 전세금만 내고 세들어 사는 경우로 '전세 · 보증금' 난에만 전세액을 기입합니다.
- '③보증금 있는 월세'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내는 경우로 '전세 · 보증금'과 '월세(사글세)'란에 모두 기입합니다.
- '④보증금 없는 월세'는 보증금 없이 집세(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로 '월세(사글세)'란에만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 '⑤사글세(개월)'는 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⑥무상'은 관사, 사택,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매일 임차료를 내는 「쪽방」은 월세로 환산해 기입

15 단독주택인 경우 일반단독인지 다가구인지 기입해야 합니다(거처에 대한 개념은 42쪽 참조).

❸ 주택에 관한 사항

16. 주인, 대표 가구 여부 **이 댁은 이 집의 주인 또는 대표 가구입니까?**

· 「대표가구」는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독채로 세들어 살고 있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가구를 말합니다.

① 주인가구
② 대표가구
③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동거 가구 → **작성을 마칩니다.**

주택에 관한 사항(17~21)을 계속 작성합니다.

17. 연건평 **이 주택의 연건평(전용면적)은 얼마입니까?**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평형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4][0] 평 (또는 [ ][ ][ ] m²)

18. 대지 면적 **(단독주택만 기입합니다)**
이 주택의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 대지면적은 담장 안의 모든 면적을 포함하되,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3][4] 평 (또는 [ ][ ][ ] m²)

19. 총 방 수 **이 주택에는 침실,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은 모두 몇 개입니까?**

·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1.8m, 넓이는 1평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침실, 거실(대청마루), 식당도 포함합니다.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는 식당이 벽 또는 문 등으로 거실과 차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방 수(침실, 서재 등) [ ][7] 개
● 거실 (대청마루) 수 [ ][3] 개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 ][0] 개

20. 건축연도 **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증축 · 개축 면적이 주택 총면적의 절반이상인 경우에는 증축 · 개축 시기에 ○표 합니다.

① 2000년
② 1999년
③ 1998년
④ 1997년
⑤ 1996년
⑥ 1995년
⑦ 1990 ~ 1994년
⑧ 1985 ~ 1989년
⑨ 1980 ~ 1984년
⑩ 1970 ~ 1979년
⑪ 1960 ~ 1969년
⑫ 1950 ~ 1959년
⑬ 1949년 이전

21. 편익 시설 수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 독립된 출입구에는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됩니다.

● 부엌 수 [ ][3] 개
● 화장실 수 [ ][2] 개
● 독립된 출입구 수 [ ][3] 개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댁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전화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재방문을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 답 자	전 화 번 호
최 세 미	(02) 481 - 2000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 계 청 장

16 주인가구가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세든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그 중 주택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합니다. 주인 또는 대표가구에 해당하면 주택에 관한 사항(**17** ~ **21**)을 계속 조사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주택 정보를 준비조사 기간중에 수집하여 조사표에 연필로 기입하여 가구에 배부하거나 조사 : 가구에서 재확인

- 연건평(전용), 건축연도, 총방수(방수, 거실수, 식당수), 편익시설수(부엌수, 화장실수, 출입구수) 등

17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는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입합니다.

18 대지면적은 단독주택만 기입합니다.

- 담장(울타리)내의 텃밭을 제외한 전 면적을 포함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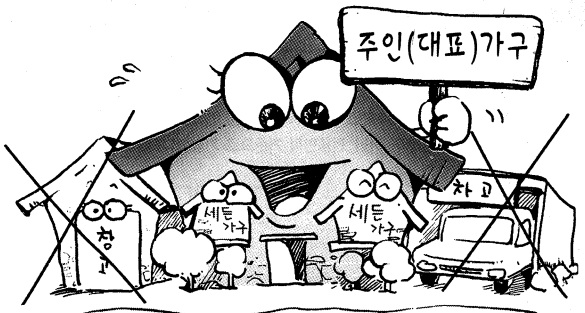

- 연건평, 대지면적은 주인 또는 대표가구만 작성합니다.
-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며, 차고, 창고, 외양간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평 또는 ㎡(평방미터)로 조사하되, ㎡로 조사된 경우는 환산(1평≒3.3㎡)하여 평으로 기입합니다.
- 소숫점이하(25.7평 등)는 반올림을 합니다.

19 주택내에 모든 방수를 조사하며, 주인 또는 대표가구에서는 자신이 사용중인 방은 물론 세든 가구가 사용하는 방수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침실, 거실(대청마루), 식당도 각각 방으로 봅니다.
  ※ 방의 개념은 " **3** 사용방수"와 동일

20 신축시기를 조사하여야 하나 증축 · 개축면적이 주택 총면적(연건평)의 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축 · 개축시기에 표시합니다.

- 여러 차례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증축 시기에 표시합니다.
- 건축연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을 통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기입합니다.

21 이 주택에 설비된 각각의 시설을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총수를 기입합니다.

- 부엌이 거실이나 식당과 구분되지 않아 「총방수」에서 '거실'에 포함됐더라도 이번 항목에서는 다시 부엌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독립된 출입구는 옥외로 직접 접해있는 출입구를 말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대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각호의 현관문을 독립된 출입구로 기입합니다.

※ 구가옥 등 재래식 단독주택은 직접 외부와 접해 있는 출입구만을 독립된 출입구로 봅니다.

■ 누락된 항목이나 착오 조사된 항목에 대하여 재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자 성명과 전화 번호를 기입 합니다.

왜 이 항목은 조사를 합니까?

❶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성명　이름은 조사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나중에 조사항목이 잘못 기입되었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자료처리시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2. 성씨 및 본관　성씨·본관별 인구 및 가구규모의 변화와 성씨·본관의 발생, 성장, 소멸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가구주와의 관계　가족구조(핵가족·대가족, 세대구성 등)와 가구유형(단독가구, 편부모가구 등)은 물론 가족의 생애주기(생성과 소멸 등)가 파악됩니다.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특성을 기초로 장래가구수를 추계하기도 합니다.

4. 성별　남녀간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를 다른 항목과 연계(예, 혼인적령, 생산연령, 노인연령 등 연령대별로 남녀를 구분)하면 더욱 폭 넓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5. 교육정도　국민의 교육수준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의 질적수준 및 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교육수급대책, 교육시설확충 및 교원양성계획 등에도 활용됩니다.

6. 전공분야 (표본)　국민의 지식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산업 및 직업의 연관성, 잠재적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7. 아동보육상태 (표본)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 및 이용실태, 아동보육과 여성의 노동, 노인의 손자녀 보육 부담 등 아동·여성·노인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합니다.

"가족의 생성과 소멸 등
가족유형과 구조를 파악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합니다."

8. 출생지　출생지별 인구규모와 인구의 생애 이동률을 파악합니다. 특히 북한출생지 파악으로 이산가족의 규모와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종합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9. 1년전 거주지 및 5년전 거주지 (표본) 인구이동의 시기 및 흐름의 양과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동자의 인구 · 경제 · 사회적 특성 파악을 통해 도시 · 농촌간 또는 대도시 및 수도권 인구불균형 분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게 됩니다.

"수도권, 대도시 인구이동과 지역별 인구분포를 파악합니다."

10.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상태 (표본)　개인, 가구, 지역 특성별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정보화 수준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잠재적 규모를 파악합니다.

11.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표본)　개인, 가구, 지역별로 국민의 정보통신 활용수준 및 실태를 파악합니다.

12. 통근 · 통학여부, 통근 · 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 · 통학소요시간 (표본)　지역 별 교통 흐름의 방향과 교통량을 시간 및 교통수단별로 파악함으로써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간 인구파악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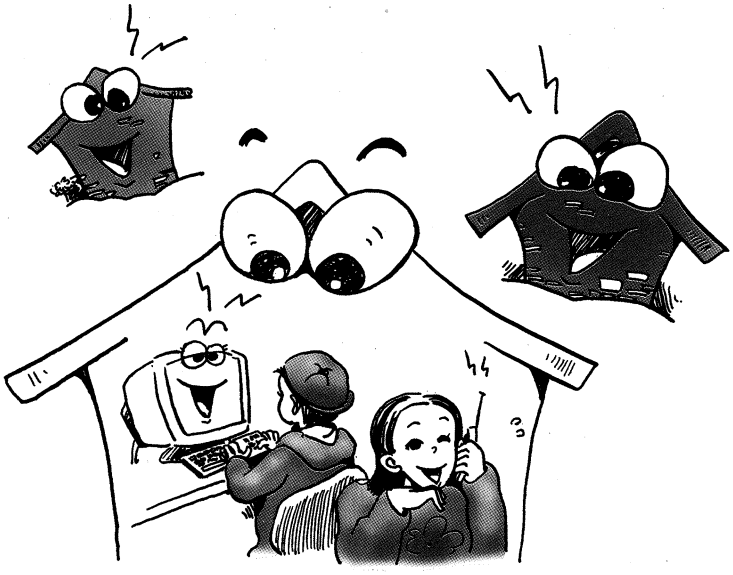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합니다."

13.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표본)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수준 및 일의 종류나 일하는 형태 등 경제활동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4. 현직업 근무연수 (표본)　직업별로 전문성 및 숙련도 축적을 간접 측정함으로써, 노동 · 교육 · 정보화와 연계하여 국민의 지식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15. 혼인상태　혼인연령, 독신율 등의 추계를 통해 가구형성과 해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인구규모의 변동 파악 및 예측에도 널리 활용됩니다.

16. 출생아수 (표본)　국민들의 출생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규모 및 구조분석은 물론 여성의 출산 · 육아부담 실태와 변화추이 등을 파악합니다.

17. 자녀거주장소 (표 본)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자녀의 거주장소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보호실태를 파악합니다.

18. 생계수단 및 주부양자 (표 본) 노인의 경제적인 자립도 분석과 노인연금 등 노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19. 거동불편여부 (표 본) 노인의 생활불편 정도를 파악하여 노인시설 및 인력,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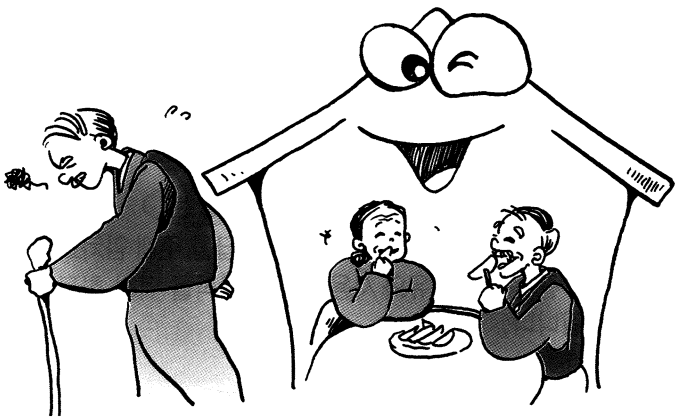

"노인보호, 노인의 경제적인 자립도·건강 등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자료로 사용합니다."

❷ 가구에 관한 사항

1. 가구구분 가구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2. 거주기간 (표 본) 주거의 안정여부를 자가 및 전·월세별로 기간측면에서 파악합니다.

3. 사용방수 가구당 및 가구원당 사용방수를 파악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을 파악합니다.

4. 주거시설형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주거시설의 형태와 사용방법을 가구형태 및 지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주택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5. 취사연료, 난방시설 (표 본) 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와 시설형태를 가구형태 및 지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에너지 수급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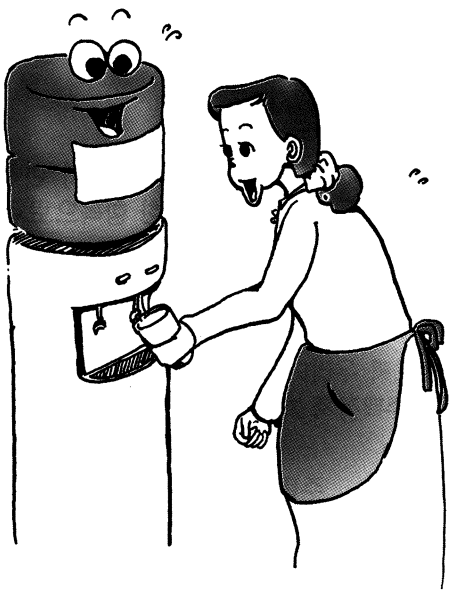

"지역별로 식수의 유형을 파악하여 주택 및 환경정책 자료로 사용합니다."

6. 상수도시설, 식수사용형태 (표 본) 상수도 시설의 보급과 식수원으로서의 상수도 활용실태, 식수의 유형 등을 지역별로 분석합니다.

7.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표 본) 가구의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수요예측과 가구특성별 정보화 수준을 파악합니다.

8. 자동차보유대수, 주차시설 (표 본) 가구당 자동차 보급 및 주차실태를 파악하여 자동차 대중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련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9. 점유형태, (전 수) 임차료 (표 본) 자가 및 전 · 월세 등 주거실태, 주택보급률, 주택 임차료 수준 등 주택보유와 사용에 대한 분석을 위한 항목입니다.

10.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아파트 등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주택건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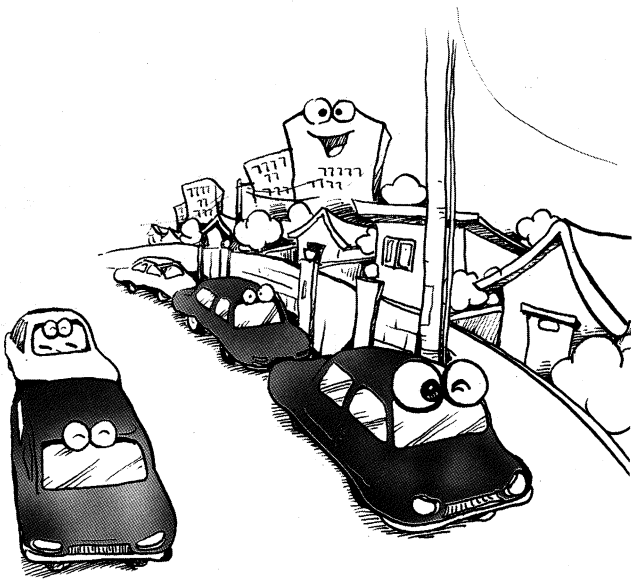

"가구당 자동차 보급 및 주차실태를 파악합니다."

11. 주인, 대표가구여부 주택에 관한 항목을 해당 주택에서 1가구만 조사하기 위해 만든 항목입니다.

❸ 주택에 관한 사항

12. 연건평, 대지면적 건물 및 대지 면적별로 주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주택의 종류 및 지역별로 분석합니다.

13. 총방수 침실과 거실, 식당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택 종류별 구조를 파악하여 주택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14. 건축연도 주택의 건축연도를 파악하여 주택의 질이나 노후정도를 파악하고 재건축, 수리 등 주택건설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게 됩니다.

15. 편익시설수 거주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소유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택 수급예측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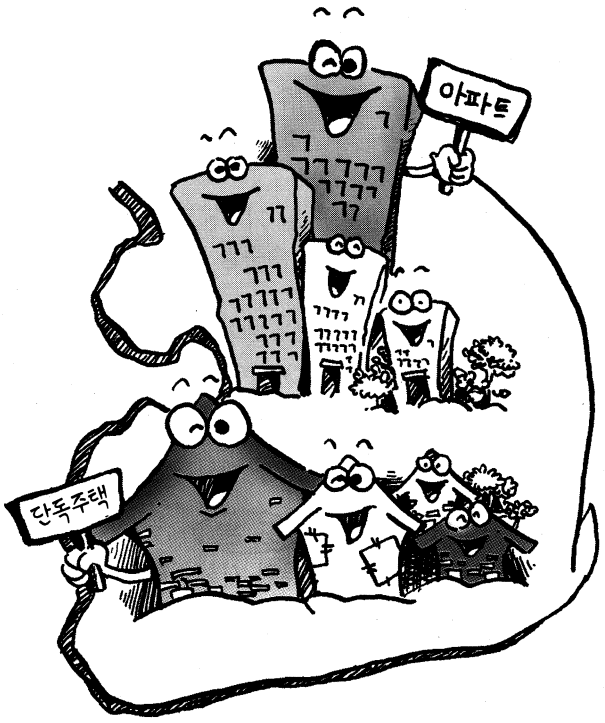

"주택의 종류별 규모 · 구조 · 건축연도 등 다양한 특성을 파악합니다."

16.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조사가 끝난 후 조사표 내용을 검토할 때, 조사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는 등 의문사항이 있을 때 다시 가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문의하기 위한 것이며, 전산으로 조사표를 처리할 때 입력하지 않습니다.

산업 보충 설명

■산업분류 체계

- 대분류(알파벳 문자사용), 중분류(숫자 2자리), 소분류(숫자 3자리), 세분류(숫자 4자리), 세세분류(숫자 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보리를 주로 재배하는 농업사업체인 경우의 산업분류

⇨ 대분류(A : 농업 및 임업), 중분류(01 : 농업), 소분류(011 : 작물 재배업), 세분류(0111 :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세세분류(01110 : 작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 농업만해도 작물재배, 축산, 작물과 축산복합, 조경수 및 농업서비스, 수렵 및 관련서비스의 종류가 있고, 작물재배에도 곡물, 채소 및 화훼, 과실, 시설작물로 다시 구분되므로 **'주된 사업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구분〉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직장(사업체)명 기입요령

-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 회사, 공장 등의 이름을 기입하며, 이때 지점, 영업소, 현장 등의 명칭도 함께 기입합니다.

• ○○건설(주)본사	• △△물산(주) 부산영업소	• △△전자 수원공장
• ○○생명보험 전주지점	• ○○건설(주) △△신도시 공사현장	• ○○은행 △△동 지점

- 상호 없이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기입합니다.

• 나의 논에서	• 건설현장에서	• △△시장에서	• 길거리에서	• ○○지하도에서

■주된 사업내용 기입요령

-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입합니다. 즉 제품을 만드는 곳인지, 상품을 판매(도매, 소매를 구별하여야 함)하는 곳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틀 린 표 기	올 바 른 표 기
• 도매업	문구용품 도매업(펜, 복사지, 노트 등)
• 대리점	부엌가구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TV, 냉장고 등)
• 소매상(소매업)	포목 소매(이불), 채소류 소매(배추, 무 등)
• 건설업	건물 도장 공사업, 아파트 건설업
• 제조업체	목재가구 제조(장농), 아동용 의류생산(여아용 속옷), 학생용 참고서적 출판(국어, 영어 등)

《 기입예시 》

<예시 1> :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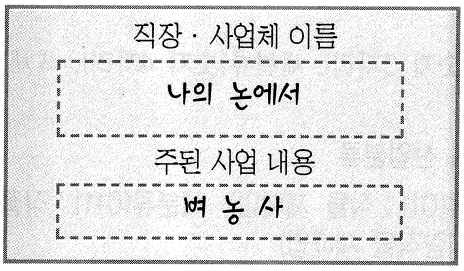

➔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기입

➔ 주로 재배하는 작물의 명칭을 기입
※ 0111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예시 2> :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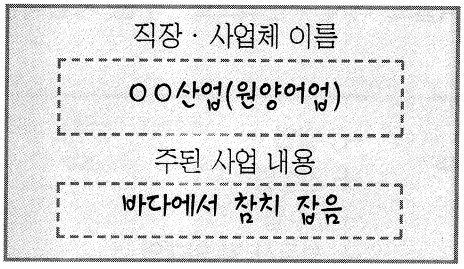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산업분류가 불가능(산업활동의 특성기입 필요)

➔ 정확한 산업분류가 될 수 있도록 설명형으로 기입
(해면, 내수면, 양식 여부를 구분)
※ 0511 : 해면어업

<예시 3> :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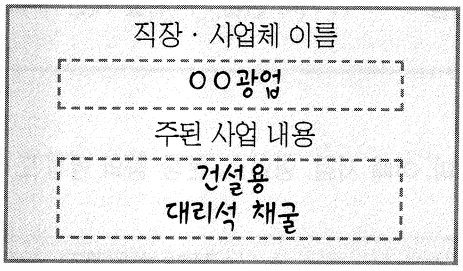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광업임을 판단

➔ 산업활동의 특성 및 생산제품의 용도를 자세히 기입
※ 1212 :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예시 4> :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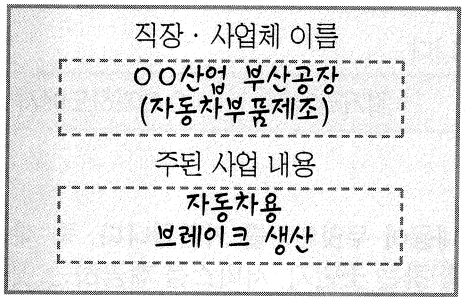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분류가 불가능(산업활동의 특성 기입 필요)

➔ 주로 생산하는 제품명과 원료 및 제품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산업분류판단이 가능하도록 함
※ 3430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예시 5> :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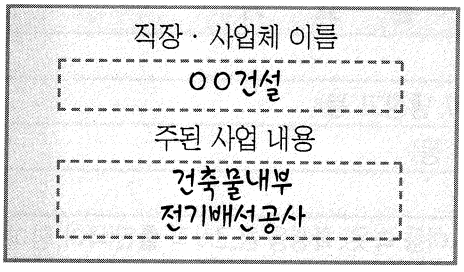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건설업임을 판단가능

➔ 건설대상물및 공사 성격을 자세히 기입
※ 4631 : 전기 공사업

<예시 6> : 도매 및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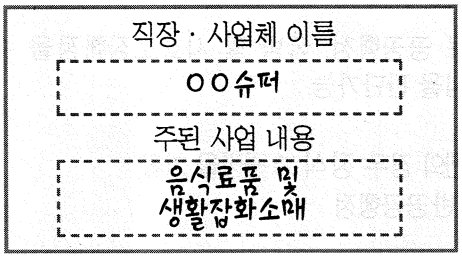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소매업임을 판단가능

➔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와 도매 또는 소매여부를 구분 기입
※ 5212 : 음 ·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예시 7> : 숙박 및 음식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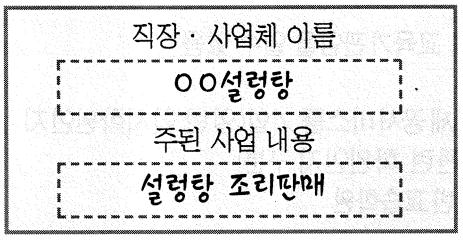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한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임을 판단가능

➔ 주요 제공 음식명을 기입
※ 5521 : 한식점업

<예시 8> : 운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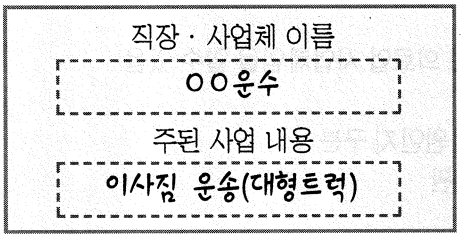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운수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임을 판단가능

➔ 운송대상물 및 운송수단 등을 자세히 기입
※ 6031 : 화물자동차 운송업

<예시 9> : 금융 및 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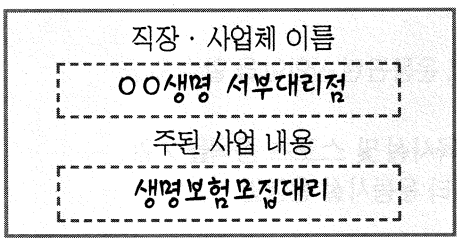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보험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임을 판단가능

➔ 보험업인지 보험모집대리인지 구체적으로 기입
※ 6720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예시 10> : 부동산 및 임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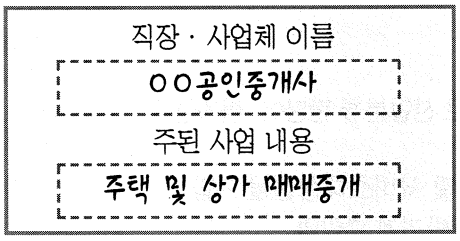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부동산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임을 판단가능

➔ 중개대상물 및 제공서비스를 기입
※ 7022 : 부동산 중개 및 감정업

<예시 1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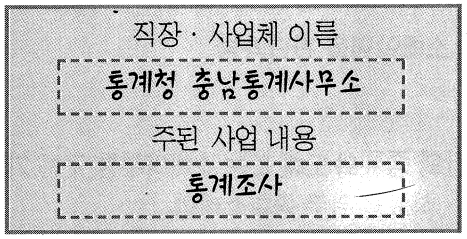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수행하는 사업체임을 판단가능

➡ 공공행정기관의 경우 정식 기관명을 기입
※ 7611 : 일반공공행정

<예시 12> : 교육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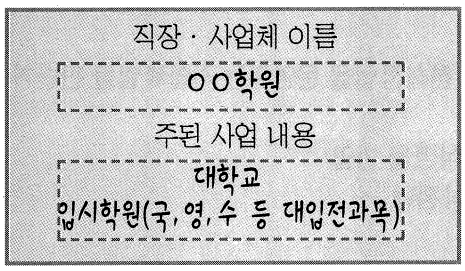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교육기관임을 알수 있음

➡ 교육대상 및 제공서비스를 기입(일반 입시학원인지 사무나 기술관련 학원인지 구분)
※ 8093 : 일반교습학원

<예시 13>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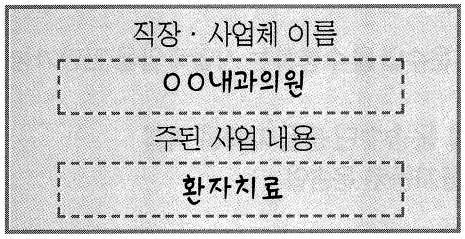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의료업 사업체임을 알수 있음

➡ 병원 또는 의원인지 구분
※ 8512 : 의원

<예시 14>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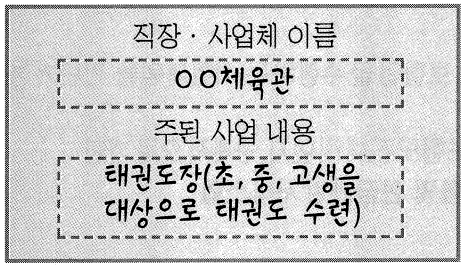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운동관련 산업임을 알수 있음

➡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 종목을 기입
※ 8839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예시 15>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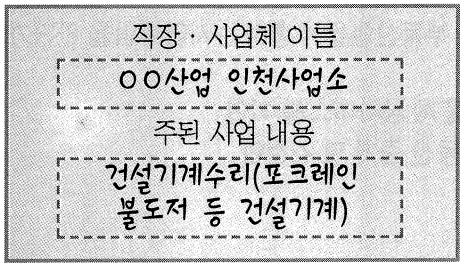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산업분류 판단이 불가능함

➡ 제공서비스 및 서비스대상물을 기입
※ 9211 : 일반기계 수리업

직업 보충 설명

■직업분류 체계

- 산업분류와 마찬가지로 대분류(11개), 중분류(46개), 소분류(162개), 세분류(447개), 세세분류(1,404개)의 5단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체계〉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A. 군인	

■직업항목의 구성

- 직업항목은 '부서 및 직책'과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 **부서 및 직책**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있어 대분류의 기준 및 재차 확인시 필요한 자료 역할을 하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직업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애매모호한 분류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부서 및 직책 기입요령

- 부서는 ○○부, 국, 과, 계, 반, 팀명을 기입하고, 직책에는 사장, 전무, 과장, 계장, 팀장, 공장장, 반장, 공원, 사무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개발부 개발과장	• 경리과 경리계장	• 산업조사부 유통과 조사1계장
• 의류 소매업자	• 의류 판매원	• 자영자(혼자 사업하는 경우)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많은 응답자가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응답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직업이란 말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고 공장이나 회사에서 맡은 일의 내용을 질문합니다.

<주의> 공무원, 회사원, 공원, 사무원, 직원, 상업 등 막연한 직업을 기입해서는 안됨

• 양품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음	• 나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
• 경리사무를 보고있음	• 알루미늄제품을 연마하는 기계를 조작함
• 워드프로세서를 치고 있음	• 제품을 구부리고 펴는 일을 수작업함

- 평소 잘 듣지 못한 직업을 응답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세히 질문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 기입예시 》

<예시1> 연구소에서 연구에 관련된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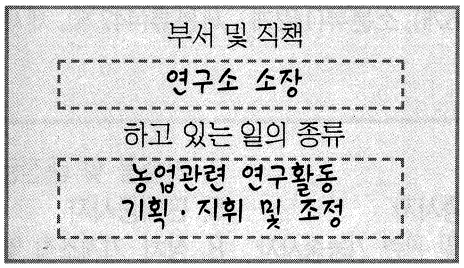

<예시2>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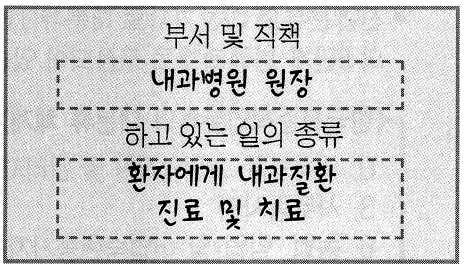

<예시3> 여행사에서 일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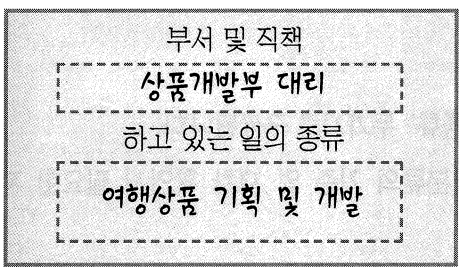

<예시4> 백화점에서 상품대금을 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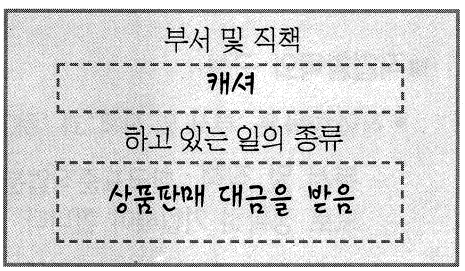

<예시5>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일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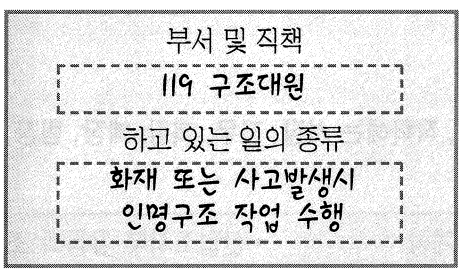

<예시6> 슈퍼마켓을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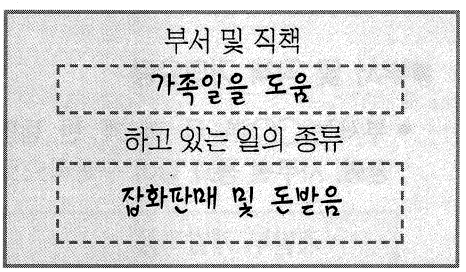

<예시7> 자기 논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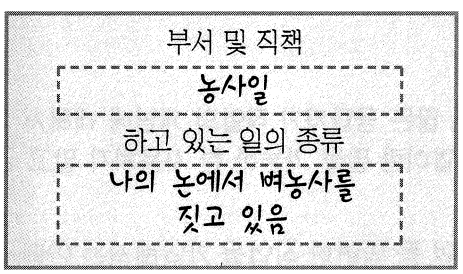

<예시8> 건축장에서 도배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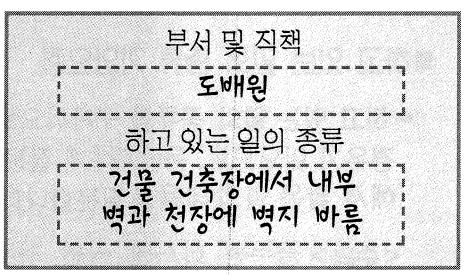

<예시9> 정유회사에서 유류수송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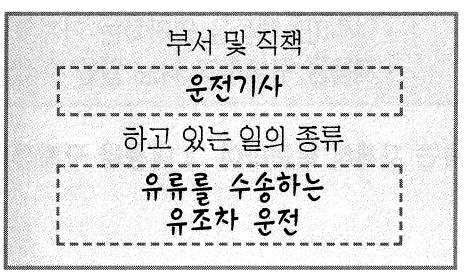

<예시10> 주유소에서 세차일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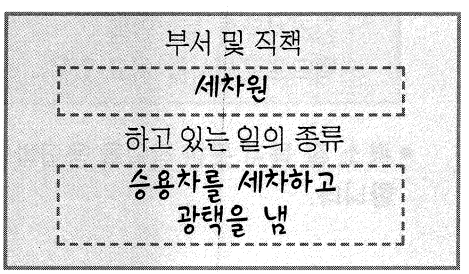

핵 심 사 항

- 외국인은 체류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조사대상이 됩니다.

  ※ 단, 외국의 외교관, 외국 군인 · 군속 및 그 가족과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외국인 조사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배부하여 작성을 의뢰합니다.
  - 조사표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중 **한 가지 언어**로만 기입합니다.

- 외국인(화교 등)이나 외국국적의 교포(중국, 미국 등)들이 비록 우리말을 알더라도 반드시 일반조사표가 아닌 외국인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방법

1. 외국인만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 가구(1인가구 포함)는 외국인에게 「외국인조사표」를 배부하여 본인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부탁합니다.

- 한 집(거처)에 외국인 가구만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외국인 가구가 주인 또는 대표가구가 됩니다. 외국인이 여러가구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가구를 주인 또는 대표가구로 하여 가구번호를 부여합니다.
  - 단, **외국인 가구**는 주인(대표)가구 및 동거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사**합니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는 「외국인 조사표」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토록 하며,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한국 국적 소지자)은 비록 혼인을 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여 일반조사표를 사용하여 면접 조사합니다.

- 이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가구)이 주인(또는 대표)가구가 됩니다.

만약 외국인가구내에 종업원(가사 사용인)이라도
한국인이 있으면 한국인을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대표가구로 합니다.

3. 공장 · 학교등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공장, 기숙사 관리인에게 의뢰하여 외국인에게 조사표를 배부하여 작성토록 합니다.

- 한 기숙사내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하나의「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되었으면, 한국인은 일반조사표(표본조사표)를, 외국인들은 외국인 조사표를 각각 사용하여 분리 조사합니다.
  - 이 경우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구번호**(거처번호는 동일)를 부여하고 가구명부상에는 외국인 가구에 O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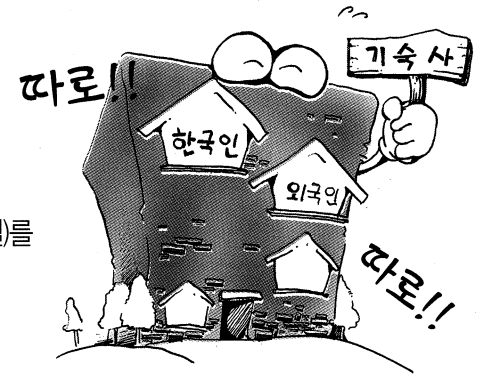

4. 집단거주 외국인(가구)

-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로 설정된 경우에는 외국인 조사표를 배부하여 본인이 직접 기입토록 합니다.

5. 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관광호텔(3등급-무궁화 2개 이상)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광호텔 조사구 담당조사원이 호텔 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외국인 투숙객에게 조사표를 배부 및 회수합니다.

※ 회수 즉시 조사표 작성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재확인하도록 합니다.
※ 관광호텔내의 한국인은 일반조사표(표본)로 조사합니다.

한국어 조사표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하여 주십시오.

※예 : 영어판

	1	2	3	5	1
1 이름 및 성별	낸시 고든 ①남 자 ②여 자	평 평 ①남 자 ②여 자	①남 자 ②여 자	①남 자 ②여 자	Nancy Gorden ① Male ②Female
2 생 년 월 일	1970년 4월 20일	1975년 6월 1일	년 월 일	년 월 일	Year : 1970 Month : 4 Day : 20
3 교 육 정 도	①안받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이상	①안받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이상	①안받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이상	①안받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이상	① No school ② Elementary school ③ Middle school ④ High shool ⑤ College and above
4 국 적	①중 국 ⑪방글라데시 ②중국(조선족) ⑫인 도 ③중국(대 만) ⑬베트남 ④일 본 ⑭미 국 ⑤필리핀 ⑮캐나다 ⑥파키스탄 ⑯영 국 ⑦네 팔 ⑰프랑스 ⑧태 국 ⑱독 일 ⑨말레이시아 ⑲호 주 ⑩인도네시아 ⑳기 타	①중 국 ⑪방글라데시 ②중국(조선족) ⑫인 도 ③중국(대 만) ⑬베트남 ④일 본 ⑭미 국 ⑤필리핀 ⑮캐나다 ⑥파키스탄 ⑯영 국 ⑦네 팔 ⑰프랑스 ⑧태 국 ⑱독 일 ⑨말레이시아 ⑲호 주 ⑩인도네시아 ⑳기 타	①중 국 ⑪방글라데시 ②중국(조선족) ⑫인 도 ③중국(대 만) ⑬베트남 ④일 본 ⑭미 국 ⑤필리핀 ⑮캐나다 ⑥파키스탄 ⑯영 국 ⑦네 팔 ⑰프랑스 ⑧태 국 ⑱독 일 ⑨말레이시아 ⑲호 주 ⑩인도네시아 ⑳기 타	①중 국 ⑪방글라데시 ②중국(조선족) ⑫인 도 ③중국(대 만) ⑬베트남 ④일 본 ⑭미 국 ⑤필리핀 ⑮캐나다 ⑥파키스탄 ⑯영 국 ⑦네 팔 ⑰프랑스 ⑧태 국 ⑱독 일 ⑨말레이시아 ⑲호 주 ⑩인도네시아 ⑳기 타	① China ⑪ Bangladesh ② China (Korean) ⑫ India ③ China (Taiwan) ⑬ Vietnam ④ Japan ⑭ U.S.A ⑤ Philippines ⑮ Canada ⑥ Pakistan ⑯ United Kingdom ⑦ Nepal ⑰ France ⑧ Thailand ⑱ Germany ⑨ Malaysia ⑲ Australia ⑩ Indonesia ⑳ Others
5 주된 체류 목적	①영 주 ②취 업 ③종교활동 ④교육 · 훈련 ⑤관광 · 사업차 일시방문 ⑥친지방문 ⑦가족동반 ⑧기 타	①영 주 ②취 업 ③종교활동 ④교육 · 훈련 ⑤관광 · 사업차 일시방문 ⑥친지방문 ⑦가족동반 ⑧기 타	①영 주 ②취 업 ③종교활동 ④교육 · 훈련 ⑤관광 · 사업차 일시방문 ⑥친지방문 ⑦가족동반 ⑧기 타	①영 주 ②취 업 ③종교활동 ④교육 · 훈련 ⑤관광 · 사업차 일시방문 ⑥친지방문 ⑦가족동반 ⑧기 타	① Permanent immigration ② Employment ③ Religion mission ④ Education or training ⑤ Tour or business ⑥ Visiting relatives ⑦ Accompaying family ⑧ Others
6 직 업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일하지 않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일하지 않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일하지 않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일하지 않음	① Legislator , senior official and manager ② Professional ③ Technician and associate professional ④ Clerk ⑤ Service worker ⑥ Sales worker ⑦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 ⑧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 ⑨ Plant,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 ⑩ Elementary occupation ⑪ No work
7 거 주 기 간 •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예정기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3개월 미만 (거주예정기간 : 년 개월) ② 3개월 ~ 6개월 ③ 6개월 ~ 1년미만 ④ 1년 ~ 5년미만 ⑤ 5년 ~ 10년미만 ⑥ 10년이상	① 3개월 미만 (거주예정기간 : 2년 6개월) ② 3개월 ~ 6개월 ③ 6개월 ~ 1년미만 ④ 1년 ~ 5년미만 ⑤ 5년 ~ 10년미만 ⑥ 10년이상	① 3개월 미만 (거주예정기간 년 개월) ② 3개월 ~ 6개월 ③ 6개월 ~ 1년미만 ④ 1년 ~ 5년미만 ⑤ 5년 ~ 10년미만 ⑥ 10년이상	① 3개월 미만 (거주예정기간 : 년 개월) ② 3개월 ~ 6개월 ③ 6개월 ~ 1년미만 ④ 1년 ~ 5년미만 ⑤ 5년 ~ 10년미만 ⑥ 10년이상	① Less than 3months (Expected duration Years: Months:) ② 3~6 months ③ 6~12 months ④ 1~5 years ⑤ 5~10 years ⑥ 10 years and above

조사표 표지

- 어떤 언어로 된 조사표로 조사하였는지 "사용된 언어"란에 표시합니다.
  - 반드시 한 가지 언어로만 기입되어야 합니다.

-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표 부수" "가구원수"란은 일반조사표의 작성요령과 같습니다.
  - 보통조사구내의 외국인 가구는 일반 한국인 가구와 동일한 요령으로 가구번호를 기입합니다.
  - 단, 기숙시설 조사구의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별도의 가구번호를 기입합니다.
    (한국인 가구번호를 먼저 부여합니다)

- "가구구분"란은 조사표 배부시 한국인 거주여부와 다른 외국인 가구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인(대표)가구와 동거가구를 구분 표시합니다.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이름 및 성별

- 성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 성별 구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

- '월 · 일'도 숫자로 기입합니다.

3 교육정도

- 교육제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연수를 참고하여 조사하고, 중퇴, 휴학 및 재학은 해당 학력에 포함합니다(예, 중학교 중퇴는 '③중학교'로 기입).

4 국적

- 외국인의 해당 국적에 표시하고, 해당 국가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⑳기타'란에 표시합니다.
- 한국인이라도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취득국적에 표시합니다.
- 중국인은 반드시 '조선족'이나 '대만인' 여부를 구별하여 표시합니다.

5 주된 체류목적

- 여권, 비자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입국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입국목적을 기입합니다.
  - 특히, 조선족, 동남아시아인이 친지방문, 관광으로 위장 입국한 후 취업을 한 경우에도 '②취업'에 해당됩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목적을 기입합니다(2개 이상의 체류목적이 있으면 주된 목적 하나에만 ○표 합니다.)
- '②취업'은 불법취업자도 포함됩니다.

- '③종교활동'에는 선교목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④교육 · 훈련'에는 대학, 연구소,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 훈련생(연수생)으로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학교와 학원 등에서 교육 · 훈련을 시키고 있는 교사, 강사 등은 '②취업'에 해당됩니다
- '⑤관광 · 사업차 일시방문'에서 사업차 방문은 국내에서의 취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간 계약, 협의, 고객상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⑥친지방문'은 일시적으로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⑦가족동반'은 본인의 체류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따라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6 직업

- 2000년 11월 1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표시합니다.

7 거주기간

- 거주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는 거주예정기간을 기입합니다.

가구에 관한 사항

1. 거처의 종류

①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영업용 건물(공장, 상점)내 주택
⑥ 오피스텔
⑦ 호텔 · 여관
⑧ 기숙사
⑨ 기타

⑥ ~ ⑨에 해당하면 작성을 마칩니다.

2. 점 유 형 태

① 자기집 ②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무상
⑥ 기타

3. 사 용 방 수 (침실, 서재, 거실, 식당등 포함)

① 1개 ②2개 ③ 3개
④ 4개 ⑤5개이상

4. 사용 부엌 형태

①수도시설 · 취사시설 있음 ② 수도시설만 있음
③ 취사시설만 있음 ④ 수도시설 · 취사시설 모두 없음

5. 사용화장실 (목욕시설 형태)

①화장실 · 욕실 모두 있음 ② 화장실만 있음
③ 욕실만 있음 ④ 화장실 · 욕실 모두 없음

1 ~ **3** 거처의종류, 점유형태, 사용방수

- 한국인 일반조사표 조사요령에 의해 조사합니다.

4 사용 부엌시설형태

- 수도시설과 취사시설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5 사용화장실(목욕시설) 형태

- 화장실과 욕실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9. 빈집 조사

핵 심 사 항

- 매매, 임대, 분양, 이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해당됩니다.
-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해 둔 폐가도 해당됩니다.
- 다가구 주택은 주택 전체(모든 가구분)가 모두 비어 있는 경우만 빈집 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 한 가구라도 거주하면 비어있는 곳은 단지 빈방에 해당됩니다.
- 신축된 주택은 준공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신축 중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 별장은 관리인 가구가 살지 않는 경우만 빈집 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 주택이외의 거처는 빈집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사방법

- 그 빈집을 소유한 사람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가구)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빈집 소유자가 타지에 있어 직접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이웃 또는 통·반·이장에게 문의하여 조사합니다.
- 이외에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탐문 조사하도록 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빈집 조사표 매수	조사표당 빈집수
서울	마포	도화2	012-1	총 1 매중 1 매	5 호

빈집일련번호	1
거 처 번 호	14

❶ 빈집(주택)의 종류
① 보통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7 가구분)
③ 아파트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영업용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❷ 비어있는 기간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12개월 미만
④ 12개월 이상

❸ 빈집 사유
① 매매 · 임대 · 이사
② 현재 수리
③ 일시적(가끔) 이용
④ 폐가
⑤ 기타( )

❹ 빈집의 파손 정도
① 파손없음 ② 일부 파손 ③ 반이상 파손

빈집일련번호	2
거 처 번 호	19

❶ 빈집(주택)의 종류
① 보통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_____ 가구분)
③ 아파트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영업용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❷ 비어있는 기간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12개월 미만
④ 12개월 이상

❸ 빈집 사유
① 매매 · 임대 · 이사
② 현재 수리
③ 일시적(가끔) 이용
④ 폐가
⑤ 기타( )

❹ 빈집의 파손 정도
① 파손없음 ② 일부 파손 ③ 반이상 파손

빈집일련번호	3
거 처 번 호	31

❶ 빈집(주택)의 종류
① 보통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_____ 가구분)
③ 아파트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영업용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❷ 비어있는 기간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12개월 미만
④ 12개월 이상

❸ 빈집 사유
① 매매 · 임대 · 이사
② 현재 수리
③ 일시적(가끔) 이용
④ 폐가
⑤ 기타( )

❹ 빈집의 파손 정도
① 파손없음 ② 일부 파손 ③ 반이상 파손

빈집일련번호	4
거 처 번 호	49

❶ 빈집(주택)의 종류
① 보통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_____ 가구분)
③ 아파트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영업용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❷ 비어있는 기간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12개월 미만
④ 12개월 이상

❸ 빈집 사유
① 매매 · 임대 · 이사
② 현재 수리
③ 일시적(가끔) 이용
④ 폐가
⑤ 기타( )

❹ 빈집의 파손 정도
① 파손없음 ② 일부 파손 ③ 반이상 파손

빈집일련번호	5
거 처 번 호	50

❶ 빈집(주택)의 종류
① 보통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_____ 가구분)
③ 아파트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영업용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❷ 비어있는 기간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12개월 미만
④ 12개월 이상

❸ 빈집 사유
① 매매 · 임대 · 이사
② 현재 수리
③ 일시적(가끔) 이용
④ 폐가
⑤ 기타( )

❹ 빈집의 파손 정도
① 파손없음 ② 일부 파손 ③ 반이상 파손

빈집일련번호	
거 처 번 호	

❶ 빈집(주택)의 종류
① 보통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총 _____ 가구분)
③ 아파트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영업용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❷ 비어있는 기간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12개월 미만
④ 12개월 이상

❸ 빈집 사유
① 매매 · 임대 · 이사
② 현재 수리
③ 일시적(가끔) 이용
④ 폐가
⑤ 기타( )

❹ 빈집의 파손 정도
① 파손없음 ② 일부 파손 ③ 반이상 파손

⬇ (뒷면에도 계속됨)

난외사항

- 주소 : 빈집 소재지(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를 기입합니다.
- 조사구번호 : 지정된 조사구번호를 기입합니다.
- 빈집 조사표 매수 : 한 조사구내에서 이용한 빈집 조사표의 총매수와 그 중 몇 매째인가를 5매중 2매 등과 같이 기입합니다.
- 조사표당 빈집수 : 1장의 조사표에서 조사된 빈집수를 기입합니다. 단,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동일 거처내의 모든 호수가 비어 있어야 1개의 빈집으로 간주합니다.
- 빈집 일련번호 : 한 조사구내에서 조사된 빈집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 거처번호 : 가구명부상에 표시된 빈집의 거처번호를 기입합니다.

빈집 조사항목

❶ 빈집(주택)의 종류

- 빈집의 유형을 "거처의 종류(42쪽)"에 의해 조사 · 기입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다 비어 있을 경우만 해당되며, 총 몇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기입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의 빈집은 각 호별로 작성합니다.
  ※ 별장은 관리인 가구가 살지 않는 경우만 빈집으로 조사하며, 빈집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그 종류에 따라 표시합니다.

❷ 비어있는 기간

- 비어있는 기간을 조사하여 해당되는 기간에 표시합니다.
  ※ 별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④12개월 이상'으로 조사합니다.
  ※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경우는 완공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❸ 빈집사유

●그 집(주택)이 비게 된 사유에 표시하고, 기타인 경우는 (　　)내에 사유를 기재합니다.

●매매, 임대를 위해서 비어 있거나, 이사를 오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 이사를 오지 못한 주택은 '①매매·임대·이사'에 해당됩니다.

※ 분양 대기중이거나 입주 대기중인 주택도 해당됩니다.

●잠시 다른 곳에서 살면서 현재 수리중인 주택은 물론 매매·임대 등을 위해서 현재 수리중인 주택도 '②현재 수리'에 해당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대폭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의 주택은 '④폐가'에 해당됩니다.

❹ 빈집의 파손정도

●다음 기준에 의거 주택의 주요 부분(지붕, 벽, 기둥, 방바닥, 부엌 등)과 기타 부분의 파손 상태에 따라 파손정도를 판단하여 해당란에 기입합니다.

● '① 파손 없음': 주택의 주요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파손도 없는 경우와 건물의 주요 부분은 조금이라도 파손이 없으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리를 요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외벽이 여기저기 조금씩 떨어져 나갔거나, 벽 일부에 금이 갔거나, 기와 일부가 떨어졌거나, 빗물받이 홈통이 일부 파손되는 등 부분적으로 약간만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정도의 파손 상태가 해당됩니다.

● '② 일부 파손' : 주택 주요 부분의 노후와 파손 등 불완전한 곳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지붕, 벽, 기둥 등의 교체와 보강이 필요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으면 주택의 수명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파손상태가 해당됩니다.

● '③ 반이상 파손' : 주택의 수명이 다 되어 앞으로 주택으로서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택과 재해 등으로 인해 크게 파손된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 폐가인 경우는 '반이상 파손'에 기입합니다.

– 기둥의 기울어짐, 지붕의 뒤틀림 또는 주택 주요 부분의 노후와 파손의 정도가 지나쳐 폭풍우 등의 재해에도 위험을 느낄 정도의 파손상태가 해당됩니다.

10. 조사표류 검토

핵 심 사 항

- 제출해야 할 조사표류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중에 매일매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표(일반 조사표, 외국인 조사표, 빈집 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 요도 등
- 기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되지 않는 곳은 연필로 사선(＼)이 쳐 있는지, 부호는 적색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표, 가구명부 및 조사구 요도는 조사구별로 다음 사항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① 조사구 번호 ② 조사구별 총거처수 및 총가구수
- 조사표와 가구명부간에는 다음 사항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①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주 및 가구원수(남 · 여)
  ② 가구별 가구구분 표시 ③ 거처별 거처종류 표시(빈집 포함)
  ④ 농어가수 ⑤ 조사표 부수

일반조사표

■ 공통

- 항목별로 몇 살이상 조사한다는 기준에 일치하여 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모든 연령, 세는 나이 13세이상(표본), 세는 나이 16세이상, 세는 나이 61세이상(표본)
- 주인 · 대표가구만이 주택사항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 조사항목이외 사항

- 행정구역부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리),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가 조사표마다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한 거처내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인(대표)가구의 가구번호가 가구내에서 제일 먼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당 조사표 부수
  - 가구원수를 확인하면서 5명이하인 경우에는 1부중 1부라고 기입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6명 이상인 경우에는 2부중 1부, 2부중 2부(11명이상인 경우는 3부중 1부 등)로 조사표마다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수
  - 조사된 가구원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응답자 및 전화번호(조사표 마지막 장)
  - 추후에 질의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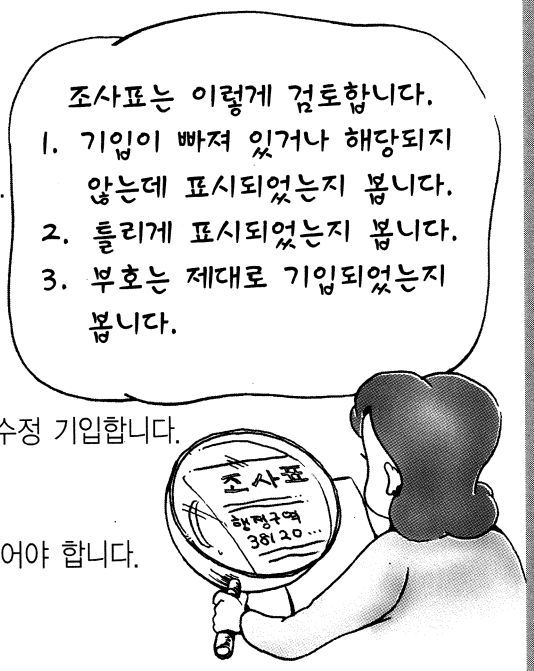

1 ~ 2 성명 및 본관

- 성씨 및 본관이 「각종 분류 부호집」에 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3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가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성별

- 가구주와의 관계를 참조하여 잘못 표기되어 있으면 확인하여 수정 기입합니다.

5 나이

- 세는 나이, 생년월일과 양 · 음력 표시가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는 나이, 생년월일(또는 띠)이 서로 일치하는가 봅니다.

6 교육정도

- 학력에 표시되어 있으면 교육상태인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전공분야 (표 본)

- 대학(4년제미만 포함)이상 졸업 및 수료자의 전공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8 아동보육상태(1세~초등학교 아동만 조사) (표 본)

- 아동이 아닌 부모에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9 출생지

- ③, ④인 경우 시도명, 시군구명 또는 국가명과 부호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11 1년전 거주지 및 5년전 거주지 (표 본)

- ④, ⑤인 경우 시도명, 시군구명 또는 국가명과 부호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2 13 컴퓨터 활용상태 및 인터넷 활용상태 (표 본)

-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에서 컴퓨터가 있으면서 모든 가구원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음에 기입했다면 재확인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에서 인터넷 회선이 있으면서 모든 가구원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확인합니다.

14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표 본)

- 나이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검토합니다.

15 통근 · 통학 여부(13세이상만 조사) (표 본)

- '③안함'에 표시되어 있으면서 "통근 · 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 · 통학 소요시간"이 기입된 경우 재확인하여 정확하게 수정합니다.

• '①통근함' 이나 '②통학함' 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근 · 통학장소"와 ":이용교통 수단" 및 "통근 · 통학 소요시간"도 조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6 통근 · 통학 장소(13세이상만 조사) **표 본**

• "통근 · 통학 장소"가 '③다른 시 · 군 · 구'로 표시된 경우에 행정구역명과 부호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통근 · 통학 거리가 지나치게 장거리인 경우에는 가구에 재확인하여 수정합니다.

17 이용교통수단(13세이상만 조사) **표 본**

• '①도보로만' 에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곳에 표시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용교통수단"이 현 교통여건과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후 수정 기입합니다.
예) 전북 등 지하철이 없는 곳에서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경우

18 통근 · 통학 소요시간(13세이상만 조사) **표 본**

• 통근 · 통학 출발시간이나 소요시간이 비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확인합니다.

• 오전 및 오후 표시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9 경제활동상태(16세이상만 조사) **표 본**

• 경제활동상태가 '① 또는 ②'인 사람이 구직활동에도 '②찾아 보았음' 에 응답하였으면 어느 항목이 맞는지 재확인합니다.

• 경제활동상태가 '③'인 사람이 구직활동을 누락하지 않았나 확인합니다.

20 종사상의 지위(16세이상만 조사) **표 본**

• 경제활동상태에서 '①, ②'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사상의 지위"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1 산업(16세이상만 조사) **표 본**

• 경제활동상태에서 '①, ②'에 기입된 경우에 대해서만 '직장 사업체 이름'과 '주된 사업내용'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 산업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2 직업(16세이상만 조사) **표 본**

• 경제활동상태에서 '①, ②'에 기입된 경우에 대해서만 '부서 및 직책'과 '하고있는 일의 종류'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 직업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3 현직업 근무연수(16세이상만 조사) **표 본**

• 산업 및 직업이 기입된 사람만 조사되어야 합니다.

• 근무연수가 연령과 비교했을 때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24 혼인상태(16세이상만 조사)

-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예) 가구주와의 관계가 '②가구주의 배우자' 이면 혼인상태는 '②배우자 있음' 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25 총출생아수(16세이상 여자만 조사) 표 본

- '딸 + 아들 = 계' 의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26 자녀거주장소(61세이상만 조사) 표 본

- 같은 가구내 자녀가 있음에도 '①' 번이외에 마크 했는지 확인합니다.

27 생계수단(61세이상만 조사) 표 본

- 생계수단이 '② 또는 ③' 인데 "주부양자" 가 누락 됐는지 확인합니다.

28 주부양자(61세이상만 조사) 표 본

- "주부양자" 가 '①~④' 인데 동거여부가 누락됐는지 확인합니다.

29 거동불편 여부(61세이상만 조사) 표 본

- 집안 활동 및 바깥출입별로 거동불편 여부가 각각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가구구분

- '⑥ ~ ⑩' 에 해당되면 **14** 항목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합니다.

2 거주기간 표 본

- 거주기간은 가구주의 거주 기간이 아니고,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3 사용방수

- 사용방수는 가구별로 사용하는 방수가 기입되어 있는지, 개수는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4 주거 시설 형태

- 단독사용 및 공동사용 여부를 기입하였는지 확인합니다.

5 취사연료 표 본

- 도시지역에서 땔감 등 임산연료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서 도시가스로 기입했는지 확인합니다.

6 난방시설 표 본

- 지역실정에 맞는 난방시설인지를 확인합니다.

7 **8** 상수도 시설 및 식수 사용형태 (표 본)

- 상수도가 없는데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응답했는지 확인합니다.

9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표 본)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응답이 합당한지 확인합니다.
- '⑥ 및 ⑦'에 응답한 경우 회선이나 대수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자동차 보유대수 (표 본)

- 차종별로 대수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1 주차시설 (표 본)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응답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12 **13** 점유형태 (전 수) 및 임차료 (표 본)

- 주거전용 및 영업겸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기집 또는 무상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란이 기입되어서는 안됩니다.
- 사글세의 경우 개월수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료 항목은 주변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재확인합니다.
- 숫자가 단위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4 **15**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 단독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가 표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⑥~⑨'에 해당하면 주택이외의 거처이므로 이하 주택항목이 조사되어서는 안됩니다.

16 주인,대표가구 여부

- 모든 거처에 반드시 한 가구는 주인 또는 대표가구에 체크되어야 합니다.
- '③'에 해당하면 대표가구가 아니므로 이하 주택항목은 조사되어서는 안됩니다.

17 연건평

- 전용면적으로 조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연건평이 상식이하로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재확인 수정해 줍니다.

18 대지면적

- 단독주택만 조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대지면적이 상식이하로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재확인 수정해 줍니다.

상식을 벗어난 응답을 체크합니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규모(또는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수)는 우선 의심해야죠.

19 **21** 총방수 및 편익시설수

- 세든 가구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사정으로 보아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개수가 기입된 경우는 재확인 해야 합니다.

외국인 조사표

- 원칙적으로 일반조사표와 동일한 요령으로 검토합니다.
- 조사표 표지의 대표가구 및 동거가구 여부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여러 개의 말(예, 영어, 일본어)로 중복 기입하였으면 그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합니다.

빈집 조사표

- 원칙적으로 일반조사표와 동일한 요령으로 검토합니다.
- 빈집의 종류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란도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구명부

- 전수 · 표본 여부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명부 첫 쪽에는 가구원수(계, 남, 여), 가구의 종류별, 거처의 종류별, 빈집, 농 · 어가별로 '소계'가, 마지막쪽에는 '총계'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빈집**의 **거처의 종류**가 표시되었는가 확인합니다.
- 동거가구에는 거처번호 및 주소가 사선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구 요도

- 총가구수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거처별로 거처번호와 가구수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거처별로 출입구수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축, 철거 등 거처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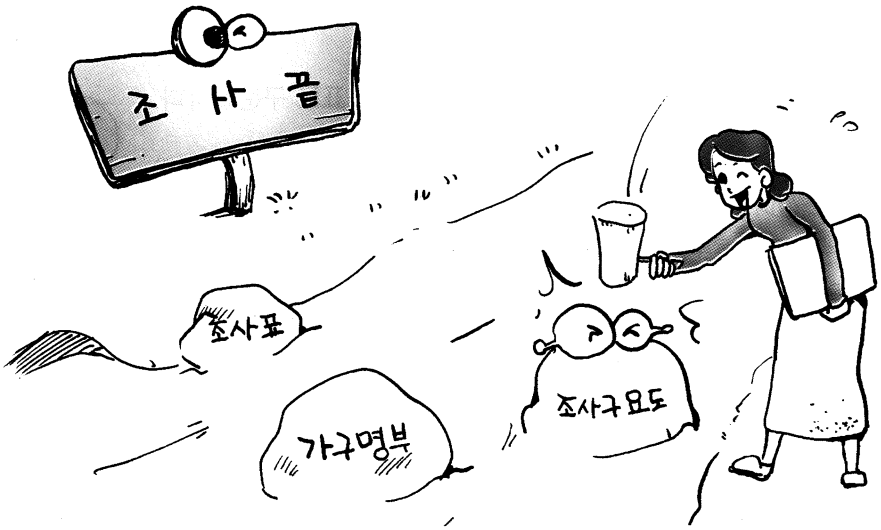

11.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제출할 조사표류

- 일반 조사표, 외국인 조사표, 빈집 조사표
- 가구명부 3부, 조사구 요도 2부,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조사원증

■ 조사구 요도, 가구명부, 조사표에 대한 내용검토가 끝나면 조사구별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조사표류를 정리하여 2000년 11월 10일 담당 지도원의 확인을 거쳐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① 내용검토가 끝난 조사구 요도를 기준으로 조사구 요도 1부를 더 작성합니다.

- 조사구 요도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므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검토가 끝난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가구명부 2부를 더 작성합니다.

- 가구명부를 복사할 경우는 앞뒤 면이 제대로 복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조사표 편철표지를 수령하여 조사표 편철표지의 겉면을 작성합니다 : 가구명부를 참고

[조사표 편철표지 작성요령] : 해당 조사구의 조사원이 조사 완료 후 작성

- 행정구역 : 해당 지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명칭을 기재
- 조사구번호 : 해당 조사구의 조사구번호를 기재
- 권번호 : 해당 읍면동의 표본조사구가 총 몇 권인가를 기재하고 해당 조사구가 그 중 몇 번째인가를 기재

※ A읍의 총조사구수 31개(001-031)중 표본조사구로 3개(009, 019, 029)가 추출된 경우

- 001조사구의 경우 : 총 28권중 1권, 009조사구의 경우 : 표본조사구로 총 3권중 1권

- 조사원, 지도원, 지도공무원
  - 해당 조사구를 조사한 조사원, 지도원 및 지도공무원의 성명 기재
- 가구수
  - 가구수를 한국인(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과 외국인 가구로 구분 기재
  - 빈집은 가구수가 아닌 빈집수를 기재
- 조사표 부수 : 가구구분별로 사용한 조사표 부수를 기재
- 결번거처 및 결번가구
  - 해당 조사구내 결번거처수와 결번거처번호, 결번가구수와 결번가구번호를 기재 : 예) 총 1개거처(3거처), 총 3개가구(9-11, 14-23, 19-33)

④ 조사표는 조사구별로 외국인 조사표, 빈집 조사표, 일반 조사표로 구분합니다.

⑤ 정리가 끝난 조사표는 외국인 조사표를 맨위에, 빈집 조사표를 그 다음에, 일반 조사표를 맨 아래로 정리 하여 조사표 표지에 철합니다.

- 일반 조사표는 가구번호순으로 정리합니다.
- 조사표 철끈은 아래에서 위로 끼워서 위에서 묶도록 합니다.

⑥ 조사표를 편철표지에 철한 후 편철표지 위에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조사구 요도 2부, 가구명부 3부 순으로 올려 놓습니다.

⑦ 위에서 정리한 조사표류와 조사원증을 담당 지도원의 최종확인을 거쳐 담당 읍면동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각종 분류 부호집, 조사지침서(표본의 경우), 산업 · 직업 기입요령(표본의 경우)도 함께 제출(재활용)

부 록

● 통계법(발췌)

통 계 법 (발췌)

1. 가구의 조사응답 의무와 조사원의 조사원증 소지 및 제시의무

제10조(자료제출명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실지조사) 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정통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이외 사용금지

제13조(비밀의 보호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금지

제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결과를 변경한 자
4.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자.<신설 99. 1. 29>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표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9. 1. 29>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방해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행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3-9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 지 침 서

(특별조사구용)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 지 침 서

(특별조사구용)

통계청

목 차

Ⅰ. 조 사 개 요 3

1. 조사목적 5
2. 조사연혁 5
3. 법적근거 5
4. 조사기준시점 6
5. 조사기간 6
6. 조사지역 6
7. 조사대상 6
8. 조사체계 및 방법 7
9. 조사항목 7
10. 조사결과의 공포 7

Ⅱ.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 9

1. 조사대상 11
2. 조사단위 16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9

1. 조사방법 21
2. 조사표 작성시 주의사항 21
3. 조사표 작성요령 22

Ⅳ.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37

1.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기간 39
2. 단계별 수행사항 39
3.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요령 39
4. 조사표류 정리 43
5. 조사표 제출 47

부 록 49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이들의 규모, 구조, 분포 및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정보 제공

○ 21세기 지식사회의 확충과 선진복지국가 건설 등 다양한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 기초자료 제공

○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 및 조사결과 검토를 위한 기준자료 제공

2. 조사연혁

○ 인구총조사

- 1925년 이래 매 5년 주기로 실시
- 1949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후 처음 실시
- 2000년은 제16차 조사

○ 주택총조사

- 1960년이후 인구총조사와 함께 매 5년 주기로 실시
- 2000년은 제8차 조사

3.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 인구총조사 : 제 10101 호
- 주택총조사 : 제 10102 호

○ 인구주택총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143호, 제정 2000. 7. 1.)

- 특별조사구 조사실시 근거 : 규칙 제 9조

4. 조사기준시점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5. 조사기간

○ 2000년 11월 1일 ~ 11월 5일 (5일간)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는 일반조사구는 2000년 11월 1일 ~ 11월 10일 (10일간)

6. 조사지역 :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7.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내 특수시설에 상주하는 내·외국인을 모두 조사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직원(무관, 주재관, 국정원 파견관 등 포함)·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

○ 국 방 부
모든 군인, 훈병, 육·해·공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생도

○ 법 무 부
경비교도,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의 기·미결수 및 재소자의 출산자녀, 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 사무소의 보호 외국인

○ 경 찰 청
전투경찰순경, 경찰대학교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경찰서 보호실 유치인 및 대용감방 수용자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해양경찰서 보호실 유치인

8. 조사체계 및 방법

○ 조사체계 : 5개 중앙부처(청)의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조사 대상자 면접조사 : 조사담당자가 특수시설내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조사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응답자 기입방식조사 : 조사대상자가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해 자기 기입하는 조사 (외교통상부)

9. 조사항목

○ 기본항목(8개) : 성명, 본관, 성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출생지, 본가(국)주소

○ 특성항목(1개)

- 가구주와의 관계(외교통상부)
- 영외거주여부(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형의 확정여부(법무부)

10. 조사결과의 공포

○ 잠 정 속 보 : 2000. 12월경

○ 전수조사결과 : 2001. 9월경

○ 표본조사결과 : 2001. 12월경

※ 특별조사구의 인구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본가(본국)의 주소지 행정구역별 인구에 포함되어 집계 공표됨

Ⅱ.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

1. 조사대상

가. 외교통상부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 및 그 가족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국제기구(KEDO, ESCAP, OS, APEC, UNESCO, OECD 등)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휴직공무원은 제외)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되어야 할 사람	조사하면 안 될 사람
· 한국에서 채용하여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	· 현지에서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 조사제외
· 재외공관에 파견된 무관	· 해외군사교육을 위해 파견된 군인 → 국방부에서 조사
· 기타 부처(국방부, 국정원 등)에서 재외공관에 파견한 주재관 및 그 가족	· 외교통상부 본부 직원이 교육받기 위해 잠시 재외공관에 파견되었을 경우 → 본국에서 조사
· 조사대상인 사람이 출장, 휴가, 친지 방문으로 잠시 한국에 귀국한 경우	· 본국의 가족이나 친척이 출장, 휴가 등으로 잠시 조사대상자의 거주가구에 들린 경우 → 본국에서 조사
	· 조사대상 가족중 취업, 취학을 위해 한국에 귀국한 가족 → 본국에서 조사
	· 장기 해외연수생(유학파견) → 조사제외
	· 국제기구에 취업하기 위해 휴직한 소속 공무원 → 조사제외

나. 국 방 부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군 복무중인 모든 정규군인(영내외 거주 불문) 및 훈병

○ 육·해·공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의 생도

○ **조사기준시점을 전후한 조사대상 기준 적용사례**

- 전속 이동중인 군인은 11월 1일 0시 현재 있었던 부대에서 조사한다.
  - 10월 31일 이전에 출발한 군인은 전입부대에서 조사하고, 11월 1일 이후에 이동하는 군인은 전출부대에서 조사한다.
  - 10월 31일 이전에 전속발령을 받았지만 11월 1일 이후에 출발하는 군인은 전출부대에서 조사한다.
- 전역 또는 제대특명을 받고 11월 1일 이후에 소속되었던 부대를 떠나는 사람은 제대전 부대에서 조사한다.(11월 1일 이전에 떠나는 사람은 본가에서 조사)

※ 10월 31일 이전에 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장기 출항하여 조사기간내에 귀항하지 못하는 함정 승무원은 출발전에 미리 조사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조사한다.

소속 부대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람	소속부대에서 조사하면 안 될 사람
· 해외파견 군인 - 해외군사 교육을 위해 파견된 군인 - 해외에 평화유지군 등으로 파견된 군인	· 재외공관에 파견된 군인 → 외교통상부에서 조사
· 휴가, 출장(해외출장 포함)중인 군인	· 해외 일반대학(원)에 유학중인 군인 → 조사제외
· 의무실 입실자	· 군병원에 후송된 군인 → 군병원에서 조사
· 일보가 삭제되지 않은 휴가 미귀대자, 무단 이탈자, 영장(징계)처분자,	· 군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중인 군인 → 군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조사
· **논산훈련소, 진해훈련소 등에 입영되어 위탁교육을 받는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 교육(훈련)을 마치고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10. 31일 이전에 전출된 경우는 해당부처(청)에서 조사	· 타부대에 파견되었거나 또는 교육대, 하사관 학교 등에 입교한 군인 → 파견받은 부대 또는 입교부대에서 조사 · 군부대에서 훈련중인 예비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체기능요원, 연구요원 → 본가에서 조사

다. 법 무 부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등에 수용된 자는 미결이든 기결이든 모두 조사해야 한다.

-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가 어린아이와 대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린아이도 조사해야 한다.
- 수용중인 외국인도 모두 조사한다.(외국인 조사표 사용)
- 조사기준시점을 전후한 조사대상 기준 적용사례
  - · 호송중인 수용자는 출발한 날이 10월 31일 이전일 때에는 받는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11월 1일 이후에는 보내는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조사한다.
  - · 10월 31일 이전에 석방 또는 퇴원키로 확정된 사람이라도 11월 1일 현재 수용중인 사람은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조사한다.

○ 2000년 11월 1일 현재 복무중인 경비교도

소속 기관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람	소속기관에서 조사하면 안 될 사람
· 휴가, 출장중인 경비교도	· 논산 훈련소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경비교도 → 국방부에서 조사
· 일반병원에 입원중인 경비교도	· 휴직중인 경비교도 → 본가에서 조사

- 전속 이동중인 경비교도는 **11월 1일 0시 현재 있었던 교도대에서 조사**한다.
  - · 10월 31일 이전에 출발한 경비교도는 전입한 교도대에서 조사하고, 11월 1일 이후에 이동하는 경비교도는 전출한 교도대에서 조사한다.
  - · 10월 31일 이전에 전속발령을 받았지만 11월1일 이후에 출발하는 경비교도는 전출한 교도대에서 조사한다.
- 전역 또는 제대특명을 받고 11월 1일 이후에 소속한 교도대를 떠나는 사람은 제대전 교도대에서 조사한다.(11월 1일 이전에 떠나는 사람은 본가에서 조사)

○ 외국인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외국인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보호중인 외국인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 일부 외국인을 교도소 등에 수용을 의뢰하였을 경우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해야 한다.

라. 경 찰 청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과 교육중인 경찰대학생(4년제) 및 경찰간부후보생(1년제)

○ 조사기준시점을 전후한 조사대상 기준 적용사례

- 전속 이동중인 전투경찰순경은 11월 1일 0시 현재 있었던 기관에서 조사한다.
  - · 10월 31일 이전에 출발한 전투경찰순경은 전입기관에서 조사하고, 11월 1일 이후에 이동하는 전투경찰순경은 전출기관에서 조사한다.
  - · 10월 31일 이전에 전속발령을 받았지만 11월 1일 이후에 출발하는 전투경찰순경은 전출기관에서 조사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조사한다.

소속 기관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람	소속기관에서 조사하면 안 될 사람
· 휴가, 출장중인 전투경찰순경	·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에 입교한 전투경찰순경 → 입교기관에서 조사 ·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에 입교한 일반현직 경찰관 → 자택에서 조사 · 논산훈련소 등 군부대에 입영하여 위탁교육을 받고있는 전투경찰순경 → 국방부에서 조사 · 경찰병원에 입원한 전투경찰순경 → 경찰병원에서 조사 · 휴직중인 전투경찰순경 → 본가에서 조사

○ 경찰서 유치인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되어 있거나 대용감방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모두 조사한다.
- 유치중인 외국인도 모두 조사한다.(외국인 조사표 사용)

마. 해양경찰청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

조사되어야 할 사람	조사하면 안 될 사람
· 휴가, 출장중인 전투경찰순경	· 해안 및 도서경비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 자택에서 조사
· 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조사기간내에 귀항하지 못할 전투경찰순경 → 출항전에 조사	· 진해훈련소 등 군부대에 입영하여 위탁교육을 받고있는 전투경찰순경 → 국방부에서 조사
	· 휴직중인 전투경찰순경 → 본가에서 조사

○ 해양경찰서 유치인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해양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모두 조사한다.
- 유치중인 외국인도 모두 조사한다.(외국인 조사표 사용)

※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공통사항

○ 2000년 11월 1일 현재 논산훈련소, 진해훈련소 등 군부대에 위탁교육 중인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는 국방부에서 조사한다.

○ 교육(훈련)을 마치고 법무부나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전출되는 날짜가 10월 31일 이전일때는 배치된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 조사한다.
(11월 1일 이후일때는 국방부에서 조사)

2. 조사단위

가. 조사단위의 의의

○ 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조사실시, 조사표 정리, 제출에 적당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조사단위별로 실지조사, 내용검토, 부호기입을 실시한다.

- 단, 국방부와 경찰청(또는 해양경찰청)의 유치장 및 대용감방은 소속기관에서 실시한다.

○ 조사단위별로 조사표 표지로 편철한다.

나. 부처(청)별 조사단위

(1) 외교통상부

○ 각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국제기구는 본부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조사단위로 설정한다.

(2) 국 방 부

○ 부대단위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조사표 정리 및 표지작성을 부대단위별로 실시한다.

○ 실질적인 조사는 중대별로 실시한다.

- 실지조사, 내용검토, 부호기입은 중대별로 실시한다.

(3) 법 무 부

○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과는 별도로 경비교도대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외국인보호소는 1개는 조사단위로 설정한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는 본부에서 통합하여 1개의 조사단위로 설정한다.

· 다만, 1개 사무소(또는 출장소)에서 보호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명내외로 많을 경우에는 그 사무소(또는 출장소)를 조사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 실지조사, 내용검토, 부호기입은 각 사무소(또는 출장소)에서 실시하고, 조사표는 본부에서 취합하여 조사표 표지로 편철한다.

(4) 경 찰 청

○ 전투경찰순경

- 전투경찰대, 기동타격대, 방범순찰대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배치기관 단위(경찰서, 학교등)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경찰대학학생이나 경찰간부후보생은 학교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경찰서 유치인

- 지방경찰청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지방경찰청이 1개의 조사단위가 됨)
- 실지조사, 내용검토, 부호기입은 소속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조사표를 지방경찰청에서 취합하여 지방경찰청 단위로 조사표 표지로 편철한다.

(5) 해양경찰청

○ 전투경찰순경

- 해양경찰서별로 조사단위를 설정한다.

○ 해양경찰서 유치인

- 해양경찰청에서 1개의 조사단위로 통합하여 설정한다.
- 실지조사, 내용검토, 부호기입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취합하여 조사표 표지로 편철한다.

Ⅲ. 조사표 작성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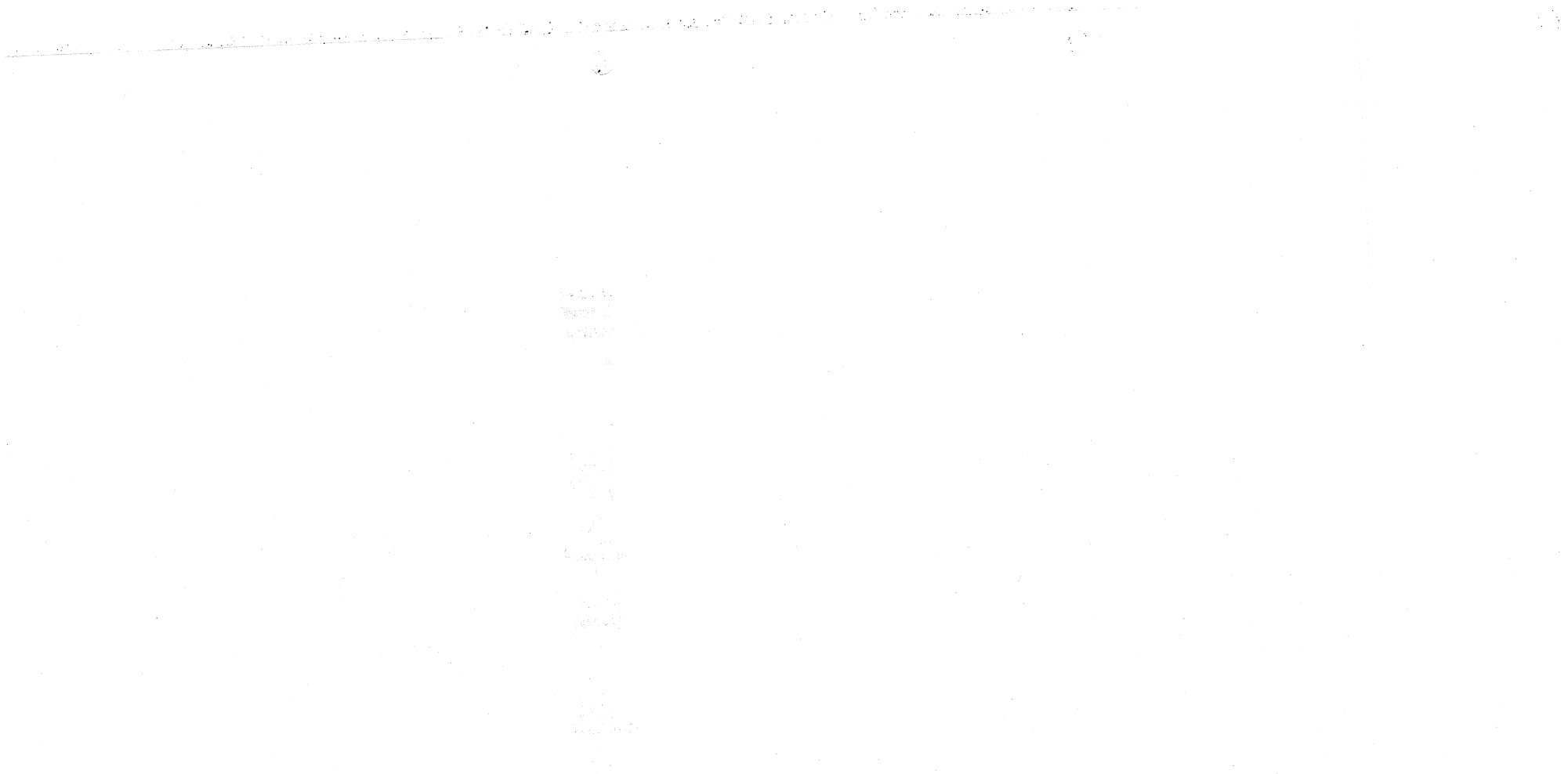

1. 조사방법

○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등은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조사표에 기입하는 조사대상자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며, 조사표 1부당 10명까지 조사한다.

- 모든 군인 및 훈병,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제3사관학교 생도, 간호사관학교 생도, 전투경찰순경,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경비교도는 군·전경대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대용감방 등의 수용자, 경찰서 유치인은 교도소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표를 배부해 직접 작성하게 하는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조사하며, 조사표 1부당 6명까지 조사한다.

- 조사대상자의 가족도 조사하여야 한다.

○ 외국인은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2. 조사표 작성시 주의사항

○ 각 항목마다 기입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지침서 숙지할 것)

○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비치되어 있는 인사기록카드, 인적관리카드 등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3. 조사표 작성요령

가. 군 · 전경대용 조사표

(1) 조사항목 이외 사항

ⓐ 기 관 (부 대) 명	ⓑ 조 사 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	ⓒ 조사인원수
육군 ○○○○ 부대	340 부중 25 부	8

ⓓ 조사담당자	직 위	성 명
	병 장	김 철 수

ⓐ 기 관 명

국방부는 부대명(예: 육군 ○○○○부대), 법무부는 경비교도대 명칭 (예:○○교도소 경비교도대), 경찰청은 단위기관의 명칭(예: ○○경찰서, ○○지방경찰청 ○○기동대),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서의 명칭(예:○○해양경찰서)을 기입한다.

ⓑ 조사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

지정된 조사단위기관(부대, 경비교도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는 조사표를 편철한후 조사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단, 소속기관에서 이 란을 작성하면 안된다.

(예) 대대가 하나의 조사단위기관일 때 중대에서, 경찰서가 하나의 조사단위기관일때 지서나 파출소에서 이 란을 작성하면 안된다.

ⓒ 조사인원수

해당 조사표에 기재된 인원수를 기입한다.

※ 조사단위기관 전체의 조사인원수를 기입하면 안된다.

ⓓ 조사담당자

실지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직위와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2) 조사항목

[1] 성 명 , [2] 본 관

[1] 성명	조사되어야 할 사람의 성명(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안에는 성씨를 한자로 기입합니다.	홍길동	洪			이현우	李		
[2] 본관	본관은 어디입니까? (한글로 기입합니다)	본관	강릉			본관	전주		
		3 7 8	1 1 1			3 0 0	2 8 4		

○ 기입순서는 계급순, 연령순, 호실순 등 조사편의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작성한다.

○ 성씨는 한자로 기입한다.(부록의 성씨 분류부호를 참조하여 기입)

○ 본관은 한글로 기입한다.

- 다만, 본관중에 같은 음이라도 한자가 다를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록을 참조하여 한자로 기입한다.

(예) 영산 김씨 : ①영산(永山) 김씨 ②영산(靈山) 김씨

○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본관이라도 1, 2나 신, 구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기입한다.

① 김해 김씨 1, 김해 김씨 2. ② 구 안동 김씨, 신 안동 김씨
③ 죽산 안씨, 신 죽산 안씨. ④ 신평 송씨 1, 신평 송씨 2
⑤ 연안 송씨 1, 연안 송씨 2, ⑥ 원주 이씨 1, 원주 이씨 2
⑦ 남양(당홍계) 홍씨, 남양(토홍계) 홍씨 등

[3] 성 별

[3]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남자 ② 여자	①남자 ② 여자

○ 성별을 반드시 기입한다.

[4] 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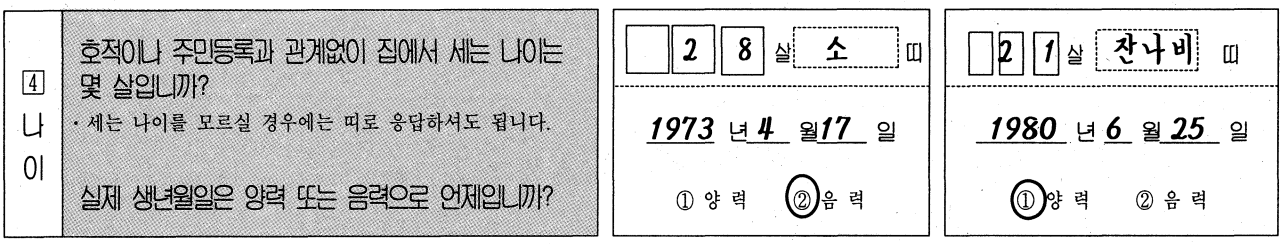

○ 주민등록(또는 호적)상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집에서 '세는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 세는 나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띠를 기입한다.

○ 생년월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 확인하여 빠짐없이 해당번호에 표시한다.

○ 띠, 나이, 출생년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연령조견표'를 참조하여 다시 확인한 후 수정한다.

○ 세는 나이와 띠중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연령조견표'에 의해 환산하여 기입한다.

[5] 교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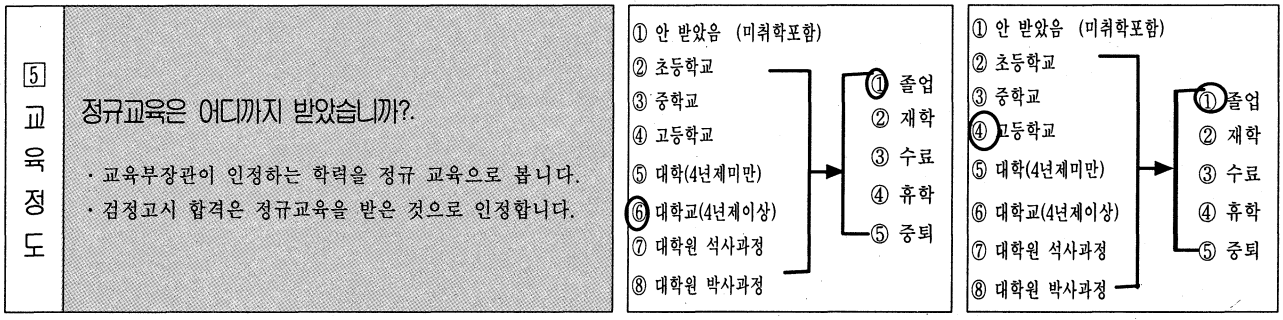

< 학 력 >

○ 응답자가 다닌 최종학교의 학력을 말한다.

○ 주·야간 구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각급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말한다. 단, 입시학원과 컴퓨터, 타자, 경리, 부기 및 운전기술학원 등은 정규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학은 4년제미만으로 구 전문대와 2~3년제 대학이 해당되며, 대학교는 4년제 학부이상을 말한다.

○ 대학원이상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교 육 상 태 >

○ 초등학교이상인 경우에는 졸업, 수료, 재학, 휴학, 중퇴 등 이수상태를 추가로 조사하여 기입한다.

○ 휴학은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복학할 예정인 경우에 해당된다.

○ 독학사 준비중인 사람은 대학교 재학으로 조사되어서는 안된다.

○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② 수료」에 표시한다.

⑹ 출 생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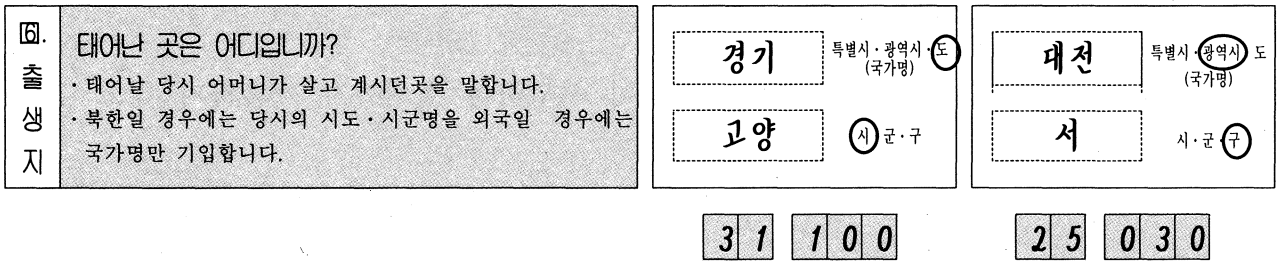

○ 출생지는 주민등록 또는 호적과 관계없이 출생 당시 어머니가 주로 살았던 곳을 말한다.

- 출산하였던 병원의 소재지나 임시로 애를 낳으러 간 어머니의 친정집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기입해서는 안된다.

○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당시의 북한지역 도명과 시군명을 기입한다.
(부록에는 1945년 해방당시의 행정구역명이 기재되어 있음)

○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한 국가명만을 기입한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출생 당시의 행정구역이 현재와 다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기준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예) '경기도 고양군' 출생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인 '경기도 고양시'로 기입

[7] 혼인상태

[7] 혼인상태	(16세 이상만 기입합니다)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상태에 ○표 합니다.	① 미 혼 ③ 사 별 ② 배우자 있음 ④ 이 혼	① 미 혼 ③ 사 별 ② 배우자 있음 ④ 이 혼

○ 세는나이 16세부터 기입한다.

- 15세 이하이면 해당항목에 사선(\) 처리한다.

○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현재의 혼인상태를 기입한다.

- 미 혼 : 지금까지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배우자 있음
  - 현재 배우자(처 또는 남편)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재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사 별
  - 혼인은 하였으나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장기간 실종된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별에 포함된다
- 이 혼
  - 혼인후 배우자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도 이혼에 포함된다

[8] 영외거주 여부

[8] 영외거주부	어디에서 거주하십니까 ?	① 영내거주 ② 영외거주	① 영내거주 ② 영외거주
	영내 또는 영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② 함께 살고 있음	①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② 함께 살고 있음

○ 영외거주여부와 가족동거여부의 해당되는 곳에 ○표한다.

[9] 본 가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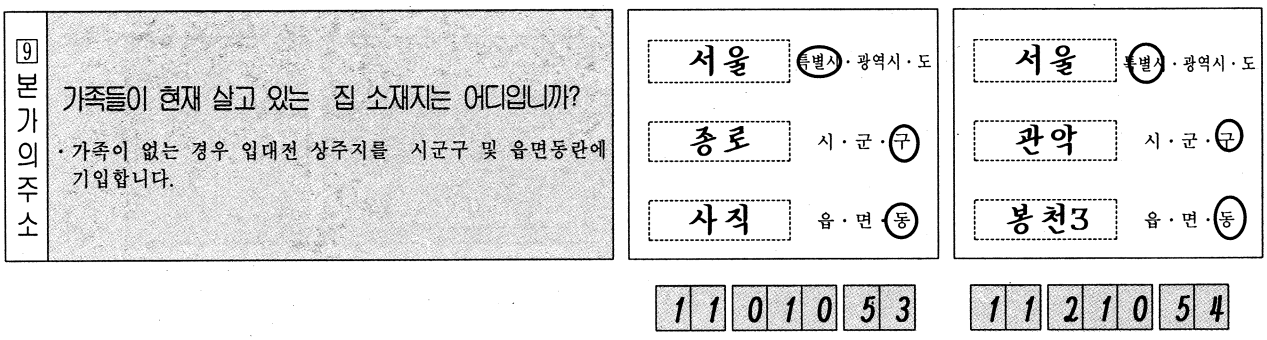

○ 가족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던 자는 입대 당시의 상주한 거주지 주소를 기입한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입대 당시의 행정구역이 현재와 다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기준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이 입대당시의 본가주소일 경우 현재는 사직동으로 통합('98. 10.)되었으므로 '서울 종로구 사직동'으로 기입

○ 시부의 경우에는 행정동,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동명(관할 동사무소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 관악구의 봉천3동(행정동)의 법정동명은 관악구 봉천동임
따라서 행정동명인 봉천3동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봉천동으로 기입해서는 안됨.

나. 교도소용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항목 이외 사항

ⓐ 기 관 명	ⓑ 조 사 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	ⓒ 조사인원수
대 전 교 도 소	70 부중 15 부	7

ⓓ 조사담당자	직 위	성 명
	교정7급	최 중 훈

ⓐ 기 관 명

법무부는 교도소 또는 소년원 등의 명칭(예:○○교도소),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의 명칭(예: ○○지방경찰청)을 기입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이라고 기입한다.

ⓑ 조사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

지정된 조사단위기관(교도소, 소년원,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취합된 조사표를 편철한 후 조사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단, 소속기관에서는 이 란을 작성하면 안된다.

(예) 경찰청의 경우 경찰서 보호실 유치인은 조사단위가 지방경찰청별이므로 소속 경찰서에서는 이란을 작성하면 안된다.

ⓒ 조사인원수

해당 조사표에 기재된 인원수를 기입한다.

※ 조사단위기관 전체의 인구수를 기입하면 안된다.

ⓓ 조사담당자

실지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직위와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2) 조사항목

[1] 성명 ~ [7] 혼인상태, [9] 본가주소

○ 군·전경대용 조사표 기입요령과 동일하다.

[8] 형의 확정여부

[8] 형의 확정여부	형의 확정여부를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기결 ② 미결 ┌ ① 단신자 └ ② 가족동거자	① 기결 ② 미결 ┌ ① 단신자 └ ② 가족동거자

○ 이 난은 경찰서, 보호실,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는 항목이다.

○ 기결, 미결을 반드시 구분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한다.

○ 미결일 경우에는 수감 또는 유치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 또는 가족이 없거나 따로 떨어져 혼자서 살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한다.

○ '단신자'란 현재 가족이 없거나 따로 떨어져 살았던 사람을 말하며, '가족동거자'란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감 또는 유치되기 전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에서 1호~5호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집으로 귀향조치되므로 미결에 ○표하고, 6호~7호 판결을 받은 경우는 소년원으로 송치되므로 기결에 ○표한다.

다. 재외공관용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항목 이외 사항

ⓐ 재외공관명	ⓑ 가 구 일련번호	ⓑ 가 구 당 조사표부수	ⓒ 가구원수
미 국 대 사 관	1 6	2 부중 1 부	8

ⓓ 조사담당자	직 위	성 명
	인사담당	조 성 준

ⓐ 재외공관명

해당 재외공관명이나 국제기구명을 기입한다.
(예)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KEDO 등

ⓑ 가구일련번호

조사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자의 해당 가구를 일련번호 순으로 기입한다.

ⓒ 가구당 조사표 부수

가구별로 소요된 총조사표 부수를 기입하고 이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예) 가구원수가 8명일 경우 첫째 조사표에는 2부중 1부, 둘째 조사표에는 2부중 2부로 기입한다.

ⓓ 가 구 원 수

가구별 총인원수를 기입한다.

ⓔ 조사담당자

실지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직위와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2) 조사항목

[1] 성명 , [2] 본관, [4] 성별~[9] 본국주소

○ 군·전경대용 조사표 기입요령과 동일하다.

[3] 가구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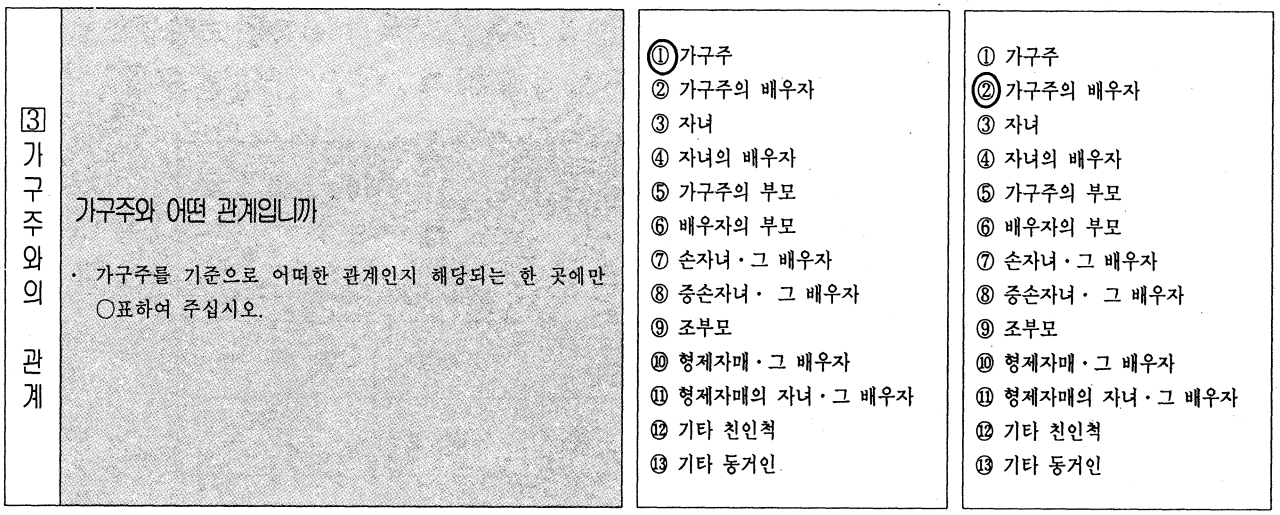

○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구원이 가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구주가 된다.

- 가구주와의 관계에 ○표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연장자 또는 대표자)을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⑬ 기타동거인에 ○표한다.

○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는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도 각각 해당된다.

○ '③ 자녀'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 '⑫ 기타 친인척'은 '③ ~ ⑪' 이외의 친인척이 해당된다.

라. 외국인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항목 이외 사항

(가) 사용된 언어

○ 어떤 언어로 된 조사표로 조사하였는지 '사용된 언어'란에 표시한다..

☑ 한국어, ☐ English, ☐ 中國語, ☐ 日本語, ☐ Indonesia, ☐ VietNam

(나)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부수, 가구원수, 가구구분

ⓐ

시·도	구·시·군	동·읍·면	통·리	966 번지 2 호
서 울	동 대 문	휘 경	8	동 호

ⓑ 조사구 번호	ⓒ 거처번호	ⓓ 가구번호	ⓔ 가 구 당 조사표부수	ⓕ가구원수	ⓖ 가구 구분
□□□-□	□□□	□□□	총 15부중 5 부	68 명	① 주인(대표)가구 ② 동거가구

ⓐ 주 소

외국인이 수용되어 있거나 보호되어 있는 시설의 소재지명칭을 기입한다.

ⓑ 조사구번호, ⓒ 거처번호, ⓓ 가구번호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선처리(\)한다.

ⓔ 가구당조사표 부수

지정된 조사단위기관(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교도소)에서의 조사표 총 부수와 이중 몇번째 부수에 해당되는지를 기입한다.

ⓕ 가구원수

지정된 조사단위기관의 총인원수를 기입한다.

즉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하나의 조사단위기관 이므로 각각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인원수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취합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총인원수를 기입한다.

ⓖ 가구구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선처리(\)한다.

(2) 조사항목

■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이름 및 성별

[1] 이름 및 성별	나타샤	줄리엣박	김영철
	①남 자 ②여 자	①남 자 ②여 자	①남 자 ②여 자

○ 이름이 기입되어야 한다.

○ 성별구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생년월일

[2] 생 년 월 일	1970년 4월 20일	1975년 6월 1일	1964년 9월 10 일

○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3] 교육정도

[3] 교 육 정 도			
	① 안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이상	① 안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이상	① 안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이상

○ 교육정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연수를 참고하여 조사하고, 중퇴, 휴학 및 재학은 해당 학력에 포함된다.((예)중학교 중퇴는 '③중학교'로 기입).

[4] 국 적

[4] 국 적			
	①중 국 ⑪방글라데시 ②중국(조선족) ⑫인 도 ③중국(대만) ⑬베트남 ④일 본 ⑭미 국 ⑤필리핀 ⑮캐나다 ⑥파키스탄 ⑯영 국 ⑦네 팔 ⑰프랑스 ⑧태 국 ⑱독 일 ⑨말레이시아 ⑲호 주 ⑩인도네시아 ⑳기 타(**러시아**)	①중 국 ⑪방글라데시 ②중국(조선족) ⑫인 도 ③중국(대만) ⑬베트남 ④일 본 ⑭미 국 ⑤필리핀 ⑮캐나다 ⑥파키스탄 ⑯영 국 ⑦네 팔 ⑰프랑스 ⑧태 국 ⑱독 일 ⑨말레이시아 ⑲호 주 ⑩인도네시아 ⑳기 타( )	①중 국 ⑪방글라데시 ②중국(조선족) ⑫인 도 ③중국(대만) ⑬베트남 ④일 본 ⑭미 국 ⑤필리핀 ⑮캐나다 ⑥파키스탄 ⑯영 국 ⑦네 팔 ⑰프랑스 ⑧태 국 ⑱독 일 ⑨말레이시아 ⑲호 주 ⑩인도네시아 ⑳기 타( )

○ 외국인의 해당국적에 표시하고, 해당 국가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기타' 란에 ○표하고 ( )내에 그 국가명을 기입토록 한다.

○ 한국인이라도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취득 국적에 표시한다.

○ 중국인은 반드시 '조선족'이나 '대만' 인 여부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5] 주된 체류목적

[5] 주된 체류 목 적			
	① 영 주 ② 취 업 ③ 종교활동 ④ 교육·훈련 ⑤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⑥ 친지방문 ⑦ 가족동반 ⑧ 기 타	① 영 주 ② 취 업 ③ 종교활동 ④ 교육·훈련 ⑤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⑥ 친지방문 ⑦ 가족동반 ⑧ 기 타	① 영 주 ② 취 업 ③ 종교활동 ④ 교육·훈련 ⑤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⑥ 친지방문 ⑦ 가족동반 ⑧ 기 타

○ 여권, 비자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입국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입국목적을 기입한다.

- 특히, 조선족, 동남아시아인이 친지방문, 관광으로 위장 입국한 후 취업을 한 경우에도 '②취업'에 해당된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목적을 기입한다(2개 이상의 체류목적이 있으면 주된 목적 하나에만 ○표 한다.)

○ '②취업'은 불법취업자도 포함된다.

○ '③종교활동'에는 선교목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

○ '④교육·훈련'에는 대학, 연구소,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해당된다.

- 훈련생(연수생)으로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학교와 학원 등에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교사, 강사 등은 '②취업'에 해당된다.

○ '⑤관광·사업차 일시방문'에서 사업차 방문은 국내에서의 취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간 계약, 협의, 고객상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⑥친지방문'은 일시적으로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⑦가족동반'은 본인의 체류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따라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6] 직 업

[6] 직 업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일하지 않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일하지 않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일하지 않음

○ **'⑪ 일하지 않음'**에 ○표 한다.

[7] 거주기간

[7] 거주기간	① 3개월 미만 (거주예정기간 : 년 개월) ② 3개월 ~ 6개월 ③ 6개월 ~ 1년미만 ④ 1년 ~ 5년미만 ⑤ 5년 ~ 10년미만 ⑥ 10년이상	① 3개월 미만 (거주예정기간 : 년 개월) ② 3개월 ~ 6개월 ③ 6개월 ~ 1년미만 ④ 1년 ~ 5년미만 ⑤ 5년 ~ 10년미만 ⑥ 10년이상	① 3개월 미만 (거주예정기간 : 년 *1* 개월) ② 3개월 ~ 6개월 ③ 6개월 ~ 1년미만 ④ 1년 ~ 5년미만 ⑤ 5년 ~ 10년미만 ⑥ 10년이상

○ 2000년 11월 1일 현재까지의 거주기간을 기입한다.

○ 거주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는 거주예정기간을 기입한다.

- 보호중인 외국인일 경우 본국송환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입한다.

■ 가구에 관한 사항 [1] ~ [5]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선처리(\)한다.

Ⅳ.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1.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기간

○ 2000. 11. 6 ~ 11. 12 (7일간)

2. 단계별 수행사항

가. 조사대상자의 누락 및 중복 확인

○ 조사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조사표 내용검토 및 각종부호 기입

○ 다음 순서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다.

- 조사항목 이외 사항
  기관명(재외공관명, 부대명), 조사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가구일련번호), 조사인원수(가구원수) 등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항목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하여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내용검토가 끝난 조사표는 다음 항목에 대한 부호를 기입한다.

- 조사항목 : 성씨, 본관, 출생지, 본가(국)주소

다.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3.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요령

가. 조사항목 이외 사항

(1) 군·전경대용 , 교도소용 조사표

○ 조사표 표지는 해당 조사표를 타 조사표와 구분하는 중요부분이므로 절대 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철저히 내검해야 한다.

○ 조사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

- 조사표 총부수 및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기입 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인원수: 해당 조사표상에 기재된 인원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재외공관용 조사표

○ 가구일련번호 : 가구일련번호 순으로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당 조사표 부수

- 일반적으로 조사표가 1부 사용되나 일부 가구의 경우(가구원이 7명이상) 조사표를 2부 이상 사용한다.
- 조사표를 2부이상 사용한 가구의 경우 조사표 부수가 맞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수 : 조사표상의 가구원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외국인 조사표

○ 주소 : 해당기관명의 소재지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 사선처리(\)한다.

○ 가구당 조사표부수 : 조사 단위기관 전체의 조사표 부수와 해당 조사표 부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수 : 조사단위기관의 총인원수를 기입하였는지 확인한다.

○ 가구구분 : 사선처리(\)한다.

나. 조사항목

(1) 성명, 본관

○ 성명 및 본관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확인한다

○ 성씨와 본관을 부록에서 찾아 해당 부호를 붉은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 성씨 또는 본관이 부록에 없는 경우 재확인하고, 틀린 경우 수정 기입하고 성씨 및 본관 부호를 기입한다

○ 재확인하여도 부록에 없을 경우에는 '999'로 부호기입하고, 몰라서 공란으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000'으로 부호기입한다.

○ 성씨 3자리, 본관 3자리이므로 부록을 참조하여 부호를 기입한다.

(예) 전주 이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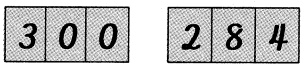

(2) 가구주와의 관계(재외공관용 조사표)

○ 가구별로 가구주는 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가구주가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한 가구에 ①가구주가 한 명이어야 한다

○ ①가구주와 ②가구주의 배우자의 성별은 달라야 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가 ②④⑤⑥⑨인 경우 연령이 16세이상 이어야 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가 ②④⑤⑥⑨인 경우 혼인상태가 ①미혼이면 안된다

(3) 성별

○ 남자, 여자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기본적인 사항이라 조사담당자가 소홀히 하는 부분으로, 누락 가능성이 많으므로 내검시 누락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4) 나이

○ 많이 누락되는 양·음력이 기재되었는가 확인한다

○ 부록의 연령조견표를 참고하여 세항목(세는나이, 띠, 출생년월일)이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세 항목 중 두 항목이 일치하는 경우 두 항목을 기준으로 나머지 한 항목을 수정한다

(5) 교육정도

○ 교육정도가 ①미취학(안받았음)인 경우 교육상태(①졸업-⑤중퇴)에 기입되면 안된다

○ 교육정도가 ②초등학교-⑧대학원박사과정인 경우 교육상태(①졸업-⑤중퇴)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에 자녀가 재학인 경우 교육상태의 ③재학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6) 혼인상태

○ 세는나이 16세이상인 경우에만 기입함에 유의한다

- 세는나이 16세미만인 사람이 기입한 경우는 나이를 재확인하여 나이가 맞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사선(\)을 긋고, 나이가 틀린 경우에는 나이를 수정한다

○ 누락이 있는가 확인하고 누락인 경우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여 기입한다

(7) 영외 거주여부(군 · 전경대용 조사표)

○ 조사대상자가 영외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누락이 되었는가 확인한다.

○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에 기입하지 않은 조사표가 있으면 확인하여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

(8) 형의 확정여부(교도소용 조사표)

○ **미결 또는 기결에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미결일 경우에는 반드시 '단신자' 또는 '가족동거자'란에 표시가 있어야 한다.

(9) 출생지

○ 반드시 현재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입해야 하고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입되어 있으면 확인하여 수정한다.

○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이므로 부록을 참조하여 부호를 기입한다.

(예) 대전광역시 서구

2	5		0	3	0

○ 단, 북한일 경우에는 당시 행정구역명으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10) 본가(본국) 주소

○ 행정동명이 아닌 법정동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행정동명(관할 동사무소명)으로 수정하여 기입한다.

○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던 자라도 입영, 부임 또는 수감 당시의 거주지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2자리이므로 부록을 참조하여 부호를 기입한다.

(예) 서울 종로구 사직동

1	1		0	1	0		5	3

4. 조사표류 정리

가. 조사표 표지

(1) 조사표 표지의 작성

○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이 끝난 조사표는 조사단위기관별로 조사표 표지로 편철한다.

○ 외국인 조사는 부처 실정에 따라 본부(법무부), 본청(해양경찰청), 지방청(경찰청)별로 조사단위가 설정되어 있는 곳은 소속기관에서 조사표 표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본부, 본청, 지방청에서 조사표 표지로 철한다.

○ 조사표 유형이 같은 것끼리 철을 한다.

(예) 교도소의 경우 군·전경대용 조사표(경비교도)와 교도소용 조사표(재소자)를 같이 편철하면 안된다.

○ 조사표를 80부 단위로 조사표 표지로 편철을 한다.

- 조사표 부수가 80부 이상일 때는 별도의 조사표 표지를 사용한다.

(2) 기입방법

<조사표 표지>

ⓐ조사표 유형	① 재외공관용 ③ 교도소용 ② 군·전경대용 ④ 외국인용

ⓑ부 처 명	국 방 부	권번호	ⓓ 총 □2권중 □1 권
ⓒ기관(부대)명	육군○○○○부대		

ⓔ조 사 인 원 수			ⓕ조사표 총부수 (총가구수)
계	남	여	
732	732	0	80 부 (가구)

ⓖ통 계 청 기 입 란					
기관번호	조사구 번호	구 분	1차 내검	2차내검	3차내검
□	□□□□	내 검 요 원			
		지 도 원			
		지도 공무원			

ⓐ 조사표 유형
조사표가 어느 유형의 조사표인지 해당되는 곳에 ○표한다.
조사표가 다르면 조사표 표지를 따로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부처명 : 해당 부처(청)명을 기입한다.

ⓒ 기관(부대)명 : 조사단위기관명을 기입한다.
(예) ○○대사관, 육군 ○○○○부대, ○○교도소, ○○지방경찰청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

ⓓ 권번호 : 해당 기관(부대)의 조사표 권수를 기입한다.
(예) 2권일 경우 2권중 1권, 2권중 2권이라고 기입한다.

ⓔ 조사인원수 : 조사된 인원수를 계, 남, 여별로 기입한다.

ⓕ 조사표 총부수(총가구수)
조사표 총부수(군·전경대용 조사표, 교도소용 조사표,외국인 조사표)나 총가구수(재외공관용 조사표)를 기입한다.

ⓖ 통계청 기입란 : 통계청에서 기입하는 란이므로 공란으로 놔 둔다

나. 접수대장

(1) 접수대장의 작성

○ 각 조사단위기관(부대, 수용시설,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등)은 조사표와 조사표 표지를 참조하여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차상급기관에 조사표와 함께 제출한다.

○ 차상급 기관부터 지휘계통에 의거 소속기관의 접수대장을 취합하고 조사표와 함께 제출한다.

○ 접수대장을 작성할 시는 건재순으로 작성한다.

○ 접수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다른 1부는 차상급기관에 제출한다.

(2) 기입방법

< 접수대장>

ⓐ 소속기관명	ⓑ 회수용 상자수	ⓒ 조사표권수				ⓓ 조사표 총부수 (총가구수)	ⓔ 조사인원수(가구원수)		
		재외공관용	군·전경대용	교도소용	외국인용		계	남	여
○○○○부대			3			250	2,315	2,313	2
△△△△부대			4			340	3,210	3,210	
□□□□부대			4			350	3,350	3,350	
~									
계			18			1,260	11,915	11,913	2

ⓕ제출기관장 : 육군××××부대장 (인)

ⓐ 소속기관명 : 제출하는 기관의 소속기관명을 기입한다.
(예) 연대에서 작성할 시는 소속 대대명을 기입한다.

ⓑ 회수용상자수 : 회수용 상자수를 기입한다.

ⓒ 조사표권수 : 소속기관의 조사표 권수를 조사표 유형별로 기입한다.

ⓓ 조사표 총부수(총가구수) : 소속기관별 조사표 총부수(총가구수)를 기입한다.

ⓔ 조사인원수 (가구원수) : 소속기관의 조사인원수를 기입한다.

ⓕ 제출기관장 : 접수대장을 제출하는 기관장의 직인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

라. 조사표 회수용 상자

(1) 조사표 회수용 상자는 통계청에 직접 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사용한다.

○ 외교통상부 : 각 재외공관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본부에서 취합하여 회수용 상자로 포장한다.

○ 국 방 부 : 각 군 또는 각 사령부별로 조사표를 접수하여 회수용상자로 포장한다.

○ 법 무 부 : 교정국에서는 지방교정청별로 소속 교정시설의 조사표를 접수하여 회수용상자로 포장하고, 보호국과 출입국관리국은 본부에서 소속 수용시설의 조사표를 접수하여 회수용 상자로 포장한다.

○ 경 찰 청 :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서나 전투경찰대, 기동타격대, 방범순찰대, 유치장의 조사표를 접수하여 회수용 상자로 포장한다.

○ 해양경찰청 : 본청에서 소속 해양경찰서의 조사표를 접수하여 회수용 상자로 포장한다.

(2) 기입방법

<조사표 회수용 상자>

<table>
<tr><td>ⓐ 부 처 명</td><td colspan="3">국 방 부</td></tr>
<tr><td>ⓑ 기 관 명</td><td colspan="3">육군 ○○○○부대</td></tr>
<tr><td rowspan="5">ⓒ 상자일련번호</td><td rowspan="5">□2 상자중
□1 번째</td><td>조사표 유형</td><td>ⓓ 조사표 권수</td></tr>
<tr><td>① 군인·전경·경비교도용</td><td>□8 권</td></tr>
<tr><td>② 교 도 소 용</td><td>□□권</td></tr>
<tr><td>③ 재외공관용</td><td>□□권</td></tr>
<tr><td>④ 외 국 인 용</td><td>□□권</td></tr>
</table>

ⓐ 부 처 명 : 해당 부처(청)명을 기입한다.

ⓑ 기 관 명 : 해당기관명을 기입한다.

ⓒ 상자일련번호

회수용상자를 사용하는 기관의 총상자수와 상자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예) 국방부 육군 ○○○○부대가 회수용 상자가 2개일 경우에 '2상자중 2번째'라고 기입한다

ⓓ 조사표권수 : 조사표 유형별로 조사표 권수를 기입한다.

5. 조사표 제출

가. 조사표 수집(각 부처(청))

각 조사단위기관의 조사담당자는 2000년 11월 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12일까지 조사표 내용기입에 누락, 오기 등이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부호기입하고, 조사표를 11월 19일까지 지휘계통에 의거 소속 장관(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한다.

○ 자체시행계획에 의거 조사표를 수집한다.

나. 조사표 제출(통계청)

해당 각 부(청)의 장관(청장)은 각 조사단위기관의 책임자가 작성 제출한 조사표와 접수대장에 의거 종합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조사표와 함께 11월 22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접수방법

○ 접수대장에 기입된 회수용 상자수와 실제 조사표 권수 일치여부 확인

○ 전체중 10%를 선정 조사 내용 확인

라. 제출(또는 접수)할 조사표류

○ **외교통상부(2종)** : '재외공관용'조사표, 접수대장

○ **국 방 부(2종)** : '군·전경대용'조사표, 접수대장

○ **법 무 부(4종)** : '군·전경대용'조사표, '교도소용'조사표, '외국인'조사표, 접수대장

○ **경 찰 청(4종)** : 군·전경대용'조사표, '교도소용' 조사표, '외국인'조사표, 접수대장

○ **해양경찰청(4종)** : 군·전경대용'조사표, '교도소용' 조사표, '외국인'조사표, 접수대장

부 록

Ⅰ.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51

1. 성씨 분류 부호 54
2.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55

Ⅱ. 연령조견표 79

Ⅲ. 행정구역 분류 부호 81

1. 시군구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84
2. 읍면동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86
   ① 서울특별시 86
   ② 부산광역시 89
   ③ 대구광역시 91
   ④ 인천광역시 92
   ⑤ 광주광역시 93
   ⑥ 대전광역시 94
   ⑦ 울산광역시 95
   ⑧ 경 기 도 96
   ⑨ 강 원 도 99
   ⑩ 충청북도 101
   ⑪ 충청남도 102
   ⑫ 전라북도 104
   ⑬ 전라남도 106
   ⑭ 경상북도 108
   ⑮ 경상남도 110
   ⑯ 제 주 도 112

일 러 두 기

1. 부호를 기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색볼펜 사용

※ 싸인펜이나 플러스펜은 글씨가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금지

2. 기재누락일 경우에는 '000'으로, 미상(부호집에 없음)일 경우에는 '999'로 표시.

※ 조사표 내검시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3. 부호기입할 항목

성씨, 본관, 출생지, 본가(국)의 주소

Ⅰ.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1. 성씨 분류 부호 54
2.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55

일 러 두 기

1. 개요

가. 수록된 성씨 수 : 275개(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조사된 성씨)

나. 소멸된 성씨나 1985년 이후 생성된 성씨는 미수록

2. 부호기입시 유의사항

가. 성씨 3자리, 본관 3자리를 부호표에서 찾아 붉은색 볼펜으로 기입

나. 가나다순 또는 크기순(18 성씨)으로 수록하였으므로 편의대로 사용.

다. 음은 같은데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 기입

① 영산 김씨 : 永山 - 김영이의 후손, 靈山 - 김순의 후손
② 영천 이씨 : 寧川, 永川

라. 같은 본관이라도 1,2나 신구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기입.

① 김해 김씨1 (선김) : 김수로왕의 후손
김해 김씨2 (후김) : ⓐ 김녕김씨(신라 경순왕의 8세손인 시흥의 후손)
ⓑ 우록김씨(임진왜란때 귀화한 김충선(사사끼)의 후손)

② 구 안동김씨 : 김알지의 28세손 김숙승의 후손. 김방경을 중시조로 함
신 안동김씨 :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김선평의 후손. 김극효를 중시조로 함

③ 신평 송씨 1 : 송구진의 후손
신평 송씨 2 : 송구진의 후손인 송자은의 후손

④ 연안 송씨 1 : 경의 후손
연안 송씨 2 : 한의 후손

⑤ 죽산 안씨 : 안방준(이지춘)의 후손
신죽산안씨 : 안방걸(이엽춘,광주안씨의 시조)의 17세손이며
안자미(순흥안씨의 시조)의 7세손인 안원형의 후손

⑥ 원주 이씨 1 : 신우의 후손으로 경주이씨에서 분적
원주 이씨 2 : 춘계의 후손

⑦ 남양홍씨(당홍) : 당나라 8학사의 한사람으로 고구려때 귀화한 홍천하의 후손으로 고려 초기의 홍은열을 시조로 함
남양홍씨(토홍) : 고려 고종때의 홍선행의 후손

1. 성씨 분류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가(賈)	111	노(魯)	157	범(凡)	203	신(申)	249	유(劉)	295	채(菜)	341
간(簡)	112	노(路)	158	변(卞)	204	신(辛)	250	육(陸)	296	채(采)	342
갈(葛)	113	뇌(賴)	159	변(邊)	205	신(愼)	251	윤(尹)	297	천(千)	343
감(甘)	114	뇌(雷)	160	복(卜)	206	심(沈)	252	은(殷)	298	천(天)	344
강(姜)	115	누(樓)	161	봉(奉)	207	십(辻)	253	음(陰)	299	초(楚)	345
강(康)	116	단(段)	162	봉(鳳)	208	아(阿)	254	이(李)	300	초(肖)	346
강(彊)	117	단(單)	163	부(夫)	209	안(安)	255	이(異)	301	초(初)	347
강(強)	118	단(端)	164	부(傅)	210	애(艾)	256	이(伊)	302	최(崔)	348
강(剛)	119	담(譚)	165	비(丕)	211	야(夜)	257	인(印)	303	추(秋)	349
강전(岡田)	120	당(唐)	166	빈(賓)	212	양(梁)	258	임(林)	304	추(鄒)	350
개(介)	121	대(大)	167	빈(彬)	213	양(楊)	259	임(任)	305	춘(椿)	351
견(甄)	122	도(都)	168	빙(冰)	214	양(樑)	260	자(慈)	306	탁(卓)	352
견(堅)	123	도(陶)	169	사(史)	215	양(襄)	261	장(張)	307	탄(彈)	353
경(慶)	124	도(道)	170	사(舍)	216	어(魚)	262	장(蔣)	308	태(太)	354
경(景)	125	독고(獨孤)	171	사(謝)	217	어금(魚金)	263	장(章)	309	판(判)	355
계(桂)	126	돈(頓)	172	사공(司空)	218	엄(嚴)	264	장(莊)	310	팽(彭)	356
고(高)	127	돈(敦)	173	삼(森)	219	여(呂)	265	장곡(長谷)	311	편(片)	357
곡(曲)	128	동(董)	174	상(尙)	220	여(余)	266	저(邸)	312	편(扁)	358
공(孔)	129	동방(東方)	175	서(徐)	221	여(汝)	267	전(全)	313	평(平)	359
공(公)	130	두(杜)	176	서(西)	222	연(延)	268	전(田)	314	포(包)	360
곽(郭)	131	두(頭)	177	서문(西門)	223	연(連)	269	전(錢)	315	표(表)	361
교(橋)	132	마(馬)	178	석(石)	224	연(燕)	270	점(占)	316	풍(馮)	362
구(具)	133	마(麻)	179	석(昔)	225	염(廉)	271	정(鄭)	317	피(皮)	363
구(丘)	134	만(萬)	180	선(宣)	226	영(永)	272	정(丁)	318	필(弼)	364
구(邱)	135	망절(網切)	181	선우(鮮于)	227	영(榮)	273	정(程)	319	하(河)	365
국(鞠)	136	매(梅)	182	설(薛)	228	영(影)	274	제(諸)	320	하(夏)	366
국(國)	137	맹(孟)	183	설(偰)	229	예(芮)	275	제(齊)	321	학(郝)	367
국(菊)	138	명(明)	184	섭(葉)	230	오(吳)	276	제갈(諸葛)	322	한(韓)	368
군(君)	139	모(牟)	185	성(成)	231	옥(玉)	277	조(趙)	323	한(漢)	369
궁(弓)	140	모(毛)	186	성(星)	232	온(溫)	278	조(曺)	324	함(咸)	370
궉(喬)	141	목(睦)	187	소(蘇)	233	옹(邕)	279	종(鍾)	325	해(海)	371
권(權)	142	묘(苗)	188	소(邵)	234	옹(雍)	280	종(宗)	326	허(許)	372
근(斤)	143	묵(墨)	189	소봉(小峰)	235	왕(王)	281	좌(左)	327	현(玄)	373
금(琴)	144	문(文)	190	손(孫)	236	요(姚)	282	주(朱)	328	형(邢)	374
기(奇)	145	미(米)	191	송(宋)	237	용(龍)	283	주(周)	329	호(扈)	375
기(箕)	146	민(閔)	192	송(松)	238	우(于)	284	준(俊)	330	호(胡)	376
길(吉)	147	박(朴)	193	수(水)	239	우(禹)	285	지(池)	331	호(鎬)	377
김(金)	148	반(班)	194	수(洙)	240	운(雲)	286	지(智)	332	홍(洪)	378
나(羅)	149	반(潘)	195	순(荀)	241	운(芸)	287	진(陳)	333	화(化)	379
난(欒)	150	방(龐)	196	순(舜)	242	원(元)	288	진(秦)	334	환(桓)	380
남(南)	151	방(方)	197	순(淳)	243	원(袁)	289	진(晋)	335	황(黃)	381
남궁(南宮)	152	방(房)	198	순(順)	244	위(魏)	290	진(眞)	336	황보(皇甫)	382
낭(浪)	153	방(邦)	199	승(承)	245	위(韋)	291	차(車)	337	후(后)	383
내(奈)	154	배(裵)	200	승(昇)	246	유(柳)	292	창(昌)	338	후(候)	384
내(乃)	155	백(白)	201	시(施)	247	유(兪)	293	창(倉)	339	흥(興)	385
노(盧)	156	범(范)	202	시(柴)	248	유(庾)	294	채(蔡)	340		

2.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가 ~ 고)

본관	부호
가(賈)	111
소주(소성)	111 111
미상	111 000
기타	111 999
간(簡)	112
가평	112 111
경주	112 112
남양	112 113
서산	112 114
양양	112 115
영광	112 116
인동	112 117
해주	112 118
미상	112 000
기타	112 999
갈(葛)	113
남양	113 111
대구	113 112
비안곡	113 113
양성	113 114
양주	113 115
죽장	113 116
청산	113 117
청주(서원)	113 118
청풍	113 119
해남	113 120
미상	113 000
기타	113 999
감(甘)	114
거창	114 111
부령	114 112
창녕	114 113
창원	114 114
충주	114 115
합포	114 116
회산	114 117
미상	114 000
기타	114 999
강(姜)	115
강릉	115 111
경주	115 112
곡성	115 113
광주	115 114
금천	115 115
김해	115 116
나주	115 117
남양	115 118
대전	115 119
동래	115 120
밀양	115 121
배천(白川)	115 122
보주	115 123
보천	115 124
부산	115 125
불갑	115 126
성주	115 127
수산	115 128
수원	115 129
순흥	115 130
시흥	115 131
안동	115 132
여천	115 133
연일	115 134
원주	115 135
인동	115 136
전주	115 137
제주	115 138
진주(진양)	115 139
충주	115 140
평양	115 141
해미	115 142
미상	115 000
기타	115 999
강(康)	116
강령	116 111
곡산	116 112
밀양	116 113
상원	116 114
신천	116 115
용인	116 116
운남	116 117
원주	116 118
임실	116 119
재령(안릉)	116 120
진주	116 121
충주	116 122
파주	116 123
평양	116 124
함덕	116 125
미상	116 000
기타	116 999
강(彊)	117
진주	117 111
미상	117 000
기타	117 999
강(強)	118
괴산	118 111
충주	118 112
미상	118 000
기타	118 999
강(剛)	119
곡산	119 111
미상	119 000
기타	119 999
강전(岡田)	120
없음	120 100
개(介)	121
여주	121 111
미상	121 000
기타	121 999
견(甄)	122
경주	122 111
상주	122 112
안주	122 113
전주	122 114
청양	122 115
황간	122 116
미상	122 000
기타	122 999
견(堅)	123
김포	123 111
사량(수원)	123 112
여주	123 113
천녕	123 114
미상	123 000
기타	123 999
경(慶)	124
청주	124 111
미상	124 000
기타	124 999
경(景)	125
경주	125 111
능향	125 112
밀양	125 113
복흥(장수)	125 114
시산	125 115
장연	125 116
충주	125 117
태인	125 118
해주	125 119
미상	125 000
기타	125 999
계(桂)	126
수안	126 111
미상	126 000
기타	126 999
고(高)	127
강릉	127 111
강화	127 112
개성	127 113
경주	127 114
고령	127 115
고봉(고양)	127 116
고성	127 117
고창	127 118
고흥	127 119
광주	127 120
김해	127 121
김화	127 122
남양	127 123
담양	127 124
대전	127 125
상당	127 126
안동	127 127
연안	127 128
연주	127 129
영월	127 130
영천	127 131
옥구	127 132
용담	127 133
의령	127 134
장성	127 135
장안	127 136
장택	127 137
장흥	127 138
전주	127 139
제주	127 140
진주	127 141
창평	127 142
청주	127 143
충주	127 144
토산	127 145
해주	127 146
홍성	127 147

(고 ~ 김)

본관	부호
횡성	127 148
미상	127 000
기타	127 999
곡(曲)	128
용궁(예천)	128 111
미상	128 000
기타	128 999
공(孔)	129
경주	129 111
고산	129 112
곡부	129 113
대구	129 114
수원	129 115
전주	129 116
창녕	129 117
창원	129 118
미상	129 000
기타	129 999
공(公)	130
김포	130 111
문천	130 112
미상	130 000
기타	130 999
곽(郭)	131
경주	131 111
고흥	131 112
동래	131 113
밀양	131 114
봉산	131 115
선산	131 116
성산	131 117
성주	131 118
소래	131 119
여미	131 120
연일	131 121
의성	131 122
전주	131 123
진주	131 124
청주	131 125
청풍	131 126
충주	131 127
포산	131 128
풍산	131 129
함평	131 130
해미	131 131
현량	131 132
현풍	131 133
미상	131 000
기타	131 999
교(橋)	132
진주	132 111
미상	132 000
기타	132 999
구(具)	133
강릉	133 111
공주	133 112
능성	133 113
능주	133 114
달성	133 115
담양	133 116
명성	133 117
문성	133 118
승주	133 119
신안	133 120
연성	133 121
영주	133 122
전주	133 123
제주	133 124
창녕	133 125
창원	133 126
평해	133 127
회산	133 128
미상	133 000
기타	133 999
구(丘)	134
평해	134 111
미상	134 000
기타	134 999
구(邱)	135
은진	135 111
미상	135 000
기타	135 999
국(鞠)	136
담양	136 111
대구	136 112
복성(보성)	136 113
부령	136 114
영광	136 115
진주	136 116
미상	136 000
기타	136 999
국(國)	137
금성	137 111
담양	137 112
대명	137 113
영양	137 114
전주	137 115
풍천	137 116
현풍	137 117
미상	137 000
기타	137 999
국(菊)	138
영광	138 111
미상	138 000
기타	138 999
군(君)	139
남원	139 111
미상	139 000
기타	139 999
궁(弓)	140
토산(상원)	140 111
미상	140 000
기타	140 999
궉(鳶)	141
선산	141 111
순창	141 112
청주	141 113
미상	141 000
기타	141 999
권(權)	142
강릉	142 111
경주	142 112
광산	142 113
대전	142 114
밀양	142 115
안동	142 116
안성	142 117
예천	142 118
전주	142 119
진주	142 120
청주	142 121
미상	142 000
기타	142 999
근(斤)	143
청주	143 111
미상	143 000
기타	143 999
금(琴)	144
강화	144 111
계양(김포)	144 112
보성	144 113
봉화	144 114
안동	144 115
평해	144 116
미상	144 000
기타	144 999
기(奇)	145
경주	145 111
장성	145 112
행주	145 113
미상	145 000
기타	145 999
기(箕)	146
행주	146 111
미상	146 000
기타	146 999
길(吉)	147
경주	147 111
금산	147 112
남원	147 113
부화	147 114
서산	147 115
선산	147 116
성산	147 117
해평	147 118
미상	147 000
기타	147 999
김(金)	148
가평	148 111
감천	148 112
강남	148 113
강동	148 114
강릉	148 115
강서	148 116
강원	148 117
강주	148 118
강진	148 119
강화	148 120
개성	148 121
거창	148 122
결성	148 123
경기	148 124
경남	148 125
경북	148 126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경산	148 127	대전	148 173	성천	148 219	영주	148 265
경상	148 128	덕산	148 174	수성	148 220	영천	148 266
경주	148 129	덕수	148 175	수안	148 221	영해	148 267
계림	148 130	도강	148 176	수원	148 222	예산	148 268
고령	148 131	도광	148 177	수주	148 223	예안	148 269
고부	148 132	동래	148 178	순창	148 224	예천	148 270
고산	148 133	동양	148 179	순천	148 225	오천(연일)	148 271
고성	148 134	등주	148 180	순흥	148 226	옥산	148 272
고양	148 135	무송	148 181	승산	148 227	옥천	148 273
곡성	148 136	무안	148 182	승평	148 228	온양	148 274
곤양	148 137	무장	148 183	신성	148 229	온전	148 275
공주	148 138	무주	148 184	신안	148 230	완산	148 276
광명	148 139	문경	148 185	신천	148 231	용광	148 277
광산	148 140	문산	148 186	신평	148 232	용궁	148 278
광성	148 141	문화	148 187	*안동(구)	148 233	용담	148 279
광양	148 142	밀양	148 188	*안동(신)	148 234	용산	148 280
광주	148 143	방산	148 189	안로	148 235	용성	148 281
광천	148 144	배천(白川)	148 190	안산	148 236	용안	148 282
광해	148 145	별성	148 191	안성	148 237	우록	148 283
괴산	148 146	보령	148 192	안악	148 238	우봉	148 284
교하	148 147	보성	148 193	안양	148 239	울산	148 285
구례	148 148	봉산	148 194	안흥	148 240	웅천	148 286
금릉	148 149	봉화	148 195	야성(영덕)	148 241	원양	148 287
금산	148 150	부안(부령)	148 196	양근	148 242	원주	148 288
금성	148 151	부여	148 197	양금	148 243	월성	148 289
금정	148 152	부평	148 198	양산	148 244	유성	148 290
금평	148 153	북실	148 199	양주	148 245	은성	148 291
김녕	148 154	분성	148 200	양평	148 246	은율	148 292
김제	148 155	사창	148 201	언양	148 247	은진	148 293
김천	148 156	사천	148 202	여주	148 248	의령	148 294
*김해1	148 157	삼척	148 203	연기	148 249	의성	148 295
*김해2	148 158	상산	148 204	연산	148 250	의주	148 296
김화	148 159	상승	148 205	연성	148 251	의흥	148 297
나주	148 160	상주	148 206	연안	148 252	이양	148 298
낙안	148 161	서산	148 207	연주	148 253	이천	148 299
남양	148 162	서울	148 208	연풍	148 254	인동	148 300
남원	148 163	서흥	148 209	염포	148 255	인천	148 301
남평	148 164	선산(일선)	148 210	영광	148 256	일성	148 302
남포	148 165	선성	148 211	영동	148 257	임진	148 303
능주	148 166	설성	148 212	*영산(永山)	148 258	임피	148 304
달성	148 167	성남	148 213	*영산(靈山)	148 259	장성	148 305
담양	148 168	성산	148 214	영상	148 260	장수	148 306
당산	148 169	성선	148 215	영암	148 261	장연	148 307
당악(남해)	148 170	성은	148 216	영양	148 262	장학	148 308
대구	148 171	성의	148 217	영월	148 263	장흥	148 309
대영	148 172	성주	148 218	영일	148 264	적성	148 310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전남	148 311	평강	148 357	안동	149 118	내(乃)	155
전북	148 312	평산	148 358	안정	149 119	개성	155 111
전의	148 313	평양	148 359	의성	149 120	미상	155 000
전주	148 314	평창	148 360	장성	149 121	기타	155 999
정산	148 315	평택	148 361	전주	149 122	노(盧)	156
정선	148 316	평해	148 362	정산	149 123	강화	156 111
정읍	148 317	풍기	148 363	진주	149 124	경주	156 112
정주	148 318	풍덕	148 364	해주	149 125	고성	156 113
제주	148 319	풍산	148 365	미상	149 000	곡산	156 114
죽산	148 320	풍천(영유)	148 366	기타	149 999	광산	156 115
중화	148 321	하음	148 367	난(欒)	150	광성	156 116
진도	148 322	한남	148 368	충주	150 111	광주	156 117
진산	148 323	한산	148 369	미상	150 000	광진	156 118
진성	148 324	한성	148 370	기타	150 999	교하	156 119
진영	148 325	함녕	148 371	남(南)	151	김해	156 120
진위	148 326	함안	148 372	경주	151 111	나주	156 121
진잠	148 327	함양	148 373	고령	151 112	남원(용성)	156 122
진장	148 328	함창	148 374	고성	151 113	달성	156 123
진주	148 329	함평	148 375	남양	151 114	대전	156 124
진천	148 330	함흥	148 376	남원	151 115	동성(통진)	156 125
진해	148 331	합천	148 377	남평	151 116	만경	156 126
창녕	148 332	해남	148 378	밀양	151 117	서산	156 127
창원	148 333	해동	148 379	보성	151 118	서하	156 128
창평	148 334	해주	148 380	안동	151 119	서해	156 129
천안	148 335	해평	148 381	영양	151 120	선산	156 130
철성	148 336	해풍	148 382	율영	151 121	수원	156 131
철원	148 337	현풍	148 383	의령	151 122	신창	156 132
청덕	148 338	홍주	148 384	일흥	151 123	신평	156 133
청도	148 339	홍천	148 385	진주	151 124	안강	156 134
청산	148 340	화성	148 386	창녕	151 125	안동	156 135
청송	148 341	화순	148 387	함열	151 126	연일	156 136
청양	148 342	황산	148 388	해밀	151 127	영광	156 137
청주	148 343	황주	148 389	미상	151 000	장연	156 138
청평	148 344	흥덕	148 390	기타	151 999	장인	156 139
청풍	148 345	흥해	148 391	남궁(南宮)	152	재현	156 140
초계	148 346	희천	148 392	함열(익산)	152 111	전주	156 141
춘양	148 347	미상	148 000	미상	152 000	조행	156 142
춘천	148 348	기타	148 999	기타	152 999	진주	156 143
충남	148 349	나(羅)	149	낭(浪)	153	창녕	156 144
충주	148 350	경주	149 111	양주	153 111	청도	156 145
칠원	148 351	군위	149 112	미상	153 000	청주	156 146
태원	148 352	금성	149 113	기타	153 999	충주	156 147
토산	148 353	김해	149 114	내(奈)	154	풍천	156 148
통천	148 354	나주	149 115	나주	154 111	한양	156 149
파주	148 355	비안	149 116	미상	154 000	함양	156 150
파평	148 356	수성	149 117	기타	154 999	함평	156 151

본관	부호
해주	156 152
미상	156 000
기타	156 999
노(魯)	157
강화	157 111
경주	157 112
고환	157 113
광만	157 114
광주	157 115
규환	157 116
만경	157 117
밀양	157 118
진주	157 119
충주	157 120
함종	157 121
함평	157 122
함흥	157 123
미상	157 000
기타	157 999
노(路)	158
개성	158 111
대원	158 112
북청	158 113
태원(충주)	158 114
미상	158 000
기타	158 999
뇌(賴)	159
없음	159 100
뇌(雷)	160
교동(강화)	160 111
미상	160 000
기타	160 999
누(樓)	161
없음	161 100
단(段)	162
가음	162 111
강릉	162 112
강음(김천)	162 113
고산	162 114
서촉	162 115
연안	162 116
전주	162 117
청주	162 118
화산	162 119
황주	162 120
미상	162 000
기타	162 999
단(單)	163
연안	163 111
미상	163 000
기타	163 999
단(端)	164
한산	164 111
미상	164 000
기타	164 999
담(譚)	165
등주	165 111
미상	165 000
기타	165 999
당(唐)	166
밀양	166 111
미상	166 000
기타	166 999
대(大)	167
대산(김해)	167 111
밀양	167 112
미상	167 000
기타	167 999
도(都)	168
경주	168 111
대구	168 112
밀양	168 113
사정(수원)	168 114
상주	168 115
서제	168 116
성산	168 117
성주	168 118
의성	168 119
전주	168 120
청주	168 121
춘천	168 122
파주	168 123
팔거(칠곡)	168 124
미상	168 000
기타	168 999
도(陶)	169
경주	169 111
남양	169 112
밀양	169 113
병양(진주)	169 114
순천	169 115
양주	169 116
청주	169 117
풍양	169 118
미상	169 000
기타	169 999
도(道)	170
고성	170 111
미상	170 000
기타	170 999
독고(獨孤)	171
광릉	171 111
나주	171 112
남원	171 113
의주	171 114
황주	171 115
미상	171 000
기타	171 999
돈(頓)	172
목천	172 111
미상	172 000
기타	172 999
돈(敦)	173
청주	173 111
미상	173 000
기타	173 999
동(董)	174
광주	174 111
광천	174 112
영천	174 113
풍천	174 114
미상	174 000
기타	174 999
동방(東方)	175
진주	175 111
청주	175 112
미상	175 000
기타	175 999
두(杜)	176
두릉(만경)	176 111
미상	176 000
기타	176 999
두(頭)	177
고산	177 111
미상	177 000
기타	177 999
마(馬)	178
개성	178 111
목천	178 112
의성	178 113
장안	178 114
장흥	178 115
미상	178 000
기타	178 999
마(麻)	179
열산(간성)	179 111
영평	179 112
미상	179 000
기타	179 999
만(萬)	180
강화(진강)	180 111
강릉	180 112
개성	180 113
광주	180 114
영풍	180 115
익곡(안변)	180 116
미상	180 000
기타	180 999
망절(網切)	181
없음	181 100
매(梅)	182
충주	182 111
미상	182 000
기타	182 999
맹(孟)	183
신창	183 111
온양	183 112
미상	183 000
기타	183 999
명(明)	184
서촉	184 111
성도	184 112
연안	184 113
해주	184 114
황해	184 115
미상	184 000
기타	184 999
모(牟)	185
진주	185 111
함평	185 112
미상	185 000
기타	185 999
모(毛)	186
공주(공산)	186 111

(모 ~ 박)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광주	186 112	영산	190 138	고성	193 117	수원	193 163
김해	186 113	장연	190 139	고흥	193 118	순창	193 164
서산	186 114	장흥	190 140	공주	193 119	순천	193 165
미상	186 000	전주	190 141	광산	193 120	순흥	193 166
기타	186 999	정선	190 142	광주	193 121	승평	193 167
목(睦)	187	제주	190 143	구산	193 122	아산	193 168
사천	187 111	진주	190 144	군위	193 123	안동	193 169
미상	187 000	청주	190 145	김해	193 124	안성	193 170
기타	187 999	태평	190 146	나주	193 125	압해	193 171
묘(苗)	188	파평	190 147	난포	193 126	야성	193 172
성산	188 111	평산	190 148	남양	193 127	언양	193 173
미상	188 000	평안	190 149	남원	193 128	여수	193 174
기타	188 999	평양	190 150	남주	193 129	여주	193 175
묵(墨)	189	평택	190 151	남평	193 130	연안	193 176
광녕	189 111	하양	190 152	노성	193 131	영암	193 177
요동	189 112	함평	190 153	단양	193 132	영양	193 178
미상	189 000	미상	190 000	달성	193 133	영월	193 179
기타	189 999	기타	190 999	담양	193 134	영천	193 180
문(文)	190	미(米)	191	대천	193 135	영해	193 181
감천	190 111	방산(양구)	191 111	덕원	193 136	영흥	193 182
강릉	190 112	송림(장단)	191 112	덕진	193 137	예천	193 183
강성	190 113	유성(공주)	191 113	면천	193 138	우봉	193 184
개령	190 114	재령	191 114	명성	193 139	운봉	193 185
결성	190 115	미상	191 000	무안	193 140	울산	193 186
경주	190 116	기타	191 999	문의	193 141	월성	193 187
광산	190 117	민(閔)	192	문주	193 142	은풍	193 188
김해	190 118	경주	192 111	문화	193 143	음성	193 189
나주	190 119	대전	192 112	미산	193 144	의령	193 190
낙태	190 120	여주	192 113	밀양(밀성)	193 145	의성	193 191
남양	190 121	여흥	192 114	반남	193 146	의형	193 192
남영	190 122	영운	192 115	보성	193 147	의흥	193 193
남원	190 123	영원	192 116	봉산	193 148	인제	193 194
남천	190 124	영인	192 117	부산	193 149	인천	193 195
남평	190 125	정선	192 118	부안	193 150	일성	193 196
남해	190 126	창원	192 119	비안	193 151	임실	193 197
내평	190 127	청주	192 120	사천	193 152	장성	193 198
능성	190 128	해남	192 121	삼척	193 153	장흥	193 199
단성	190 129	미상	192 000	삼화	193 154	전주	193 200
대전	190 130	기타	192 999	상산	193 155	정선	193 201
문평	190 131	박(朴)	193	상성	193 156	정승	193 202
문화	190 132	강남	193 111	상영	193 157	정주	193 203
밀양	190 133	강릉	193 112	상주	193 158	제주	193 204
보령	190 134	강원	193 113	선산	193 159	주계	193 205
선산	190 135	강진	193 114	설성	193 160	죽산(죽주)	193 206
안동	190 136	경주	193 115	성신	193 161	진안	193 207
양평	190 137	고령	193 116	성주	193 162	진원	193 208

본관	부호
진주	193 209
진흥	193 210
창녕	193 211
창원	193 212
천안	193 213
청송	193 214
청주	193 215
초계	193 216
춘천	193 217
충주	193 218
태안	193 219
태인	193 220
평산	193 221
평양	193 222
평주	193 223
평택	193 224
하명	193 225
한산	193 226
한양	193 227
함안	193 228
함양	193 229
함열	193 230
함평	193 231
함흥	193 232
해남	193 233
해명	193 234
해주	193 235
현천	193 236
현풍	193 237
미상	193 000
기타	193 999
반(班)	194
개성	194 111
고성	194 112
광주	194 113
평해	194 114
미상	194 000
기타	194 999
반(潘)	195
거제	195 111
결성	195 112
광주	195 113
기성	195 114
남평	195 115
영평	195 116
음성	195 117
미상	195 000
기타	195 999
방(龐)	196
갈양	196 111
개성	196 112
태원	196 113
미상	196 000
기타	196 999
방(方)	197
결성	197 111
경주	197 112
군위	197 113
김해	197 114
나주	197 115
남원	197 116
무안	197 117
상주	197 118
수원	197 119
신창	197 120
안산	197 121
안성	197 122
양산	197 123
온양	197 124
원영	197 125
진주	197 126
창성	197 127
충주	197 128
해남	197 129
미상	197 000
기타	197 999
방(房)	198
남양	198 111
남원	198 112
밀양	198 113
서산	198 114
수원	198 115
양산	198 116
온양	198 117
천녕	198 118
포천	198 119
미상	198 000
기타	198 999
방(邦)	199
광주	199 111
괴산	199 112
무안	199 113
수다(나주)	199 114
영흥	199 115
예천	199 116
철원	199 117
파주	199 118
풍기	199 119
해주	199 120
미상	199 000
기타	199 999
배(裵)	200
감해	200 111
개성	200 112
경남	200 113
경주	200 114
고령	200 115
고양	200 116
곡강	200 117
곤양(곤산)	200 118
금강	200 119
금성	200 120
나주	200 121
남양	200 122
남원	200 123
남해	200 124
달성	200 125
대구	200 126
대전	200 127
밀양	200 128
분성(김해)	200 129
상주	200 130
서산	200 131
선산	200 132
성산	200 133
성주	200 134
수원	200 135
안동	200 136
안성	200 137
안악	200 138
온양	200 139
의성	200 140
전주	200 141
정주	200 142
진주	200 143
창녕	200 144
청산	200 145
청주	200 146
평산	200 147
풍산	200 148
풍성	200 149
함흥	200 150
해주	200 151
협계	200 152
흥해	200 153
화순	200 154
미상	200 000
기타	200 999
백(白)	201
경기	201 111
경주	201 112
광주	201 113
김해	201 114
나주	201 115
남원	201 116
남포	201 117
남해	201 118
대흥	201 119
문경	201 120
밀양	201 121
배천(白川)	201 122
부여	201 123
성산	201 124
성주	201 125
수원	201 126
순천	201 127
순흥	201 128
원주	201 129
임천	201 130
적성(순창)	201 131
전주	201 132
직산	201 133
진주	201 134
청도	201 135
충주	201 136
태인	201 137
평산	201 138
해미	201 139
홍주	201 140
미상	201 000
기타	201 999
범(范)	202
금성	202 111
나주	202 112

(범 ~ 서)

본관	부호
미상	202 000
기타	202 999
범(凡)	203
안주	203 111
미상	203 000
기타	203 999
변(卞)	204
경주	204 111
남원	204 112
밀양	204 113
백음	204 114
부용	204 115
원주	204 116
장성	204 117
진주	204 118
청주	204 119
초계	204 120
팔거	204 121
미상	204 000
기타	204 999
변(邊)	205
가은(문경)	205 111
가평	205 112
경주	205 113
나주	205 114
원주	205 115
장성	205 116
장연	205 117
전주	205 118
제주	205 119
진주	205 120
청주	205 121
해주	205 122
황주	205 123
미상	205 000
기타	205 999
복(卜)	206
구성	206 111
면천	206 112
연주	206 113
오천(연일)	206 114
전북	206 115
청양	206 116
평산	206 117
홍주	206 118
미상	206 000
기타	206 999
봉(奉)	207
강화	207 111
양성	207 112
진주	207 113
풍기	207 114
하음	207 115
함흥	207 116
미상	207 000
기타	207 999
봉(鳳)	208
경주	208 111
미상	208 000
기타	208 999
부(夫)	209
제주	209 111
미상	209 000
기타	209 999
부(傅)	210
한양	210 111
미상	210 000
기타	210 999
비(丕)	211
용서	211 111
미상	211 000
기타	211 999
빈(賓)	212
달성	212 111
밀양	212 112
수성(대구)	212 113
영광(육창)	212 114
의성	212 115
미상	212 000
기타	212 999
빈(彬)	213
대구	213 111
달성	213 112
미상	213 000
기타	213 999
빙(冰)	214
경주	214 111
미상	214 000
기타	214 999
사(史)	215
거창	215 111
경주	215 112
선산	215 113
수원	215 114
임강	215 115
장사	215 116
전주	215 117
진주	215 118
청송	215 119
청주	215 120
충주	215 121
파주	215 122
미상	215 000
기타	215 999
사(舍)	216
부평	216 111
미상	216 000
기타	216 999
사(謝)	217
진주	217 111
한산	217 112
미상	217 000
기타	217 999
사공(司空)	218
군위	218 111
효령	218 112
미상	218 000
기타	218 999
삼(森)	219
삼가	219 111
미상	219 000
기타	219 999
상(尙)	220
목천	220 111
미상	220 000
기타	220 999
서(徐)	221
가성	221 111
경북	221 112
경주	221 113
광성	221 114
광주	221 115
군위	221 116
김해	221 117
나주	221 118
남양	221 119
남원	221 120
남평	221 121
단양	221 122
달성	221 123
달천	221 124
담양	221 125
당성	221 126
대구	221 127
대전	221 128
밀양	221 129
복흥(순창)	221 130
부여	221 131
서산	221 132
서원	221 133
서천	221 134
수원	221 135
안동	221 136
안성	221 137
여주	221 138
연산(황산)	221 139
연천	221 140
염주(연안)	221 141
영성	221 142
예천	221 143
용궁	221 144
울산	221 145
원주	221 146
의령	221 147
의성	221 148
의주	221 149
이천	221 150
인천	221 151
장성	221 152
전주	221 153
절강	221 154
진주	221 155
창녕	221 156
천천	221 157
청주	221 158
충주	221 159
평당(파주·봉성)	221 160
평택	221 161
함양	221 162
함평	221 163
해주	221 164
미상	221 000
기타	221 999
서(西)	222

본관	부호
진주	222 111
충주	222 112
미상	222 000
기타	222 999
서문(西門)	223
안음(안의)	223 111
미상	223 000
기타	223 999
석(石)	224
개성	224 111
결성	224 112
경주	224 113
광주	224 114
남원	224 115
대구	224 116
밀양	224 117
양주	224 118
원주	224 119
전주	224 120
제천	224 121
조주	224 122
청주	224 123
충주(홍주)	224 124
파평	224 125
해주	224 126
화원(성주)	224 127
미상	224 000
기타	224 999
석(昔)	225
경주	225 111
월성	225 112
미상	225 000
기타	225 999
선(宣)	226
광주	226 111
밀양	226 112
보성	226 113
이천	226 114
전주	226 115
미상	226 000
기타	226 999
선우(鮮于)	227
태원	227 111
미상	227 000
기타	227 999
설(薛)	228
개성	228 111
경주	228 112
밀양	228 113
순창	228 114
순천	228 115
옥천	228 116
진주	228 117
창원	228 118
미상	228 000
기타	228 999
설(偰)	229
경주	229 111
미상	229 000
기타	229 999
섭(葉)	230
경주	230 111
공촌(수원)	230 112
수원	230 113
이파산	230 114
처인(용인)	230 115
충주	230 116
해평(선산)	230 117
미상	230 000
기타	230 999
성(成)	231
강릉	231 111
경주	231 112
나주	231 113
달성	231 114
달천	231 115
양근	231 116
예산	231 117
전주	231 118
창녕	231 119
창원	231 120
청룡	231 121
청양	231 122
청주	231 123
미상	231 000
기타	231 999
성(星)	232
선평	232 111
미상	232 000
기타	232 999
소(蘇)	233
남원	233 111
진주	233 112
미상	233 000
기타	233 999
소(邵)	234
경주	234 111
공주	234 112
남양	234 113
밀양	234 114
비안	234 115
서촉	234 116
안태(경주)	234 117
여량(안동)	234 118
익산	234 119
인주(인천)	234 120
전주	234 121
진주	234 122
청산	234 123
평산	234 124
하남	234 125
미상	234 000
기타	234 999
소봉(小峰)	235
없음	235 100
손(孫)	236
경기	236 111
경주	236 112
광주	236 113
구례	236 114
김해	236 115
나주	236 116
남원	236 117
달성	236 118
밀양	236 119
보성	236 120
부령	236 121
비안	236 122
안동(일직)	236 123
전주	236 124
진주	236 125
창녕	236 126
청주	236 127
충주	236 128
평안	236 129
평양	236 130
평택	236 131
평해	236 132
해주	236 133
미상	236 000
기타	236 999
송(宋)	237
강음	237 111
견주(양주)	237 112
광주	237 113
김해	237 114
나주	237 115
남양	237 116
남원	237 117
남평	237 118
대전	237 119
덕산	237 120
마산	237 121
문경	237 122
밀양	237 123
복흥	237 124
서산	237 125
순흥	237 126
신안	237 127
*신평1	237 128
*신평2	237 129
심평	237 130
쌍탁(수원)	237 131
안산	237 132
야성(야로·합천)	237 133
양주	237 134
여산	237 135
여주	237 136
연산	237 137
*연안1	237 138
*연안2	237 139
예산	237 140
옥구	237 141
용성	237 142
울진	237 143
은성	237 144
은율	237 145
은진	237 146
의성	237 147
전주	237 148
제주	237 149
죽산	237 150
진천	237 151
철원	237 152

(송 ~ 안)

본관	부호
청주	237 153
태안	237 154
태인	237 155
홍주	237 156
회덕	237 157
흥양	237 158
미상	237 000
기타	237 999
송(松)	238
화순	238 111
미상	238 000
기타	238 999
수(水)	239
강남	239 111
강릉	239 112
고산(운제)	239 113
김해	239 114
미상	239 000
기타	239 999
수(洙)	240
달성	240 111
밀양	240 112
미상	240 000
기타	240 999
순(荀)	241
연곡(강릉)	241 111
임천	241 112
창원	241 113
홍산	241 114
미상	241 000
기타	241 999
순(舜)	242
파주	242 111
임천	242 112
미상	242 000
기타	242 999
순(淳)	243
임천	243 111
미상	243 000
기타	243 999
순(順)	244
없음	244 100
승(承)	245
광산	245 111
연일	245 112
미상	245 000
기타	245 999
승(昇)	246
남원	246 111
창평	246 112
미상	246 000
기타	246 999
시(施)	247
성주	247 111
절강	247 112
미상	247 000
기타	247 999
시(柴)	248
김화	248 111
능향	248 112
태인	248 113
미상	248 000
기타	248 999
신(申)	249
강릉	249 111
거제	249 112
경산	249 113
경주	249 114
고령	249 115
고창	249 116
고흥	249 117
곡성	249 118
광산	249 119
김해	249 120
나주	249 121
남양	249 122
담양	249 123
대전	249 124
문화	249 125
밀양	249 126
보령	249 127
삭녕	249 128
상갈	249 129
성산	249 130
신천	249 131
신평	249 132
아주	249 133
안동	249 134
연안	249 135
영원	249 136
영월	249 137
영해	249 138
울산	249 139
은풍(풍기)	249 140
의령	249 141
의성	249 142
이천	249 143
전주	249 144
정선	249 145
조종(가평)	249 146
진주	249 147
창주	249 148
천안	249 149
청산	249 150
청송	249 151
청주	249 152
파평	249 153
평강	249 154
평산	249 155
평안	249 156
평양	249 157
평창	249 158
평해	249 159
함평	249 160
해주	249 161
황산	249 162
미상	249 000
기타	249 999
신(辛)	250
경주	250 111
김해	250 112
부안	250 113
양산	250 114
영광	250 115
영산	250 116
영월	250 117
영주	250 118
평창	250 119
미상	250 000
기타	250 999
신(愼)	251
거창	251 111
서산	251 112
진주	251 113
황산	251 114
미상	251 000
기타	251 999
심(沈)	252
경주	252 111
남원	252 112
밀양	252 113
삼척	252 114
순천(부유)	252 115
신안	252 116
의령	252 117
전주	252 118
정선	252 119
청산	252 120
청송	252 121
청주	252 122
청풍	252 123
충주	252 124
풍산	252 125
홍성	252 126
미상	252 000
기타	252 999
십(辻)	253
성진	253 111
미상	253 000
기타	253 999
아(阿)	254
나주	254 111
양주	254 112
익산	254 113
진주	254 114
미상	254 000
기타	254 999
안(安)	255
강진	255 111
경주	255 112
공산(공주)	255 113
광주	255 114
김해	255 115
남원	255 116
담양	255 117
당진	255 118
대전	255 119
밀양	255 120
보성	255 121
수원	255 122
순천	255 123
순흥	255 124
안동	255 125
안산	255 126

본관	부호
안성	255 127
양산	255 128
예산	255 129
전주	255 130
정주	255 131
제천	255 132
주천	255 133
*죽산	255 134
*죽산(신)	255 135
천안	255 136
청주	255 137
충주	255 138
탐진	255 139
태원	255 140
파평	255 141
평산	255 142
평안	255 143
평택	255 144
해주	255 145
미상	255 000
기타	255 999
애(艾)	256
영풍	256 111
전주	256 112
한양	256 113
미상	256 000
기타	256 999
야(夜)	257
개성	257 111
봉성(파주)	257 112
원평(파평)	257 113
미상	257 000
기타	257 999
양(梁)	258
경주	258 111
고부	258 112
군위	258 113
김해	258 114
나주	258 115
남양	258 116
남영	258 117
남원	258 118
남한	258 119
남흥	258 120
단양	258 121
대전	258 122
명월	258 123
문화	258 124
삼척	258 125
양주	258 126
양천	258 127
예성	258 128
예춘	258 129
원주	258 130
임천	258 131
전주	258 132
제주	258 133
진주	258 134
청송	258 135
청주	258 136
충주	258 137
파주	258 138
해주	258 139
미상	258 000
기타	258 999
양(楊)	259
남원	259 111
밀양	259 112
순창	259 113
안악	259 114
인동	259 115
중화	259 116
진주	259 117
청주	259 118
충주	259 119
통주	259 120
미상	259 000
기타	259 999
양(樑)	260
남양	260 111
미상	260 000
기타	260 999
양(襄)	261
없음	261 100
어(魚)	262
경흥	262 111
충주	262 112
함종	262 113
함흥	262 114
미상	262 000
기타	262 999
어금(魚金)	263
청도	263 111
미상	263 000
기타	263 999
엄(嚴)	264
광주	264 111
나주	264 112
밀양	264 113
상주	264 114
영월	264 115
영천	264 116
파주	264 117
하음	264 118
미상	264 000
기타	264 999
여(呂)	265
김해	265 111
단양	265 112
밀양	265 113
범중	265 114
상주	265 115
선산	265 116
성량	265 117
성산	265 118
성주	265 119
안동	265 120
여주	265 121
청주	265 122
함녕	265 123
함안	265 124
함양	265 125
함흥	265 126
해영	265 127
해주	265 128
미상	265 000
기타	265 999
여(余)	266
남해	266 111
의령	266 112
하동	266 113
미상	266 000
기타	266 999
여(汝)	267
안산	267 111
미상	267 000
기타	267 999
연(延)	268
개성	268 111
경주	268 112
곡산	268 113
곡성	268 114
광주	268 115
나주	268 116
남양	268 117
대전	268 118
도안	268 119
연안	268 120
옥산	268 121
청주	268 122
황해	268 123
미상	268 000
기타	268 999
연(連)	269
전주(나주)	269 111
미상	269 000
기타	269 999
연(燕)	270
곡산	270 111
덕원	270 112
영평	270 113
전주	270 114
정평	270 115
평주(평산)	270 116
미상	270 000
기타	270 999
염(廉)	271
개성	271 111
경주	271 112
광주	271 113
나주	271 114
보성	271 115
신천	271 116
양주	271 117
용담	271 118
진양	271 119
진주	271 120
창녕	271 121
청주	271 122
충주	271 123
파주(서원)	271 124
파평	271 125
해주	271 126
미상	271 000

(염 ~ 운)

본관	부호
기타	271 999
영(永)	272
강령	272 111
경주	272 112
평해	272 113
미상	272 000
기타	272 999
영(榮)	273
영천	273 111
미상	273 000
기타	273 999
영(影)	274
선천	274 111
미상	274 000
기타	274 999
예(芮)	275
담성	275 111
부계	275 112
의령	275 113
의흥	275 114
정선	275 115
청도	275 116
미상	275 000
기타	275 999
오(吳)	276
강화	276 111
경주	276 112
고성	276 113
고창	276 114
공주	276 115
광주	276 116
군위	276 117
금산	276 118
금성	276 119
김해	276 120
나주	276 121
낙안	276 122
남양	276 123
남원	276 124
낭산	276 125
능성	276 126
대구	276 127
대전	276 128
덕미	276 129
동래	276 130
동복	276 131
동부	276 132
두원	276 133
밀양	276 134
보령	276 135
보성	276 136
삼가	276 137
서산	276 138
성산	276 139
성주	276 140
수원	276 141
순흥	276 142
안동	276 143
안성	276 144
여주	276 145
연안	276 146
연일	276 147
연주	276 148
영광	276 149
영원	276 150
예안	276 151
온양	276 152
울산	276 153
의성	276 154
장흥	276 155
전남	276 156
전주	276 157
제주	276 158
진원	276 159
진주	276 160
창원	276 161
청주	276 162
충주	276 163
파주	276 164
평산	276 165
평택	276 166
평해	276 167
함녕	276 168
함안	276 169
함양	276 170
함평	276 171
함흥	276 172
해남	276 173
해명	276 174
해주	276 175
혜조	276 176
화순	276 177
황해	276 178
흥양	276 179
미상	276 000
기타	276 999
옥(玉)	277
개성	277 111
거제	277 112
밀양	277 113
반성	277 114
사천	277 115
의령	277 116
의성	277 117
진주	277 118
미상	277 000
기타	277 999
온(溫)	278
거야	278 111
경주	278 112
금구	278 113
나주	278 114
봉성	278 115
서원	278 116
온양	278 117
전주	278 118
진주	278 119
청주	278 120
평고	278 121
미상	278 000
기타	278 999
옹(邕)	279
순창	279 111
옥천	279 112
미상	279 000
기타	279 999
옹(雍)	280
옹진	280 111
파평	280 112
미상	280 000
기타	280 999
왕(王)	281
강릉	281 111
개성	281 112
거제	281 113
대전	281 114
이령	281 115
제남	281 116
해주	281 117
미상	281 000
기타	281 999
요(姚)	282
수원	282 111
휘주	282 112
미상	282 000
기타	282 999
용(龍)	283
개성	283 111
광주	283 112
수원	283 113
양근	283 114
용인	283 115
파주	283 116
홍천	283 117
미상	283 000
기타	283 999
우(于)	284
목천(천안)	284 111
미상	284 000
기타	284 999
우(禹)	285
강주(영천)	285 111
경주	285 112
남양	285 113
단양	285 114
달성	285 115
안동	285 116
안양	285 117
영주	285 118
예안	285 119
진양	285 120
창녕	285 121
한양	285 122
해주	285 123
미상	285 000
기타	285 999
운(雲)	286
장흥	286 111
청주	286 112
함흥	286 113
미상	286 000
기타	286 999
운(芸)	287
전주	287 111

본관	부호
창원	287 112
미상	287 000
기타	287 999
원(元)	288
강원	288 111
경주	288 112
남원	288 113
대전	288 114
영월	288 115
원주	288 116
전주	288 117
청주	288 118
해주	288 119
미상	288 000
기타	288 999
원(袁)	289
비안	289 111
비옥	289 112
미상	289 000
기타	289 999
위(魏)	290
고흥	290 111
관산	290 112
광산	290 113
수령	290 114
장흥	290 115
전주	290 116
함흥	290 117
해남	290 118
미상	290 000
기타	290 999
위(韋)	291
강화	291 111
미상	291 000
기타	291 999
유(柳)	292
강남	292 111
강릉	292 112
강진	292 113
거창	292 114
경주	292 115
고령	292 116
고흥	292 117
곡산	292 118
공주	292 119
광주(광산)	292 120
금산	292 121
김해	292 122
나주	292 123
남원	292 124
대전	292 125
문안	292 126
문화	292 127
밀양	292 128
배천(白川)	292 129
부안	292 130
부평	292 131
서령	292 132
서산	292 133
선산	292 134
성주	292 135
세령	292 136
수원	292 137
순흥	292 138
안동	292 139
약목(칠곡)	292 140
연안	292 141
영광	292 142
옥천	292 143
육창	292 144
인동	292 145
전주	292 146
정선	292 147
정주(풍덕)	292 148
진양	292 149
진주	292 150
진천	292 151
창원	292 152
천안	292 153
청주	292 154
파평	292 155
풍산	292 156
하동	292 157
하회	292 158
함평	292 159
해주	292 160
호산	292 161
흥양	292 162
미상	292 000
기타	292 999
유(兪)	293
강원	293 111
강진	293 112
강화	293 113
경주	293 114
고령	293 115
고흥	293 116
공주	293 117
광주	293 118
금산	293 119
기계	293 120
김해	293 121
남원	293 122
단양	293 123
달성	293 124
무안	293 125
밀양	293 126
부안	293 127
상주	293 128
안성	293 129
예산	293 130
인동	293 131
장사(무장)	293 132
진주	293 133
창원	293 134
천녕	293 135
청주	293 136
파평	293 137
풍산	293 138
하회	293 139
해주	293 140
미상	293 000
기타	293 999
유(庾)	294
무송	294 111
평산	294 112
미상	294 000
기타	294 999
유(劉)	295
강남	295 111
강릉(한양)	295 112
강원	295 113
강화	295 114
개성	295 115
거창	295 116
고부	295 117
공주	295 118
광주	295 119
금성	295 120
남원	295 121
무주	295 122
배천(白川)	295 123
수원	295 124
순흥	295 125
안동	295 126
연백	295 127
영월	295 128
옥천	295 129
원주	295 130
진주	295 131
창녕	295 132
천안	295 133
청주	295 134
충주	295 135
파평	295 136
풍산	295 137
해주	295 138
미상	295 000
기타	295 999
육(陸)	296
관성	296 111
옥천	296 112
미상	296 000
기타	296 999
윤(尹)	297
가평	297 111
강릉	297 112
거제	297 113
거창	297 114
경남	297 115
경주	297 116
고령	297 117
고창	297 118
광주	297 119
기계	297 120
김해	297 121
남원	297 122
남평	297 123
달성	297 124
대전	297 125
덕산	297 126
무송	297 127
문화	297 128
밀양	297 129

(윤 ~ 이)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배천(白川)	297 130	운산	299 121	교하	300 147	삼척	300 193
수원	297 131	음성	299 122	군위	300 148	상산	300 194
순흥	297 132	장연(연풍)	299 123	금구	300 149	상주	300 195
신녕	297 133	정주	299 124	금산	300 150	서림	300 196
야성	297 134	죽산	299 125	금성	300 151	서산	300 197
양주	297 135	충주	299 126	김천	300 152	서울	300 198
여주	297 136	풍천	299 127	김포	300 153	서천	300 199
영천	297 137	미상	299 000	김해	300 154	선산(광평)	300 200
예천	297 138	기타	299 999	나주	300 155	선성	300 201
전주	297 139	이(李)	300	남양	300 156	성산	300 202
죽산	297 140	가리	300 111	남원	300 157	성주	300 203
진주	297 141	가평	300 112	남평	300 158	성준	300 204
청주	297 142	간성	300 113	농서	300 159	수안	300 205
칠원	297 143	강동	300 114	농성	300 160	수원	300 206
태평	297 144	강릉	300 115	단성	300 161	순천	300 207
파평(파주)	297 145	강양	300 116	단양	300 162	순흥	300 208
팔판	297 146	강진	300 117	담양	300 163	승평	300 209
평산	297 147	강화	300 118	당진	300 164	신녕	300 210
평창	297 148	개령	300 119	대전	300 165	신평	300 211
함안	297 149	개성	300 120	대흥	300 166	신풍	300 212
함평	297 150	거창	300 121	덕산	300 167	아산	300 213
해남	297 151	결성	300 122	덕수	300 168	안동	300 214
해주	297 152	경기	300 123	덕순	300 169	안산	300 215
해평(선산)	297 153	경남	300 124	덕원	300 170	안성	300 216
현풍	297 154	경북	300 125	덕은	300 171	안악	300 217
미상	297 000	경산	300 126	덕천	300 172	안양	300 218
기타	297 999	경성	300 127	덕흥	300 173	안평	300 219
은(殷)	298	경주	300 128	동녕	300 174	양동	300 220
고부	298 111	경준	300 129	동래	300 175	양산	300 221
달성	298 112	경진	300 130	동평	300 176	양성	300 222
덕산	298 113	계룡	300 131	마산	300 177	양주	300 223
태인	298 114	계양	300 132	문산	300 178	양평	300 224
행주	298 115	고구	300 133	문안	300 179	여강	300 225
미상	298 000	고령	300 134	문화	300 180	여주	300 226
기타	298 999	고부	300 135	밀양	300 181	여흥	300 227
음(陰)	299	고성	300 136	배천(白川)	300 182	연극	300 228
개성	299 111	고양	300 137	백성	300 183	연산	300 229
경주	299 112	고창	300 138	벽산	300 184	연안	300 230
고산	299 113	고흥	300 139	벽진	300 185	연일	300 231
고주	299 114	곡산	300 140	보성	300 186	연천	300 232
광주	299 115	공산	300 141	보은	300 187	영광	300 233
괴산	299 116	공주	300 142	봉산	300 188	영월	300 234
밀양	299 117	광산	300 143	부안	300 189	영일	300 235
배천(白川)	299 118	광양	300 144	부여	300 190	영주	300 236
설성	299 119	광주	300 145	부평	300 191	영준	300 237
용강	299 120	괴산	300 146	사천(동성)	300 192	*영천(寧川)	300 238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영천(永川·익양·영양)	300 239	정선	300 285	함평	300 331	공주	304 114
영춘	300 240	정주	300 286	함풍	300 332	광주	304 115
영해	300 241	제주	300 287	함흥	300 333	교동	304 116
예산	300 242	증평	300 288	합천	300 334	금산	304 117
예안	300 243	진보(진성)	300 289	해남	300 335	길안	304 118
예천	300 244	진안	300 290	해령	300 336	김해	304 119
오현	300 245	진위	300 291	해주	300 337	나주	304 120
옥천	300 246	진주	300 292	행주	300 338	남양	304 121
온양	300 247	진해	300 293	헌양	300 339	남원	304 122
완산	300 248	차성(기장)	300 294	홍성	300 340	단양	304 123
요산	300 249	창녕	300 295	홍주	300 341	단월	304 124
용궁	300 250	창원	300 296	홍천	300 342	담양	304 125
용인	300 251	천안	300 297	화산	300 343	대구	304 126
용천	300 252	철성	300 298	화평	300 344	대전	304 127
우견	300 253	청도	300 299	황주	300 345	동래	304 128
우계	300 254	청송	300 300	회덕	300 346	무안	304 129
우봉	300 255	청안	300 301	회양	300 347	밀양	304 130
울산	300 256	청양	300 302	흥양	300 348	반월	304 131
원산	300 257	청주	300 303	미상	300 000	보성	304 132
*원주1	300 258	청평	300 304	기타	300 999	보은	304 133
*원주2	300 259	청해	300 305	이(異)	301	부안	304 134
월성	300 260	춘천	300 306	남원	301 111	부여	304 135
은진	300 261	충남	300 307	동성(통진)	301 112	삼척	304 136
음죽	300 262	충주	300 308	밀양	301 113	상산	304 137
의령	300 263	칠성	300 309	청양	301 114	상주	304 138
의성	300 264	태안	300 310	미상	301 000	선산	304 139
의흥	300 265	태원	300 311	기타	301 999	성산	304 140
이천	300 266	토산	300 312	이(伊)	302	성주	304 141
익계	300 267	통진	300 313	은천(배천)	302 111	수원	304 142
익산	300 268	평산	300 314	충주	302 112	순창	304 143
익흥	300 269	평양	300 315	태원	302 113	순천	304 144
인제	300 270	평창	300 316	미상	302 000	순풍	304 145
인주	300 271	평택	300 317	기타	302 999	안동	304 146
인천	300 272	평해	300 318	인(印)	303	안산	304 147
임강	300 273	풍천	300 319	강화	303 111	안성	304 148
임천	300 274	하동	300 320	교동	303 112	안의	304 149
장기	300 275	하빈	300 321	당진	303 113	여주	304 150
장성	300 276	하산	300 322	연안	303 114	연안	304 151
장수	300 277	하음	300 323	함창	303 115	연일	304 152
장천	300 278	학성	300 324	해주	303 116	영월	304 153
장흥	300 279	한산	300 325	미상	303 000	영천	304 154
재령	300 280	한성	300 326	기타	303 999	영흥	304 155
전원	300 281	한양	300 327	임(林)	304	예산	304 156
전은	300 282	함경	300 328	강릉	304 111	예천	304 157
전의	300 283	함안	300 329	경주	304 112	옥구(군산)	304 158
전주	300 284	함양	300 330	고안	304 113	옥야	304 159

(임 ~ 전)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옥천	304 160	관산	305 113	목천	307 126	미상	307 000
온양	304 161	광산	305 114	밀양	307 127	기타	307 999
울산	304 162	나주	305 115	배천(白川)	307 128	장(蔣)	308
울진	304 163	대전	305 116	봉산	307 129	아산	308 111
원주	304 164	보령	305 117	봉성	307 130	미상	308 000
은진	304 165	부천	305 118	부안	307 131	기타	308 999
의성	304 166	수원	305 119	부여	307 132	장(章)	309
이안	304 167	순천	305 120	순창	307 133	거창	309 111
이천	304 168	아선	305 121	순천	307 134	미상	309 000
익산	304 169	안동	305 122	순흥	307 135	기타	309 999
임천	304 170	장흥(정안)	305 123	안동	307 136	장(莊)	310
임파	304 171	진주	305 124	안성	307 137	금천(과천)	310 111
임하	304 172	청풍	305 125	안양	307 138	장연	310 112
장성	304 173	춘천	305 126	연안	307 139	미상	310 000
장수	304 174	충내	305 127	영동	307 140	기타	310 999
장흥	304 175	파평	305 128	영천	307 141	장곡(長谷)	311
전주	304 176	풍산	305 129	예산	307 142	없음	311 100
정주	304 177	풍천	305 130	옥구	307 143	저(邸)	312
조양	304 178	함풍(함평)	305 131	옥산	307 144	없음	312 100
주안	304 179	해남	305 132	옥천	307 145	전(全)	313
진주	304 180	홍천	305 133	울진	307 146	감천	313 111
진천	304 181	회덕	305 134	인덕	307 147	강릉	313 112
천안	304 182	미상	305 000	인동	307 148	강원	313 113
청송	304 183	기타	305 999	장수	307 149	개성	313 114
청주	304 184	자(慈)	306	장흥	307 150	거창	313 115
청풍	304 185	요양	306 111	전주	307 151	경산	313 116
춘천	304 186	중원	306 112	절강	307 152	경성	313 117
충주	304 187	해주	306 113	제주	307 153	경주	313 118
태평	304 188	미상	306 000	지례	307 154	계림	313 119
파평	304 189	기타	306 999	진안	307 155	고령	313 120
평산	304 190	장(張)	307	진주	307 156	고부	313 121
평택(팽성)	304 191	결성	307 111	진천	307 157	공주	313 122
풍산	304 192	경주	307 112	창녕	307 158	광산	313 123
풍천	304 193	고성	307 113	천녕(여주)	307 159	금산	313 124
한양	304 194	광주	307 114	청송	307 160	기장	313 125
해남	304 195	구례	307 115	청주	307 161	김녕	313 126
해주	304 196	나주	307 116	춘천	307 162	김해	313 127
해진	304 197	남양	307 117	충주(태원)	307 163	나성	313 128
홍천	304 198	남원	307 118	평택	307 164	나주	313 129
회진	304 199	단양	307 119	풍덕(해풍)	307 165	남원	313 130
횡성	304 200	담양	307 120	한양	307 166	대구	313 131
미상	304 000	당진	307 121	함평	307 167	대전	313 132
기타	304 999	대구	307 122	해주	307 168	보성	313 133
임(任)	305	대전	307 123	흥성(흥덕)	307 169	부안	313 134
곡성	305 111	덕수	307 124	흥양	307 170	부여	313 135
과천	305 112	동래	307 125	흥해	307 171	상주	313 136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서울	313 137	과천	314 114	나주	316 112	밀양	317 149
선산	313 138	광명	314 115	압해	316 113	보령	317 150
성산	313 139	교동	314 116	영광	316 114	보성	317 151
성주	313 140	남양	314 117	창원	316 115	봉래	317 152
수원	313 141	남원	314 118	한산	316 116	봉화	317 153
순천	313 142	단양	314 119	미상	316 000	부안	317 154
안동	313 143	담양	314 120	기타	316 999	삼척	317 155
안성	313 144	대명	314 121	정(鄭)	317	상극	317 156
여주	313 145	밀양	314 122	강릉	317 111	서경	317 157
영월	313 146	배천(白川)	314 123	강진	317 112	서산	317 158
예천	313 147	순천	314 124	개성	317 113	선산	317 159
옥산	313 148	안주	314 125	거창	317 114	성산	317 160
옥천	313 149	연안	314 126	경기	317 115	송강	317 161
온양	313 150	영광	314 127	경남	317 116	수원	317 162
완산	313 151	영평	314 128	경주	317 117	순천	317 163
용궁	313 152	예산	314 129	고령	317 118	순흥	317 164
원주	313 153	옥구	314 130	고성	317 119	안동	317 165
의성	313 154	온양	314 131	곤양	317 120	야성	317 166
인왕	313 155	우봉	314 132	공산	317 121	양평	317 167
전의	313 156	울진	314 133	공주	317 122	연백	317 168
전주	313 157	원주	314 134	관상	317 123	연안	317 169
정선	313 158	의령	314 135	광산	317 124	연일	317 170
죽산	313 159	전주	314 136	광양	317 125	연흥	317 171
진안	313 160	정산	314 137	광주	317 126	연희	317 172
진주	313 161	진원(장성)	314 138	구례	317 127	영광	317 173
창원	313 162	진주	314 139	금성	317 128	영덕	317 174
천안	313 163	천안	314 140	김포	317 129	영성	317 175
청주	313 164	추성	314 141	김해	317 130	영월	317 176
청풍	313 165	충주	314 142	나주	317 131	영일	317 177
충주	313 166	태산(태인)	314 143	남양	317 132	영정	317 178
파평	313 167	토산	314 144	남원	317 133	영주	317 179
팔거	313 168	파평	314 145	남평	317 134	영천	317 180
평강	313 169	평택	314 146	남포	317 135	예산	317 181
평산	313 170	하음	314 147	남해	317 136	예천	317 182
평양	313 171	함양	314 148	낭야	317 137	오천	317 183
한양	313 172	해주	314 149	능성	317 138	옥구	317 184
함창	313 173	미상	314 000	단양	317 139	옥천	317 185
함평	313 174	기타	314 999	담양	317 140	온양	317 186
해주	313 175	전(錢)	315	대구	317 141	옹진	317 187
황간	313 176	문경	315 111	대전	317 142	원양	317 188
미상	313 000	부계	315 112	돌산	317 143	원주	317 189
기타	313 999	지례	315 113	동래	317 144	월성	317 190
전(田)	314	미상	315 000	동명	317 145	의령	317 191
강화	314 111	기타	315 999	동해	317 146	의안	317 192
개성	314 112	점(占)	316	문의	317 147	인동	317 193
경성	314 113	괴산	316 111	문화	317 148	장기	317 194

(정 ~ 종)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장성	317 195	압해	318 116	강진	323 112	하동	323 158
장흥	317 196	영광	318 117	경주	323 113	한산	323 159
전주	317 197	영산	318 118	광주	323 114	한양	323 160
정산	317 198	영성	318 119	김제	323 115	함안	323 161
정선	317 199	의성	318 120	김해	323 116	함양	323 162
정주	317 200	장성	318 121	나주	323 117	함평	323 163
제주	317 201	진주	318 122	남양	323 118	해주	323 164
죽산	317 202	창녕	318 123	남원	323 119	횡성	323 165
진양(진주)	317 203	창원	318 124	남해	323 120	흥양	323 166
진영	317 204	파주	318 125	단양	323 121	미상	323 000
창녕	317 205	한일	318 126	대전	323 122	기타	323 999
창원	317 206	해주	318 127	대천	323 123	조(曺)	324
천안	317 207	미상	318 000	동래	323 124	가흥(진도)	324 111
청산	317 208	기타	318 999	문화	323 125	강릉	324 112
청송	317 209	정(程)	319	밀양	323 126	광주	324 113
청주	317 210	강릉	319 111	배천(白川)	323 127	남평	324 114
초계	317 211	경주	319 112	분양	323 128	능성	324 115
최계	317 212	광주	319 113	상주	323 129	수성(대구)	324 116
최기	317 213	낭천	319 114	순창	323 130	안동	324 117
충주	317 214	동래	319 115	순천	323 131	영광(옥주)	324 118
파평	317 215	부리(금산)	319 116	양주	323 132	영암	324 119
팔계	317 216	사탄(춘천)	319 117	양평	323 133	인천	324 120
팔송	317 217	영풍(함평)	319 118	연백	323 134	장흥	324 121
평산	317 218	유등	319 119	연일	323 135	진주	324 122
평택	317 219	적성(순창)	319 120	영산	323 136	창녕	324 123
평해	317 220	토산	319 121	영춘	323 137	창산	324 124
풍기	317 221	하남	319 122	옥천	323 138	창원	324 125
하동	317 222	한산	319 123	이천	323 139	청도	324 126
학성	317 223	미상	319 000	임천	323 140	청양	324 127
한양	317 224	기타	319 999	전주	323 141	평창	324 128
함양	317 225	제(諸)	320	주암	323 142	함평	324 129
함창	317 226	고성	320 111	주천	323 143	화순	324 130
함평	317 227	남양	320 112	직산	323 144	미상	324 000
합천	317 228	보성	320 113	진보	323 145	기타	324 999
해남	317 229	의성	320 114	진주	323 146	종(鍾)	325
해주	317 230	칠원	320 115	창원	323 147	강화	325 111
행주	317 231	미상	320 000	청주	323 148	두원	325 112
현풍	317 232	기타	320 999	충주	323 149	영암	325 113
미상	317 000	제(齊)	321	태원	323 150	정의	325 114
기타	317 999	없음	321 100	파릉	323 151	통진	325 115
정(丁)	318	제갈(諸葛)	322	파평	323 152	풍덕	325 116
곡성	318 111	남양	322 111	평산	323 153	하음	325 117
나주	318 112	미상	322 000	평양	323 154	미상	325 000
달성	318 113	기타	322 999	풍산	323 155	기타	325 999
무안	318 114	조(趙)	323	풍양	323 156	종(宗)	326
삼옥	318 115	강서	323 111	풍연	323 157	이파(만경)	326 111

본관	부호
임진(장단)	326 112
토율	326 113
미상	326 000
기타	326 999
좌(左)	327
제주	327 111
청주	327 112
미상	327 000
기타	327 999
주(朱)	328
강릉	328 111
결성	328 112
경주	328 113
공주	328 114
광주	328 115
김해	328 116
나주	328 117
남원	328 118
능성	328 119
밀양	328 120
신안	328 121
신흥	328 122
안동	328 123
압해	328 124
연안	328 125
영주	328 126
웅천	328 127
전주	328 128
진주	328 129
창녕	328 130
청주	328 131
태천	328 132
함흥	328 133
해남	328 134
해주	328 135
미상	328 000
기타	328 999
주(周)	329
경주	329 111
능주	329 112
명주	329 113
삼계(영산)	329 114
상주	329 115
안의	329 116
옥천	329 117
장흥	329 118
정주	329 119
진주	329 120
천안	329 121
철원	329 122
초계	329 123
충주	329 124
풍기	329 125
함안	329 126
미상	329 000
기타	329 999
준(俊)	330
청주	330 111
미상	330 000
기타	330 999
지(池)	331
경주	331 111
광주	331 112
단양	331 113
전주	331 114
진주	331 115
청송	331 116
청주	331 117
충남	331 118
충북	331 119
충주	331 120
평산	331 121
평창	331 122
해주	331 123
미상	331 000
기타	331 999
지(智)	332
봉산	332 111
봉주	332 112
미상	332 000
기타	332 999
진(陳)	333
강릉	333 111
경주	333 112
광동	333 113
김해	333 114
나주	333 115
남해	333 116
덕창	333 117
밀양	333 118
복주	333 119
부여	333 120
삼척	333 121
신광	333 122
안동	333 123
양산	333 124
양주	333 125
여양	333 126
여주	333 127
여흥	333 128
연안	333 129
영양	333 130
온양	333 131
의령	333 132
임파	333 133
전주	333 134
죽산	333 135
진산	333 136
진주	333 137
청주	333 138
충주	333 139
평산	333 140
함양	333 141
해주	333 142
홍성	333 143
홍주	333 144
흥덕	333 145
미상	333 000
기타	333 999
진(秦)	334
강화	334 111
김해	334 112
남원	334 113
대원	334 114
삼척	334 115
연안	334 116
영춘	334 117
용인	334 118
제주	334 119
진주	334 120
태원	334 121
평강	334 122
풍기	334 123
해주	334 124
미상	334 000
기타	334 999
진(晉)	335
남원	335 111
진주	335 112
미상	335 000
기타	335 999
진(眞)	336
서산	336 111
미상	336 000
기타	336 999
차(車)	337
경주	337 111
고령	337 112
광산	337 113
나주	337 114
남해	337 115
대전	337 116
문화	337 117
밀양	337 118
송림	337 119
수원	337 120
안성	337 121
연안	337 122
영월	337 123
영일	337 124
용성	337 125
전주	337 126
정안	337 127
진주	337 128
천안	337 129
평산	337 130
평택	337 131
해주	337 132
미상	337 000
기타	337 999
창(昌)	338
강릉	338 111
거창	338 112
공주	338 113
아산	338 114
여산	338 115
장성	338 116
창녕	338 117
미상	338 000
기타	338 999
창(倉)	339
아산	339 111
여산	339 112
장성	339 113

(창 ~ 최)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미상	339 000	옥천	343 130	개성	348 119	성주	348 165
기타	339 999	온양	343 131	경기	348 120	수성	348 166
채(蔡)	340	이양	343 132	경북	348 121	수원	348 167
강릉	340 111	인천	343 133	경주	348 122	순천	348 168
경주	340 112	전주	343 134	계림	348 123	순흥	348 169
광주	340 113	진주	343 135	고부	348 124	쌍룡	348 170
당진	340 114	청주	343 136	고성	348 125	아산	348 171
음성	340 115	충주	343 137	고양	348 126	안동	348 172
인천	340 116	한양	343 138	곡강	348 127	양산	348 173
전주	340 117	해남	343 139	곡성	348 128	양주	348 174
평강	340 118	화산	343 140	공주	348 129	양천	348 175
평산	340 119	미상	343 000	광양	348 130	양평	348 176
평양	340 120	기타	343 999	광주	348 131	여주	348 177
평창	340 121	천(天)	344	광해	348 132	연안	348 178
해주	340 122	밀양	344 111	괴산	348 133	연풍	348 179
미상	340 000	여양	344 112	김제	348 134	영산	348 180
기타	340 999	연안	344 113	김해	348 135	영암	348 181
채(菜)	341	우봉	344 114	나주	348 136	영양	348 182
영양	341 111	충주	344 115	남양	348 137	영주	348 183
진주	341 112	미상	344 000	남원	348 138	영천	348 184
기타	341 000	기타	344 999	남평	348 139	영흥	348 185
미상	341 999	초(楚)	345	낭주	348 140	예산	348 186
채(采)	342	강릉	345 111	단양	348 141	완산	348 187
여산	342 111	성주	345 112	달성	348 142	용강	348 188
미상	342 000	청주	345 113	담양	348 143	용궁	348 189
기타	342 999	파릉	345 114	당진	348 144	용인	348 190
천(千)	343	미상	345 000	대전	348 145	용주	348 191
강릉	343 111	기타	345 999	동근	348 146	우봉	348 192
강화	343 112	초(肖)	346	동래	348 147	원주	348 193
개성	343 113	제주	346 111	동원	348 148	월성	348 194
경주	343 114	진주	346 112	동주(철원)	348 149	인천	348 195
광주	343 115	미상	346 000	명천	348 150	장수	348 196
김해	343 116	기타	346 999	문경	348 151	장안	348 197
나주	343 117	초(初)	347	밀양	348 152	전주	348 198
남양	343 118	운남	347 111	배천(白川)	348 153	정성	348 199
남원	343 119	미상	347 000	보령	348 154	정주	348 200
단양	343 120	기타	347 999	부안	348 155	제주	348 201
목천	343 121	최(崔)	348	삭녕	348 156	죽산	348 202
밀양	343 122	간성	348 111	삭주	348 157	직산	348 203
수원	343 123	강남	348 112	삼진	348 158	진산	348 204
안동	343 124	강동	348 113	상원	348 159	진주	348 205
양평	343 125	강릉	348 114	상주	348 160	창녕	348 206
언양	343 126	강원	348 115	상현	348 161	창원	348 207
영양	343 127	강윤	348 116	서울	348 162	천안	348 208
영천	343 128	강진	348 117	서화	348 163	청송	348 209
예양	343 129	강화	348 118	선산	348 164	청주	348 210

본관	부호
초계	348 211
충주	348 212
탐진	348 213
태인	348 214
통천	348 215
파주	348 216
평강	348 217
평양	348 218
평장	348 219
평창	348 220
풍천	348 221
하동	348 222
하양	348 223
하음	348 224
한남	348 225
함안	348 226
함양	348 227
함진	348 228
함평	348 229
합천	348 230
해남	348 231
해주	348 232
홍천	348 233
화성	348 234
화순	348 235
황주	348 236
흥해	348 237
미상	348 000
기타	348 999
추(秋)	349
강화	349 111
개성	349 112
경주	349 113
나주	349 114
달성	349 115
밀양	349 116
안동	349 117
양지	349 118
원주	349 119
전주	349 120
진주	349 121
추계	349 122
파주	349 123
한양	349 124
해남	349 125
해주	349 126

본관	부호
미상	349 000
기타	349 999
추(鄒)	350
없음	350 100
춘(椿)	351
남양	351 111
미상	351 000
기타	351 999
탁(卓)	352
가평	352 111
광산	352 112
광주	352 113
전주	352 114
해주	352 115
미상	352 000
기타	352 999
탄(彈)	353
진주	353 111
해주	353 112
미상	353 000
기타	353 999
태(太)	354
남원	354 111
밀양	354 112
상주	354 113
영순	354 114
영천	354 115
통천	354 116
합천	354 117
협계	354 118
미상	354 000
기타	354 999
판(判)	355
해주	355 111
미상	355 000
기타	355 999
팽(彭)	356
신평(홍주)	356 111
안악	356 112
영강(강령)	356 113
영천	356 114
용강	356 115
절강	356 116
미상	356 000
기타	356 999
편(片)	357

본관	부호
경주	357 111
김천	357 112
나주	357 113
대전	357 114
순천	357 115
양주	357 116
인천	357 117
전주	357 118
절강	357 119
통진	357 120
해주	357 121
미상	357 000
기타	357 999
편(扁)	358
희천	358 111
미상	358 000
기타	358 999
평(平)	359
가흥(진도)	359 111
인주	359 112
인천	359 113
충주	359 114
미상	359 000
기타	359 999
포(包)	360
순천	360 111
풍덕	360 112
미상	360 000
기타	360 999
표(表)	361
거창	361 111
경주	361 112
공주	361 113
수원	361 114
신창	361 115
양주	361 116
전주	361 117
죽산	361 118
진주	361 119
충주	361 120
미상	361 000
기타	361 999
풍(馮)	362
임구	362 111
미상	362 000
기타	362 999

본관	부호
피(皮)	363
경주	363 111
공주	363 112
광주	363 113
괴산	363 114
단양	363 115
당진	363 116
안산	363 117
충주	363 118
파주	363 119
홍천	363 120
미상	363 000
기타	363 999
필(弼)	364
대흥	364 111
전주	364 112
미상	364 000
기타	364 999
하(河)	365
강릉	365 111
강화	365 112
경주	365 113
단계	365 114
대전	365 115
밀양	365 116
안음	365 117
전주	365 118
진양	365 119
진주	365 120
창녕	365 121
청주	365 122
하동	365 123
미상	365 000
기타	365 999
하(夏)	366
달성	366 111
미상	366 000
기타	366 999
학(郝)	367
산동	367 111
충주	367 112
미상	367 000
기타	367 999
한(韓)	368
가주	368 111
강릉	368 112

(한 ~ 홍)

본관	부호
강화	368 113
경주	368 114
곡산	368 115
광주	368 116
금괴	368 117
금산	368 118
김해	368 119
나주	368 120
남양	368 121
단주	368 122
당진	368 123
동래	368 124
면천	368 125
밀양	368 126
부안	368 127
성주	368 128
수원	368 129
신천	368 130
안동	368 131
안변	368 132
양주	368 133
여주	368 134
연안	368 135
원주	368 136
전주	368 137
정주	368 138
제주	368 139
진주	368 140
창원	368 141
청주	368 142
청풍	368 143
충주	368 144
파주	368 145
평산	368 146
한산	368 147
한양	368 148
해주	368 149
홍산	368 150
미상	368 000
기타	368 999
한(漢)	369
남양	369 111
옥천	369 112
충주	369 113
미상	369 000
기타	369 999
함(咸)	370
강남	370 111
강릉	370 112
강원	370 113
강화	370 114
경주	370 115
담양	370 116
양근(양평)	370 117
양주	370 118
영월	370 119
창녕	370 120
평해	370 121
함평	370 122
미상	370 000
기타	370 999
해(海)	371
김해	371 111
영암	371 112
함양	371 113
미상	371 000
기타	371 999
허(許)	372
경주	372 111
광산	372 112
김제	372 113
김천	372 114
김해	372 115
남양	372 116
남원	372 117
대구	372 118
대전	372 119
밀양	372 120
서산	372 121
수원	372 122
시산	372 123
안동	372 124
양구	372 125
양주(양산)	372 126
양천	372 127
양평	372 128
영천	372 129
의성	372 130
전주	372 131
제주	372 132
진주	372 133
창녕	372 134
청주	372 135
태인	372 136
하양	372 137
한양	372 138
함창	372 139
해주	372 140
미상	372 000
기타	372 999
현(玄)	373
경주	373 111
고성	373 112
나주	373 113
남원	373 114
남평	373 115
밀양	373 116
보성	373 117
상주	373 118
성주	373 119
순천	373 120
신산	373 121
여산	373 122
연산	373 123
연안	373 124
연주	373 125
영주	373 126
온양	373 127
온평	373 128
은진	373 129
전주	373 130
제주	373 131
진주	373 132
창녕	373 133
창원	373 134
천녕	373 135
철령	373 136
청주	373 137
함안	373 138
함흥	373 139
해주	373 140
현풍	373 141
미상	373 000
기타	373 999
형(邢)	374
대전	374 111
장흥	374 112
진주(반성)	374 113
미상	374 000
기타	374 999
호(扈)	375
나주	375 111
단양	375 112
무장	375 113
밀양	375 114
배천(白川)	375 115
보안	375 116
삼산	375 117
석전	375 118
신창	375 119
신평	375 120
의령	375 121
전주	375 122
충주	375 123
해평	375 124
홍주	375 125
미상	375 000
기타	375 999
호(胡)	376
가평	376 111
길주	376 112
숭안	376 113
아산	376 114
악양	376 115
파릉	376 116
평산	376 117
미상	376 000
기타	376 999
호(鎬)	377
배천	377 111
미상	377 000
기타	377 999
홍(洪)	378
강릉	378 111
개령	378 112
경주	378 113
곡부	378 114
김해	378 115
나주	378 116
*남양(당홍계)	378 117
*남양(토홍계)	378 118
남영	378 119
남원	378 120
남평	378 121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남해	378 122	관성	381 114	항주	381 160		
단양	378 123	광주	381 115	해산	381 161		
달성	378 124	김해	381 116	해주	381 162		
담양	378 125	나주	381 117	황주	381 163		
대전	378 126	남양	381 118	황해	381 164		
밀양	378 127	남원	381 119	회덕	381 165		
부계(의흥)	378 128	달성	381 120	미상	381 000		
부림	378 129	덕산	381 121	기타	381 999		
수원	378 130	동래	381 122	황보(皇甫)	382		
순흥	378 131	무주	381 123	영천	382 111		
안동	378 132	밀양	381 124	황주	382 112		
예산	378 133	부안	381 125	미상	382 000		
의성	378 134	삼기	381 126	기타	382 999		
인동	378 135	상주	381 127	후(后)	383		
장수	378 136	성주	381 128	당인	383 111		
전주	378 137	수원	381 129	미상	383 000		
제주	378 138	순흥	381 130	기타	383 999		
진주	378 139	안동	381 131	후(候)	384		
창원	378 140	양주	381 132	충주	384 111		
청주	378 141	영천	381 133	미상	384 000		
충주	378 142	옥천	381 134	기타	384 999		
파평	378 143	우주	381 135	흥(興)	385		
풍산	378 144	의주	381 136	없음	385 100		
풍천	378 145	장성	381 137				
함안	378 146	장수	381 138				
홍산	378 147	장한	381 139				
홍주	378 148	장흥	381 140				
홍천	378 149	전주	381 141				
회인	378 150	제안	381 142				
미상	378 000	제주	381 143				
기타	378 999	창녕	381 144				
화(化)	379	창원	381 145				
나주	379 111	천안	381 146				
복룡	379 112	청주	381 147				
여황	379 113	청해	381 148				
진양	379 114	충주	381 149				
미상	379 000	칭현	381 150				
기타	379 999	평산	381 151				
환(桓)	380	평안	381 152				
평양	380 111	평양	381 153				
미상	380 000	평원	381 154				
기타	380 999	평창	381 155				
황(黃)	381	평택	381 156				
강릉	381 111	평해	381 157				
강화	381 112	평화	381 158				
경주	381 113	풍산	381 159				

II. 연 령 조 견 표

세는 나이	서기	띠	간지	세는 나이	서기	띠	간지	세는 나이	서기	띠	간지
1	2000	용	경진	41	1960	쥐	경자	81	1920	잔나비	경신
2	1999	토끼	기묘	42	1959	돼지	기해	82	1919	양	기미
3	1998	범	무인	43	1958	개	무술	83	1918	말	무오
4	1997	소	정축	44	1957	닭	정유	84	1917	뱀	정사
5	1996	쥐	병자	45	1956	잔나비	병신	85	1916	용	병진
6	1995	돼지	을해	46	1955	양	을미	86	1915	토끼	을묘
7	1994	개	갑술	47	1954	말	갑오	87	1914	범	갑인
8	1993	닭	계유	48	1953	뱀	계사	88	1913	소	계축
9	1992	잔나비	임신	49	1952	용	임진	89	1912	쥐	임자
10	1991	양	신미	50	1951	토끼	신묘	90	1911	돼지	신해
11	1990	말	경오	51	1950	범	경인	91	1910	개	경술
12	1989	뱀	기사	52	1949	소	기축	92	1909	닭	기유
13	1988	용	무진	53	1948	쥐	무자	93	1908	잔나비	무신
14	1987	토끼	정묘	54	1947	돼지	정해	94	1907	양	정미
15	1986	범	병인	55	1946	개	병술	95	1906	말	병오
16	1985	소	을축	56	1945	닭	을유	96	1905	뱀	을사
17	1984	쥐	갑자	57	1944	잔나비	갑신	97	1904	용	갑진
18	1983	돼지	계해	58	1943	양	계미	98	1903	토끼	계묘
19	1982	개	임술	59	1942	말	임오	99	1902	범	임인
20	1981	닭	신유	60	1941	뱀	신사	100	1901	소	신축
21	1980	잔나비	경신	61	1940	용	경진	101	1900	쥐	경자
22	1979	양	기미	62	1939	토끼	기묘	102	1899	돼지	기해
23	1978	말	무오	63	1938	범	무인	103	1898	개	무술
24	1977	뱀	정사	64	1937	소	정축	104	1897	닭	정유
25	1976	용	병진	65	1936	쥐	병자	105	1896	잔나비	병신
26	1975	토끼	을묘	66	1935	돼지	을해	106	1895	양	을미
27	1974	범	갑인	67	1934	개	갑술	107	1894	말	갑오
28	1973	소	계축	68	1933	닭	계유	108	1893	뱀	계사
29	1972	쥐	임자	69	1932	잔나비	임신	109	1892	용	임진
30	1971	돼지	신해	70	1931	양	신미	110	1891	토끼	신묘
31	1970	개	경술	71	1930	말	경오	111	1890	범	경인
32	1969	닭	기유	72	1929	뱀	기사	112	1889	소	기축
33	1968	잔나비	무신	73	1928	용	무진	113	1888	쥐	무자
34	1967	양	정미	74	1927	토끼	정묘	114	1887	돼지	정해
35	1966	말	병오	75	1926	범	병인	115	1886	개	병술
36	1965	뱀	을사	76	1925	소	을축	116	1885	닭	을유
37	1964	용	갑진	77	1924	쥐	갑자	117	1884	잔나비	갑신
38	1963	토끼	계묘	78	1923	돼지	계해	118	1883	양	계미
39	1962	범	임인	79	1922	개	임술	119	1882	말	임오
40	1961	소	신축	80	1921	닭	신유	120	1881	뱀	신사

Ⅲ. 행정구역 분류 부호

1. 시군구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84

2. 읍면동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86

① 서울특별시 86
② 부산광역시 89
③ 대구광역시 91
④ 인천광역시 92
⑤ 광주광역시 93
⑥ 대전광역시 94
⑦ 울산광역시 95
⑧ 경 기 도 96
⑨ 강 원 도 99
⑩ 충청북도 101
⑪ 충청남도 102
⑫ 전라북도 104
⑬ 전라남도 106
⑭ 경상북도 108
⑮ 경상남도 110
⑯ 제 주 도 112

일 러 두 기

1. 분류 체계

○ 대분류(시·도 2자리), 중분류(시·군·구 3자리), 소분류(읍·면·동 2자리)의 3단계로 분류

2. 시군구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가. **'출생지'** 항목의 부호기입시 사용
나. 북한의 경우에는 194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3. 읍면동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 **'본가(본국)의 주소'** 항목의 부호기입시 사용

4. 1995년에 통합된 시·군

○ 강릉시 : 강릉시 + 명주군
○ 광양시 : 동광양시 + 광양군
○ 경주시 : 경주시 + 경주군(구 월성군)
○ 군산시 : 군산시 + 옥구군
○ 김천시 : 김천시 + 금릉군
○ 남양주시 : 미금시 + 남양주시
○ 문경시 : 점촌시 + 문경군
○ 삼척시 : 삼척시 + 삼척군
○ 순천시 : 순천시 + 승주군
○ 안동시 : 안동시 + 안동군
○ 영천시 : 영천시 + 영천군
○ 익산시 : 이리시 + 익산군
○ 제천시 : 제천시 + 제천군(구 제원군)
○ 충주시 : 충주시 + 중원군
○ 포항시 : 포항시 + 영일군
○ 공주시 : 공주시 + 공주군
○ 경산시 : 경산시 + 경산군
○ 구미시 : 구미시 + 선산군
○ 김제시 : 김제시 + 김제군
○ 나주시 : 나주시(구 금성시) + 나주군
○ 마산시 : 마산시 + 창원군 일부
○ 보령시 : 대천시 + 보령군
○ 서산시 : 서산시 + 서산군
○ 아산시 : 온양시 + 아산군
○ 영주시 : 영주시 + 영풍군(구 영주군)
○ 원주시 : 원주시 + 원주군(구 원성군)
○ 정읍시 : 정주시 + 정읍군
○ 진주시 : 진주시 + 진양군
○ 평택시 : 송탄시 + 평택시 + 평택군

1. 시군구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남 한)

행정구역명	부호
서울	**11**
강남구	230
강동구	250
강북구	090
강서구	160
관악구	210
광진구	050
구로구	170
금천구	180
노원구	110
도봉구	100
동대문구	060
동작구	200
마포구	140
서대문구	130
서초구	220
성동구	040
성북구	080
송파구	240
양천구	150
영등포구	190
용산구	030
은평구	120
종로구	010
중구	020
중랑구	070
부산	**21**
강서구	120
금정구	110
기장군	310
남구	070
동구	030
동래구	060
부산진구	050
북구	080
사상구	150
사하구	100
서구	020
수영구	140
연제구	130
영도구	040
중구	010
해운대구	090
대구	**22**
남구	040
달서구	070
달성군	310

행정구역명	부호
동구	020
북구	050
서구	030
수성구	060
중구	010
인천	**23**
강화군	310
계양구	070
남구	030
남동구	050
동구	020
부평구	060
서구	080
연수구	040
옹진군	320
중구	010
광주	**24**
광산구	050
남구	030
동구	010
북구	040
서구	020
대전	**25**
대덕구	050
동구	010
서구	030
유성구	040
중구	020
울산	**26**
남구	020
동구	030
북구	040
울주군	310
중구	010
경기	**31**
가평군	370
고양시	100
덕양구	
일산구	
과천시	110
광명시	060
광주군	340
구리시	120
군포시	160
김포시	230
남양주시	130
동두천시	080

행정구역명	부호
부천시	050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성남시	020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010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시흥시	150
안산시	090
안성시	220
안양시	040
동안구	
만안구	
양주군	310
양평군	380
여주군	320
연천군	350
오산시	140
용인시	190
의왕시	170
의정부시	030
이천시	210
파주시	200
평택시	070
포천군	360
하남시	180
화성군	330
강원	**32**
강릉시	030
고성군	400
동해시	040
삼척시	070
속초시	060
양구군	380
양양군	410
영월군	330
원주시	020
인제군	390
정선군	350
철원군	360
춘천시	010
태백시	050

행정구역명	부호
평창군	340
홍천군	310
화천군	370
횡성군	320
충북	**33**
괴산군	360
단양군	380
보은군	320
영동군	340
옥천군	330
음성군	370
제천시	030
증평출장소	390
진천군	350
청원군	310
청주시	010
상당구	
흥덕구	
충주시	020
충남	**34**
계룡출장소	400
공주시	020
금산군	310
논산시	060
당진군	390
보령시	030
부여군	330
서산시	050
서천군	340
아산시	040
연기군	320
예산군	370
천안시	010
청양군	350
태안군	380
홍성군	360
전북	**35**
고창군	370
군산시	020
김제시	060
남원시	050
무주군	330
부안군	380
순창군	360
완주군	310
익산시	030
임실군	350

행정구역명	부호
장수군	340
전주시	010
덕진구	
완산구	
정읍시	040
진안군	320
전남	**36**
강진군	390
고흥군	350
곡성군	320
광양시	060
구례군	330
나주시	040
담양군	310
목포시	010
무안군	420
보성군	360
순천시	030
신안군	480
여수시	020
영광군	440
영암군	410
완도군	460
장성군	450
장흥군	380
진도군	470
함평군	430
해남군	400
화순군	370
경북	**37**
경산시	100
경주시	020
고령군	370
구미시	050
군위군	310
김천시	030
문경시	090
봉화군	410
상주시	080
성주군	380
안동시	040
영덕군	350
영양군	340
영주시	060
영천시	070
예천군	400
울릉군	430

행정구역명	부호
울진군	420
의성군	320
청도군	360
청송군	330
칠곡군	390
포항시	010
남구	
북구	
경남	**38**
거제시	090
거창군	390
고성군	340
김해시	070
남해군	350
마산시	020
합포구	
회원구	
밀양시	080
사천시	060
산청군	370
양산시	100
의령군	310
진주시	030
진해시	040
창녕군	330
창원시	010
통영시	050
하동군	360
함안군	320
함양군	380
합천군	400
제주	**39**
남제주군	320
북제주군	310
서귀포시	020
제주시	010

(북한, 외국)

행정구역명	부호
북 한	1
강원	**46**
고성군	094
김화군	100
양구군	096
이천군	099
인제군	095
철원군	101
통천군	093
평강군	098
회양군	097
경기	**45**
개성시	089
개풍군	091
옹진군	092
장단군	090
평남	**41**
강동군	027
강서군	030
개천군	033
대동군	022
덕천군	034
맹산군	024
성천군	026
순천군	023
안주군	032
양덕군	025
영원군	035
용강군	029
중화군	028
진남포시	021
평양시	020
평원군	031
평북	**42**
강계군	053
구성군	046
박천군	042
벽동군	049
삭주군	047
선천군	040
신의주시	036
영변군	043
용천군	038
운산군	044
위원군	050
의주군	037
자성군	054
정주군	041
창성군	048
철산군	039
초산군	051
태천군	045
회천군	052
후창군	055
함남	**43**
갑산군	073
고원군	062
단천군	068
문천군	063
북청군	066
삼수군	072
신흥군	069
안변군	064
영흥군	061
원산시	057
이원군	067
장진군	070
정평군	060
풍산군	071
함주군	059
함흥시	056
혜산군	074
흥남시	058
흥원군	065
함북	**44**
경성군	081
경원군	087
경흥군	088
길주군	079
나진시	076
명천군	080
무산군	083
부령군	082
성진시	077
온성군	086
종성군	085
청진시	075
학성군	078
회령군	084
황해도	**40**
곡산군	019
금천군	006
벽성군	004
봉산군	016
사리원시	002
서흥군	017
송림시	003
송화군	010
수안군	018
신계군	008
신천군	013
안악군	012
연백군	005
은율군	011
장연군	009
제령군	014
평산군	007
해주시	001
황주군	015
외국	**48**
네팔	470
마카오	340
말레이지아	370
미얀마	380
바레인	500
방글라데시	430
베트남	420
사우디아라비아	530
스리랑카	490
싱가포르	400
이라크	460
이란	450
이스라엘	510
인도	440
인도네시아	360
일본	330
중국	310
캄보디아	350
쿠웨이트	520
태국	410
터어키	540
파키스탄	480
필리핀	390
홍콩	320
기타아시아지역	550
구소련	640
덴마크	560
독일	600
러시아	630
스위스	610
스페인	580
영국	620
이태리	570
프랑스	590
기타유럽지역	650
멕시코	680
미국	660
브라질	690
아르헨티나	700
캐나다	670
기타아메리카	710
뉴질랜드	730
호주	720
기타대양주지역	740
아프리카전지역	750

2. 읍면동별 행정구역 분류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원구)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서울특별시	**11**	천호2동	11 250 62	봉천11동	11 210 62	개봉3동	11 170 65
강남구	**11 230**	천호3동	11 250 63	봉천1동	11 210 52	개봉본동	11 170 66
개포1동	11 230 68	천호4동	11 250 64	봉천2동	11 210 53	고척1동	11 170 61
개포2동	11 230 69	**강북구**	**11 090**	봉천3동	11 210 54	고척2동	11 170 62
개포3동	11 230 70	미아1동	11 090 51	봉천4동	11 210 55	구로1동	11 170 52
개포4동	11 230 71	미아2동	11 090 52	봉천5동	11 210 56	구로2동	11 170 53
논현1동	11 230 52	미아3동	11 090 53	봉천6동	11 210 57	구로3동	11 170 54
논현2동	11 230 53	미아4동	11 090 54	봉천7동	11 210 58	구로4동	11 170 55
대치1동	11 230 60	미아5동	11 090 55	봉천8동	11 210 59	구로5동	11 170 56
대치2동	11 230 61	미아6·7동	11 090 56	봉천9동	11 210 60	구로6동	11 170 57
대치3동	11 230 62	미아8동	11 090 58	봉천본동	11 210 51	구로본동	11 170 58
대치4동	11 230 63	미아9동	11 090 59	신림10동	11 210 74	수궁동	11 170 69
도곡1동	11 230 66	번1동	11 090 60	신림11동	11 210 75	신도림동	11 170 51
도곡2동	11 230 67	번2동	11 090 61	신림12동	11 210 76	오류1동	11 170 67
삼성1동	11 230 58	번3동	11 090 62	신림13동	11 210 77	오류2동	11 170 68
삼성2동	11 230 59	수유1동	11 090 63	신림1동	11 210 65	**금천구**	**11 180**
세곡동	11 230 76	수유2동	11 090 64	신림2동	11 210 66	가산동	11 180 51
수서동	11 230 75	수유3동	11 090 65	신림3동	11 210 67	독산1동	11 180 52
신사동	11 230 51	수유4동	11 090 66	신림4동	11 210 68	독산2동	11 180 53
압구정1동	11 230 54	수유5동	11 090 67	신림5동	11 210 69	독산3동	11 180 54
압구정2동	11 230 55	수유6동	11 090 68	신림6동	11 210 70	독산4동	11 180 55
역삼1동	11 230 64	**강서구**	**11 160**	신림7동	11 210 71	독산본동	11 180 56
역삼2동	11 230 65	가양1동	11 160 64	신림8동	11 210 72	시흥1동	11 180 57
일원1동	11 230 73	가양2동	11 160 65	신림9동	11 210 73	시흥2동	11 180 58
일원2동	11 230 74	가양3동	11 160 66	신림본동	11 210 64	시흥3동	11 180 59
일원본동	11 230 72	공항동	11 160 69	**광진구**	**11 050**	시흥4동	11 180 60
청담1동	11 230 56	등촌1동	11 160 52	광장동	11 050 63	시흥5동	11 180 61
청담2동	11 230 57	등촌2동	11 160 53	구의1동	11 050 60	시흥본동	11 180 62
강동구	**11 250**	등촌3동	11 160 54	구의2동	11 050 61	**노원구**	**11 110**
강일동	11 250 51	발산1동	11 160 67	구의3동	11 050 62	공릉1동	11 110 55
고덕1동	11 250 55	발산2동	11 160 68	군자동	11 050 54	공릉2동	11 110 56
고덕2동	11 250 56	방화1동	11 160 70	노유1동	11 050 51	공릉3동	11 110 57
길1동	11 250 68	방화2동	11 160 71	노유2동	11 050 52	상계10동	11 110 74
길2동	11 250 69	방화3동	11 160 72	능동	11 050 59	상계1동	11 110 65
둔촌1동	11 250 70	염창동	11 160 51	자양1동	11 050 64	상계2동	11 110 66
둔촌2동	11 250 71	화곡1동	11 160 56	자양2동	11 050 65	상계3동	11 110 67
명일1동	11 250 53	화곡2동	11 160 57	자양3동	11 050 66	상계4동	11 110 68
명일2동	11 250 54	화곡3동	11 160 58	중곡1동	11 050 55	상계5동	11 110 69
상일동	11 250 52	화곡4동	11 160 59	중곡2동	11 050 56	상계6동	11 110 70
성내1동	11 250 65	화곡5동	11 160 60	중곡3동	11 050 57	상계7동	11 110 71
성내2동	11 250 66	화곡6동	11 160 61	중곡4동	11 050 58	상계8동	11 110 72
성내3동	11 250 67	화곡7동	11 160 62	화양동	11 050 53	상계9동	11 110 73
암사1동	11 250 57	화곡8동	11 160 63	**구로구**	**11 170**	월계1동	11 110 51
암사2동	11 250 58	화곡본동	11 160 55	가리봉1동	11 170 59	월계2동	11 110 52
암사3동	11 250 59	**관악구**	**11 210**	가리봉2동	11 170 60	월계3동	11 110 53
암사4동	11 250 60	남현동	11 210 63	개봉1동	11 170 63	월계4동	11 110 54
천호1동	11 250 61	봉천10동	11 210 61	개봉2동	11 170 64	중계1동	11 110 61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중계2동	11 110 62	휘경1동	11 060 72	합정동	11 140 68	도선동	11 040 53
중계3동	11 110 63	휘경2동	11 060 73	**서대문구**	**11 130**	마장동	11 040 54
중계4동	11 110 64	**동작구**	**11 200**	남가좌1동	11 130 69	사근동	11 040 55
중계본동	11 110 60	노량진1동	11 200 51	남가좌2동	11 130 70	성수1가1동	11 040 65
하계1동	11 110 58	노량진2동	11 200 52	대신동	11 130 57	성수1가2동	11 040 66
하계2동	11 110 59	대방동	11 200 68	북가좌1동	11 130 71	성수2가1동	11 040 67
도봉구	**11 100**	동작동	11 200 62	북가좌2동	11 130 72	성수2가3동	11 040 68
도봉1동	11 100 64	본동	11 200 58	북아현1동	11 130 54	송정동	11 040 69
도봉2동	11 100 65	사당1동	11 200 63	북아현2동	11 130 55	옥수1동	11 040 63
방학1동	11 100 55	사당2동	11 200 64	북아현3동	11 130 56	옥수2동	11 040 64
방학2동	11 100 56	사당3동	11 200 65	연희1동	11 130 59	왕십리1동	11 040 51
방학3동	11 100 57	사당4동	11 200 66	연희2동	11 130 60	왕십리2동	11 040 52
방학4동	11 100 58	사당5동	11 200 67	연희3동	11 130 61	용답동	11 040 70
쌍문1동	11 100 51	상도1동	11 200 53	창천동	11 130 58	응봉동	11 040 58
쌍문2동	11 100 52	상도2동	11 200 54	천연동	11 130 52	행당1동	11 040 56
쌍문3동	11 100 53	상도3동	11 200 55	충정로동	11 130 51	행당2동	11 040 57
쌍문4동	11 100 54	상도4동	11 200 56	홍은1동	11 130 66	**성북구**	**11 080**
창1동	11 100 59	상도5동	11 200 57	홍은2동	11 130 67	길음1동	11 080 66
창2동	11 100 60	신대방1동	11 200 69	홍은3동	11 130 68	길음2동	11 080 67
창3동	11 100 61	신대방2동	11 200 70	홍제1동	11 130 62	길음3동	11 080 68
창4동	11 100 62	흑석1동	11 200 59	홍제2동	11 130 63	돈암1동	11 080 58
창5동	11 100 63	흑석2동	11 200 60	홍제3동	11 130 64	돈암2동	11 080 59
동대문구	**11 060**	흑석3동	11 200 61	홍제4동	11 130 65	동선1동	11 080 56
답십리1동	11 060 60	**마포구**	**11 140**	**서초구**	**11 220**	동선2동	11 080 57
답십리2동	11 060 61	공덕1동	11 140 54	내곡동	11 220 68	동소문동	11 080 53
답십리3동	11 060 62	공덕2동	11 140 55	반포1동	11 220 57	보문동	11 080 61
답십리4동	11 060 63	노고산동	11 140 62	반포2동	11 220 58	삼선1동	11 080 54
답십리5동	11 060 64	대흥동	11 140 60	반포3동	11 220 59	삼선2동	11 080 55
신설동	11 060 51	도화1동	11 140 57	반포4동	11 220 60	상월곡동	11 080 75
용두1동	11 060 52	도화2동	11 140 58	반포본동	11 220 56	석관1동	11 080 79
용두2동	11 060 53	동교동	11 140 67	방배1동	11 220 62	석관2동	11 080 80
이문1동	11 060 74	망원1동	11 140 69	방배2동	11 220 63	성북1동	11 080 51
이문2동	11 060 75	망원2동	11 140 70	방배3동	11 220 64	성북2동	11 080 52
이문3동	11 060 76	상수동	11 140 65	방배4동	11 220 65	안암동	11 080 60
장안1동	11 060 65	상암동	11 140 74	방배본동	11 220 61	월곡1동	11 080 71
장안2동	11 060 66	서교동	11 140 66	서초1동	11 220 51	월곡2동	11 080 72
장안3동	11 060 67	성산1동	11 140 72	서초2동	11 220 52	월곡3동	11 080 73
장안4동	11 060 68	성산2동	11 140 73	서초3동	11 220 53	월곡4동	11 080 74
전동1동	11 060 56	신공덕동	11 140 56	서초4동	11 220 54	장위1동	11 080 76
전동2동	11 060 57	신수동	11 140 63	양재1동	11 220 66	장위2동	11 080 77
전동3동	11 060 58	아현1동	11 140 51	양재2동	11 220 67	장위3동	11 080 78
전동4동	11 060 59	아현2동	11 140 52	잠원동	11 220 55	정능1동	11 080 62
제기1동	11 060 54	아현3동	11 140 53	**성동구**	**11 040**	정능2동	11 080 63
제기2동	11 060 55	연남동	11 140 71	금호1가동	11 040 59	정능3동	11 080 64
청량리1동	11 060 69	염리동	11 140 61	금호2가동	11 040 60	정능4동	11 080 65
청량리2동	11 060 70	용강동	11 140 59	금호3가동	11 040 61	종암1동	11 080 69
회기동	11 060 71	창전동	11 140 64	금호4가동	11 040 62	종암2동	11 080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랑구)

행정구역명	부호
송파구	**11 240**
가락1동	11 240 66
가락2동	11 240 67
가락본동	11 240 65
거여1동	11 240 53
거여2동	11 240 54
마천1동	11 240 55
마천2동	11 240 56
문정1동	11 240 68
문정2동	11 240 69
방이1동	11 240 57
방이2동	11 240 58
삼전동	11 240 64
석촌동	11 240 63
송파1동	11 240 61
송파2동	11 240 62
오금동	11 240 60
오륜동	11 240 59
잠실1동	11 240 72
잠실2동	11 240 73
잠실3동	11 240 74
잠실4동	11 240 75
잠실5동	11 240 76
잠실6동	11 240 77
잠실7동	11 240 78
잠실본동	11 240 71
장지동	11 240 70
풍납1동	11 240 51
풍납2동	11 240 52
양천구	**11 150**
목1동	11 150 51
목2동	11 150 52
목3동	11 150 53
목4동	11 150 54
목5동	11 150 55
목6동	11 150 56
신월1동	11 150 57
신월2동	11 150 58
신월3동	11 150 59
신월4동	11 150 60
신월5동	11 150 61
신월6동	11 150 62
신월7동	11 150 63
신정1동	11 150 64
신정2동	11 150 65
신정3동	11 150 66
신정4동	11 150 67
신정5동	11 150 68
신정6동	11 150 69
신정7동	11 150 70
영등포구	**11 190**
당산1동	11 190 55
당산2동	11 190 56
대림1동	11 190 70
대림2동	11 190 71
대림3동	11 190 72
도림1동	11 190 57
도림2동	11 190 58
문래1동	11 190 59
문래2동	11 190 60
신길1동	11 190 63
신길2동	11 190 64
신길3동	11 190 65
신길4동	11 190 66
신길5동	11 190 67
신길6동	11 190 68
신길7동	11 190 69
양평1동	11 190 61
양평2동	11 190 62
여의도동	11 190 54
영등포1동	11 190 51
영등포2동	11 190 52
영등포3동	11 190 53
용산구	**11 030**
남영동	11 030 53
보광동	11 030 70
서빙고동	11 030 69
용문동	11 030 59
용산2가동	11 030 52
원효로1동	11 030 56
원효로2동	11 030 57
이촌1동	11 030 63
이촌2동	11 030 64
이태원1동	11 030 65
이태원2동	11 030 66
청파1동	11 030 54
청파2동	11 030 55
한강로1동	11 030 60
한강로2동	11 030 61
한강로3동	11 030 62
한남1동	11 030 67
한남2동	11 030 68
효창동	11 030 58
후암동	11 030 51
은평구	**11 120**
갈현1동	11 120 55
갈현2동	11 120 56
구산동	11 120 57
녹번동	11 120 51
대조동	11 120 58
불광1동	11 120 52
불광2동	11 120 53
불광3동	11 120 54
수색동	11 120 68
신사1동	11 120 65
신사2동	11 120 66
역촌1동	11 120 63
역촌2동	11 120 64
응암1동	11 120 59
응암2동	11 120 60
응암3동	11 120 61
응암4동	11 120 62
증산동	11 120 67
진관내동	11 120 69
진관외동	11 120 70
종로구	**11 010**
가회동	11 010 60
교남동	11 010 58
명륜3가동	11 010 66
무악동	11 010 57
부암동	11 010 55
사직동	11 010 53
삼청동	11 010 54
숭인1동	11 010 70
숭인2동	11 010 71
이화동	11 010 64
종로1·2·3·4가동	11 010 61
종로5·6가동	11 010 63
창신1동	11 010 67
창신2동	11 010 68
창신3동	11 010 69
청운동	11 010 51
평창동	11 010 56
혜화동	11 010 65
효자동	11 010 52
중구	**11 020**
광희동	11 020 59
명동	11 020 55
소공동	11 020 52
신당1동	11 020 61
신당2동	11 020 62
신당3동	11 020 63
신당4동	11 020 64
신당5동	11 020 65
신당6동	11 020 66
을지로3·4·5가동	11 020 60
장충동	11 020 58
중림동	11 020 68
필동	11 020 57
황학동	11 020 67
회현동	11 020 54
중랑구	**11 070**
망우1동	11 070 66
망우2동	11 070 67
망우3동	11 070 68
면목1동	11 070 51
면목2동	11 070 52
면목3동	11 070 53
면목4동	11 070 54
면목5동	11 070 55
면목6동	11 070 56
면목7동	11 070 57
면목8동	11 070 58
묵1동	11 070 64
묵2동	11 070 65
상봉1동	11 070 59
상봉2동	11 070 60
신내1동	11 070 69
신내2동	11 070 70
중화1동	11 070 61
중화2동	11 070 62
중화3동	11 070 63

(부산광역시 강서구~ 연제구)

행정구역명	부호
부산광역시	**21**
강서구	**21 120**
가락동	21 120 55
강동동	21 120 53
녹산동	21 120 56
대저1동	21 120 51
대저2동	21 120 52
명지동	21 120 54
천가동	21 120 57
금정구	**21 110**
구서1동	21 110 69
구서2동	21 110 70
금사동	21 110 55
금성동	21 110 71
남산동	21 110 68
부곡1동	21 110 57
부곡2동	21 110 58
부곡3동	21 110 59
부곡4동	21 110 60
서1동	21 110 51
서2동	21 110 52
서3동	21 110 53
서4동	21 110 54
선두구동	21 110 64
장전1동	21 110 61
장전2동	21 110 62
장전3동	21 110 63
청룡노포동	21 110 67
기장군	**21 310**
기장읍	21 310 11
일광면	21 310 31
장안읍	21 310 12
정관면	21 310 32
철마면	21 310 33
남구	**21 070**
감만1동	21 070 62
감만2동	21 070 63
대연1동	21 070 51
대연2동	21 070 52
대연3동	21 070 53
대연4동	21 070 54
대연5동	21 070 55
대연6동	21 070 56
문현1동	21 070 66
문현2동	21 070 67
문현3동	21 070 68
문현4동	21 070 69
용당동	21 070 61
용호1동	21 070 57
용호2동	21 070 58
용호3동	21 070 59
용호4동	21 070 60
우암1동	21 070 64
우암2동	21 070 65
동구	**21 030**
범일1동	21 030 65
범일2동	21 030 66
범일4동	21 030 67
범일5동	21 030 68
범일6동	21 030 69
수정1동	21 030 56
수정2동	21 030 57
수정3동	21 030 58
수정4동	21 030 59
수정5동	21 030 60
좌천1동	21 030 61
좌천4동	21 030 64
초량1동	21 030 51
초량2동	21 030 52
초량3동	21 030 53
초량4동	21 030 54
초량6동	21 030 55
동래구	**21 060**
명륜1동	21 060 53
명륜2동	21 060 54
명장1동	21 060 63
명장2동	21 060 64
복산동	21 060 52
사직1동	21 060 58
사직2동	21 060 59
사직3동	21 060 60
수민동	21 060 51
안락1동	21 060 61
안락2동	21 060 62
온천1동	21 060 55
온천2동	21 060 56
온천3동	21 060 57
부산진구	**21 050**
가야1동	21 050 71
가야2동	21 050 72
가야3동	21 050 73
개금1동	21 050 74
개금2동	21 050 75
개금3동	21 050 76
당감1동	21 050 67
당감2동	21 050 68
당감3동	21 050 69
당감4동	21 050 70
범전동	21 050 53
범천1동	21 050 77
범천2동	21 050 78
범천4동	21 050 79
부암1동	21 050 64
부암3동	21 050 66
부전1동	21 050 51
부전2동	21 050 52
양정1동	21 050 56
양정2동	21 050 57
연지동	21 050 54
전포1동	21 050 60
전포2동	21 050 61
전포3동	21 050 62
초읍동	21 050 55
북구	**21 080**
구포1동	21 080 51
구포2동	21 080 52
구포3동	21 080 53
금곡동	21 080 54
덕천1동	21 080 56
덕천2동	21 080 57
덕천3동	21 080 58
만덕1동	21 080 59
만덕2동	21 080 60
만덕3동	21 080 61
화명동	21 080 55
사상구	**21 150**
감전1동	21 150 58
감전2동	21 150 59
괘법동	21 150 57
덕포1동	21 150 55
덕포2동	21 150 56
모라1동	21 150 52
모라2동	21 150 53
모라3동	21 150 54
삼락동	21 150 51
엄궁동	21 150 64
주례1동	21 150 60
주례2동	21 150 61
주례3동	21 150 62
학장동	21 150 63
사하구	**21 100**
감천1동	21 100 65
감천2동	21 100 66
괴정1동	21 100 51
괴정2동	21 100 52
괴정3동	21 100 53
괴정4동	21 100 54
구평동	21 100 64
다대1동	21 100 62
다대2동	21 100 63
당리동	21 100 55
신평1동	21 100 58
신평2동	21 100 59
장림1동	21 100 60
장림2동	21 100 61
하단1동	21 100 56
하단2동	21 100 57
서구	**21 020**
남부민1동	21 020 65
남부민2동	21 020 66
남부민3동	21 020 67
동대신1동	21 020 51
동대신2동	21 020 52
동대신3동	21 020 53
부민동	21 020 59
서대신1동	21 020 54
서대신2동	21 020 55
서대신3동	21 020 56
서대신4동	21 020 57
아미동	21 020 61
암남동	21 020 68
초장동	21 020 63
충무동	21 020 64
수영구	**21 140**
광안1동	21 140 56
광안2동	21 140 57
광안3동	21 140 58
광안4동	21 140 59
남천1동	21 140 51
남천2동	21 140 52
망미1동	21 140 54
망미2동	21 140 55
민락동	21 140 60
수영동	21 140 53
연제구	**21 130**
거제1동	21 130 51
거제2동	21 130 52
거제3동	21 130 53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운대구)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거제4동	21 130 54	좌동	21 090 55				
연산1동	21 130 55	중1동	21 090 53				
연산2동	21 130 56	중2동	21 090 54				
연산3동	21 130 57						
연산4동	21 130 58						
연산5동	21 130 59						
연산6동	21 130 60						
연산7동	21 130 61						
연산8동	21 130 62						
연산9동	21 130 63						
영도구	**21 040**						
남항동	21 040 53						
동삼1동	21 040 65						
동삼2동	21 040 66						
동삼3동	21 040 67						
봉래1동	21 040 59						
봉래3동	21 040 61						
봉래4동	21 040 62						
신선1동	21 040 56						
신선2동	21 040 57						
신선3동	21 040 58						
영선1동	21 040 54						
영선2동	21 040 55						
청학1동	21 040 63						
청학2동	21 040 64						
중구	**21 010**						
광복동	21 010 57						
남포동	21 010 58						
대청동	21 010 53						
동광동	21 010 52						
보수동	21 010 54						
부평동	21 010 56						
영주1동	21 010 59						
영주2동	21 010 60						
중앙동	21 010 51						
해운대구	**21 090**						
반송1동	21 090 61						
반송2동	21 090 62						
반송3동	21 090 63						
반여1동	21 090 57						
반여2동	21 090 58						
반여3동	21 090 59						
송정동	21 090 56						
우1동	21 090 51						
우2동	21 090 52						
재송1동	21 090 64						
재송2동	21 090 65						

(대구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대구광역시	**22**	**동구**	**22 020**	내당4동	22 030 53	동인1·2·4가동	22 010 51
남구	**22 040**	공산동	22 020 71	비산1동	22 030 54	동인3가동	22 010 52
대명10동	22 040 65	도평동	22 020 62	비산2·3동	22 030 55	삼덕동	22 010 54
대명11동	22 040 66	동촌동	22 020 66	비산4동	22 030 56	성내1동	22 010 56
대명1동	22 040 56	방촌동	22 020 68	비산5동	22 030 57	성내2동	22 010 59
대명2·8동	22 040 57	불로·봉무동	22 020 63	비산6동	22 030 58	성내3동	22 010 61
대명3·7동	22 040 58	신암1동	22 020 51	비산7동	22 030 59		
대명4동	22 040 59	신암2동	22 020 52	상중이동	22 030 66		
대명5동	22 040 60	신암3동	22 020 53	원대동	22 030 68		
대명6동	22 040 61	신암4동	22 020 54	평리1동	22 030 60		
대명9동	22 040 64	신암5동	22 020 55	평리2동	22 030 61		
봉덕1동	22 040 53	신천1.2동	22 020 56	평리3동	22 030 62		
봉덕2동	22 040 54	신천3동	22 020 58	평리4동	22 030 63		
봉덕3동	22 040 55	신천4동	22 020 59	평리5동	22 030 64		
이천동	22 040 51	안심1동	22 020 73	평리6동	22 030 65		
달서구	**22 070**	안심2동	22 020 74	**수성구**	**22 060**		
감삼동	22 070 57	안심3.4동	22 020 75	고산1동	22 060 71		
도원동	22 070 68	지저동	22 020 65	고산2동	22 060 72		
두류1동	22 070 53	해안동	22 020 69	고산3동	22 060 73		
두류2동	22 070 54	효목1동	22 020 60	두산동	22 060 66		
두류3동	22 070 55	효목2동	22 020 61	만촌1동	22 060 55		
본동	22 070 71	**북구**	**22 050**	만촌2동	22 060 56		
본리동	22 070 56	검단동	22 050 70	만촌3동	22 060 57		
상인1동	22 070 65	고성동	22 050 51	범물1동	22 060 69		
상인2동	22 070 66	관음동	22 050 77	범물2동	22 060 70		
상인3동	22 070 67	노원1·2동	22 050 58	범어1동	22 060 51		
성당1동	22 070 51	노원3동	22 050 59	범어2동	22 060 52		
성당2동	22 070 52	대현1동	22 050 67	범어3동	22 060 53		
송현1동	22 070 69	대현2동	22 050 68	범어4동	22 060 54		
송현2동	22 070 70	무태조야동	22 050 71	상동	22 060 64		
신당동	22 070 61	복현1동	22 050 65	수성1가동	22 060 58		
월성1동	22 070 62	복현2동	22 050 66	수성2·3가동	22 060 59		
월성2동	22 070 63	산격1동	22 050 61	수성4가동	22 060 60		
이곡동	22 070 60	산격2동	22 050 62	중동	22 060 63		
장기동	22 070 59	산격3동	22 050 63	지산1동	22 060 67		
죽전동	22 070 58	산격4동	22 050 64	지산2동	22 060 68		
진천동	22 070 64	칠곡1동	22 050 74	파동	22 060 65		
달성군	**22 310**	칠곡2동	22 050 75	황금1동	22 060 61		
가창면	22 310 31	칠곡3동	22 050 76	황금2동	22 060 62		
구지면	22 310 36	칠성동	22 050 52	**중구**	**22 010**		
논공읍	22 310 12	침산1동	22 050 55	남산1동	22 010 64		
다사읍	22 310 13	침산2동	22 050 56	남산2동	22 010 65		
옥포면	22 310 33	침산3동	22 050 57	남산3동	22 010 66		
유가면	22 310 35	태전동	22 050 78	남산4동	22 010 67		
하빈면	22 310 32	**서구**	**22 030**	대봉1동	22 010 68		
현풍면	22 310 34	내당1동	22 030 51	대봉2동	22 010 69		
화원읍	22 310 11	내당2·3동	22 030 52	대신동	22 010 62		

(인천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인천광역시	**23**
강화군	**23 310**
강화읍	23 310 11
교동면	23 310 40
길상면	23 310 33
내가면	23 310 36
불은면	23 310 32
삼산면	23 310 41
서도면	23 310 42
선원면	23 310 31
송해면	23 310 39
양사면	23 310 38
양도면	23 310 35
하점면	23 310 37
화도면	23 310 34
계양구	**23 070**
계산1동	23 070 53
계산2동	23 070 54
계산3동	23 070 55
계양1동	23 070 60
계양2동	23 070 61
작전1동	23 070 56
작전2동	23 070 57
작전서운동	23 070 58
효성1동	23 070 51
효성2동	23 070 52
남구	**23 030**
관교동	23 030 73
도화1동	23 030 62
도화2동	23 030 63
도화3동	23 030 64
문학동	23 030 74
숭의1동	23 030 51
숭의2동	23 030 52
숭의3동	23 030 53
숭의4동	23 030 54
용현1동	23 030 55
용현2동	23 030 56
용현3동	23 030 57
용현4동	23 030 58
용현5동	23 030 59
주안1동	23 030 65
주안2동	23 030 66
주안3동	23 030 67
주안4동	23 030 68
주안5동	23 030 69
주안6동	23 030 70
주안7동	23 030 71
주안8동	23 030 72
학익1동	23 030 60
학익2동	23 030 61
남동구	**23 050**
간석1동	23 050 55
간석2동	23 050 56
간석3동	23 050 57
간석4동	23 050 58
구월1동	23 050 51
구월2동	23 050 52
구월3동	23 050 53
구월4동	23 050 54
남촌도림동	23 050 67
논현고잔동	23 050 69
만수1동	23 050 59
만수2동	23 050 60
만수3동	23 050 61
만수4동	23 050 62
만수5동	23 050 63
만수6동	23 050 64
장수서창동	23 050 65
동구	**23 020**
금창동	23 020 64
만석동	23 020 51
송림1동	23 020 58
송림2동	23 020 59
송림3·5동	23 020 60
송림4동	23 020 61
송림6동	23 020 63
송현1·2동	23 020 55
송현3동	23 020 57
화수1·화평동	23 020 52
화수2동	23 020 53
부평구	**23 060**
갈산1동	23 060 63
갈산2동	23 060 64
부개1동	23 060 66
부개2동	23 060 67
부개3동	23 060 68
부평1동	23 060 51
부평2동	23 060 52
부평3동	23 060 53
부평4동	23 060 54
부평5동	23 060 55
부평6동	23 060 56
산곡1동	23 060 57
산곡2동	23 060 58
산곡3동	23 060 59
산곡4동	23 060 60
삼산동	23 060 65
십정1동	23 060 70
십정2동	23 060 71
일신동	23 060 69
청천1동	23 060 61
청천2동	23 060 62
서구	**23 080**
가정1동	23 080 54
가정2동	23 080 55
가정3동	23 080 56
가좌1동	23 080 62
가좌2동	23 080 63
가좌3동	23 080 64
가좌4동	23 080 65
검단동	23 080 66
검암경서동	23 080 51
석남1동	23 080 58
석남2동	23 080 59
석남3동	23 080 60
신현원창동	23 080 57
연희동	23 080 53
연수구	**23 040**
동춘1동	23 040 57
동춘2동	23 040 58
선학동	23 040 52
연수1동	23 040 53
연수2동	23 040 54
연수3동	23 040 55
옥련동	23 040 51
청량동	23 040 59
청학동	23 040 56
옹진군	**23 320**
대청면	23 320 34
덕적면	23 320 35
백령면	23 320 33
북도면	23 320 31
연평면	23 320 32
영흥면	23 320 37
자월면	23 320 36
중구	**23 010**
도원동	23 010 56
동인천동	23 010 58
북성동	23 010 60
송월동	23 010 61
신포동	23 010 53
신흥동	23 010 54
연안동	23 010 52
영종동	23 010 62
용유동	23 010 63
율목동	23 010 57

(광주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광주광역시	**24**	학2동	24 010 70				
광산구	**24 050**	학운동	24 010 71				
도산동	24 050 54	**북구**	**24 040**				
동곡동	24 050 65	건국동	24 040 77				
본량동	24 050 68	동림동	24 040 61				
비아동	24 050 61	두암1동	24 040 67				
삼도동	24 050 67	두암2동	24 040 68				
송정1동	24 050 51	두암3동	24 040 69				
송정2동	24 050 52	매곡동	24 040 71				
신가동	24 050 62	문화동	24 040 64				
신흥동	24 050 55	문흥1동	24 040 65				
어룡동	24 050 56	문흥2동	24 040 66				
우산동	24 050 58	서산동	24 040 70				
월곡1동	24 050 59	석곡동	24 040 74				
월곡2동	24 050 60	신안동	24 040 56				
임곡동	24 050 64	오치1동	24 040 72				
평동	24 050 66	오치2동	24 040 73				
하남동	24 050 63	용봉동	24 040 57				
남구	**24 030**	우산동	24 040 62				
대촌동	24 030 70	운암1동	24 040 58				
방림1동	24 030 52	운암2동	24 040 59				
방림2동	24 030 53	운암3동	24 040 60				
백운1동	24 030 62	임동	24 040 55				
백운2동	24 030 63	중앙동	24 040 54				
봉선1동	24 030 68	중흥1동	24 040 51				
봉선2동	24 030 69	중흥2동	24 040 52				
사직동	24 030 54	중흥3동	24 040 53				
송암동	24 030 67	풍향동	24 040 63				
양림동	24 030 51	**서구**	**24 020**				
월산동	24 030 57	광천동	24 020 56				
월산4동	24 030 60	농성1동	24 020 54				
월산5동	24 030 61	농성2동	24 020 55				
주월1동	24 030 64	상무1동	24 020 58				
주월2동	24 030 65	상무2동	24 020 59				
효덕동	24 030 66	서창동	24 020 64				
동구	**24 010**	양3동	24 020 53				
계림1동	24 010 56	양동	24 020 51				
계림2동	24 010 58	유덕동	24 020 57				
동명동	24 010 54	화정1동	24 020 60				
산수1동	24 010 59	화정2동	24 020 61				
산수2동	24 010 61	화정3동	24 020 62				
서남동	24 010 64	화정4동	24 020 63				
지산1동	24 010 62						
지산2동	24 010 63						
지원동	24 010 72						
충장동	24 010 51						
학1동	24 010 68						

(대전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대전광역시	25	만년동	25 030 69				
대덕구	25 050	변동	25 030 55				
대화동	25 050 52	복수동	25 030 51				
덕암동	25 050 60	삼천동	25 030 58				
목상동	25 050 61	용문동	25 030 56				
법1동	25 050 56	월평1동	25 030 66				
법2동	25 050 57	월평2동	25 030 67				
석봉동	25 050 59	월평3동	25 030 68				
신탄진동	25 050 58	정림동	25 030 54				
오정동	25 050 51	탄방동	25 030 57				
중리동	25 050 55	유성구	25 040				
회덕1동	25 050 53	구즉동	25 040 58				
회덕2동	25 050 54	신성동	25 040 55				
동구	25 010	온천1동	25 040 53				
가양1동	25 010 63	온천2동	25 040 54				
가양2동	25 010 64	전민동	25 040 57				
대동	25 010 59	진잠동	25 040 51				
대신동	25 010 58	중구	25 020				
대청동	25 010 73	대사동	25 020 58				
산내동	25 010 75	대흥동	25 020 55				
삼성1동	25 010 69	목동	25 020 53				
삼성2동	25 010 70	문창동	25 020 56				
성남1동	25 010 66	문화1동	25 020 67				
성남2동	25 010 67	문화2동	25 020 68				
소제동	25 010 62	부사동	25 020 59				
신흥동	25 010 54	산성동	25 020 69				
용운동	25 010 57	석교동	25 020 57				
용전동	25 010 65	오류동	25 020 62				
인동	25 010 52	용두동	25 020 60				
자양동	25 010 60	유천1동	25 020 65				
중앙동	25 010 51	유천2동	25 020 66				
판암1동	25 010 55	은행선화동	25 020 51				
판암2동	25 010 56	중촌동	25 020 54				
홍도동	25 010 68	태평1동	25 020 63				
효동	25 010 53	태평2동	25 020 64				
서구	25 030						
가수원동	25 030 70						
가장동	25 030 62						
갈마1동	25 030 64						
갈마2동	25 030 65						
괴정동	25 030 61						
기성동	25 030 71						
내동	25 030 63						
도마1동	25 030 52						
도마2동	25 030 53						
둔산1동	25 030 59						
둔산2동	25 030 60						

(울산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울산광역시	**26**	웅천면	26 310 34				
남구	**26 020**	청량면	26 310 33				
달동	26 020 56	**중구**	**26 010**				
무거1동	26 020 58	다운동	26 010 61				
무거2동	26 020 59	반구1동	26 010 52				
삼산동	26 020 57	반구2동	26 010 53				
선암동	26 020 64	병영1동	26 010 62				
신정1동	26 020 51	병영2동	26 010 63				
신정2동	26 020 52	복산1동	26 010 54				
신정3동	26 020 53	복산2동	26 010 55				
신정4동	26 020 54	북정동	26 010 56				
신정5동	26 020 55	성남동	26 010 58				
야음1·장생포동	26 020 61	약사동	26 010 64				
야음2동	26 020 62	옥교동	26 010 57				
야음3동	26 020 63	우정동	26 010 59				
옥동	26 020 60	태화동	26 010 60				
동구	**26 030**	학성동	26 010 51				
남목1동	26 030 58						
남목2동	26 030 59						
남목3동	26 030 60						
대송동	26 030 54						
방어동	26 030 51						
일산동	26 030 52						
전하1동	26 030 55						
전하2동	26 030 56						
전하3동	26 030 57						
화정동	26 030 53						
북구	**26 040**						
강동동	26 040 54						
농소1동	26 040 51						
농소2동	26 040 52						
농소3동	26 040 53						
송정동	26 040 57						
양정동	26 040 58						
염포동	26 040 59						
효문동	26 040 56						
울주군	**26 310**						
두동면	26 310 36						
두서면	26 310 37						
범서면	26 310 35						
삼남면	26 310 39						
삼동면	26 310 40						
상북면	26 310 38						
서생면	26 310 31						
언양읍	26 310 12						
온산읍	26 310 11						
온양면	26 310 32						

(경기도 가평군 ~ 성남시)

행정구역명	부호
경기도	31
가평군	31 370
가평읍	31 370 11
북면	31 370 35
상면	31 370 33
설악면	31 370 31
외서면	31 370 32
하면	31 370 34
고양시	31 100
덕양구	
고양동	31 101 59
관산동	31 101 60
능곡동	31 101 61
대덕동	31 101 68
성사1동	31 101 54
성사2동	31 101 55
신도동	31 101 57
원신동	31 101 52
주교동	31 101 51
창릉동	31 101 58
행신1동	31 101 65
행신2동	31 101 66
행주동	31 101 64
화전동	31 101 67
화정1동	31 101 62
화정2동	31 101 63
효자동	31 101 56
흥도동	31 101 53
일산구	
고봉동	31 102 65
대화동	31 102 62
마두1동	31 102 58
마두2동	31 102 59
백석동	31 102 57
송산동	31 102 67
송포동	31 102 66
식사동	31 102 51
일산1동	31 102 52
일산2동	31 102 53
일산3동	31 102 54
일산4동	31 102 55
장항1동	31 102 63
장항2동	31 102 64
주엽1동	31 102 60
주엽2동	31 102 61
풍산동	31 102 56
과천시	31 110
갈현동	31 110 52
과천동	31 110 55
문원동	31 110 56
별양동	31 110 53
부림동	31 110 54
중앙동	31 110 51
광명시	31 060
광명1동	31 060 51
광명2동	31 060 52
광명3동	31 060 53
광명4동	31 060 54
광명5동	31 060 55
광명6동	31 060 56
광명7동	31 060 57
소하1동	31 060 66
소하2동	31 060 67
철산1동	31 060 58
철산2동	31 060 59
철산3동	31 060 60
철산4동	31 060 61
하안1동	31 060 62
하안2동	31 060 63
하안3동	31 060 64
하안4동	31 060 65
학온동	31 060 68
광주군	31 340
광주읍	31 340 11
남종면	31 340 36
도척면	31 340 34
실촌면	31 340 33
오포면	31 340 31
중부면	31 340 37
초월면	31 340 32
퇴촌면	31 340 35
구리시	31 120
갈매동	31 120 51
교문1동	31 120 54
교문2동	31 120 55
동구동	31 120 52
수택1동	31 120 56
수택2동	31 120 57
수택3동	31 120 58
인창동	31 120 53
군포시	31 160
광정동	31 160 61
군포1동	31 160 51
군포2동	31 160 52
궁내동	31 160 60
금정동	31 160 56
대야동	31 160 62
산본1동	31 160 54
산본2동	31 160 55
수리동	31 160 59
오금동	31 160 58
재궁동	31 160 57
김포시	31 230
고촌면	31 230 31
김포1동	31 230 51
김포2동	31 230 52
김포3동	31 230 53
대곶면	31 230 34
양촌면	31 230 32
월곶면	31 230 35
통진면	31 230 33
하성면	31 230 36
남양주시	31 130
금곡동	31 130 53
도농동	31 130 56
별내면	31 130 31
수동면	31 130 34
양정동	31 130 54
오남면	31 130 36
와부읍	31 130 11
조안면	31 130 35
지금동	31 130 55
진건면	31 130 33
진접읍	31 130 12
퇴계원면	31 130 32
평내동	31 130 52
호평동	31 130 51
화도읍	31 130 13
동두천시	31 080
보산동	31 080 55
불현동	31 080 56
상패동	31 080 60
생연1동	31 080 51
생연2동	31 080 52
소요동	31 080 58
중앙동	31 080 53
부천시	31 050
소사구	
괴안동	31 052 57
범박동	31 052 56
소사본1동	31 052 53
소사본2동	31 052 54
소사본3동	31 052 55
송내1동	31 052 59
송내2동	31 052 60
심곡본1동	31 052 51
심곡본동	31 052 52
역곡3동	31 052 58
오정구	
고강1동	31 053 55
고강본동	31 053 54
성곡동	31 053 51
신흥동	31 053 57
오정동	31 053 56
원종1동	31 053 52
원종2동	31 053 53
원미구	
도당동	31 051 60
상1동	31 051 68
상동	31 051 67
소사동	31 051 56
심곡1동	31 051 51
심곡2동	31 051 52
심곡3동	31 051 53
약대동	31 051 61
역곡1동	31 051 57
역곡2동	31 051 58
원미1동	31 051 54
원미2동	31 051 55
중1동	31 051 63
중2동	31 051 64
중3동	31 051 65
중4동	31 051 66
중동	31 051 62
춘의동	31 051 59
성남시	31 020
분당구	
구미동	31 023 67
금곡동	31 023 66
내정동	31 023 54
매송동	31 023 61
분당동	31 023 51
불정동	31 023 56
서당동	31 023 59
서현동	31 023 58
수내동	31 023 52
신기동	31 023 57
야탑동	31 023 62

(경기도 성남시~ 여주군)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운중동	31 023 68	입북동	31 012 62	본오2동	31 090 55	평안동	31 042 60
이매동	31 023 60	평동	31 012 55	본오3동	31 090 56	평촌동	31 042 59
정자동	31 023 55	**장안구**		부곡동	31 090 57	호계1동	31 042 62
중탑동	31 023 63	송죽동	31 011 59	사1동	31 090 52	호계2동	31 042 63
초림동	31 023 53	신안동	31 011 51	사2동	31 090 53	호계3동	31 042 64
판교동	31 023 65	연무동	31 011 61	선부1동	31 090 68	**만안구**	
하탑동	31 023 64	영화동	31 011 58	선부2동	31 090 69	박달1동	31 041 63
수정구		율천동	31 011 55	선부3동	31 090 70	박달2동	31 041 64
고등동	31 021 65	정자1동	31 011 56	성포동	31 090 62	석수1동	31 041 60
단대동	31 021 60	정자2동	31 011 57	안산동	31 090 73	석수2동	31 041 61
복정동	31 021 63	조원동	31 011 60	와동	31 090 59	석수3동	31 041 62
산성동	31 021 61	파장동	31 011 54	원곡1동	31 090 64	안양1동	31 041 51
수진1동	31 021 58	화서1동	31 011 52	원곡2동	31 090 65	안양2동	31 041 52
수진2동	31 021 59	화서2동	31 011 53	원곡본동	31 090 63	안양3동	31 041 53
시흥동	31 021 66	**팔달구**		월피동	31 090 58	안양4동	31 041 54
신촌동	31 021 64	남향동	31 013 52	일동	31 090 51	안양5동	31 041 55
신흥1동	31 021 51	매탄1동	31 013 57	초지동	31 090 66	안양6동	31 041 56
신흥2동	31 021 52	매탄2동	31 013 58	**안성시**	**31 220**	안양7동	31 041 57
신흥3동	31 021 53	매탄3동	31 013 59	고삼면	31 220 42	안양8동	31 041 58
양지동	31 021 62	매탄4동	31 013 60	공도면	31 220 37	안양9동	31 041 59
태평1동	31 021 54	영통1동	31 013 63	금광면	31 220 32	**양주군**	**31 310**
태평2동	31 021 55	영통2동	31 013 64	대덕면	31 220 35	광적면	31 310 34
태평3동	31 021 56	우만1동	31 013 54	미양면	31 220 34	남면	31 310 33
태평4동	31 021 57	우만2동	31 013 55	보개면	31 220 31	백석면	31 310 35
중원구		원천동	31 013 61	삼죽면	31 220 41	은현면	31 310 32
금광1동	31 022 53	이의동	31 013 62	서운면	31 220 33	장흥면	31 310 36
금광2동	31 022 54	인계동	31 013 56	안성1동	31 220 51	주내면	31 310 31
상대원1동	31 022 57	지동	31 013 53	안성2동	31 220 52	회천읍	31 310 11
상대원2동	31 022 58	팔달동	31 013 51	안성3동	31 220 53	**양평군**	**31 380**
상대원3동	31 022 59	**시흥시**	**31 150**	양성면	31 220 36	강상면	31 380 31
성남동	31 022 51	과림동	31 150 59	원곡면	31 220 38	강하면	31 380 32
여수동	31 022 60	군자동	31 150 57	일죽면	31 220 39	개군면	31 380 41
은행1동	31 022 55	대야동	31 150 51	죽산면	31 220 40	단월면	31 380 36
은행2동	31 022 56	매화동	31 150 55	**안양시**	**31 040**	서종면	31 380 35
중동	31 022 52	목감동	31 150 56	**동안구**		양동면	31 380 38
수원시	**31 010**	신천동	31 150 52	갈산동	31 042 67	양서면	31 380 33
권선구		신현동	31 150 53	관양1동	31 042 56	양평읍	31 380 11
고등동	31 012 59	연성동	31 150 60	관양2동	31 042 57	옥천면	31 380 34
곡선동	31 012 61	은행동	31 150 54	귀인동	31 042 61	용문면	31 380 40
구운동	31 012 57	정왕 1동	31 150 58	달안동	31 042 55	지제면	31 380 39
권선동	31 012 60	정왕 2동	31 150 61	범계동	31 042 65	청운면	31 380 37
매교동	31 012 51	**안산시**	**31 090**	부림동	31 042 58	**여주군**	**31 320**
매산동	31 012 58	고잔1동	31 090 60	부흥동	31 042 54	가남면	31 320 32
서둔동	31 012 56	고잔2동	31 090 61	비산1동	31 042 51	강천면	31 320 39
세류1동	31 012 52	대부동	31 090 72	비산2동	31 042 52	금사면	31 320 35
세류2동	31 012 53	반월동	31 090 71	비산3동	31 042 53	능서면	31 320 33
세류3동	31 012 54	본오1동	31 090 54	신촌동	31 042 66	대신면	31 320 37

(경기도 여주군 ~ 화성군)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북내면	31 320 38	가능2동	31 030 62	송북동	31 070 56	비봉면	31 330 33
산북면	31 320 36	가능3동	31 030 63	송탄동	31 070 53	서신면	31 330 37
여주읍	31 320 11	녹양동	31 030 64	신장1동	31 070 57	송산면	31 330 36
점동면	31 320 31	송산동	31 030 59	신장2동	31 070 58	양감면	31 330 42
흥천면	31 320 34	신곡1동	31 030 57	신평동	31 070 59	우정면	31 330 40
연천군	**31 350**	신곡2동	31 030 58	안중면	31 070 38	장안면	31 330 39
군남면	31 350 31	의정부1동	31 030 51	오성면	31 070 34	정남면	31 330 43
미산면	31 350 34	의정부2동	31 030 52	원평동	31 070 60	태안읍	31 330 11
백학면	31 350 33	의정부3동	31 030 53	중앙동	31 070 51	팔탄면	31 330 38
신서면	31 350 36	자금동	31 030 60	지산동	31 070 55	향남면	31 330 41
연천읍	31 350 11	장암동	31 030 56	진위면	31 070 31		
왕징면	31 350 35	호원동	31 030 55	청북면	31 070 35		
장남면	31 350 38	**이천시**	**31 210**	통복동	31 070 61		
전곡읍	31 350 12	관고동	31 210 53	팽성읍	31 070 11		
중면	31 350 37	대월면	31 210 35	포승면	31 070 36		
청산면	31 350 32	마장면	31 210 34	현덕면	31 070 37		
오산시	**31 140**	모가면	31 210 36	**포천군**	**31 360**		
남촌동	31 140 53	백사면	31 210 32	가산면	31 360 33		
대원동	31 140 52	부발읍	31 210 12	관인면	31 360 40		
세마동	31 140 55	설성면	31 210 37	군내면	31 360 31		
신장동	31 140 54	신둔면	31 210 31	내촌면	31 360 32		
중앙동	31 140 51	율면	31 210 38	소흘읍	31 360 12		
초평동	31 140 56	장호원읍	31 210 11	신북면	31 360 34		
용인시	**31 190**	중리동	31 210 52	영북면	31 360 39		
구성면	31 190 33	창전동	31 210 51	영중면	31 360 36		
기흥읍	31 190 11	호법면	31 210 33	이동면	31 360 38		
남사면	31 190 34	**파주시**	**31 200**	일동면	31 360 37		
동부동	31 190 54	광탄면	31 200 35	창수면	31 360 35		
모현면	31 190 32	교하면	31 200 33	포천읍	31 360 11		
백암면	31 190 37	군내면	31 200 38	화현면	31 360 41		
수지읍	31 190 12	금촌1동	31 200 51	**하남시**	**31 180**		
양지면	31 190 38	금촌2동	31 200 52	감북동	31 180 58		
역삼동	31 190 52	문산읍	31 200 11	덕풍1동	31 180 54		
원삼면	31 190 36	법원읍	31 200 13	덕풍2동	31 180 55		
유림동	31 190 53	월롱면	31 200 31	덕풍3동	31 180 56		
이동면	31 190 35	적성면	31 200 37	신장1동	31 180 52		
중앙동	31 190 51	조리면	31 200 34	신장2동	31 180 53		
포곡면	31 190 31	탄현면	31 200 32	천현동	31 180 51		
의왕시	**31 170**	파주읍	31 200 12	초이동	31 180 60		
고천동	31 170 51	파평면	31 200 36	춘궁동	31 180 59		
내손1동	31 170 54	**평택시**	**31 070**	풍산동	31 180 57		
내손2동	31 170 55	고덕면	31 070 33	**화성군**	**31 330**		
부곡동	31 170 52	비전1동	31 070 62	남양면	31 330 34		
오전동	31 170 53	비전2동	31 070 63	동탄면	31 330 44		
청계동	31 170 56	서정동	31 070 52	마도면	31 330 35		
의정부시	**31 030**	서탄면	31 070 32	매송면	31 330 31		
가능1동	31 030 61	세교동	31 070 64	봉담읍	31 330 12		

(강원도 강릉시 ~ 홍천군)

행정구역명	부호
강원도	**32**
강릉시	**32 030**
강남동	32 030 62
강동면	32 030 34
경포동	32 030 67
교1동	32 030 55
교2동	32 030 56
구정면	32 030 33
내곡동	32 030 61
사천면	32 030 36
성덕동	32 030 65
성산면	32 030 31
송정동	32 030 60
연곡면	32 030 37
옥계면	32 030 35
옥천동	32 030 54
왕산면	32 030 32
주문진읍	32 030 11
중앙동	32 030 52
초당동	32 030 59
포남1동	32 030 57
포남2동	32 030 58
홍제동	32 030 51
고성군	**32 400**
간성읍	32 400 11
거진읍	32 400 12
죽왕면	32 400 32
토성면	32 400 33
현내면	32 400 31
동해시	**32 040**
동호동	32 040 55
망상동	32 040 63
묵호동	32 040 59
발한동	32 040 57
부곡동	32 040 54
북삼동	32 040 53
북평동	32 040 60
삼화동	32 040 65
송정동	32 040 52
천곡동	32 040 51
삼척시	**32 070**
가곡면	32 070 35
교동	32 070 53
근덕면	32 070 31
남양동	32 070 51
노곡면	32 070 33
도계읍	32 070 11
미로면	32 070 34
성내동	32 070 52
신기면	32 070 36
원덕읍	32 070 12
정라동	32 070 54
하장면	32 070 32
속초시	**32 060**
교동	32 060 56
금호동	32 060 54
노학동	32 060 57
대포동	32 060 60
동명동	32 060 52
영랑동	32 060 51
조양동	32 060 58
청호동	32 060 59
양구군	**32 380**
남면	32 380 31
동면	32 380 32
방산면	32 380 33
양구읍	32 380 11
해안면	32 380 34
양양군	**32 410**
강현면	32 410 35
서면	32 410 31
손양면	32 410 32
양양읍	32 410 11
현남면	32 410 34
현북면	32 410 33
영월군	**32 330**
남면	32 330 34
북면	32 330 33
상동읍	32 330 12
서면	32 330 35
수주면	32 330 37
영월읍	32 330 11
주천면	32 330 36
중동면	32 330 31
하동면	32 330 32
원주시	**32 020**
개운동	32 020 53
귀래면	32 020 35
단계동	32 020 60
단구동	32 020 56
명륜1동	32 020 54
명륜2동	32 020 55
무실동	32 020 67
문막읍	32 020 11
반곡관설동	32 020 68
봉산동	32 020 64
부론면	32 020 34
소초면	32 020 31
신림면	32 020 38
우산동	32 020 61
원인동	32 020 52
일산동	32 020 57
중앙동	32 020 51
지정면	32 020 33
태장1동	32 020 62
태장2동	32 020 63
판부면	32 020 37
학성동	32 020 58
행구동	32 020 66
호저면	32 020 32
흥업면	32 020 36
인제군	**32 390**
기린면	32 390 33
남면	32 390 31
북면	32 390 32
상남면	32 390 35
서화면	32 390 34
인제읍	32 390 11
정선군	**32 350**
고한읍	32 350 12
남면	32 350 32
동면	32 350 31
북면	32 350 33
북평면	32 350 34
사북읍	32 350 13
신동읍	32 350 14
임계면	32 350 35
정선읍	32 350 11
철원군	**32 360**
갈말읍	32 360 13
근남면	32 360 32
근북면	32 360 33
김화읍	32 360 12
동송읍	32 360 14
서면	32 360 31
철원읍	32 360 11
춘천시	**32 010**
강남동	32 010 68
교동	32 010 52
근화동	32 010 57
남면	32 010 35
남산면	32 010 36
동내면	32 010 34
동면	32 010 31
동산면	32 010 32
북산면	32 010 39
사북면	32 010 38
서면	32 010 37
석사동	32 010 66
소양동	32 010 58
신동면	32 010 33
신북읍	32 010 11
신사우동	32 010 71
약사명동	32 010 54
조운동	32 010 53
퇴계동	32 010 67
효자1동	32 010 63
효자2동	32 010 64
효자3동	32 010 65
후평1동	32 010 60
후평2동	32 010 61
후평3동	32 010 62
태백시	**32 050**
구문소동	32 050 55
문곡소도동	32 050 62
삼수동	32 050 53
상장동	32 050 54
장성동	32 050 56
철암동	32 050 58
황연동	32 050 52
황지동	32 050 51
평창군	**32 340**
대화면	32 340 33
도암면	32 340 37
미탄면	32 340 31
방림면	32 340 32
봉평면	32 340 34
용평면	32 340 35
진부면	32 340 36
평창읍	32 340 11
홍천군	**32 310**
남면	32 310 36
내면	32 310 39
내촌면	32 310 33
동면	32 310 35
두촌면	32 310 32
북방면	32 310 38
서면	32 310 37

(강원도 홍천군 ~ 횡성군)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서석면	32 310 34						
홍천읍	32 310 11						
화촌면	32 310 31						
화천군	**32 370**						
간동면	32 370 31						
사내면	32 370 34						
상서면	32 370 33						
하남면	32 370 32						
화천읍	32 370 11						
횡성군	**32 320**						
갑천면	32 320 34						
강림면	32 320 38						
공근면	32 320 36						
둔내면	32 320 33						
서원면	32 320 37						
안흥면	32 320 32						
우천면	32 320 31						
청일면	32 320 35						
횡성읍	32 320 11						

(충청북도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충청북도	**33**
괴산군	**33 360**
감물면	33 360 31
괴산읍	33 360 11
문광면	33 360 35
불정면	33 360 40
사리면	33 360 38
소수면	33 360 39
연풍면	33 360 33
장연면	33 360 32
청안면	33 360 37
청천면	33 360 36
칠성면	33 360 34
단양군	**33 380**
가곡면	33 380 33
단성면	33 380 31
단양읍	33 380 11
대강면	33 380 32
매포읍	33 380 12
어상천면	33 380 35
영춘면	33 380 34
적성면	33 380 36
보은군	**33 320**
내북면	33 320 39
내속리면	33 320 31
마로면	33 320 33
보은읍	33 320 11
산외면	33 320 40
삼승면	33 320 35
수한면	33 320 36
외속리면	33 320 32
탄부면	33 320 34
회남면	33 320 37
회북면	33 320 38
영동군	**33 340**
매곡면	33 340 34
상촌면	33 340 35
심천면	33 340 40
양강면	33 340 36
양산면	33 340 39
영동읍	33 340 11
용산면	33 340 31
용화면	33 340 37
추풍령면	33 340 33
학산면	33 340 38
황간면	33 340 32
옥천군	**33 330**
군북면	33 330 38
군서면	33 330 37
동이면	33 330 31
안남면	33 330 32
안내면	33 330 33
옥천읍	33 330 11
이원면	33 330 36
청산면	33 330 35
청성면	33 330 34
음성군	**33 370**
감곡면	33 370 37
금왕읍	33 370 12
대소면	33 370 34
맹동면	33 370 33
삼성면	33 370 35
생극면	33 370 36
소이면	33 370 31
원남면	33 370 32
음성읍	33 370 11
제천시	**33 030**
교동	33 030 51
금성면	33 030 31
덕산면	33 030 34
동현동	33 030 57
명서동	33 030 54
백운면	33 030 36
봉양읍	33 030 11
송학면	33 030 37
수산면	33 030 33
영천동	33 030 62
용두동	33 030 56
의림동	33 030 55
중앙동	33 030 52
청전동	33 030 59
청풍면	33 030 32
한수면	33 030 35
화산동	33 030 60
증평출장소	**33 390**
도안지소	33 390 13
장평지소	33 390 12
증천지소	33 390 11
진천군	**33 350**
광혜원면	33 350 36
덕산면	33 350 31
문백면	33 350 33
백곡면	33 350 34
이월면	33 350 35
진천읍	33 350 11
초평면	33 350 32
청원군	**33 310**
가덕면	33 310 33
강내면	33 310 39
강외면	33 310 40
남이면	33 310 35
남일면	33 310 34
낭성면	33 310 31
내수읍	33 310 11
문의면	33 310 36
미원면	33 310 32
부용면	33 310 38
북이면	33 310 43
오창면	33 310 42
옥산면	33 310 41
현도면	33 310 37
청주시	**33 010**
상당구	
금천동	33 011 64
내덕1동	33 011 59
내덕2동	33 011 60
성안동	33 011 52
영운동	33 011 63
오근장동	33 011 67
용담·명암·산성동	33 011 65
용암·용정·방서동	33 011 66
우암동	33 011 58
율량·사천동	33 011 61
중앙동	33 011 51
탑·대성동	33 011 62
흥덕구	
가경동	33 012 62
강서1동	33 012 65
강서2동	33 012 66
모충동	33 012 54
복대1동	33 012 60
복대2동	33 012 61
봉명1동	33 012 63
봉명2·송정동	33 012 64
사직1동	33 012 51
사직2동	33 012 52
사창동	33 012 53
산·미·분·장동	33 012 56
성화·개신·죽림동	33 012 59
수곡1동	33 012 57
수곡2동	33 012 58
운천·신봉동	33 012 55
충주시	**33 020**
가금면	33 020 37
교현·안림동	33 020 53
교현2동	33 020 54
금가면	33 020 38
노은면	33 020 35
달천동	33 020 60
동량면	33 020 39
목행동	33 020 64
문화동	33 020 57
봉방동	33 020 61
산척면	33 020 40
살미면	33 020 31
상모면	33 020 32
성내·충인동	33 020 51
소태면	33 020 42
신니면	33 020 34
앙성면	33 020 36
엄정면	33 020 41
연수동	33 020 63
용산동	33 020 55
이류면	33 020 33
주덕읍	33 020 11
지현동	33 020 56
칠금동	33 020 62
호암동	33 020 58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 천안시)

행정구역명	부호
충청남도	**34**
계룡출장소	**34 400**
남선지소	34 400 12
두마지소	34 400 11
공주시	**34 020**
계룡면	34 020 33
금학동	34 020 55
반포면	34 020 34
사곡면	34 020 39
산성동	34 020 53
신관동	34 020 57
신풍면	34 020 40
옥룡동	34 020 56
우성면	34 020 38
웅진동	34 020 54
유구읍	34 020 11
의당면	34 020 36
이인면	34 020 31
장기면	34 020 35
정안면	34 020 37
중학동	34 020 51
탄천면	34 020 32
금산군	**34 310**
군북면	34 310 34
금산읍	34 310 11
금성면	34 310 31
남이면	34 310 36
남일면	34 310 35
복수면	34 310 38
부리면	34 310 33
제원면	34 310 32
진산면	34 310 37
추부면	34 310 39
논산시	**34 060**
가야곡면	34 060 39
강경읍	34 060 11
광석면	34 060 32
노성면	34 060 33
벌곡면	34 060 37
부적면	34 060 35
부창동	34 060 52
상월면	34 060 34
성동면	34 060 31
양촌면	34 060 38
연무읍	34 060 12
연산면	34 060 36
은진면	34 060 40
채운면	34 060 41
취암동	34 060 51
당진군	**34 390**
고대면	34 390 31
당진읍	34 390 11
대호지면	34 390 33
면천면	34 390 35
석문면	34 390 32
송산면	34 390 40
송악면	34 390 39
순성면	34 390 36
신평면	34 390 38
우강면	34 390 37
정미면	34 390 34
합덕읍	34 390 12
보령시	**34 030**
남포면	34 030 37
대천 1동	34 030 51
대천 2동	34 030 52
대천 3동	34 030 53
대천 4동	34 030 54
대천 5동	34 030 56
미산면	34 030 39
성주면	34 030 40
오천면	34 030 33
웅천읍	34 030 11
주교면	34 030 32
주산면	34 030 38
주포면	34 030 31
천북면	34 030 34
청라면	34 030 36
청소면	34 030 35
부여군	**34 330**
구룡면	34 330 35
규암면	34 330 31
남면	34 330 38
내산면	34 330 34
부여읍	34 330 11
석성면	34 330 44
세도면	34 330 43
양화면	34 330 40
옥산면	34 330 37
외산면	34 330 33
은산면	34 330 32
임천면	34 330 41
장암면	34 330 42
초촌면	34 330 45
충화면	34 330 39
홍산면	34 330 36
서산시	**34 050**
고북면	34 050 39
대산읍	34 050 11
동문동	34 050 52
부석면	34 050 32
부춘동	34 050 51
석남동	34 050 55
성연면	34 050 35
수석동	34 050 54
운산면	34 050 37
음암면	34 050 36
인지면	34 050 31
지곡면	34 050 34
팔봉면	34 050 33
해미면	34 050 38
활성동	34 050 53
서천군	**34 340**
기산면	34 340 33
마산면	34 340 35
마서면	34 340 31
문산면	34 340 37
비인면	34 340 40
서면	34 340 41
서천읍	34 340 12
시초면	34 340 36
장항읍	34 340 11
종천면	34 340 39
판교면	34 340 38
한산면	34 340 34
화양면	34 340 32
아산시	**34 040**
권곡동	34 040 53
도고면	34 040 39
둔포면	34 040 35
배방면	34 040 32
선장면	34 040 38
송악면	34 040 31
신정동	34 040 54
신창면	34 040 40
염치읍	34 040 11
영인면	34 040 36
온양온천1동	34 040 51
온양온천2동	34 040 52
온주동	34 040 56
용화동	34 040 55
음봉면	34 040 34
인주면	34 040 37
탕정면	34 040 33
연기군	**34 320**
금남면	34 320 34
남면	34 320 33
동면	34 320 31
서면	34 320 32
소정면	34 320 37
전동면	34 320 36
전의면	34 320 35
조치원읍	34 320 11
예산군	**34 370**
고덕면	34 370 38
광시면	34 370 33
대술면	34 370 31
대흥면	34 370 34
덕산면	34 370 36
봉산면	34 370 37
삽교읍	34 370 12
신암면	34 370 39
신양면	34 370 32
예산읍	34 370 11
오가면	34 370 40
응봉면	34 370 35
천안시	**34 010**
광덕면	34 010 34
동면	34 010 40
목천면	34 010 35
문성동	34 010 52
병천면	34 010 39
봉명동	34 010 58
부성동	34 010 64
북면	34 010 36
성거읍	34 010 12
성남면	34 010 37
성정1동	34 010 56
성정2동	34 010 57
성환읍	34 010 11
수신면	34 010 38
신안동	34 010 63
신용동	34 010 61
쌍용1동	34 010 59
쌍용2동	34 010 60
원성1동	34 010 54
원성2동	34 010 55
입장면	34 010 32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중앙동	34 010 51						
직산면	34 010 31						
청룡동	34 010 62						
풍세면	34 010 33						
청양군	**34 350**						
남양면	34 350 37						
대치면	34 350 32						
목면	34 350 34						
비봉면	34 350 39						
운곡면	34 350 31						
장평면	34 350 36						
정산면	34 350 33						
청남면	34 350 35						
청양읍	34 350 11						
화성면	34 350 38						
태안군	**34 380**						
고남면	34 380 31						
근흥면	34 380 33						
남면	34 380 32						
소원면	34 380 34						
안면읍	34 380 12						
원북면	34 380 35						
이원면	34 380 36						
태안읍	34 380 11						
홍성군	**34 360**						
갈산면	34 360 38						
결성면	34 360 36						
광천읍	34 360 12						
구항면	34 360 39						
금마면	34 360 32						
서부면	34 360 37						
은하면	34 360 35						
장곡면	34 360 34						
홍동면	34 360 33						
홍북면	34 360 31						
홍성읍	34 360 11						

(전라북도 고창군 ~ 전주시)

행정구역명	부호
전라북도	35
고창군	35 370
고수면	35 370 31
고창읍	35 370 11
공음면	35 370 34
대산면	35 370 38
무장면	35 370 33
부안면	35 370 43
상하면	35 370 35
성내면	35 370 41
성송면	35 370 37
신림면	35 370 42
심원면	35 370 39
아산면	35 370 32
해리면	35 370 36
흥덕면	35 370 40
군산시	35 020
개정동	35 020 68
개정면	35 020 36
경암동	35 020 66
구암동	35 020 67
나운1동	35 020 70
나운2동	35 020 71
나포면	35 020 38
대야면	35 020 35
미성동	35 020 73
삼학동	35 020 56
서수면	35 020 34
선양동	35 020 57
성산면	35 020 37
소룡동	35 020 72
수송동	35 020 69
신풍동	35 020 55
오룡동	35 020 54
옥구읍	35 020 11
옥도면	35 020 39
옥산면	35 020 31
옥서면	35 020 40
월명동	35 020 53
임피면	35 020 33
조촌동	35 020 65
중미동	35 020 61
중앙동	35 020 60
해신동	35 020 51
회현면	35 020 32
흥남동	35 020 64
김제시	35 060
검산동	35 060 54
공덕면	35 060 36
광활면	35 060 44
교동월촌동	35 060 57
금구면	35 060 40
금산면	35 060 43
만경읍	35 060 11
백구면	35 060 34
백산면	35 060 32
봉남면	35 060 41
부량면	35 060 35
성덕면	35 060 38
신풍동	35 060 52
요촌동	35 060 51
용지면	35 060 33
죽산면	35 060 31
진봉면	35 060 39
청하면	35 060 37
황산면	35 060 42
남원시	35 050
금동	35 050 55
금지면	35 050 35
노암동	35 050 54
대강면	35 050 36
대산면	35 050 37
덕과면	35 050 39
도통동	35 050 59
동충동	35 050 51
보절면	35 050 40
사매면	35 050 38
산내면	35 050 45
산동면	35 050 41
송동면	35 050 33
수지면	35 050 32
아영면	35 050 44
왕정동	35 050 56
운봉읍	35 050 11
이백면	35 050 42
인월면	35 050 43
주생면	35 050 34
주천면	35 050 31
죽항동	35 050 52
향교동	35 050 57
무주군	35 330
무주읍	35 330 11
무풍면	35 330 31
부남면	35 330 35
설천면	35 330 32
안성면	35 330 34
적상면	35 330 33
부안군	35 380
계화면	35 380 34
동진면	35 380 32
백산면	35 380 38
변산면	35 380 36
보안면	35 380 35
부안읍	35 380 11
상서면	35 380 39
위도면	35 380 42
주산면	35 380 31
줄포면	35 380 41
진서면	35 380 37
하서면	35 380 40
행안면	35 380 33
순창군	35 360
구림면	35 360 40
금과면	35 360 36
동계면	35 360 32
복흥면	35 360 38
순창읍	35 360 11
쌍치면	35 360 39
유등면	35 360 34
인계면	35 360 31
적성면	35 360 33
팔덕면	35 360 37
풍산면	35 360 35
완주군	35 310
경천면	35 310 41
고산면	35 310 36
구이면	35 310 35
동상면	35 310 40
봉동읍	35 310 12
비봉면	35 310 37
삼례읍	35 310 11
상관면	35 310 32
소양면	35 310 34
용진면	35 310 31
운주면	35 310 38
이서면	35 310 33
화산면	35 310 39
익산시	35 030
금마면	35 030 40
남중동	35 030 59
낭산면	35 030 37
동산동	35 030 57
마동	35 030 58
망성면	35 030 38
모현동	35 030 61
삼기면	35 030 43
삼성동	35 030 70
성당면	35 030 35
송학동	35 030 62
신동	35 030 65
여산면	35 030 39
영등동	35 030 66
오산면	35 030 31
왕궁면	35 030 41
용동면	35 030 44
용안면	35 030 36
웅포면	35 030 34
인화동	35 030 55
중앙동	35 030 51
춘포면	35 030 42
팔봉동	35 030 69
평화동	35 030 53
함라면	35 030 33
함열읍	35 030 11
황등면	35 030 32
임실군	35 350
강진면	35 350 39
관촌면	35 350 38
덕치면	35 350 40
삼계면	35 350 37
성수면	35 350 34
신덕면	35 350 36
신평면	35 350 33
오수면	35 350 35
운암면	35 350 32
임실읍	35 350 11
지사면	35 350 41
청웅면	35 350 31
장수군	35 340
계남면	35 340 35
계북면	35 340 36
번암면	35 340 32
산서면	35 340 31
장계면	35 340 33
장수읍	35 340 11
천천면	35 340 34
전주시	35 010
덕진구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금암1동	35 012 58	북면	35 040 31				
금암2동	35 012 59	산내면	35 040 43				
덕진동	35 012 57	산외면	35 040 44				
동산동	35 012 68	상교동	35 040 59				
서노송동	35 012 51	소성면	35 040 33				
송천1동	35 012 65	수성동	35 040 51				
송천2동	35 012 66	시기3동	35 040 56				
우아1동	35 012 61	시기동	35 040 54				
우아2동	35 012 62	신태인읍	35 040 11				
인후1동	35 012 54	연지동	35 040 57				
인후2동	35 012 55	영원면	35 040 35				
인후3동	35 012 56	옹동면	35 040 41				
조촌동	35 012 67	이평면	35 040 37				
진북1동	35 012 52	입암면	35 040 32				
진북2동	35 012 53	장명동	35 040 52				
팔복동	35 012 60	정우면	35 040 38				
호성동	35 012 63	칠보면	35 040 42				
완산구		태인면	35 040 39				
교동	35 011 53	**진안군**	**35 320**				
남노송동	35 011 57	동향면	35 320 33				
동서학동	35 011 60	마령면	35 320 37				
동완산동	35 011 58	백운면	35 320 35				
삼천1동	35 011 67	부귀면	35 320 38				
삼천2동	35 011 68	상전면	35 320 34				
삼천3동	35 011 69	성수면	35 320 36				
서서학동	35 011 61	안천면	35 320 32				
서신동	35 011 66	용담면	35 320 31				
서완산동	35 011 59	정천면	35 320 39				
중노송1동	35 011 55	주천면	35 320 40				
중노송2동	35 011 56	진안읍	35 320 11				
중앙동	35 011 51						
중화산1동	35 011 62						
중화산2동	35 011 63						
태평동	35 011 54						
평화1동	35 011 64						
평화2동	35 011 65						
풍남동	35 011 52						
효자1동	35 011 70						
효자2동	35 011 71						
효자3동	35 011 72						
효자4동	35 011 73						
정읍시	**35 040**						
감곡면	35 040 40						
고부면	35 040 34						
내장상동	35 040 53						
농소동	35 040 58						
덕천면	35 040 36						

(전라남도 강진군 ~ 여수시)

행정구역명	부호
전라남도	**36**
강진군	**36 390**
강진읍	36 390 11
군동면	36 390 31
대구면	36 390 33
도암면	36 390 35
마량면	36 390 34
병영면	36 390 39
성전면	36 390 37
신전면	36 390 36
옴천면	36 390 40
작천면	36 390 38
칠량면	36 390 32
고흥군	**36 350**
고흥읍	36 350 11
과역면	36 350 40
금산면	36 350 33
남양면	36 350 41
대서면	36 350 43
도덕면	36 350 32
도양읍	36 350 12
도화면	36 350 34
동강면	36 350 42
동일면	36 350 37
두원면	36 350 44
봉래면	36 350 36
영남면	36 350 39
점암면	36 350 38
포두면	36 350 35
풍양면	36 350 31
곡성군	**36 320**
겸면	36 320 39
고달면	36 320 36
곡성읍	36 320 11
목사동면	36 320 34
삼기면	36 320 32
석곡면	36 320 33
오곡면	36 320 31
오산면	36 320 40
옥과면	36 320 37
입면	36 320 38
죽곡면	36 320 35
광양시	**36 060**
골약동	36 060 51
광양읍	36 060 11
광영동	36 060 54
금호동	36 060 56
다압면	36 060 36
봉강면	36 060 31
옥곡면	36 060 33
옥룡면	36 060 32
중마동	36 060 53
진상면	36 060 34
진월면	36 060 35
태인동	36 060 55
구례군	**36 330**
간전면	36 330 32
광의면	36 330 35
구례읍	36 330 11
마산면	36 330 34
문척면	36 330 31
산동면	36 330 37
용방면	36 330 36
토지면	36 330 33
나주시	**36 040**
공산면	36 040 34
금남동	36 040 54
금천면	36 040 39
남평읍	36 040 11
노안면	36 040 38
다도면	36 040 41
다시면	36 040 36
동강면	36 040 35
문평면	36 040 37
반남면	36 040 33
봉황면	36 040 42
산포면	36 040 40
성북동	36 040 55
세지면	36 040 31
송월동	36 040 51
영강동	36 040 52
영산동	36 040 58
왕곡면	36 040 32
이창동	36 040 60
담양군	**36 310**
고서면	36 310 32
금성면	36 310 37
남면	36 310 33
담양읍	36 310 11
대덕면	36 310 35
대전면	36 310 41
무정면	36 310 36
봉산면	36 310 31
수북면	36 310 40
용면	36 310 38
월산면	36 310 39
창평면	36 310 34
목포시	**36 010**
남양동	36 010 59
대성동	36 010 58
동명동	36 010 62
만호동	36 010 64
무안동	36 010 61
부흥동	36 010 76
북교동	36 010 60
북항동	36 010 68
산정1동	36 010 53
산정2동	36 010 54
산정3동	36 010 55
삼학동	36 010 63
삼향동	36 010 74
상동	36 010 71
신흥동	36 010 73
연산동	36 010 56
옥암동	36 010 75
용당1동	36 010 51
용당2동	36 010 52
용해동	36 010 69
원산동	36 010 57
유달동	36 010 65
이로동	36 010 70
죽교동	36 010 67
충무동	36 010 66
하당동	36 010 72
무안군	**36 420**
망운면	36 420 35
몽탄면	36 420 32
무안읍	36 420 11
삼향면	36 420 31
운남면	36 420 37
일로읍	36 420 12
청계면	36 420 33
해제면	36 420 36
현경면	36 420 34
보성군	**36 360**
겸백면	36 360 33
노동면	36 360 31
득량면	36 360 38
문덕면	36 360 36
미력면	36 360 32
벌교읍	36 360 12
보성읍	36 360 11
복내면	36 360 35
웅치면	36 360 40
율어면	36 360 34
조성면	36 360 37
회천면	36 360 39
순천시	**36 030**
낙안면	36 030 34
남제동	36 030 59
덕연동	36 030 57
도사동	36 030 63
매곡동	36 030 54
별량면	36 030 35
삼산동	36 030 55
상사면	36 030 36
서면	36 030 38
송광면	36 030 32
승주읍	36 030 11
왕조동	36 030 66
외서면	36 030 33
월등면	36 030 40
장천동	36 030 61
저전동	36 030 60
조곡동	36 030 56
주암면	36 030 31
중앙동	36 030 62
풍덕동	36 030 58
해룡면	36 030 37
향동	36 030 51
황전면	36 030 39
신안군	**36 480**
도초면	36 480 35
비금면	36 480 34
신의면	36 480 38
안좌면	36 480 40
암태면	36 480 42
압해면	36 480 43
임자면	36 480 32
자은면	36 480 33
장산면	36 480 39
증도면	36 480 31
지도읍	36 480 11
팔금면	36 480 41
하의면	36 480 37
흑산면	36 480 36
여수시	**36 020**
광림동	36 020 55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국동	36 020 58	신북면	36 410 33	**함평군**	**36 430**		
남면	36 020 34	영암읍	36 410 11	나산면	36 430 36		
대교동	36 020 57	학산면	36 410 38	대동면	36 430 35		
돌산읍	36 020 11	**완도군**	**36 460**	손불면	36 430 31		
동문동	36 020 51	고금면	36 460 33	신광면	36 430 32		
둔덕동	36 020 63	군외면	36 460 31	엄다면	36 430 34		
만덕동	36 020 64	금당면	36 460 37	월야면	36 430 38		
묘도동	36 020 70	금일읍	36 460 12	학교면	36 430 33		
문수동	36 020 61	노화읍	36 460 13	함평읍	36 430 11		
미평동	36 020 62	보길면	36 460 38	해보면	36 430 37		
삼산면	36 020 36	생일면	36 460 39	**해남군**	**36 400**		
삼일동	36 020 69	소안면	36 460 36	계곡면	36 400 38		
서강동	36 020 56	신지면	36 460 32	마산면	36 400 39		
소라면	36 020 31	약산면	36 460 34	문내면	36 400 42		
시전동	36 020 66	완도읍	36 460 11	북일면	36 400 36		
쌍봉동	36 020 65	청산면	36 460 35	북평면	36 400 35		
여서동	36 020 60	**장성군**	**36 450**	산이면	36 400 41		
여천동	36 020 67	남면	36 450 32	삼산면	36 400 31		
월호동	36 020 59	동화면	36 450 33	송지면	36 400 34		
율촌면	36 020 32	북이면	36 450 39	옥천면	36 400 37		
주삼동	36 020 68	북하면	36 450 40	해남읍	36 400 11		
중앙동	36 020 53	불일면	36 450 38	현산면	36 400 33		
충무동	36 020 54	삼계면	36 450 35	화산면	36 400 32		
한려동	36 020 52	삼서면	36 450 34	화원면	36 400 43		
화양면	36 020 33	서삼면	36 450 37	황산면	36 400 40		
화정면	36 020 35	장성읍	36 450 11	**화순군**	**36 370**		
영광군	**36 440**	진원면	36 450 31	남면	36 370 41		
군남면	36 440 35	황룡면	36 450 36	능주면	36 370 35		
군서면	36 440 34	**장흥군**	**36 380**	도곡면	36 370 36		
낙월면	36 440 38	관산읍	36 380 12	도암면	36 370 37		
대마면	36 440 31	대덕읍	36 380 13	동면	36 370 42		
묘량면	36 440 32	부산면	36 380 36	동복면	36 370 40		
백수읍	36 440 12	안양면	36 380 32	북면	36 370 39		
법성면	36 440 37	용산면	36 380 31	이서면	36 370 38		
불갑면	36 440 33	유치면	36 380 35	이양면	36 370 34		
염산면	36 440 36	장동면	36 380 33	청풍면	36 370 33		
영광읍	36 440 11	장평면	36 380 34	춘양면	36 370 32		
홍농읍	36 440 13	장흥읍	36 380 11	한천면	36 370 31		
영암군	**36 410**	회진면	36 380 37	화순읍	36 370 11		
군서면	36 410 36	**진도군**	**36 470**				
금정면	36 410 32	고군면	36 470 32				
덕진면	36 410 31	군내면	36 470 31				
도포면	36 410 35	의신면	36 470 33				
미암면	36 410 39	임회면	36 470 34				
삼호면	36 410 40	조도면	36 470 36				
서호면	36 410 37	지산면	36 470 35				
시종면	36 410 34	진도읍	36 470 11				

(경상북도 경산시 ~ 안동시)

행정구역명	부호
경상북도	37
경산시	37 100
남부동	37 100 54
남산면	37 100 34
남천면	37 100 36
동부동	37 100 52
북부동	37 100 55
서부동	37 100 53
압량면	37 100 35
와촌면	37 100 31
용성면	37 100 33
자인면	37 100 32
중방동	37 100 56
중앙동	37 100 51
진량읍	37 100 12
하양읍	37 100 11
경주시	37 020
감포읍	37 020 11
강동면	37 020 37
건천읍	37 020 13
내남면	37 020 33
동천동	37 020 64
보덕동	37 020 67
불국동	37 020 66
산내면	37 020 34
서면	37 020 35
선도동	37 020 59
성건동	37 020 55
성동동	37 020 52
안강읍	37 020 12
양남면	37 020 32
양북면	37 020 31
외동읍	37 020 14
용강동	37 020 62
월성동	37 020 58
중부동	37 020 51
천북면	37 020 38
탑정동	37 020 56
현곡면	37 020 36
황남동	37 020 57
황성동	37 020 63
황오동	37 020 53
고령군	37 370
개진면	37 370 35
고령읍	37 370 11
다산면	37 370 34
덕곡면	37 370 31
성산면	37 370 33
쌍림면	37 370 37
우곡면	37 370 36
운수면	37 370 32
구미시	37 050
고아읍	37 050 12
공단1동	37 050 64
공단2동	37 050 65
광평동	37 050 66
도개면	37 050 33
도량동	37 050 55
무을면	37 050 31
비산동	37 050 63
사곡상모동	37 050 67
산동면	37 050 35
선산읍	37 050 11
선주원남동	37 050 57
송정동	37 050 51
신평1동	37 050 61
신평2동	37 050 62
양포동	37 050 72
옥성면	37 050 32
원평1동	37 050 52
원평2동	37 050 53
인동동	37 050 70
임오동	37 050 69
장천면	37 050 36
지산동	37 050 56
진미동	37 050 71
해평면	37 050 34
형곡1동	37 050 59
형곡2동	37 050 60
군위군	37 310
고로면	37 310 37
군위읍	37 310 11
부계면	37 310 33
산성면	37 310 36
소보면	37 310 31
우보면	37 310 34
의흥면	37 310 35
효령면	37 310 32
김천시	37 030
감문면	37 030 34
감천면	37 030 38
개령면	37 030 33
구성면	37 030 40
남면	37 030 32
농소면	37 030 31
대곡동	37 030 58
대덕면	37 030 43
대신동	37 030 56
대항면	37 030 37
봉산면	37 030 36
부항면	37 030 42
성남동	37 030 52
아포읍	37 030 11
양금동	37 030 55
어모면	37 030 35
용암동	37 030 51
조마면	37 030 39
증산면	37 030 44
지례면	37 030 41
지좌동	37 030 59
평화동	37 030 53
문경시	37 090
가은읍	37 090 12
농암면	37 090 37
동로면	37 090 35
마성면	37 090 36
모전동	37 090 56
문경읍	37 090 11
산북면	37 090 34
산양면	37 090 32
신평동	37 090 54
신흥동	37 090 53
영순면	37 090 31
점촌동	37 090 51
중앙동	37 090 52
호계면	37 090 33
봉화군	37 410
명호면	37 410 38
물야면	37 410 31
법전면	37 410 33
봉성면	37 410 32
봉화읍	37 410 11
상운면	37 410 39
석포면	37 410 36
소천면	37 410 35
재산면	37 410 37
춘양면	37 410 34
상주시	37 080
계림동	37 080 54
공검면	37 080 45
공성면	37 080 35
낙동면	37 080 33
남원동	37 080 52
내서면	37 080 37
동문동	37 080 55
동성동	37 080 56
모동면	37 080 38
모서면	37 080 39
북문동	37 080 53
사벌면	37 080 31
신흥동	37 080 57
외남면	37 080 36
외서면	37 080 43
은척면	37 080 44
이안면	37 080 46
중동면	37 080 32
청리면	37 080 34
함창읍	37 080 11
화남면	37 080 47
화동면	37 080 40
화북면	37 080 42
화서면	37 080 41
성주군	37 380
가천면	37 380 34
금수면	37 380 35
대가면	37 380 36
벽진면	37 380 37
선남면	37 380 31
성주읍	37 380 11
수륜면	37 380 33
용암면	37 380 32
월항면	37 380 39
초전면	37 380 38
안동시	37 040
길안면	37 040 39
남선면	37 040 37
남후면	37 040 36
녹전면	37 040 43
도산면	37 040 42
명륜동	37 040 52
법상동	37 040 57
북후면	37 040 32
서구동	37 040 55
서후면	37 040 33
송하동	37 040 61
안기동	37 040 59
예안면	37 040 41
옥동	37 040 60

행정구역명	부호
와룡면	37 040 31
용상동	37 040 54
일직면	37 040 35
임동면	37 040 40
임하면	37 040 38
중구동	37 040 51
태화동	37 040 56
평화동	37 040 58
풍산읍	37 040 11
풍천면	37 040 34
영덕군	**37 350**
강구면	37 350 31
남정면	37 350 32
달산면	37 350 33
병곡면	37 350 37
영덕읍	37 350 11
영해면	37 350 36
지품면	37 350 34
창수면	37 350 38
축산면	37 350 35
영양군	**37 340**
석보면	37 340 35
수비면	37 340 34
영양읍	37 340 11
일월면	37 340 33
입암면	37 340 31
청기면	37 340 32
영주시	**37 060**
가흥1동	37 060 62
가흥2동	37 060 63
단산면	37 060 38
문수면	37 060 33
봉현면	37 060 36
부석면	37 060 39
상망동	37 060 51
순흥면	37 060 37
안정면	37 060 35
영주1동	37 060 55
영주2동	37 060 58
이산면	37 060 31
장수면	37 060 34
평은면	37 060 32
풍기읍	37 060 11
하망동	37 060 53
휴천1동	37 060 59
휴천2동	37 060 60
휴천3동	37 060 61

행정구역명	부호
영천시	**37 070**
고경면	37 070 38
금호읍	37 070 11
남부동	37 070 55
대창면	37 070 40
동부동	37 070 51
북안면	37 070 39
서부동	37 070 53
신녕면	37 070 32
완산동	37 070 54
임고면	37 070 37
자양면	37 070 36
중앙동	37 070 52
청통면	37 070 31
화남면	37 070 35
화북면	37 070 34
화산면	37 070 33
예천군	**37 400**
감천면	37 400 34
개포면	37 400 39
보문면	37 400 35
상리면	37 400 32
예천읍	37 400 11
용궁면	37 400 38
용문면	37 400 31
유천면	37 400 37
지보면	37 400 40
풍양면	37 400 41
하리면	37 400 33
호명면	37 400 36
울릉군	**37 430**
북면	37 430 32
서면	37 430 31
울릉읍	37 430 11
울진군	**37 420**
근남면	37 420 33
기성면	37 420 35
북면	37 420 31
서면	37 420 32
온정면	37 420 36
울진읍	37 420 11
원남면	37 420 34
죽변면	37 420 37
평해읍	37 420 12
후포면	37 420 38
의성군	**37 320**
가음면	37 320 36

행정구역명	부호
구천면	37 320 40
금성면	37 320 37
다인면	37 320 44
단밀면	37 320 41
단북면	37 320 42
단촌면	37 320 31
봉양면	37 320 38
비안면	37 320 39
사곡면	37 320 34
신평면	37 320 45
안계면	37 320 43
안사면	37 320 47
안평면	37 320 46
옥산면	37 320 33
의성읍	37 320 11
점곡면	37 320 32
춘산면	37 320 35
청도군	**37 360**
각남면	37 360 31
각북면	37 360 33
금천면	37 360 36
매전면	37 360 37
운문면	37 360 35
이서면	37 360 34
청도읍	37 360 12
풍각면	37 360 32
화양읍	37 360 11
청송군	**37 330**
부남면	37 330 32
부동면	37 330 31
안덕면	37 330 35
진보면	37 330 37
청송읍	37 330 11
파천면	37 330 36
현동면	37 330 33
현서면	37 330 34
칠곡군	**37 390**
가산면	37 390 33
기산면	37 390 37
동명면	37 390 32
북삼면	37 390 35
석적면	37 390 34
약목면	37 390 36
왜관읍	37 390 11
지천면	37 390 31
포항시	**37 010**
남구	

행정구역명	부호
구룡포읍	37 011 11
대보면	37 011 34
대송면	37 011 31
대이동	37 011 59
동해면	37 011 32
상대1동	37 011 51
상대2동	37 011 52
송도동	37 011 55
연일읍	37 011 12
오천읍	37 011 13
장기면	37 011 33
제철동	37 011 57
청림동	37 011 56
해도1동	37 011 53
해도2동	37 011 54
효곡동	37 011 58
북구	
기계면	37 012 34
기북면	37 012 36
두호동	37 012 64
송라면	37 012 33
신광면	37 012 31
양학동	37 012 58
용흥동	37 012 61
우창동	37 012 63
장량동	37 012 65
죽도1동	37 012 59
죽도2동	37 012 60
죽장면	37 012 35
중앙동	37 012 52
청하면	37 012 32
학산동	37 012 56
환여동	37 012 66
흥해읍	37 012 11

(경상남도 거제시 ~ 진주시)

행정구역명	부호
경상남도	**38**
거제시	**38 090**
거제면	38 090 34
남부면	38 090 33
능포동	38 090 53
동부면	38 090 32
둔덕면	38 090 35
마전동	38 090 52
사등면	38 090 36
신현읍	38 090 11
아주동	38 090 54
연초면	38 090 37
옥포1동	38 090 55
옥포2동	38 090 56
일운면	38 090 31
장목면	38 090 39
장승포동	38 090 51
하청면	38 090 38
거창군	**38 390**
가북면	38 390 41
가조면	38 390 40
거창읍	38 390 11
고제면	38 390 33
남상면	38 390 37
남하면	38 390 38
마리면	38 390 36
북상면	38 390 34
신원면	38 390 39
웅양면	38 390 32
위천면	38 390 35
주상면	38 390 31
고성군	**38 340**
개천면	38 340 38
거류면	38 340 43
고성읍	38 340 11
구만면	38 340 39
대가면	38 340 35
동해면	38 340 42
마암면	38 340 41
삼산면	38 340 31
상리면	38 340 34
영오면	38 340 37
영현면	38 340 36
하이면	38 340 33
하일면	38 340 32
회화면	38 340 40
김해시	**38 070**
내외동	38 070 54
대동면	38 070 37
동상동	38 070 51
부원동	38 070 53
북부동	38 070 55
불암동	38 070 60
삼안동	38 070 59
상동면	38 070 36
생림면	38 070 35
장유면	38 070 31
주촌면	38 070 32
진례면	38 070 33
진영읍	38 070 11
칠산서부동	38 070 56
한림면	38 070 34
활천동	38 070 58
회현동	38 070 52
남해군	**38 350**
고현면	38 350 37
남면	38 350 35
남해읍	38 350 11
미조면	38 350 34
삼동면	38 350 33
상주면	38 350 32
서면	38 350 36
설천면	38 350 38
이동면	38 350 31
창선면	38 350 39
마산시	**38 020**
합포구	
가포동	38 021 52
교방동	38 021 61
구산면	38 021 31
노산동	38 021 62
동서동	38 021 59
문화동	38 021 54
반월동	38 021 55
산호동	38 021 65
성호동	38 021 60
오동동	38 021 63
완월동	38 021 57
월영동	38 021 53
자산동	38 021 58
중앙동	38 021 56
진동면	38 021 32
진북면	38 021 33
진전면	38 021 34
합포동	38 021 64
현동	38 021 51
회원구	
구암1동	38 022 60
구암2동	38 022 61
내서읍	38 022 11
봉암동	38 022 62
석전1동	38 022 53
석전2동	38 022 54
양덕1동	38 022 56
양덕2동	38 022 57
합성1동	38 022 58
합성2동	38 022 59
회성동	38 022 55
회원1동	38 022 51
회원2동	38 022 52
밀양시	**38 080**
가곡동	38 080 55
교동	38 080 53
내이동	38 080 52
내일동	38 080 51
단장면	38 080 35
무안면	38 080 38
부북면	38 080 31
산내면	38 080 34
산외면	38 080 33
삼랑진읍	38 080 11
삼문동	38 080 54
상남면	38 080 36
상동면	38 080 32
청도면	38 080 39
초동면	38 080 37
하남읍	38 080 12
사천시	**38 060**
곤명면	38 060 36
곤양면	38 060 35
남양동	38 060 59
동서금동	38 060 53
동서동	38 060 51
벌룡동	38 060 55
사남면	38 060 32
사천읍	38 060 11
서포면	38 060 37
선구동	38 060 52
용현면	38 060 33
정동면	38 060 31
축동면	38 060 34
향촌동	38 060 57
산청군	**38 370**
금서면	38 370 34
단성면	38 370 37
산청읍	38 370 11
삼장면	38 370 35
생비량면	38 370 39
생초면	38 370 33
시천면	38 370 36
신등면	38 370 40
신안면	38 370 38
오부면	38 370 32
차황면	38 370 31
양산시	**38 100**
강서동	38 100 53
동면	38 100 31
물금읍	38 100 12
삼성동	38 100 52
상북면	38 100 33
웅상읍	38 100 11
원동면	38 100 32
중앙동	38 100 51
하북면	38 100 34
의령군	**38 310**
가례면	38 310 31
궁유면	38 310 41
낙서면	38 310 38
대의면	38 310 33
봉수면	38 310 40
부림면	38 310 39
용덕면	38 310 35
유곡면	38 310 42
의령읍	38 310 11
정곡면	38 310 36
지정면	38 310 37
칠곡면	38 310 32
화정면	38 310 34
진주시	**38 030**
가호동	38 030 71
강남동	38 030 52
금곡면	38 030 33
금산면	38 030 40
내동면	38 030 31
대곡면	38 030 39
대평면	38 030 44
망경동	38 030 51
명석면	38 030 43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문산읍	38 030 11	길곡면	38 330 41	**하동군**	**38 360**	쌍책면	38 400 37
미천면	38 030 42	남지읍	38 330 12	고전면	38 360 35	야로면	38 400 34
봉수동	38 030 59	대지면	38 330 36	금남면	38 360 36	용주면	38 400 46
봉안동	38 030 56	대합면	38 330 33	금성면	38 360 37	율곡면	38 400 35
사봉면	38 030 37	도천면	38 330 40	북천면	38 360 40	적중면	38 400 40
상대1동	38 030 61	부곡면	38 330 42	악양면	38 360 32	청덕면	38 400 39
상대2동	38 030 62	성산면	38 330 32	양보면	38 360 39	초계면	38 400 36
상봉동동	38 030 57	영산면	38 330 38	옥종면	38 360 42	합천읍	38 400 11
상봉서동	38 030 58	유어면	38 330 35	적량면	38 360 33		
상평동	38 030 65	이방면	38 330 34	진교면	38 360 38		
성지동	38 030 54	장마면	38 330 39	청암면	38 360 41		
수곡면	38 030 45	창녕읍	38 330 11	하동읍	38 360 11		
신안동	38 030 68	**창원시**	**38 010**	화개면	38 360 31		
옥봉동	38 030 60	가음정동	38 010 60	횡천면	38 360 34		
이반성면	38 030 36	대산면	38 010 32	**함안군**	**38 320**		
이현동	38 030 69	동읍	38 010 11	가야읍	38 320 11		
일반성면	38 030 35	명곡동	38 010 53	군북면	38 320 32		
정촌면	38 030 32	반송동	38 010 55	대산면	38 320 34		
중앙동	38 030 55	봉림동	38 010 54	법수면	38 320 33		
지수면	38 030 38	북면	38 010 31	산인면	38 320 38		
진성면	38 030 34	사파동	38 010 59	여항면	38 320 39		
집현면	38 030 41	상남동	38 010 58	칠북면	38 320 36		
초장동	38 030 66	성주동	38 010 61	칠서면	38 320 35		
칠암동	38 030 53	용지동	38 010 57	칠원면	38 320 37		
판문동	38 030 70	웅남동	38 010 62	함안면	38 320 31		
평거동	38 030 67	의창동	38 010 51	**함양군**	**38 380**		
하대1동	38 030 63	중앙동	38 010 56	마천면	38 380 31		
하대2동	38 030 64	팔룡동	38 010 52	백전면	38 380 39		
진해시	**38 040**	**통영시**	**38 050**	병곡면	38 380 40		
경화동	38 040 56	광도면	38 050 33	서상면	38 380 38		
덕산동	38 040 61	도남동	38 050 61	서하면	38 380 37		
병암동	38 040 57	도산면	38 050 32	수동면	38 380 34		
석동	38 040 58	도천동	38 050 51	안의면	38 380 36		
여좌동	38 040 54	명정동	38 050 52	유림면	38 380 33		
웅동1동	38 040 65	무전동	38 050 56	지곡면	38 380 35		
웅동2동	38 040 66	미수1동	38 050 58	함양읍	38 380 11		
웅천동	38 040 64	미수2동	38 050 59	휴천면	38 380 32		
이동	38 040 59	봉평동	38 050 60	**합천군**	**38 400**		
자은동	38 040 60	북신동	38 050 55	가야면	38 400 33		
중앙동	38 040 51	사량면	38 050 36	가회면	38 400 44		
충무동	38 040 53	산양읍	38 050 11	대병면	38 400 45		
태백동	38 040 55	욕지면	38 050 34	대양면	38 400 41		
태평동	38 040 52	용남면	38 050 31	덕곡면	38 400 38		
풍호동	38 040 62	인평동	38 050 57	묘산면	38 400 32		
창녕군	**38 330**	정량동	38 050 54	봉산면	38 400 31		
계성면	38 330 37	중앙동	38 050 53	삼가면	38 400 43		
고암면	38 330 31	한산면	38 050 35	쌍백면	38 400 42		

(제주도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제주도	39	화북동	39 010 60				
남제주군	39 320						
남원읍	39 320 12						
대정읍	39 320 11						
성산읍	39 320 13						
안덕면	39 320 31						
표선면	39 320 32						
북제주군	39 310						
구좌읍	39 310 13						
애월읍	39 310 12						
우도면	39 310 33						
조천읍	39 310 14						
추자면	39 310 32						
한경면	39 310 31						
한림읍	39 310 11						
서귀포시	39 020						
대륜동	39 020 59						
대천동	39 020 60						
동홍동	39 020 57						
서홍동	39 020 58						
송산동	39 020 51						
영천동	39 020 56						
예례동	39 020 62						
정방동	39 020 52						
중문동	39 020 61						
중앙동	39 020 53						
천지동	39 020 54						
효돈동	39 020 55						
제주시	39 010						
건입동	39 010 59						
노형동	39 010 66						
도두동	39 010 69						
봉개동	39 010 62						
삼도1동	39 010 55						
삼도2동	39 010 56						
삼양동	39 010 61						
아라동	39 010 63						
연동	39 010 65						
오라동	39 010 64						
외도동	39 010 67						
용담1동	39 010 57						
용담2동	39 010 58						
이도1동	39 010 53						
이도2동	39 010 54						
이호동	39 010 68						
일도1동	39 010 51						
일도2동	39 010 52						

23-10

2000 인구주택총조사

각종분류부호집

통계청

목 차

Ⅰ.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3

1. 성씨 분류 부호 6
2.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7

Ⅱ. 연령조견표 31

Ⅲ. 행정구역 분류 부호 33

1. 시군구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36
2. 읍면동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38

① 서울특별시 38
② 부산광역시 41
③ 대구광역시 43
④ 인천광역시 44
⑤ 광주광역시 45
⑥ 대전광역시 46
⑦ 울산광역시 47
⑧ 경기도 48
⑨ 강원도 51
⑩ 충청북도 53
⑪ 충청남도 54
⑫ 전라북도 56
⑬ 전라남도 58
⑭ 경상북도 60
⑮ 경상남도 62
⑯ 제주도 64

일 러 두 기

1. 부호를 기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색볼펜 사용

※ 싸인펜이나 플러스펜은 글씨가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금지

2. 기재 누락일 경우에는 '000'으로, 미상(부호집에 없음)일 경우에는 '999'로 표시.

※ 조사표 내용 검토시 반드시 해당가구(조사대상자)에 문의하여 재확인해야 함.

3. 부호 기입할 항목

가. 전수조사표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 성씨, 본관, 출생지

나. 표본조사표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 성씨, 본관, 출생지,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통근·통학장소,

다. 빈집조사표

조사표 상단의 행정구역

라. 외국인 조사표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

Ⅰ.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가나다순)

1. 성씨 분류 부호 6
2.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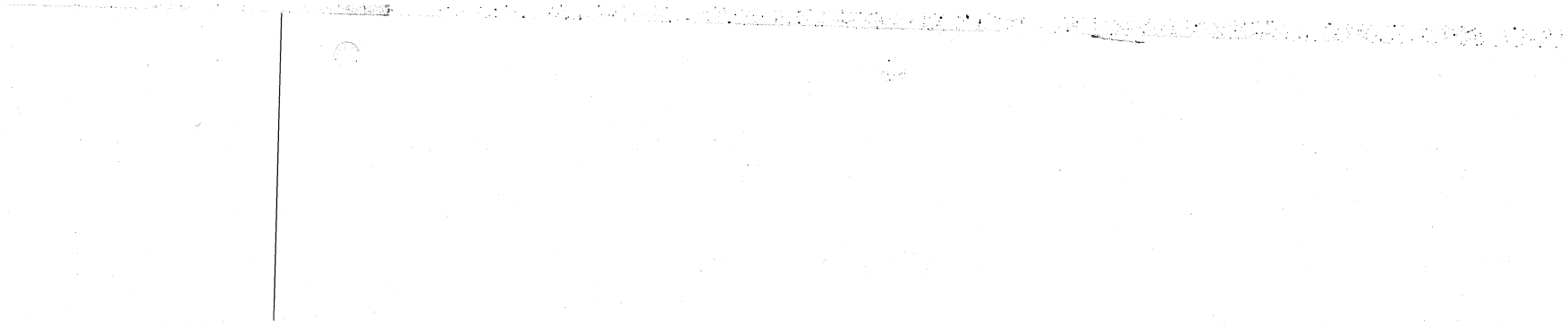

일 러 두 기

1. 개요

가. 수록된 성씨 수 : 275개(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조사된 성씨)
나. 소멸된 성씨나 1985년 이후 생성된 성씨는 미수록

2. 부호 기입시 유의사항

가. 성씨 3자리, 본관 3자리를 부호표에서 찾아 붉은색 볼펜으로 기입

나. 음은 같은데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 기입

① 영산 김씨 : 永山 - 김영이의 후손, 靈山 - 김순의 후손
② 영천 이씨 : 寧川, 永川

다. 같은 본관이라도 1, 2나 신, 구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기입.

① 김해김씨1(선김) : 김수로왕의 후손
김해김씨2(후김)
ⓐ 김녕김씨(신라 경순왕의 8세손인 시흥의 후손)
ⓑ 우록김씨(임진왜란때 귀화한 김충선(사사끼)의 후손)

② 구 안동김씨 : 김알지의 28세손 김숙승의 후손. 김방경을 중시조로 함
신 안동김씨 :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김선평의 후손. 김극효를 중시조로 함

③ 신평송씨1 : 송구진의 후손
신평송씨2 : 송구진의 후손인 송자은의 후손

④ 연안송씨1 : 경의 후손
연안송씨2 : 한의 후손

⑤ 죽산 안씨 : 안방준(이지춘)의 후손
신죽산안씨 : 안방걸(이엽춘,광주안씨의 시조)의 17세손이며
안자미(순흥안씨의 시조)의 7세손인 안원형의 후손

⑥ 원주이씨1 : 신우의 후손으로 경주이씨에서 분적
원주이씨2 : 춘계의 후손

⑦ 남양홍씨(당홍) : 당나라 8학사의 한사람으로 고구려때 귀화한 홍천하의 후손으로
고려 초기의 홍은열을 시조로 함
남양홍씨(토홍) : 고려 고종때의 홍선행의 후손

1. 성씨 분류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성씨	부호
가(賈)	111	노(魯)	157	범(凡)	203	신(申)	249	유(劉)	295	채(菜)	341
간(簡)	112	노(路)	158	변(卞)	204	신(辛)	250	육(陸)	296	채(采)	342
갈(葛)	113	뇌(賴)	159	변(邊)	205	신(愼)	251	윤(尹)	297	천(千)	343
감(甘)	114	뇌(雷)	160	복(卜)	206	심(沈)	252	은(殷)	298	천(天)	344
강(姜)	115	누(樓)	161	봉(奉)	207	십(辻)	253	음(陰)	299	초(楚)	345
강(康)	116	단(段)	162	봉(鳳)	208	아(阿)	254	이(李)	300	초(肖)	346
강(彊)	117	단(單)	163	부(夫)	209	안(安)	255	이(異)	301	초(初)	347
강(強)	118	단(端)	164	부(傅)	210	애(艾)	256	이(伊)	302	최(崔)	348
강(剛)	119	담(譚)	165	비(丕)	211	야(夜)	257	인(印)	303	추(秋)	349
강전(岡田)	120	당(唐)	166	빈(賓)	212	양(梁)	258	임(林)	304	추(鄒)	350
개(介)	121	대(大)	167	빈(彬)	213	양(楊)	259	임(任)	305	춘(椿)	351
견(甄)	122	도(都)	168	빙(冰)	214	양(樑)	260	자(慈)	306	탁(卓)	352
견(堅)	123	도(陶)	169	사(史)	215	양(襄)	261	장(張)	307	탄(彈)	353
경(慶)	124	도(道)	170	사(舍)	216	어(魚)	262	장(蔣)	308	태(太)	354
경(景)	125	독고(獨孤)	171	사(謝)	217	어금(魚金)	263	장(章)	309	판(判)	355
계(桂)	126	돈(頓)	172	사공(司空)	218	엄(嚴)	264	장(莊)	310	팽(彭)	356
고(高)	127	돈(敦)	173	삼(森)	219	여(呂)	265	장곡(長谷)	311	편(片)	357
곡(曲)	128	동(董)	174	상(尙)	220	여(余)	266	저(邸)	312	편(扁)	358
공(孔)	129	동방(東方)	175	서(徐)	221	여(汝)	267	전(全)	313	평(平)	359
공(公)	130	두(杜)	176	서(西)	222	연(延)	268	전(田)	314	포(包)	360
곽(郭)	131	두(頭)	177	서문(西門)	223	연(連)	269	전(錢)	315	표(表)	361
교(橋)	132	마(馬)	178	석(石)	224	연(燕)	270	점(占)	316	풍(馮)	362
구(具)	133	마(麻)	179	석(昔)	225	염(廉)	271	정(鄭)	317	피(皮)	363
구(丘)	134	만(萬)	180	선(宣)	226	영(永)	272	정(丁)	318	필(弼)	364
구(邱)	135	망절(網切)	181	선우(鮮于)	227	영(榮)	273	정(程)	319	하(河)	365
국(鞠)	136	매(梅)	182	설(薛)	228	영(影)	274	제(諸)	320	하(夏)	366
국(國)	137	맹(孟)	183	설(偰)	229	예(芮)	275	제(齊)	321	학(郝)	367
국(菊)	138	명(明)	184	섭(葉)	230	오(吳)	276	제갈(諸葛)	322	한(韓)	368
군(君)	139	모(牟)	185	성(成)	231	옥(玉)	277	조(趙)	323	한(漢)	369
궁(弓)	140	모(毛)	186	성(星)	232	온(溫)	278	조(曺)	324	함(咸)	370
궉(鴋)	141	목(睦)	187	소(蘇)	233	옹(邕)	279	종(鍾)	325	해(海)	371
권(權)	142	묘(苗)	188	소(邵)	234	옹(雍)	280	종(宗)	326	허(許)	372
근(斤)	143	묵(墨)	189	소봉(小峰)	235	왕(王)	281	좌(左)	327	현(玄)	373
금(琴)	144	문(文)	190	손(孫)	236	요(姚)	282	주(朱)	328	형(邢)	374
기(奇)	145	미(米)	191	송(宋)	237	용(龍)	283	주(周)	329	호(扈)	375
기(箕)	146	민(閔)	192	송(松)	238	우(于)	284	준(俊)	330	호(胡)	376
길(吉)	147	박(朴)	193	수(水)	239	우(禹)	285	지(池)	331	호(鎬)	377
김(金)	148	반(班)	194	수(洙)	240	운(雲)	286	지(智)	332	홍(洪)	378
나(羅)	149	반(潘)	195	순(荀)	241	운(芸)	287	진(陳)	333	화(化)	379
난(欒)	150	방(龐)	196	순(舜)	242	원(元)	288	진(秦)	334	환(桓)	380
남(南)	151	방(方)	197	순(淳)	243	원(袁)	289	진(晋)	335	황(黃)	381
남궁(南宮)	152	방(房)	198	순(順)	244	위(魏)	290	진(眞)	336	황보(皇甫)	382
낭(浪)	153	방(邦)	199	승(承)	245	위(韋)	291	차(車)	337	후(后)	383
내(奈)	154	배(裵)	200	승(昇)	246	유(柳)	292	창(昌)	338	후(候)	384
내(乃)	155	백(白)	201	시(施)	247	유(兪)	293	창(倉)	339	흥(興)	385
노(盧)	156	범(范)	202	시(柴)	248	유(庾)	294	채(蔡)	340		

2. 성씨 및 본관 분류 부호

(가 ~ 고)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가(賈)	111	남양	115 118	진주	117 111	태인	125 118
소주(소성)	111 111	대전	115 119	미상	117 000	해주	125 119
미상	111 000	동래	115 120	기타	117 999	미상	125 000
기타	111 999	밀양	115 121	강(強)	118	기타	125 999
간(簡)	112	배천(白川)	115 122	괴산	118 111	계(桂)	126
가평	112 111	보주	115 123	충주	118 112	수안	126 111
경주	112 112	보천	115 124	미상	118 000	미상	126 000
남양	112 113	부산	115 125	기타	118 999	기타	126 999
서산	112 114	불갑	115 126	강(剛)	119	고(高)	127
양양	112 115	성주	115 127	곡산	119 111	강릉	127 111
영광	112 116	수산	115 128	미상	119 000	강화	127 112
인동	112 117	수원	115 129	기타	119 999	개성	127 113
해주	112 118	순흥	115 130	강전(岡田)	120	경주	127 114
미상	112 000	시흥	115 131	없음	120 100	고령	127 115
기타	112 999	안동	115 132	개(介)	121	고봉(고양)	127 116
갈(葛)	113	여천	115 133	여주	121 111	고성	127 117
남양	113 111	연일	115 134	미상	121 000	고창	127 118
대구	113 112	원주	115 135	기타	121 999	고흥	127 119
비안곡	113 113	인동	115 136	견(甄)	122	광주	127 120
양성	113 114	전주	115 137	경주	122 111	김해	127 121
양주	113 115	제주	115 138	상주	122 112	김화	127 122
죽장	113 116	진주(진양)	115 139	안주	122 113	남양	127 123
청산	113 117	충주	115 140	전주	122 114	담양	127 124
청주(서원)	113 118	평양	115 141	청양	122 115	대전	127 125
청풍	113 119	해미	115 142	황간	122 116	상당	127 126
해남	113 120	미상	115 000	미상	122 000	안동	127 127
미상	113 000	기타	115 999	기타	122 999	연안	127 128
기타	113 999	강(康)	116	견(堅)	123	연주	127 129
감(甘)	114	강령	116 111	김포	123 111	영월	127 130
거창	114 111	곡산	116 112	사량(수원)	123 112	영천	127 131
부령	114 112	밀양	116 113	여주	123 113	옥구	127 132
창녕	114 113	상원	116 114	천녕	123 114	용담	127 133
창원	114 114	신천	116 115	미상	123 000	의령	127 134
충주	114 115	용인	116 116	기타	123 999	장성	127 135
합포	114 116	운남	116 117	경(慶)	124	장안	127 136
회산	114 117	원주	116 118	청주	124 111	장택	127 137
미상	114 000	임실	116 119	미상	124 000	장흥	127 138
기타	114 999	재령(안릉)	116 120	기타	124 999	전주	127 139
강(姜)	115	진주	116 121	경(景)	125	제주	127 140
강릉	115 111	충주	116 122	경주	125 111	진주	127 141
경주	115 112	파주	116 123	능향	125 112	창평	127 142
곡성	115 113	평양	116 124	밀양	125 113	청주	127 143
광주	115 114	함덕	116 125	복흥(장수)	125 114	충주	127 144
금천	115 115	미상	116 000	시산	125 115	토산	127 145
김해	115 116	기타	116 999	장연	125 116	해주	127 146
나주	115 117	강(疆)	117	충주	125 117	홍성	127 147

(고 ~ 김)

본관	부호
횡성	127 148
미상	127 000
기타	127 999
곡(曲)	128
용궁(예천)	128 111
미상	128 000
기타	128 999
공(孔)	129
경주	129 111
고산	129 112
곡부	129 113
대구	129 114
수원	129 115
전주	129 116
창녕	129 117
창원	129 118
미상	129 000
기타	129 999
공(公)	130
김포	130 111
문천	130 112
미상	130 000
기타	130 999
곽(郭)	131
경주	131 111
고흥	131 112
동래	131 113
밀양	131 114
봉산	131 115
선산	131 116
성산	131 117
성주	131 118
소래	131 119
여미	131 120
연일	131 121
의성	131 122
전주	131 123
진주	131 124
청주	131 125
청풍	131 126
충주	131 127
포산	131 128
풍산	131 129
함평	131 130
해미	131 131
현량	131 132

본관	부호
현풍	131 133
미상	131 000
기타	131 999
교(橋)	132
진주	132 111
미상	132 000
기타	132 999
구(具)	133
강릉	133 111
공주	133 112
능성	133 113
능주	133 114
달성	133 115
담양	133 116
명성	133 117
문성	133 118
승주	133 119
신안	133 120
연성	133 121
영주	133 122
전주	133 123
제주	133 124
창녕	133 125
창원	133 126
평해	133 127
회산	133 128
미상	133 000
기타	133 999
구(丘)	134
평해	134 111
미상	134 000
기타	134 999
구(邱)	135
은진	135 111
미상	135 000
기타	135 999
국(鞠)	136
담양	136 111
대구	136 112
복성(보성)	136 113
부령	136 114
영광	136 115
진주	136 116
미상	136 000
기타	136 999
국(國)	137

본관	부호
금성	137 111
담양	137 112
대명	137 113
영양	137 114
전주	137 115
풍천	137 116
현풍	137 117
미상	137 000
기타	137 999
국(菊)	138
영광	138 111
미상	138 000
기타	138 999
군(君)	139
남원	139 111
미상	139 000
기타	139 999
궁(弓)	140
토산(상원)	140 111
미상	140 000
기타	140 999
궉(鳶)	141
선산	141 111
순창	141 112
청주	141 113
미상	141 000
기타	141 999
권(權)	142
강릉	142 111
경주	142 112
광산	142 113
대전	142 114
밀양	142 115
안동	142 116
안성	142 117
예천	142 118
전주	142 119
진주	142 120
청주	142 121
미상	142 000
기타	142 999
근(斤)	143
청주	143 111
미상	143 000
기타	143 999
금(琴)	144

본관	부호
강화	144 111
계양(김포)	144 112
보성	144 113
봉화	144 114
안동	144 115
평해	144 116
미상	144 000
기타	144 999
기(奇)	145
경주	145 111
장성	145 112
행주	145 113
미상	145 000
기타	145 999
기(箕)	146
행주	146 111
미상	146 000
기타	146 999
길(吉)	147
경주	147 111
금산	147 112
남원	147 113
부화	147 114
서산	147 115
선산	147 116
성산	147 117
해평	147 118
미상	147 000
기타	147 999
김(金)	148
가평	148 111
감천	148 112
강남	148 113
강동	148 114
강릉	148 115
강서	148 116
강원	148 117
강주	148 118
강진	148 119
강화	148 120
개성	148 121
거창	148 122
결성	148 123
경기	148 124
경남	148 125
경북	148 126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경산	148 127	대전	148 173	성천	148 219	영주	148 265
경상	148 128	덕산	148 174	수성	148 220	영천	148 266
경주	148 129	덕수	148 175	수안	148 221	영해	148 267
계림	148 130	도강	148 176	수원	148 222	예산	148 268
고령	148 131	도광	148 177	수주	148 223	예안	148 269
고부	148 132	동래	148 178	순창	148 224	예천	148 270
고산	148 133	동양	148 179	순천	148 225	오천(연일)	148 271
고성	148 134	등주	148 180	순흥	148 226	옥산	148 272
고양	148 135	무송	148 181	승산	148 227	옥천	148 273
곡성	148 136	무안	148 182	승평	148 228	온양	148 274
곤양	148 137	무장	148 183	신성	148 229	온전	148 275
공주	148 138	무주	148 184	신안	148 230	완산	148 276
광명	148 139	문경	148 185	신천	148 231	용광	148 277
광산	148 140	문산	148 186	신평	148 232	용궁	148 278
광성	148 141	문화	148 187	*안동(구)	148 233	용담	148 279
광양	148 142	밀양	148 188	*안동(신)	148 234	용산	148 280
광주	148 143	방산	148 189	안로	148 235	용성	148 281
광천	148 144	배천(白川)	148 190	안산	148 236	용안	148 282
광해	148 145	별성	148 191	안성	148 237	우록	148 283
괴산	148 146	보령	148 192	안악	148 238	우봉	148 284
교하	148 147	보성	148 193	안양	148 239	울산	148 285
구례	148 148	봉산	148 194	안흥	148 240	웅천	148 286
금릉	148 149	봉화	148 195	야성(영덕)	148 241	원양	148 287
금산	148 150	부안(부령)	148 196	양근	148 242	원주	148 288
금성	148 151	부여	148 197	양금	148 243	월성	148 289
금정	148 152	부평	148 198	양산	148 244	유성	148 290
금평	148 153	북실	148 199	양주	148 245	은성	148 291
김녕	148 154	분성	148 200	양평	148 246	은율	148 292
김제	148 155	사창	148 201	언양	148 247	은진	148 293
김천	148 156	사천	148 202	여주	148 248	의령	148 294
*김해1	148 157	삼척	148 203	연기	148 249	의성	148 295
*김해2	148 158	상산	148 204	연산	148 250	의주	148 296
김화	148 159	상승	148 205	연성	148 251	의흥	148 297
나주	148 160	상주	148 206	연안	148 252	이양	148 298
낙안	148 161	서산	148 207	연주	148 253	이천	148 299
남양	148 162	서울	148 208	연풍	148 254	인동	148 300
남원	148 163	서흥	148 209	염포	148 255	인천	148 301
남평	148 164	선산(일선)	148 210	영광	148 256	일성	148 302
남포	148 165	선성	148 211	영동	148 257	임진	148 303
능주	148 166	설성	148 212	*영산(永山)	148 258	임피	148 304
달성	148 167	성남	148 213	*영산(靈山)	148 259	장성	148 305
담양	148 168	성산	148 214	영상	148 260	장수	148 306
당산	148 169	성선	148 215	영암	148 261	장연	148 307
당악(남해)	148 170	성은	148 216	영양	148 262	장학	148 308
대구	148 171	성의	148 217	영월	148 263	장흥	148 309
대영	148 172	성주	148 218	영일	148 264	적성	148 310

(김 ~ 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전남	148 311	평강	148 357	안동	149 118	내(乃)	155
전북	148 312	평산	148 358	안정	149 119	개성	155 111
전의	148 313	평양	148 359	의성	149 120	미상	155 000
전주	148 314	평창	148 360	장성	149 121	기타	155 999
정산	148 315	평택	148 361	전주	149 122	노(盧)	156
정선	148 316	평해	148 362	정산	149 123	강화	156 111
정읍	148 317	풍기	148 363	진주	149 124	경주	156 112
정주	148 318	풍덕	148 364	해주	149 125	고성	156 113
제주	148 319	풍산	148 365	미상	149 000	곡산	156 114
죽산	148 320	풍천(영유)	148 366	기타	149 999	광산	156 115
중화	148 321	하음	148 367	난(欒)	150	광성	156 116
진도	148 322	한남	148 368	충주	150 111	광주	156 117
진산	148 323	한산	148 369	미상	150 000	광진	156 118
진성	148 324	한성	148 370	기타	150 999	교하	156 119
진영	148 325	함녕	148 371	남(南)	151	김해	156 120
진위	148 326	함안	148 372	경주	151 111	나주	156 121
진잠	148 327	함양	148 373	고령	151 112	남원(용성)	156 122
진장	148 328	함창	148 374	고성	151 113	달성	156 123
진주	148 329	함평	148 375	남양	151 114	대전	156 124
진천	148 330	함흥	148 376	남원	151 115	동성(통진)	156 125
진해	148 331	합천	148 377	남평	151 116	만경	156 126
창녕	148 332	해남	148 378	밀양	151 117	서산	156 127
창원	148 333	해동	148 379	보성	151 118	서하	156 128
창평	148 334	해주	148 380	안동	151 119	서해	156 129
천안	148 335	해평	148 381	영양	151 120	선산	156 130
철성	148 336	해풍	148 382	율영	151 121	수원	156 131
철원	148 337	현풍	148 383	의령	151 122	신창	156 132
청덕	148 338	홍주	148 384	일흥	151 123	신평	156 133
청도	148 339	홍천	148 385	진주	151 124	안강	156 134
청산	148 340	화성	148 386	창녕	151 125	안동	156 135
청송	148 341	화순	148 387	함열	151 126	연일	156 136
청양	148 342	황산	148 388	해밀	151 127	영광	156 137
청주	148 343	황주	148 389	미상	151 000	장연	156 138
청평	148 344	흥덕	148 390	기타	151 999	장인	156 139
청풍	148 345	흥해	148 391	남궁(南宮)	152	재현	156 140
초계	148 346	희천	148 392	함열(익산)	152 111	전주	156 141
춘양	148 347	미상	148 000	미상	152 000	조행	156 142
춘천	148 348	기타	148 999	기타	152 999	진주	156 143
충남	148 349	나(羅)	149	낭(浪)	153	창녕	156 144
충주	148 350	경주	149 111	양주	153 111	청도	156 145
칠원	148 351	군위	149 112	미상	153 000	청주	156 146
태원	148 352	금성	149 113	기타	153 999	충주	156 147
토산	148 353	김해	149 114	내(奈)	154	풍천	156 148
통천	148 354	나주	149 115	나주	154 111	한양	156 149
파주	148 355	비안	149 116	미상	154 000	함양	156 150
파평	148 356	수성	149 117	기타	154 999	함평	156 151

(노 ~ 모)

본관	부호
해주	156 152
미상	156 000
기타	156 999
노(魯)	157
강화	157 111
경주	157 112
고환	157 113
광만	157 114
광주	157 115
규환	157 116
만경	157 117
밀양	157 118
진주	157 119
충주	157 120
함종	157 121
함평	157 122
함흥	157 123
미상	157 000
기타	157 999
노(路)	158
개성	158 111
대원	158 112
북청	158 113
태원(충주)	158 114
미상	158 000
기타	158 999
뇌(賴)	159
없음	159 100
뇌(雷)	160
교동(강화)	160 111
미상	160 000
기타	160 999
누(樓)	161
없음	161 100
단(段)	162
가음	162 111
강릉	162 112
강음(김천)	162 113
고산	162 114
서촉	162 115
연안	162 116
전주	162 117
청주	162 118
화산	162 119
황주	162 120
미상	162 000
기타	162 999
단(單)	163
연안	163 111
미상	163 000
기타	163 999
단(端)	164
한산	164 111
미상	164 000
기타	164 999
담(譚)	165
등주	165 111
미상	165 000
기타	165 999
당(唐)	166
밀양	166 111
미상	166 000
기타	166 999
대(大)	167
대산(김해)	167 111
밀양	167 112
미상	167 000
기타	167 999
도(都)	168
경주	168 111
대구	168 112
밀양	168 113
사정(수원)	168 114
상주	168 115
서제	168 116
성산	168 117
성주	168 118
의성	168 119
전주	168 120
청주	168 121
춘천	168 122
파주	168 123
팔거(칠곡)	168 124
미상	168 000
기타	168 999
도(陶)	169
경주	169 111
남양	169 112
밀양	169 113
병양(진주)	169 114
순천	169 115
양주	169 116
청주	169 117
풍양	169 118
미상	169 000
기타	169 999
도(道)	170
고성	170 111
미상	170 000
기타	170 999
독고(獨孤)	171
광릉	171 111
나주	171 112
남원	171 113
의주	171 114
황주	171 115
미상	171 000
기타	171 999
돈(頓)	172
목천	172 111
미상	172 000
기타	172 999
돈(敦)	173
청주	173 111
미상	173 000
기타	173 999
동(董)	174
광주	174 111
광천	174 112
영천	174 113
풍천	174 114
미상	174 000
기타	174 999
동방(東方)	175
진주	175 111
청주	175 112
미상	175 000
기타	175 999
두(杜)	176
두릉(만경)	176 111
미상	176 000
기타	176 999
두(頭)	177
고산	177 111
미상	177 000
기타	177 999
마(馬)	178
개성	178 111
목천	178 112
의성	178 113
장안	178 114
장흥	178 115
미상	178 000
기타	178 999
마(麻)	179
열산(간성)	179 111
영평	179 112
미상	179 000
기타	179 999
만(萬)	180
강화(진강)	180 111
강릉	180 112
개성	180 113
광주	180 114
영풍	180 115
익곡(안변)	180 116
미상	180 000
기타	180 999
망절(網切)	181
없음	181 100
매(梅)	182
충주	182 111
미상	182 000
기타	182 999
맹(孟)	183
신창	183 111
온양	183 112
미상	183 000
기타	183 999
명(明)	184
서촉	184 111
성도	184 112
연안	184 113
해주	184 114
황해	184 115
미상	184 000
기타	184 999
모(牟)	185
진주	185 111
함평	185 112
미상	185 000
기타	185 999
모(毛)	186
공주(공산)	186 111

(모 ~ 박)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광주	186 112	영산	190 138	고성	193 117	수원	193 163
김해	186 113	장연	190 139	고흥	193 118	순창	193 164
서산	186 114	장흥	190 140	공주	193 119	순천	193 165
미상	186 000	전주	190 141	광산	193 120	순흥	193 166
기타	186 999	정선	190 142	광주	193 121	승평	193 167
목(睦)	187	제주	190 143	구산	193 122	아산	193 168
사천	187 111	진주	190 144	군위	193 123	안동	193 169
미상	187 000	청주	190 145	김해	193 124	안성	193 170
기타	187 999	태평	190 146	나주	193 125	압해	193 171
묘(苗)	188	파평	190 147	난포	193 126	야성	193 172
성산	188 111	평산	190 148	남양	193 127	언양	193 173
미상	188 000	평안	190 149	남원	193 128	여수	193 174
기타	188 999	평양	190 150	남주	193 129	여주	193 175
묵(墨)	189	평택	190 151	남평	193 130	연안	193 176
광녕	189 111	하양	190 152	노성	193 131	영암	193 177
요동	189 112	함평	190 153	단양	193 132	영양	193 178
미상	189 000	미상	190 000	달성	193 133	영월	193 179
기타	189 999	기타	190 999	담양	193 134	영천	193 180
문(文)	190	미(米)	191	대천	193 135	영해	193 181
감천	190 111	방산(양구)	191 111	덕원	193 136	영흥	193 182
강릉	190 112	송림(장단)	191 112	덕진	193 137	예천	193 183
강성	190 113	유성(공주)	191 113	면천	193 138	우봉	193 184
개령	190 114	재령	191 114	명성	193 139	운봉	193 185
결성	190 115	미상	191 000	무안	193 140	울산	193 186
경주	190 116	기타	191 999	문의	193 141	월성	193 187
광산	190 117	민(閔)	192	문주	193 142	은풍	193 188
김해	190 118	경주	192 111	문화	193 143	음성	193 189
나주	190 119	대전	192 112	미산	193 144	의령	193 190
낙태	190 120	여주	192 113	밀양(밀성)	193 145	의성	193 191
남양	190 121	여흥	192 114	반남	193 146	의형	193 192
남영	190 122	영운	192 115	보성	193 147	의흥	193 193
남원	190 123	영원	192 116	봉산	193 148	인제	193 194
남천	190 124	영인	192 117	부산	193 149	인천	193 195
남평	190 125	정선	192 118	부안	193 150	일성	193 196
남해	190 126	창원	192 119	비안	193 151	임실	193 197
내평	190 127	청주	192 120	사천	193 152	장성	193 198
능성	190 128	해남	192 121	삼척	193 153	장흥	193 199
단성	190 129	미상	192 000	삼화	193 154	전주	193 200
대전	190 130	기타	192 999	상산	193 155	정선	193 201
문평	190 131	박(朴)	193	상성	193 156	정승	193 202
문화	190 132	강남	193 111	상영	193 157	정주	193 203
밀양	190 133	강릉	193 112	상주	193 158	제주	193 204
보령	190 134	강원	193 113	선산	193 159	주계	193 205
선산	190 135	강진	193 114	설성	193 160	죽산(죽주)	193 206
안동	190 136	경주	193 115	성신	193 161	진안	193 207
양평	190 137	고령	193 116	성주	193 162	진원	193 208

본관	부호
진주	193 209
진흥	193 210
창녕	193 211
창원	193 212
천안	193 213
청송	193 214
청주	193 215
초계	193 216
춘천	193 217
충주	193 218
태안	193 219
태인	193 220
평산	193 221
평양	193 222
평주	193 223
평택	193 224
하명	193 225
한산	193 226
한양	193 227
함안	193 228
함양	193 229
함열	193 230
함평	193 231
함흥	193 232
해남	193 233
해명	193 234
해주	193 235
현천	193 236
현풍	193 237
미상	193 000
기타	193 999
반(班)	194
개성	194 111
고성	194 112
광주	194 113
평해	194 114
미상	194 000
기타	194 999
반(潘)	195
거제	195 111
결성	195 112
광주	195 113
기성	195 114
남평	195 115
영평	195 116
음성	195 117
미상	195 000
기타	195 999
방(龐)	196
갈양	196 111
개성	196 112
태원	196 113
미상	196 000
기타	196 999
방(方)	197
결성	197 111
경주	197 112
군위	197 113
김해	197 114
나주	197 115
남원	197 116
무안	197 117
상주	197 118
수원	197 119
신창	197 120
안산	197 121
안성	197 122
양산	197 123
온양	197 124
원영	197 125
진주	197 126
창성	197 127
충주	197 128
해남	197 129
미상	197 000
기타	197 999
방(房)	198
남양	198 111
남원	198 112
밀양	198 113
서산	198 114
수원	198 115
양산	198 116
온양	198 117
천녕	198 118
포천	198 119
미상	198 000
기타	198 999
방(邦)	199
광주	199 111
괴산	199 112
무안	199 113
수다(나주)	199 114
영흥	199 115
예천	199 116
철원	199 117
파주	199 118
풍기	199 119
해주	199 120
미상	199 000
기타	199 999
배(裵)	200
감해	200 111
개성	200 112
경남	200 113
경주	200 114
고령	200 115
고양	200 116
곡강	200 117
곤양(곤산)	200 118
금강	200 119
금성	200 120
나주	200 121
남양	200 122
남원	200 123
남해	200 124
달성	200 125
대구	200 126
대전	200 127
밀양	200 128
분성(김해)	200 129
상주	200 130
서산	200 131
선산	200 132
성산	200 133
성주	200 134
수원	200 135
안동	200 136
안성	200 137
안악	200 138
온양	200 139
의성	200 140
전주	200 141
정주	200 142
진주	200 143
창녕	200 144
청산	200 145
청주	200 146
평산	200 147
풍산	200 148
풍성	200 149
함흥	200 150
해주	200 151
협계	200 152
흥해	200 153
화순	200 154
미상	200 000
기타	200 999
백(白)	201
경기	201 111
경주	201 112
광주	201 113
김해	201 114
나주	201 115
남원	201 116
남포	201 117
남해	201 118
대흥	201 119
문경	201 120
밀양	201 121
배천(白川)	201 122
부여	201 123
성산	201 124
성주	201 125
수원	201 126
순천	201 127
순흥	201 128
원주	201 129
임천	201 130
적성(순창)	201 131
전주	201 132
직산	201 133
진주	201 134
청도	201 135
충주	201 136
태인	201 137
평산	201 138
해미	201 139
홍주	201 140
미상	201 000
기타	201 999
범(范)	202
금성	202 111
나주	202 112

(범 ~ 서)

본관	부호
미상	202 000
기타	202 999
범(凡)	203
안주	203 111
미상	203 000
기타	203 999
변(卞)	204
경주	204 111
남원	204 112
밀양	204 113
백음	204 114
부용	204 115
원주	204 116
장성	204 117
진주	204 118
청주	204 119
초계	204 120
팔거	204 121
미상	204 000
기타	204 999
변(邊)	205
가은(문경)	205 111
가평	205 112
경주	205 113
나주	205 114
원주	205 115
장성	205 116
장연	205 117
전주	205 118
제주	205 119
진주	205 120
청주	205 121
해주	205 122
황주	205 123
미상	205 000
기타	205 999
복(卜)	206
구성	206 111
면천	206 112
연주	206 113
오천(연일)	206 114
전북	206 115
청양	206 116
평산	206 117
홍주	206 118
미상	206 000
기타	206 999
봉(奉)	207
강화	207 111
양성	207 112
진주	207 113
풍기	207 114
하음	207 115
함흥	207 116
미상	207 000
기타	207 999
봉(鳳)	208
경주	208 111
미상	208 000
기타	208 999
부(夫)	209
제주	209 111
미상	209 000
기타	209 999
부(傅)	210
한양	210 111
미상	210 000
기타	210 999
비(丕)	211
용서	211 111
미상	211 000
기타	211 999
빈(賓)	212
달성	212 111
밀양	212 112
수성(대구)	212 113
영광(육창)	212 114
의성	212 115
미상	212 000
기타	212 999
빈(彬)	213
대구	213 111
달성	213 112
미상	213 000
기타	213 999
빙(冰)	214
경주	214 111
미상	214 000
기타	214 999
사(史)	215
거창	215 111
경주	215 112
선산	215 113
수원	215 114
임강	215 115
장사	215 116
전주	215 117
진주	215 118
청송	215 119
청주	215 120
충주	215 121
파주	215 122
미상	215 000
기타	215 999
사(舍)	216
부평	216 111
미상	216 000
기타	216 999
사(謝)	217
진주	217 111
한산	217 112
미상	217 000
기타	217 999
사공(司空)	218
군위	218 111
효령	218 112
미상	218 000
기타	218 999
삼(森)	219
삼가	219 111
미상	219 000
기타	219 999
상(尙)	220
목천	220 111
미상	220 000
기타	220 999
서(徐)	221
가성	221 111
경북	221 112
경주	221 113
광성	221 114
광주	221 115
군위	221 116
김해	221 117
나주	221 118
남양	221 119
남원	221 120
남평	221 121
단양	221 122
달성	221 123
달천	221 124
담양	221 125
당성	221 126
대구	221 127
대전	221 128
밀양	221 129
복흥(순창)	221 130
부여	221 131
서산	221 132
서원	221 133
서천	221 134
수원	221 135
안동	221 136
안성	221 137
여주	221 138
연산(황산)	221 139
연천	221 140
염주(연안)	221 141
영성	221 142
예천	221 143
용궁	221 144
울산	221 145
원주	221 146
의령	221 147
의성	221 148
의주	221 149
이천	221 150
인천	221 151
장성	221 152
전주	221 153
절강	221 154
진주	221 155
창녕	221 156
천천	221 157
청주	221 158
충주	221 159
평당(파주·봉성)	221 160
평택	221 161
함양	221 162
함평	221 163
해주	221 164
미상	221 000
기타	221 999
서(西)	222

본관	부호
진주	222 111
충주	222 112
미상	222 000
기타	222 999
서문(西門)	223
안음(안의)	223 111
미상	223 000
기타	223 999
석(石)	224
개성	224 111
결성	224 112
경주	224 113
광주	224 114
남원	224 115
대구	224 116
밀양	224 117
양주	224 118
원주	224 119
전주	224 120
제천	224 121
조주	224 122
청주	224 123
충주(홍주)	224 124
파평	224 125
해주	224 126
화원(성주)	224 127
미상	224 000
기타	224 999
석(昔)	225
경주	225 111
월성	225 112
미상	225 000
기타	225 999
선(宣)	226
광주	226 111
밀양	226 112
보성	226 113
이천	226 114
전주	226 115
미상	226 000
기타	226 999
선우(鮮于)	227
태원	227 111
미상	227 000
기타	227 999
설(薛)	228
개성	228 111
경주	228 112
밀양	228 113
순창	228 114
순천	228 115
옥천	228 116
진주	228 117
창원	228 118
미상	228 000
기타	228 999
설(偰)	229
경주	229 111
미상	229 000
기타	229 999
섭(葉)	230
경주	230 111
공촌(수원)	230 112
수원	230 113
이파산	230 114
처인(용인)	230 115
충주	230 116
해평(선산)	230 117
미상	230 000
기타	230 999
성(成)	231
강릉	231 111
경주	231 112
나주	231 113
달성	231 114
달천	231 115
양근	231 116
예산	231 117
전주	231 118
창녕	231 119
창원	231 120
청룡	231 121
청양	231 122
청주	231 123
미상	231 000
기타	231 999
성(星)	232
선평	232 111
미상	232 000
기타	232 999
소(蘇)	233
남원	233 111
진주	233 112
미상	233 000
기타	233 999
소(邵)	234
경주	234 111
공주	234 112
남양	234 113
밀양	234 114
비안	234 115
서촉	234 116
안태(경주)	234 117
여량(안동)	234 118
익산	234 119
인주(인천)	234 120
전주	234 121
진주	234 122
청산	234 123
평산	234 124
하남	234 125
미상	234 000
기타	234 999
소봉(小峰)	235
없음	235 100
손(孫)	236
경기	236 111
경주	236 112
광주	236 113
구례	236 114
김해	236 115
나주	236 116
남원	236 117
달성	236 118
밀양	236 119
보성	236 120
부령	236 121
비안	236 122
안동(일직)	236 123
전주	236 124
진주	236 125
창녕	236 126
청주	236 127
충주	236 128
평안	236 129
평양	236 130
평택	236 131
평해	236 132
해주	236 133
미상	236 000
기타	236 999
송(宋)	237
강음	237 111
견주(양주)	237 112
광주	237 113
김해	237 114
나주	237 115
남양	237 116
남원	237 117
남평	237 118
대전	237 119
덕산	237 120
마산	237 121
문경	237 122
밀양	237 123
복흥	237 124
서산	237 125
순흥	237 126
신안	237 127
*신평1	237 128
*신평2	237 129
심평	237 130
쌍탁(수원)	237 131
안산	237 132
야성(야로· 합천)	237 133
양주	237 134
여산	237 135
여주	237 136
연산	237 137
*연안1	237 138
*연안2	237 139
예산	237 140
옥구	237 141
용성	237 142
울진	237 143
은성	237 144
은율	237 145
은진	237 146
의성	237 147
전주	237 148
제주	237 149
죽산	237 150
진천	237 151
철원	237 152

(송 ~ 안)

본관	부호
청주	237 153
태안	237 154
태인	237 155
홍주	237 156
회덕	237 157
흥양	237 158
미상	237 000
기타	237 999
송(松)	238
화순	238 111
미상	238 000
기타	238 999
수(水)	239
강남	239 111
강릉	239 112
고산(운제)	239 113
김해	239 114
미상	239 000
기타	239 999
수(洙)	240
달성	240 111
밀양	240 112
미상	240 000
기타	240 999
순(荀)	241
연곡(강릉)	241 111
임천	241 112
창원	241 113
홍산	241 114
미상	241 000
기타	241 999
순(舜)	242
파주	242 111
임천	242 112
미상	242 000
기타	242 999
순(淳)	243
임천	243 111
미상	243 000
기타	243 999
순(順)	244
없음	244 100
승(承)	245
광산	245 111
연일	245 112
미상	245 000
기타	245 999
승(昇)	246
남원	246 111
창평	246 112
미상	246 000
기타	246 999
시(施)	247
성주	247 111
절강	247 112
미상	247 000
기타	247 999
시(柴)	248
김화	248 111
능향	248 112
태인	248 113
미상	248 000
기타	248 999
신(申)	249
강릉	249 111
거제	249 112
경산	249 113
경주	249 114
고령	249 115
고창	249 116
고흥	249 117
곡성	249 118
광산	249 119
김해	249 120
나주	249 121
남양	249 122
담양	249 123
대전	249 124
문화	249 125
밀양	249 126
보령	249 127
삭녕	249 128
상갈	249 129
성산	249 130
신천	249 131
신평	249 132
아주	249 133
안동	249 134
연안	249 135
영원	249 136
영월	249 137
영해	249 138
울산	249 139
은풍(풍기)	249 140
의령	249 141
의성	249 142
이천	249 143
전주	249 144
정선	249 145
조종(가평)	249 146
진주	249 147
창주	249 148
천안	249 149
청산	249 150
청송	249 151
청주	249 152
파평	249 153
평강	249 154
평산	249 155
평안	249 156
평양	249 157
평창	249 158
평해	249 159
함평	249 160
해주	249 161
황산	249 162
미상	249 000
기타	249 999
신(辛)	250
경주	250 111
김해	250 112
부안	250 113
양산	250 114
영광	250 115
영산	250 116
영월	250 117
영주	250 118
평창	250 119
미상	250 000
기타	250 999
신(愼)	251
거창	251 111
서산	251 112
진주	251 113
황산	251 114
미상	251 000
기타	251 999
심(沈)	252
경주	252 111
남원	252 112
밀양	252 113
삼척	252 114
순천(부유)	252 115
신안	252 116
의령	252 117
전주	252 118
정선	252 119
청산	252 120
청송	252 121
청주	252 122
청풍	252 123
충주	252 124
풍산	252 125
홍성	252 126
미상	252 000
기타	252 999
십(十)	253
성진	253 111
미상	253 000
기타	253 999
아(阿)	254
나주	254 111
양주	254 112
익산	254 113
진주	254 114
미상	254 000
기타	254 999
안(安)	255
강진	255 111
경주	255 112
공산(공주)	255 113
광주	255 114
김해	255 115
남원	255 116
담양	255 117
당진	255 118
대전	255 119
밀양	255 120
보성	255 121
수원	255 122
순천	255 123
순흥	255 124
안동	255 125
안산	255 126

본관	부호
안성	255 127
양산	255 128
예산	255 129
전주	255 130
정주	255 131
제천	255 132
주천	255 133
*죽산	255 134
*죽산(신)	255 135
천안	255 136
청주	255 137
충주	255 138
탐진	255 139
태원	255 140
파평	255 141
평산	255 142
평안	255 143
평택	255 144
해주	255 145
미상	255 000
기타	255 999
애(艾)	256
영풍	256 111
전주	256 112
한양	256 113
미상	256 000
기타	256 999
야(夜)	257
개성	257 111
봉성(파주)	257 112
원평(파평)	257 113
미상	257 000
기타	257 999
양(梁)	258
경주	258 111
고부	258 112
군위	258 113
김해	258 114
나주	258 115
남양	258 116
남영	258 117
남원	258 118
남한	258 119
남흥	258 120
단양	258 121
대전	258 122
명월	258 123
문화	258 124
삼척	258 125
양주	258 126
양천	258 127
예성	258 128
예춘	258 129
원주	258 130
임천	258 131
전주	258 132
제주	258 133
진주	258 134
청송	258 135
청주	258 136
충주	258 137
파주	258 138
해주	258 139
미상	258 000
기타	258 999
양(楊)	259
남원	259 111
밀양	259 112
순창	259 113
안악	259 114
인동	259 115
중화	259 116
진주	259 117
청주	259 118
충주	259 119
통주	259 120
미상	259 000
기타	259 999
양(樑)	260
남양	260 111
미상	260 000
기타	260 999
양(襄)	261
없음	261 100
어(魚)	262
경흥	262 111
충주	262 112
함종	262 113
함흥	262 114
미상	262 000
기타	262 999
어금(魚金)	263
청도	263 111
미상	263 000
기타	263 999
엄(嚴)	264
광주	264 111
나주	264 112
밀양	264 113
상주	264 114
영월	264 115
영천	264 116
파주	264 117
하음	264 118
미상	264 000
기타	264 999
여(呂)	265
김해	265 111
단양	265 112
밀양	265 113
범중	265 114
상주	265 115
선산	265 116
성량	265 117
성산	265 118
성주	265 119
안동	265 120
여주	265 121
청주	265 122
함녕	265 123
함안	265 124
함양	265 125
함흥	265 126
해영	265 127
해주	265 128
미상	265 000
기타	265 999
여(余)	266
남해	266 111
의령	266 112
하동	266 113
미상	266 000
기타	266 999
여(汝)	267
안산	267 111
미상	267 000
기타	267 999
연(延)	268
개성	268 111
경주	268 112
곡산	268 113
곡성	268 114
광주	268 115
나주	268 116
남양	268 117
대전	268 118
도안	268 119
연안	268 120
옥산	268 121
청주	268 122
황해	268 123
미상	268 000
기타	268 999
연(連)	269
전주(나주)	269 111
미상	269 000
기타	269 999
연(燕)	270
곡산	270 111
덕원	270 112
영평	270 113
전주	270 114
정평	270 115
평주(평산)	270 116
미상	270 000
기타	270 999
염(廉)	271
개성	271 111
경주	271 112
광주	271 113
나주	271 114
보성	271 115
신천	271 116
양주	271 117
용담	271 118
진양	271 119
진주	271 120
창녕	271 121
청주	271 122
충주	271 123
파주(서원)	271 124
파평	271 125
해주	271 126
미상	271 000

(염 ~ 운)

본관	부호
기타	271 999
영(永)	272
강령	272 111
경주	272 112
평해	272 113
미상	272 000
기타	272 999
영(榮)	273
영천	273 111
미상	273 000
기타	273 999
영(影)	274
선천	274 111
미상	274 000
기타	274 999
예(芮)	275
담성	275 111
부계	275 112
의령	275 113
의흥	275 114
정선	275 115
청도	275 116
미상	275 000
기타	275 999
오(吳)	276
강화	276 111
경주	276 112
고성	276 113
고창	276 114
공주	276 115
광주	276 116
군위	276 117
금산	276 118
금성	276 119
김해	276 120
나주	276 121
낙안	276 122
남양	276 123
남원	276 124
낭산	276 125
능성	276 126
대구	276 127
대전	276 128
덕미	276 129
동래	276 130
동복	276 131
동부	276 132
두원	276 133
밀양	276 134
보령	276 135
보성	276 136
삼가	276 137
서산	276 138
성산	276 139
성주	276 140
수원	276 141
순흥	276 142
안동	276 143
안성	276 144
여주	276 145
연안	276 146
연일	276 147
연주	276 148
영광	276 149
영원	276 150
예안	276 151
온양	276 152
울산	276 153
의성	276 154
장흥	276 155
전남	276 156
전주	276 157
제주	276 158
진원	276 159
진주	276 160
창원	276 161
청주	276 162
충주	276 163
파주	276 164
평산	276 165
평택	276 166
평해	276 167
함녕	276 168
함안	276 169
함양	276 170
함평	276 171
함흥	276 172
해남	276 173
해명	276 174
해주	276 175
혜조	276 176
화순	276 177
황해	276 178
흥양	276 179
미상	276 000
기타	276 999
옥(玉)	277
개성	277 111
거제	277 112
밀양	277 113
반성	277 114
사천	277 115
의령	277 116
의성	277 117
진주	277 118
미상	277 000
기타	277 999
온(溫)	278
거야	278 111
경주	278 112
금구	278 113
나주	278 114
봉성	278 115
서원	278 116
온양	278 117
전주	278 118
진주	278 119
청주	278 120
평고	278 121
미상	278 000
기타	278 999
옹(邕)	279
순창	279 111
옥천	279 112
미상	279 000
기타	279 999
옹(雍)	280
옹진	280 111
파평	280 112
미상	280 000
기타	280 999
왕(王)	281
강릉	281 111
개성	281 112
거제	281 113
대전	281 114
이령	281 115
제남	281 116
해주	281 117
미상	281 000
기타	281 999
요(姚)	282
수원	282 111
휘주	282 112
미상	282 000
기타	282 999
용(龍)	283
개성	283 111
광주	283 112
수원	283 113
양근	283 114
용인	283 115
파주	283 116
홍천	283 117
미상	283 000
기타	283 999
우(于)	284
목천(천안)	284 111
미상	284 000
기타	284 999
우(禹)	285
강주(영천)	285 111
경주	285 112
남양	285 113
단양	285 114
달성	285 115
안동	285 116
안양	285 117
영주	285 118
예안	285 119
진양	285 120
창녕	285 121
한양	285 122
해주	285 123
미상	285 000
기타	285 999
운(雲)	286
장흥	286 111
청주	286 112
함흥	286 113
미상	286 000
기타	286 999
운(芸)	287
전주	287 111

본관	부호
창원	287 112
미상	287 000
기타	287 999
원(元)	288
강원	288 111
경주	288 112
남원	288 113
대전	288 114
영월	288 115
원주	288 116
전주	288 117
청주	288 118
해주	288 119
미상	288 000
기타	288 999
원(袁)	289
비안	289 111
비옥	289 112
미상	289 000
기타	289 999
위(魏)	290
고흥	290 111
관산	290 112
광산	290 113
수령	290 114
장흥	290 115
전주	290 116
함흥	290 117
해남	290 118
미상	290 000
기타	290 999
위(韋)	291
강화	291 111
미상	291 000
기타	291 999
유(柳)	292
강남	292 111
강릉	292 112
강진	292 113
거창	292 114
경주	292 115
고령	292 116
고흥	292 117
곡산	292 118
공주	292 119
광주(광산)	292 120
금산	292 121
김해	292 122
나주	292 123
남원	292 124
대전	292 125
문안	292 126
문화	292 127
밀양	292 128
배천(白川)	292 129
부안	292 130
부평	292 131
서령	292 132
서산	292 133
선산	292 134
성주	292 135
세령	292 136
수원	292 137
순흥	292 138
안동	292 139
약목(칠곡)	292 140
연안	292 141
영광	292 142
옥천	292 143
육창	292 144
인동	292 145
전주	292 146
정선	292 147
정주(풍덕)	292 148
진양	292 149
진주	292 150
진천	292 151
창원	292 152
천안	292 153
청주	292 154
파평	292 155
풍산	292 156
하동	292 157
하회	292 158
함평	292 159
해주	292 160
호산	292 161
흥양	292 162
미상	292 000
기타	292 999
유(兪)	293
강원	293 111
강진	293 112
강화	293 113
경주	293 114
고령	293 115
고흥	293 116
공주	293 117
광주	293 118
금산	293 119
기계	293 120
김해	293 121
남원	293 122
단양	293 123
달성	293 124
무안	293 125
밀양	293 126
부안	293 127
상주	293 128
안성	293 129
예산	293 130
인동	293 131
장사(무장)	293 132
진주	293 133
창원	293 134
천녕	293 135
청주	293 136
파평	293 137
풍산	293 138
하회	293 139
해주	293 140
미상	293 000
기타	293 999
유(庾)	294
무송	294 111
평산	294 112
미상	294 000
기타	294 999
유(劉)	295
강남	295 111
강릉(한양)	295 112
강원	295 113
강화	295 114
개성	295 115
거창	295 116
고부	295 117
공주	295 118
광주	295 119
금성	295 120
남원	295 121
무주	295 122
배천(白川)	295 123
수원	295 124
순흥	295 125
안동	295 126
연백	295 127
영월	295 128
옥천	295 129
원주	295 130
진주	295 131
창녕	295 132
천안	295 133
청주	295 134
충주	295 135
파평	295 136
풍산	295 137
해주	295 138
미상	295 000
기타	295 999
육(陸)	296
관성	296 111
옥천	296 112
미상	296 000
기타	296 999
윤(尹)	297
가평	297 111
강릉	297 112
거제	297 113
거창	297 114
경남	297 115
경주	297 116
고령	297 117
고창	297 118
광주	297 119
기계	297 120
김해	297 121
남원	297 122
남평	297 123
달성	297 124
대전	297 125
덕산	297 126
무송	297 127
문화	297 128
밀양	297 129

(윤 ~ 이)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배천(白川)	297 130	운산	299 121	교하	300 147	삼척	300 193
수원	297 131	음성	299 122	군위	300 148	상산	300 194
순흥	297 132	장연(연풍)	299 123	금구	300 149	상주	300 195
신녕	297 133	정주	299 124	금산	300 150	서림	300 196
야성	297 134	죽산	299 125	금성	300 151	서산	300 197
양주	297 135	충주	299 126	김천	300 152	서울	300 198
여주	297 136	풍천	299 127	김포	300 153	서천	300 199
영천	297 137	미상	299 000	김해	300 154	선산(광평)	300 200
예천	297 138	기타	299 999	나주	300 155	선성	300 201
전주	297 139	이(李)	300	남양	300 156	성산	300 202
죽산	297 140	가리	300 111	남원	300 157	성주	300 203
진주	297 141	가평	300 112	남평	300 158	성준	300 204
청주	297 142	간성	300 113	농서	300 159	수안	300 205
칠원	297 143	강동	300 114	농성	300 160	수원	300 206
태평	297 144	강릉	300 115	단성	300 161	순천	300 207
파평(파주)	297 145	강양	300 116	단양	300 162	순흥	300 208
팔판	297 146	강진	300 117	담양	300 163	승평	300 209
평산	297 147	강화	300 118	당진	300 164	신녕	300 210
평창	297 148	개령	300 119	대전	300 165	신평	300 211
함안	297 149	개성	300 120	대흥	300 166	신풍	300 212
함평	297 150	거창	300 121	덕산	300 167	아산	300 213
해남	297 151	결성	300 122	덕수	300 168	안동	300 214
해주	297 152	경기	300 123	덕순	300 169	안산	300 215
해평(선산)	297 153	경남	300 124	덕원	300 170	안성	300 216
현풍	297 154	경북	300 125	덕은	300 171	안악	300 217
미상	297 000	경산	300 126	덕천	300 172	안양	300 218
기타	297 999	경성	300 127	덕흥	300 173	안평	300 219
은(殷)	298	경주	300 128	동녕	300 174	양동	300 220
고부	298 111	경준	300 129	동래	300 175	양산	300 221
달성	298 112	경진	300 130	동평	300 176	양성	300 222
덕산	298 113	계룡	300 131	마산	300 177	양주	300 223
태인	298 114	계양	300 132	문산	300 178	양평	300 224
행주	298 115	고구	300 133	문안	300 179	여강	300 225
미상	298 000	고령	300 134	문화	300 180	여주	300 226
기타	298 999	고부	300 135	밀양	300 181	여흥	300 227
음(陰)	299	고성	300 136	배천(白川)	300 182	연극	300 228
개성	299 111	고양	300 137	백성	300 183	연산	300 229
경주	299 112	고창	300 138	벽산	300 184	연안	300 230
고산	299 113	고흥	300 139	벽진	300 185	연일	300 231
고주	299 114	곡산	300 140	보성	300 186	연천	300 232
광주	299 115	공산	300 141	보은	300 187	영광	300 233
괴산	299 116	공주	300 142	봉산	300 188	영월	300 234
밀양	299 117	광산	300 143	부안	300 189	영일	300 235
배천(白川)	299 118	광양	300 144	부여	300 190	영주	300 236
설성	299 119	광주	300 145	부평	300 191	영준	300 237
용강	299 120	괴산	300 146	사천(동성)	300 192	*영천(寧川)	300 238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영천(永川, 앙양, 영양)	300 239	정선	300 285	함평	300 331	공주	304 114
영춘	300 240	정주	300 286	함풍	300 332	광주	304 115
영해	300 241	제주	300 287	함흥	300 333	교동	304 116
예산	300 242	증평	300 288	합천	300 334	금산	304 117
예안	300 243	진보(진성)	300 289	해남	300 335	길안	304 118
예천	300 244	진안	300 290	해령	300 336	김해	304 119
오현	300 245	진위	300 291	해주	300 337	나주	304 120
옥천	300 246	진주	300 292	행주	300 338	남양	304 121
온양	300 247	진해	300 293	헌양	300 339	남원	304 122
완산	300 248	차성(기장)	300 294	홍성	300 340	단양	304 123
요산	300 249	창녕	300 295	홍주	300 341	단월	304 124
용궁	300 250	창원	300 296	홍천	300 342	담양	304 125
용인	300 251	천안	300 297	화산	300 343	대구	304 126
용천	300 252	철성	300 298	화평	300 344	대전	304 127
우견	300 253	청도	300 299	황주	300 345	동래	304 128
우계	300 254	청송	300 300	회덕	300 346	무안	304 129
우봉	300 255	청안	300 301	회양	300 347	밀양	304 130
울산	300 256	청양	300 302	흥양	300 348	반월	304 131
원산	300 257	청주	300 303	미상	300 000	보성	304 132
*원주1	300 258	청평	300 304	기타	300 999	보은	304 133
*원주2	300 259	청해	300 305	이(異)	301	부안	304 134
월성	300 260	춘천	300 306	남원	301 111	부여	304 135
은진	300 261	충남	300 307	동성(통진)	301 112	삼척	304 136
음죽	300 262	충주	300 308	밀양	301 113	상산	304 137
의령	300 263	칠성	300 309	청양	301 114	상주	304 138
의성	300 264	태안	300 310	미상	301 000	선산	304 139
의흥	300 265	태원	300 311	기타	301 999	성산	304 140
이천	300 266	토산	300 312	이(伊)	302	성주	304 141
익계	300 267	통진	300 313	은천(배천)	302 111	수원	304 142
익산	300 268	평산	300 314	충주	302 112	순창	304 143
익흥	300 269	평양	300 315	태원	302 113	순천	304 144
인제	300 270	평창	300 316	미상	302 000	순풍	304 145
인주	300 271	평택	300 317	기타	302 999	안동	304 146
인천	300 272	평해	300 318	인(印)	303	안산	304 147
임강	300 273	풍천	300 319	강화	303 111	안성	304 148
임천	300 274	하동	300 320	교동	303 112	안의	304 149
장기	300 275	하빈	300 321	당진	303 113	여주	304 150
장성	300 276	하산	300 322	연안	303 114	연안	304 151
장수	300 277	하음	300 323	함창	303 115	연일	304 152
장천	300 278	학성	300 324	해주	303 116	영월	304 153
장흥	300 279	한산	300 325	미상	303 000	영천	304 154
재령	300 280	한성	300 326	기타	303 999	영흥	304 155
전원	300 281	한양	300 327	임(林)	304	예산	304 156
전은	300 282	함경	300 328	강릉	304 111	예천	304 157
전의	300 283	함안	300 329	경주	304 112	옥구(군산)	304 158
전주	300 284	함양	300 330	고안	304 113	옥야	304 159

(임 ~ 전)

본관	부호
옥천	304 160
온양	304 161
울산	304 162
울진	304 163
원주	304 164
은진	304 165
의성	304 166
이안	304 167
이천	304 168
익산	304 169
임천	304 170
임파	304 171
임하	304 172
장성	304 173
장수	304 174
장흥	304 175
전주	304 176
정주	304 177
조양	304 178
주안	304 179
진주	304 180
진천	304 181
천안	304 182
청송	304 183
청주	304 184
청풍	304 185
춘천	304 186
충주	304 187
태평	304 188
파평	304 189
평산	304 190
평택(팽성)	304 191
풍산	304 192
풍천	304 193
한양	304 194
해남	304 195
해주	304 196
해진	304 197
홍천	304 198
회진	304 199
횡성	304 200
미상	304 000
기타	304 999
임(任)	305
곡성	305 111
과천	305 112
관산	305 113
광산	305 114
나주	305 115
대전	305 116
보령	305 117
부천	305 118
수원	305 119
순천	305 120
아선	305 121
안동	305 122
장흥(정안)	305 123
진주	305 124
청풍	305 125
춘천	305 126
충내	305 127
파평	305 128
풍산	305 129
풍천	305 130
함풍(함평)	305 131
해남	305 132
홍천	305 133
회덕	305 134
미상	305 000
기타	305 999
자(慈)	306
요양	306 111
중원	306 112
해주	306 113
미상	306 000
기타	306 999
장(張)	307
결성	307 111
경주	307 112
고성	307 113
광주	307 114
구례	307 115
나주	307 116
남양	307 117
남원	307 118
단양	307 119
담양	307 120
당진	307 121
대구	307 122
대전	307 123
덕수	307 124
동래	307 125
목천	307 126
밀양	307 127
배천(白川)	307 128
봉산	307 129
봉성	307 130
부안	307 131
부여	307 132
순창	307 133
순천	307 134
순흥	307 135
안동	307 136
안성	307 137
안양	307 138
연안	307 139
영동	307 140
영천	307 141
예산	307 142
옥구	307 143
옥산	307 144
옥천	307 145
울진	307 146
인덕	307 147
인동	307 148
장수	307 149
장흥	307 150
전주	307 151
절강	307 152
제주	307 153
지례	307 154
진안	307 155
진주	307 156
진천	307 157
창녕	307 158
천녕(여주)	307 159
청송	307 160
청주	307 161
춘천	307 162
충주(태원)	307 163
평택	307 164
풍덕(해풍)	307 165
한양	307 166
함평	307 167
해주	307 168
흥성(흥덕)	307 169
흥양	307 170
흥해	307 171
미상	307 000
기타	307 999
장(蔣)	308
아산	308 111
미상	308 000
기타	308 999
장(章)	309
거창	309 111
미상	309 000
기타	309 999
장(莊)	310
금천(과천)	310 111
장연	310 112
미상	310 000
기타	310 999
장곡(長谷)	311
없음	311 100
저(邸)	312
없음	312 100
전(全)	313
감천	313 111
강릉	313 112
강원	313 113
개성	313 114
거창	313 115
경산	313 116
경성	313 117
경주	313 118
계림	313 119
고령	313 120
고부	313 121
공주	313 122
광산	313 123
금산	313 124
기장	313 125
김녕	313 126
김해	313 127
나성	313 128
나주	313 129
남원	313 130
대구	313 131
대전	313 132
보성	313 133
부안	313 134
부여	313 135
상주	313 136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서울	313 137	과천	314 114	나주	316 112	밀양	317 149
선산	313 138	광명	314 115	압해	316 113	보령	317 150
성산	313 139	교동	314 116	영광	316 114	보성	317 151
성주	313 140	남양	314 117	창원	316 115	봉래	317 152
수원	313 141	남원	314 118	한산	316 116	봉화	317 153
순천	313 142	단양	314 119	미상	316 000	부안	317 154
안동	313 143	담양	314 120	기타	316 999	삼척	317 155
안성	313 144	대명	314 121	정(鄭)	317	상극	317 156
여주	313 145	밀양	314 122	강릉	317 111	서경	317 157
영월	313 146	배천(白川)	314 123	강진	317 112	서산	317 158
예천	313 147	순천	314 124	개성	317 113	선산	317 159
옥산	313 148	안주	314 125	거창	317 114	성산	317 160
옥천	313 149	연안	314 126	경기	317 115	송강	317 161
온양	313 150	영광	314 127	경남	317 116	수원	317 162
완산	313 151	영평	314 128	경주	317 117	순천	317 163
용궁	313 152	예산	314 129	고령	317 118	순흥	317 164
원주	313 153	옥구	314 130	고성	317 119	안동	317 165
의성	313 154	온양	314 131	곤양	317 120	야성	317 166
인왕	313 155	우봉	314 132	공산	317 121	양평	317 167
전의	313 156	울진	314 133	공주	317 122	연백	317 168
전주	313 157	원주	314 134	관상	317 123	연안	317 169
정선	313 158	의령	314 135	광산	317 124	연일	317 170
죽산	313 159	전주	314 136	광양	317 125	연흥	317 171
진안	313 160	정산	314 137	광주	317 126	연희	317 172
진주	313 161	진원(장성)	314 138	구례	317 127	영광	317 173
창원	313 162	진주	314 139	금성	317 128	영덕	317 174
천안	313 163	천안	314 140	김포	317 129	영성	317 175
청주	313 164	추성	314 141	김해	317 130	영월	317 176
청풍	313 165	충주	314 142	나주	317 131	영일	317 177
충주	313 166	태산(태인)	314 143	남양	317 132	영정	317 178
파평	313 167	토산	314 144	남원	317 133	영주	317 179
팔거	313 168	파평	314 145	남평	317 134	영천	317 180
평강	313 169	평택	314 146	남포	317 135	예산	317 181
평산	313 170	하음	314 147	남해	317 136	예천	317 182
평양	313 171	함양	314 148	낭야	317 137	오천	317 183
한양	313 172	해주	314 149	능성	317 138	옥구	317 184
함창	313 173	미상	314 000	단양	317 139	옥천	317 185
함평	313 174	기타	314 999	담양	317 140	온양	317 186
해주	313 175	전(錢)	315	대구	317 141	옹진	317 187
황간	313 176	문경	315 111	대전	317 142	원양	317 188
미상	313 000	부계	315 112	돌산	317 143	원주	317 189
기타	313 999	지례	315 113	동래	317 144	월성	317 190
전(田)	314	미상	315 000	동명	317 145	의령	317 191
강화	314 111	기타	315 999	동해	317 146	의안	317 192
개성	314 112	점(占)	316	문의	317 147	인동	317 193
경성	314 113	괴산	316 111	문화	317 148	장기	317 194

(정 ~ 종)

본관	부호
장성	317 195
장흥	317 196
전주	317 197
정산	317 198
정선	317 199
정주	317 200
제주	317 201
죽산	317 202
진양(진주)	317 203
진영	317 204
창녕	317 205
창원	317 206
천안	317 207
청산	317 208
청송	317 209
청주	317 210
초계	317 211
최계	317 212
최기	317 213
충주	317 214
파평	317 215
팔계	317 216
팔송	317 217
평산	317 218
평택	317 219
평해	317 220
풍기	317 221
하동	317 222
학성	317 223
한양	317 224
함양	317 225
함창	317 226
함평	317 227
합천	317 228
해남	317 229
해주	317 230
행주	317 231
현풍	317 232
미상	317 000
기타	317 999
정(丁)	318
곡성	318 111
나주	318 112
달성	318 113
무안	318 114
삼옥	318 115
압해	318 116
영광	318 117
영산	318 118
영성	318 119
의성	318 120
장성	318 121
진주	318 122
창녕	318 123
창원	318 124
파주	318 125
한일	318 126
해주	318 127
미상	318 000
기타	318 999
정(程)	319
강릉	319 111
경주	319 112
광주	319 113
낭천	319 114
동래	319 115
부리(금산)	319 116
사탄(춘천)	319 117
영풍(함평)	319 118
유등	319 119
적성(순창)	319 120
토산	319 121
하남	319 122
한산	319 123
미상	319 000
기타	319 999
제(諸)	320
고성	320 111
남양	320 112
보성	320 113
의성	320 114
칠원	320 115
미상	320 000
기타	320 999
제(齊)	321
없음	321 100
제갈(諸葛)	322
남양	322 111
미상	322 000
기타	322 999
조(趙)	323
강서	323 111
강진	323 112
경주	323 113
광주	323 114
김제	323 115
김해	323 116
나주	323 117
남양	323 118
남원	323 119
남해	323 120
단양	323 121
대전	323 122
대천	323 123
동래	323 124
문화	323 125
밀양	323 126
배천(白川)	323 127
분양	323 128
상주	323 129
순창	323 130
순천	323 131
양주	323 132
양평	323 133
연백	323 134
연일	323 135
영산	323 136
영춘	323 137
옥천	323 138
이천	323 139
임천	323 140
전주	323 141
주암	323 142
주천	323 143
직산	323 144
진보	323 145
진주	323 146
창원	323 147
청주	323 148
충주	323 149
태원	323 150
파릉	323 151
파평	323 152
평산	323 153
평양	323 154
풍산	323 155
풍양	323 156
풍연	323 157
하동	323 158
한산	323 159
한양	323 160
함안	323 161
함양	323 162
함평	323 163
해주	323 164
횡성	323 165
흥양	323 166
미상	323 000
기타	323 999
조(曺)	324
가흥(진도)	324 111
강릉	324 112
광주	324 113
남평	324 114
능성	324 115
수성(대구)	324 116
안동	324 117
영광(옥주)	324 118
영암	324 119
인천	324 120
장흥	324 121
진주	324 122
창녕	324 123
창산	324 124
창원	324 125
청도	324 126
청양	324 127
평창	324 128
함평	324 129
화순	324 130
미상	324 000
기타	324 999
종(鍾)	325
강화	325 111
두원	325 112
영암	325 113
정의	325 114
통진	325 115
풍덕	325 116
하음	325 117
미상	325 000
기타	325 999
종(宗)	326
이파(만경)	326 111

본관	부호
임진(장단)	326 112
토율	326 113
미상	326 000
기타	326 999
좌(左)	327
제주	327 111
청주	327 112
미상	327 000
기타	327 999
주(朱)	328
강릉	328 111
결성	328 112
경주	328 113
공주	328 114
광주	328 115
김해	328 116
나주	328 117
남원	328 118
능성	328 119
밀양	328 120
신안	328 121
신흥	328 122
안동	328 123
압해	328 124
연안	328 125
영주	328 126
웅천	328 127
전주	328 128
진주	328 129
창녕	328 130
청주	328 131
태천	328 132
함흥	328 133
해남	328 134
해주	328 135
미상	328 000
기타	328 999
주(周)	329
경주	329 111
능주	329 112
명주	329 113
삼계(영산)	329 114
상주	329 115
안의	329 116
옥천	329 117
장흥	329 118
정주	329 119
진주	329 120
천안	329 121
철원	329 122
초계	329 123
충주	329 124
풍기	329 125
함안	329 126
미상	329 000
기타	329 999
준(俊)	330
청주	330 111
미상	330 000
기타	330 999
지(池)	331
경주	331 111
광주	331 112
단양	331 113
전주	331 114
진주	331 115
청송	331 116
청주	331 117
충남	331 118
충북	331 119
충주	331 120
평산	331 121
평창	331 122
해주	331 123
미상	331 000
기타	331 999
지(智)	332
봉산	332 111
봉주	332 112
미상	332 000
기타	332 999
진(陳)	333
강릉	333 111
경주	333 112
광동	333 113
김해	333 114
나주	333 115
남해	333 116
덕창	333 117
밀양	333 118
복주	333 119
부여	333 120
삼척	333 121
신광	333 122
안동	333 123
양산	333 124
양주	333 125
여양	333 126
여주	333 127
여흥	333 128
연안	333 129
영양	333 130
온양	333 131
의령	333 132
임파	333 133
전주	333 134
죽산	333 135
진산	333 136
진주	333 137
청주	333 138
충주	333 139
평산	333 140
함양	333 141
해주	333 142
홍성	333 143
홍주	333 144
흥덕	333 145
미상	333 000
기타	333 999
진(秦)	334
강화	334 111
김해	334 112
남원	334 113
대원	334 114
삼척	334 115
연안	334 116
영춘	334 117
용인	334 118
제주	334 119
진주	334 120
태원	334 121
평강	334 122
풍기	334 123
해주	334 124
미상	334 000
기타	334 999
진(晉)	335
남원	335 111
진주	335 112
미상	335 000
기타	335 999
진(眞)	336
서산	336 111
미상	336 000
기타	336 999
차(車)	337
경주	337 111
고령	337 112
광산	337 113
나주	337 114
남해	337 115
대전	337 116
문화	337 117
밀양	337 118
송림	337 119
수원	337 120
안성	337 121
연안	337 122
영월	337 123
영일	337 124
용성	337 125
전주	337 126
정안	337 127
진주	337 128
천안	337 129
평산	337 130
평택	337 131
해주	337 132
미상	337 000
기타	337 999
창(昌)	338
강릉	338 111
거창	338 112
공주	338 113
아산	338 114
여산	338 115
장성	338 116
창녕	338 117
미상	338 000
기타	338 999
창(倉)	339
아산	339 111
여산	339 112
장성	339 113

(창 ~ 최)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미상	339 000	옥천	343 130	개성	348 119	성주	348 165
기타	339 999	온양	343 131	경기	348 120	수성	348 166
채(蔡)	340	이양	343 132	경북	348 121	수원	348 167
강릉	340 111	인천	343 133	경주	348 122	순천	348 168
경주	340 112	전주	343 134	계림	348 123	순흥	348 169
광주	340 113	진주	343 135	고부	348 124	쌍룡	348 170
당진	340 114	청주	343 136	고성	348 125	아산	348 171
음성	340 115	충주	343 137	고양	348 126	안동	348 172
인천	340 116	한양	343 138	곡강	348 127	양산	348 173
전주	340 117	해남	343 139	곡성	348 128	양주	348 174
평강	340 118	화산	343 140	공주	348 129	양천	348 175
평산	340 119	미상	343 000	광양	348 130	양평	348 176
평양	340 120	기타	343 999	광주	348 131	여주	348 177
평창	340 121	천(天)	344	광해	348 132	연안	348 178
해주	340 122	밀양	344 111	괴산	348 133	연풍	348 179
미상	340 000	여양	344 112	김제	348 134	영산	348 180
기타	340 999	연안	344 113	김해	348 135	영암	348 181
채(菜)	341	우봉	344 114	나주	348 136	영양	348 182
영양	341 111	충주	344 115	남양	348 137	영주	348 183
진주	341 112	미상	344 000	남원	348 138	영천	348 184
미상	341 000	기타	344 999	남평	348 139	영흥	348 185
기타	341 999	초(楚)	345	낭주	348 140	예산	348 186
채(采)	342	강릉	345 111	단양	348 141	완산	348 187
여산	342 111	성주	345 112	달성	348 142	용강	348 188
미상	342 000	청주	345 113	담양	348 143	용궁	348 189
기타	342 999	파릉	345 114	당진	348 144	용인	348 190
천(千)	343	미상	345 000	대전	348 145	용주	348 191
강릉	343 111	기타	345 999	동근	348 146	우봉	348 192
강화	343 112	초(肖)	346	동래	348 147	원주	348 193
개성	343 113	제주	346 111	동원	348 148	월성	348 194
경주	343 114	진주	346 112	동주(철원)	348 149	인천	348 195
광주	343 115	미상	346 000	명천	348 150	장수	348 196
김해	343 116	기타	346 999	문경	348 151	장안	348 197
나주	343 117	초(初)	347	밀양	348 152	전주	348 198
남양	343 118	운남	347 111	배천(白川)	348 153	정성	348 199
남원	343 119	미상	347 000	보령	348 154	정주	348 200
단양	343 120	기타	347 999	부안	348 155	제주	348 201
목천	343 121	최(崔)	348	삭녕	348 156	죽산	348 202
밀양	343 122	간성	348 111	삭주	348 157	직산	348 203
수원	343 123	강남	348 112	삼진	348 158	진산	348 204
안동	343 124	강동	348 113	상원	348 159	진주	348 205
양평	343 125	강릉	348 114	상주	348 160	창녕	348 206
언양	343 126	강원	348 115	상현	348 161	창원	348 207
영양	343 127	강윤	348 116	서울	348 162	천안	348 208
영천	343 128	강진	348 117	서화	348 163	청송	348 209
예양	343 129	강화	348 118	선산	348 164	청주	348 210

본관	부호
초계	348 211
충주	348 212
탐진	348 213
태인	348 214
통천	348 215
파주	348 216
평강	348 217
평양	348 218
평장	348 219
평창	348 220
풍천	348 221
하동	348 222
하양	348 223
하음	348 224
한남	348 225
함안	348 226
함양	348 227
함진	348 228
함평	348 229
합천	348 230
해남	348 231
해주	348 232
홍천	348 233
화성	348 234
화순	348 235
황주	348 236
흥해	348 237
미상	348 000
기타	348 999
추(秋)	349
강화	349 111
개성	349 112
경주	349 113
나주	349 114
달성	349 115
밀양	349 116
안동	349 117
양지	349 118
원주	349 119
전주	349 120
진주	349 121
추계	349 122
파주	349 123
한양	349 124
해남	349 125
해주	349 126

본관	부호
미상	349 000
기타	349 999
추(鄒)	350
없음	350 100
춘(椿)	351
남양	351 111
미상	351 000
기타	351 999
탁(卓)	352
가평	352 111
광산	352 112
광주	352 113
전주	352 114
해주	352 115
미상	352 000
기타	352 999
탄(彈)	353
진주	353 111
해주	353 112
미상	353 000
기타	353 999
태(太)	354
남원	354 111
밀양	354 112
상주	354 113
영순	354 114
영천	354 115
통천	354 116
합천	354 117
협계	354 118
미상	354 000
기타	354 999
판(判)	355
해주	355 111
미상	355 000
기타	355 999
팽(彭)	356
신평(홍주)	356 111
안악	356 112
영강(강령)	356 113
영천	356 114
용강	356 115
절강	356 116
미상	356 000
기타	356 999
편(片)	357

본관	부호
경주	357 111
김천	357 112
나주	357 113
대전	357 114
순천	357 115
양주	357 116
인천	357 117
전주	357 118
절강	357 119
통진	357 120
해주	357 121
미상	357 000
기타	357 999
편(扁)	358
희천	358 111
미상	358 000
기타	358 999
평(平)	359
가흥(진도)	359 111
인주	359 112
인천	359 113
충주	359 114
미상	359 000
기타	359 999
포(包)	360
순천	360 111
풍덕	360 112
미상	360 000
기타	360 999
표(表)	361
거창	361 111
경주	361 112
공주	361 113
수원	361 114
신창	361 115
양주	361 116
전주	361 117
죽산	361 118
진주	361 119
충주	361 120
미상	361 000
기타	361 999
풍(馮)	362
임구	362 111
미상	362 000
기타	362 999

본관	부호
피(皮)	363
경주	363 111
공주	363 112
광주	363 113
괴산	363 114
단양	363 115
당진	363 116
안산	363 117
충주	363 118
파주	363 119
홍천	363 120
미상	363 000
기타	363 999
필(弼)	364
대흥	364 111
전주	364 112
미상	364 000
기타	364 999
하(河)	365
강릉	365 111
강화	365 112
경주	365 113
단계	365 114
대전	365 115
밀양	365 116
안음	365 117
전주	365 118
진양	365 119
진주	365 120
창녕	365 121
청주	365 122
하동	365 123
미상	365 000
기타	365 999
하(夏)	366
달성	366 111
미상	366 000
기타	366 999
학(郝)	367
산동	367 111
충주	367 112
미상	367 000
기타	367 999
한(韓)	368
가주	368 111
강릉	368 112

(한 ~ 홍)

본관	부호
강화	368 113
경주	368 114
곡산	368 115
광주	368 116
금괴	368 117
금산	368 118
김해	368 119
나주	368 120
남양	368 121
단주	368 122
당진	368 123
동래	368 124
면천	368 125
밀양	368 126
부안	368 127
성주	368 128
수원	368 129
신천	368 130
안동	368 131
안변	368 132
양주	368 133
여주	368 134
연안	368 135
원주	368 136
전주	368 137
정주	368 138
제주	368 139
진주	368 140
창원	368 141
청주	368 142
청풍	368 143
충주	368 144
파주	368 145
평산	368 146
한산	368 147
한양	368 148
해주	368 149
홍산	368 150
미상	368 000
기타	368 999
한(漢)	369
남양	369 111
옥천	369 112
충주	369 113
미상	369 000
기타	369 999
함(咸)	370
강남	370 111
강릉	370 112
강원	370 113
강화	370 114
경주	370 115
담양	370 116
양근(양평)	370 117
양주	370 118
영월	370 119
창녕	370 120
평해	370 121
함평	370 122
미상	370 000
기타	370 999
해(海)	371
김해	371 111
영암	371 112
함양	371 113
미상	371 000
기타	371 999
허(許)	372
경주	372 111
광산	372 112
김제	372 113
김천	372 114
김해	372 115
남양	372 116
남원	372 117
대구	372 118
대전	372 119
밀양	372 120
서산	372 121
수원	372 122
시산	372 123
안동	372 124
양구	372 125
양주(양산)	372 126
양천	372 127
양평	372 128
영천	372 129
의성	372 130
전주	372 131
제주	372 132
진주	372 133
창녕	372 134
청주	372 135
태인	372 136
하양	372 137
한양	372 138
함창	372 139
해주	372 140
미상	372 000
기타	372 999
현(玄)	373
경주	373 111
고성	373 112
나주	373 113
남원	373 114
남평	373 115
밀양	373 116
보성	373 117
상주	373 118
성주	373 119
순천	373 120
신산	373 121
여산	373 122
연산	373 123
연안	373 124
연주	373 125
영주	373 126
온양	373 127
온평	373 128
은진	373 129
전주	373 130
제주	373 131
진주	373 132
창녕	373 133
창원	373 134
천녕	373 135
철령	373 136
청주	373 137
함안	373 138
함흥	373 139
해주	373 140
현풍	373 141
미상	373 000
기타	373 999
형(邢)	374
대전	374 111
장흥	374 112
진주(반성)	374 113
미상	374 000
기타	374 999
호(扈)	375
나주	375 111
단양	375 112
무장	375 113
밀양	375 114
배천(白川)	375 115
보안	375 116
삼산	375 117
석전	375 118
신창	375 119
신평	375 120
의령	375 121
전주	375 122
충주	375 123
해평	375 124
홍주	375 125
미상	375 000
기타	375 999
호(胡)	376
가평	376 111
길주	376 112
숭안	376 113
아산	376 114
악양	376 115
파릉	376 116
평산	376 117
미상	376 000
기타	376 999
호(鎬)	377
배천	377 111
미상	377 000
기타	377 999
홍(洪)	378
강릉	378 111
개령	378 112
경주	378 113
곡부	378 114
김해	378 115
나주	378 116
*남양(당홍계)	378 117
*남양(토홍계)	378 118
남영	378 119
남원	378 120
남평	378 121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본관	부호
남해	378 122	관성	381 114	항주	381 160		
단양	378 123	광주	381 115	해산	381 161		
달성	378 124	김해	381 116	해주	381 162		
담양	378 125	나주	381 117	황주	381 163		
대전	378 126	남양	381 118	황해	381 164		
밀양	378 127	남원	381 119	회덕	381 165		
부계(의흥)	378 128	달성	381 120	미상	381 000		
부림	378 129	덕산	381 121	기타	381 999		
수원	378 130	동래	381 122	황보(皇甫)	382		
순흥	378 131	무주	381 123	영천	382 111		
안동	378 132	밀양	381 124	황주	382 112		
예산	378 133	부안	381 125	미상	382 000		
의성	378 134	삼기	381 126	기타	382 999		
인동	378 135	상주	381 127	후(后)	383		
장수	378 136	성주	381 128	당인	383 111		
전주	378 137	수원	381 129	미상	383 000		
제주	378 138	순흥	381 130	기타	383 999		
진주	378 139	안동	381 131	후(候)	384		
창원	378 140	양주	381 132	충주	384 111		
청주	378 141	영천	381 133	미상	384 000		
충주	378 142	옥천	381 134	기타	384 999		
파평	378 143	우주	381 135	흥(興)	385		
풍산	378 144	의주	381 136	없음	385 100		
풍천	378 145	장성	381 137				
함안	378 146	장수	381 138				
홍산	378 147	장한	381 139				
홍주	378 148	장흥	381 140				
홍천	378 149	전주	381 141				
회인	378 150	제안	381 142				
미상	378 000	제주	381 143				
기타	378 999	창녕	381 144				
화(化)	379	창원	381 145				
나주	379 111	천안	381 146				
복룡	379 112	청주	381 147				
여황	379 113	청해	381 148				
진양	379 114	충주	381 149				
미상	379 000	칭현	381 150				
기타	379 999	평산	381 151				
환(桓)	380	평안	381 152				
평양	380 111	평양	381 153				
미상	380 000	평원	381 154				
기타	380 999	평창	381 155				
황(黃)	381	평택	381 156				
강릉	381 111	평해	381 157				
강화	381 112	평화	381 158				
경주	381 113	풍산	381 159				

II. 연 령 조 견 표

세는 나이	서기	띠	간지	세는 나이	서기	띠	간지	세는 나이	서기	띠	간지
1	2000	용	경진	41	1960	쥐	경자	81	1920	잔나비	경신
2	1999	토끼	기묘	42	1959	돼지	기해	82	1919	양	기미
3	1998	범	무인	43	1958	개	무술	83	1918	말	무오
4	1997	소	정축	44	1957	닭	정유	84	1917	뱀	정사
5	1996	쥐	병자	45	1956	잔나비	병신	85	1916	용	병진
6	1995	돼지	을해	46	1955	양	을미	86	1915	토끼	을묘
7	1994	개	갑술	47	1954	말	갑오	87	1914	범	갑인
8	1993	닭	계유	48	1953	뱀	계사	88	1913	소	계축
9	1992	잔나비	임신	49	1952	용	임진	89	1912	쥐	임자
10	1991	양	신미	50	1951	토끼	신묘	90	1911	돼지	신해
11	1990	말	경오	51	1950	범	경인	91	1910	개	경술
12	1989	뱀	기사	52	1949	소	기축	92	1909	닭	기유
13	1988	용	무진	53	1948	쥐	무자	93	1908	잔나비	무신
14	1987	토끼	정묘	54	1947	돼지	정해	94	1907	양	정미
15	1986	범	병인	55	1946	개	병술	95	1906	말	병오
16	1985	소	을축	56	1945	닭	을유	96	1905	뱀	을사
17	1984	쥐	갑자	57	1944	잔나비	갑신	97	1904	용	갑진
18	1983	돼지	계해	58	1943	양	계미	98	1903	토끼	계묘
19	1982	개	임술	59	1942	말	임오	99	1902	범	임인
20	1981	닭	신유	60	1941	뱀	신사	100	1901	소	신축
21	1980	잔나비	경신	61	1940	용	경진	101	1900	쥐	경자
22	1979	양	기미	62	1939	토끼	기묘	102	1899	돼지	기해
23	1978	말	무오	63	1938	범	무인	103	1898	개	무술
24	1977	뱀	정사	64	1937	소	정축	104	1897	닭	정유
25	1976	용	병진	65	1936	쥐	병자	105	1896	잔나비	병신
26	1975	토끼	을묘	66	1935	돼지	을해	106	1895	양	을미
27	1974	범	갑인	67	1934	개	갑술	107	1894	말	갑오
28	1973	소	계축	68	1933	닭	계유	108	1893	뱀	계사
29	1972	쥐	임자	69	1932	잔나비	임신	109	1892	용	임진
30	1971	돼지	신해	70	1931	양	신미	110	1891	토끼	신묘
31	1970	개	경술	71	1930	말	경오	111	1890	범	경인
32	1969	닭	기유	72	1929	뱀	기사	112	1889	소	기축
33	1968	잔나비	무신	73	1928	용	무진	113	1888	쥐	무자
34	1967	양	정미	74	1927	토끼	정묘	114	1887	돼지	정해
35	1966	말	병오	75	1926	범	병인	115	1886	개	병술
36	1965	뱀	을사	76	1925	소	을축	116	1885	닭	을유
37	1964	용	갑진	77	1924	쥐	갑자	117	1884	잔나비	갑신
38	1963	토끼	계묘	78	1923	돼지	계해	118	1883	양	계미
39	1962	범	임인	79	1922	개	임술	119	1882	말	임오
40	1961	소	신축	80	1921	닭	신유	120	1881	뱀	신사

Ⅲ. 행정구역 분류 부호

1. 시군구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36

2. 읍면동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38

① 서울특별시 38
② 부산광역시 41
③ 대구광역시 43
④ 인천광역시 44
⑤ 광주광역시 45
⑥ 대전광역시 46
⑦ 울산광역시 47
⑧ 경기도 48
⑨ 강원도 51
⑩ 충청북도 53
⑪ 충청남도 54
⑫ 전라북도 56
⑬ 전라남도 58
⑭ 경상북도 60
⑮ 경상남도 62
⑯ 제주도 64

일 러 두 기

1. 분류 체계

○ 대분류(시 · 도 2자리), 중분류(시 · 군 · 구 3자리), 소분류(읍 · 면 · 동 2자리)의 3단계로 분류

2. 시군구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가. **출생지,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통근 · 통학장소** 항목의 부호기입시 사용
나. **같은 시군구내일때는 부호를 기입해서는 안됨**
다. 북한의 경우에는 194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출생지의 경우 시도, 시군구까지 부호를 기입.
○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가 북한일 경우에는 「47 000」으로 기입.

3. 읍면동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 부호 기입시 사용

4. 1995년에 통합된 시 · 군

○ 강릉시 : 강릉시 + 명주군
○ 광양시 : 동광양시 + 광양군
○ 경주시 : 경주시 + 경주군(구 월성군)
○ 군산시 : 군산시 + 옥구군
○ 김천시 : 김천시 + 금릉군
○ 남양주시 : 미금시 + 남양주시
○ 문경시 : 점촌시 + 문경군
○ 삼척시 : 삼척시 + 삼척군
○ 순천시 : 순천시 + 승주군
○ 안동시 : 안동시 + 안동군
○ 영천시 : 영천시 + 영천군
○ 익산시 : 이리시 + 익산군
○ 제천시 : 제천시 + 제천군(구 제원군)
○ 충주시 : 충주시 + 중원군
○ 포항시 : 포항시 + 영일군
○ 공주시 : 공주시 + 공주군
○ 경산시 : 경산시 + 경산군
○ 구미시 : 구미시 + 선산군
○ 김제시 : 김제시 + 김제군
○ 나주시 : 나주시(구 금성시) + 나주군
○ 마산시 : 마산시 + 창원군 일부
○ 보령시 : 대천시 + 보령군
○ 서산시 : 서산시 + 서산군
○ 아산시 : 온양시 + 아산군
○ 영주시 : 영주시 + 영풍군(구 영주군)
○ 원주시 : 원주시 + 원주군(구 원성군)
○ 정읍시 : 정주시 + 정읍군
○ 진주시 : 진주시 + 진양군
○ 평택시 : 송탄시 + 평택시 + 평택군

1. 시군구별 행정구역 분류 부호

(남 한)

행정구역명	부호
서울	**11**
강남구	230
강동구	250
강북구	090
강서구	160
관악구	210
광진구	050
구로구	170
금천구	180
노원구	110
도봉구	100
동대문구	060
동작구	200
마포구	140
서대문구	130
서초구	220
성동구	040
성북구	080
송파구	240
양천구	150
영등포구	190
용산구	030
은평구	120
종로구	010
중구	020
중랑구	070
부산	**21**
강서구	120
금정구	110
기장군	310
남구	070
동구	030
동래구	060
부산진구	050
북구	080
사상구	150
사하구	100
서구	020
수영구	140
연제구	130
영도구	040
중구	010
해운대구	090
대구	**22**
남구	040
달서구	070
달성군	310

행정구역명	부호
동구	020
북구	050
서구	030
수성구	060
중구	010
인천	**23**
강화군	310
계양구	070
남구	030
남동구	050
동구	020
부평구	060
서구	080
연수구	040
옹진군	320
중구	010
광주	**24**
광산구	050
남구	030
동구	010
북구	040
서구	020
대전	**25**
대덕구	050
동구	010
서구	030
유성구	040
중구	020
울산	**26**
남구	020
동구	030
북구	040
울주군	310
중구	010
경기	**31**
가평군	370
고양시	100
덕양구	
일산구	
과천시	110
광명시	060
광주군	340
구리시	120
군포시	160
김포시	230
남양주시	130
동두천시	080

행정구역명	부호
부천시	050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성남시	020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010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시흥시	150
안산시	090
안성시	220
안양시	040
동안구	
만안구	
양주군	310
양평군	380
여주군	320
연천군	350
오산시	140
용인시	190
의왕시	170
의정부시	030
이천시	210
파주시	200
평택시	070
포천군	360
하남시	180
화성군	330
강원	**32**
강릉시	030
고성군	400
동해시	040
삼척시	070
속초시	060
양구군	380
양양군	410
영월군	330
원주시	020
인제군	390
정선군	350
철원군	360
춘천시	010
태백시	050

행정구역명	부호
평창군	340
홍천군	310
화천군	370
횡성군	320
충북	**33**
괴산군	360
단양군	380
보은군	320
영동군	340
옥천군	330
음성군	370
제천시	030
증평출장소	390
진천군	350
청원군	310
청주시	010
상당구	
흥덕구	
충주시	020
충남	**34**
계룡출장소	400
공주시	020
금산군	310
논산시	060
당진군	390
보령시	030
부여군	330
서산시	050
서천군	340
아산시	040
연기군	320
예산군	370
천안시	010
청양군	350
태안군	380
홍성군	360
전북	**35**
고창군	370
군산시	020
김제시	060
남원시	050
무주군	330
부안군	380
순창군	360
완주군	310
익산시	030
임실군	350

행정구역명	부호
장수군	340
전주시	010
덕진구	
완산구	
정읍시	040
진안군	320
전남	**36**
강진군	390
고흥군	350
곡성군	320
광양시	060
구례군	330
나주시	040
담양군	310
목포시	010
무안군	420
보성군	360
순천시	030
신안군	480
여수시	020
영광군	440
영암군	410
완도군	460
장성군	450
장흥군	380
진도군	470
함평군	430
해남군	400
화순군	370
경북	**37**
경산시	100
경주시	020
고령군	370
구미시	050
군위군	310
김천시	030
문경시	090
봉화군	410
상주시	080
성주군	380
안동시	040
영덕군	350
영양군	340
영주시	060
영천시	070
예천군	400
울릉군	430

행정구역명	부호
울진군	420
의성군	320
청도군	360
청송군	330
칠곡군	390
포항시	010
남구	
북구	
경남	**38**
거제시	090
거창군	390
고성군	340
김해시	070
남해군	350
마산시	020
합포구	
회원구	
밀양시	080
사천시	060
산청군	370
양산시	100
의령군	310
진주시	030
진해시	040
창녕군	330
창원시	010
통영시	050
하동군	360
함안군	320
함양군	380
합천군	400
제주	**39**
남제주군	320
북제주군	310
서귀포시	020
제주시	010

(북한, 외국)

행정구역명	부호
북 한 1 (출생지 기입용)	
강원	**46**
고성군	094
김화군	100
양구군	096
이천군	099
인제군	095
철원군	101
통천군	093
평강군	098
회양군	097
경기	**45**
개성시	089
개풍군	091
옹진군	092
장단군	090
평남	**41**
강동군	027
강서군	030
개천군	033
대동군	022
덕천군	034
맹산군	024
성천군	026
순천군	023
안주군	032
양덕군	025
영원군	035
용강군	029
중화군	028
진남포시	021
평양시	020
평원군	031
평북	**42**
강계군	053
구성군	046
박천군	042
벽동군	049
삭주군	047
선천군	040
신의주시	036
영변군	043
용천군	038
운산군	044
위원군	050

행정구역명	부호
의주군	037
자성군	054
정주군	041
창성군	048
철산군	039
초산군	051
태천군	045
회천군	052
후창군	055
함남	**43**
갑산군	073
고원군	062
단천군	068
문천군	063
북청군	066
삼수군	072
신흥군	069
안변군	064
영흥군	061
원산시	057
이원군	067
장진군	070
정평군	060
풍산군	071
함주군	059
함흥시	056
혜산군	074
흥남시	058
흥원군	065
함북	**44**
경성군	081
경원군	087
경흥군	088
길주군	079
나진시	076
명천군	080
무산군	083
부령군	082
성진시	077
온성군	086
종성군	085
청진시	075
학성군	078
회령군	084
황해도	**40**
곡산군	019

행정구역명	부호
금천군	006
벽성군	004
봉산군	016
사리원시	002
서흥군	017
송림시	003
송화군	010
수안군	018
신계군	008
신천군	013
안악군	012
연백군	005
은율군	011
장연군	009
제령군	014
평산군	007
해주시	001
황주군	015
북 한 2 (1(5)년전 거주지)	**47**
북한전역	000
외국	**48**
네팔	470
마카오	340
말레이지아	370
미얀마	380
바레인	500
방글라데시	430
베트남	420
사우디아라비아	530
스리랑카	490
싱가포르	400
이라크	460
이란	450
이스라엘	510
인도	440
인도네시아	360
일본	330
중국	310
캄보디아	350

행정구역명	부호
쿠웨이트	520
태국	410
터어키	540
파키스탄	480
필리핀	390
홍콩	320
기타아시아지역	550
구소련	640
덴마크	560
독일	600
러시아	630
스위스	610
스페인	580
영국	620
이태리	570
프랑스	590
기타유럽지역	650
멕시코	680
미국	660
브라질	690
아르헨티나	700
캐나다	670
기타아메리카	710
뉴질랜드	730
호주	720
기타대양주지역	740
아프리카전지역	750

2. 읍면동별 행정구역 분류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원구)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서울특별시	11	천호2동	11 250 62	봉천11동	11 210 62	개봉3동	11 170 65
강남구	11 230	천호3동	11 250 63	봉천1동	11 210 52	개봉본동	11 170 66
개포1동	11 230 68	천호4동	11 250 64	봉천2동	11 210 53	고척1동	11 170 61
개포2동	11 230 69	강북구	11 090	봉천3동	11 210 54	고척2동	11 170 62
개포3동	11 230 70	미아1동	11 090 51	봉천4동	11 210 55	구로1동	11 170 52
개포4동	11 230 71	미아2동	11 090 52	봉천5동	11 210 56	구로2동	11 170 53
논현1동	11 230 52	미아3동	11 090 53	봉천6동	11 210 57	구로3동	11 170 54
논현2동	11 230 53	미아4동	11 090 54	봉천7동	11 210 58	구로4동	11 170 55
대치1동	11 230 60	미아5동	11 090 55	봉천8동	11 210 59	구로5동	11 170 56
대치2동	11 230 61	미아6·7동	11 090 56	봉천9동	11 210 60	구로6동	11 170 57
대치3동	11 230 62	미아8동	11 090 58	봉천본동	11 210 51	구로본동	11 170 58
대치4동	11 230 63	미아9동	11 090 59	신림10동	11 210 74	수궁동	11 170 69
도곡1동	11 230 66	번1동	11 090 60	신림11동	11 210 75	신도림동	11 170 51
도곡2동	11 230 67	번2동	11 090 61	신림12동	11 210 76	오류1동	11 170 67
삼성1동	11 230 58	번3동	11 090 62	신림13동	11 210 77	오류2동	11 170 68
삼성2동	11 230 59	수유1동	11 090 63	신림1동	11 210 65	금천구	11 180
세곡동	11 230 76	수유2동	11 090 64	신림2동	11 210 66	가산동	11 180 51
수서동	11 230 75	수유3동	11 090 65	신림3동	11 210 67	독산1동	11 180 52
신사동	11 230 51	수유4동	11 090 66	신림4동	11 210 68	독산2동	11 180 53
압구정1동	11 230 54	수유5동	11 090 67	신림5동	11 210 69	독산3동	11 180 54
압구정2동	11 230 55	수유6동	11 090 68	신림6동	11 210 70	독산4동	11 180 55
역삼1동	11 230 64	강서구	11 160	신림7동	11 210 71	독산본동	11 180 56
역삼2동	11 230 65	가양1동	11 160 64	신림8동	11 210 72	시흥1동	11 180 57
일원1동	11 230 73	가양2동	11 160 65	신림9동	11 210 73	시흥2동	11 180 58
일원2동	11 230 74	가양3동	11 160 66	신림본동	11 210 64	시흥3동	11 180 59
일원본동	11 230 72	공항동	11 160 69	광진구	11 050	시흥4동	11 180 60
청담1동	11 230 56	등촌1동	11 160 52	광장동	11 050 63	시흥5동	11 180 61
청담2동	11 230 57	등촌2동	11 160 53	구의1동	11 050 60	시흥본동	11 180 62
강동구	11 250	등촌3동	11 160 54	구의2동	11 050 61	노원구	11 110
강일동	11 250 51	발산1동	11 160 67	구의3동	11 050 62	공릉1동	11 110 55
고덕1동	11 250 55	발산2동	11 160 68	군자동	11 050 54	공릉2동	11 110 56
고덕2동	11 250 56	방화1동	11 160 70	노유1동	11 050 51	공릉3동	11 110 57
길1동	11 250 68	방화2동	11 160 71	노유2동	11 050 52	상계10동	11 110 74
길2동	11 250 69	방화3동	11 160 72	능동	11 050 59	상계1동	11 110 65
둔촌1동	11 250 70	염창동	11 160 51	자양1동	11 050 64	상계2동	11 110 66
둔촌2동	11 250 71	화곡1동	11 160 56	자양2동	11 050 65	상계3동	11 110 67
명일1동	11 250 53	화곡2동	11 160 57	자양3동	11 050 66	상계4동	11 110 68
명일2동	11 250 54	화곡3동	11 160 58	중곡1동	11 050 55	상계5동	11 110 69
상일동	11 250 52	화곡4동	11 160 59	중곡2동	11 050 56	상계6동	11 110 70
성내1동	11 250 65	화곡5동	11 160 60	중곡3동	11 050 57	상계7동	11 110 71
성내2동	11 250 66	화곡6동	11 160 61	중곡4동	11 050 58	상계8동	11 110 72
성내3동	11 250 67	화곡7동	11 160 62	화양동	11 050 53	상계9동	11 110 73
암사1동	11 250 57	화곡8동	11 160 63	구로구	11 170	월계1동	11 110 51
암사2동	11 250 58	화곡본동	11 160 55	가리봉1동	11 170 59	월계2동	11 110 52
암사3동	11 250 59	관악구	11 210	가리봉2동	11 170 60	월계3동	11 110 53
암사4동	11 250 60	남현동	11 210 63	개봉1동	11 170 63	월계4동	11 110 54
천호1동	11 250 61	봉천10동	11 210 61	개봉2동	11 170 64	중계1동	11 110 6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중계2동	11 110 62	휘경1동	11 060 72	합정동	11 140 68	도선동	11 040 53
중계3동	11 110 63	휘경2동	11 060 73	**서대문구**	**11 130**	마장동	11 040 54
중계4동	11 110 64	**동작구**	**11 200**	남가좌1동	11 130 69	사근동	11 040 55
중계본동	11 110 60	노량진1동	11 200 51	남가좌2동	11 130 70	성수1가1동	11 040 65
하계1동	11 110 58	노량진2동	11 200 52	대신동	11 130 57	성수1가2동	11 040 66
하계2동	11 110 59	대방동	11 200 68	북가좌1동	11 130 71	성수2가1동	11 040 67
도봉구	**11 100**	동작동	11 200 62	북가좌2동	11 130 72	성수2가3동	11 040 68
도봉1동	11 100 64	본동	11 200 58	북아현1동	11 130 54	송정동	11 040 69
도봉2동	11 100 65	사당1동	11 200 63	북아현2동	11 130 55	옥수1동	11 040 63
방학1동	11 100 55	사당2동	11 200 64	북아현3동	11 130 56	옥수2동	11 040 64
방학2동	11 100 56	사당3동	11 200 65	연희1동	11 130 59	왕십리1동	11 040 51
방학3동	11 100 57	사당4동	11 200 66	연희2동	11 130 60	왕십리2동	11 040 52
방학4동	11 100 58	사당5동	11 200 67	연희3동	11 130 61	용답동	11 040 70
쌍문1동	11 100 51	상도1동	11 200 53	창천동	11 130 58	응봉동	11 040 58
쌍문2동	11 100 52	상도2동	11 200 54	천연동	11 130 52	행당1동	11 040 56
쌍문3동	11 100 53	상도3동	11 200 55	충정로동	11 130 51	행당2동	11 040 57
쌍문4동	11 100 54	상도4동	11 200 56	홍은1동	11 130 66	**성북구**	**11 080**
창1동	11 100 59	상도5동	11 200 57	홍은2동	11 130 67	길음1동	11 080 66
창2동	11 100 60	신대방1동	11 200 69	홍은3동	11 130 68	길음2동	11 080 67
창3동	11 100 61	신대방2동	11 200 70	홍제1동	11 130 62	길음3동	11 080 68
창4동	11 100 62	흑석1동	11 200 59	홍제2동	11 130 63	돈암1동	11 080 58
창5동	11 100 63	흑석2동	11 200 60	홍제3동	11 130 64	돈암2동	11 080 59
동대문구	**11 060**	흑석3동	11 200 61	홍제4동	11 130 65	동선1동	11 080 56
답십리1동	11 060 60	**마포구**	**11 140**	**서초구**	**11 220**	동선2동	11 080 57
답십리2동	11 060 61	공덕1동	11 140 54	내곡동	11 220 68	동소문동	11 080 53
답십리3동	11 060 62	공덕2동	11 140 55	반포1동	11 220 57	보문동	11 080 61
답십리4동	11 060 63	노고산동	11 140 62	반포2동	11 220 58	삼선1동	11 080 54
답십리5동	11 060 64	대흥동	11 140 60	반포3동	11 220 59	삼선2동	11 080 55
신설동	11 060 51	도화1동	11 140 57	반포4동	11 220 60	상월곡동	11 080 75
용두1동	11 060 52	도화2동	11 140 58	반포본동	11 220 56	석관1동	11 080 79
용두2동	11 060 53	동교동	11 140 67	방배1동	11 220 62	석관2동	11 080 80
이문1동	11 060 74	망원1동	11 140 69	방배2동	11 220 63	성북1동	11 080 51
이문2동	11 060 75	망원2동	11 140 70	방배3동	11 220 64	성북2동	11 080 52
이문3동	11 060 76	상수동	11 140 65	방배4동	11 220 65	안암동	11 080 60
장안1동	11 060 65	상암동	11 140 74	방배본동	11 220 61	월곡1동	11 080 71
장안2동	11 060 66	서교동	11 140 66	서초1동	11 220 51	월곡2동	11 080 72
장안3동	11 060 67	성산1동	11 140 72	서초2동	11 220 52	월곡3동	11 080 73
장안4동	11 060 68	성산2동	11 140 73	서초3동	11 220 53	월곡4동	11 080 74
전동1동	11 060 56	신공덕동	11 140 56	서초4동	11 220 54	장위1동	11 080 76
전동2동	11 060 57	신수동	11 140 63	양재1동	11 220 66	장위2동	11 080 77
전동3동	11 060 58	아현1동	11 140 51	양재2동	11 220 67	장위3동	11 080 78
전동4동	11 060 59	아현2동	11 140 52	잠원동	11 220 55	정능1동	11 080 62
제기1동	11 060 54	아현3동	11 140 53	**성동구**	**11 040**	정능2동	11 080 63
제기2동	11 060 55	연남동	11 140 71	금호1가동	11 040 59	정능3동	11 080 64
청량리1동	11 060 69	염리동	11 140 61	금호2가동	11 040 60	정능4동	11 080 65
청량리2동	11 060 70	용강동	11 140 59	금호3가동	11 040 61	종암1동	11 080 69
회기동	11 060 71	창전동	11 140 64	금호4가동	11 040 62	종암2동	11 080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랑구)

행정구역명	부호
송파구	**11 240**
가락1동	11 240 66
가락2동	11 240 67
가락본동	11 240 65
거여1동	11 240 53
거여2동	11 240 54
마천1동	11 240 55
마천2동	11 240 56
문정1동	11 240 68
문정2동	11 240 69
방이1동	11 240 57
방이2동	11 240 58
삼전동	11 240 64
석촌동	11 240 63
송파1동	11 240 61
송파2동	11 240 62
오금동	11 240 60
오륜동	11 240 59
잠실1동	11 240 72
잠실2동	11 240 73
잠실3동	11 240 74
잠실4동	11 240 75
잠실5동	11 240 76
잠실6동	11 240 77
잠실7동	11 240 78
잠실본동	11 240 71
장지동	11 240 70
풍납1동	11 240 51
풍납2동	11 240 52
양천구	**11 150**
목1동	11 150 51
목2동	11 150 52
목3동	11 150 53
목4동	11 150 54
목5동	11 150 55
목6동	11 150 56
신월1동	11 150 57
신월2동	11 150 58
신월3동	11 150 59
신월4동	11 150 60
신월5동	11 150 61
신월6동	11 150 62
신월7동	11 150 63
신정1동	11 150 64
신정2동	11 150 65
신정3동	11 150 66
신정4동	11 150 67
신정5동	11 150 68
신정6동	11 150 69
신정7동	11 150 70
영등포구	**11 190**
당산1동	11 190 55
당산2동	11 190 56
대림1동	11 190 70
대림2동	11 190 71
대림3동	11 190 72
도림1동	11 190 57
도림2동	11 190 58
문래1동	11 190 59
문래2동	11 190 60
신길1동	11 190 63
신길2동	11 190 64
신길3동	11 190 65
신길4동	11 190 66
신길5동	11 190 67
신길6동	11 190 68
신길7동	11 190 69
양평1동	11 190 61
양평2동	11 190 62
여의도동	11 190 54
영등포1동	11 190 51
영등포2동	11 190 52
영등포3동	11 190 53
용산구	**11 030**
남영동	11 030 53
보광동	11 030 70
서빙고동	11 030 69
용문동	11 030 59
용산2가동	11 030 52
원효로1동	11 030 56
원효로2동	11 030 57
이촌1동	11 030 63
이촌2동	11 030 64
이태원1동	11 030 65
이태원2동	11 030 66
청파1동	11 030 54
청파2동	11 030 55
한강로1동	11 030 60
한강로2동	11 030 61
한강로3동	11 030 62
한남1동	11 030 67
한남2동	11 030 68
효창동	11 030 58
후암동	11 030 51
은평구	**11 120**
갈현1동	11 120 55
갈현2동	11 120 56
구산동	11 120 57
녹번동	11 120 51
대조동	11 120 58
불광1동	11 120 52
불광2동	11 120 53
불광3동	11 120 54
수색동	11 120 68
신사1동	11 120 65
신사2동	11 120 66
역촌1동	11 120 63
역촌2동	11 120 64
응암1동	11 120 59
응암2동	11 120 60
응암3동	11 120 61
응암4동	11 120 62
증산동	11 120 67
진관내동	11 120 69
진관외동	11 120 70
종로구	**11 010**
가회동	11 010 60
교남동	11 010 58
명륜3가동	11 010 66
무악동	11 010 57
부암동	11 010 55
사직동	11 010 53
삼청동	11 010 54
숭인1동	11 010 70
숭인2동	11 010 71
이화동	11 010 64
종로1·2·3·4가동	11 010 61
종로5·6가동	11 010 63
창신1동	11 010 67
창신2동	11 010 68
창신3동	11 010 69
청운동	11 010 51
평창동	11 010 56
혜화동	11 010 65
효자동	11 010 52
중구	**11 020**
광희동	11 020 59
명동	11 020 55
소공동	11 020 52
신당1동	11 020 61
신당2동	11 020 62
신당3동	11 020 63
신당4동	11 020 64
신당5동	11 020 65
신당6동	11 020 66
을지로3·4·5가동	11 020 60
장충동	11 020 58
중림동	11 020 68
필동	11 020 57
황학동	11 020 67
회현동	11 020 54
중랑구	**11 070**
망우1동	11 070 66
망우2동	11 070 67
망우3동	11 070 68
면목1동	11 070 51
면목2동	11 070 52
면목3동	11 070 53
면목4동	11 070 54
면목5동	11 070 55
면목6동	11 070 56
면목7동	11 070 57
면목8동	11 070 58
묵1동	11 070 64
묵2동	11 070 65
상봉1동	11 070 59
상봉2동	11 070 60
신내1동	11 070 69
신내2동	11 070 70
중화1동	11 070 61
중화2동	11 070 62
중화3동	11 070 63

(부산광역시 강서구~ 연제구)

행정구역명	부호
부산광역시	21
강서구	21 120
가락동	21 120 55
강동동	21 120 53
녹산동	21 120 56
대저1동	21 120 51
대저2동	21 120 52
명지동	21 120 54
천가동	21 120 57
금정구	21 110
구서1동	21 110 69
구서2동	21 110 70
금사동	21 110 55
금성동	21 110 71
남산동	21 110 68
부곡1동	21 110 57
부곡2동	21 110 58
부곡3동	21 110 59
부곡4동	21 110 60
서1동	21 110 51
서2동	21 110 52
서3동	21 110 53
서4동	21 110 54
선두구동	21 110 64
장전1동	21 110 61
장전2동	21 110 62
장전3동	21 110 63
청룡노포동	21 110 67
기장군	21 310
기장읍	21 310 11
일광면	21 310 31
장안읍	21 310 12
정관면	21 310 32
철마면	21 310 33
남구	21 070
감만1동	21 070 62
감만2동	21 070 63
대연1동	21 070 51
대연2동	21 070 52
대연3동	21 070 53
대연4동	21 070 54
대연5동	21 070 55
대연6동	21 070 56
문현1동	21 070 66
문현2동	21 070 67
문현3동	21 070 68
문현4동	21 070 69
용당동	21 070 61
용호1동	21 070 57
용호2동	21 070 58
용호3동	21 070 59
용호4동	21 070 60
우암1동	21 070 64
우암2동	21 070 65
동구	21 030
범일1동	21 030 65
범일2동	21 030 66
범일4동	21 030 67
범일5동	21 030 68
범일6동	21 030 69
수정1동	21 030 56
수정2동	21 030 57
수정3동	21 030 58
수정4동	21 030 59
수정5동	21 030 60
좌천1동	21 030 61
좌천4동	21 030 64
초량1동	21 030 51
초량2동	21 030 52
초량3동	21 030 53
초량4동	21 030 54
초량6동	21 030 55
동래구	21 060
명륜1동	21 060 53
명륜2동	21 060 54
명장1동	21 060 63
명장2동	21 060 64
복산동	21 060 52
사직1동	21 060 58
사직2동	21 060 59
사직3동	21 060 60
수민동	21 060 51
안락1동	21 060 61
안락2동	21 060 62
온천1동	21 060 55
온천2동	21 060 56
온천3동	21 060 57
부산진구	21 050
가야1동	21 050 71
가야2동	21 050 72
가야3동	21 050 73
개금1동	21 050 74
개금2동	21 050 75
개금3동	21 050 76
당감1동	21 050 67
당감2동	21 050 68
당감3동	21 050 69
당감4동	21 050 70
범전동	21 050 53
범천1동	21 050 77
범천2동	21 050 78
범천4동	21 050 79
부암1동	21 050 64
부암3동	21 050 66
부전1동	21 050 51
부전2동	21 050 52
양정1동	21 050 56
양정2동	21 050 57
연지동	21 050 54
전포1동	21 050 60
전포2동	21 050 61
전포3동	21 050 62
초읍동	21 050 55
북구	21 080
구포1동	21 080 51
구포2동	21 080 52
구포3동	21 080 53
금곡동	21 080 54
덕천1동	21 080 56
덕천2동	21 080 57
덕천3동	21 080 58
만덕1동	21 080 59
만덕2동	21 080 60
만덕3동	21 080 61
화명동	21 080 55
사상구	21 150
감전1동	21 150 58
감전2동	21 150 59
괘법동	21 150 57
덕포1동	21 150 55
덕포2동	21 150 56
모라1동	21 150 52
모라2동	21 150 53
모라3동	21 150 54
삼락동	21 150 51
엄궁동	21 150 64
주례1동	21 150 60
주례2동	21 150 61
주례3동	21 150 62
학장동	21 150 63
사하구	21 100
감천1동	21 100 65
감천2동	21 100 66
괴정1동	21 100 51
괴정2동	21 100 52
괴정3동	21 100 53
괴정4동	21 100 54
구평동	21 100 64
다대1동	21 100 62
다대2동	21 100 63
당리동	21 100 55
신평1동	21 100 58
신평2동	21 100 59
장림1동	21 100 60
장림2동	21 100 61
하단1동	21 100 56
하단2동	21 100 57
서구	21 020
남부민1동	21 020 65
남부민2동	21 020 66
남부민3동	21 020 67
동대신1동	21 020 51
동대신2동	21 020 52
동대신3동	21 020 53
부민동	21 020 59
서대신1동	21 020 54
서대신2동	21 020 55
서대신3동	21 020 56
서대신4동	21 020 57
아미동	21 020 61
암남동	21 020 68
초장동	21 020 63
충무동	21 020 64
수영구	21 140
광안1동	21 140 56
광안2동	21 140 57
광안3동	21 140 58
광안4동	21 140 59
남천1동	21 140 51
남천2동	21 140 52
망미1동	21 140 54
망미2동	21 140 55
민락동	21 140 60
수영동	21 140 53
연제구	21 130
거제1동	21 130 51
거제2동	21 130 52
거제3동	21 130 53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운대구)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거제4동	21 130 54	좌동	21 090 55				
연산1동	21 130 55	중1동	21 090 53				
연산2동	21 130 56	중2동	21 090 54				
연산3동	21 130 57						
연산4동	21 130 58						
연산5동	21 130 59						
연산6동	21 130 60						
연산7동	21 130 61						
연산8동	21 130 62						
연산9동	21 130 63						
영도구	**21 040**						
남항동	21 040 53						
동삼1동	21 040 65						
동삼2동	21 040 66						
동삼3동	21 040 67						
봉래1동	21 040 59						
봉래3동	21 040 61						
봉래4동	21 040 62						
신선1동	21 040 56						
신선2동	21 040 57						
신선3동	21 040 58						
영선1동	21 040 54						
영선2동	21 040 55						
청학1동	21 040 63						
청학2동	21 040 64						
중구	**21 010**						
광복동	21 010 57						
남포동	21 010 58						
대청동	21 010 53						
동광동	21 010 52						
보수동	21 010 54						
부평동	21 010 56						
영주1동	21 010 59						
영주2동	21 010 60						
중앙동	21 010 51						
해운대구	**21 090**						
반송1동	21 090 61						
반송2동	21 090 62						
반송3동	21 090 63						
반여1동	21 090 57						
반여2동	21 090 58						
반여3동	21 090 59						
송정동	21 090 56						
우1동	21 090 51						
우2동	21 090 52						
재송1동	21 090 64						
재송2동	21 090 65						

(대구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대구광역시	**22**
남구	**22 040**
대명10동	22 040 65
대명11동	22 040 66
대명1동	22 040 56
대명2·8동	22 040 57
대명3·7동	22 040 58
대명4동	22 040 59
대명5동	22 040 60
대명6동	22 040 61
대명9동	22 040 64
봉덕1동	22 040 53
봉덕2동	22 040 54
봉덕3동	22 040 55
이천동	22 040 51
달서구	**22 070**
감삼동	22 070 57
도원동	22 070 68
두류1동	22 070 53
두류2동	22 070 54
두류3동	22 070 55
본동	22 070 71
본리동	22 070 56
상인1동	22 070 65
상인2동	22 070 66
상인3동	22 070 67
성당1동	22 070 51
성당2동	22 070 52
송현1동	22 070 69
송현2동	22 070 70
신당동	22 070 61
월성1동	22 070 62
월성2동	22 070 63
이곡동	22 070 60
장기동	22 070 59
죽전동	22 070 58
진천동	22 070 64
달성군	**22 310**
가창면	22 310 31
구지면	22 310 36
논공읍	22 310 12
다사읍	22 310 13
옥포면	22 310 33
유가면	22 310 35
하빈면	22 310 32
현풍면	22 310 34
화원읍	22 310 11
동구	**22 020**
공산동	22 020 71
도평동	22 020 62
동촌동	22 020 66
방촌동	22 020 68
불로· 봉무동	22 020 63
신암1동	22 020 51
신암2동	22 020 52
신암3동	22 020 53
신암4동	22 020 54
신암5동	22 020 55
신천1·2동	22 020 56
신천3동	22 020 58
신천4동	22 020 59
안심1동	22 020 73
안심2동	22 020 74
안심3·4동	22 020 75
지저동	22 020 65
해안동	22 020 69
효목1동	22 020 60
효목2동	22 020 61
북구	**22 050**
검단동	22 050 70
고성동	22 050 51
관음동	22 050 77
노원1· 2동	22 050 58
노원3동	22 050 59
대현1동	22 050 67
대현2동	22 050 68
무태조야동	22 050 71
복현1동	22 050 65
복현2동	22 050 66
산격1동	22 050 61
산격2동	22 050 62
산격3동	22 050 63
산격4동	22 050 64
칠곡1동	22 050 74
칠곡2동	22 050 75
칠곡3동	22 050 76
칠성동	22 050 52
침산1동	22 050 55
침산2동	22 050 56
침산3동	22 050 57
태전동	22 050 78
서구	**22 030**
내당1동	22 030 51
내당2· 3동	22 030 52
내당4동	22 030 53
비산1동	22 030 54
비산2· 3동	22 030 55
비산4동	22 030 56
비산5동	22 030 57
비산6동	22 030 58
비산7동	22 030 59
상중이동	22 030 66
원대동	22 030 68
평리1동	22 030 60
평리2동	22 030 61
평리3동	22 030 62
평리4동	22 030 63
평리5동	22 030 64
평리6동	22 030 65
수성구	**22 060**
고산1동	22 060 71
고산2동	22 060 72
고산3동	22 060 73
두산동	22 060 66
만촌1동	22 060 55
만촌2동	22 060 56
만촌3동	22 060 57
범물1동	22 060 69
범물2동	22 060 70
범어1동	22 060 51
범어2동	22 060 52
범어3동	22 060 53
범어4동	22 060 54
상동	22 060 64
수성1가동	22 060 58
수성2· 3가동	22 060 59
수성4가동	22 060 60
중동	22 060 63
지산1동	22 060 67
지산2동	22 060 68
파동	22 060 65
황금1동	22 060 61
황금2동	22 060 62
중구	**22 010**
남산1동	22 010 64
남산2동	22 010 65
남산3동	22 010 66
남산4동	22 010 67
대봉1동	22 010 68
대봉2동	22 010 69
대신동	22 010 62
동인1·2·4가동	22 010 51
동인3가동	22 010 52
삼덕동	22 010 54
성내1동	22 010 56
성내2동	22 010 59
성내3동	22 010 61

(인천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인천광역시	23
강화군	23 310
강화읍	23 310 11
교동면	23 310 40
길상면	23 310 33
내가면	23 310 36
불은면	23 310 32
삼산면	23 310 41
서도면	23 310 42
선원면	23 310 31
송해면	23 310 39
양사면	23 310 38
양도면	23 310 35
하점면	23 310 37
화도면	23 310 34
계양구	23 070
계산1동	23 070 53
계산2동	23 070 54
계산3동	23 070 55
계양1동	23 070 60
계양2동	23 070 61
작전1동	23 070 56
작전2동	23 070 57
작전서운동	23 070 58
효성1동	23 070 51
효성2동	23 070 52
남구	23 030
관교동	23 030 73
도화1동	23 030 62
도화2동	23 030 63
도화3동	23 030 64
문학동	23 030 74
숭의1동	23 030 51
숭의2동	23 030 52
숭의3동	23 030 53
숭의4동	23 030 54
용현1동	23 030 55
용현2동	23 030 56
용현3동	23 030 57
용현4동	23 030 58
용현5동	23 030 59
주안1동	23 030 65
주안2동	23 030 66
주안3동	23 030 67
주안4동	23 030 68
주안5동	23 030 69
주안6동	23 030 70
주안7동	23 030 71
주안8동	23 030 72
학익1동	23 030 60
학익2동	23 030 61
남동구	23 050
간석1동	23 050 55
간석2동	23 050 56
간석3동	23 050 57
간석4동	23 050 58
구월1동	23 050 51
구월2동	23 050 52
구월3동	23 050 53
구월4동	23 050 54
남촌도림동	23 050 67
논현고잔동	23 050 69
만수1동	23 050 59
만수2동	23 050 60
만수3동	23 050 61
만수4동	23 050 62
만수5동	23 050 63
만수6동	23 050 64
장수서창동	23 050 65
동구	23 020
금창동	23 020 64
만석동	23 020 51
송림1동	23 020 58
송림2동	23 020 59
송림3·5동	23 020 60
송림4동	23 020 61
송림6동	23 020 63
송현1·2동	23 020 55
송현3동	23 020 57
화수1·화평동	23 020 52
화수2동	23 020 53
부평구	23 060
갈산1동	23 060 63
갈산2동	23 060 64
부개1동	23 060 66
부개2동	23 060 67
부개3동	23 060 68
부평1동	23 060 51
부평2동	23 060 52
부평3동	23 060 53
부평4동	23 060 54
부평5동	23 060 55
부평6동	23 060 56
산곡1동	23 060 57
산곡2동	23 060 58
산곡3동	23 060 59
산곡4동	23 060 60
삼산동	23 060 65
십정1동	23 060 70
십정2동	23 060 71
일신동	23 060 69
청천1동	23 060 61
청천2동	23 060 62
서구	23 080
가정1동	23 080 54
가정2동	23 080 55
가정3동	23 080 56
가좌1동	23 080 62
가좌2동	23 080 63
가좌3동	23 080 64
가좌4동	23 080 65
검단동	23 080 66
검암경서동	23 080 51
석남1동	23 080 58
석남2동	23 080 59
석남3동	23 080 60
신현원창동	23 080 57
연희동	23 080 53
연수구	23 040
동춘1동	23 040 57
동춘2동	23 040 58
선학동	23 040 52
연수1동	23 040 53
연수2동	23 040 54
연수3동	23 040 55
옥련동	23 040 51
청량동	23 040 59
청학동	23 040 56
옹진군	23 320
대청면	23 320 34
덕적면	23 320 35
백령면	23 320 33
북도면	23 320 31
연평면	23 320 32
영흥면	23 320 37
자월면	23 320 36
중구	23 010
도원동	23 010 56
동인천동	23 010 58
북성동	23 010 60
송월동	23 010 61
신포동	23 010 53
신흥동	23 010 54
연안동	23 010 52
영종동	23 010 62
용유동	23 010 63
율목동	23 010 57

(광주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광주광역시	**24**
광산구	**24 050**
도산동	24 050 54
동곡동	24 050 65
본량동	24 050 68
비아동	24 050 61
삼도동	24 050 67
송정1동	24 050 51
송정2동	24 050 52
신가동	24 050 62
신흥동	24 050 55
어룡동	24 050 56
우산동	24 050 58
월곡1동	24 050 59
월곡2동	24 050 60
임곡동	24 050 64
평동	24 050 66
하남동	24 050 63
남구	**24 030**
대촌동	24 030 70
방림1동	24 030 52
방림2동	24 030 53
백운1동	24 030 62
백운2동	24 030 63
봉선1동	24 030 68
봉선2동	24 030 69
사직동	24 030 54
송암동	24 030 67
양림동	24 030 51
월산동	24 030 57
월산4동	24 030 60
월산5동	24 030 61
주월1동	24 030 64
주월2동	24 030 65
효덕동	24 030 66
동구	**240 10**
계림1동	24 010 56
계림2동	24 010 58
동명동	24 010 54
산수1동	24 010 59
산수2동	24 010 61
사남동	24 010 64
지산1동	24 010 62
지산2동	24 010 63
지원동	24 010 72
충장동	24 010 51
학1동	24 010 58
학2동	24 010 70
학운동	24 010 71
북구	**24 040**
건국동	24 040 77
동림동	24 040 61
두암1동	24 040 67
두암2동	24 040 68
두암3동	24 040 69
매곡동	24 040 71
문화동	24 040 64
문흥1동	24 040 65
문흥2동	24 040 66
서산동	24 040 70
석곡동	24 040 74
신안동	24 040 56
오치1동	24 040 72
오치2동	24 040 73
용봉동	24 040 57
우산동	24 040 62
운암1동	24 040 58
운암2동	24 040 59
운암3동	24 040 60
임동	24 040 55
중앙동	24 040 54
중흥1동	24 040 51
중흥2동	24 040 52
중흥3동	24 040 53
풍향동	24 040 63
서구	**24 020**
광천동	24 020 56
농성1동	24 020 54
농성2동	24 020 55
상무1동	24 020 58
상무2동	24 020 59
서창동	24 020 64
양3동	24 020 53
양동	24 020 51
유덕동	24 020 57
화정1동	24 020 60
화정2동	24 020 61
화정3동	24 020 62
화정4동	24 020 63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대전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대전광역시	25	만년동	25 030 69				
대덕구	25 050	변동	25 030 55				
대화동	25 050 52	복수동	25 030 51				
덕암동	25 050 60	삼천동	25 030 58				
목상동	25 050 61	용문동	25 030 56				
법1동	25 050 56	월평1동	25 030 66				
법2동	25 050 57	월평2동	25 030 67				
석봉동	25 050 59	월평3동	25 030 68				
신탄진동	25 050 58	정림동	25 030 54				
오정동	25 050 51	탄방동	25 030 57				
중리동	25 050 55	유성구	25 040				
회덕1동	25 050 53	구즉동	25 040 58				
회덕2동	25 050 54	신성동	25 040 55				
동구	25 010	온천1동	25 040 53				
가양1동	25 010 63	온천2동	25 040 54				
가양2동	25 010 64	전민동	25 040 57				
대동	25 010 59	진잠동	25 040 51				
대신동	25 010 58	중구	25 020				
대청동	25 010 73	대사동	25 020 58				
산내동	25 010 75	대흥동	25 020 55				
삼성1동	25 010 69	목동	25 020 53				
삼성2동	25 010 70	문창동	25 020 56				
성남1동	25 010 66	문화1동	25 020 67				
성남2동	25 010 67	문화2동	25 020 68				
소제동	25 010 62	부사동	25 020 59				
신흥동	25 010 54	산성동	25 020 69				
용운동	25 010 57	석교동	25 020 57				
용전동	25 010 65	오류동	25 020 62				
인동	25 010 52	용두동	25 020 60				
자양동	25 010 60	유천1동	25 020 65				
중앙동	25 010 51	유천2동	25 020 66				
판암1동	25 010 55	은행선화동	25 020 51				
판암2동	25 010 56	중촌동	25 020 54				
홍도동	25 010 68	태평1동	25 020 63				
효동	25 010 53	태평2동	25 020 64				
서구	25 030						
가수원동	25 030 70						
가장동	25 030 62						
갈마1동	25 030 64						
갈마2동	25 030 65						
괴정동	25 030 61						
기성동	25 030 71						
내동	25 030 63						
도마1동	25 030 52						
도마2동	25 030 53						
둔산1동	25 030 59						
둔산2동	25 030 60						

(울산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울산광역시	**26**	웅천면	26 310 34				
남구	**26 020**	청량면	26 310 33				
달동	26 020 56	**중구**	**26 010**				
무거1동	26 020 58	다운동	26 010 61				
무거2동	26 020 59	반구1동	26 010 52				
삼산동	26 020 57	반구2동	26 010 53				
선암동	26 020 64	병영1동	26 010 62				
신정1동	26 020 51	병영2동	26 010 63				
신정2동	26 020 52	복산1동	26 010 54				
신정3동	26 020 53	복산2동	26 010 55				
신정4동	26 020 54	북정동	26 010 56				
신정5동	26 020 55	성남동	26 010 58				
야음1·장생포동	26 020 61	약사동	26 010 64				
야음2동	26 020 62	옥교동	26 010 57				
야음3동	26 020 63	우정동	26 010 59				
옥동	26 020 60	태화동	26 010 60				
동구	**26 030**	학성동	26 010 51				
남목1동	26 030 58						
남목2동	26 030 59						
남목3동	26 030 60						
대송동	26 030 54						
방어동	26 030 51						
일산동	26 030 52						
전하1동	26 030 55						
전하2동	26 030 56						
전하3동	26 030 57						
화정동	26 030 53						
북구	**26 040**						
강동동	26 040 54						
농소1동	26 040 51						
농소2동	26 040 52						
농소3동	26 040 53						
송정동	26 040 57						
양정동	26 040 58						
염포동	26 040 59						
효문동	26 040 56						
울주군	**26 310**						
두동면	26 310 36						
두서면	26 310 37						
범서면	26 310 35						
삼남면	26 310 39						
삼동면	26 310 40						
상북면	26 310 38						
서생면	26 310 31						
언양읍	26 310 12						
온산읍	26 310 11						
온양면	26 310 32						

(경기도 가평군 ~ 성남시)

행정구역명	부호
경기도	**31**
가평군	**31 370**
가평읍	31 370 11
북면	31 370 35
상면	31 370 33
설악면	31 370 31
외서면	31 370 32
하면	31 370 34
고양시	**31 100**
덕양구	
고양동	31 101 59
관산동	31 101 60
능곡동	31 101 61
대덕동	31 101 68
성사1동	31 101 54
성사2동	31 101 55
신도동	31 101 57
원신동	31 101 52
주교동	31 101 51
창릉동	31 101 58
행신1동	31 101 65
행신2동	31 101 66
행주동	31 101 64
화전동	31 101 67
화정1동	31 101 62
화정2동	31 101 63
효자동	31 101 56
흥도동	31 101 53
일산구	
고봉동	31 102 65
대화동	31 102 62
마두1동	31 102 58
마두2동	31 102 59
백석동	31 102 57
송산동	31 102 67
송포동	31 102 66
식사동	31 102 51
일산1동	31 102 52
일산2동	31 102 53
일산3동	31 102 54
일산4동	31 102 55
장항1동	31 102 63
장항2동	31 102 64
주엽1동	31 102 60
주엽2동	31 102 61
풍산동	31 102 56
과천시	**31 110**
갈현동	31 110 52
과천동	31 110 55
문원동	31 110 56
별양동	31 110 53
부림동	31 110 54
중앙동	31 110 51
광명시	**31 060**
광명1동	31 060 51
광명2동	31 060 52
광명3동	31 060 53
광명4동	31 060 54
광명5동	31 060 55
광명6동	31 060 56
광명7동	31 060 57
소하1동	31 060 66
소하2동	31 060 67
철산1동	31 060 58
철산2동	31 060 59
철산3동	31 060 60
철산4동	31 060 61
하안1동	31 060 62
하안2동	31 060 63
하안3동	31 060 64
하안4동	31 060 65
학온동	31 060 68
광주군	**31 340**
광주읍	31 340 11
남종면	31 340 36
도척면	31 340 34
실촌면	31 340 33
오포면	31 340 31
중부면	31 340 37
초월면	31 340 32
퇴촌면	31 340 35
구리시	**31 120**
갈매동	31 120 51
교문1동	31 120 54
교문2동	31 120 55
동구동	31 120 52
수택1동	31 120 56
수택2동	31 120 57
수택3동	31 120 58
인창동	31 120 53
군포시	**31 160**
광정동	31 160 61
군포1동	31 160 51
군포2동	31 160 52
궁내동	31 160 60
금정동	31 160 56
대야동	31 160 62
산본1동	31 160 54
산본2동	31 160 55
수리동	31 160 59
오금동	31 160 58
재궁동	31 160 57
김포시	**31 230**
고촌면	31 230 31
김포1동	31 230 51
김포2동	31 230 52
김포3동	31 230 53
대곶면	31 230 34
양촌면	31 230 32
월곶면	31 230 35
통진면	31 230 33
하성면	31 230 36
남양주시	**31 130**
금곡동	31 130 53
도농동	31 130 56
별내면	31 130 31
수동면	31 130 34
양정동	31 130 54
오남면	31 130 36
와부읍	31 130 11
조안면	31 130 35
지금동	31 130 55
진건면	31 130 33
진접읍	31 130 12
퇴계원면	31 130 32
평내동	31 130 52
호평동	31 130 51
화도읍	31 130 13
동두천시	**31 080**
보산동	31 080 55
불현동	31 080 56
상패동	31 080 60
생연1동	31 080 51
생연2동	31 080 52
소요동	31 080 58
중앙동	31 080 53
부천시	**31 050**
소사구	
괴안동	31 052 57
범박동	31 052 56
소사본1동	31 052 53
소사본2동	31 052 54
소사본3동	31 052 55
송내1동	31 052 59
송내2동	31 052 60
심곡본1동	31 052 51
심곡본동	31 052 52
역곡3동	31 052 58
오정구	
고강1동	31 053 55
고강본동	31 053 54
성곡동	31 053 51
신흥동	31 053 57
오정동	31 053 56
원종1동	31 053 52
원종2동	31 053 53
원미구	
도당동	31 051 60
상1동	31 051 68
상동	31 051 67
소사동	31 051 56
심곡1동	31 051 51
심곡2동	31 051 52
심곡3동	31 051 53
약대동	31 051 61
역곡1동	31 051 57
역곡2동	31 051 58
원미1동	31 051 54
원미2동	31 051 55
중1동	31 051 63
중2동	31 051 64
중3동	31 051 65
중4동	31 051 66
중동	31 051 62
춘의동	31 051 59
성남시	**31 020**
분당구	
구미동	31 023 67
금곡동	31 023 66
내정동	31 023 54
매송동	31 023 61
분당동	31 023 51
불정동	31 023 56
서당동	31 023 59
서현동	31 023 58
수내동	31 023 52
신기동	31 023 57
야탑동	31 023 62

(경기도 성남시~ 여주군)

행정구역명	부호
운중동	31 023 68
이매동	31 023 60
정자동	31 023 55
중탑동	31 023 63
초림동	31 023 53
판교동	31 023 65
하탑동	31 023 64
수정구	
고등동	31 021 65
단대동	31 021 60
복정동	31 021 63
산성동	31 021 61
수진1동	31 021 58
수진2동	31 021 59
시흥동	31 021 66
신촌동	31 021 64
신흥1동	31 021 51
신흥2동	31 021 52
신흥3동	31 021 53
양지동	31 021 62
태평1동	31 021 54
태평2동	31 021 55
태평3동	31 021 56
태평4동	31 021 57
중원구	
금광1동	31 022 53
금광2동	31 022 54
상대원1동	31 022 57
상대원2동	31 022 58
상대원3동	31 022 59
성남동	31 022 51
여수동	31 022 60
은행1동	31 022 55
은행2동	31 022 56
중동	31 022 52
수원시	**31 010**
권선구	
고등동	31 012 59
곡선동	31 012 61
구운동	31 012 57
권선동	31 012 60
매교동	31 012 51
매산동	31 012 58
서둔동	31 012 56
세류1동	31 012 52
세류2동	31 012 53
세류3동	31 012 54
입북동	31 012 62
평동	31 012 55
장안구	
송죽동	31 011 59
신안동	31 011 51
연무동	31 011 61
영화동	31 011 58
율천동	31 011 55
정자1동	31 011 56
정자2동	31 011 57
조원동	31 011 60
파장동	31 011 54
화서1동	31 011 52
화서2동	31 011 53
팔달구	
남향동	31 013 52
매탄1동	31 013 57
매탄2동	31 013 58
매탄3동	31 013 59
매탄4동	31 013 60
영통1동	31 013 63
영통2동	31 013 64
우만1동	31 013 54
우만2동	31 013 55
원천동	31 013 61
이의동	31 013 62
인계동	31 013 56
지동	31 013 53
팔달동	31 013 51
시흥시	**31 150**
과림동	31 150 59
군자동	31 150 57
대야동	31 150 51
매화동	31 150 55
목감동	31 150 56
신천동	31 150 52
신현동	31 150 53
연성동	31 150 60
은행동	31 150 54
정왕 1동	31 150 58
정왕 2동	31 150 61
안산시	**31 090**
고잔1동	31 090 60
고잔2동	31 090 61
대부동	31 090 72
반월동	31 090 71
본오1동	31 090 54
본오2동	31 090 55
본오3동	31 090 56
부곡동	31 090 57
사1동	31 090 52
사2동	31 090 53
선부1동	31 090 68
선부2동	31 090 69
선부3동	31 090 70
성포동	31 090 62
안산동	31 090 73
와동	31 090 59
원곡1동	31 090 64
원곡2동	31 090 65
원곡본동	31 090 63
월피동	31 090 58
일동	31 090 51
초지동	31 090 66
안성시	**31 220**
고삼면	31 220 42
공도면	31 220 37
금광면	31 220 32
대덕면	31 220 35
미양면	31 220 34
보개면	31 220 31
삼죽면	31 220 41
서운면	31 220 33
안성1동	31 220 51
안성2동	31 220 52
안성3동	31 220 53
양성면	31 220 36
원곡면	31 220 38
일죽면	31 220 39
죽산면	31 220 40
안양시	**31 040**
동안구	
갈산동	31 042 67
관양1동	31 042 56
관양2동	31 042 57
귀인동	31 042 61
달안동	31 042 55
범계동	31 042 65
부림동	31 042 58
부흥동	31 042 54
비산1동	31 042 51
비산2동	31 042 52
비산3동	31 042 53
신촌동	31 042 66
평안동	31 042 60
평촌동	31 042 59
호계1동	31 042 62
호계2동	31 042 63
호계3동	31 042 64
만안구	
박달1동	31 041 63
박달2동	31 041 64
석수1동	31 041 60
석수2동	31 041 61
석수3동	31 041 62
안양1동	31 041 51
안양2동	31 041 52
안양3동	31 041 53
안양4동	31 041 54
안양5동	31 041 55
안양6동	31 041 56
안양7동	31 041 57
안양8동	31 041 58
안양9동	31 041 59
양주군	**31 310**
광적면	31 310 34
남면	31 310 33
백석면	31 310 35
은현면	31 310 32
장흥면	31 310 36
주내면	31 310 31
회천읍	31 310 11
양평군	**31 380**
강상면	31 380 31
강하면	31 380 32
개군면	31 380 41
단월면	31 380 36
서종면	31 380 35
양동면	31 380 38
양서면	31 380 33
양평읍	31 380 11
옥천면	31 380 34
용문면	31 380 40
지제면	31 380 39
청운면	31 380 37
여주군	**31 320**
가남면	31 320 32
강천면	31 320 39
금사면	31 320 35
능서면	31 320 33
대신면	31 320 37

(경기도 여주군 ~ 화성군)

행정구역명	부호
북내면	31 320 38
산북면	31 320 36
여주읍	31 320 11
점동면	31 320 31
흥천면	31 320 34
연천군	**31 350**
군남면	31 350 31
미산면	31 350 34
백학면	31 350 33
신서면	31 350 36
연천읍	31 350 11
왕징면	31 350 35
장남면	31 350 38
전곡읍	31 350 12
중면	31 350 37
청산면	31 350 32
오산시	**31 140**
남촌동	31 140 53
대원동	31 140 52
세마동	31 140 55
신장동	31 140 54
중앙동	31 140 51
초평동	31 140 56
용인시	**31 190**
구성면	31 190 33
기흥읍	31 190 11
남사면	31 190 34
동부동	31 190 54
모현면	31 190 32
백암면	31 190 37
수지읍	31 190 12
양지면	31 190 38
역삼동	31 190 52
원삼면	31 190 36
유림동	31 190 53
이동면	31 190 35
중앙동	31 190 51
포곡면	31 190 31
의왕시	**31 170**
고천동	31 170 51
내손1동	31 170 54
내손2동	31 170 55
부곡동	31 170 52
오전동	31 170 53
청계동	31 170 56
의정부시	**31 030**
가능1동	31 030 61
가능2동	31 030 62
가능3동	31 030 63
녹양동	31 030 64
송산동	31 030 59
신곡1동	31 030 57
신곡2동	31 030 58
의정부1동	31 030 51
의정부2동	31 030 52
의정부3동	31 030 53
자금동	31 030 60
장암동	31 030 56
호원동	31 030 55
이천시	**31 210**
관고동	31 210 53
대월면	31 210 35
마장면	31 210 34
모가면	31 210 36
백사면	31 210 32
부발읍	31 210 12
설성면	31 210 37
신둔면	31 210 31
율면	31 210 38
장호원읍	31 210 11
중리동	31 210 52
창전동	31 210 51
호법면	31 210 33
파주시	**31 200**
광탄면	31 200 35
교하면	31 200 33
군내면	31 200 38
금촌1동	31 200 51
금촌2동	31 200 52
문산읍	31 200 11
법원읍	31 200 13
월롱면	31 200 31
적성면	31 200 37
조리면	31 200 34
탄현면	31 200 32
파주읍	31 200 12
파평면	31 200 36
평택시	**31 070**
고덕면	31 070 33
비전1동	31 070 62
비전2동	31 070 63
서정동	31 070 52
서탄면	31 070 32
세교동	31 070 64
송북동	31 070 56
송탄동	31 070 53
신장1동	31 070 57
신장2동	31 070 58
신평동	31 070 59
안중면	31 070 38
오성면	31 070 34
원평동	31 070 60
중앙동	31 070 51
지산동	31 070 55
진위면	31 070 31
청북면	31 070 35
통복동	31 070 61
팽성읍	31 070 11
포승면	31 070 36
현덕면	31 070 37
포천군	**31 360**
가산면	31 360 33
관인면	31 360 40
군내면	31 360 31
내촌면	31 360 32
소흘읍	31 360 12
신북면	31 360 34
영북면	31 360 39
영중면	31 360 36
이동면	31 360 38
일동면	31 360 37
창수면	31 360 35
포천읍	31 360 11
화현면	31 360 41
하남시	**31 180**
감북동	31 180 58
덕풍1동	31 180 54
덕풍2동	31 180 55
덕풍3동	31 180 56
신장1동	31 180 52
신장2동	31 180 53
천현동	31 180 51
초이동	31 180 60
춘궁동	31 180 59
풍산동	31 180 57
화성군	**31 330**
남양면	31 330 34
동탄면	31 330 44
마도면	31 330 35
매송면	31 330 31
봉담읍	31 330 12
비봉면	31 330 33
서신면	31 330 37
송산면	31 330 36
양감면	31 330 42
우정면	31 330 40
장안면	31 330 39
정남면	31 330 43
태안읍	31 330 11
팔탄면	31 330 38
향남면	31 330 41

(강원도 강릉시 ~ 홍천군)

행정구역명	부호
강원도	**32**
강릉시	**32 030**
강남동	32 030 62
강동면	32 030 34
경포동	32 030 67
교1동	32 030 55
교2동	32 030 56
구정면	32 030 33
내곡동	32 030 61
사천면	32 030 36
성덕동	32 030 65
성산면	32 030 31
송정동	32 030 60
연곡면	32 030 37
옥계면	32 030 35
옥천동	32 030 54
왕산면	32 030 32
주문진읍	32 030 11
중앙동	32 030 52
초당동	32 030 59
포남1동	32 030 57
포남2동	32 030 58
홍제동	32 030 51
고성군	**32 400**
간성읍	32 400 11
거진읍	32 400 12
죽왕면	32 400 32
토성면	32 400 33
현내면	32 400 31
동해시	**32 040**
동호동	32 040 55
망상동	32 040 63
묵호동	32 040 59
발한동	32 040 57
부곡동	32 040 54
북삼동	32 040 53
북평동	32 040 60
삼화동	32 040 65
송정동	32 040 52
천곡동	32 040 51
삼척시	**32 070**
가곡면	32 070 35
교동	32 070 53
근덕면	32 070 31
남양동	32 070 51
노곡면	32 070 33
도계읍	32 070 11
미로면	32 070 34
성내동	32 070 52
신기면	32 070 36
원덕읍	32 070 12
정라동	32 070 54
하장면	32 070 32
속초시	**32 060**
교동	32 060 56
금호동	32 060 54
노학동	32 060 57
대포동	32 060 60
동명동	32 060 52
영랑동	32 060 51
조양동	32 060 58
청호동	32 060 59
양구군	**32 380**
남면	32 380 31
동면	32 380 32
방산면	32 380 33
양구읍	32 380 11
해안면	32 380 34
양양군	**32 410**
강현면	32 410 35
서면	32 410 31
손양면	32 410 32
양양읍	32 410 11
현남면	32 410 34
현북면	32 410 33
영월군	**32 330**
남면	32 330 34
북면	32 330 33
상동읍	32 330 12
서면	32 330 35
수주면	32 330 37
영월읍	32 330 11
주천면	32 330 36
중동면	32 330 31
하동면	32 330 32
원주시	**32 020**
개운동	32 020 53
귀래면	32 020 35
단계동	32 020 60
단구동	32 020 56
명륜1동	32 020 54
명륜2동	32 020 55
무실동	32 020 67
문막읍	32 020 11
반곡관설동	32 020 68
봉산동	32 020 64
부론면	32 020 34
소초면	32 020 31
신림면	32 020 38
우산동	32 020 61
원인동	32 020 52
일산동	32 020 57
중앙동	32 020 51
지정면	32 020 33
태장1동	32 020 62
태장2동	32 020 63
판부면	32 020 37
학성동	32 020 58
행구동	32 020 66
호저면	32 020 32
흥업면	32 020 36
인제군	**32 390**
기린면	32 390 33
남면	32 390 31
북면	32 390 32
상남면	32 390 35
서화면	32 390 34
인제읍	32 390 11
정선군	**32 350**
고한읍	32 350 12
남면	32 350 32
동면	32 350 31
북면	32 350 33
북평면	32 350 34
사북읍	32 350 13
신동읍	32 350 14
임계면	32 350 35
정선읍	32 350 11
철원군	**32 360**
갈말읍	32 360 13
근남면	32 360 32
근북면	32 360 33
김화읍	32 360 12
동송읍	32 360 14
서면	32 360 31
철원읍	32 360 11
춘천시	**32 010**
강남동	32 010 68
교동	32 010 52
근화동	32 010 57
남면	32 010 35
남산면	32 010 36
동내면	32 010 34
동면	32 010 31
동산면	32 010 32
북산면	32 010 39
사북면	32 010 38
서면	32 010 37
석사동	32 010 66
소양동	32 010 58
신동면	32 010 33
신북읍	32 010 11
신사우동	32 010 71
약사명동	32 010 54
조운동	32 010 53
퇴계동	32 010 67
효자1동	32 010 63
효자2동	32 010 64
효자3동	32 010 65
후평1동	32 010 60
후평2동	32 010 61
후평3동	32 010 62
태백시	**32 050**
구문소동	32 050 55
문곡소도동	32 050 62
삼수동	32 050 53
상장동	32 050 54
장성동	32 050 56
철암동	32 050 58
황연동	32 050 52
황지동	32 050 51
평창군	**32 340**
대화면	32 340 33
도암면	32 340 37
미탄면	32 340 31
방림면	32 340 32
봉평면	32 340 34
용평면	32 340 35
진부면	32 340 36
평창읍	32 340 11
홍천군	**32 310**
남면	32 310 36
내면	32 310 39
내촌면	32 310 33
동면	32 310 35
두촌면	32 310 32
북방면	32 310 38
서면	32 310 37

(강원도 홍천군 ~ 횡성군)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서석면	32 310 34						
홍천읍	32 310 11						
화촌면	32 310 31						
화천군	**32 370**						
간동면	32 370 31						
사내면	32 370 34						
상서면	32 370 33						
하남면	32 370 32						
화천읍	32 370 11						
횡성군	**32 320**						
갑천면	32 320 34						
강림면	32 320 38						
공근면	32 320 36						
둔내면	32 320 33						
서원면	32 320 37						
안흥면	32 320 32						
우천면	32 320 31						
청일면	32 320 35						
횡성읍	32 320 11						

(충청북도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충청북도	**33**
괴산군	**33 360**
감물면	33 360 31
괴산읍	33 360 11
문광면	33 360 35
불정면	33 360 40
사리면	33 360 38
소수면	33 360 39
연풍면	33 360 33
장연면	33 360 32
청안면	33 360 37
청천면	33 360 36
칠성면	33 360 34
단양군	**33 380**
가곡면	33 380 33
단성면	33 380 31
단양읍	33 380 11
대강면	33 380 32
매포읍	33 380 12
어상천면	33 380 35
영춘면	33 380 34
적성면	33 380 36
보은군	**33 320**
내북면	33 320 39
내속리면	33 320 31
마로면	33 320 33
보은읍	33 320 11
산외면	33 320 40
삼승면	33 320 35
수한면	33 320 36
외속리면	33 320 32
탄부면	33 320 34
회남면	33 320 37
회북면	33 320 38
영동군	**33 340**
매곡면	33 340 34
상촌면	33 340 35
심천면	33 340 40
양강면	33 340 36
양산면	33 340 39
영동읍	33 340 11
용산면	33 340 31
용화면	33 340 37
추풍령면	33 340 33
학산면	33 340 38
황간면	33 340 32
옥천군	**33 330**
군북면	33 330 38
군서면	33 330 37
동이면	33 330 31
안남면	33 330 32
안내면	33 330 33
옥천읍	33 330 11
이원면	33 330 36
청산면	33 330 35
청성면	33 330 34
음성군	**33 370**
감곡면	33 370 37
금왕읍	33 370 12
대소면	33 370 34
맹동면	33 370 33
삼성면	33 370 35
생극면	33 370 36
소이면	33 370 31
원남면	33 370 32
음성읍	33 370 11
제천시	**33 030**
교동	33 030 51
금성면	33 030 31
덕산면	33 030 34
동현동	33 030 57
명서동	33 030 54
백운면	33 030 36
봉양읍	33 030 11
송학면	33 030 37
수산면	33 030 33
영천동	33 030 62
용두동	33 030 56
의림동	33 030 55
중앙동	33 030 52
청전동	33 030 59
청풍면	33 030 32
한수면	33 030 35
화산동	33 030 60
증평출장소	**33 390**
도안지소	33 390 13
장평지소	33 390 12
증천지소	33 390 11
진천군	**33 350**
광혜원면	33 350 36
덕산면	33 350 31
문백면	33 350 33
백곡면	33 350 34
이월면	33 350 35
진천읍	33 350 11
초평면	33 350 32
청원군	**33 310**
가덕면	33 310 33
강내면	33 310 39
강외면	33 310 40
남이면	33 310 35
남일면	33 310 34
낭성면	33 310 31
내수읍	33 310 11
문의면	33 310 36
미원면	33 310 32
부용면	33 310 38
북이면	33 310 43
오창면	33 310 42
옥산면	33 310 41
현도면	33 310 37
청주시	**33 010**
상당구	
금천동	33 011 64
내덕1동	33 011 59
내덕2동	33 011 60
성안동	33 011 52
영운동	33 011 63
오근장동	33 011 67
용담·명암·산성동	33 011 65
용암·용정·방서동	33 011 66
우암동	33 011 58
율량·사천동	33 011 61
중앙동	33 011 51
탑·대성동	33 011 62
흥덕구	
가경동	33 012 62
강서1동	33 012 65
강서2동	33 012 66
모충동	33 012 54
복대1동	33 012 60
복대2동	33 012 61
봉명1동	33 012 63
봉명2·송정동	33 012 64
사직1동	33 012 51
사직2동	33 012 52
사창동	33 012 53
산·미·분·장동	33 012 56
성화·개신·죽림동	33 012 59
수곡1동	33 012 57
수곡2동	33 012 58
운천·신봉동	33 012 55
충주시	**33 020**
가금면	33 020 37
교현·안림동	33 020 53
교현2동	33 020 54
금가면	33 020 38
노은면	33 020 35
달천동	33 020 60
동량면	33 020 39
목행동	33 020 64
문화동	33 020 57
봉방동	33 020 61
산척면	33 020 40
살미면	33 020 31
상모면	33 020 32
성내·충인동	33 020 51
소태면	33 020 42
신니면	33 020 34
앙성면	33 020 36
엄정면	33 020 41
연수동	33 020 63
용산동	33 020 55
이류면	33 020 33
주덕읍	33 020 11
지현동	33 020 56
칠금동	33 020 62
호암동	33 020 58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 천안시)

행정구역명	부호
충청남도	**34**
계룡출장소	**34 400**
남선지소	34 400 12
두마지소	34 400 11
공주시	**34 020**
계룡면	34 020 33
금학동	34 020 55
반포면	34 020 34
사곡면	34 020 39
산성동	34 020 53
신관동	34 020 57
신풍면	34 020 40
옥룡동	34 020 56
우성면	34 020 38
웅진동	34 020 54
유구읍	34 020 11
의당면	34 020 36
이인면	34 020 31
장기면	34 020 35
정안면	34 020 37
중학동	34 020 51
탄천면	34 020 32
금산군	**34 310**
군북면	34 310 34
금산읍	34 310 11
금성면	34 310 31
남이면	34 310 36
남일면	34 310 35
복수면	34 310 38
부리면	34 310 33
제원면	34 310 32
진산면	34 310 37
추부면	34 310 39
논산시	**34 060**
가야곡면	34 060 39
강경읍	34 060 11
광석면	34 060 32
노성면	34 060 33
벌곡면	34 060 37
부적면	34 060 35
부창동	34 060 52
상월면	34 060 34
성동면	34 060 31
양촌면	34 060 38
연무읍	34 060 12
연산면	34 060 36
은진면	34 060 40
채운면	34 060 41
취암동	34 060 51
당진군	**34 390**
고대면	34 390 31
당진읍	34 390 11
대호지면	34 390 33
면천면	34 390 35
석문면	34 390 32
송산면	34 390 40
송악면	34 390 39
순성면	34 390 36
신평면	34 390 38
우강면	34 390 37
정미면	34 390 34
합덕읍	34 390 12
보령시	**34 030**
남포면	34 030 37
대천 1동	34 030 51
대천 2동	34 030 52
대천 3동	34 030 53
대천 4동	34 030 54
대천 5동	34 030 56
미산면	34 030 39
성주면	34 030 40
오천면	34 030 33
웅천읍	34 030 11
주교면	34 030 32
주산면	34 030 38
주포면	34 030 31
천북면	34 030 34
청라면	34 030 36
청소면	34 030 35
부여군	**34 330**
구룡면	34 330 35
규암면	34 330 31
남면	34 330 38
내산면	34 330 34
부여읍	34 330 11
석성면	34 330 44
세도면	34 330 43
양화면	34 330 40
옥산면	34 330 37
외산면	34 330 33
은산면	34 330 32
임천면	34 330 41
장암면	34 330 42
초촌면	34 330 45
충화면	34 330 39
홍산면	34 330 36
서산시	**34 050**
고북면	34 050 39
대산읍	34 050 11
동문동	34 050 52
부석면	34 050 32
부춘동	34 050 51
석남동	34 050 55
성연면	34 050 35
수석동	34 050 54
운산면	34 050 37
음암면	34 050 36
인지면	34 050 31
지곡면	34 050 34
팔봉면	34 050 33
해미면	34 050 38
활성동	34 050 53
서천군	**34 340**
기산면	34 340 33
마산면	34 340 35
마서면	34 340 31
문산면	34 340 37
비인면	34 340 40
서면	34 340 41
서천읍	34 340 12
시초면	34 340 36
장항읍	34 340 11
종천면	34 340 39
판교면	34 340 38
한산면	34 340 34
화양면	34 340 32
아산시	**34 040**
권곡동	34 040 53
도고면	34 040 39
둔포면	34 040 35
배방면	34 040 32
선장면	34 040 38
송악면	34 040 31
신정동	34 040 54
신창면	34 040 40
염치읍	34 040 11
영인면	34 040 36
온양온천1동	34 040 51
온양온천2동	34 040 52
온주동	34 040 56
용화동	34 040 55
음봉면	34 040 34
인주면	34 040 37
탕정면	34 040 33
연기군	**34 320**
금남면	34 320 34
남면	34 320 33
동면	34 320 31
서면	34 320 32
소정면	34 320 37
전동면	34 320 36
전의면	34 320 35
조치원읍	34 320 11
예산군	**34 370**
고덕면	34 370 38
광시면	34 370 33
대술면	34 370 31
대흥면	34 370 34
덕산면	34 370 36
봉산면	34 370 37
삽교읍	34 370 12
신암면	34 370 39
신양면	34 370 32
예산읍	34 370 11
오가면	34 370 40
응봉면	34 370 35
천안시	**34 010**
광덕면	34 010 34
동면	34 010 40
목천면	34 010 35
문성동	34 010 52
병천면	34 010 39
봉명동	34 010 58
부성동	34 010 64
북면	34 010 36
성거읍	34 010 12
성남면	34 010 37
성정1동	34 010 56
성정2동	34 010 57
성환읍	34 010 11
수신면	34 010 38
신안동	34 010 63
신용동	34 010 61
쌍용1동	34 010 59
쌍용2동	34 010 60
원성1동	34 010 54
원성2동	34 010 55
입장면	34 010 32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중앙동	34 010 51						
직산면	34 010 31						
청룡동	34 010 62						
풍세면	34 010 33						
청양군	**34 350**						
남양면	34 350 37						
대치면	34 350 32						
목면	34 350 34						
비봉면	34 350 39						
운곡면	34 350 31						
장평면	34 350 36						
정산면	34 350 33						
청남면	34 350 35						
청양읍	34 350 11						
화성면	34 350 38						
태안군	**34 380**						
고남면	34 380 31						
근흥면	34 380 33						
남면	34 380 32						
소원면	34 380 34						
안면읍	34 380 12						
원북면	34 380 35						
이원면	34 380 36						
태안읍	34 380 11						
홍성군	**34 360**						
갈산면	34 360 38						
결성면	34 360 36						
광천읍	34 360 12						
구항면	34 360 39						
금마면	34 360 32						
서부면	34 360 37						
은하면	34 360 35						
장곡면	34 360 34						
홍동면	34 360 33						
홍북면	34 360 31						
홍성읍	34 360 11						

(전라북도 고창군 ~ 전주시)

행정구역명	부호
전라북도	**35**
고창군	**35 370**
고수면	35 370 31
고창읍	35 370 11
공음면	35 370 34
대산면	35 370 38
무장면	35 370 33
부안면	35 370 43
상하면	35 370 35
성내면	35 370 41
성송면	35 370 37
신림면	35 370 42
심원면	35 370 39
아산면	35 370 32
해리면	35 370 36
흥덕면	35 370 40
군산시	**35 020**
개정동	35 020 68
개정면	35 020 36
경암동	35 020 66
구암동	35 020 67
나운1동	35 020 70
나운2동	35 020 71
나포면	35 020 38
대야면	35 020 35
미성동	35 020 73
삼학동	35 020 56
서수면	35 020 34
선양동	35 020 57
성산면	35 020 37
소룡동	35 020 72
수송동	35 020 69
신풍동	35 020 55
오룡동	35 020 54
옥구읍	35 020 11
옥도면	35 020 39
옥산면	35 020 31
옥서면	35 020 40
월명동	35 020 53
임피면	35 020 33
조촌동	35 020 65
중미동	35 020 61
중앙동	35 020 60
해신동	35 020 51
회현면	35 020 32
흥남동	35 020 64
김제시	**35 060**
검산동	35 060 54
공덕면	35 060 36
광활면	35 060 44
교동월촌동	35 060 57
금구면	35 060 40
금산면	35 060 43
만경읍	35 060 11
백구면	35 060 34
백산면	35 060 32
봉남면	35 060 41
부량면	35 060 35
성덕면	35 060 38
신풍동	35 060 52
요촌동	35 060 51
용지면	35 060 33
죽산면	35 060 31
진봉면	35 060 39
청하면	35 060 37
황산면	35 060 42
남원시	**35 050**
금동	35 050 55
금지면	35 050 35
노암동	35 050 54
대강면	35 050 36
대산면	35 050 37
덕과면	35 050 39
도통동	35 050 59
동충동	35 050 51
보절면	35 050 40
사매면	35 050 38
산내면	35 050 45
산동면	35 050 41
송동면	35 050 33
수지면	35 050 32
아영면	35 050 44
왕정동	35 050 56
운봉읍	35 050 11
이백면	35 050 42
인월면	35 050 43
주생면	35 050 34
주천면	35 050 31
죽항동	35 050 52
향교동	35 050 57
무주군	**35 330**
무주읍	35 330 11
무풍면	35 330 31
부남면	35 330 35
설천면	35 330 32
안성면	35 330 34
적상면	35 330 33
부안군	**35 380**
계화면	35 380 34
동진면	35 380 32
백산면	35 380 38
변산면	35 380 36
보안면	35 380 35
부안읍	35 380 11
상서면	35 380 39
위도면	35 380 42
주산면	35 380 31
줄포면	35 380 41
진서면	35 380 37
하서면	35 380 40
행안면	35 380 33
순창군	**35 360**
구림면	35 360 40
금과면	35 360 36
동계면	35 360 32
복흥면	35 360 38
순창읍	35 360 11
쌍치면	35 360 39
유등면	35 360 34
인계면	35 360 31
적성면	35 360 33
팔덕면	35 360 37
풍산면	35 360 35
완주군	**35 310**
경천면	35 310 41
고산면	35 310 36
구이면	35 310 35
동상면	35 310 40
봉동읍	35 310 12
비봉면	35 310 37
삼례읍	35 310 11
상관면	35 310 32
소양면	35 310 34
용진면	35 310 31
운주면	35 310 38
이서면	35 310 33
화산면	35 310 39
익산시	**35 030**
금마면	35 030 40
남중동	35 030 59
낭산면	35 030 37
동산동	35 030 57
마동	35 030 58
망성면	35 030 38
모현동	35 030 61
삼기면	35 030 43
삼성동	35 030 70
성당면	35 030 35
송학동	35 030 62
신동	35 030 65
여산면	35 030 39
영등동	35 030 66
오산면	35 030 31
왕궁면	35 030 41
용동면	35 030 44
용안면	35 030 36
웅포면	35 030 34
인화동	35 030 55
중앙동	35 030 51
춘포면	35 030 42
팔봉동	35 030 69
평화동	35 030 53
함라면	35 030 33
함열읍	35 030 11
황등면	35 030 32
임실군	**35 350**
강진면	35 350 39
관촌면	35 350 38
덕치면	35 350 40
삼계면	35 350 37
성수면	35 350 34
신덕면	35 350 36
신평면	35 350 33
오수면	35 350 35
운암면	35 350 32
임실읍	35 350 11
지사면	35 350 41
청웅면	35 350 31
장수군	**35 340**
계남면	35 340 35
계북면	35 340 36
번암면	35 340 32
산서면	35 340 31
장계면	35 340 33
장수읍	35 340 11
천천면	35 340 34
전주시	**35 010**
덕진구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금암1동	35 012 58	북면	35 040 31				
금암2동	35 012 59	산내면	35 040 43				
덕진동	35 012 57	산외면	35 040 44				
동산동	35 012 68	상교동	35 040 59				
서노송동	35 012 51	소성면	35 040 33				
송천1동	35 012 65	수성동	35 040 51				
송천2동	35 012 66	시기3동	35 040 56				
우아1동	35 012 61	시기동	35 040 54				
우아2동	35 012 62	신태인읍	35 040 11				
인후1동	35 012 54	연지동	35 040 57				
인후2동	35 012 55	영원면	35 040 35				
인후3동	35 012 56	옹동면	35 040 41				
조촌동	35 012 67	이평면	35 040 37				
진북1동	35 012 52	입암면	35 040 32				
진북2동	35 012 53	장명동	35 040 52				
팔복동	35 012 60	정우면	35 040 38				
호성동	35 012 63	칠보면	35 040 42				
완산구		태인면	35 040 39				
교동	35 011 53	**진안군**	**35 320**				
남노송동	35 011 57	동향면	35 320 33				
동서학동	35 011 60	마령면	35 320 37				
동완산동	35 011 58	백운면	35 320 35				
삼천1동	35 011 67	부귀면	35 320 38				
삼천2동	35 011 68	상전면	35 320 34				
삼천3동	35 011 69	성수면	35 320 36				
서서학동	35 011 61	안천면	35 320 32				
서신동	35 011 66	용담면	35 320 31				
서완산동	35 011 59	정천면	35 320 39				
중노송1동	35 011 55	주천면	35 320 40				
중노송2동	35 011 56	진안읍	35 320 11				
중앙동	35 011 51						
중화산1동	35 011 62						
중화산2동	35 011 63						
태평동	35 011 54						
평화1동	35 011 64						
평화2동	35 011 65						
풍남동	35 011 52						
효자1동	35 011 70						
효자2동	35 011 71						
효자3동	35 011 72						
효자4동	35 011 73						
정읍시	**35 040**						
감곡면	35 040 40						
고부면	35 040 34						
내장상동	35 040 53						
농소동	35 040 58						
덕천면	35 040 36						

(전라남도 강진군 ~ 여수시)

행정구역명	부호
전라남도	**36**
강진군	**36 390**
강진읍	36 390 11
군동면	36 390 31
대구면	36 390 33
도암면	36 390 35
마량면	36 390 34
병영면	36 390 39
성전면	36 390 37
신전면	36 390 36
옴천면	36 390 40
작천면	36 390 38
칠량면	36 390 32
고흥군	**36 350**
고흥읍	36 350 11
과역면	36 350 40
금산면	36 350 33
남양면	36 350 41
대서면	36 350 43
도덕면	36 350 32
도양읍	36 350 12
도화면	36 350 34
동강면	36 350 42
동일면	36 350 37
두원면	36 350 44
봉래면	36 350 36
영남면	36 350 39
점암면	36 350 38
포두면	36 350 35
풍양면	36 350 31
곡성군	**36 320**
겸면	36 320 39
고달면	36 320 36
곡성읍	36 320 11
목사동면	36 320 34
삼기면	36 320 32
석곡면	36 320 33
오곡면	36 320 31
오산면	36 320 40
옥과면	36 320 37
입면	36 320 38
죽곡면	36 320 35
광양시	**36 060**
골약동	36 060 51
광양읍	36 060 11
광영동	36 060 54
금호동	36 060 56
다압면	36 060 36
봉강면	36 060 31
옥곡면	36 060 33
옥룡면	36 060 32
중마동	36 060 53
진상면	36 060 34
진월면	36 060 35
태인동	36 060 55
구례군	**36 330**
간전면	36 330 32
광의면	36 330 35
구례읍	36 330 11
마산면	36 330 34
문척면	36 330 31
산동면	36 330 37
용방면	36 330 36
토지면	36 330 33
나주시	**36 040**
공산면	36 040 34
금남동	36 040 54
금천면	36 040 39
남평읍	36 040 11
노안면	36 040 38
다도면	36 040 41
다시면	36 040 36
동강면	36 040 35
문평면	36 040 37
반남면	36 040 33
봉황면	36 040 42
산포면	36 040 40
성북동	36 040 55
세지면	36 040 31
송월동	36 040 51
영강동	36 040 52
영산동	36 040 58
왕곡면	36 040 32
이창동	36 040 60
담양군	**36 310**
고서면	36 310 32
금성면	36 310 37
남면	36 310 33
담양읍	36 310 11
대덕면	36 310 35
대전면	36 310 41
무정면	36 310 36
봉산면	36 310 31
수북면	36 310 40
용면	36 310 38
월산면	36 310 39
창평면	36 310 34
목포시	**36 010**
남양동	36 010 59
대성동	36 010 58
동명동	36 010 62
만호동	36 010 64
무안동	36 010 61
부흥동	36 010 76
북교동	36 010 60
북항동	36 010 68
산정1동	36 010 53
산정2동	36 010 54
산정3동	36 010 55
삼학동	36 010 63
삼향동	36 010 74
상동	36 010 71
신흥동	36 010 73
연산동	36 010 56
옥암동	36 010 75
용당1동	36 010 51
용당2동	36 010 52
용해동	36 010 69
원산동	36 010 57
유달동	36 010 65
이로동	36 010 70
죽교동	36 010 67
충무동	36 010 66
하당동	36 010 72
무안군	**36 420**
망운면	36 420 35
몽탄면	36 420 32
무안읍	36 420 11
삼향면	36 420 31
운남면	36 420 37
일로읍	36 420 12
청계면	36 420 33
해제면	36 420 36
현경면	36 420 34
보성군	**36 360**
겸백면	36 360 33
노동면	36 360 31
득량면	36 360 38
문덕면	36 360 36
미력면	36 360 32
벌교읍	36 360 12
보성읍	36 360 11
복내면	36 360 35
웅치면	36 360 40
율어면	36 360 34
조성면	36 360 37
회천면	36 360 39
순천시	**36 030**
낙안면	36 030 34
남제동	36 030 59
덕연동	36 030 57
도사동	36 030 63
매곡동	36 030 54
별량면	36 030 35
삼산동	36 030 55
상사면	36 030 36
서면	36 030 38
송광면	36 030 32
승주읍	36 030 11
왕조동	36 030 66
외서면	36 030 33
월등면	36 030 40
장천동	36 030 61
저전동	36 030 60
조곡동	36 030 56
주암면	36 030 31
중앙동	36 030 62
풍덕동	36 030 58
해룡면	36 030 37
향동	36 030 51
황전면	36 030 39
신안군	**36 480**
도초면	36 480 35
비금면	36 480 34
신의면	36 480 38
안좌면	36 480 40
암태면	36 480 42
압해면	36 480 43
임자면	36 480 32
자은면	36 480 33
장산면	36 480 39
증도면	36 480 31
지도읍	36 480 11
팔금면	36 480 41
하의면	36 480 37
흑산면	36 480 36
여수시	**36 020**
광림동	36 020 55

행정구역명	부호
국동	36 020 58
남면	36 020 34
대교동	36 020 57
돌산읍	36 020 11
동문동	36 020 51
둔덕동	36 020 63
만덕동	36 020 64
묘도동	36 020 70
문수동	36 020 61
미평동	36 020 62
삼산면	36 020 36
삼일동	36 020 69
서강동	36 020 56
소라면	36 020 31
시전동	36 020 66
쌍봉동	36 020 65
여서동	36 020 60
여천동	36 020 67
월호동	36 020 59
율촌면	36 020 32
주삼동	36 020 68
중앙동	36 020 53
충무동	36 020 54
한려동	36 020 52
화양면	36 020 33
화정면	36 020 35
영광군	**36 440**
군남면	36 440 35
군서면	36 440 34
낙월면	36 440 38
대마면	36 440 31
묘량면	36 440 32
백수읍	36 440 12
법성면	36 440 37
불갑면	36 440 33
염산면	36 440 36
영광읍	36 440 11
홍농읍	36 440 13
영암군	**36 410**
군서면	36 410 36
금정면	36 410 32
덕진면	36 410 31
도포면	36 410 35
미암면	36 410 39
삼호면	36 410 40
서호면	36 410 37
시종면	36 410 34
신북면	36 410 33
영암읍	36 410 11
학산면	36 410 38
완도군	**36 460**
고금면	36 460 33
군외면	36 460 31
금당면	36 460 37
금일읍	36 460 12
노화읍	36 460 13
보길면	36 460 38
생일면	36 460 39
소안면	36 460 36
신지면	36 460 32
약산면	36 460 34
완도읍	36 460 11
청산면	36 460 35
장성군	**36 450**
남면	36 450 32
동화면	36 450 33
북이면	36 450 39
북하면	36 450 40
불일면	36 450 38
삼계면	36 450 35
삼서면	36 450 34
서삼면	36 450 37
장성읍	36 450 11
진원면	36 450 31
황룡면	36 450 36
장흥군	**36 380**
관산읍	36 380 12
대덕읍	36 380 13
부산면	36 380 36
안양면	36 380 32
용산면	36 380 31
유치면	36 380 35
장동면	36 380 33
장평면	36 380 34
장흥읍	36 380 11
회진면	36 380 37
진도군	**36 470**
고군면	36 470 32
군내면	36 470 31
의신면	36 470 33
임회면	36 470 34
조도면	36 470 36
지산면	36 470 35
진도읍	36 470 11
함평군	**36 430**
나산면	36 430 36
대동면	36 430 35
손불면	36 430 31
신광면	36 430 32
엄다면	36 430 34
월야면	36 430 38
학교면	36 430 33
함평읍	36 430 11
해보면	36 430 37
해남군	**36 400**
계곡면	36 400 38
마산면	36 400 39
문내면	36 400 42
북일면	36 400 36
북평면	36 400 35
산이면	36 400 41
삼산면	36 400 31
송지면	36 400 34
옥천면	36 400 37
해남읍	36 400 11
현산면	36 400 33
화산면	36 400 32
화원면	36 400 43
황산면	36 400 40
화순군	**36 370**
남면	36 370 41
능주면	36 370 35
도곡면	36 370 36
도암면	36 370 37
동면	36 370 42
동복면	36 370 40
북면	36 370 39
이서면	36 370 38
이양면	36 370 34
청풍면	36 370 33
춘양면	36 370 32
한천면	36 370 31
화순읍	36 370 11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경상북도 경산시 ~ 안동시)

행정구역명	부호
경상북도	**37**
경산시	**37 100**
남부동	37 100 54
남산면	37 100 34
남천면	37 100 36
동부동	37 100 52
북부동	37 100 55
서부동	37 100 53
압량면	37 100 35
와촌면	37 100 31
용성면	37 100 33
자인면	37 100 32
중방동	37 100 56
중앙동	37 100 51
진량읍	37 100 12
하양읍	37 100 11
경주시	**37 020**
감포읍	37 020 11
강동면	37 020 37
건천읍	37 020 13
내남면	37 020 33
동천동	37 020 64
보덕동	37 020 67
불국동	37 020 66
산내면	37 020 34
서면	37 020 35
선도동	37 020 59
성건동	37 020 55
성동동	37 020 52
안강읍	37 020 12
양남면	37 020 32
양북면	37 020 31
외동읍	37 020 14
용강동	37 020 62
월성동	37 020 58
중부동	37 020 51
천북면	37 020 38
탑정동	37 020 56
현곡면	37 020 36
황남동	37 020 57
황성동	37 020 63
황오동	37 020 53
고령군	**37 370**
개진면	37 370 35
고령읍	37 370 11
다산면	37 370 34
덕곡면	37 370 31
성산면	37 370 33
쌍림면	37 370 37
우곡면	37 370 36
운수면	37 370 32
구미시	**37 050**
고아읍	37 050 12
공단1동	37 050 64
공단2동	37 050 65
광평동	37 050 66
도개면	37 050 33
도량동	37 050 55
무을면	37 050 31
비산동	37 050 63
사곡상모동	37 050 67
산동면	37 050 35
선산읍	37 050 11
선주원남동	37 050 57
송정동	37 050 51
신평1동	37 050 61
신평2동	37 050 62
양포동	37 050 72
옥성면	37 050 32
원평1동	37 050 52
원평2동	37 050 53
인동동	37 050 70
임오동	37 050 69
장천면	37 050 36
지산동	37 050 56
진미동	37 050 71
해평면	37 050 34
형곡1동	37 050 59
형곡2동	37 050 60
군위군	**37 310**
고로면	37 310 37
군위읍	37 310 11
부계면	37 310 33
산성면	37 310 36
소보면	37 310 31
우보면	37 310 34
의흥면	37 310 35
효령면	37 310 32
김천시	**37 030**
감문면	37 030 34
감천면	37 030 38
개령면	37 030 33
구성면	37 030 40
남면	37 030 32
농소면	37 030 31
대곡동	37 030 58
대덕면	37 030 43
대신동	37 030 56
대항면	37 030 37
봉산면	37 030 36
부항면	37 030 42
성남동	37 030 52
아포읍	37 030 11
양금동	37 030 55
어모면	37 030 35
용암동	37 030 51
조마면	37 030 39
증산면	37 030 44
지례면	37 030 41
지좌동	37 030 59
평화동	37 030 53
문경시	**37 090**
가은읍	37 090 12
농암면	37 090 37
동로면	37 090 35
마성면	37 090 36
모전동	37 090 56
문경읍	37 090 11
산북면	37 090 34
산양면	37 090 32
신평동	37 090 54
신흥동	37 090 53
영순면	37 090 31
점촌동	37 090 51
중앙동	37 090 52
호계면	37 090 33
봉화군	**37 410**
명호면	37 410 38
물야면	37 410 31
법전면	37 410 33
봉성면	37 410 32
봉화읍	37 410 11
상운면	37 410 39
석포면	37 410 36
소천면	37 410 35
재산면	37 410 37
춘양면	37 410 34
상주시	**37 080**
계림동	37 080 54
공검면	37 080 45
공성면	37 080 35
낙동면	37 080 33
남원동	37 080 52
내서면	37 080 37
동문동	37 080 55
동성동	37 080 56
모동면	37 080 38
모서면	37 080 39
북문동	37 080 53
사벌면	37 080 31
신흥동	37 080 57
외남면	37 080 36
외서면	37 080 43
은척면	37 080 44
이안면	37 080 46
중동면	37 080 32
청리면	37 080 34
함창읍	37 080 11
화남면	37 080 47
화동면	37 080 40
화북면	37 080 42
화서면	37 080 41
성주군	**37 380**
가천면	37 380 34
금수면	37 380 35
대가면	37 380 36
벽진면	37 380 37
선남면	37 380 31
성주읍	37 380 11
수륜면	37 380 33
용암면	37 380 32
월항면	37 380 39
초전면	37 380 38
안동시	**37 040**
길안면	37 040 39
남선면	37 040 37
남후면	37 040 36
녹전면	37 040 43
도산면	37 040 42
명륜동	37 040 52
법상동	37 040 57
북후면	37 040 32
서구동	37 040 55
서후면	37 040 33
송하동	37 040 61
안기동	37 040 59
예안면	37 040 41
옥동	37 040 60

(경상북도 안동시 ~ 포항시)

행정구역명	부호
와룡면	37 040 31
용상동	37 040 54
일직면	37 040 35
임동면	37 040 40
임하면	37 040 38
중구동	37 040 51
태화동	37 040 56
평화동	37 040 58
풍산읍	37 040 11
풍천면	37 040 34
영덕군	**37 350**
강구면	37 350 31
남정면	37 350 32
달산면	37 350 33
병곡면	37 350 37
영덕읍	37 350 11
영해면	37 350 36
지품면	37 350 34
창수면	37 350 38
축산면	37 350 35
영양군	**37 340**
석보면	37 340 35
수비면	37 340 34
영양읍	37 340 11
일월면	37 340 33
입암면	37 340 31
청기면	37 340 32
영주시	**37 060**
가흥1동	37 060 62
가흥2동	37 060 63
단산면	37 060 38
문수면	37 060 33
봉현면	37 060 36
부석면	37 060 39
상망동	37 060 51
순흥면	37 060 37
안정면	37 060 35
영주1동	37 060 55
영주2동	37 060 58
이산면	37 060 31
장수면	37 060 34
평은면	37 060 32
풍기읍	37 060 11
하망동	37 060 53
휴천1동	37 060 59
휴천2동	37 060 60
휴천3동	37 060 61

행정구역명	부호
영천시	**37 070**
고경면	37 070 38
금호읍	37 070 11
남부동	37 070 55
대창면	37 070 40
동부동	37 070 51
북안면	37 070 39
서부동	37 070 53
신녕면	37 070 32
완산동	37 070 54
임고면	37 070 37
자양면	37 070 36
중앙동	37 070 52
청통면	37 070 31
화남면	37 070 35
화북면	37 070 34
화산면	37 070 33
예천군	**37 400**
감천면	37 400 34
개포면	37 400 39
보문면	37 400 35
상리면	37 400 32
예천읍	37 400 11
용궁면	37 400 38
용문면	37 400 31
유천면	37 400 37
지보면	37 400 40
풍양면	37 400 41
하리면	37 400 33
호명면	37 400 36
울릉군	**37 430**
북면	37 430 32
서면	37 430 31
울릉읍	37 430 11
울진군	**37 420**
근남면	37 420 33
기성면	37 420 35
북면	37 420 31
서면	37 420 32
온정면	37 420 36
울진읍	37 420 11
원남면	37 420 34
죽변면	37 420 37
평해읍	37 420 12
후포면	37 420 38
의성군	**37 320**
가음면	37 320 36

행정구역명	부호
구천면	37 320 40
금성면	37 320 37
다인면	37 320 44
단밀면	37 320 41
단북면	37 320 42
단촌면	37 320 31
봉양면	37 320 38
비안면	37 320 39
사곡면	37 320 34
신평면	37 320 45
안계면	37 320 43
안사면	37 320 47
안평면	37 320 46
옥산면	37 320 33
의성읍	37 320 11
점곡면	37 320 32
춘산면	37 320 35
청도군	**37 360**
각남면	37 360 31
각북면	37 360 33
금천면	37 360 36
매전면	37 360 37
운문면	37 360 35
이서면	37 360 34
청도읍	37 360 12
풍각면	37 360 32
화양읍	37 360 11
청송군	**37 330**
부남면	37 330 32
부동면	37 330 31
안덕면	37 330 35
진보면	37 330 37
청송읍	37 330 11
파천면	37 330 36
현동면	37 330 33
현서면	37 330 34
칠곡군	**37 390**
가산면	37 390 33
기산면	37 390 37
동명면	37 390 32
북삼면	37 390 35
석적면	37 390 34
약목면	37 390 36
왜관읍	37 390 11
지천면	37 390 31
포항시	**37 010**
남구	

행정구역명	부호
구룡포읍	37 011 11
대보면	37 011 34
대송면	37 011 31
대이동	37 011 59
동해면	37 011 32
상대1동	37 011 51
상대2동	37 011 52
송도동	37 011 55
연일읍	37 011 12
오천읍	37 011 13
장기면	37 011 33
제철동	37 011 57
청림동	37 011 56
해도1동	37 011 53
해도2동	37 011 54
효곡동	37 011 58
북구	
기계면	37 012 34
기북면	37 012 36
두호동	37 012 64
송라면	37 012 33
신광면	37 012 31
양학동	37 012 58
용흥동	37 012 61
우창동	37 012 63
장량동	37 012 65
죽도1동	37 012 59
죽도2동	37 012 60
죽장면	37 012 35
중앙동	37 012 52
청하면	37 012 32
학산동	37 012 56
환여동	37 012 66
흥해읍	37 012 11

(경상남도 거제시 ~ 진주시)

행정구역명	부호
경상남도	**38**
거제시	**38 090**
거제면	38 090 34
남부면	38 090 33
능포동	38 090 53
동부면	38 090 32
둔덕면	38 090 35
마전동	38 090 52
사등면	38 090 36
신현읍	38 090 11
아주동	38 090 54
연초면	38 090 37
옥포1동	38 090 55
옥포2동	38 090 56
일운면	38 090 31
장목면	38 090 39
장승포동	38 090 51
하청면	38 090 38
거창군	**38 390**
가북면	38 390 41
가조면	38 390 40
거창읍	38 390 11
고제면	38 390 33
남상면	38 390 37
남하면	38 390 38
마리면	38 390 36
북상면	38 390 34
신원면	38 390 39
웅양면	38 390 32
위천면	38 390 35
주상면	38 390 31
고성군	**38 340**
개천면	38 340 38
거류면	38 340 43
고성읍	38 340 11
구만면	38 340 39
대가면	38 340 35
동해면	38 340 42
마암면	38 340 41
삼산면	38 340 31
상리면	38 340 34
영오면	38 340 37
영현면	38 340 36
하이면	38 340 33
하일면	38 340 32
회화면	38 340 40
김해시	**38 070**
내외동	38 070 54
대동면	38 070 37
동상동	38 070 51
부원동	38 070 53
북부동	38 070 55
불암동	38 070 60
삼안동	38 070 59
상동면	38 070 36
생림면	38 070 35
장유면	38 070 31
주촌면	38 070 32
진례면	38 070 33
진영읍	38 070 11
칠산서부동	38 070 56
한림면	38 070 34
활천동	38 070 58
회현동	38 070 52
남해군	**38 350**
고현면	38 350 37
남면	38 350 35
남해읍	38 350 11
미조면	38 350 34
삼동면	38 350 33
상주면	38 350 32
서면	38 350 36
설천면	38 350 38
이동면	38 350 31
창선면	38 350 39
마산시	**38 020**
합포구	
가포동	38 021 52
교방동	38 021 61
구산면	38 021 31
노산동	38 021 62
동서동	38 021 59
문화동	38 021 54
반월동	38 021 55
산호동	38 021 65
성호동	38 021 60
오동동	38 021 63
완월동	38 021 57
월영동	38 021 53
자산동	38 021 58
중앙동	38 021 56
진동면	38 021 32
진북면	38 021 33
진전면	38 021 34
합포동	38 021 64
현동	38 021 51
회원구	
구암1동	38 022 60
구암2동	38 022 61
내서읍	38 022 11
봉암동	38 022 62
석전1동	38 022 53
석전2동	38 022 54
양덕1동	38 022 56
양덕2동	38 022 57
합성1동	38 022 58
합성2동	38 022 59
회성동	38 022 55
회원1동	38 022 51
회원2동	38 022 52
밀양시	**38 080**
가곡동	38 080 55
교동	38 080 53
내이동	38 080 52
내일동	38 080 51
단장면	38 080 35
무안면	38 080 38
부북면	38 080 31
산내면	38 080 34
산외면	38 080 33
삼랑진읍	38 080 11
삼문동	38 080 54
상남면	38 080 36
상동면	38 080 32
청도면	38 080 39
초동면	38 080 37
하남읍	38 080 12
사천시	**38 060**
곤명면	38 060 36
곤양면	38 060 35
남양동	38 060 59
동서금동	38 060 53
동서동	38 060 51
벌룡동	38 060 55
사남면	38 060 32
사천읍	38 060 11
서포면	38 060 37
선구동	38 060 52
용현면	38 060 33
정동면	38 060 31
축동면	38 060 34
향촌동	38 060 57
산청군	**38 370**
금서면	38 370 34
단성면	38 370 37
산청읍	38 370 11
삼장면	38 370 35
생비량면	38 370 39
생초면	38 370 33
시천면	38 370 36
신등면	38 370 40
신안면	38 370 38
오부면	38 370 32
차황면	38 370 31
양산시	**38 100**
강서동	38 100 53
동면	38 100 31
물금읍	38 100 12
삼성동	38 100 52
상북면	38 100 33
웅상읍	38 100 11
원동면	38 100 32
중앙동	38 100 51
하북면	38 100 34
의령군	**38 310**
가례면	38 310 31
궁유면	38 310 41
낙서면	38 310 38
대의면	38 310 33
봉수면	38 310 40
부림면	38 310 39
용덕면	38 310 35
유곡면	38 310 42
의령읍	38 310 11
정곡면	38 310 36
지정면	38 310 37
칠곡면	38 310 32
화정면	38 310 34
진주시	**38 030**
가호동	38 030 71
강남동	38 030 52
금곡면	38 030 33
금산면	38 030 40
내동면	38 030 31
대곡면	38 030 39
대평면	38 030 44
망경동	38 030 51
명석면	38 030 43

(경상남도 진주시 ~ 합천군)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문산읍	38 030 11	길곡면	38 330 41	**하동군**	**38 360**	쌍책면	38 400 37
미천면	38 030 42	남지읍	38 330 12	고전면	38 360 35	야로면	38 400 34
봉수동	38 030 59	대지면	38 330 36	금남면	38 360 36	용주면	38 400 46
봉안동	38 030 56	대합면	38 330 33	금성면	38 360 37	율곡면	38 400 35
사봉면	38 030 37	도천면	38 330 40	북천면	38 360 40	적중면	38 400 40
상대1동	38 030 61	부곡면	38 330 42	악양면	38 360 32	청덕면	38 400 39
상대2동	38 030 62	성산면	38 330 32	양보면	38 360 39	초계면	38 400 36
상봉동동	38 030 57	영산면	38 330 38	옥종면	38 360 42	합천읍	38 400 11
상봉서동	38 030 58	유어면	38 330 35	적량면	38 360 33		
상평동	38 030 65	이방면	38 330 34	진교면	38 360 38		
성지동	38 030 54	장마면	38 330 39	청암면	38 360 41		
수곡면	38 030 45	창녕읍	38 330 11	하동읍	38 360 11		
신안동	38 030 68	**창원시**	**38 010**	화개면	38 360 31		
옥봉동	38 030 60	가음정동	38 010 60	횡천면	38 360 34		
이반성면	38 030 36	대산면	38 010 32	**함안군**	**38 320**		
이현동	38 030 69	동읍	38 010 11	가야읍	38 320 11		
일반성면	38 030 35	명곡동	38 010 53	군북면	38 320 32		
정촌면	38 030 32	반송동	38 010 55	대산면	38 320 34		
중앙동	38 030 55	봉림동	38 010 54	법수면	38 320 33		
지수면	38 030 38	북면	38 010 31	산인면	38 320 38		
진성면	38 030 34	사파동	38 010 59	여항면	38 320 39		
집현면	38 030 41	상남동	38 010 58	칠북면	38 320 36		
초장동	38 030 66	성주동	38 010 61	칠서면	38 320 35		
칠암동	38 030 53	용지동	38 010 57	칠원면	38 320 37		
판문동	38 030 70	웅남동	38 010 62	함안면	38 320 31		
평거동	38 030 67	의창동	38 010 51	**함양군**	**38 380**		
하대1동	38 030 63	중앙동	38 010 56	마천면	38 380 31		
하대2동	38 030 64	팔룡동	38 010 52	백전면	38 380 39		
진해시	**38 040**	**통영시**	**38 050**	병곡면	38 380 40		
경화동	38 040 56	광도면	38 050 33	서상면	38 380 38		
덕산동	38 040 61	도남동	38 050 61	서하면	38 380 37		
병암동	38 040 57	도산면	38 050 32	수동면	38 380 34		
석동	38 040 58	도천동	38 050 51	안의면	38 380 36		
여좌동	38 040 54	명정동	38 050 52	유림면	38 380 33		
웅동1동	38 040 65	무전동	38 050 56	지곡면	38 380 35		
웅동2동	38 040 66	미수1동	38 050 58	함양읍	38 380 11		
웅천동	38 040 64	미수2동	38 050 59	휴천면	38 380 32		
이동	38 040 59	봉평동	38 050 60	**합천군**	**38 400**		
자은동	38 040 60	북신동	38 050 55	가야면	38 400 33		
중앙동	38 040 51	사량면	38 050 36	가회면	38 400 44		
충무동	38 040 53	산양읍	38 050 11	대병면	38 400 45		
태백동	38 040 55	욕지면	38 050 34	대양면	38 400 41		
태평동	38 040 52	용남면	38 050 31	덕곡면	38 400 38		
풍호동	38 040 62	인평동	38 050 57	묘산면	38 400 32		
창녕군	**38 330**	정량동	38 050 54	봉산면	38 400 31		
계성면	38 330 37	중앙동	38 050 53	삼가면	38 400 43		
고암면	38 330 31	한산면	38 050 35	쌍백면	38 400 42		

(제주도 전체)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제주도	39	화북동	39 010 60				
남제주군	39 320						
남원읍	39 320 12						
대정읍	39 320 11						
성산읍	39 320 13						
안덕면	39 320 31						
표선면	39 320 32						
북제주군	39 310						
구좌읍	39 310 13						
애월읍	39 310 12						
우도면	39 310 33						
조천읍	39 310 14						
추자면	39 310 32						
한경면	39 310 31						
한림읍	39 310 11						
서귀포시	39 020						
대륜동	39 020 59						
대천동	39 020 60						
동홍동	39 020 57						
서홍동	39 020 58						
송산동	39 020 51						
영천동	39 020 56						
예례동	39 020 62						
정방동	39 020 52						
중문동	39 020 61						
중앙동	39 020 53						
천지동	39 020 54						
효돈동	39 020 55						
제주시	39 010						
건입동	39 010 59						
노형동	39 010 66						
도두동	39 010 69						
봉개동	39 010 62						
삼도1동	39 010 55						
삼도2동	39 010 56						
삼양동	39 010 61						
아라동	39 010 63						
연동	39 010 65						
오라동	39 010 64						
외도동	39 010 67						
용담1동	39 010 57						
용담2동	39 010 58						
이도1동	39 010 53						
이도2동	39 010 54						
이호동	39 010 68						
일도1동	39 010 51						
일도2동	39 010 52						

23-11

2000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직업 기입요령

통 계 청

목 차

산업·직업개요 ---------- 3

산업분류 ---------- 13

- 찾아보기 ---------- 15

직업분류 ---------- 61

- 찾아보기 ---------- 63

산업 · 직업개요

산업·직업 개요

1. 의 의

○ 산업이란

한마디로 생산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곧 자연물에 사람의 힘을 가하여 그 이용가치를 창조하고 또 그것을 증대하기 위하여 그 형태를 변경하고 또 장소·주소 등을 다른 데로 옮기며 경제적인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

○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말한다.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직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산업 및 직업 현황파악

가. 연 혁

○ 직업은 제1회 1925년부터 조사 : 몇 개의 직업군으로만 조사
○ 산업은 제8회 1960년부터 조사 : 대분류로만 집계
○ 이후 조사를 거듭하면서 점차 중분류 또는 소분류까지 조사

나. 조사방법

○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10% 표본으로 면접조사
○ 가구원이 속한 사업체가 영위하는 산업활동으로 산업을 파악
○ 가구원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를 물어 직업 실태를 파악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산업 및 직업분류 부호를 기입

다. 2000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산업 및 직업 파악

○ 특 징 : 소분류에서 세분류까지 조사

○ 세분류의 필요성

오늘날 기술개발이나 과학문명의 발전 등에 따른 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의 확립, 확대가 필요하며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산업 및 직업의 분류를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집계한 자료로는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실을 일깨워 주는 정도의 자료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IMF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하에서 재취업준비 및 직업훈련의 필요가 급증하나, 이에 대한 산업 및 직업의 세분류 자료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정보와 미래에 대한 통계적 예측 및 전망의 자료를 생산하여 우리의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분류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3.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산업 및 직업 조사의 문제점

○ 산업 및 직업 조사항목의 기재내용으로 분류되어 지는데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아 분류에 어려움이 많음

○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분류부호를 기입하지만 기입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세분류까지 현지에 재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4. 산업분류

□ 개 념

경제주체(사업체)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다.

□ 산업분류 구조

경제활동	구 분	내 용		산 업 분 류
재화의 생산	1차(원시) 생산	생물(동식물) 생산	육지생물 생산	농업, 임업
			수산생물 생산	어업
		비생물(광물) 생산		광업
	2차(가공) 생산	유형 이동재(상품) 생산		제조업
		무형 이동재(에너지 및 용수) 생산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유형 비이동재(건축물) 생산		건설업
서비스 제공	재화의 유통, 위치이동 및 사업서비스	동산의 유통 및 위치이동	상품의 유통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위치이동(사람, 화물)	운수업, 통신업
			화폐의 유통 및 중개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기타 서비스	공공, 사회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사회보장사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	기타 공공 및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고용인 서비스	가사 서비스업
		국제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 산업항목 조사시 기본 숙지내용

○ 조사대상은 사업체로 조사한다.

구 분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 장소	정의 및 조사대상 적용방법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기업 집단	지역 단위	· 기업체 단위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결합체임 · 따라서 기업체는 반드시 사업체로 분리, 조사하여야 함 · 여러 공장이 모여 있는 회사는 제1공장, 제2공장으로 명시
	기업체 단위		
단일 산업활동	활동유형단위	사업체 단위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임 · 제1공장, 제2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 산업분류 원칙

o 생산단위(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복합적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되고 부차적 활동과 보조적 활동은 무시된다.**

o 사업체가 생산 또는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는 활동은 별개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생산 또는 제조활동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밀을 구입하여 밀가루를 제조한 후 밀가루를 파는 경우 사업체의 주된 사업활동은 밀가루 제조업이며, 밀가루를 구입한 후 우동을 만들어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우동을 파는 경우의 주된 사업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된다.

□ **산업항목 질문 및 기입요령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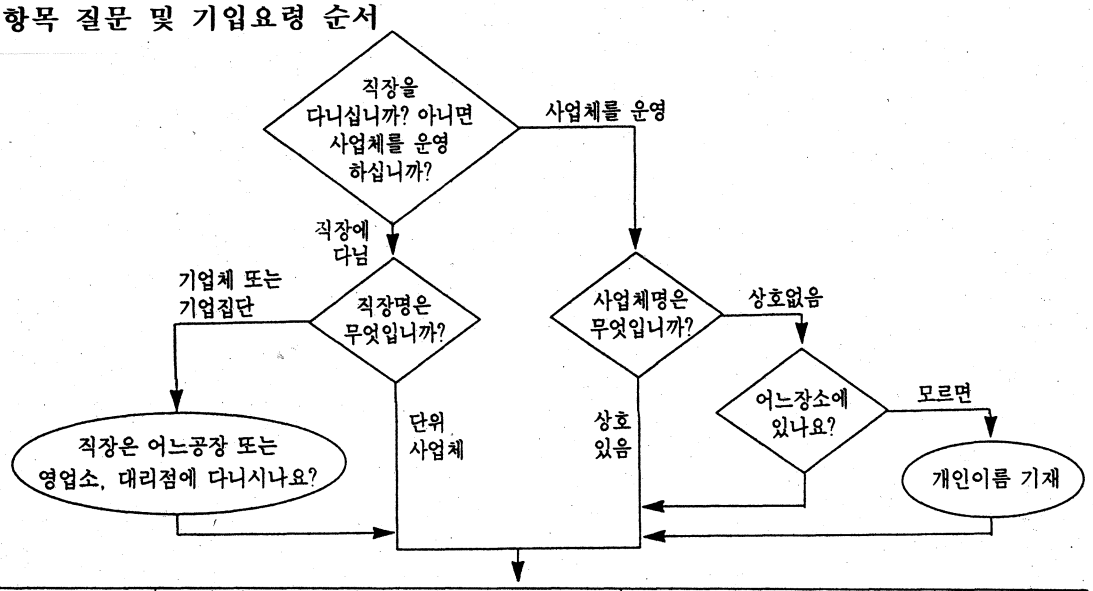

조사원 기재	직장의 사업체 단위를 자세히 기재 제1공장, 제2공장, 영업소, 대리점 등	사업체 명을 상호까지 자세히 기재 사업체 명이 없는 경우 장소 또는 개인이름을 기재
조사원 판단	직장 또는 사업체 명으로 산업분류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한다. - 직장 명 또는 사업체 명으로 산업 대분류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 판단 가능한 경우 · 지침서의 대분류를 찾은 다음, 기입요령을 참조 - 직장 명 또는 사업체 명으로 산업 대분류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 판단 불가능한 경우 · "주된 사업 내용"을 자세히 물어, 대분류, 소분류를 찾은 다음, 기입요령을 참조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가요?

조사원 기재	· 주된 사업내용을 분명하게 기입(이때 연필로 작성) · 사업내용의 응답이 분명치 않을 때는 재차 질문하고, 현지에서 원하는 내용이 안될 경우에는 추후 전화 또는 재방문할 것을 응답자에게 전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 "주된 사업 내용"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직장 또는 사업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를 기재하는 것이다. · 예)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 → 비록 인사부서에 있더라도 "자동차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기재함
조사표 작성	· 조사표에 볼펜으로 작성시 책자에 나와 있는 기입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 이때 연필로 작성된 것은 지우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필로 작성시 조사표의 여백을 적절히 이용토록 한다.

□ 찾는 요령

ㅇ해당되는 산업분류의 "주된 사업 내용" 기입요령 란에 「ㅇ표시의 명칭이나, - 표시의 제품명」을 기재(음영부분, 코드번호 4자리)토록 함

구 분1)	"주된 사업 내용" 기입요령2)	비 고3)
작물재배	ㅇ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 벼,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 고추→향신용 작물재배

주 1) 구 분 : 소분류로 작성

2) "주된 사업 내용" 기입요령 : 세분류 작성 및 세분류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을 명시

3) 비 고 : 유사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업을 보충설명

□ 산업분류시 꼭 파악해야 할 산업

산 업	파악해야 할 사항	이 유 및 비 고
제조업	제품의 용도 및 재료를 기재하여야만 정확한 분류가 가능함	· 제조업은 23개의 중분류로 이루어져 있음 · 제품의 용도와 원재료에 의해 중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해야 함 ※냉장고의 경우 : 용도에 따라 달라짐 → 산업용이면 2917, 가정용이면 2951
도매 및 소매업	도매인지 소매인지를 명시	· 상당수가 도매와 소매인지를 누락시킴 · 도매이면 51, 소매이면 52이므로 중분류가 달라짐

5. 직업분류

□ 개 념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별종사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각종 직무를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직업분류이다.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따라 직업을 정의하고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 직업분류의 원칙

ㅇ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음식조리와 제공이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조리사의 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독립적인 업무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수적우위 원칙

-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평가하여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예 1) 경제학자로서 대학교수인 경우 → 교육이 주업무이므로 대학교수로 분류

예 2) 의류를 소매판매하면서 대금계산을 겸하는 경우 → 의류소매 판매원으로 분류

ㅇ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원칙

-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로 분류한다.

예) 분식점에서 조리와 배달을 같이 하는 경우 → 조리업무가 배달업무보다 직능수준이 높으므로 조리사로 분류

○ 생산업무 우선원칙
-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분류한다.

예)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 → 빵을 제조하여 생산하므로 제빵원으로 분류

○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원칙은 ① 취업시간 ② 수입 ③ 최근의 직업의 순위로 한다.

예) 회사원이 퇴근 후 번역일을 하는 경우 → 회사근무시간이 많은 경우 회사일을 기재
→ 회사근무 시간이 번역시간보다 적은 경우 번역가로 조사
→ 회사근무시간과 번역시간이 동일한 경우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조사

□ 직업항목 분류체계

○ 직업분류는 22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이를 토대로 일의 종류를 해당 분야로 찾아감

□ 작성요령

○ 일을 종류에 따라 해당분야를 찾아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

분 야	기입 작성 방법	분 야		기입 작성 방법
○경영관리자와 일반관리자	기입요령, 비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		기입요령, 비고
○선생님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가사·청소·환경미화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운전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사무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음식조리·음식서비스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고객을 직접상대로 일을 하는 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판매 종사자	기입요령, 비고 ·반드시 도매와 소매로 작성 기입	○여행 및 운송관련종사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건물관리·경비종사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통신판매·모델 및 홍보 종사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운반인부·하역종사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배달·운반·검침종사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공무원·군인	기입요령, 비고	○농업·임업·어업종사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일반적인 직업명칭으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는 것	세부내역, 직업명	○기술계통	기술자,기술공	·기입요령, 비고
			기능원	·구분, 기입요령, 명칭(가나다순)
			조작원	
○단순노무종사자	세부내역, 기입요령, 비고		조립원	

□ 찾는 요령

○ 먼저 응답자에게 "부서 및 직책"을 질문하고 직업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 지를 찾는다.

○ 해당 분야를 찾은 다음, 어디에 포함되는 지를 알아보고 난 후, 기입요령 또는 비고란을 참조하여 기재하거나 아니면 포괄범위를 보아 기재(음영부분, 코드번호 4자리)하면 된다.

□ 기입요령

구 분	기 입 요 령	비 고
○일반적인 분야	·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물은 다음 해당분야를 찾고 기입요령을 기재토록 한다. 이때, 비고란의 예시가 나와있으면 예시를 기재	· 기입요령이나 비고란에서 찾기가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 세분류의 내용을 기재
○ 직업명칭으로 가능한 분류	·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직업명칭을 기재	· 사전에 이에 대한 직업명을 숙지
○기능원, 조작원, 조립원 분야	· 각 분류에 따라 해당 "주된 사업 내용" 기입요령과 명칭을 기재토록 하며, 이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시는 "구분"란의 세분류 명칭을 기재	· 너무 세부적이고 복잡하므로 해당 분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

□ 직업항목 질문 및 기입요령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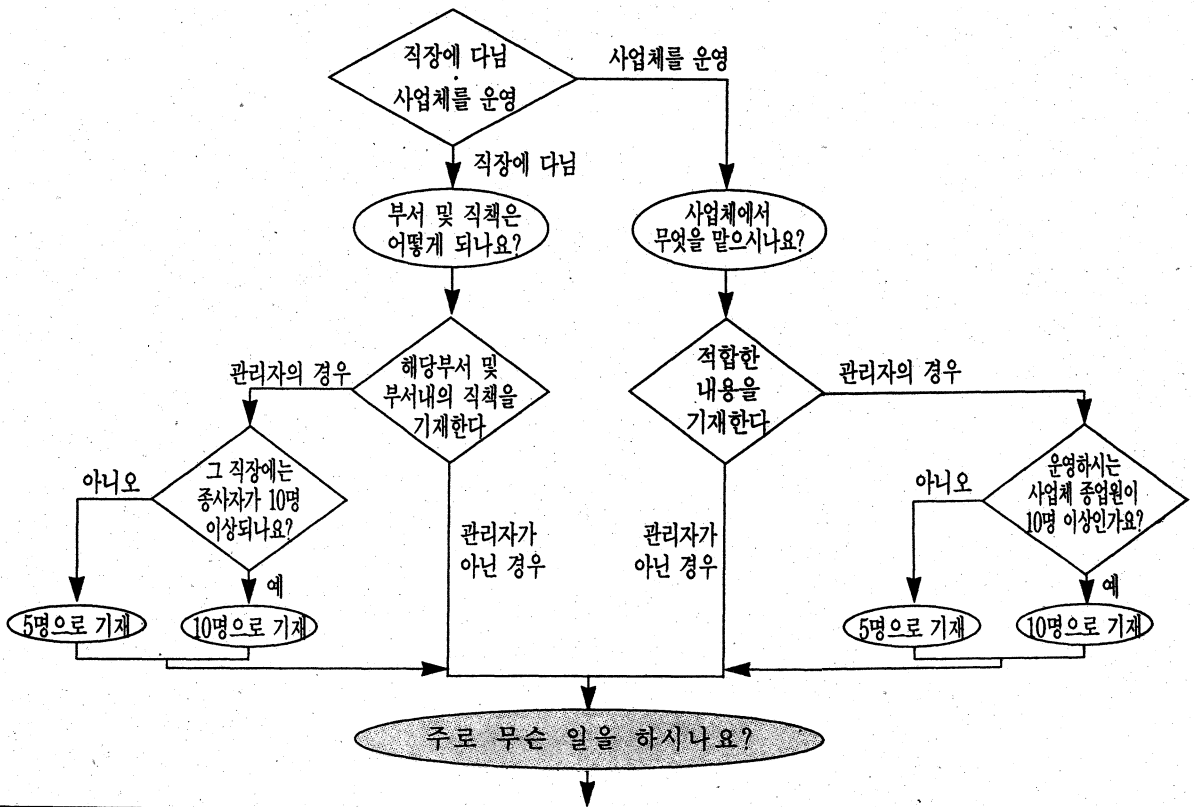

조사원 기재	· 주로 하는 일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입(이때 연필로 작성)한다. · 일의 내용 응답이 분명치 않을 때는 재차 질문하고, 현지에서 원하는 내용이 안될 경우에는 추후 전화 또는 재방문할 것을 응답자에게 전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조사표 작성	· 조사표에 볼펜으로 작성시 책자에 나와 있는 기입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 이때 연필로 작성된 것은 지우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필로 작성시 조사표의 여백을 적절히 이용토록 한다.

< 실 습 : 산업분류>

※ 실습 사례별 기입예시는 표본조사구용 조사지침서에 수록되어 있음

실 습 사 례	산업분류 착안	"주된 사업내용"기입요령 예시
○자기 논에서 벼농사	농사 지음 : 농업	벼재배→곡물재배→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
○먼 바다에서 참치를 잡음	어류 잡음 : 어업	참치 잡음→원양어업→해면어업
○건설용 대리석 채굴	돌 채굴 : 광업	대리석 채굴→석재 채취업
○자동차용 브레이크 생산	제품생산 : 제조업	자동차 브레이크 생산→자동차부품 제조업
○건축물내부 전기배선공사	건축물 공사 : 건설업	전기시설공사→전기공사업
○음식료품 및 생활잡화 소매	판매 : 도매 또는 소매로 분류	·반드시 도매인지 소매인지를 명시 음식료품 위주로 소매→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설렁탕 조리판매	음식 : 음식점업	설렁탕집→한식점→일반음식점업
○이사짐 운송	화물이동 : 운수업	이사짐 운송→화물자동차 운송업
○생명보험모집대리	보험대리점 :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보험은 모집대리점인지 보험업을 취급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 생명보험모집→생명보험대리점→보험관련서비스업
○주택 및 상가 매매중개	주택매매 : 부동산업	주택매매 중개→건물거래 중개→부동산중개업
○단독주택설계	주택설계 : 건축설계	주택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서비스업
○대학입시학원	학원 : 교육서비스업	입시학원→일반 교습학원
○환자치료	병원 : 보건사업	내과의원→일반의원→의원
○태권도장(태권도를 가르침)	태권도 : 운동관련업	태권도장→무술도장→기타 운동시설운영업
○건설기계수리(포크레인)	수리 : 수리업	건설기계수리→건설기계장비수리업→일반기계 수리업

주의를 요하는 사례(추가)	산업분류 착안	"주된 사업내용"기입요령 예시
○인삼차를 만듬(제조)	제품생산 : 제조업	인삼차를 만듬→인삼차제조→기타 식료품제조업 ·인삼으로 술을 만듬→인삼주 제조→증류주 제조업 ·인삼이 첨가된 음료 캔을 만듬→인삼캔제조 →캔음료제조→비알콜성 음료제조업
○학교 교복을 만듬(제조)	제품생산 : 제조업	학생교복 만듬→학생교복제조→기타 봉제의복제조 ·한복으로 교복을 만듬→한복교복제조→한복제조업
○인쇄용 잉크를 만듬	제품생산 : 제조업 ·잉크는 물질을 혼합하여 화학처리를 하므로 화학제품	인쇄잉크를 만듬→인쇄잉크 제조→인쇄잉크 제조업 ·필기용 잉크 만듬→필기용 잉크 제작→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을 만듬	제품생산 : 제조업	자동차 엔진 만듬→자동차 엔진 제조→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엔진에 쓰이는 부품을 만듬→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자동차부품 제조업
○중고품 매매	매매 : 도·소매업	매매가 도매인지 소매인지 모르므로 분류가 안됨 ·중고품 가구소매→중고품 소매업 ·중고차 매매→중고 자동차 판매업

< 실 습 : 직업분류>

※ 실습 사례별 기입예시는 표본조사구용 조사지침서에 수록되어 있음

실 습 사 례	직업분류 착안	"하고 있는 일의 종류"기입요령 예시
○농업관련 연구활동 기획, 지휘 및 조정	기획 및 조정 : 관리자	· 관련 업무를 산업별로 명시해 세분류가 가능 · 관리자로 판단되면 반드시 종사자수를 파악 농업관련 기획·조정→농업관리자
○환자진료(내과질환)	진료 : 의사	· 의사는 반드시 전문의사인지 아닌지를 명시 · 전문의사이면→내과전문의사, 아니면→일반의사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	기획업무 : 사무원	기획업무→기획 사무원
○상품판매 대금을 받음	대금 받음 : 사무원	상점서 대금 받음→상점대금수납원→대금수납사무원
○화재시 인명구조 작업수행	119구조대 : 응급구조	· 직업명칭으로 분류 가능 119구조대원→응급구조대→소방·응급구조원
○잡화판매 및 돈 받음	슈퍼 : 판매종사자	잡화 소매판매→슈퍼마켓→소매업체 판매원
○나의 논에서 벼농사 지음	농사 : 농업종사자	쌀농사→쌀재배→곡식식물재배자
○벽과 천장에 벽지 바름	벽지 바름 : 도배기능자	벽지 도배자→도배원→도배기능원
○유류를 수송하는 유조차 운전	운전 : 운전원	기름수송 운전자→유조차량운전자→특수차운전원
○승용차를 세차하고 광택을 냄	승용차 세차 : 차량청소	승용차세차원→세차원→차량관련 청소원

주의를 요하는 사례(추가)	직업분류 착안	"하고 있는 일의 종류"기입요령 예시
○중국음식점을 운영	운영자 : 종사자수 파악이 중요	·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이면서 중국집을 경영 및 기획, 조정함(이때 부서가 있는 지 여부) ※예) 3층으로 된 중국집, 호텔 중국집 등 · 일반 주택에서 종업원 3명 두고 운영하는 소규모 중국집의 경우 1)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판매할 때 : 중국음식 만듬→중식조리사→음식점 조리사 2)음식주문을 받고 식대만 계산할 때 : 음식값만 계산하고 받음→음식점 대금수납원→대금수납원→대금수납 사무원
○물고기를 잡음	어류 : 어업종사자	· 물고기를 내륙, 연안(해안에서 멀지 않은 바다), 원양(먼 바다)에서 포획하는 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류가 안됨 ※따라서 반드시 어류 포획 장소를 파악 1)내륙(강, 호수 등)에서 물고기를 잡음→내수면어부→내륙어업종사자→내륙·연안어업종사자 2)연안(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음→연안어부→연안어부종사자→내륙·연안어부종사자 3)원양(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음→원양어부→원양어업종사자
○목재 제재기를 조작	기계조작 : 기술계통→조작원	· 지침서의 조작원을 "목재"로 하여 기계장치 또는 기계명을 찾는다 목재 제제기 조작→목재가공장치 기능원
○크림을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	기계조작 : 기술계통→조작원	· 기계를 조작하므로 기계조작원에서 찾는다 크림제조 기계조작→낙농제품 기계조작원

산 업 분 류

찾 아 보 기

농 업 / 17
- 작물재배
- 축산업
- 작물과 축산복합
- 조경수 재배
- 수렵

임 업 / 18
- 영림업
- 벌목업
- 임업 관련 서비스

어 업 / 18
- 어로어업
- 양식어업

광 업 / 19
- 석탄광업
- 원유·천연가스 채굴업
- 우라늄 및 토륨광업
- 철광업
- 비철금속 광업
- 토사석 광업
- 기타 비금속 광물(소금, 장석 등)

제조업 / 20

○ **음·식료품 / 20**
- 고기·과실·채소가공업
- 낙농제품·아이스크림
- 곡물가공품·전분·사료
- 기타 식품(빵, 설탕, 국수, 조미료 등)
- 음료제조업(술, 생수, 얼음 등)

○ **담배제조업 / 22**

○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 22**
- 제사 및 방적업
- 직물직조업
- 편조업
- 섬유염색 및 가공업
- 기타 섬유제품(직물, 융단, 끈 등)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 23**
- 봉제의복제조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 **가죽·가방·신발제조업 / 23**

○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 24**

○ **펄프·종이·종이제품 / 24**

○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업 / 25**

○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제조업 / 25**

○ **화합물·화학제품 / 26**
- 기초화합물
- 의약품 제조
- 기타 화학제품(살충제, 잉크, 비누 등)
- 화학섬유제조

○ **고무·플라스틱제품 / 27**

○ **비금속광물제품 / 27**
- 유리 및 유리제품
- 도자기 제품
- 시멘트 제품
- 기타 비금속광물(아스팔트 등)

○ **제1차 금속제품 / 28**
- 제1차 철강제품(제철, 합금철 등)
- 제1차 비철금속(금, 은, 동 등)
- 금속주조업

○ **조립금속 제품 / 29**
- 구조용금속제품(창문, 샤시문 등)
- 기타 조립금속(볼트, 나사, 칼 등)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30**
- 일반목적용 기계(내연기관, 베어링 등)
- 가공 공작기계(선반, 연삭기 등)
-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농업용 기계 등)

○ **컴퓨터·사무용기기 제조 / 31**

○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기장치 제조 / 31**
- 전동기·발전기 제조
- 전기제어장치 제조
- 절연선·케이블 제조
- 축전기 제조
- 전구·조명장치 제조
- 기타 전기장비(플러그, 도난경보기 등)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 32**
- 반도체 제조
- 통신기기 제조
- 방송수신기 제조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 / 32**
- 의료용 기기
- 측정·시험·항해제조
- 안경·사진기계
- 시계제조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 / 33**
- 자동차엔진·자동차 제조
- 자동차 차체·트레일러 제조
- 자동차 부품 제조

○ **기타 운송장비 제조 / 33**
- 선박·보트 제조
- 철도장비 제조
- 항공기·우주선 제조
- 그외 기타 운송장비(자전거 등)

○ 가구 및 기타 제품 / 34
- 가구제조
- 기타 제품(귀금속, 악기, 장난감 등)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35
전기·가스·수도사업 / 35
- 전기업
- 가스제조·배관공급업
- 증기·온수공급업
- 수도사업
건설업 / 36
○ 종합건설업 / 36
- 토목건설업
- 건물건설업
○ 전문직별 공사업 / 36
- 토목시설물
- 건물설비 공사
- 전기·통신공사
- 건축마무리 공사
- 건설장비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 38
○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38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부품 판매업
- 이륜자동차 판매업
- 차량용 연료 소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38
- 상품중개업
- 산업용 농축산물 도매업
- 음식료품·담배도매업
- 가정용품 도매업
- 건축자재·철물 도매업
- 금속광물·제1차금속제품 도매업
-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 기계장비 도매업
- 기타 도매업(종합무역상사 등)
○ 소매업 / 41
- 종합소매업
- 음식료품·담배소매업
- 의약품·화장품 소매업
- 가전제품 소매업
-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
- 중고품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43
운수업 / 44
○ 육상운송업 / 44
○ 수상운송업 / 44
○ 항공운송업 / 45
○ 여행알선 및 창고업 / 45
통신업 / 45
- 우편·소포 송달업
-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6
○ 금융업 / 46
○ 보험 및 연금업 / 47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47
부동산 및 임대업 / 48
○ 부동산업 / 48
○ 기계장비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48
사업서비스업 / 49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49
○ 연구 및 개발업 / 49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50
- 법무·회계 관련
- 시장조사·경영상담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 과학·기술 서비스
- 광고업
- 전문디자인업
- 기타(사진촬영, 번역 등)
○ 사업지원 서비스업 / 51
- 사업시설·고용 서비스
- 기타(경비, 탐정, 청소 등)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52
- 입법·일반정부행정
- 사회·산업정책행정
- 외무·국방행정
- 사법·공공질서행정
-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 5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54
- 의료업
- 수의업
- 수용복지시설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 55
○ 영화·방송·공연산업 / 55
○ 기타(뉴스, 도서관, 오락스포츠 등) / 56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 57
○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 57
○ 회원단체 / 57
○ 수리업 / 58
○ 기타 서비스업 / 58
- 미용·욕탕
- 그외 기타(세탁, 묘지, 예식장 등)
가사 서비스업 / 59
국제 및 외국기관 / 59

□ 농 업 01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식재 및 관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작물재배 0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0111 - 벼,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등 재배	
	○채소 및 화훼작물 재배, 종자 및 묘목생산 0112 - 풋고추, 풋마늘, 파, 양파, 분재, 정원수 재배,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균, 묘목을 생산	· 고추→향신용 작물재배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 0113 - 과실, 고추, 마늘, 생강, 커피, 녹차용 재배	· 호프→기타 작물재배
	○기타 작물 재배 0114 - 인삼, 호프, 섬유작물,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유지작물(참깨, 들깨 등)재배	
	○시설작물 재배 0115 -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이 특수고정시설에서 재배	· 반드시 시설이 있어야 함
축산업 012	○소 사육 0121 - 젖소, 생우유생산, 육우사육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동물사료 제공→축산관련서비스
	○양돈 0122 : 각종 용도의 돼지 및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	
	○가금사육 0123 : 각종 용도의 가금 및 조류를 사육 및 부화 - 닭 사육, 양계장, 계란생산, 병아리 부화장, 가금, 조류, 메추리사육 등	
	○기타 축산업 0129 : 소, 돼지, 가금류를 제외한 육지동물을 번육, 증식, 사육 - 양, 말, 경주마, 개구리, 토끼, 개, 사슴, 파충류 및 곤충류, 여우, 곰 사육, 양모 및 양젖, 실험용쥐 생산, 양잠, 양봉	· 야생동물포획→수렵 및 관련 서비스 ·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관리→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작물과 축산 복합 013	○작물재배와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 0130 - 어느 한편이 66%를 넘으면 주된 활동에 따라 작물재배 또는 축산업으로 분류	· 전문화 기준율 66%
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 서비스 014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 0141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파종 및 유지관리 - 조경용 파종,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대리, 조경수목치료	· 토목공사와 결합→조경공사 · 산림병충해 방지서비스→임업관련서비스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 0142 : 수수료 및 계약에 의거 각종 작물생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 영농대리업,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농업용수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 운전자가 없이 농업용기계장비를 임대→기타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 담배재건조→담배재건조업 ·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공급업
	○축산관련 서비스 0143 -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서비스, 애완동물 보호 서비스	· 수의사가 행하는 인공수정 및 거세→수의업 ·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 축산동물사체처리→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수렵 및 관련서비스 015	○각종 야생동물과 수산 포유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 0150 -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수산 포유동물 포획	

□ 임 업 02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으로 구분된다.
- 산림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본다.
  · 다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임 업 020	ㅇ영림업 0201 :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 채취 - 임업용 묘목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야생 임산물 채취, 천연 코르크 채취, 천연검 및 수지 채취	· 임업용 이외의 종묘생산→종묘재배업 · 식물원, 수목원 관리→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벌목업 0202	ㅇ벌목 :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 - 원목생산, 벌목업자, 연료용 나무생산, 화목 생산	· 벌목과 가공목재를 일관공정으로 생산→제재 및 목재가공업
임 업 관 련 서비스 0203	ㅇ산화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경비 및 보조 서비스, 원목다듬기 서비스,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원목절단 서비스, 목재운반 이동 서비스	

□ 어 업 05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어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가공선박을 운영(별도의 독립된 사업체가 아닌 경우)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어로어업 051	ㅇ해면어업 0511 : 원양, 근해 및 연안해역에서 각종 수산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 - 물고기,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산호 채취	
	ㅇ내수면어업 0512 : 강, 호수, 하천 등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 - 물고기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채취, 수산식물 채취	
양 식 어 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 052	ㅇ양식어업 0521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활동 - 수산동물, 수산식물, 진주, 해산물 양식, 수산 동식물 종묘생산, 어족부화 서비스	· 개구리양식→농업에서 기타 축산업으로 포함
	ㅇ어업관련서비스 0522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 어족보호 서비스, 어획물정리 서비스, 수산물선별정리 서비스, 어획물출하준비 서비스	· 오락목적의 낚시장 운영→유료 낚시터 운영으로

□ 광 업 10~12

-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
-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광업사업체는 광산단위로 분류하며 관리사무소의 주소지가 사업장소가 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석탄광업 101	○유·무연탄 광업 1011 - 역청질탄(석탄) 채굴, 유연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및 무연탄 채굴과 결합된 석탄가스 채굴, 무연탄 생산, 유연탄생산, 연탄생산, 조개탄 생산	·갈탄 및 토탄으로 제조한 연탄 생산→갈탄 및 토탄 광업
	○갈탄 및 토탄 광업 1012 - 갈탄 채굴 및 선광, 토탄 채굴 및 선광, 갈탄 및 토탄 생산,갈탄 및 토탄채굴과 결합된 석탄가스 채굴	
원유, 천연가스 채굴 및 관련서비스 10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021 - 원유채굴, 타르모래 채굴, 유모혈암 채굴, 천연가스 채굴	·정제석유제품의 생산 및 액화가스 생산→원유정제처리업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운영→파이프라인운송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서비스업 1022	
우라늄 및 토륨광업103	○우라늄광 채굴 및 정광활동, 토륨광 채굴 및 정광활동 1030	·방사성 또는 핵연료용 물질의 생산→핵연료가공업
철광업111	○적·갈·자철광석 채굴, 철광석 채굴, 사철광 채굴, 능철광석 채굴 1110	·황철광 채굴→화학용 광물
비철금속광업 112	○비철금속 광업 1120 - 금·은·백금광석 채굴 및 정광, 연·아연광석 채굴 및 정광, 동광석, 텅스텐, 주석, 망간, 알루미늄, 몰리브덴 채굴 등	
토사석광업 121	○석회석 및 점토광업 1211 - 석회질 암석, 백운석, 천연무수석고, 경석고 채굴, 고령토, 점토 채취, 흑연, 장석, 천연마그네슘 채굴	·하소석고 제조→석회 및 플라스틱제조업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1212 - 대리석, 화강암, 암석채취, 쇄석채굴생산, 암석채굴분쇄, 사암 및 반려암 채굴 분쇄, 모래, 자갈 채취	·구입한 석재의 절단, 성형 및 가공→석재품제조업 ·구입한 토사석의 분쇄→비금속광물 분쇄물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 122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광업 1221 - 인산염, 황화철광, 납석광, 명반석, 규회석, 마그네슘광 채굴	·합성비료 및 질산화합물 제조
	○소금채취업 1222 - 염수생산, 식염채취, 간수생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정제염 생산 및 구입한 소금을 정제→가공 및 정제염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229 - 장석, 규조토, 백류석, 하석, 활석, 운모, 천연아스팔트, 석면, 다이아몬드 채굴	

□ 제 조 업 15~37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 있다.

○ 음식료품 15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사료, 식용 또는 비식용 동·식물성 유지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다만,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151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1 - 고래, 수렵동물, 가금, 가축도축, 고기냉동처리,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햄·소시지 제조, 동물의 피 및 내장 가공품 제조, 밀폐 포장한 육지동물고기 가공품제조	·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동물성유지제조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 - 어육생산, 저민어육(피레트)생산, 어란 및 간장생산, 캐비어 조제, 생선페이스트 생산, 조미어류 생산, 조미 젓갈류 생산, 식용 어분생산, 어묵 및 소시지 생산, 수산동물 통조림식품 제조, 냉동어류생산, 냉동갑각류 생산, 냉동수산물생산, 연체동물 냉동품 생산, 건어물제조, 멸치젓 제조, 수산동물 훈증건조제품제조, 어란염장품제조, 해조류 건조제품제조, 식용한천제조, 조미 구운김 제조, 조미 해조류 제조, 오징어채 제조 등	· 직접 채취한 수산물을 가공→해면어업 · 수산동물고기를 가공하여 수프 및 유사식품 제조하거나 이들의 엑기스와 즙을 추출→수프 및 균질화 식품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 - 채소주스 제조, 과실주스 제조, 과실·채소혼합주스 제조, 알로에 액즙, 과실 잼·젤리 제조, 과실샐러드 제조, 과실 통조림 제조, 견과껍질 벗기기, 과실냉동품 제조, 김치류 제조, 단무지 제조, 버섯 절임식품 제조, 채소 염수 절임식품 제조, 토마토 페이스트 제조, 채소 건조식품 제조, 채소 냉동품 제조, 감자의 플레이크 제조, 감자의 분 및 조분 생산 등	· 구입한 농축액 및 원액을 희석하여 100%주스 또는 희석주스 제조→비알코성 음료제조
	○동·식물성 유지제조업 1514 - 동물지방 생산, 수산동물유지 생산, 어류의 간유 생산, 올레오유 생산, 대두유 생산, 옥수수기름 추출, 식물성 왁스 생산, 면실유 생산, 피마자유 생산, 참깨기름 및 들기름 생산, 마가린 제조, 쇼팅제조, 식용가공유 제조 등	· 유지를 화학적으로 변성 처리→화학제품제조업이므로 이중에서 골라 기재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152	○생크림제조, 치즈, 버터밀크, 발효유, 연유, 전지분유제조, 냉동디저트, 빙과류, 샤베트 제조 1520	· 얼음 및 눈 제조→얼음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사료 153	○곡물가공품제조업 1531 - 도정곡물, 정미, 압맥생산, 정미소운영, 곡물제분제품생산, 밀가루 및 콩가루 생산, 제분소 운영, 제과용 가루반죽제조, 만두피제조, 곡분제 빵속 제조, 곡분제 떡고물 제조, 콘플레이크제조, 훈제조리곡물제조, 튀김곡물생산 등	· 빵, 곡분과자 및 떡제조→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 도시락, 피자 및 김밥의 제조→도시락 및 식사용조리식품 제조업
	○전분 및 당류제조업 1532 - 이눌린제조, 글루텐제조, 가용성전분제조, 타피오카제조, 포도당 및 과당 시럽제조, 물엿제조	· 접착용 풀 생산→접착제 제조업
	○사료제조업 1533 - 애완동물용 비스킷제조, 어류양식용 배합사료 제조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기타식품 154	ㅇ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1 - 케이크, 파이, 생과자, 베이커리제품, 식빵제조, 떡류 제조, 약과제조, 건빵, 미과, 튀김과자 제조 등	·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조→코코아 및 설탕과자제조업 · 조리·건조된 면류제조→국수·라면제조업
	ㅇ설탕제조업 1542 - 사탕수수 당 제조, 사탕무우 당 제조, 전화당 제조, 순수한 자당 제조	· 캐러멜 당 및 인조감미료 제조→조미료제조업 · 맥아당생산→당류제조업
	ㅇ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3 - 코코아 제품 제조, 드롭스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설탕절임 과일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 코코아열매생산→향신용 작물재배
	ㅇ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4 - 메밀국수, 스파게티, 당면, 인스턴트 면류, 마카로니, 곡분제 페이스트 면류제조	· 인스턴트 면류용 소스만 제조→식품첨가물제조업
	ㅇ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 - 고추, 후추 및 계피가루 제조, 천연 조미제품 제조, 마요네즈 제조, 천영 향신재료 분 제조, 혼합양념제조, 케첩제조, 인스턴트 커리 제조, 김치속 제조, 간장, 고추장, 춘장, 된장 및 청국장 제조, 조미료 제조, 아미노산 제조, 맛소금 제조, 누룩, 효모, 조제 베이킹파우더, 인조꿀, 커피크리머, 캐러멜당, 감미용조제품 제조	·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바닷물을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ㅇ기타 식료품 제조업 1549 - 커피가공업, 홍차제조, 차류 조제품 제조, 대용차류 제조, 조제수프 제조, 맥아엑스 및 추출물 제조, 유부, 묵, 두부, 순두부 제조, 인삼분말, 인삼차, 인삼즙 및 주스, 홍삼차 제조, 도시락, 피자, 식사용 죽류제조, 집단급식용 식사제조(구내식당 제외), 건강보조용 식품 제조, 건강원 등	· 캔커피, 캔홍차, 인삼캔→캔음료 제조 · 인삼주→증류주제조업 · 약제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인삼 약제품→기초 의약물질 제제 제조업
음료 제조업 155	ㅇ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 - 조주정 제조, 소주, 위스키, 진, 꼬냑, 럼, 고량주, 보드카, 증류주, 인삼 및 매실주, 오가피주 제조	
	ㅇ발효주 제조업 1552 - 모주, 곡주, 동동주, 막걸리 제조, 청주 제조, 포도주, 과실발효주, 유자발효주, 생강발효주, 채소발효주 제조	
	ㅇ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 - 맥아제조, 맥아분 제조, 볶은 맥아 생산(맥주제조용), 맥주 제조, 합성맥주 제조	·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생산→차류 가공업
	ㅇ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554 - 얼음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얼음 채취 및 저장, 천연 생수 생산(용기포장), 곡물음료제조, 캔음료제조, 인삼드링크제조, 캔커리 및 캔차류 제조	· 빙과제조→아이스크림제조업 · 드라이아이스 제조→산업용가스 제조업

○ 담배제조업 16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각종의 담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담배제조업 160	○ 담배제조업1600 :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각종의 담배를 제조 - 담배줄기 제거, 담배 재 건조,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제조(비의약성)	· 니코친제조→항생물질제조업 · 담배필터제조→흡연용품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17

-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연사, 끈, 로프, 망 및 기타 끈제품 제조
-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 세폭직물,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카펫 등의 직물 및 편조물 제조
-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활동
- 의복과 신발을 제외한 직물제품 제조
- 직물에 다른 물질을 도포, 삼투, 방수 및 기타 처리한 가공직물 제조
- 부직포, 펠트, 충전용 솜 및 기타 섬유제품 제조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제사 및 방적업 171	○ 제사 및 방적업 1710 - 견방사, 면사, 면 혼방사, 소모사, 방모사, 화학섬유, 자수사, 편물사, 가연사 견재봉사, 마 방적, 마사 제조 등	
직물직조업 172	○ 직물직조업 1720 - 화학섬유직물,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마직물 직조등	
편조업 173	○ 원단 편조업 1731 - 메리야스원단 제조, 편조원단 제조	
	○ 편조의복 및 기타 편조제품 제조업 1732 - 저지, 스웨터, 조끼, T셔츠, 스타킹, 양말, 장갑, 모자, 넥타이류 제조	· 구입한 각종 재료를 재단·재봉하여 모자 및 장갑제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염색 및 가공업 174	○ 섬유염색 및 가공업 1740 - 솜 및 실염색가공, 각종 직물·편조원단 및 직물제품을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날염가공,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 등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179	○ 직물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791 - 모포, 쿠션, 베개, 침낭, 이불, 자수제품 재료 제조, 벽덮개, 무대막,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직물제), 캠핑용 직물제품, 구명대, 돛 제조, 직물포대 제조, 세탁보, 먼지 털이개, 깃발, 낙하산, 구명밸트, 구명자켓, 신발류 끈, 페넌트 제조 등	· 전기담요제조→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 직물벽지제조→벽지제조업
	○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92 - 마루덮개, 카페트, 양탄자류, 인조잔디(직조물) 제조	
	○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93 - 끈, 로프, 케이블 제조, 로프가공품, 물품운반용 망제품,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 경기용 네트 및 낚시용고기망 제조→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99 - 세포직물, 유아용 내프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충전제품, 유아용 기저귀 제조(섬유제), 부직포, 펠트 제조, 고무합연사, 금속드리사 직물, 짐프사, 제조, 레이싱포 직물, 유포직물, 투사포, 호스제조 등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

구입한 작종 직물, 가죽 및 기타 재료(모피 제외)를 재단·재봉하여 의복류, 모자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봉제의복 제조업 181	○정장 제조업 1811 - 신사복 정장, 남자용 코트류, 드레스, 원피스, 스커트, 여자용 코트류 제조	· 한복제조→한복제조업
	○내의 제조업 1812 - 슬립제조, 브래지어, 임산부 복띠, 콜셋, 히프벨트, 거들제조, 런닝, 팬티제조	
	○한복 제조업 1813 -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한복 제조, 한복교복 제조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814 - 블라우스 제조, 체육복, 여가복, 잠바, 자켓, 반바지 제조, 가죽의복 제조(천연, 인조, 재생, 합성가죽제), 유아용 의복 제조, 잠수복,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학생교복 제조	·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5 - 모자, 장갑, 쇼울, 혁대 및 복대, 스카프 및 머플러, 넥타이, 만틸라, 손수건 제조	·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 - 원모피 처리, 모피가공,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천연모피 제품(모피 이불, 가정용모피제품, 의복액세서리 등),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	· 모피장갑, 모자 및 부분품 제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

- 각종 원피를 가공처리하여 가죽을 생산하거나 천연가죽 조각 및 부스러기를 접착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제조
- 각종 재료(석면 제외)를 재단 및 재봉·접합·주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종 목적용(정형외과용 제외)의 신발, 각반, 정강이 받이 등과 신발 부분품을 제조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가죽제조업 191	○가죽 제조업 1910 : 각종 원피를 가공처리하여 가죽을 생산하거나 재생가죽을 제조 - 가죽 유연처리, 가죽염색 및 가공처리, 재생가죽 제조, 세무가죽 제조, 페이턴트 가죽 제조 등	· 가죽의복제조→가죽의복 제조업
가방, 핸드백 및 기타 192	○가방 및 핸드백 제조업 1921 - 트렁트, 쇼핑백, 공구백, 등산용 배낭류, 핸드백 및 지갑 제조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929 - 기계용 가죽제품, 시계줄, 튜브, 가죽호스, 말채찍 제조	· 금속제 시계줄 제조→시계제조업
신발제조업 193	○신발제조업 1930 - 구두류, 케주얼화(가죽), 경기용 신발, 운동화, 나무 및 고무신발, 플라스틱 신발, 발레용 신발, 짚신 제조, 특수신발 제조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0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제제 및 목재 가공업 201	○제재 및 목재가공업 2010 - 각재생산, 일반제재목 생산, 표면새김가공목재 생산, 견본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생산, 나무조각판 제조, 도장 목재 생산, 화장 목재 제조, 약품처리 목재 생산, 표면처리 목재 생산	
나무, 코르크 및 조물제품 202	○단판, 합판 및 강화목재 제조업 2021 - 합판용 단판, 블록보드, 배튼보드, 베니어패널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칩보드, 파티클보드 제조 등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2 - 목재 창문, 목재 문지방, 목재 문틀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파켓트 패널제조, 구조용 적층 목제품 제조	
	○목재 포장용기 및 깔판류 제조업 2023 - 적재용 목재판, 화물용 목재보드, 화물용목재 파렛트,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조, 목재배럴 제조, 목재 케이스 제조	· 목재보석상자제조→장식용 목제품제조업
	○코르크 가공품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4 - 코르크제품, 돗자리, 밀짚모자, 새끼줄, 고공품 등 세공품, 가마니, 수세미제품 제조	
	○기타 목제품 제조업 2029 : 주방용 또는 가정용 목재 도구 및 기구, 목함 및 유사용기, 목재 사진틀 등을 제조 - 목재공구, 공구용 몸체, 공구 손잡이, 브러쉬 몸체, 밥주걱, 위생저, 이쑤시게, 목기, 절구통, 솔뚜껑, 은장도, 목재 거울틀, 보석상자 제조, 새장 및 동물우리 제조, 무대배경, 작업대, 사다리, 발판 제조	· 목재 모조신변장신품 제조→모조 장신·장식용품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

나무, 넝마, 고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용지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펄프, 종이 및 판지 211	○펄프 제조업 2111 - 화학목재펄프, 기계목재펄프, 섬유질 셀룰로오스펄프, 고지재생펄프 제조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 - 신문용지 제조,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 도포지 및 판지 제조, 전기절연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접착지 제조, 여과지와 판지 제조, 화장지 원지 제조, 타월원지 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 위생용 원지 제조 등	· 벽지 및 장판지 제조→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사진 감광지 제조→기록용 매체 제조업
골판지, 종이용기 및 기타 종이제품 212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21 - 골판지, 골판지 상자 제조, 쇼핑백, 종이봉지 제조, 식품백 제조, 의복백 제조,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상자. 보관함, 서류받침 제조 등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29 - 복사지, 바인더 및 홀더, 앨범, 영수증 용지, 화장지, 기저귀, 안면용 화장지, 크린싱 티슈 제조, 섬유벽지, 장판지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 궐연지 제조, 종이필터 제조, 스티커 제조, 과자포장지 제조 등	·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복제품, 판화 등의 출판→기타 출판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출판업 221	○서적 출판업 2211 - 지도 및 해도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지구본 제조, 차트 출판, 악보 출판, 인명부 출판, 사업체 목록부 출판 등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 - 신문, 잡지, 만화신문, 생활정보지, 광고간행물, 주간, 순간,월간, 계간, 연간 간행물 등	·방송 또는 신문사에 뉴스 자료 제공활동→뉴스 제공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2213 - 레코드,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등	
	○기타 출판업 2219 : 우표, 축하카드, 지폐발행, 예술복제품 제조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22	○인쇄업 2221 - 경인쇄, 단식옵셋인쇄, 프린트 인쇄, 마스터제판, 공판인쇄, 스크린인쇄, 그라비아, 일반옵셋, 사진제판, 석판, 고무판, 플라스틱판, 활판 및 연판, 목각판 인쇄 등	
	○인쇄관련 산업 2222 - 전산식자 제판, 인쇄용 사진제판, 인쇄용 활판, 동판, 고무판 제판, 제책업, 인쇄물의 금박처리·엠보싱 가공·모서리 다듬기, 재단 및 인쇄물 가공	
기록매체 복제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 - 소프트웨어(범용성)복제, 전산기록물 기록매체 복제, 레이저 광학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 복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레코드 원판녹음활동→녹음시설 운영업 ·영화용 필름복제→영화제작관련서비스업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3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광물 및 이들의 분할물을 정제 또는 기타 처리하는 활동과 우라늄금속을 추출하거나 핵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코크스 및 관련제품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 - 광물성 타르제조, 코크스응집처리, 석탄증류타르제조, 토탄증류타르제조	·콜타르증류활동→석탄화합물제조업
석유정제품 232	○원유 정제처리업 2321 -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정제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22 - 윤활유 제조, 그리스 제조, 재생윤활유 제조, 재싱그리스 제조, 석유왁스 생산, 석유아스팔트물질 제조 등	·조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기타화학제품제조업
핵연료 가공업 233	○핵연료 가공업 2330 - 우라늄 생산, 우라늄 화합물제조, 방사성 원소 및 동위원소 제조, 방사성 물질 화합물 제조	·방사능 폐기물 폐기처리→방사능폐기물처리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화학물, 혼합 또는 복합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기초화합물 제조업 24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 석탄화합물 제조, 벤졸 및 톨루올 제조, 크실올제조, 솔벤트 나프타 제조, 목탄 제조, 효소 및 기타 효소제품 제조, 알콜, 페놀 및 그 유도체 제조 등	· 착화탄 제조→연소물제조업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2 - 산업용가스 제조, 질소·알곤·네온가스 제조, 아세틸렌가스 제조, 드라이 아이스 제조, 수은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카본블랙 제조 등 ※연료용 가스 제외	· 연료용 가스의 생산은 천연가스, 석유가스, 석탄가스로 그 생산방법에 따라 분류됨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3 - 산화아연, 망간, 티타늄 제조, 산화철과 수산화철 제조, 합성염료 제조 등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4 - 비료제조, 복합비료 제조 등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 - 합성고무, 합성수지, 플라스틱물질 제조	
의약품 제조업 242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1 - 의약용 화합물 제조, 항생물질 제조, 미생물 배양체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면역혈청과 혈액분획물 제조 등	· 생물학적 농약제조→농약제조업
	○의약 제제품 제조업 2422 - 의약용 약제품 제조, 한의약 조제품 제조, 동물용 약제품 제조	· 개인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한의원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23 - 탈지면, 피복재, 습포제 제조,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치과용 시멘트 및 뼈성형용 시멘트 제조	· 정형외과용품 제조→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243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431 -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소독제 제조, 농약제조, 성장촉진제, 발아억제제 제조, 쥐약제조 등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32 - 페인트 및 바니쉬 제조, 용업용 유약 제조, 인쇄잉크 제조, 회화용 물감 제조 등	· 필기용잉크제조→그외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 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회화용품 제조업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33 - 치약, 비누, 삼푸, 헤어스프레이, 구강위생용품, 콘텍트렌즈 세정액 제조, 분향 제조, 실내용 방향제품,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합물제품 제조업 2434 - 마그네택디스크, 컴팩트디스크, 마그네택테이프 제조, 사진용 화학제품 제조	· 스트립상 또는 칩이 내장된 마그네틱 카드제조→전자카드 제조업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9 - 가공 및 정제염 제조, 방향유 제품 제조,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 점화기, 신호용 조명탄, 폭죽 제조, 그리스(조제) 제조, 활성탄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등	· 양초,성냥제조→연소물제조업 · 포탄, 폭탄 및 기타 무기제조→무기 및 총포탄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44	○화학섬유 제조업 2440 - 합성섬유 제조,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크릴 제조, 폴리에틸렌 제조, 재생섬유 제조, 레이온섬유 제조 등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구입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물질을 사출·압출·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고무제품 제조업 251	ㅇ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2511 - 각종 차량 타이어, 자전거·이륜자동차 타이어 제조, 중고 타이어를 재생	
	ㅇ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 : 원재료가 인조, 천연고무를 사용하여 - 고무봉, 관, 호스 제조, 기계용 고무제품 제조, 고무장갑 제조, 잠수복,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지우개 제조, 고무밴드 제조 등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	ㅇ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	
	ㅇ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비닐벽지 제조,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세면기 제조, 플라스틱 창문 및 문틀 제조, 건축구조재 제조	
	ㅇ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3 - 플라스틱 포대, 플라스틱 봉투 제조, 플라스틱 운반 및 포장용기 제조, 플라스틱 용기 뚜껑·마개 제조	
	ㅇ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4 - 장비 조립용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애자 및 절연용 물품(전부가 플라스틱 재료재) 제조 등	
	ㅇ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 - 플라스틱 스티로폴, 스폰지 제조, 접착용 비닐테이프 제조,플라스틱 인조잔디 제조 등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	ㅇ1차 유리 제조업 2611 - 판유리 제조, 프로파일상 유리 제조	
	ㅇ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2 - 안경유리, 안전유리, 강화유리, 백미러, 판유리가공품 제조, 광학유리생지 제조, 포장 또는 운반용 유리용기 제조 등	·연마 가공한 광학용 유리제품 제조→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ㅇ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19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 식탁용 유리제품 성형제조, 문구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화장실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 등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제조업 262	○일반도자기 제조업 262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 위생용 도자기 제조, 산업용 도자기 제조, 전기용 도자기제품 제조, 전기애자 및 절연제품 제조, 상자 및 케이스 제조, 잉크스탠드 제조 등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2 - 내화벽돌 및 타일 제조, 구조용 내화도자기제품 제조, 건설용 내화도자기제품 제조, 건축용 내화용업제품 제조, 도가니 제조 등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 - 점토벽돌, 블록 제품제조, 지지 타일제조(조적용), 충전용 타일제조(조적용), 건축용 요업제품 제조, 굴뚝용 제품 제조, 연탄난로 라이너 제조, 배관연결구류 제조, 홈통 제조 등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제조→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6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업 2631 - 시멘트 제조, 석회 제조, 플라스터 제조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632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 레미콘 제조,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한 섬유시멘트제품 제조,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블록 제조, 건축용 또는 토목용의 콘크리트관 제조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9	○석제품 제조업 2691 - 석재가공품 제조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2692 - 아스콘 제조,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건설용 아스팔트제품 제조, 지붕용 아스팔트제품 제조 등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99 - 연마재 제조,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활석 분쇄,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 탄소섬유제품 제조 등	·전기용 탄소 및 흑연제품 제조→전기용 탄소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27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 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 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 및 연신·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제1차 철강산업 27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711 - 선철·경철 생산, 1차 형강재 제조, 합금철 제조, 해면철강 제조, 철강분말 제조, 바이메탈용 철강 제조 등	
	○철강압면·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12 - 철강열간압연 제품 제조, 스테인레스강 평판 제조(열간), 합금강 평판 제조(열간), 냉간압연·압출제품 제조, 철강 선 제조, 합금강의 선 제조 등	
	○철강관 제조업 2713 - 주철관 제조, 강관 제조 등	
	○기타 철강산업 2719 - 절단가공 철강재 생산, 절단 철강재 생산, 열처리 강재 생산, 단동강재 제조, 용접형강 제조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상품중개업이나 소매업으로 분류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제1차 비철금속산업 272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 - 동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 납 및 아연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 금·은·백금 등의 귀금속의 제련 및 정련, 합금제조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 - 동 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관 제조, 알루미늄 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관 제조, 주석 판, 시트, 봉 제조 등	
	○기타 제1차 비철금속산업 2729 - 비철금속 피복제품 제조, 비철금속 절단제품 제조(중간재), 표면처리 비철금속재 생산 등	
금속주조업 273	○철강주조업 2731 - 선철주물 주조, 강주물 주조	·주물관 및 관연결구류 제조→주철관제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2732 - 알루미늄주물 주조, 동주물 주조, 비철금속 주조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8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조립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금속압단제품 및 분말야금제품,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조립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임가공 방식에 의하여 금속제품을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1 - 금속제 창문, 철문, 금속제 셔터문, 샤시문 제조, 건물용 금속계단 및 사다리 제조, 건물·교량·철탑에 사용되는 조립구조재 제조,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 금속제 조립식 건물 제조	·이동식 금속제 사다리 제조→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812 -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 금속탱크, 저장조, 금속통, 금속용기 제조	·전기식 가정용 보일러→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3 - 핵반응기(원자로) 제조, 선박용 또는 동력용 증기발생기 제조	·증기기관차 제조→기관차제조업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289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 - 분말야금 제품, 금속단조 제품, 금속압형 제품 제조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892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 금속열처려, 도금, 도장 및 피막처리, 절삭가공 등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893 -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 가위 제조, 칼 및 칼날 제조, 면도날 제조, 손톱깎이 제조, 자물쇠 제조, 열쇠 제조, 카스터 제조, 일반철물 제조, 수공구 제조, 톱 및 톱날 제조(수동식) 등	·수지식 전동톱 제조→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금속파스터, 스프링 및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2894 - 볼트, 너트, 나사 제조, 철망제품 제조, 철망제 발판 제조, 금속케이블 제조, 금속제 못 제조, 금속스프링 제조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99 - 금속 탱크 제조, 금속통 제조, 금속제 병마개 제조, 도로설치용 쓰레기통 제조, 우편함 및 우체통 제조, 금고실문 제조, 금고제조, 아이스크림 조제기 제조, 고기 절단 및 분쇄기 제조, 양념분쇄기 제조, 금속제 세면기 제조, 금속제 목욕통 제조, 도로표지금속판 제조, 교통표지 금속판 제조, 사진틀 제조, 이동식 사다리 제조, 상패·명패·감사패 제조 등	·경기 또는 예술용 트로피, 메달 제조, 귀금속제→귀금속 장신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29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 -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증기기관 제조, 증기터빈 제조, 가스터빈 제조 등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2 - 압축식 엔진 및 모터 제조, 유압식 엔진 및 모터 제조, 펌프 제조, 공기펌프 제조 등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 -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 - 베어링, 기어, 변속기, 플라이 휠, 전동축 제조	
	○산업용 오븐 ,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 - 제빵용 오븐 제조(전기식), 폐기물 소각로 제조, 공업용 가열기 제조, 이화학용 가열기 제조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 - 작업트럭, 에스컬레이터, 이동식 계단 제조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트레일러 제조업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 - 냉동장비, 냉장장비, 산업용 냉장고 제조, 항온/항습기 제조, 공기조절기 제조, 배기장치 제조, 환풍장치 제조, 여과기 제조, 공기 청정기 제조, 정수기 제조, 폐수처리장치 제조, 열 교환장치 제조, 증류기 제조, 정류기 제조 등	·가정용 냉장고 제조→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 - 중량 측정기 제조, 저울 제조, 가스 충전기 제조, 자동판매기 제조, 화폐교환기 제조, 소화기·분사기 제조, 가스킷 제조	·농업분무기 제조→농업용 기계제조업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1 - 레이저응용 절삭기계 제조, 선반제조, 머시닝센터 제조, 연삭기 및 평삭기 제조, 밀링머신 제조, 단조기 제조, 프레스기 제조, 전단기 제조, 펀칭기 제조 등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9 - 용접기 게조, 가스자동절단기 제조, 수지식 전동공구 제조, 전기드릴 제조, 전기 톱 제조, 공작물 조립기 제조 등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293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31 -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탈곡기, 농업용 분무기 제조, 농산물용 건조기 제조, 양봉용 기계 제조, 농업용 관배수 기기 제조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32 - 금속 전기로 제조, 금속 냉/열간압연기 제조, 금속 압연기용 롤러 제조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3 - 불도저, 앵글도저, 굴삭기, 시추기, 항발기 제조, 광물선별기, 광물 세척기, 광물 분리기, 광물파쇄기 제조 등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4 - 낙농품 가공 처리기 제조, 크림분리기 제조, 제분업용 기계 제조, 양조용 기계 제조, 식품용 가열 및 냉각기 제조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2935 - 재봉기, 자수기 제조, 세탁기(세탁소형) 제조, 드라이크리닝기 제조, 직물용 절단기 제조, 편조기 및 직조기 제조, 방적기 및 연사기 제조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6 - 반도체 조립용 장비 제조,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제조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9 - 펄프 및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 고무,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 인쇄기계 제조, 주형 및 금형 제조, 산업용 로봇 제조, 전구제조기 제조, 로프 및 케이블제조기 제조 등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 294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40 - 전차, 폭탄, 탄약통, 비군사무기, 경기용 무기, 공기총, 수렵용 무기, 가스총 제조	· 폭발점화장치 · 뇌관 · 불꽃제품 제조→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5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51 - 전기모포, 전기다리미, 전기보온밥솥, 전기오븐, 전기식 난방기 제조, 전기용 이발기 제조, 전기용 미용기 제조, 세탁기, 환풍기, 선풍기, 진공소제기, 냉장고, 식품용 믹서기 제조 등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952 : 비전기식 레인지 및 기타 유사 조리용 기구, 난로, 화덕 , 가정용 중앙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관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를 제조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0

자동자료처리장비(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를 포함하여 복사기, 등사기, 주소인쇄기, 타자기와 자동타자기,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등록기, 우편요금계산기, 표발행기, 동전의 분류 · 포장 및 계산기, 현금자동인출기, 봉투투입기, 연필 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및 기타 사무용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00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 - 컴퓨터 제조, 노트북 PC 제조,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 컴퓨터 입 · 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 마우스 제조, 스캐너 제조, 사운드 카드 제조, 프린터기 등	· 컴퓨터용 모뎀 제조→유선통신기기 제조업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002 - 복사기 제조, 금전등록기 제조, 우편요금계기 제조, 표권 발행기 제조, 타자기 제조, 현금지급기 제조, 전자계산기 제조 등	· 화폐교환기 제조→화폐교환기 제조업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10 - 전동기, 변압기, 전자코일, 전자변성기, 방전램프용 안정기, 건전지 충전장치, 밧데리 충전기, 아답터 제조 등	
전기공급 · 전기제어장치 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3120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 플러그와 잭 제조, 소켓 및 콘센트 제조, 퓨즈 제조,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	
절연선 및 케이블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 - 절연금속선 제조, 절연금속케이블 제조, 절연광섬유케이블 제조, 절연 코드세트 제조, 절연대 제조	
축전지및일차전지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 - 축전지 제조, 망간 건전지 제조, 리튬 전지 제조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1 - 백열전구, 형광램프, 산업용 · 장식용 전구 제조	
	○조명장치 제조업 3152 - 조명기구, 조명장치, 조명광고판,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	
기타 전기장비제조업 319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제조업 3191 - 플러그, 배전기, 와이퍼, 자전거용 발전기, 차량용 조명용기구 제조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99 -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절연장비,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전기이온정수기 제조 등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

전자부품,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 영상·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321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조업 3211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 전자집적회로 제조, 기억소자 제조 등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9 - 전자관 제조, 라디오 및 텔레비젼수상기용 전자관 제조, 방전관 제조, 인쇄회로판 제조, 전자축전기 제조, 전자저항기 제조, 전자카드 제조, 액정표시장치 제조, 전자총 제조,	· 엑스선관제조→방사선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 - 전화기세트 제조, 컴퓨터용 모뎀 제조, 인터폰 제조, 팩시밀리 제조, 무선전신기 제조, 무선전화기 제조, 텔레비젼 카메라 및 수중 카메라 제조	· 통신위성 제조→우주선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 - 텔레비젼 수상기 제조, 모니터 제조(컴퓨터용 제외), 디지털 텔레비젼 제조, 안테나 제조, 스피커 복합세트 제조, 오디오 제조,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 등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3311 - 의료용 방사선장치를 제조, X선 장치 제조, CT 및 MRI 제조, 심전계 제조, 뇌파계 제조, 혈압측정기 제조 등	· 레이저 발생기 제조→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9 - 치과용기기 제조, 인공장기 제조, 골절치료구 제조, 치과기공소, 보청기 제조, 의치 제조, 의료용 가구 제조, 이미용실용 의자 제조, 치과용 의자 제조, 물리요법용기기 제조, 시력측정기 제조, 주사기 및 주사바늘 제조, 안과용기기 제조 등	· 치과용 시멘트 제조→의료용품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제조업 33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처리 제어장비 제외) 3321 - 항공용 무선기기 제조, 무선원격조절기 제조, 방향탐지용 컴퍼스 제조, 토지측량기 제조, 지구물리학용기기 제조, 제도용 계산용구 제조, 측정용 눈금자 제조, 마이크로미터제조, 전압측정 및 검사기 제조, 전류측정 및 검사기 제조, 저항검사기 제조, 기압계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 택시미터기 제조, 기기용 자동측정기 제조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22 - 습도 측정장치 제조, 가스 및 액체분석 계기 제조, 산업처리 자동조절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장치 제조	
안경, 사진기제조업 333	○안경 제조업 3331 - 각종용 안경제조,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 보호용 안경 제조, 선글라스 제조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32 - 광학용품 제조, 반사경 제조, 콘텍트렌즈 제조, 안경렌즈 제조, 환등기 제조,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카메라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쌍안 확대경 제조, 망원경 제조, 현미경 제조	·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기타 영상제조업
시계제조업 33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40 - 회중시계 제조, 전자시계 제조, 타임스위치 제조, 시계줄 제조(급속제), 시계부품제조	· 가죽제 시계줄 제조→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시계유리제조→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1 : 도로주행차량, 트랙터, 작업트럭 및 장갑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 - 압축·불꽃점화식 내연기과 제조, 왕복식·회전식 피스톤 내역기관 제조	
	○자동차 제조업 3412 : 승용 및 화물용의 각종 자동차를 제조 - 설사용 승용차량, 로프용 차량, 특수목적용 승용차, 대중수송용 자동차, 구급차 제조, 화물자동차, 소방차, 이동방송차, 살포차, 구난차 제조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제조업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 - 자동차 차체제조, 소방차, 기중기차, 농업용 살포차 특장,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 운전대, 냉각 장치, 안전벨트, 연료탱크 등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	· 타이어, 자동차유리 제외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	○선박건조업 3511 - 유조선, 군함, 기상관측선, 예인선, 구명보트 제조, 합성수지선 건조, 비철금속선 건조, 목선 건조, 선박구성부분품제조, 수상 작업대 제조, 해난구조선 제조, 소방선 제조	· 유람용 또는 경기용의 보트, 돛단배 및 카누 건조→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3512 - 유람용 보트, 경기용 선박, 카약, 낚시용 보트 제조	
철도장비 제조업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20 - 객차, 화차 제조, 철도차량 제조, 철도차량부품 제조	· 철도, 궤도노선용 장치물→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업
항공기, 우주선제조업 353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1 - 인공위성 제조, 페러글라이딩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행글라이더 제조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532 - 항공기용 엔진부품, 항공기용 내연기관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9	○모터싸이클 제조업 3591 - 모터사이클 및 부분품 제조, 원동기 장착 자전거 제조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2 - 배달용 삼륜자전거, 신체장애자용 운송장비, 이륜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 미부착)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99 - 손수레, 썰매, 우마차, 바퀴달린 운반용 통 제조	· 유모차 제조→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6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가구제조업 361	ㅇ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1** -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 쇼파제조, 침대겸용 의자 제조	
	ㅇ목재가구 제조업 **3612**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 나전칠기 가구 제조, 등가구 제조, 목재 캐비닛 제조	· 싱크대용 금속부분 만을 제조→금속위생용품제조업
	ㅇ기타 가구 제조업 **3619** - 금속가구 제조, 플라스틱 가구 제조	
기타 제품 제조업 369	ㅇ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 - 귀금속 신변장식용품 제조, 경기용 및 예술용 메달리언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등	
	ㅇ악기 제조업 **3692** - 피아노, 현악기, 하프, 만도린, 바이올린, 기타, 첼로, 전자악기, 국악기, 하모니카, 기타 악기 제조	· 장난감 악기 제조→장난감 제조업
	ㅇ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 - 헬스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놀이터용 장비 제조,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 펜싱용구, 탁구용 기구 제조, 양궁장비 제조, 골프장비 제조, 골프클러브 제조	· 볼링 및 당구용 장비 제조→기타오락용품 제조업
	ㅇ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 - 인형, 장난감, 영상게임기, 비디오게임장비,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바둑 및 장기, 도박게임장비 제조, 볼링 및 당구용구 제조	
	ㅇ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 - 간판제조, 광고물 제조	
	ㅇ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696** - 펜, 크레용, 파스텔, 필기용구, 사무용품, 도장, 필기용 붓 제조	· 사무용종이문구제품→종이제조업, 지우개→고무제품제조업
	ㅇ모조 장신·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7** - 목걸이, 팔지, 브로치, 가발, 가눈썹 제조, 조화 및 모조 장식품,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 교시용 모형, 해부모형, 기념관용 모형 제조 등	
	ㅇ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699** - 회전목마, 유희장용품 제조, 극장용 흥행용품 제조, 우산 및 지팡이 제조,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 담배필터 제조, 비 및 솔 제조, 유모차 제조, 마네킹인형 제조	· 라이터용 심지 제조→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7

수집된 재생재료(폐기물 제외)가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불순물의 혼합 등)인 금속 또는 비금속 웨이스트, 스크랩 또는 제품 등의 재생용 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 형태의 새로운 원료상태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1	○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10 - 감광성 필름에서 은을 비정련상태의 은을 추출, 금속 스크랩(폐창 등)을 수집하여 펠렛 상태로 절단·가공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	○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 - 플라스틱 및 고무 스크랩 및 재생용 종이, 섬유를 수집하여 펠렛 상태로 절단·가공, 폐유리를 수집하여 분상으로 가공처리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41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사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및 온수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전기업 401	○ 발전업 4011 - 열병합 발전, 수력발전소	
	○ 송전 및 배전업 4012 -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전기영업소	
가스제조 및배관공급 402	○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4020 - 연료용 혼합가스·제조가스 생산, 연료용 가스배관공급	·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가스 제조→산업용가스 제조업 · 차량용가스충전소→차량용 연료소매업
증기및온수공급업 403	○ 증기 및 온수공급업 4030 - 온수생산 및 공급, 온천수 생산 및 공급	· 온천수개발(도급)→지반조성공사업 · 광업권임대→부동산임대업
수도사업 41	○ 생활용수 공급업 4101 -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됨	·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관개시설운영→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 하수시설운영업→하수처리업
	○ 산업용수 공급업 4102 - 수용자에게 공업용수 및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 산업용수용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됨	

□ 건 설 업 45~46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 시굴 · 굴착 ·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 재축 · 개축 · 수리 및 보수 ·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 ·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 종합 건설업 45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토목건설업 451	ㅇ지반조성공사업 4511 : 택지조성공사, 공장부지조성공사 및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 · 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ㅇ토목시설물건설업 4512 : 각종 도로건설, 교량, 고가도록 및 지하철, 항만 및 수로, 산업설비 등의 토목시설물(용지제외)을 건설 - 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건설, 교량건설, 철교건설, 수중터널공사, 지하도 건설, 터널건설, 수로건설, 댐건설,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방파제건설, 폐기물처리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산업플랜트 공사, 조경공사, 스타디움공사, 경기장 공사, 상 · 하수도관 공사 등	· 도로건설과 분리된 도로선 표시공사→도장공사업
건물건설업 452	ㅇ주거용 건물건설업 4521 - 단독주택건설, 연립주택건설, 빌라건설, 다층 주거용 건물건설, 아파트건설	
	ㅇ비주거용 건물건설업 4522 - 사무 및 상업용 건물건설, 학교 및 병원 건설, 박물관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공업용 건물건설, 일반창고 건물건설, 차고시설건설, 주유소 건물건설, 동물원용 건물건설 등	

○ 전문직별 공사업 4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토목시설물 및 건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61	○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공사업 **4611**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사방공사, 공업용지 조성정지공사, 굴착·흙 운반 및 땅고르기 공사, 아스팔트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 준설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 묘지개발공급→묘지 및 화장업
	○ 건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612** - 파일박기 공사, 축조관련 부지기초공사, 우물공사, 굴정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발판가설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석조공사, 벽돌조적공사, 판금공사, 지붕잇기공사, 수중건축공사, 건물이전공사(조립식 건물 등)	· 철강 구조재의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건 물 설 비 설치공사업 462	○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620** - 보일러공사, 건물내부 가스설비설치공사, 환기시설공사, 건설 하수시설공사, 배관공사, 방열 및 방음공사,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 미장방수공사→미장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463	○ 전기공사업 **4631** -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소/배전탑 공사	
	○ 통신공사업 **4632** - 경보기 시설공사, 계량기 설치공사, 조명장치 시설공사,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LAN공사, 케이블TV 접속공사	
건축마무리 공사업 464	○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 **4641** - 도장공사, 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도로선 표시도장공사, 도배공사, 실내장식공사, 비닐공사, 장판공사	· 도로포장 활동과 결합된 도로선 표시도장공사→포장공사업
	○ 유리 및 창호공사업 **4642** - 유리공사, 창문의 유리설치공사, 창호공사	
	○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649** -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모자이크공사,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공사,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커튼설치공사	
건 설 장 비 운영업 465	○ 건설장비 운영업 **4650** -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운전자 딸린)	· 운전자 없이 할 경우→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

□ 도매 및 소매업 50~52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으로 구분된다.

○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0

신상품 또는 중고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이들의 부품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자동차 매매중개활동 및 차량용 연료, 윤활유, 냉각제의 소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자동차 판매업 501	ㅇ자동차 신품 판매업 5011 : 신상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소매 -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차량 도/소매, 트레일러 도/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특장차 도/소매, 도로주행용 차량 중개	
	ㅇ중고 자동차 판매업 5012 - 중고 화물차 도/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중고 승용차 도/소매	· 중고자동차매매 운영업체는 모두 해당됨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502	ㅇ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5020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	
이륜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503	ㅇ이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030 - 오토바이 도/소매, 오토바이 부품 도/소매, 이륜차 도/소매, 설상용차량 도/소매	
차량용 연료소매업 504	ㅇ차량용 연료 소매업 5040 - 주유소 운영, 차량용 액체연료 소매, 차량용윤활유 및 냉각제 소매, 차량용 광택제 소매, 차량용 가스충전업, 가스충전소	· 액체연료도매→연료도매업 · 가정용액체연료소매→액체연료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 분류 · 선별 · 분할 · 재포장 · 상표부착 · 보관 ·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 도 매 업 :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입 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광공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
- 상품중개업 :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상품중개업 511	○ 상품중개업 **5110**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 상품종합 중개, 종합무역 중개, 골동품 및 예술품 중개, 철강 및 기계 중개, 섬유 및 의류 중개, 화장품 중개, 귀금속 중개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2**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20** - 곡물도매, 종자 및 묘목 도매, 사료 도매, 화초 및 산식물 도매, 산동물 도매,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누에고치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 산 수산동물 도매→수산물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513**	○ 비가공 식품도매업 **5131** - 과실 및 채소도매, 육류도매, 수산물도매, 벌꿀도매, 미가공 커피도매, 조란도매, 소금, 암염(비가공) 도매	· 캔식품도매→가공식품도매업
	○ 가공식품 도매업 **5132** - 육류가공식품 도매, 수신물 가공식품 도매, 빵 및 과자 도매, 낙농품 도매, 간장 및 케찹 도매, 조미료 및 감미제 도매, 냉동만두 도매, 당면, 냉면, 스파케티 도매, 향신료 도매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5133** - 주류도매, 비알콜음료 도매(과실주스, 탄산음료, 캔음료 등), 담배도매	
가정용품 도매업 **514**	○ 가정용 섬유제품 및 의복 도매업 **5141** -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 셔츠 및 외의 도매, 유아용 의류 도매, 내의 도매,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 의복 엑세서리 도매, 수예품 도매, 수건 도매, 국기 도매, 융단 도매	
	○ 신발도매업 **5142** - 구두 도매, 부츠 도매, 운동화 도매, 짚신 도매	· 등산화 도매→운동도매업
	○ 가전제품 도매업 **5143** - 영상기기 도매, 음향기기 도매, 가정용 냉난방기 도매, 가정용 전열기기 도매, 전자렌지 및 전기밥솥 도매, 전기면도기 도매	
	○ 비전기식 가정용기기 및 가정용가구 도매업 **5144** - 가정용 가구 도매, 가정용 요업제품 도매, 비전기식 주방용품 도매,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 재봉기 도매, 정수기 도매, 유모차 도매, 총포 도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가정용품 도매업 514	○의약품, 화장품 및 비누 도매업 **5145** - 의약품 도매, 정형외과용품 도매, 화장품 도매, 비누 및 세정제 도매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5146** - 종이제품 도매, 은박지 도매, 쇼핑백 도매, 화장지 및 냅킨 도매, 문구용품 도매, 서적·잡지 및 신문 도매, 카렌다 도매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5147** -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 악기 도매,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5149** -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 청소용품 도매, 흡연용품 도매, 파라솔 도매, 양산 및 우산 도매, 칫솔·비·솔·걸레도매, 소화기 도매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 **515**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5151**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 유리 및 창호 도매	
	○철물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5152** - 중앙난방장치, 중앙냉방장치, 배관장치, 보일러, 철물 및 수공구 도매	
	○기타 건축자제 도매업 **5159** - 도료 도매, 벽지 및 장판류 도매,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조립식 건물세트 도매, 칸막이 도매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516**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60** - 철근 도매, 금속관,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 금속광물 도매	·연료용 금속광물 도매→연료 도매업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517**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	
	○화학제품 도매업 **5172** -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 비료 및 농약 도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5173**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 직물 도매, 화약 도매, 폭약 도매, 펄프 도매, 골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 플라스틱 필름 도매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18**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81**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 공작기계 도매, 제지산업용 기계장비 도매, 인쇄 및 제본용 기계장비 도매, 유리 성형기계장비 도매, 플라스틱 성형기계장비 도매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89** -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 통신·정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 밸브도매, 벨트 도매, 펌프 및 공기압축기 도매, 송풍기 및 환풍기 도매, 소화장비 도매	
기타도매업 **519**	○상품 종합 도매업 **5191** - 종합무역상사, 연쇄화사업 종합상품 도매	
	○그외 기타 도매업 **5199** - 그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	

○ 소매업(자동차 제외) 52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 일반 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 등의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종합소매업 521	○ 대형종합 소매업 5211 - 백화점, 회원제 대형할인점, 대형 종합소매업	
	○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12 -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	
	○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5219 - 결혼용품 전문점, 노인용품 전문점 등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522	○ 식료품 소매업 5221 - 곡물 소매, 유류 소매, 수산물 소매, 과실 및 채소 소매, 빵 및 과자류 소매, 건강보조식품 소매, 벌꿀소매, 코코아소매, 반찬소매, 된장 및 고추장 소매 등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5222 - 음료 소매, 담배 소매	
의약품, 의료용 기구 및 화장품 소매업 523	○ 의약품 및 의료용 기구 소매업 5231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 의료용 기구 소매	
	○ 화장품 및 화장비누 소매업 5232 - 각종 화장품 및 화장용 비누를 소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4	○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5241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커튼, 천막, 수건, 방석, 수예품 등), 한복소매, 남녀용 정장 소매, 유아용 의류 소매, 내의 소매,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아동복, 수영복 등), 가발, 모자 및 장갑 소매	· 한복맞춤집→한복제조업
	○ 신발소매업 5242 - 남녀용 정장화 소매, 운동화 소매, 신발끈 소매	· 등산화 소매→운동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5243 - 핸드백 및 지갑 소매,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525	○ 가전제품, 악기, 음반 및 통신기기 소매업 5251 - 가전제품 소매, 악기 소매,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 통신기기 소매	
	○ 가구 소매업 5252 - 등가구 소매, 화장대 소매, 책상 및 걸상 소매, 사무용 소매	
	○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253 -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 우산 및 양산 소매, 이·미용기 소매, 유모차 소매, 총포 소매, 돗자리 소매(직물제품 제외)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기타 상품 전문소매업 526	○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5261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 벽지 및 장판류 소매, 광탄제 소매, 단열제 소매, 벽돌, 타일, 대리석 소매, 거울 및 액자 소매 등	
	○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5262 - 서적 및 잡지류 소매, 문구용품 소매	
	○ 사무용 기기, 컴퓨터 및 정밀기기 소매업 5263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 사무용 기기 소매, 안경 소매,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	
	○ 운동 및 오락용구 소매업 5264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 자전거 및 개인용 운송장비 소매,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65 - 시계 소매, 금·은 세공품 소매,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66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	
	○ 가정용 연료 소매업 5267 -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 액체연료 소매, 가스연료 소매	
	○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69 - 화초 및 산식물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수석점	
중고품 소매업 527	○ 중고품 소매업 5270 - 중고가구 소매, 중고 가전제품 소매, 중고 악기 소매, 저당물 소매	· 중고자동차, 이륜자동차 소매→중고자동차 판매업
무점포 소매업 528	○ 통신판매업 5281 - 전자 상거래업, 인쇄물 광고 소매, 카다로그 소매, 전화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5282 - 일정한 구역내에서 임시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소매	
	○ 기타 무점포 소매업 5289 - 자동판매기 운영(담배, 커피, 음료, 라면 등), 계약배달 판매(신문, 우유 및 요구르트, 식품배달 등), 방문판매(화장품 방문판매, 정수기 방문판매,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판매)	· 자동사진기 운영→인물사진촬영업 · 자동세탁기 운영→세탁업

□ 숙박 및 음식점업 55

- 숙박업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레,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숙박업 551	○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5511 - 호텔업, 여관 및 여인숙, 모텔, 휴양 콘도운영(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회사전용 휴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 산장 및 방가로 운영, 민박시설 운영, 유스호스텔 운영, 야영장 운영	
	○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5519 -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일반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특정회사 및 단체의 소속원을 대상으로 숙식을 함께 제공) · 학교기숙사 운영 - 숙식 제공을 위주로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	·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독서실 운영업
음식점업 552	○ 일반음식점업 5521 - 한식점 : 설렁탕집, 냉면집, 회집(일본식이 아닌) 등 - 중국음식점 : 중국식 음식을 제공 - 일본음식점 : 초밥집(일식전문점), 일식 회집, 로바다야끼 - 서양음식점 : 레스토랑(서양식) - 기관 구내식당 : 회사 구내식당 운영, 학교 구내식당 운영 - 기타 일반 음식점 : 연회장 출장요리 제공업, 행사장 단체 급식 제공	· 자장면전문점→분식전문점 ·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회센터 및 복집→한식점업 ·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운송·공급하는 활동→기타 식료품제조업
	○ 기타 음식점업 5522 - 피자, 햄버거, 치킨 음식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 간이휴게식당 운영	
	○ 주점업 5523 - 일반유흥주점업 : 요정, 룸싸롱, 한국식·서양식 접객주점 - 무도유흥주점업 :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클럽 - 간이주점업 : 소주방, 막걸리집, 호프집, 토속주점	· 무도장, 콜라텍 및 댄스교습소 운영→무도장운영업
	○ 다과점 5524 - 제과점, 떡집, 찻집, 다방, 커피숍	

□ 운 수 업 60~63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
-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여행알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철도운송업 601	○철도운송업 6010 - 도시간 철도운송, 철도여객운송(도시간), 철도화물운송(도시간), 관광열차운영	
육상여객운송업 602	○도시 정기육상 여객운송업 6021 : 도시 및 근교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 - 지하철운송, 시내노선 버스운송, 농어촌버스운송, 마을버스운송,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공항버스 운영	
	○시외버스 운송업 6022 - 고속버스 운송, 직통 여객버스 운송, 도시간 정기여객 운송, 시외 정기노선버스 운송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023 - 택시운송, 승용차임대(운전자 딸림), 리무진운송, 전세버스 운송, 장의차량 운영, 케이블카 운송, 동물견인차량 운영, 인력견인차량 운영	· 앰블런스 운영→구급차서비스업 ·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기타 오락관련 산업
도로화물 운송업 603	○화물자동차 운송업 6031 - 자동차견인, 용달·개별화물차, 중형·대형특수 화물자동차 운송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6032 - 동물·인력견인 화물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차량 운영	· 포터 및 지게 등 인력에 의한 수화물 운반→기타 서비스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604	○파이프라인 운송업 6040 - 원유, 천연가스, 정제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운송	· 가스 및 수도를 소비자에게 배관공급→가스 및 수도공급업

○ 수상 운송업 61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해상운송업 611	○외항운송업 6111 - 외항여객 정기운송, 유람선운영(외국항로), 외항여객선박 임대(승무원 딸림), 외항화물 정기운송, 외항콘테이너 선박운송	
	○내항운송업 6112 - 내항 정기여객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 유람선운영(국내항간), 내항 정기화물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운송	· 항만내의 화물 및 여객운송→항만내 운송업
	○기타 해상운송업 6113 - 예인선운영	· 내륙수로상의 예인선운영→기타 내륙수상운송업 ·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수상운송 지원서비스업
내륙수상 운송업 612	○내륙수상 운송업 6120 - 유람선운영(내륙수상), 내륙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림), 내륙수상택시운영, 내륙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림), 항만내 여객운송, 항만내 화물운송, 항만내 유람선업	· 오락용 보트임대→수상오락서비스업 · 항만내 화물취급→화물취급업

○ 항공 운송업 62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정기항공 운송업 621	ㅇ정기항공 운송업 6210 - 항공여객운송(정기), 항공화물운송(정기)	
부정기항공 운송업 622	ㅇ부정기항공 운송업 6220 - 우주선운행, 운송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림), 항공화물·여객운송(부정기)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화물취급업 631	ㅇ화물취급업 6310 - 항공·육상·철도화물 하역, 수상화물 하역	·항만내 운송→내륙수상운송업
창고업 632	ㅇ창고업 6320 - 보통창고운영,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냉장 및 냉동창고 운영, 농산물 보관(냉동), 곡물창고, 위험물품보관, 주류보관창고운영, 차량보관소 운영, 목재하치장 운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633	ㅇ여행사업 6331 - 일반 및 국제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ㅇ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6339 - 관광안내소, 카풀체계운영, 매표대리, 숙식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9	ㅇ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1 - 철도차량 정류장·터미널 운영, 철도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트럭 터미널시설 운영, 유가 고가도로 운영, 주차장운영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창고업 ·자동차 세차장운영→자동차세차업
	ㅇ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6392 -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도선업, 수로안내 및 정박서비스, 등대운영, 운하운영, 선박의 경상적 수리 및 유지, 선박구난 및 인양 서비스	·선박소독 및 해충구제 서비스→소독 및 구충서비스업 ·선박 및 유조선 청소→산업설비청소업
	ㅇ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6393 - 항공터미널 시설운영, 비행장 운영업,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점검, 항공기 관제서비스	·무선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무선통신업
	ㅇ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99 -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해운대리점, 관세사업, 항공운송 대리점, 화물포장(운송관련), 화물검수(운수관련), 동물운송관리 서비스, 가축운송관련 서비스, 선박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 매매 알선	·일반상품 및 제품의 포장→포장 및 충전업 ·계량서비스→물품계량 및 견본 추출업

□ 통 신 업 64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 사설 소포송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자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우편 및 소포 송달업 641	○ 우편업 6411 - 우체국	· 우편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되는 우편지로 및 우편저축 등의 기타 금융활동→저축기관
	○ 소포 송달업 6412 - 항공소포배달, 퀵 서비스, 지역내 소화물 송달업, 상품배달, 꽃 배달, 편지배달	
전기통신업 642	○ 유선통신업 6421 -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 국제전화, 유선 전신 및 전보	· 온라인 검색망 운영→기타 전기통신업
	○ 무선통신업 6422 - 이동전화사업, 개인휴대전화(PCS)사업, 무선전신서비스, TRS사업, 운송장비 전화사업, 무선호출운영	
	○ 기타 전기통신업 6429 -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온라인 통신망 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 레이더 서비스, 방송전송서비스, 미사일유도 서비스, 통신위성 지구국 운영, 통신중계서비스, 통신위성 운영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제공→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금융 및 보험업 65~67

○ 금 융 업 65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각종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통화금융기관 651	○ 중앙은행 6511 - 한국은행	
	○ 일반은행 6512 -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금융업무를 하는 농협, 수협, 축협, 외국은행지점, 국제기구은행지점	·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여신금융업
비통화금융기관 659	○ 저축기관 6591 -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상호금융, 상호신용금고, 체신예금, 어음할인기관	· 보험 및 연금기금운영→보험 및 연금업
	○ 여신금융업 6592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카드금융, 할부금융업, 소비자금융업, 금융리스 서비스, 단기신용서비스, 전당포, 증권금융, 여신기관(파이낸스), 종합금융	
	○ 투자기관 6593 - 투자신탁회사, 뮤츄얼펀드 조성 및 관리, 밴처캐피탈, 모험투자	
	○ 그외 기타 금융업 6599 - 국민주택기금, 증권안정기금, 공공기금관리(연금, 보험 제외), 금융시장 안정기금, 음악저작권 관리, 금융지주회사, 저작권 및 특허권 구매 및 대여, 비금융 무형재산권 구매 및 관리	· 신용보증기금운용→비생명보험업 · 특허권, 저작권 등의 중개→사업 및 무형재산권중개업

○ 보험 및 연금업 66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보험 및 연금업 660	ㅇ생명보험업 6601 - 생명보험, 개인연금, 개인상해보험	
	ㅇ연금 및 공제업 6602 - 군인공제, 교원공제, 건설공제, 주택공제,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ㅇ비생명보험업 6603 - 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물보험, 철도사고보험, 항공사보험, 도난보험, 재정보증보험, 수출보증기관, 기술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업	
	ㅇ사회보장 보험업 6604 - 의료보험업, 실업보험, 산재보험	
	ㅇ재보험업 6605 - 생명보험 재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7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	ㅇ금융시장 관리업 6711 - 증권시장감독 서비스, 은행감독 서비스, 보험감독 서비스,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거래소	
	ㅇ증권 및 선물 중개업 6712 - 증권거래 대리 또는 중개, 선물중개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ㅇ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9 - 어음교환 서비스, 금융상품 교환 서비스, 투자자문업, 외국환 서비스, 금융자산 중개, 대부중개 서비스, 환전서비스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72	ㅇ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720 -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손해사정사무소, 손실평가 서비스, 보험 및 연금요율 결정, 보험 및 연금 상담, 보험조사 보고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업 70~71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부된다.

○ 부동산업 70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01	ㅇ부동산 임대업 7011 -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오피스텔임대, 상점임대, 시장건물임대, 공업용건물임대, 점포임대, 극장임대, 전시실임대, 토지임대, 광업권임대, 지상권임대, 이동주택용지임대	·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건물건설업 · 호텔, 여관, 야영시설 운영→숙박업
	ㅇ부동산 공급업 7012 - 건물매매, 토지매매, 광산용지개발 판매	· 묘지분양→묘지 및 화장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702	ㅇ부동산 관리업 7021 -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아파트관리사무소, 사무용 건물 관리사무소	· 사업시설 유지관리→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ㅇ부동산 중개 및 감정업 7022 - 토지판매 중개서비스, 부동산판매대리업, 건물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중개업, 토지임대중개업, 부동산 감정평가사무소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1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운 송 장 비 임대업 711	ㅇ승용자동차 임대업 7111 - 리무진, 고급차, 장의차, 승객용 밴 임대	· 버스임대→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ㅇ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112 - 컨테이너, 트레일러, 화물자동차, 모터사이클, 철도차량, 캠핑차량, 버스임대, 선박임대, 상업용 보트임대, 항공기 임대	· 승무원이 딸리면→수상 및 항공운송업 · 놀이요보트임대→수상오락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ㅇ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1 -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운전자 없이), 용접장비 임대	· 운전자 딸리면→건설장비 운영업
	ㅇ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2 - 팩시밀리, 복사기, 사무용가구, 현금등록기 임대, 회계기계장비 임대,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임대	· 컴퓨터, 사무용 기계장비의 유지 및 수리→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ㅇ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9 -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임대, 영화촬영 임대, 도박기계 임대, 통신장비 임대, 동전조작식 오락기 임대, 연극공연용품 임대 등	·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	ㅇ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 -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 서적 임대, 의류 임대,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기기 임대, 휠체어 임대, 화분임대, 장신구 임대	· 영화용필름임대→영화배급업 · 물놀이기구임대→수상오락서비스업

□ 사업 서비스업 72~75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라한 사업 서비스가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1	ㅇ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10 - 컴퓨터응용 설계(CAD)시스템 통합설계, 근거리통신망(LAN)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2	ㅇ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20 -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응용소프트웨어 제작·지원·분석·설계(주문형), 시스템 및 운영소프크웨어 제작(범용성)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관리업 723	ㅇ자료처리업 7231 - 자료입력처리, 천공처리, 컴퓨터 입력카드, 자료전환처리서비스, 컴퓨터 시간안내	·컴퓨터임대→컴퓨터임대업 ·컴퓨터 유지 및 수리→컴퓨터기기 수리업
	ㅇ컴퓨터시설 관리업 7232 - 고객의 컴퓨터시스템 및 자료처리시설을 관리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 724	ㅇ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40 - 온라인검색정보제공, 온라인정보제공(IP), 자동응답 전화정보제공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729	ㅇ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90 - 컴퓨터 플라자 운영(게임위주가 아닌 것), 컴퓨터 장애복구	·컴퓨터게임방→컴퓨터게임방 운영업

○ 연구 및 개발업 73

- 기초연구 :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기초 탐구
- 응용연구 : 실용적인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기초 탐구
- 실험개발 : 제품 및 공정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및 기타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작업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1	ㅇ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10 - 물리, 화학, 생물학 연구, 농학 연구, 의학 및 약학 연구, 공학 및 기술 연구,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수학 연구 등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32	ㅇ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320 - 경제학 연구 개발,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예술, 문화학, 철학, 법학, 군사학, 언어학 연구 등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74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1** - 변호사 사무, 소송대리인, 공증변호인, 소송사건 법률상담, 노사간 중재 서비스, 변리사 사무, 특허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법무사 사무, 공탁증서 작성, 사법기관 제출서류 대리작성, 행정서류작성 대행, 여권서류작성, 대서사무(행정관련)	·편지 및 일반문서 작성 대행→문서작성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412** -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회계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사무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74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1** - 여론조사, 소비구매습관조사, 상품인기도조사	
	○사업 및 경영 상담업 **7422** - 공공관계(PR) 자문, 홍보서비스, 로비활동, 정치자문, 일반경영 자문, 전략기획 자문, 인력관리 자문, 교과과정 상담, 시험출제 및 평가, 교환학생프로그램 운영	
	○지주회사 **7423** -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영향력만 행사하는 사업체	·금융지주회사→기타 금융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1** - 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 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건물 엔지니어링, 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부지평가, 기계설계, 전기·전자·지질·해양엔지니어링, 교통공학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4**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1** - 물리시험 및 분석, 기술검사 및 분석, 성분, 순도측정 및 분석, 식품검사, 화학물 성분 검사, 환경요인 측정·분석, 대기오염 측정·분석, 금속·광물 분석, 자동차 품질검사, 댐검사, 장비 종합검사, 용접검사	·의료 및 치과병리실험→병원 ·차량의 수리 및 유지서비스→차량수리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49** - 지형측량서비스, 수로측량서비스, 설계도면작성, 청사진 제도, 건축설계 제도, 지질조사, 지구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지도제작,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스	
광고업 **745**	○광고대행업 **7451** - 인쇄매체 광고대행, 전파매체 광고대행	
	○기타 광고업 **7459** - 옥외광고, 광고탑임대, 차량간판광고, 광고매체 구매대리, 광고판매대리, 광고물 작성, 상점 창유리 장식, 마네킹 장식, 광고물 배포, 우편광고물 배포	·비전기식 옥외광고물 제조→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토목시설물건설업
전문디자인업 **746**	○전문디자인업 **7460** - 실내장식디자인, 실내장식자문 서비스, 자동차, 가구, 모형,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자문서비스, 상업미술, 그래픽디자인, 기업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무대, 보석, 구두, 의류, 섬유 및 직물 디자인	·만화영화제작→만화영화제작업 ·만화 및 시각예술을 제작하는 자영예술가→비공연예술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9**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1** - 초상화 촬영, 행사 비디오 촬영, 여권사진촬용, 학교사진촬영, 상업용사진촬영, 사진인화서비스, 슬라이드제작 서비스, 사진처리 서비스	·텔레비젼 및 영화산업에 관련된 영화필름 현상→영화제작 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99**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보존서적 방부처리 서비스, 수화서비스 제공	

○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사 업 시 설 유 지 관 리 및 고용 서 비스업 751	ㅇ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1 -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 부동산 관리 제외
	ㅇ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2 - 인력파견업체, 개인 및 가사인력공급, 간호인력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알선, 영화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기타 사업 지원 서비 스업 759	ㅇ경비 및 탐정업 7591 - 홍신소, 사설탐정서비스, 필체감정, 지문검사 서비스,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경비업, 순찰활동, 경호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귀중품운반,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 경보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	· 신용조사 및 채무자 추적서비스→신용조사 및 수금대리업 ·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ㅇ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7592 - 건물 해충구제서비스, 선박 소독 및 살균서비스, 화장실 위생소독 서비스, 훈증소독 서비스, 건물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수영장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컴퓨터실 청소, 선박 청소	· 농작물 해충구제→작물 생산 관련 서비스업 · 공공장소 청소→공공장소청소서비스업
	ㅇ포장 및 충전업 7593 - 상표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가스 주입, 의류 포장	· 운수에 관련된 화물 포장→화물포장업
	ㅇ사무지원 서비스업 7594 - 문서작성, 텔레마케팅 서비스, 복사업	
	ㅇ그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 - 계량증명소, 상품견본 추출대리, 지적재산권 감정 및 알선, 사업체 합병 알선 및 자문, 외상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산업박람회 기획, 패션쇼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문화행사 기획, 유명인사 매니저, 모델 매니저,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 과학 및 문화전시관 운영→박물관 운영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가 포함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 761	○일반공공행정 7611 - 국회, 시의회, 도의회, 군의회, 구의회, 청와대, 총리실, 시청, 도청, 군청, 읍·면·동사무소, 국무조정실, 감사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법무부,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기관 일반 보조행정 7612 - 정부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 조달청, 국정홍보처, 법제처	· 공무원 교육 및 연수기관 →직원훈련기관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762	○사회서비스 관리행정 7621 - 교육부, 시·도교육청,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보훈처	· 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 박물관→박물관운영업 · 보건소·의료기관→의료업
	○노동 및 산업진흥 행정 7622 - 노동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정보통신부, 광업진흥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외무 및 국방 행정 763	○외무행정 7631 - 외교통상부	
	○국방행정 7632 - 육·해·공군, 국방부, 병무청	· 군사대학→교육기관 · 군사병원→의료업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764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7640 - 법원, 검찰,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구급대,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	
사회보장행정 765	○사회보장 행정 7650 - 실업보상행정, 가족 및 아동보호 보장행정, 노령자 및 무능력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 사무	· 사회보장보험운영→사회보장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 80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성인 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초등 교육기관 801	○ 유아교육기관 8011 - 유치원	· 보육원 및 탁아기관→보육시설
	○ 초등학교 8012 -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등 교육기관 802	○ 일반 중등 교육기관 8021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8022 - 상업고등학교, 정보산업 고등학교, 컴퓨터관련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	
고등 교육기관 803	○ 고등 교육기관 8030 -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방송통신 대학, 과학기술대학, 기술대학,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간호대학, 교육대학, 대학원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4	○ 특수학교 8041 - 초·중·고교를 포함하여 농아, 맹아, 정신박약자 등 정신 및 신체 장애자를 교육하기 위한 각급 교육기관	
	○ 외국인 학교 8042 - 초·중·고교를 포함하여 주한 외국인의 교육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각급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 809	○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1 - 컴퓨터 학원, 직원 훈련기관(공무원교육훈련, 기업 직원훈련시설) 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 비서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8092 - 운전학원(자동차, 중장비, 항공, 선박 등), 통신기술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 일반 교습학원 8093 - 입시학원, 고시학원, 일반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방문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 교육	
	○ 그외 기타 교육기관 8099 -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예술입시학원, 모델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체육전문강사 교육, 체육 입시학원	· 시설없이 운동 강습하는 서비스→경기전문 종사업 · 무술교육시설→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86

의료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 활동이 포함된다.
- 의료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수의업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
  정부 또는 비 정부기관에서 조성한 이전지출기금 또는 자선기금에 의하여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복지시설 또는 비 수용복지기구를 말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의료업 851	○병원 8511 :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8512 :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미생물성분분석→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공중보건 의료업 8513 -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업 8519 - 조산원, 산후조리원, 침구 등의 유사 의료행위, 구급차 서비스업, 혈액은행, 장기은행, 의무기록 서비스, 독립적인 간호사	
수의업 852	○수의업 8520 - 애완동물 치료, 동물병원, 수의관련 실험 서비스	· 동물사육 관련 서비스→축산관련 서비스업
수용 복지시설 861	○노인수용 복지시설 8611 - 양로시설, 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전용주택 임대→부동산 임대업
	○심신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8612 - 신체장애인 수용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수용복지시설, 약물남용자 수용복지시설, 마약중독자 요양시설, 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	
	○기타 수용복지시설 8613 - 영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윤락녀 보호시설, 피해여성 보호시설, 부랑인 수용복지시설	· 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심신장애인 수용복지시설
비수용 복지시설 862	○보육시설 8621 -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 아동교육기관→유아교육기관
	○기타 비수용 복지사업 8629 - 부랑자 직업재활원, 직업재활 상담, 장애자지원 봉사단체, 노인지원 봉사단체, 유아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상담시설, 복지관련 전화상담서비스, 재난구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무료급식소, 입양알선기관	· 수용재활원→심신장애인 수용복지시설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7~88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 서비스;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활동;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뉴스제공, 운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7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영화산업 871	ㅇ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1** - 극 비디오제작, 극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 제작, 뮤직 비디오 제작,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홍보영화 제작, 공익광고 영화제작, 텔레비젼 쇼 제작, 텔레비젼 프로덕션	· 라디오프로그램 제작→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채널에 의한 유선 및 위성프로그램공급→유선 및 위성방송업
	ㅇ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8712** - 일반 또는 광고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및 복제, 더빙, 필름검사 등의 서비슬 독립적으로 수행	· 영화필름 이외의 오디오, 비디오 원판복제→기록매체 복제업
	ㅇ영화 배급업 **8713** - 비디오 배급, 텔레비젼프로그램 배급	· 일반대중을 상대로 비디오를 임대→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ㅇ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14** - 실내 영화관, 영화패스티벌 상영, 자동차 영화관, 야외 영화관, 비디오 방	· 영화관 등의 상영장을 임대→부동산 임대업
방송업 872	ㅇ공중파 방송업 **8721**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젼 방송	·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의 전송활동→기타 전기통신업
	ㅇ유선 및 위성방송업 **8722** -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위성방송	· 유선방송의 전송활동→기타 전기통신업
공연산업 873	ㅇ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1** :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 - 극장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녹음시설 운영	·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ㅇ공연단체 **8732** -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극단, 무용단, 국악단체, 발레단, 밴드, 포크댄스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 독립적인 자영연예인 활동→자영 예술가
	ㅇ자영 예술가 **8733** - 탤런트, 마술가, 성우, 저술가, 만화가, 작가, 프로듀서, 조각가, 화가, 영화감독, 사진감독, 디자이너, 작곡가, 작사가	· 상업미술가→전문디자인업
	ㅇ공연관련 산업 **8734** - 공연기획,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배경 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설비 설치 운영, 무대예술 운영,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연예인 매니저업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뉴스제공업 881	○ 뉴스제공업 **8810** :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리포터, 뉴스사진 등을 공급 - 뉴스공급, 뉴스사진 공급	·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882	○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8821** -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매체 보존소, 책 기록보존소, 독서실 운영	· 각 기관의 직원 전용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숙박형 도서실→숙박업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2** -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	·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예술품소매업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 식물원 및 동물원, 자연공원, 휴양림 운영, 자연보존원, 야생생물보존구역관리	·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애완용동물소매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883	○ 경기장 운영업 **8831** :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 - 실내경기장 운영(농구, 배구, 권투, 유도, 레슬링, 태권도, 씨름, 수영 등), 실외경기강 운영(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경륜장, 경마장, 투우장, 자동차 경주장	·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발행소→도박장운영업
	○ 경기전문 종사업 **8832** : 동물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를 주관, 개최 및 장려하는 경기 후원단체의 산업활동, 프로 및 실업팀을 운영하는 활동, 심판, 시간기록재원, 직업선수, 코치, 트레이너 등 자영 체육인의 산업활동 -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프로농구단, 실업경기단체, 스포츠행사 기획자, 시설이 없는 운동강습업체, 경마 및 경주견의 훈련활동	· 경기용 장비임대→경기용품 임대업 · 해수욕장 운영→수상오락 서비스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8833** - 골프장 운영, 스키장 운영	· 골프연습장, 눈썰매장→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8839**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수영장 운영(관람석이 없는), 볼링장, 당구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야구연습장	· 무도장→무도장운영업 ·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경기장→경기장운영업 · 오락용사격장→오락장운영업
기타 오락관련사업 889	○ 오락장 운영업 **8891** - 전자게임장 운영,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인터넷 게임방, PC게임방, 노래방 운영, 유령의 집(관람장), 오락사격장, 모형관람시설, 목마임대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8892** - 해수욕장 운영,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오락용 낚시배 운영, 오락용 보트임대(물놀이시설 내),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8899** - 무도장 운영(무도장, 댄스교습소, 댄스홀, 콜라텍),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체육공원 운영, 시민공원, 시립공원, 기원 운영, 도박장 운영, 복권판매, 천연동굴 관리 운영, 전망탑 운영, 숙박시설 없는 청소년 수련원	· 자전거·물놀이기구 임대→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0~93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원단체,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처리업 901	ㅇ하수처리업 9011 : 하수를 수집, 처리, 방류하는 하수도관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을 운영 - 하수펌프장, 하수도관시설 운영	· 산업폐수처리시설운영→폐기물처리업
	ㅇ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12 - 정화조 청소업, 화장실 운영,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제조→비료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2	ㅇ폐기물 수집 운반업 9021 - 무해 고체폐기물 수집운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무해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 병원폐기물 수집운반	
	ㅇ폐기물 처리업 9022 - 무해폐기물 소각로, 무해폐기물 매립장, 무해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의료적출물 처리, 건축물 폐기물 처리	
	ㅇ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9023 - 폐기대상인 방사성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 903	ㅇ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 9030 - 거리청소 서비스, 도로청소 서비스, 제설 서비스, 활주로 청소, 해수욕장 청소	·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 →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 회원단체 91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11	ㅇ산업단체 9111 - 제조업자 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 단체, 무역협회, 지역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민단체, 대한병원협회	
	ㅇ전문가 단체 9112 - 전문가 단체, 특정 직업인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학회, 예술인 단체	
노동조합 912	ㅇ노동조합 9120 -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단위의 노동조합,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기타 회원단체 919	ㅇ종교단체 9191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의 중앙종단, 지역종단, 포교소 등	
	ㅇ정치단체 9192 -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 선거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인권옹호단체, 평화 옹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ㅇ그외 기타 회원단체 9199 - 자선단체, 장학기금운영단체, 동교적 성격의 기부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재향군인협회, 청소년단체(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동호인 단체(사진클럽, 원예클럽 등)	· 전문가 단체→전문가 단체

○ 수 리 업 92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기계장비 수리업 **921**	○일반 기계 수리업 **9211**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조립금속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 농림 및 축산용 기계수리, 금속제 드럼 재생, 선박부품 수리, 항공기 부품수리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12**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컴퓨터시설 경영관리→컴퓨터시설관리업 ·텔레비젼, 라디오 등 가정용 통신장비수리→가전제품수리업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수리업 **922**	○자동차 수리업 **9221** - 자동차 정비소,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카센타,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 자동차 세차업, 동전식 세차장 운영,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차량 왁스처리, 윤활유 교환 서비스	
	○이륜자동차 수리업 **9222** - 이륜자동차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3**	○가전제품 수리업 **9231** -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통신기기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수리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39** - 신발, 직물제품, 가죽제품, 가방, 지갑, 핸드백, 의복, 시계, 악기, 귀금속 제품, 가정용 철물, 보일러, .가정용 가스기기, 재봉틀, 가구, 카메라, 운동기구, 자전거, 가정용품 종합수리	

○ 기타 서비스업 93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미용, 욕탕 **931**	○이용 및 미용업 **9311** - 이발소, 이용원, 미장원, 화장술 제공업, 뷰티살롱, 손·발 관리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312** -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마사지업, 다이어트센터, 체중감량센터, 휴게텔, 산소방, 불가마 등	·지압치료→유사 의료업
그외 기타 서비스업 **939**	○세탁업 **9391** - 드라이크리닝, 동전조작 세탁기 설치운영, 세탁물 수집 및 배달 서비스, 섬유 및 모피제품 세탁,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공급업	·직물, 의복제품 염색처리→섬유염색업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임대→의류임대업
	○장의 및 묘지 관리업 **9392** - 장의사업, 장례식장, 공원묘지 분양, 화장터 운영,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종교시설의 장례의식 서비스→종교단체
	○그외 기타 서비스업 **9399** - 실내예식장, 야외예식장, 점보는 집, 무당, 심령술업,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인, 구두닦기, 대리 시장보기, 문신서비스, 수하물보관소, 결혼상담소, 대리운전, 열쇠복사	·개인여행안내→여행지원서비스업 ·조산원→기타의료업

□ 가사 서비스업 95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개인 가사서비스,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의 산업활동으로 구분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가사서비스업 **950**	ㅇ가사서비스업 : 가정에 고용된 **9500** - 개인 가사서비스,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	· 인력을 공급, 감독하는 사업체→인력공급업

□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및 기타 외국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된다.

구 분	"주 된 사 업 내 용" 기입요령	비 고
국제 및 외국기관 **990**	ㅇ국제 및 외국기관 **9900** -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기타 외국지역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 외국공관 등	· 해외 및 국제기구 사무처 또는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 및 영사기관의 관리와 운영→외무행정

직 업 분 류

찾 아 보 기

경영관리자 / 65
- 기업고위임원
- 정부행정부서
- 생산 및 운영부서
- 부서 관리자

일반관리자 / 65

컴퓨터 관련 종사자 / 65
- 전문간
- 준전문가

선생님 / 66
- 대학
- 교사
- 강사
- 개인지도

가사·청소·환경미화원 / 66
- 가사원
- 청소·세탁원
- 환경미화원

사무원 / 67
- 일반사무
- 기획·홍보
- 판매관련
- 계산사무
- 자재·생산·운송
- 사무지원
- 도서·우편·교정
- 대금수납·금전출납
- 안내·접수
- 고객상담

운전원 / 68
- 철도
- 자동차
- 건설·이동차량
- 선박갑판승무원

고객을 직접 상대로 일을 하는 자 / 68
- 개인보호
- 이·미용
- 시중서비스
- 장례 관련
- 오락·여가
- 결혼·점술

음식조리·서비스 종사자 / 69
- 음식조리
- 음식을 나르거나 주문접수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 69
- 운송수행
- 여행안내

판매 종사자 / 69
- 도매 판매원
- 소매 판매원
- 소매방문·이동판매

통신판매·모델·홍보 종사자 / 70
- 통신판매
- 모델·홍보원

건물관리·경비 종사자 / 70
- 건물관리
- 경비

배달·운반·검침 종사자 / 70
- 배달·운반
- 계기검침
- 자동판매기

운반인부·하역종사자 / 70
- 건설관련
- 운수관련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 71
- 농업
- 임업
- 어업

공무원·군인 / 71
- 공무원
- 군인

일반적인 직업명칭으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쉽게 알수 있는 것(전문가) / 72

○ **정치 / 72**
- 의회의원
- 정당

○ **전문가 / 72**
- 자연과학
- 생명과학
- 사회과학
- 건축공학
- 측량

○ 보건·의료 / 72
- 전문의사
- 일반의사
- 약사
- 간호 및 조산원
- 치료전문가
- 영양전문가
○ 경영·재정 / 72
- 회계관련
- 금융·보험
- 사업서비스
○ 법률·종교 / 72
- 법률
- 사회서비스
- 종교
○ 문화·예술·방송 / 72
- 기록·사서
- 작가관련
- 창작·예술
- 영화·연극·방송
일반적인 직업명칭으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쉽게 알수 있는 것(준전문가, 또는 기술종사자) / 73
○ 의료·방송 기술종사자 / 73
- 광학·녹화장비 기술
- 방송·통신장비 기술
- 의료정비 기술
○ 선박·항공기 조종사 / 73
- 선박기술
- 항공기술
○ 보건·의료 준전문가 / 73
○ 경영·재정 준전문가 / 73
- 금융·보험
- 판매
- 상품중개·사업서비스
○ 사회서비스·종교 / 73
- 사회서비스
- 종교
○ 예술·연예·경기 준전문가 / 73
- 예술·연예
- 운동·경기
○ 기타 준전문가 / 73
- 관리
- 법률
- 의료사무
○ 보안서비스 종사자 / 73
- 경찰
- 소방·응급구조원
- 교도·보도 종사자
- 기타 보안(청원경찰 등)
단순노무종사자 / 74
○ 농림어업 관련 / 74
○ 제조 관련 / 74
○ 광업 관련 / 74
기술계통 / 74
○ 기술자 / 74
○ 기술공 / 74
○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가나다순) / 75
○ 고정기계장치원(가나다순) / 82
○ 기계조작원(가나다순) / 85
○ 조립원(가나다순) / 89

□ 경영관리자와 일반관리자 (종사원 규모에 의해 구분)	- 관리자는 해당 사업체 및 부서 경영방침과 활동을 기획·조정하는 자 임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 경영관리자 : 관리자 3인이상인 사업체인 경우(부서, 팀이 있음)		
○기업 고위 임원 0210	· 경영방침 결정과 활동을 기획, 조정 예) 회장, 사장, 대표이사, 대학교 총장	· 관리자수가 3인이상인 사업체의 경우에 해당 · 3인미만인 경우→일반관리자
○정부행정부서 0220	· 업무를 기획, 지휘, 조정 예) 국장	· 산업분류 대분류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분류된 자
○생산 및 운영부서 023	· (관련)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등으로 산업을 반드시 표기 - 다만, 산업분류 항목에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을 표기하지 않아도 됨 예) 대학교 학장, 교장, 병원장	· 관리자가 3인이상인 사업체에 해당 · 산업분류 참조 예)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광공업생산부서 관리자,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도소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금융 및 보험업 운영부서 관리자
○인사, 홍보, 구매 등의 부서 관리자 024	· (소관 부서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 예) 부서의 장 : 부장, 과장 등	· 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하에 업무를 활동 예) 재무부서 관리자, 경영부서 관리자
□ 일반관리자 : 1인이하 다른 관리자의 협조와 9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소규모 사업체)인 경우		
○일반관리자 030	· 경영을 기획, 입안 및 수행 · 경영계획 수립 및 집행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산업을 반드시 표기 - 다만, 산업분류 항목에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을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산업분류 참조 예) 농장경영자, 연탄제조공장 사장, 레스토랑 경영자, 주의) 의류판매점 주인이 물건을 팔고 돈을 계산하는 경우→의료소매원으로 기재

□ 컴퓨터 관련 종사자	- 컴퓨터 전문업종에 일하는 자는 크게 전문가와 준전문가로 분류됨 - 따라서 조사표에 하는 일을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전문가 120	· 시스템 1201	· 시스템의 요소들의 결정 및 설계·분석	예) 설계가, 분석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 네트워크1202	· 컴퓨터통신 시스템의 운영 및 인터넷관리	예) 네트워크 운영자, 웹마스터
	· 프로그램1203	·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	예)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래머
	· 멀티미디어 1204	· 그래픽, 영상, 음향 등의 모듈을 제작	예)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준전문가 220	· 운영원 2201	· 전산분야의 원리와 지식을 응용	예) 컴퓨터 운영원
	· 조작원 2202	·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장비를 조작·통제	예) 컴퓨터 조작원
	· 산업용로봇조정원 2203	·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을 통제	· 산업용 로봇을 장착 및 탈착하는 자→산업용 로봇 조작원

□ 선생님	-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실기과목에 보조교사를 두고 학습함 - 강사는 세 가지로 분류되므로 기관명칭, 학원명칭을 반드시 기입 ·보통 마을내에 피아노,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학원강사에 포함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대학	대학교수 1510	○대학교육 과정에서 담당과목을 강의	·수학교수, 철학교수 등 ·전공과목을 반드시 기입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교 학장은 별도로 구분
	대학 조교 2511	○대학 지도교수를 보조하는 업무보조자	·보통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도교수를 보조함
교사	초등학교 교사 1530	○초등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	·초등학교 교사 ·학교명칭을 기재
	중·고등학교 교사 1520	○중·고등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	·수학교사, 영어교사, 국어교사
	유치원 교사 1540	○만 3세이상 어린이를 교육시킴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1550	○장애인, 학습곤란자를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	·시각장애학교 교사, 지체부자유학교 교사
	보조 교사 2512	○교과목 수업시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들을 지도	·교사인지 보조교사인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입
강사	연수기관 강사 1561	○직업훈련기관이나 기업체 부설 연수기관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가르키는 자	·직업훈련기관 강사, 기업체 연수기관 강사
	입시, 고시, 학과목 학원강사 1569	○정규학교 이외 학원에서 특정교과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가르키는 자	·영어학원 강사, 입시학원 강사, 고시학원 강사, 피아노학원강사
	생활, 기술관련 학원 강사 2521	○기술, 사무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	·꽃꽂이학원 강사, 조리학원 강사, 이·미용학원 강사, 웅변학원
개인지도 2522		○가정집 등에서 학생을 가르키는 자	·국어, 영어, 수학, 미술, 피아노, 학습지관리교사

□ 가사·청소·환경미화원	- 가정집, 건물, 호텔, 여관, 음식점, 쓰레기 수거, 열차, 버스 등에서 청소하는 자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가사	가사원 9111	○거실을 청소하며 의복을 세탁하고 음식을 만들며 집안일을 거들어 주는 자	·가정부, 파출부 ·가사쇼핑 대행원 포함
청소·세탁원	건물청소원 9112	○사무실, 공공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자	·사무실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공장 청소원 등
	호텔·음식업소 청소원 9113	○호텔, 음식업소에서 실내장식물과 장치물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자	·호텔청소원, 숙박시설 청소원, 병원 청소원, 접시닦이 등
	차량관련 청소원 9114	○항공기, 열차, 버스 및 승용차량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 및 세척하는 자	·세차원, 열차 청소원, 버스 청소원, 항공기 청소원 등
	세탁 및 다림질원 9115	○의류, 섬유직물을 손으로 세탁 또는 다림질하는 자	·세탁원, 다림질원, 얼룩 빼기원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원 9141	○건물,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 하는 자	·쓰레기 수거원, 쓰레기 청소원, 분뇨 수거원
	거리 미화원 9142	○거리, 공원, 역 등에서 쓸고 청소하는 자	·거리미화원, 공원청소원

□ 사 무 원	- 관리자, 전문가 등을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 추진을 수행하는 사무적인 일을 하는 자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일반사무 311	총무사무원 3110	○서무,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총무사무원, 인사사무원 등
기획·홍보 312	기획사무원 3121	○기획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획 사무원, 사업기획 사무원
	홍보사무원 3122	○사업체의 홍보 및 광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홍보 사무원, 광고 사무원
판매관련사무 314	판매 사무원 3141	○제품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시장조사 분석	· 판매사무원, 판매마케팅 사무원, 판매관리사무원, 해외판매사무원
	분양·임대사무원 3149	○주택·아파트 등 건물의 분양, 임대 및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분양 사무원, 임대 사무원
계산사무 315	회계사무원 3151	○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유지 및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회계사무원, 급여사무원, 경리사무원, 구매사무원, 원가계산원
	금융·보험사무원 3152	○금융 또는 보험자료 작성 및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금융사무원, 증권사무원, 보험사정 사무원, 보험수리 사무원
	통계사무원 3153	○통계적 기록 작성 및 설문 조사	· 통계조사 사무원, 설문 조사원,보험통계 사무원
자재·생산·운송사무 316	자재사무원 3161	○생산된 상품의 수령, 검수, 출고, 발송, 재고기록을 유지하는 자	· 자재관리 사무원(수령, 발송, 보관), 검수사무원, 창고관리사무원
	생산사무원 3162	○생산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재료의 수량, 종류 계산 및 기록을 유지하는 자	· 자재수급 사무원, 자재주문 사무원, 생산계획 사무원
	운송사무원 3163	○철도, 도로, 항공 등의 여객 및 화물운수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시간을 조정하는 자	· 항공운송 사무원, 철도운송 사무원, 도로운송 사무원, 수상운송 사무원
사무지원 317	일반사무지원 3171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 복사 등 사무지원을 하는 자	· 사무보조원, 문서편집원
	자료입력 사무원 3172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및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입력하는 자	· 자료입력 사무원, 점자변환 입력원
	비서 3173	○단위 장에 대한 내방객 접대, 연락하는 자	· 비서 · 관리비서(준전문가) : 일정계획을 작성 및 방문자의 면담을 조정
도서·우편·교정사무 318	도서사무원 3181	○서적 및 간행물의 구입, 대출, 회수 등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서대출 사무원, 도서서류정리 사무원
	우편사무원 3182	○우체국 또는 관련 업체에서 우편물의 분류 등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우편물 분류사무원, 우편물 발송사무원, 우편사서함 사무원
	교정사무원 3183	○인쇄원고 교정 또는 자료처리심사	· 인쇄교정원, 자료처리심사원
대금수납·금전출납 사무 321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원 3211	○상점이나 매표소 등에서 구입한 재화와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자	· 음식점 대금수납원, 상점 대금수납원, 매표사무원, 지하철매표원
	금전출납사무원 3212	○금전의 수납, 환전 및 지불 등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자	· 은행출납사무원, 외환취급사무원, 우체국출납사무원
	수금사무원 3213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신문대금수금원, 부채수금원, 임대료수금원
	복권판매·마권발매 사무원 3214	○발행된 복권 및 마권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불하는 자	· 복권 판매원, 마권 발매원, 경륜 발매원
안내·접수사무 322	안내사무원 3221	○방문객 안내 및 고객에 대한 방송을 하는 자	· 백화점안내 사무원, 방송(열차, 병원, 시설) 안내원
	여행관련 사무원 3223	○여행에 관련된 정보제공 및 예약을 수행	· 여행표 발행사무원, 승차권, 항공권 발행사무원, 여행사무원
	접수사무원 3224	○고객 또는 환자에 대한 접수 및 예약	· 호텔, 병원, 음식점 접수원, 전화접수 사무원, 가스접수 사무원
고객상담사무 323	고 객 상 담 사 무 원 3230	○고객의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화상담하는 자	· 고객상담 사무원

□ 운전원 84	- 차량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철도 841	철도기관사 8411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기관차를 운전	· 열차기관사, 지하철기관사
	열차 차장 · 신호원 8412	○운행중인 화물열차를 책임지고 안전을 도모하고, 신호를 조작하는 자	· 화물열차 차장, 철도신호원 · 여객열차 차장 → 운송수행원
자동차운전 842	택시운전원 8421	○요금을 받고 승객을 수송하는 자	· 개인 또는 영업용택시 운전원
	승용차 · 경화물차운전원 8422	○여객 및 우편을 수송하는 자	· 자가용승용차, 밴 운전원, 구급차 운전원, 우편배달차 운전원
	버스 · 승합차 운전원 8423	○여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자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승합차 운전원
	트럭 · 특수차 운전원 8424	○단거리 또는 장거리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트럭 같은 차량을 운전하는 자	· 일반트럭, 유조차량, 트레일러, 덤프트럭, 레미콘, 견인차 운전원
건설 · 이동차량 843	동력 농림업장치 운전원 8431	○영농 및 영림에 사용되는 이동식 기계를 운전하는 자	· 농업용 기계 운전원, 산림용 기계 운전원
	흙 운반 차량 운전원 8432	○흙 및 유사물질을 파고, 고르고, 정지하며 다지는 기계를 운전하는 자	· 굴삭기, 굴착기, 불도저, 준설기, 도로포장기, 터널굴착기 운전원
	크레인 운전원 8433	○크레인 및 기타 기중장비를 운전하는 자	· 크레인 운전원, 호이스트 운전원
	적재용 차량 운전원 8434	○화물, 물건들을 들어올려 운반하는 자	· 지게차 운전원, 로더 운전원
선박갑판 승무원 844	선박갑판승무원 8440	○선상에서 갑판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갑판장, 갑판원, 등대지기, 바지선 선원, 뱃사공

□ 고객을 직접상대로 일을 하는 자	- 고객을 직접 상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개인보호 411	보육종사자 4111	○개인 가정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봄	· 가정보육사, 유모
	시설 개인보호자 4112	○병원, 요양소 등에서 간호 및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하여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간병인, 산후조리원, 치료사 보조원, 환자운반원, 환자보조원
	가정개인보호자 4113	○가정에서 개인시중을 들어 주는 자	· 가정간호 시중원
	약사 · 수의사보조 4119	○약사 또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보조	· 약사 보조원, 수의사 보조원
이 · 미용 412	이용사 4121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을 제공하는 자	· 이용사, 이용 견습원
	미용관련 종사자 4122	○모발미용, 피부미용,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미용사, 미용견습원, 피부미용사, 애완동물 미용사, 욕실종사원
	화장 · 분장사 4129	○고객의 얼굴 특성에 따라 화장 또는 분장을 해주는 자	· 메이크업아티스트, 분장사, 코디네이터, 모발사
시중서비스 413	시중드는 자 4130	○말벗이 되어주며 고객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에 응하는 자	· 말벗, 개인시중원, 호텔시중원, 모텔 · 여관 시중원
장례관련 414	장의사 4140	○사람 및 동물의 시체처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장의사, 장의사 보조원, 시체방부사, 염사, 박제사
오락 · 여가 415	오락서비스 4151	○클럽, 유원지, 오락장 등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놀이기구종사원, 노래방관리인, 게임오락장관리인, 클럽호스티스
	여가관련 서비스 4152	○골프장, 경기장 등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응원단원, 치어걸, 레크레이션자, 골프장 캐디
	모니터 요원 4153	○방송상태를 감시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비평하는 자	· 방송모니터, 신문 · 잡지모니터, 기업모니터, 백화점모니터
	도박 · 전당업자 4154	○도박 진행 또는 금전을 빌려주는 자	· 도박진행자, 대금업자, 전당업자
결혼 · 점술 416	결혼관련 서비스 4161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배우자를 소개하여주고, 예식을 진행하는 일을 수행	· 결혼상담원, 컴퓨터 중매인, 예식종사원
	점술관련 서비스 4162	○손금, 관상 등에 일을 하는 자	· 점술가, 운명 철학가, 관상가, 무당

□ 음식조리 · 서비스 종사자	-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 - 요식업소, 클럽, 선상, 열차 내에서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자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음식조리 421	주방장 4211	○조리계획을 세우고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 조정하는 자	· 한식주방장, 양식주방장, 중식주방장, 일식주방장, 조리실주방장
	음식점 조리사 4212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함	·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간이음식점조리사 4213	○이미 조리가 되어 있는 음식을 데우거나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는 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음식점이외 조리사 4214	○병원, 학교,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조리하는 자	· 병원조리사, 선박조리사, 열차식당 조리사, 학교식당 조리사
	차류조리사 4215	○차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	· 커피조리사, 전통차 조리사
음식을 나르거나 주문접수 422	음식서비스원 4221	○여관, 음식점, 선상, 열차식당에서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문받는 일을 하는 자	· 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주류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음료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바텐더 4222	○바 등에서 주류 및 음료를 제공하는 자	· 바텐더, 바 시중원

□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 항공기, 열차, 선박, 버스 등에 의한 여행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개인 및 단체와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안내하는 자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운송수행	운송수행원 4310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자	· 선박승무원, 항공기승무원, 여객열차 승무원, 케이블카 승무원
여행안내 432	국내외 여행안내원 4321	○국내외를 여행하는 손님을 수행하여 관광지 등을 설명하고 안내를 제공하는 자	· 국내여행 안내원, 관광 안내원, 등산 안내원, 국외여행 안내원
	관광통역 안내원 4322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설명과 편의를 제공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이어 등 관광통역 안내원
	기타 여행안내원 4329	○주로 단체 여행객을 안내하는 자	· 낚시안내원, 산업시찰안내원

□ 판매 종사자	- 도매판매원 :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 - 소매판매원 : 소매업체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 - 따라서 반드시 도매업체인지 소매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도매판매원 511	도매판매원 5110	○농축산물, 음식료품, 담배, 가정용품, 산업용 중간재, 재생도료 등의 상품을 도매하는 자	· 빵과자, 육류, 사료, 음료, 곡물, 담배, 과일, 채소, 의복, 가구, 전기기기, 여행용품, 운동용품, 화장품, 귀금속제품, 문구용품 도매원
소매판매원 512	소매업체 판매원 5120	○종합소매, 음식료품, 담배, 의복, 신발, 가정용기기, 가구, 서적, 문구, 정밀기기 등의 상품을 소매하는 자	·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 정육점, 채소, 과실, 빵, 담배, 의복, 신발, 가구, 악기, 전기용품, 주방용품, 서적, 문구용품, 컴퓨터, 주유원, 화장품, 연탄, 벽지 등 소매원
소매방문 · 이동판매 513	소매방문판매원 5131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자	· 소매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노점 및 이동판매원 5132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노점 또는 순회하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자	· 노점판매원, 신문가두판매원, 열차객실 판매원

□ 통신판매·모델 및 홍보종사자	- 통신판매원 : 전화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자 - 모델종사자 :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작품을 출연하는 자 - 홍보종사자 :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자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통신판매 52	전화통신판매원 5210	○상품을 전화주문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	· 통신판매원, 전화보험판매원
	통신서비스판매원 5221	○이동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자	· 이동전화판매원, 이동호출판매원
	통신재판매원 5222	○기간통신사업체로부터 통신설비나 서비스를 사거나 빌려서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자	· 별정통신 판매원
모델·홍보원 53	모델 5301	○의복이나 물품을 가지고 광고를 위해 자세를 취하는 자	· 패션모델, 의류진열모델, 예술모델, 광고모델
	홍보원 5302	○상품이나 시설의 구매욕구 및 시설 이용욕구 등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홍보하는 자	· 홍보원, 상품 홍보원, 나레이터 모델, 행사 도우미

□ 건물관리·경비 종사자	- 아파트, 주택, 호텔,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며, 거주자를 대신해서 배달물을 접수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옥과 재산을 감사하는 자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건물관리	건물관리 종사자 9121	○건물을 관리하며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	· 빌딩관리인, 건물관리인, 아파트관리원, 아파트 경비원, 교회관리인, 성당지기, 별장관리인 · 아파트관리사무원→총무사무원 · 아파트관리소장→관리준전문가
경비	수위·경비종사자 9122	○아파트, 주택을 제외한 건물 또는 주차장에서 감시하거나, 영화관, 공원에서 표를 받는 자	· 수위, 경비원, 물품보관원, 집표원, 공원 관리원, 주차장 관리원, 유원지 안내원, 경기장안내원

□ 배달·운반·검침종사자	- 문서송달, 상품배달 또는 수하물을 운반하며, 자동판매기에 물품을 보충하고 수금하거나, 전기·가스·수도계량기를 검침함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배달·운반	배달·운반종사자 9131	○문서, 포장물 등을 운반 및 배달하며, 역 또는 공항에서 수하물을 운반	·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문서송달원, 택배배달원, 퀵배달원, 수하물운반원, 연탄배달원
계기검침	계기검침원 9132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검침	· 전기검침원, 가스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종사자 9133	○자동판매기의 동전을 수거하는 자 또는 주차계기 등의 박스에서 돈을 수거하는 자	· 자동판매기 수금원, 스티커사진 자동판매 운영원

□ 운반인부·하역종사자	-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 작업 일을 하는 자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건설관련	건설관련단순노무자 9412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한 업무에 종사	· 철로보수원, 토공작업원, 잡역부, 벽돌운반인부
운수관련	화물취급종사자 9421	○제품을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하는 자	· 부두하역원, 화물운반원, 선박하역원
	교통지도원 9422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질서계도·안내	· 계도원, 지하철 푸쉬맨

□ 농업 · 임업 · 어업 종사자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경작 · 수확하고 양식 ·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농업종사자 61	곡식작물재배자 6111	○쌀, 보리, 밀, 옥수수 등의 곡식작물 재배	· 쌀, 콩, 보리, 밀, 옥수수재배자
	특용작물재배자 6112	○차, 커피를 제외한 특용작물 재배	· 채유작물, 약용작물, 섬유작물, 향신용작물 재배자
	채소재배자 6113	○채소를 재배	· 배추, 감자, 고구마, 오이, 수박, 풋고추재배자, 고사리, 더덕채취자
	과수작물재배자 6121	○과일나무와 관목을 재배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차재배자
	열대과일재배자 6122	○열대과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자	· 감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정원사 · 원예사 6131	○정원이나 공원에서 꽃, 교목 등을 재배	· 정원사, 원예사, 관목싹접목자, 꽃재배자, 육묘재배자, 버들재배자
	버섯재배자 6132	○각종 버섯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자	· 버섯 재배자
	시설작물재배자 6142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이용하여 재배	· 채소온상재배자
	낙농품 생산자 6151	○젖소, 젖양 등의 가축을 번식, 사육하며 젖을 짜고 가공공장으로 운반하는 자	· 우유생산자, 젖소 사육자, 젖양 사육자
	가축 사육자 6152	○젖소, 젖양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소, 돼지, 양, 오리, 고양이, 말
	가금 사육자 6153	○닭, 오리 등의 가금을 사육하는 자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달걀
	양봉 · 양잠가 6154	○벌통의 설치 및 관리, 누에사육하는 자	· 양봉가, 양잠가
	기타동물 사육자 6159	○파충류, 곤충류, 야생 포유동물 등을 사육하는 자	· 동물원, 달팽이, 엽조류, 실험동물 사육자, 동물보존소 관리인
	수렵원 6180	○포유류, 조류 등을 수렵하는 자	· 수렵원, 조류몰이꾼, 덫설치자, 땅군, 모피동물 포획원
임업종사자 62	조림 · 영림원 6201	○영림, 산림보존 및 개발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자	· 조림원, 영림원, 벌목원, 목재답사자, 벌목공
	임산물종사자 6202	○산림내에서 생산되는 수액 또는 수피를 채취하는 자	· 임산물채취원. 산림수 묘목증식원, 산림수 종자증식원
	목탄굽기원 6203	○전통적 방법으로 나무를 가지고 숯을 굽는 자	· 목탄굽기원 · 목탄제조기 조작원→목탄생산기 조작원
어업종사자 63	수생 동 · 식물 양식종사자 6301	○물고기, 조개, 굴 등 수생 동 · 식물을 양식하는 자	· 물고기양식원, 양어장종사원, 굴 양식원, 해조류양식원, 진주양식원
	내륙 · 연안어업 종사자 6302	○내륙 및 연안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하는 자	· 내수면어부, 연안어부, 해녀, 어장어부
	원양어업종사자 6303	○원양어로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원양어부, 원양어업자, 유망어선 선원, 트롤선 선원

□ 공무원 · 군인	- 공무원은 부서 및 직책을 반드시 기재하고 하는 일을 기입함 - 군인은 반드시 계급을 표시하여야 함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공무원	중앙정부	근무부서마다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르므로 가급적 자세히 기입	· 장관, 차관, 청장, 실장, 국장, 소장, 과장, 사무관,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근무부서마다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르므로 가급적 자세히 기입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실장, 국장, 과장, 계장, 실무자
군인 A	직업군인 A1	근무부서마다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르므로 가급적 자세히 기입	·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주임상사, 상사, 중사, 하사 · 병역의무자,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근특기자는 제외

□ 일반적인 직업명칭으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전문가)	- 직업명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므로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자세히 기입할 필요는 없음

구 분	세부내역	직 업 명
의회의원 0110	중앙 의회의원	· 국회의원
	지방 의회의원	· 시도 의회의원,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정당 0131	정당 고위임원	· 정당 총재, 정당 지도자, 정당 고위관리자, 정당 사무총장
전문가	자연과학 전문가 111	· 수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기상학자, 기후학자, 기상예보관, 화학자,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지진학자
	생명과학 전문가 112	· 식물학자, 동물학자, 세균학자, 유전학자, 생태학자, 환경과학자, 해부학자, 생화학자, 생리학자, 생물리학자, 병리학자, 약학자, 농경학자, 축산학자, 원예학자, 산림학자
	사회과학 전문가 113	· 경제학자, 사회학자, 재정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정치학자, 종교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교육학자
	건축공학 전문가131	· 건물건축가, 조경건축과, 도시설계가, 교통설계가
	측량 전문가 1340	· 토지측량사, 사진측량사, 광산측량사, 수로측량사, 지도제도사
보건의료전문가 14	전문의사 1411	· 내과전문의사, 외과전문의사, 소아과 전문의사, 산부인과 전문의사, 정신과 전문의사, 안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사, 피부비뇨기과 전문의사, 방사선 및 마취병리과 전문의사, 결핵과 전문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사, 신경과 전문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사, 산업의학과 전문의사, 핵의학과 전문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사
	일반 의사 1412~5	· 일반의사1412, 치과의사1413, 한의사1414, 수의사1415
	약사 1420	· 양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간호 및 조산 전문가 1431	· 일반 간호사, 정신전문 간호사, 마취전문 간호사, 보건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학교 양호사, 조산사<1432>
	치료 전문가 1440	· 물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작업 치료사
	영양 전문가 1450	· 임상 영양사, 급식관리 영양사, 학교급식 영양사, 보건 영양사, 상담 영양사, 식품위생 영양사
경영·재정 전문가 16	회계관련 전문가162	·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원, 세무사, 재정분석가, 신용분석가
	금융·보험전문가164	· 펀드매니저, 투자분석가, 자산운용 전문가, 트레이더, 보험계리사
	사업서비스 전문가 165	· 조사분석가, 관세사, 경영지도·진단 전문가
법률·종교 전문가 17	법률 전문가 171	· 검사, 변호사, 판사, 재판장, 특허 전문가, 법무사, 공증인, 변리사
	사회서비스 전문가 1729	· 사회복지사
	종교 전문가 173	· 목사, 신부, 스님, 선교사, 포교사
문화, 예술, 방송 전문가 18	기록·사서 전문가 181	· 기록 보관원, 화랑관리인, 박물관 관리인, 큐레이터, 사서
	작가 관련 전문가 182	· 소설가, 시인, 극작가, 희곡작가, 수필가, 번역가, 통역사, 기자, 평론가, 편집자, 작사가
	창작·공연예술가 183	· 조각가, 화가, 상업미술가, 사진작가, 만화가, 만화영화작가, 공예가,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작곡가,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성악가, 기악 연주자, 대중가요 가수, 국악인, 무용가, 안무가
	영화, 연극, 방송 전문가 184	· 영화배우, 탤런트, 연극배우, 코미디언, 개그맨, 성우, 영화감독, 텔레비젼 감독, 무대감독, 연극감독, 아나운서, 전문 연예사회자, 디스크 자키, 비디오 자키

☐ 일반적인 직업명칭으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준전문가 또는 기술종사자)	- 직업명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므로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자세히 기입할 필요는 없음

구 분	세부내역	직 업 명
의료·방송 기술종사자	광학·녹화장비 기술종사자 2351	· 사진가(상업목적으로 사진을 촬영), 사진기자(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해 촬영), 촬영기사, 녹음기사
	방송·통신장비기술종사자 2352	· 방송장비 기사, 영상기사, 무선통신사, 전신장비기사, 송신장비기사
	의료장비 기술종사자 2353	· 임상병리사, 근전도 기사, 내시경검사 기사, 뇌파 기사, 심전도 기사, 인공심폐기 기사, 폐기능검사 기사,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기사
선박·항공기 조종사	선박 기술종사자 2361	· 선박기관사, 선장, 항해사, 도선사, 수로안내인, 선박조타수
	항공 기술종사자 2362	· 항공기 기장, 항공기 조종사, 항법사, 항공기 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2363>
보건의료 준전문가 24	의료진료 준전문가	· 보건지료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위생사, 안마사, 전통의료 치료사, 약초치료사, 자영요법사, 침사, 접골사
경영·재정 준전문가 26	금융·보험준전문가 261	· 외환중개인, 증권중개인, 선물거래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대리인
	판매 준전문가 262	·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신탁관리원, 부동산 상담원, 보석감정사, 보석감별인, 미술품 감정사, 감정평가사, 주류감정사, 경매사
	상품중개·사업서비스대리 종사자 263	· 상품중개인, 물류관리사, 직업상담원, 운동선수 매니저, 연예인 매니저, 광고판매인, 이벤트 대리인
사회서비스·종교 27	사회서비스 2711	· 아동복지 상담원, 부녀자복지 상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종교 준전문가 2720	· 전도사, 수사, 수녀
예술, 연예, 경기 준전문가 28	예술·연예 준전문가 281	· 대중업소 악사(밴드마스터), 대중업소 가수(나이트클럽, 업소 가수), 대중업소 무용수(나이트클럽, 백 댄서), 거리초상화가, 대중업소 연예사회자, 대역배우, 엑스트라 배우, 스턴트맨
	운동·경기 준전문가 282	· 직업운동선수, 야구선수, 축구선수, 테니스 선수, 골프선수, 경륜선수, 자동차경주자, 모터싸이클 경주자, 경마기수, 바둑기사, 경기감독, 경기코치, 경기심판, 에어로빅 강사, 검도사범, 태권도사범
	기타 예술·연예 준전문가 283	· 곡마단 희곡배우, 광대, 마술사, 곡예사, 인형조종사, 맹인견 조련사, 수색견 조련사, 말 조련사, 돌고래 조련사, 물개 조련사
기타 준전문가 29	관리 준전문가 2911	· 관리비서, 속기사
	법률 준전문가 2921	· 특허사무장, 특허사무원, 집달관, 법무사무원, 변호사사무원, 판사사무원, 검사 사무원, 법정사무원, 양도수속 사무원
	의료사무 준전문가 2922	· 의무기록사, 보험수가 산정원, 의료수가 산정원
보안서비스 종사자 44	경찰 종사자 4410	· 일반 경찰관, 해양 경찰관
	소방·응급구조원 4420	· 소방관, 응급구조대
	교도·보도 종사자 4430	· 교도관, 보도관
	기타 보안종사자 4440	· 청원경찰, 안전순찰원, 인명구조원, 해변경호원, 연안경비대원, 해변순찰원, 경호요원, 수렵감시원, 장내 질서유지원, 조류 보호구역 관리인, 야생생물 관리인

□ 단순노무종사자	-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농림어업 관련 92	농업관련 노무자 9201	○간단한 농사일을 수행하는 자	· 과수원일, 농작물농장일, 과실수확원, 목동, 목장일, 낙농장일
	임업관련 노무자 9202	○간단한 영림업무를 수행하며, 천연산림이나 영림장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자	· 임업단순일, 그루터기 제거원
	어업관련 노무자 9203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해초, 바다이끼, 조개 등 연체동물의 채취활동을 하는 자	· 표류물 채집자, 조개 채취자, 해초 채취자, 어업 단순일
제조 관련 93	단순조립원 9301	○제품을 분류하고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으로 조립하는 자	· 단순조립원, 수공코일 권선원, 권선공
	수동포장·상표부착원 9302	○손으로 자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상표를 부착하는 자	· 수동 포장원, 라벨부착원, 상표부착원
	제품운반원 9309	○제조업이나 수리 및 정비업소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을 이동, 운반하는 자	· 제품운반원 · 제품을 인양, 적하 및 하차하는 자
광업 관련 941	광업단순 노무자 9411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재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	·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채광 단순노무자

□ 기술계통	- 기술자 :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련분야의 설계, 기획·조정 및 감독하는 자 - 기술공 :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지휘·감독하에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구 분	세부내역	"하고 있는 일"의 기입요령	비 고
기술자	토목 기술자 1313	○건물, 도로, 항만, 철도, 댐 등의 공사를 설계하고, 기획·조정 및 감독하는 자	·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술자, 항만건설 토목기술자, 댐건설 토목기술자 등
	전기 기술자 1321	○전기조직, 모터 및 장치의 제작과 이들의 기능, 유지, 보수 등에 관하여 설계 및 지휘하는 자	· 발전설비 전기지술자, 전력송·배전설비 전기기술자, 전기안전기술자 등
	통신 기술자 13221	○유·무선 통신설비 및 기기에 관하여 연구 및 조언과 설계, 기획 및 지휘하는 자	· 전기통신 기술자, 전신통신 기술자, 전화통신 기술자 등
	반도체 기술자 13222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연구 및 기획·지휘하는 자	· 반도체 공정기술자, 반도체 소자기술자 등
	컴퓨터 설계기술자 13223	○컴퓨터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 및 기기 등을 설계하고 기획 및 지휘하는 자	·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전자장비 기술자 13224	○전자장비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기획·지휘하는 자	· 전자장비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등
	기계 기술자 1323	○기계, 산업설비 및 시스템의 생산과 이들의 기능, 유지 및 보수에 관하여 연구, 조언하는 자	· 산업용기계 기술자, 선박기관 기술자, 항공기(우주) 기술자, 자동차 기술자, 냉·난방기 기술자 등
	화학 기술자 1331	○원유, 석유, 식품 및 음료, 약제품 또는 합성물지과 같은 각종 물질 및 제품의 화학적 처리에 관하여 연구·개발하는 자	· 석유화학 기술자, 고무화학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섬유 기술자 등
	에너지 및 금속 기술자 1332	○채광, 석유 또는 가스의 채취 및 추출과 합금 개발에 관한 상업적 규모의 기법 설계 및 개발하는 자	· 에너지 기술자, 석유 기술자, 금속기술자, 탐사 기술자 등
	교통안전, 환경, 생산관리, 생산공정 기술자 1350	○각 분야별로 연구·분석 및 자문하는 자	· 교통사고조사 연구원, 공정설계 기술자, 수질·대기오염 분석가, 생산공정 기술자 등
기술공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지휘·감독하에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분류가 가능하도록 관련된 일을 조사표에 상세히 기재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나다순)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광공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형성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며 이러한 업무는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료, 최종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만일 업무가 주로 기계조작 및 감시의 경험과 이해를 요구한다면 그 직업은 장치조작원, 기계조작원, 조립원으로 분류된다.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능종사자 명칭	비 고
가구장식물 제조기능원 7536	가구에 덮개를 씌우고 매트리스를 제작하거나 직물, 가죽 및 유사재료의 실내장식을 제조, 설치하는 자	가구장식물 제조원, 차량시트 제조원, 매트리스 제조원, 침구 제조원, 안락가구 내장원, 누비이불 제조원	
가구 제조기능원 7522	도구와 목재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목재가구, 부착물, 모형, 목관 또는 스포츠라켓 및 스틱과 같은 제품을 제조, 장식 및 수리하는 자	장롱 제조원, 책상제조원, 탁상 제조원, 목재케이스 제조원, 목제통 제조원, 상자 제조원, 목형제조원, 조각무늬 세공원, 목재가구 칠원, 목재운동용품 제조원, 목재 사진틀 제조원, 담배파이프 제조원	· 건축목공→ 건축목공으로 · 소목공 → 목공으로
가죽신발 제조기능원 7542	가죽신발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자	제화원, 구두 재단원, 가죽구두 수선원, 구두 완성원, 구두원형 제조원, 마구류 제조원, 가죽 경기용 신발 제조원, 가죽 절단원	· 구두 미화 (거리에서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해주는 자)
건물도장기능원 7141	보호 또는 장식하기 위하여 건물의 내·외부 표면, 장치 및 부착물에 페인트, 바니쉬, 셀락 등을 도장하는 자	건물 도장원, 철구조물 도장원, 단청원, 무대장치 도장원	
건물청결·방역기능원 7143	연관에서 그을음을 제거하거나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외부표면을 청소하고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해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물외벽 청결원, 배관 청결원, 병충해 방역원, 아파트나 건물의 물탱크를 청소하는 자	
건설·건물 보수기능원 7129	건설 또는 건물의 보수업무, 건설현장에서 금속 또는 목재의 비계설치,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자	구조물(칸막이, 계단 등) 설치원, 건물 보수원, 비계설치원, 건물 해체원, 상·하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자, 방수공사원	
건축관련 전기종사기능원 7136	건물 또는 건축과 관련된 전기배선 조직 및 관련 장비를 설치, 유지 및 수리하는 자	건축물 전기원, 건물보수 전기원, 네온사인 전기원, 무대전기원	· 전기 부착원 또는 전기기계원→전기장비 설치 종사자
건축목공기능원 7124	건축 공사장에서 건물의 목조, 골조, 마루, 발판과 같은 목조틀 작업	건축목공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능종사자 명칭	비 고
공구제조 관련 기능원 7222	수공구 또는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기관 또는 기계구성품 및 그 부속품의 제조를 포함하여 공구, 경기용 소총, 자물쇠 등을 제조, 수리하는 자	공구제조원, 공구수리원, 게이지 제조원, 자물쇠 제조원, 자물쇠 수리원	· 공구생산기 조작원
공업용기계 정비기능원 7322	공업용 기계 및 기계식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수리하는 자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섬유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속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인쇄기계 설치 및 정비원, 목공기계 정비원, 냉동기 정비원	
광산기계 정비 기능원 73212	착암기, 절단기, 운반기 등의 광산용 기계를 설치 및 수리하는 자	광산기계 정비원 및 수리원	
광원 · 채석 기능원 7111	지하 및 지표면 광산, 채석장에서 고형광물을 채굴, 채석하는 자	광원(갱외, 지하, 지표), 갱목 설치원, 채석원, 광물절단원, 채석장 견인원	
구조금속준비 및건립기능원 7213	구조물 및 골조를 이을 중금속 대들보와 금속판을 성형, 조립 및 건립하는 자	구조강 가공원, 구조강 건립원, 선박구조물 건립원	
귀금속 제조 및수리기능원 7413	장신구 및 귀금속 제품을 제조, 수리하고 귀금속을 세공하여 장식하는 자	보석 세공원, 보석 부착원, 귀금속 세공원	
금속 연삭 기능원 7223	금속표면을 연삭, 연마하여 공구날을 세우는 작업하는 자	절삭공구 갈이원, 톱날 연삭원, 금속세척원, 금속 연마원, 금속 광택원	· 금속완성기 조작원 · 금속광택기 조작원
금속주형 · 모형 제작기능원 7211	금속주조용 금형과 모형을 제작하는 자	금속모형 제조원, 주형원, 금속주입원	
농기계정비 기능원 73211	탈곡기, 경운기, 파종기, 콤바인,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점검 및 수리하는 자	농기계 정비원, 농기계 수리원	
단열장치 · 부착기능원 7133	건물, 보일러, 파이프, 냉동 및 공기조절장치에 단열재료를 장치하는 자	건물 단열원, 시설장치 단열원, 방음시설 단열원, 방음원	
대장장이 기능원 7221	철강 또는 금속의 봉, 괴 및 관을 단조하여 철선의 인발과 각종 공구, 금속제품, 기계부품, 농기구 및 관련 기기를 제조 및 수리하는 자	신선원, 단조원, 금속 성형원, 대장원	· 기계공구기 조작원
도배기능원 7142	건물 및 선박의 내부벽과 천정에 벽지, 실크 등을 도배하는 자	도배원, 실내장식 도배원	
도살, 생선 가공관련 기능원 7511	가축을 도살하고, 어류를 세척, 절단, 손질 및 가공처리하여 관련 식품을 제조하고 또한 이를 건조, 염장 등의 보존처리를 하는 자	도살원, 절육원, 염장원, 수산물 가공원, 김 가공원, 동물뼈 제거원	· 훈제기 조작원 · 햄, 소시지 제조기 조작원
도자기 관련 기능원 7421	도자기, 자기, 벽돌, 타일 및 연마석을 제조하는 자	연마휠 성형원, 도자기 주형원, 도자기 녹로원, 벽돌 성형원, 타일 성형원, 유약 처리원	· 벽돌 및 타일로 조작원, 도기 및 자기로 조작원→ 도기로 조작원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능종사자 명칭	비 고
돌 절단·재단·조각 기능원 7113	채석한 돌의 자재를 슬래브나 블록으로 절단하거나 손이나 수공구를 사용하여 건물, 장식, 기념비 등을 성형, 완성하는 자	석재선별원, 석재절단원, 석재설계원, 석재재단원, 석재조각원, 석재완성원	· 석제품 조각기 및 재단기 조작원→석재가공기조작원 · 조각가→미술가 · 건축석공→조적원
돌조각·조화·양초·자개기능원 7433	전통적인 기법에 의하여 각종 제품을 조각, 성형 또는 도장, 장식하는 자	석 공예원, 조화 공예원, 양초 공예원, 자개 세공원	
등가구 제조기능원 75245	등으로 각종 가구를 제조하는 자	등가구 제조원	
마루설치·타일부착기능원7131	마루판을 설치, 수리하며 타일 또는 모자이크 패널을 가지고 마루와 벽 표면에 부착하는 자	대리석 부착원, 타일 부착원, 마루 설치원, 카펫공	
모피 제조기능원 7533	모피의복 및 기타 모피로 만든 제품을 제조하는 자	모피 선별원, 모피옷본 제조원, 모피 재단원, 모피의복 제조원, 모피 세척원, 모피신장 손질원	· 모피재봉기계 조작원→재봉기계 조작원
목공·소목공기능원(건축목공 제외) 7125	여러가지 형태의 나무구조물 및 부착물을 재단, 성형, 조립, 건립 및 수리하는 자	소목세공, 장치물 목공, 선박목공, 무대목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으로 · 목재가구 제조원 → 가구 제조원
목재 수공예기능원 7431	개인 또는 가정용,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제품을 전통적 기법에 의하여 나무, 짚, 등, 갈대 등의 재료를 조각, 성형, 조립 또는 도장, 장식하는 자	목 공예원, 등죽 공예원, 인장 공예원, 종이 공예원, 죽제품 수공예원	· 브러시 제조원→솔 제조원 · 목제품제조기 조작원→목재조각기 조작원
목재 장난감 제조기능원 75243	목재로 각종 장난감을 제조하는 자	목재 장난감 제조원	
목재공작기계조정기능원 7523	정밀톱, 목형기, 평삭기, 보링기 및 목각기와 같은 목공기계를 조정하는 자	제재기 조정원, 목재선반 조정원, 목재성형기 조정원, 목각기 조정원, 목재평삭기 조정원	· 금속가공기 조정원→금속연삭원 · 목재가공기 조작원→나무제품용 기계 조작원
목재 처리기능원 7521	목재의 품질을 선별하고 처리하는 자	목재 선별원, 목재 건조원, 목재 처리원, 목재 새김원, 목재 절개원	· 목재건조기 조작원, 목재처리기 조작원→목재가공장치 조작원
미장이기능원 7132	장식용 석회판을 만들어 장치하고 장식용 처마복을 만들며, 시멘트·석회 등의 재료를 건물의 외부표면에 바르는 작업을 하는 자	장식 미장원, 외벽 미장원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 ·령	기능종사자 명칭	비 고
바구니 제조 기능원 75241	고리버들, 버들, 등, 대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바구니 제품을 제조하는 자	바구니 직조원, 바구니 제조원	
버터·치즈·아이스크림 제조기능원 7519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자	버터 제조원, 치즈 제조원, 아이스크림 제조원	
블럭쌓기기능원 7122	구조물을 건설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석재, 벽돌, 천공타일 및 유사 건축용 블럭을 쌓는 자.	블럭쌓기원, 돌 깔아놓기, 보도 블럭 설치원, 조적원	
사진 처리기능원 7444	암실에서 화학약품과 물 등을 이용하여 촬영 된 필름과 사진판을 현상처리하는 자, 사진을 확대 또는 축소 및 인화하는 자	사진현상자, 사진확대자, 사진인화자	·필름현상기 조작원→사진처리기 조작원
삭구원 및 케이블 접속 기능원 7214	건설공사장, 유전 및 가스천, 굴착장, 선박, 항공기 등에서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활차를 세우고 케이블, 로프, 와이어를 설치 및 유지하는 자	건설인양장비 삭구원, 선박 삭구원, 케이블카 삭구원, 스키리프트 삭구원, 현수교량 케이블 접속원	
선박기관 정비기능원 7316	선박기관을 정비하는 자	선박기관 정비원	
섬유·가죽 수공예기능원 7432	전통적인 기법과 문양을 응용하여 핸드백, 벨트 및 엑세서리와 직물, 편직물, 자수물 및 의류 등의 가정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	수편물원, 한복 제조원, 가죽 수공예원	
섬유·직조 관련 제조기능원 7531	양모, 면화, 마 및 기타 천연섬유를 방적 및 매듭기법을 사용하여 카펫을 제조하고 손이나 수동기계를 사용하여 의류용 편직물을 편직하는 자	섬유 선별원, 양모 세척원, 섬유 표백원, 카펫 직조원, 의복 편직원, 뜨개질원, 망 제조원, 고기그물 제조원	·섬유수공예자는 별도 ·섬유소면기 조작원→섬유가공기계 조작원 ·편직기 조작원, 직조기 조작원→직조기·편직기 조작원
솔 제조기능원 75242	돼지털, 섬유, 나일론 및 철사와 같은 재료로 솔을 제조하는 자	솔 제조원	
수중 기능원 7215	침몰된 신체의 구난 또는 회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중업무를 수행하고 시설과 구조물을 검사, 수리, 철거 및 설치하기 위하여 잠수복을 입고 수중에서 작업하는 자	잠수부, 구난잠수요원, 수중작업원, 잠수 펌프원	
스크린 인쇄 기능원 7443	스크린 인쇄에 사용하기 위하여 스텐실을 재단하고 스크린, 고무블록 또는 기타 재료 또는 조각된 인쇄롤러를 가지고 종이, 금속, 섬유 등의 재료에 인쇄하는 자	스크린 인쇄원, 날염원, 종이양각 인쇄원, 종이음각 인쇄원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능종사자 명칭	비 고
식품선별 및 저장 기능원 7513	각종 가공단계에서 품질을 결정하고 적합한 등급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농산물, 식품 및 음료를 선별하고, 조리, 건조, 염장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과실, 견과 및 관련식품을 가공 및 저장처리하는 자	식품선별원, 고기 선별원, 식용유 선별원, 채소 선별원, 과실 선별원, 과실 염장원, 채소 염장원, 과실 저장원, 채소 건조원	· 채소통조림기 조작원, 과실 통조림기 조작원→과실, 채소 가공기 조작원
악기제조 및 조율기능원 7412	현악기, 타악기 및 관악기를 제조, 수리하며, 조율하는 자	현악기 제조 및 수리원, 목관악기 제조 및 수리원, 금관악기 제조 및 수리원, 건반악기 제조 및 수리원, 타악기 제조 및 수리원, 전통악기 제조 및 수리원, 조율사	
연관·배관기능원 7135	연관 부착물 또는 파이프와 파이프라인 조직을 부착, 설치 및 수리하는 자	상하수 배관원, 가스 배관원, 선박 배관원, 항공기 배관원, 관 부설원	
용접·화염절단기능원 7212	가스, 전기아크 및 기타 열원을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하고 절단하는 자	가스용접원, 전기 용접원, 초음파 용접원, 화염 절단원, 납땜원	
우산대·참빗 등 기타 제품 제조기능원 75249	손이나 기계로 등, 대나무 등을 쪼개는 자, 솔 제조에 사용되는 돼지털을 깨끗이 하고 배합하는 자, 손이나 기계로 새끼와 가마니를 제조하는 자, 대나무로 우산대·발·참빗 등을 제조하는 자		
유리가공기능원 7422	용해된 유리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자	유리취주원, 유리완성원, 유리절단원, 유리연마원, 유리식각원, 유리조각원	
유리·도기 관련기능원 7423	목재, 금속, 섬유, 유리, 도기 등의 재료로 제조한 제품을 장식하며, 간판을 만들기 위하여 문자 및 디자인을 기획, 설계 및 도장하는 자	유리 장식원, 도기 장식원, 간판 도장원, 제경원(거울유리에 초산은을 입히는 자)	· 건물도장원→건물도장 · 도기도장기 조작원, 유리도장기 조작원→유리가공장치 조작원 · 차량도장원→차량도장기 조작원
유리 부착 기능원 7134	창문, 문, 상점진열장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유리를 절단하고 부착	건물 유리원, 판 유리원, 장식유리원	
의복 수선 기능원 7537	모피, 가죽을 포함한 의복, 가방 등의 신변 잡화, 가구장식물을 개조, 수선하는 자	의복 수선원, 모피의복 수선원, 가죽의복 수선원, 신변잡화 수선원, 가구장식물 수선원, 가방 수선원	
의복·모자 제조기능원 7532	양복, 양장 및 기타 의복을 직물, 가죽 등의 재료(모피 제외)를 가지고 제조를 하며 또는 모자를 제조하는 자	양복 제조원, 양장 제조원, 모자 및 가발 제조원, 셔츠 제조원, 체육복 제조원, 근무복 제조원, 작업복 제조원, 가운 제조원, 연극의상 제조원, 무대의상 제조원	· 섬유수공예자는 별도 · 재봉기계 조작원→재봉기계 조작원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능종사자 명칭	비 고
인쇄 제판기능원 7442	조판된 활자에서 연판 및 전기제판 방법에 의해 인쇄판을 제작하는 자	상하수 배관원, 가스 배관원, 선박 배관원, 항공기 배관원, 관 부설원	
인쇄 조판 기능원 7441	종이, 직물, 고무 등의 각종 재료에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판을 조판하는 자	인쇄조판원, 인쇄 식각원, 사진 식자원(인쇄판에 식자하기 위하여 필름이나 감광지에 글자를 식자하는 자), 인쇄기 조정원	
자동차 정비 기능원 7311	모터싸이클, 승용차, 용달트럭 및 기타 자동차의 기관과 관련장비를 조정, 정비하는 자	자동차기관 정비원, 자동차 경정비원, 이륜자동차 정비원, 자전거 정비원, 자전거 수리원	
재봉기능원 7311	재봉기를 사용하여 직물, 가죽, 모피 등의 의복, 장갑 및 기타 제품 등을 재봉하고 장식하는 자	직물 재봉원, 가죽 재봉원, 모피 재봉원, 신발 재봉원, 천막 재봉원, 인형 제조원, 모자 재봉원, 매트리스 재봉원, 돛 재봉원, 텐트 재봉원, 우산 재봉원, 자수 재봉원, 천막 재봉원	· 섬유수공예자는 별도 · 양장 제조원→의복 · 모자제조원 · 자동재봉기계 조작원→재봉기계 조작원
전기배선수리·케이블접속 기능원 7335	전선을 가설, 설치 및 수리하고 케이블을 접속하는 자	고가 전력선 가설원, 전선 수리원, 지하전력케이블 부설원, 통신케이블 가설원, 케이블 접속원, 전철 고가전선 가설원	
전기장비정비기능원 7331	건물, 공장, 작업장 등의 사업체에서 전기기계 및 장치와 장비를 설치 및 수리하는 자	전기발전기 설치 및 정비원, 송·배전장치 설치 및 정비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전기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 변압기 설치원, 자동차 전기원, 항공기 전기원, 선박 전기원, 전기기구 정비원	
전동차량 정비기능원 7315	전동차의 기관 및 차체, 바퀴 등을 정비, 점검 및 수리를 하는 자	전동차기관 정비원, 전동차 기관 점검원, 전동객차 점검원, 전동객차 수리원	
전신·전화 설치 및 수리 기능원 7334	본국이나 사용처에 전신, 전화장비를 설치 및 수리하는 자	전신·전화 설치원 및 수리원	
전자장비 설치·수리 기능원 7332	방송수신기, 영상·음향기기 및 유·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타 전자장비를 설치, 조정하는 자	방송통신장비 설치원, 전자음향장비 설치원, 신호장비 설치원, 컴퓨터 설치원, 의료장비 설치원	
전자장비 정비·수리 기능원 7333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등 영상·음향기기를 정비 및 수리하는 자	전자음향장비 수리원, 사무기기 수리원, 컴퓨터 수리원, 안테나 설치원	
전통건물 건축기능원 7121	전통적인 건축기법으로 가옥, 마구간 등과 같은 소규모의 구조물을 건축, 개조,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적 재료의 대목수, 전통건물 건축원, 전통건물 목수	
점화·발파 기능원 7112	광산 및 채석장에서 석탄, 광석, 암석 또는 기타 고형광물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폭파작업을 수행하는 자.	점화원, 발파원, 화약책임관리자, 화약수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능종사자 명칭	비 고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 기능원 7411	시계, 항해, 기상, 광학기구 등의 정밀기구를 제조 및 수리하는 자	시계 제조원 및 수리원, 정밀기구 제조원 및 수리원, 광학기구 제조원 및 수리원, 카메라 수리원, 정형기구 제조원 및 수리원, 재활기 제조원, 외과기구 제조원 및 수리원, 온도조절기 제조원, 차량계기 제조원	· 치과 기공사 → 치과기술종사자
제빵 · 과자 · 떡 · 두부 제조기능원 7512	각종 빵, 과자 및 밀가루 제품을 제조	제빵원, 제과원, 떡제조원, 두부제조원, 유부제조원, 제빵포장원, 과자포장원	
조물제품 제조기능원 75244	고리버들, 갈대, 대나무 등의 재료로 손을 사용하여 조물락 거리며 제품을 제조하는 자	수공 죽제품 제조원, 수공 고리버들제품 제조원, 수공 돗자리 제품 제조원	
지붕잇기 기능원 7139	각종 지붕을 잇는 자	기와지붕, 금속지붕, 합성물질 지붕잇기원	
직물 · 가죽 관련 제조기능원 7534	의복, 장갑 및 기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옷본을 제조하고 직물, 가죽 및 기타 재료에 표시하고 재단하는 자	옷본 제조원, 모자 제조원, 의복재단원, 가죽의복 재단원, 장갑본 제조원, 가죽장갑 재단원, 매트리스본 제조원, 텐트본 제조원, 우산 재단원, 장갑 재단원, 텐트 재단원	
철도차량 정비 기능원 7314	철도기관차 기관 및 객차, 화차를 정비, 점검 및 수리하는 자	철도기관차 정비원, 객화차 정비원	
콘크리트 관련기능원 7123	철강 콘크리트 골조 및 구조물 등을 세운 후 콘크리트를 성형하기 위해 거푸집을 제작하거나 철근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는 자	거푸집설치원, 철근원, 시멘트 혼합원, 테라조원	· 콘크리트완성기 조작원 → 콘크리트 제품 가공기 조작원 · 도로포장기 운전원 → 운전원 분야
특수차량정비 기능원 7312	트랙터, 트레일러 등의 차량에 대한 손질, 분해, 점검하는 자	특수차량 정비원, 트랙터 정비원, 트레일러 정비원	
펠트 가공 기능원 7541	의복 등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모피 및 양모가 있는 펠트를 가공하는 자	펠트 선별원, 원피 선별원, 가죽 선별원, 양피 선별원, 펠트 염색원, 펠트 세척원, 펠트 절단원, 피혁 염색원, 피혁 광택원, 원피 분할원	· 의복모피 선별원 → 모피 제조원 · 원피 제육기 및 제모기 조작원, 가죽 무두질기 조작원, 가죽 염색기 조작원 → 모피 · 가죽가공기 조작원
항공기 정비 기능원 7313	항공기 엔진과 기타 항공기의 기체를 점검, 수리, 분해, 조립하는 자	항공기 엔진 수리원, 항공기기관 점검 정비원, 항공기 기체 정비원	

□ 고정기계장치 조작원(가나다순)

고정기계장치 조작원은 한 지점 또는 원격조정을 통하여 자동화된 조립라인과 산업용 로봇을 포함하여 금속, 광물, 유리, 도기, 목재, 종이, 화학물 가공용 산업장치 또는 상하수 처리, 전력발전 및 기타 목적용 산업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계장치 또는 장비 명칭	비 고
공기압축기 장치원 **81631**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도구, 호이스트 또는 기타 장비에 압축공기를 발생 공급해주기 위해 공기압축기를 조작하는 자	공기압축기, 가스압축기, 질소발생기조작원	
금속열처리로 장치원 **8124**	금속대상물의 물리적 특성을 가열, 냉각 및 화학적 처리로 바꾸는 장치를 조작하는 자	금속혼합기, 금속담금질로, 금속경화로, 금속열처리장치 조작원	
금속인발·압출장치원 **8125**	선, 튜브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다이를 통하여 금속을 인발 또는 압출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자	금속인발기, 금속압출기, 연선기 조작원	· 철사인발원 → 대장장이
기타 화학물 가공장치원 **8159**	표백제로 화학용액을 처리하고 석탄으로부터 코크스나 가스를 생산하며, 천연 또는 합성폴리머를 가지고 합성섬유를 압출 및 성형하고 비료를 생산하거나 방사성 물질을 추출 및 가공하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화학물표백기, 코크스제조기, 목탄생산기, 화학섬유생산기, 비료제조기, 고무가공장치, 방사성물질가공기, 소금제조기, 죽염제조기	
댐·저수지조절장치원 **81639**	댐의 수문 밸브를 조절하는 분수계를 조작하거나 물의 유출을 조절하는 수도를 조작하는 자	댐수문조절자, 저수지조절자	
도기로 장치원 **8132**	도기, 자기 또는 벽돌제조에 사용되는 로, 가마와 기타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는 자	벽돌로, 타일로, 도자기로	· 벽돌 및 타일성형원 →기능종사자
돌 가공장치원 **8112**	광석 및 석재를 분쇄하거나 필요없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광물을 세척, 분리, 여과, 추출 및 혼합하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절할기, 파쇄기, 분쇄기, 선광기, 세척기, 재단기, 연마기, 금·은 침전기	· 석재절단원 → 돌 절단 기능종사자
목재 가공장치원 **8141**	목재 제재기를 조작하거나 단판을 절단하여 합판을 제조하며, 목재 칩을 만들거나 재생하는 등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제재기, 목재가공기, 목재건조기, 목재처리기, 단판절단기, 합판제조기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계장치 또는 장비 명칭	비 고
발전 장치원 8161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화력발전장치, 수력발전장치, 원자력발전장치, 발전터빈, 배전반	
보일러장치원 8162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	선박보일러, 중기발생보일러, 증기엔진, 증기기관차보일러	
산업용 로봇 조작장치원 8172	산업용 로봇을 장착 및 탈착하는 자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 조종원→기술공
상하수 처리 장치원	상수 또는 하수를 정화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자	펌프장, 정수장치, 하수처리장치	
석유·천연가스정제장치원 8155	석유, 석유기저제품 및 부산물 또는 천연가스를 정제, 증류 및 처리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자	탈황처리기, 정제기, 제어기, 배합기, 파라핀제조기	
소각장치원 8163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장비를 조작하는 자	폐기물소각로, 소각장운영원	
오물·시체 처리장치원 81639	오물을 처리하거나 시체를 처리하는 화장시설을 조작하는 자	분뇨처리설비, 시체화장시설	
용광로장치원 8121	광석제련, 금속제련 및 정련로를 조작하는 자	금속용광로, 제강로, 제련로	
용해로 및 가열로 장치원 8122	금속을 녹이거나 가열시키는 가마를 조작하는 자	금속용해로, 금속가열로, 열간압연기, 냉간압연기	
유리 가공장치원 8131	유리제조에 사용되는 로, 가마와 기타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는 자	유리용해로, 유리성형기, 유리취주기, 유리인발기, 유리조각기, 유리식각기	· 유리취주원, 유리절단원→기능종사자
유전천공 및 시추장비원 8113	천연석유를 채취하기 위하여 땅속을 파거나, 시굴하기 위해 장비를 조작하는 자	유정탑, 천공장비, 시추장비	
자동조립라인 장치원 8171	자동, 반자동 조립라인을 조작하는 자	자동조립라인	
점토제품 가공장치원 8139	도기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점토를 분쇄, 혼합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자	점토혼합기, 점토분쇄기	
종이 제조 장치원 8143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를 제조하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펄퍼기, 펄프비터기, 펄프배합기, 재지기, 재권치기	
주조 장치원 8123	금속을 녹여서 주형에 부어 넣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장치를 조작하는 자	주물주조기, 금형주조기, 금속주조기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계장치 또는 장비 명칭	비 고
채광장치원 8111	광산, 채석장에서 갱도를 뚫거나 발파용 구멍을 뚫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굴착기, 착암기, 채광기	· 광원, 채석원→기능종사자
펄프 제조장치원 8142	펄프를 제조하는 일련의 장치를 조작하는 자	펄프표백기, 펄프정제기	
화학물 증류·반응기장치원 8154	화학물을 증류 및 반응, 변환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자	화학물증류기, 화학물반응기, 증발기	
화학물가열처리장치원 8152	화학물 및 화학물 관련 공정에서 조제, 하소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열처리를 위한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조제장치, 하소장비, 가공로, 시멘트가공로, 접착제제조가마, 가압기, 분무건조기	
화학물 분쇄장치원 8151	화학물 및 관련물질 가공에 사용되는 화학물을 분쇄, 파쇄, 혼합 및 합성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화학물분쇄기, 화학물마쇄기, 화학물혼합기	
화학물 여과장치원 8153	화학물과 관련 물질을 여과, 분리시키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여과기, 원심분리기, 원유처리장비, 화학물추출기	
환기장치원 81637	난방 및 환기장치에서 전기모터, 송풍기 및 기타 장비를 통제하는 자	난방장치, 환기장치	

□기계조작원(가나다순)

기계조작원이란 한 지점에서 산업용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정기계장치 조작과는 다름에 유의한다.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 계 명 칭	비 고
고무제품용 기계조작원 8231	고무 및 고무화합물을 혼합하고 천연, 합성고무로 주형신발, 가정용품, 절연체, 공업용 부속품 또는 자전거, 자동차, 트랙터, 항공기 등의 타이어와 같은 구성부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타이어경화기, 타이어성형기, 타이어재생기, 고무성형기, 고무압출기, 고무캘린더기, 고무합성기, 고무양각기	
곡식 및 조미료제분기계 조작원 8273	인간 또는 동물소비용 곡물, 양념 및 관련 식료품을 분쇄, 마쇄, 혼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도정기, 마찰식 정미기, 제분기, 조미료제분기, 곡물가공기, 밀정선기	
과실·채소 가공기계조작원 8275	과실과 채소로부터 주스를 추출하거나 건조, 조리, 통조림 또는 냉동으로 과실, 야채 및 견과를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과실통조림기, 채소통조림기, 과실살균기, 채소살균기, 과실냉장기, 채소냉장기, 과실건조기, 채소건조기, 과실주스기, 채소주스기, 과실저장기, 채소저장기, 과실세척기, 채소세척기	· 청량음료 제조기 조작원 →음료제조기 조작원
광물 및 시멘트기계조작원 8213	사전 주형한 콘크리트 및 석재제품을 제조, 완성하거나 건물용 주형석재를 제조하는 압출, 주형, 혼합, 연마 및 절단기계를 조작하는 자	석재가공기, 인조석제품가공기, 콘크리트제품 가공기, 콘크리트 혼합장치, 석면시멘트제품 가공기, 산업용다이아몬드 절단기·제조기·연마기·광택기, 모자이크절단기	· 시멘트생산용 가마 조작원 →가공로장치 조작원 · 석재가공장치 조작원→돌 가공장치 조작원
금속도금·도포용 기계조작원 8223	부식과 마모에 저항성을 높이고 장식목적 또는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분하기 위하여 금속제품 또는 부품을 도금 및 도포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자	금속세척기, 전기도금기, 용융도금기, 금속분무기, 금속완성용 기계, 금속광택기	
기계공구조작원 8211	정밀한 각종 공작기계를 조작하는 자, 금속표면을 연삭, 연마하거나 공구날을 세우는 자로서 자동 또는 반자동 금속공작기계를 조작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	선반, 밀링기, 보링기, 평삭기, 드릴링기, 금속연삭기, 광택기, 프레스기, 전단기, 금속공작기	
기타 기계조작원 8299	용기에 주입하고 제품을 포장하여 라벨을 붙이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주입·포장 및 봉합기, 케이블 및 배판부설기, 도로표시기, 상표 및 라벨부착기, 병세척기, 로프접속기, 와이어접속기	· 단순히 포장하고 상표만 부착하는자→ 단순노무종사자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 계 명 칭	비 고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8240	목재를 제재, 성형, 천공, 평삭, 선반 또는 조각하는 나무제품용 기계를 조작하는 자	목공선반, 목재조각기, 목재완성기	· 목공예원→기능종사자
낙농제품 기계조작원 8272	치즈, 크림 또는 기타 낙농제품을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우유살균기, 분유생산기, 연유생산기, 버터제조기, 치즈제조기, 아이스크림제조기	
담배제조 기계조작원 8284	엽연초를 가공 처리하고 담배를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엽연초배합기, 엽연초절단기, 엽연초 진공조절기, 엽연초제경기, 담배생산기	
모자 등 기계조작원 8269	모자나 장식끈 또는 기타 장식물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는 자	모자제조기, 매트리스제조기, 직물재단기, 끈제조기	· 여성모자제조원,의복웃본제조원→기능종사자
모피·가죽 가공기계 조작원 8265	가죽을 가공하거나 모피 또는 양모가 있는 원피를 처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원피제육기, 원피제모기, 가죽무두질기, 가죽염색기, 모피완성기, 가죽세척기, 가죽광택기, 가죽절단기	· 펠트염색원, 무두질원 → 기능종사자
빵·과자·사탕 제조기계 조작원 8274	밀가루, 코코아 및 기타 성분으로부터 빵, 파스트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혼합, 합성, 성형 및 굽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빵생산기, 과자생산기, 파스트리생산기, 설탕과자생산기, 사탕생산기, 사탕제조기, 초콜릿성형기, 국수제조기, 라면제조기, 강정제조기	· 제빵원→기능종사자 · 조리사 → 음식점조리사
사진처리기 조 작 원 8225	사진필름 및 인화지 제조기를 조작하여, 노출된 사진필름을 가공하고 인화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	필름현상기, 사진확대기, 사진인화기, 필름생산기, 인화지생산기, 영화필름현상기, 사진판제조기, 노칭기	
설탕제조 기계조작원 8277	사탕수수 및 사탕나무에서 설탕액을 추출 및 가공하고 설탕액을 정화하거나 뜨거운 설탕액으로부터 정제설탕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사탕수수분쇄장비, 사탕무확산기, 설탕정제기, 설탕정제탄화기	
섬유가공기계 조작원 8261	방직, 합사, 연사 및 권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섬유혼합기, 소면기, 랩핑기, 연조기, 조방기, 정방기, 권사기, 연사기, 합사기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8266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을 세척, 세탁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의복세탁기, 드라이크리닝기, 세탁건조기, 호부처리기	· 수동세탁원, 수동다림질원→세탁 및 다림질원
술·음료제조기계 조작원 8282	맥아주정, 포도주 및 기타 알콜성 또는 과일 및 야채 주스를 제외한 비알콜성 음료를 만들기 위하여 곡물과 혼합, 압착 또는 맥아처리 및 발효시키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맥아제조기, 발효기, 주정배합장치, 주정증류장치, 포도주제조기, 천연광수생산기, 천연탄산수 생산기, 청량음료 생산기	
신발제조 관련 기계조작원 8267	운동화, 구두, 핸드백 및 기타 엑세서리를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일반신발생산기, 스포츠 신발생산기, 정형화생산기, 라피아신발제조기, 등산화 등 특수신발제조기	· 가죽수공예자,신발수선원→기능종사자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 계 명 칭	비 고
약제품·위생용품용 기계조작원 **8221**	의약품 및 화장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화합물 및 기타 성분을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약제품생산기, 의약품과립기, 화장품생산기, 화장용품과립기, 세제생산기	
연필·양초·가스기계 조작원 **8229**	연필제조기, 양초제조기, 염소가스·수소가스 등 가스생산기를 조작하는 자	연필제조기, 양초제조기, 양초절조기, 양초주입기, 염소가스생산기, 수소가스생산기, 납제조기	
유지제조기계조작원 **8276**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 씨앗, 견과에서 기름을 추출하며 견과를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식용유착유기, 식용유정제기, 마가린제조기, 식용견과세척기, 식용견과가공기	·버터제조기 조작원→낙농제품기계 조작원
육류·어류 가공 기계조작원 **8271**	유류, 어류를 가공처리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훈제기, 행제조기, 소시지제조기, 통조림기, 살균기, 냉동기, 어류가공기, 육류 저장조리기, 동물시체세척기	
인쇄기 조작원 **8251**	종이, 주석판 및 기타 재료 위에 인쇄하는 활판, 평판, 윤전, 옵셋 등의 인쇄기를 조작하는 자	활판인쇄기, 평판인쇄기, 윤전인쇄기, 옵셋인쇄기, 섬유인쇄기, 벽지인쇄기	·직물인쇄원→기능종사자
재봉기계 조작원(자동) **8264**	직물, 모피, 가죽 등의 재료를 가지고 양복, 양장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자동재봉 설비를 조작하는 자	직물제품용 재봉기계, 가죽제품용 재봉기계, 신발제봉기계, 자수재봉기계, 자동모피재봉기계	·재봉원→기능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제조기계 조작원 **8291**	전기 및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코일권선기, 필라멘트권선기, 반도체제조용 장비, 브라운관 제조용 장비	
제책용 기계조작원 **8252**	책을 제책하고 인쇄물을 모아 완성작업을 수행하는 제책기를 조작하고, 엠보싱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제책기, 책 엠보싱기	
조미식품 생산 기계조작원 **8283**	천연조미제품,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거나 장류, 식초를 발효시키거나 화학조미료를 만들기 위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자	천연조미식품 제조기, 장류생산기, 식초제조기, 효모제조기, 식용색소 제조기, 커피프리머 제조기	·소금제조장치 조작원→기타화학물가공장치 조작원 ·조미료제분기 조작원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8253**	종이, 판지, 카드지, 셀로판 및 유사재료로 상자, 봉투, 종이가방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종이상자제조기, 종이봉투제조기, 판지라이닝기, 셀로판백 제조기, 기저귀제조기, 티슈제조기, 종이컵제조기, 식품포장용 종이용기제조기	
직조기·편조기 조작원 **8262**	직조와 편직 및 기타 물질과 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련장비를 조작하는 자	정경기, 통경기, 직조기, 편직기, 망제조기	
차·커피·코코아 가공 기계 조작원 **8281**	차, 커피 또는 코코아 열매 또는 치커리 뿌리를 혼합하고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커피원두 가공기, 차 가공기, 코코아두 가공기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기 계 명 칭	비 고
차량도장기 조작원 8224	승용차, 버스 및 트럭과 같은 차량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하여 도장기계를 조작하는 자, 또한 완성제품의 검사단계에서 흠을 고치기 위해 도장을 하거나 액체가 들은 통에서 물체를 꺼낸 다음 액체를 제거하는 자	차량도장기, 출고차량도장수정원	· 건물도장원 →기능종사자
탄약·폭약용 기계조작원 8222	총탄과 폭약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화학물 및 성분을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탄약제품용 기계, 폭약용 기계, 불꽃제품용 기계, 성냥생산기	
판금기조작원 8212	철판, 동, 주석, 황동, 알루미늄 또는 아연과 같은 금속판으로 제품이나 그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자	차량판금기, 항공기판금기, 금속가구판금기, 보일러판금기, 함석판금원, 동판금원	· 차량차체 용접원 → 기능종사자
표백·염색 기계조작원 8263	섬유, 방사 또는 직물을 표백, 염색, 세척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표백기, 염색기, 직물세척기, 직물수축기, 직물방수기, 섬유압착기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원 8232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플라스틱의 성형기, 압출기, 적층기, 사출기, 도장기, 도포기, 조각기, 광택기, 절단기, 식각기, 연마기, 완성기	

□ 조립원(가나다순)

조립원은 엄격하게 설정된 절차에 따라 구성부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입요령	조립하여 이루어 지는 기계 명칭	비 고
가정용 전기기구조립원 8322	가정용 전기기구의 구성품이나 부품을 조립하는 자	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고무제품 조립원 83312	물병, 얼음주머니, 장난감, 권투링 쿠숀 및 경기용품과 같은 고무제품을 조립하는 자	고무제품 조립원	
금속제품 조립원 83311	여러 가지 형태의 금속제품 구성품 또는 부품을 조립하는 자	금속제품 조립원	
기계 및 관련제품 조립원 8313	산업용 기계 및 기계공구를 조립하는 자	천공기, 절단기, 탈곡기, 경운기, 곡물포장기, 불도저, 운토기, 드릴링기, 밀링기, 보링기, 평삭기, 선반, 내연기관, 목공기계, 섬유용기계, 인쇄용기계	
목재 관련제품 조립원 8332	여러 가지 형태의 목재가구와 여러 가지 형태의 목재 또는 관련 재료로 만든 구성품 또는 부품을 조립하는 자	목재가구 조립원, 목재제품 조립원	
섬유·가죽제품 조립원 8333	가죽, 섬유로 만든 구성품 또는 부품을 조립하고 기타 부착물을 부착하는 자	섬유제품 조립원, 가죽제품 조립원	
자동차 조립원 8311	자동차 조립라인의 각종 기계를 조작하는 자와 내연기관 차체를 조립하는 자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조립라인 기계, 자동차 의장기계	
전기·전자장비 조립원 8321	전기장비 또는 전자장비의 구성품이나 부품을 조립하는 자	배전반, 조명장치, 절연선, 케이블, 축전지,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복사기, 계산기, 전자사무용기기, 계기, 계측기, 정밀기구	
판지제품 조립원 8339	판지 재료로 만든 구성품 또는 부품을 조립하는 자	판지제품 조립원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83313	가방, 장난감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조립하는 자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항공기·선박 조립원 8312	항공기 조립라인의 각종 기계를 조작하는 자와 선박기관을 조립하는 자	항공기 조립원, 선박기관 조립원, 터빈 조립원	

23-b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공분야 참고자료

- 표본조사표 [7] 전공분야 항목 -

통계청

일 러 두 기

1. 사 용 목 적

표본조사표 [7] 전공분야의 응답항목 참고자료임

2. 사 용 방 법

전공학과는 아는데 전공분야를 모르는 경우에 사용함
전공학과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놓았으므로 해당학과를 찾아 전공분야 확인

3. 전공분야의 종류

가. 어문학계열

○ 러시아어(노어)과, 영어과, 중국어과, 일어과, 국어과, 독어과, 불어과, 서반아어(스페인어)과 등 어학 관련 학과

○ 노문학과, 영문학과, 중문학과, 일문학과, 국문학과, 독문학과, 불문학과, 서어서문학과(스페인문학)과 등 문학 관련 학과

나. 인문학계열

고고학과, 사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미학과, 선교학과, 신학과, 인류학과, 목회학과 등의 인문학 관련 학과

다. 사회계열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심리학과, 정치학과, 경찰학과, 관광학과, 광고홍보학과, 교통학과, 지역학과, 국제학과, 노동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재학과, 물류학과, 보험학과, 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북한학과, 비서학과, 사회학과, 세무학과, 신문방송학과, 아동학과, 언론학과, 여성학과, 유통학과, 통상학과, 호텔학과 등 사회 관련 학과

라. 이학계열

과학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수학과,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유전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전산학과, 정보처리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천문학과, 환경학과 등 이학 관련 학과

마. 공학계열

건설공학과, 건축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광학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물공학과, 식품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산공학과, 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통신공학과, 항공공학과, 해양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공학 관련 학과

바. 농림학계열

낙농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농업기계학과, 농화학과, 농학과, 동물공학과, 산림학과, 식량자원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임학과, 조경학과, 축산학과, 화훼학과 등 농림학 관련 학과

사. 수산해양학계열

수산가공학과, 수산물리학과, 어업학과, 해양경찰학과, 해양과학과, 해양생물학과, 해양자원학과, 해양학과 등 수산해양학 관련 학과

아. 가정학계열

가정관리학과, 가정복지학과, 가정학과, 가족학과, 급식산업학과, 미용학과, 생활과학과, 소비자학과, 식품학과, 영양학과, 의상학과, 조리학과 등 가정학 관련 학과

자. 의학계열

간호학과, 보건학과, 방사선학과, 수의학과, 위생학과, 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등 의학 관련 학과

차. 약학계열

약학과, 제약학과, 한약학과 등 약학 관련 학과

카. 예술학계열

디자인학과, 공예학과, 국악학과, 기악학과, 도예학과, 동양미술학과, 만화예술학과, 문예창작학과, 미술학과, 사진학과, 성악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예술학과, 음악학과, 작곡과, 조소과, 조형과, 회화과 등 예술 관련 학과

타. 체육학계열

경기지도학과, 경호학과, 골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무도학과, 무용학과, 사회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스포츠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등 체육 관련 학과

파. 사범계열

가정교육과, 공업교육과, 과학교육과, 교육학과, 국민윤리교육과, 국사교육과, 국어교육과, 기계교육과, 기독교교육과, 농업교육과, 독어교육과, 물리교육과, 미술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상업교육과, 생물교육과, 수산교육과, 수학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음악교육과, 전기교육과, 전자교육과, 종교교육과, 중등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지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초등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특수교육과 등 사범 계열 학과

(가 ~ 경)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 가 >		건강식품가공과	가정학계열	건축설비학과	공학계열
가구· 제품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건강식품과학과	가정학계열	건축설비학전공	공학계열
가구디자인과	예술학계열	건강증진	가정학계열	건축설비환경	공학계열
가구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건설· 건축계열	공학계열	건축시공과	공학계열
가구실내디자인	예술학계열	건설경영학과	공학계열	건축실내건축학부	공학계열
가스냉동과	공학계열	건설계열	공학계열	건축장식과	공학계열
가스산업	공학계열	건설공학과	공학계열	건축전공	이학계열
가정과	가정학계열	건설공학부	공학계열	건축조경및토목공학부	공학계열
가정과학부	가정학계열	건설교통공학과	공학계열	건축조경학부	공학계열
가정관리· 의류학과군	가정학계열	건설교통공학부	공학계열	건축조형예술계열	예술학계열
가정관리과	가정학계열	건설교통공학협동과정	공학계열	건축컴퓨터공학과군	공학계열
가정관리학과	가정학계열	건설구조공학과	공학계열	건축토목계열	공학계열
가정관리학전공	가정학계열	건설도시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토목공학과군	공학계열
가정교육과	사범계열	건설도시환경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토목공학부	공학계열
가정교육전공	사범계열	건설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토목도시공학부	공학계열
가정보건계열	가정학계열	건설안전과	공학계열	건축토목환경공학과군	공학계열
가정보육과	가정학계열	건설재료공학과	공학계열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공학계열
가정복지· 아동군	가정학계열	건설지구환경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학과	공학계열
가정복지과	가정학계열	건설프로젝트관리전공	공학계열	건축학부	공학계열
가정복지학과	가정학계열	건설학과	공학계열	건축학전공	공학계열
가정복지학전공	가정학계열	건설환경건축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화학재료공학계열	공학계열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정학계열	건설환경공학과	공학계열	건축환경디자인계열	예술학계열
가정정보계열	가정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환경디자인과	공학계열
가정학과	가정학계열	건설환경공학전공	공학계열	건축환경시스템학부	공학계열
가정학교육전공	사범계열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게임공학전공	공학계열
가족복지과	사회계열	건설환경학과	이학계열	격기학과	체육학계열
가족복지학과	사회계열	건축공학계열	공학계열	경기지도과	체육학계열
가족상담학과	사회계열	건축공학과	공학계열	경기지도학과	체육학계열
가족소비자학과	사회계열	건축공학교육과	사범계열	경기지도학전공	체육학계열
가족아동학과	가정학계열	건축공학부	공학계열	경법학부	사회계열
가족학전공	가정학계열	건축공학전공	공학계열	경상계열	사회계열
가족환경학과	가정학계열	건축과	공학계열	경상정보계열	사회계열
가축질병학과	농림학계열	건축교육전공	사범계열	경상정보학부	사회계열
간호	의학계열	건축기계설비	공학계열	경상학과군	사회계열
간호과	의학계열	건축도시공학과	공학계열	경상학군	사회계열
간호과학과	의학계열	건축도시공학부	공학계열	경상학부	사회계열
간호교육전공	사범계열	건축도시조경학부	공학계열	경상행정학부	사회계열
간호학과	의학계열	건축도시토목공학계열	공학계열	경영경영정보학부	사회계열
간호학교육전공	사범계열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공학계열	경영경제전공	사회계열
간호학부	의학계열	건축디자인과	예술학계열	경영경제학부	사회계열
간호학전공	의학계열	건축미술학과	예술학계열	경영계열	사회계열
감사행정학과	사회계열	건축설계과	공학계열	경영과	사회계열
개발경제전공	사회계열	건축설계학과	공학계열	경영관광경영학과군	사회계열
개발행정학과	사회계열	건축설계학전공	공학계열	경영관광학부	사회계열
건강관리학과	약학계열	건축설비공학과	공학계열	경영관리전공	사회계열
건강생활과	체육학계열	건축설비과	공학계열	경영관리학과	사회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경영광고학부	사회계열	경제작물재배학과	농림학계열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경영교육전공	사범계열	경제전공	사회계열	공간환경학부	이학계열
경영국제통상학부	사회계열	경제정보학부	사회계열	공공감사학과	사회계열
경영대학	사회계열	경제정책전공	사회계열	공공정책전공	사회계열
경영무역학부	사회계열	경제정책학과	사회계열	공공정책학과	사회계열
경영법률정보	사회계열	경제통상학부	사회계열	공공정책학부	사회계열
경영산업심리학부	사회계열	경제학과	사회계열	공과대학	공학계열
경영실무	사회계열	경제학부	사회계열	공법전공	사회계열
경영전산계열A	사회계열	경제학전공	사회계열	공법학과	사회계열
경영전산계열B	사회계열	경제행정학부	사회계열	공안행정학과	사회계열
경영정보공학과	공학계열	경제협력전공	사회계열	공업경영과	사회계열
경영정보과	사회계열	경제회계학부	사회계열	공업경영학과	공학계열
경영정보과학부	사회계열	경찰법학과	사회계열	공업교육계열	사범계열
경영정보관광학부	사회계열	경찰법학부	사회계열	공업교육전공	사범계열
경영정보론전공	사회계열	경찰소방행정학과	사회계열	공업교육학과	사범계열
경영정보및통계학학부	사회계열	경찰학부	사회계열	공업디자인과	예술학계열
경영정보시스템과	공학계열	경찰행정과	사회계열	공업디자인전공	공학계열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공학계열	경찰행정법학과군	사회계열	공업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경영정보전공	사회계열	경찰행정학과	사회계열	공업화학과	공학계열
경영정보학과	사회계열	경찰행정학전공	사회계열	공업화학교육과	사범계열
경영정보학부	사회계열	경호비서학과	체육학계열	공업화학전공	공학계열
경영정보학전공	사회계열	경호학과	체육학계열	공연영상학과	예술학계열
경영정책학과	사회계열	경호행정과	체육학계열	공연영상학부	예술학계열
경영지도학과	사회계열	계산통계학과	이학계열	공연예술학부	예술학계열
경영학과	사회계열	계획학과	사회계열	공연학부	예술학계열
경영학과군	사회계열	고고문화인류학과	인문학계열	공연행정학과	사회계열
경영학부	사회계열	고고미술사학과	인문학계열	공예과	예술학계열
경영학전공	사회계열	고고미술사학전공	인문학계열	공예교육전공	사범계열
경영학학산협동과정	사회계열	고고인류학과	인문학계열	공예디자인과	예술학계열
경영행정정보과	사회계열	고고학과	인문학계열	공예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경영행정학과군	사회계열	고분자공학과	공학계열	공예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경영회계경영정보학과군	사회계열	고분자공학전공	공학계열	공예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경영회계경영정보학부	사회계열	고분자및화학공학과	공학계열	공예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경영회계과	사회계열	고분자재료공학전공	공학계열	공예미술학과	예술학계열
경영회계관광경영학과군	사회계열	고분자정밀화학공학과	공학계열	공예전공	예술학계열
경영회계학과	사회계열	고분자학과	공학계열	공예학과	예술학계열
경영회계학부	사회계열	고분자화학공학부	공학계열	공예학부	예술학계열
경영회계학전공	사회계열	골프경영전공	체육학계열	공장자동화과	공학계열
경제· 통상학부	사회계열	골프전공	체육학계열	공정공학과	공학계열
경제경영학	사회계열	골프지도학과	체육학계열	공정공학과군	공학계열
경제국제통상학부	사회계열	골프학과	체육학계열	공중보건학과	의학계열
경제무역학과	사회계열	공간계획학과	이학계열	공중보건학전공	의학계열
경제무역학부	사회계열	공간사회환경공학부	예술학계열	공학1계열	공학계열
경제무역학전공	사회계열	공간예술	예술학계열	공학2계열	공학계열
경제무역학학과군	사회계열	공간진단학부	이학계열	공학3계열	공학계열
경제보험금융학부	사회계열	공간환경공학과	공학계열	공학계열	공학계열

(공 ~ 국)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공학군	공학계열	관광외식경영	가정학계열	교육경영전공	사범계열
공학부	공학계열	관광외식산업과	가정학계열	교육공학과	사범계열
과학교육과	사범계열	관광이벤트산업	사회계열	교육공학전공	사범계열
과학교육전공	사범계열	관광일어과	어문학계열	교육과정전공	사범계열
과학교육학과	사범계열	관광일어통역과	어문학계열	교육과학과	사범계열
과학교육학부	사범계열	관광정보과	사회계열	교육과학부	사범계열
과학기술정보학과군	이학계열	관광정책학과	사회계열	교육문화정책학과	사회계열
과학기술학부	이학계열	관광조경학과	농림학계열	교육방법전공	사범계열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이학계열	관광조리과	가정학계열	교육방송전공	사범계열
과학사회학과	이학계열	관광중국어	어문학계열	교육사회및사회교육전공	사범계열
과학학과	이학계열	관광중국어통역과	어문학계열	교육사회학전공	사범계열
과학학협동과정	사회계열	관광통역계열	어문학계열	교육상담전공	사범계열
관광· 통상· 경영학과	사회계열	관광통역과	어문학계열	교육심리및방법전공	사범계열
관광개발학과	사회계열	관광학과	사회계열	교육심리전공	사범계열
관광경영, 관광개발학과군	사회계열	관광학부	사회계열	교육심리학과	사범계열
관광경영과	사회계열	관광행정학과	사회계열	교육정보공학전공	사범계열
관광경영레저계열	사회계열	관광호텔경영과	사회계열	교육정보관리전공	사범계열
관광경영영어과	어문학계열	관광호텔경영학과	사회계열	교육정책학전공	사범계열
관광경영전공	사회계열	관광호텔계열	사회계열	교육철학및교육사전공	사범계열
관광경영중국어과	어문학계열	관광호텔조리과	가정학계열	교육철학전공	사범계열
관광경영학과	사회계열	관리과학과	사회계열	교육학과	사범계열
관광경영학부	사회계열	관상원예과	농림학계열	교육학전공	사범계열
관광경영학전공	사회계열	관상원예학과	농림학계열	교육행정전공	사범계열
관광계열	사회계열	관상원예학전공	농림학계열	교육행정학과	사범계열
관광골프과	체육학계열	관현악과	예술학계열	교정교육전공	사범계열
관광과	사회계열	관현악전공	예술학계열	교통경영학과	사회계열
관광교육전공	사범계열	광고·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교통경제학과	사회계열
관광노어통역과	어문학계열	광고관광학부	사회계열	교통계획학과	사회계열
관광농업	농림학계열	광고기획과	예술학계열	교통공학과	공학계열
관광대학	사회계열	광고디자인과	예술학계열	교통공학전공	사회계열
관광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광고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교통관리학과	사회계열
관광러시아어	어문학계열	광고사진과	예술학계열	교통물류시스템공학부	사회계열
관광레저스포츠과	체육학계열	광고정보과	사회계열	교통물류정보과	사회계열
관광레져계열	사회계열	광고창작과	예술학계열	교통학과	사회계열
관광레져전공	사회계열	광고학과	사회계열	교통학전공	사회계열
관광문화학과	사회계열	광고홍보과	사회계열	교통행정학과	사회계열
관광사진영상	예술학계열	광고홍보전공	사회계열	교회음악과	예술학계열
관광사진예술과	예술학계열	광고홍보학과	사회계열	교회음악전공	예술학계열
관광산업과	사회계열	광고홍보학부	사회계열	교회음악학과	예술학계열
관광산업전공	사회계열	광고홍보학전공	사회계열	교회행정학과	사회계열
관광서비스경영	사회계열	광공학과	공학계열	구미지역협력학과	사회계열
관광스포츠과	체육학계열	광전자물리학전공	공학계열	구조공학과	공학계열
관광영어과	어문학계열	광학공학과	공학계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관광영어통역과	어문학계열	교과교육학과	사범계열	국문, 일문, 중문학과군	어문학계열
관광외국어계열	어문학계열	교리교육학과	사범계열	국문영문학과군	어문학계열
관광외국어학부	어문학계열	교역학과	인문학계열	국문학과	인문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국민윤리교육과	사범계열	국제금융학과	사회계열	국제통상법무학과	사회계열
국민윤리교육전공	사범계열	국제기구및협력안보전공	사회계열	국제통상법학과	사회계열
국민윤리학과	인문학계열	국제농업개발학과	농림학계열	국제통상전공	사회계열
국민윤리학전공	인문학계열	국제대학	사회계열	국제통상정보학과	사회계열
국사교육과	사범계열	국제마케팅학과	사회계열	국제통상학과	사회계열
국사학과	인문학계열	국제무역경제학부	사회계열	국제통상학부	사회계열
국사학전공	인문학계열	국제무역과	사회계열	국제통상학전공	사회계열
국악과	예술학계열	국제무역전공	사회계열	국제통상협력학과	사회계열
국악전공	예술학계열	국제무역정보학과	사회계열	국제평생교육학과	사범계열
국악학과	예술학계열	국제무역통상학전공	사회계열	국제학계열	사회계열
국어교육과	사범계열	국제무역학과	사회계열	국제학과	사회계열
국어교육전공	사범계열	국제문화경영학부	사회계열	국제학부	사회계열
국어교육학과	사범계열	국제문화계1	사회계열	국제해양정책학과	사회계열
국어국문, 영어영문학과군	인문학계열	국제문화계2	사회계열	국제행정학과	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어문학계열	국제문화과	사회계열	국제협력전공	사회계열
국어국문학부	어문학계열	국제문화정보학과	사회계열	국제협력학과	사회계열
국어국문학전공	어문학계열	국제물류관리학과	사회계열	국제호텔관광경영학전공	사회계열
국어국문한문학과군	어문학계열	국제물류학전공	사회계열	국제호텔쿠킹	사회계열
국어문, 사학군	어문학계열	국제법무학과	사회계열	국제홍보전공	사회계열
국어정보학협동과정	인문학계열	국제법무학전공	사회계열	국제환경법무학과	사회계열
국제거래법학과	사회계열	국제법전공	사회계열	국제회계경제학부	사회계열
국제경상학부	사회계열	국제부동산학과	사회계열	국제회의산업과	사회계열
국제경영, 정보시스템학과	사회계열	국제비지니스학과	사회계열	국토개발정책학과	사회계열
국제경영전공	사회계열	국제사회학부	사회계열	국학부	인문학계열
국제경영학과	사회계열	국제상무전공	사회계열	국학역사계열	인문학계열
국제경영학부	사회계열	국제어문학부	어문학계열	국학협동과정	어문학계열
국제경영학전공	사회계열	국제어학부	어문학계열	군사· 안보전공	사회계열
국제경제법학과	사회계열	국제언론학과	사회계열	군사정책학과	사회계열
국제경제정책전공	사회계열	국제언어문화학부	사회계열	귀금속공예과	예술학계열
국제경제학과	사회계열	국제인력개발전공	사회계열	귀금속디자인가공과	예술학계열
국제관계· 통상외교학과	사회계열	국제자원개발학과	이학계열	귀금속디자인과	예술학계열
국제관계연구학과	사회계열	국제재무학과	사회계열	귀금속보석디자인	예술학계열
국제관계전공	사회계열	국제정보경영학부	사회계열	그래픽디자인	예술학계열
국제관계지역학과군	사회계열	국제정보통신과	사회계열	그래픽디자인계열	예술학계열
국제관계학과	사회계열	국제정책학과	사회계열	그래픽산업디자인	예술학계열
국제관계학부	사회계열	국제정치학과	사회계열	그리스도교사회학과	사회계열
국제관계학전공	사회계열	국제조세법무학과	사회계열	극작과	예술학계열
국제관광경영과	사회계열	국제지역경제전공	사회계열	글로벌경영전공	사회계열
국제관광과	사회계열	국제지역경제학과	사회계열	금속공예학과	예술학계열
국제관광정보	사회계열	국제지역학과	사회계열	금속공재료공학과	공학계열
국제관광통상학부	사회계열	국제지역학과군	사회계열	금속공학과	공학계열
국제관광통역과	어문학계열	국제지역학부	사회계열	금속공학교육과	사범계열
국제관광학전공	사회계열	국제통상계열	사회계열	금속공학및재료공학부	공학계열
국제교양과	사회계열	국제통상과	사회계열	금속공학전공	공학계열
국제금융선물학과	사회계열	국제통상무역경제학과군	사회계열	금속과	공학계열
국제금융전공	사회계열	국제통상물류학과	사회계열	금속교육전공	사범계열

(금 ~ 노)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금속금형설계과	공학계열	기계및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기독교신학과	인문학계열
금속재료공학과	공학계열	기계및제어공학부	공학계열	기독교아동복지학과	사회계열
금속재료공학부	공학계열	기계산업계열	공학계열	기독교아동학과	사회계열
금속재료공학전공	공학계열	기계산업공학계열	공학계열	기독교육과	사범계열
금속재료과	공학계열	기계산업공학부	공학계열	기독교전공	인문학계열
금속조형디자인과	예술학계열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기독교학과	인문학계열
금융공학과	공학계열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기독교학부	인문학계열
금융과	사회계열	기계선박항공계열학과군	공학계열	기독교학전공	인문학계열
금융법학과	사회계열	기계설계공학과	공학계열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사회계열
금융보험과	사회계열	기계설계공학부	공학계열	기술경영전공	사회계열
금융보험법학과	사회계열	기계설계공학전공	공학계열	기술경영학과	사회계열
금융보험부동산학부	사회계열	기계설계과	공학계열	기술경영학협동과정	사회계열
금융보험학과	사회계열	기계설계학과	공학계열	기술경영협동과정	사회계열
금융보험학전공	사회계열	기계설계학전공	공학계열	기술공학부	공학계열
금융세무과	사회계열	기계설비과	공학계열	기술교육과	사범계열
금융전산과	사회계열	기계시스템공학전공	공학계열	기술교육전공	사범계열
금융정보과	사회계열	기계식품화학공학부	공학계열	기술정책전공	공학계열
금융증권전공	사회계열	기계에너지공학과	공학계열	기술정책학과	공학계열
금융학과	사회계열	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	공학계열	기악과	예술학계열
금융회계정보	사회계열	기계원자력공학부	공학계열	기악전공	예술학계열
금형과	공학계열	기계자동제어공학부	공학계열	기악학과	예술학계열
금형기술과	공학계열	기계자동차계열	공학계열	기악학부	예술학계열
금형설계과	공학계열	기계자동차공학과군	공학계열	기업경영학과	사회계열
금형설계학과	공학계열	기계자동차공학부	공학계열	기업교육전공	사범계열
금형성형	공학계열	기계자동화공학부	공학계열	기업법학과	사회계열
급식경영전공	가정학계열	기계재료과	공학계열	기전공학과	공학계열
급식산업학과	가정학계열	기계재료식품공학과군	공학계열	기전공학전공	공학계열
기계· 정밀기계· 기계	공학계열	기계전기제어	공학계열	기초과학1계열	이학계열
설계· 자동차공학과군		기계전자공학부	공학계열	기초과학2계열	이학계열
기계건축토목공학부	공학계열	기계컴퓨터공학과군	공학계열	기초과학계열	이학계열
기계계열	공학계열	기계항공공학부	공학계열	기초과학과군	이학계열
기계공학계열	공학계열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공학계열	기초과학부	이학계열
기계공학과	공학계열	기계항공자동화공학부	공학계열	< ㄴ >	
기계공학교육과	사범계열	기관공학과	공학계열	낙농공학과	공학계열
기계공학기계설계학과군	공학계열	기관공학부	공학계열	낙농공학전공	농림학계열
기계공학부	공학계열	기관공학해양생산학과군	공학계열	낙농과	농림학계열
기계공학전공	공학계열	기관과	공학계열	낙농학과	농림학계열
기계공학학연협동과정	공학계열	기관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낙농학전공	농림학계열
기계과	공학계열	기독교교육과	사범계열	낙농한우	농림학계열
기계교육과	사범계열	기독교교육학과	사범계열	냉동공조공학과	공학계열
기계교육전공	사범계열	기독교교육학전공	사범계열	냉동공학과	공학계열
기계금속공학부	공학계열	기독교복지학과	사회계열	네델란드어과	어문학계열
기계금형공학과	공학계열	기독교사회복지전공	사회계열	노년학과	사회계열
기계냉동자동차공학부	공학계열	기독교사회학과	사회계열	노동경제학과	사회계열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공학계열	기독교상담학과	사회계열	노동법학과	사회계열
기계및산업공학부	공학계열	기독교상담학전공	사회계열	노동복지학과	사회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노동정책학과	사회계열	농학과	농림학계열	도시정책학과	사회계열
노사관계전공	사회계열	농학및원예학전공	농림학계열	도시조경학과	농림학계열
노사관계학과	사회계열	농학연초학과군	농림학계열	도시조경학과군	농림학계열
노사인력관리학과	사회계열	농학전공	농림학계열	도시조경학부	농림학계열
노사조정과	사회계열	농화학과	농림학계열	도시지역개발행정전공	사회계열
노사행정학과	사회계열	농화학식품공학과군	농림학계열	도시지역계획학과	사회계열
노서아어과	어문학계열	뉴미디어과	공학계열	도시지역과학부	이학계열
노어노문학과	어문학계열	뉴미디어전공	사회계열	도시행정전공	사회계열
노어노문학전공	어문학계열	뉴미디어학과	사회계열	도시행정학과	사회계열
노어학과	어문학계열	< 다 >		도시환경건설공학과군	공학계열
노인보건복지과	사회계열	다중매체영상학부	예술학계열	도시환경공학부	공학계열
노인복지학과	사회계열	대기과학과	이학계열	도시환경디자인과	예술학계열
노인복지학전공	사회계열	대기과학전공	이학계열	도시환경정책학과	사회계열
녹지조경학과	농림학계열	대기환경과학과	이학계열	도시환경행정학과	사회계열
논리교육전공	사범계열	대기환경과학전공	이학계열	도예교육전공	사범계열
농가정학과	농림학계열	대순종학과	인문학계열	도예디자인	예술학계열
농경제사회학부	사회계열	대중음악	예술학계열	도예학과	예술학계열
농경제학과	사회계열	데이터베이스전공	공학계열	도예학전공	예술학계열
농공기술과	농림학계열	데이터정보학과	사회계열	도자공예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농공농업기계공학과군	농림학계열	도서관교육전공	사범계열	도자공예전공	예술학계열
농공농업기계공학부	농림학계열	도서관학과	사회계열	도자기공예과	예술학계열
농공학과	농림학계열	도시개발경영학과	사회계열	도자기기술학과	공학계열
농공학부	농림학계열	도시개발전공	사회계열	도자디자인과	예술학계열
농공학전공	농림학계열	도시개발학과	사회계열	도자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농림과학과	농림학계열	도시건축공학과	공학계열	도자예술전공	예술학계열
농생물학과	농림학계열	도시건축공학부	공학계열	독서교육전공	사범계열
농업개발학과	농림학계열	도시건축설계학과	이학계열	독어교육과	사범계열
농업경영과	농림학계열	도시계획공학과	공학계열	독어교육전공	사범계열
농업경제학과	사회계열	도시계획정보	사회계열	독어독문불어불문학과군	어문학계열
농업공학과	공학계열	도시계획조경학부	농림학계열	독어독문학과	어문학계열
농업공학부	농림학계열	도시계획학과	사회계열	독어독문학전공	어문학계열
농업교육과	사범계열	도시계획학전공	공학계열	독어전공	어문학계열
농업교육전공	사범계열	도시공학과	공학계열	독어학과	어문학계열
농업교육학과	사범계열	도시공학전공	공학계열	독일어과	어문학계열
농업기계공학과	농림학계열	도시및교통공학과	공학계열	독일어교육과	사범계열
농업기계전공	농림학계열	도시및교통학과	사회계열	독일어교육전공	사범계열
농업생명과학과	농림학계열	도시및지방행정학과	사회계열	독일어문학전공	어문학계열
농업생명과학과군	농림학계열	도시및지역개발과	사회계열	독일언어문학과	어문학계열
농업생물공학협동과정	농림학계열	도시및지역계획과	사회계열	독일지역통상과	사회계열
농업자원경제학과	농림학계열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사회계열	독일지역학전공	사회계열
농업자원학전공	농림학계열	도시및지역학부	사회계열	독일학전공	인문학계열
농업토목공학과	농림학계열	도시사회복지학과	사회계열	동남남아시아어학과	어문학계열
농업토목전공	농림학계열	도시사회학과	사회계열	동남남아시아학과	어문학계열
농업환경공학전공	농림학계열	도시설계학전공	사회계열	동남아학과	인문학계열
농촌개발전공	농림학계열	도시원예	사회계열	동력기계공학과	공학계열
농촌공학과	농림학계열	도시정보공학과	공학계열	동력기계과	공학계열

(동 ~ 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동물공학과	농림학계열	러시아동유럽지역학과	인문학계열	멀티미디어디자인학전공	공학계열
동물과학과	농림학계열	러시아동유럽학과	인문학계열	멀티미디어응용학과	공학계열
동물산업과	농림학계열	러시아어과	어문학계열	멀티미디어전공	공학계열
동물생명과학부	농림학계열	러시아어교육전공	사범계열	멀티미디어정보과학	공학계열
동물자원· 농화학과군	농림학계열	러시아어문학과	어문학계열	멀티미디어정보전공	공학계열
동물자원과	농림학계열	러시아어문학전공	어문학계열	멀티미디어정보전산학부	공학계열
동물자원과학과	농림학계열	러시아어통번역	어문학계열	멀티미디어정보처리전공	공학계열
동물자원학과	농림학계열	러시아어학과	어문학계열	멀티미디어창작전공	예술학계열
동물자원학부	농림학계열	러시아지역통상과	사회계열	멀티미디어통신	공학계열
동물자원학전공	농림학계열	러시아학과	인문학계열	멀티미디어학과	공학계열
동북아어문학부	어문학계열	러시아학전공	인문학계열	멀티미디어학부	공학계열
동북아전공	어문학계열	레저개발학과	체육학계열	멀티미디어협동과정	공학계열
동북아지역연구학과	사회계열	레저관광경영과	사회계열	멀티영상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동북아지역학부	사회계열	레저산업계열	체육학계열	메이크업	예술학계열
동북아학과	인문학계열	레저스포츠과	체육학계열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공학계열
동아시아어학과군	사회계열	레저스포츠학과	체육학계열	메카트로닉스공학군	공학계열
동아시아학과	사회계열	레저항공스포츠학과	체육학계열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공학계열
동양미술학과	예술학계열	레크레이션과	체육학계열	메카트로닉스공학협동과정	공학계열
동양사상학과	인문학계열	레포츠과학학부	체육학계열	메카트로닉스과	공학계열
동양사학과	인문학계열	루마니아어과	어문학계열	메카트로닉스전공	공학계열
동양어계열	어문학계열	리더쉽개발학과	사회계열	메카트로닉스협동과정	공학계열
동양어문학부	어문학계열	< 마 >		모델과	예술학계열
동양어문학학과군	어문학계열	마아케팅과	사회계열	모델이벤트	예술학계열
동양종교학과	인문학계열	마아케팅정보과	사회계열	목조형가구학과	예술학계열
동양철학과	인문학계열	마이크로머시닝협동과정	공학계열	목칠공예, 섬유공예전공	예술학계열
동양철학전공	인문학계열	마케팅경영	사회계열	목회상담학과	인문학계열
동양학과	인문학계열	마케팅전공	사회계열	목회신학과	인문학계열
동양학부	인문학계열	마케팅학전공	사회계열	목회학과	인문학계열
동양화과	예술학계열	만화/캐릭터전공	예술학계열	몽골어과	어문학계열
동양화전공	예술학계열	만화사진영상과	예술학계열	무기재료공학과	공학계열
동유럽어문학과	어문학계열	만화예술과	예술학계열	무기재료공학전공	공학계열
디자인(공통)	예술학계열	만화예술학과	예술학계열	무대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디자인계열	예술학계열	만화학과	예술학계열	무대예술학과	예술학계열
디자인공예학과	예술학계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어문학계열	무도과	체육학계열
디자인공예학부	예술학계열	말레이인도네시아지역	사회계열	무도학과	예술학계열
디자인교육전공	사범계열	말레이인도네시아통상	사회계열	무도학전공	체육학계열
디자인멀티미디어	예술학계열	매스미디어전공	사회계열	무역, 경영정보학부	사회계열
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매체공학과	공학계열	무역· 국제학부	사회계열
디자인정보시스템전공	사회계열	매체예술	예술학계열	무역경영학과	사회계열
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매체정보학과	사회계열	무역과	사회계열
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멀티미디어공학과	공학계열	무역사무자동학과	사회계열
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공학계열	무역상무학과	사회계열
디지털그래픽디자인	예술학계열	멀티미디어과	공학계열	무역실무과	사회계열
< 라 >		멀티미디어광고전공	공학계열	무역유통학과	사회계열
러시아, 중어중문학과	인문학계열	멀티미디어교육매체전공	사범계열	무역전공	사회계열
러시아과	어문학계열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공학계열	무역전산실무	사회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무역정보학과	사회계열	물질과학군	공학계열	발효공학과	공학계열
무역학과	사회계열	물질과학부	이학계열	방사선과	의학계열
무역학전공	사회계열	물질과학학과군	공학계열	방송극작	사회계열
무용과	체육학계열	물질생물화학공학부	공학계열	방송기술과	이학계열
무용교육전공	사범계열	물질화학공학과	공학계열	방송매체과	사회계열
무용학과	체육학계열	미국학과	인문학계열	방송보도과	사회계열
무용학전공	체육학계열	미국학전공	인문학계열	방송연예과	예술학계열
문예창작과	예술학계열	미디어영어과	어문학계열	방송연예제작과	예술학계열
문예창작전공	인문학계열	미디어학부	사회계열	방송영상정보학부	사회계열
문예창작학과	예술학계열	미생물공학과	공학계열	방송영상학전공	사회계열
문예창작학전공	인문학계열	미생물학과	이학계열	방송음악과	예술학계열
문학예술학과	예술학계열	미생물학전공	이학계열	방송전공	사회계열
문헌정보과	사회계열	미세소자공협동과정	공학계열	방송전자과	공학계열
문헌정보교육과	사범계열	미술과	예술학계열	방송정보통신계열	사회계열
문헌정보학과	사회계열	미술교육과	사범계열	방송정보학과	사회계열
문헌정보학전공	사회계열	미술교육전공	사범계열	방송제작과	공학계열
문화관광학	사회계열	미술교육학과	사범계열	방송제작기술과	이학계열
문화예술정책학과	사회계열	미술사학과	인문학계열	방송통신과	공학계열
문화예술행정전공	사회계열	미술산업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방송통신전공	공학계열
문화인류학과	인문학계열	미술이론및행정전공	예술학계열	방재공학과	공학계열
문화재관광	사회계열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번역학과	어문학계열
문화재관리과	사회계열	미술학과	예술학계열	법경학부	사회계열
문화재보존학과	사회계열	미술학부	예술학계열	법률과	사회계열
문화재학과	사회계열	미술학전공	예술학계열	법률실무과	사회계열
물류경영과	사회계열	미얀마어과	어문학계열	법률정책학과	사회계열
물류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미용계열	가정학계열	법률행정학부	사회계열
물류유통경영전공	사회계열	미용과	가정학계열	법무행정전공	사회계열
물류유통과	사회계열	미용피부관리	가정학계열	법정계열	사회계열
물류정보학과	사회계열	미주지역통상과	사회계열	법정학군	사회계열
물류학과	사회계열	미주학과	인문학계열	법정학부	사회계열
물리, 화학계열	이학계열	미학과	인문학계열	법학경영학과	사회계열
물리· 작업치료전공	사범계열	미학미술사학과	인문학계열	법학계열	사회계열
물리광학과	이학계열	민속무용학과	체육학계열	법학과	사회계열
물리교육과	사범계열	민속학과	인문학계열	법학부	사회계열
물리교육전공	사범계열	민족문화과	인문학계열	법학전공	사회계열
물리기술학과	이학계열	< 바 >		법학행정계열	사회계열
물리반도체과학부	공학계열	바둑학과	체육학계열	법행정학과군	사회계열
물리반도체학부	공학계열	박물관과	사회계열	법행정학부	사회계열
물리지구해양과학학과군	공학계열	반도체공학과	공학계열	베트남어과	어문학계열
물리치료과	의학계열	반도체과학과	공학계열	베트남지역통상과	사회계열
물리치료학과	의학계열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공학계열	병원경영학과	사회계열
물리학과	이학계열	반도체응용	공학계열	병원약학전공	의학계열
물리학교육전공	사범계열	반도체전공	공학계열	병원행정전공	사회계열
물리학부	이학계열	반도체전기자동차공학부	공학계열	병원행정학과	사회계열
물리학전공	이학계열	반도체학과	공학계열	보건간호학과	의학계열
물리화학부	이학계열	발레전공	체육학계열	보건간호학전공	약학계열

(보 ~ 사)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보건과학과	의학계열	북미지역연구학과	사회계열	사료생산공학과	이학계열
보건과학부	의학계열	북미지역학과	사회계열	사료영양학과	농림학계열
보건관리학과	의학계열	북미학과	사회계열	사료자원	농림학계열
보건관리학전공	의학계열	북유럽어학과	어문학계열	사무자동화과	사회계열
보건교육학과	사범계열	북한· 통일정책학과	사회계열	사무정보처리과	공학계열
보건식품환경계열	의학계열	북한관광개발학과	사회계열	사무정보화과	사회계열
보건위생과	의학계열	북한및지역연구학과	사회계열	사법경찰행정학과	사회계열
보건정보관리과	약학계열	북한사회복지학과	사회계열	사법실무과	사회계열
보건정보관리학과	약학계열	북한연구협동과정	사회계열	사법학과	사회계열
보건체육학과	체육학계열	북한정치경제학과	사회계열	사법학전공	사회계열
보건학과	의학계열	북한학과	사회계열	사법행정전공	사회계열
보건학부	의학계열	분자내분비협동과정	이학계열	사법행정학과	사회계열
보건학협동과정	의학계열	분자생물학과	이학계열	사서교육전공	사범계열
보건행정과	사회계열	분자생물학전공	이학계열	사진과	예술학계열
보건행정학과	사회계열	분자의학협동과정	의학계열	사진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보건행정학부	사회계열	분체공학협동과정	공학계열	사진영상공학과	공학계열
보건행정학전공	사회계열	불교사학과	인문학계열	사진영상과	예술학계열
보석감정과	사회계열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계열	사진영상학과	예술학계열
보석공학과	공학계열	불교아동학과	사회계열	사진예술전공	예술학계열
보석디자인과	예술학계열	불교예술문학과	예술학계열	사진예술학과	예술학계열
보육과	사범계열	불교학과	인문학계열	사진정보공학과	예술학계열
보육학과	사범계열	불교학부	인문학계열	사진학과	예술학계열
보존관리전공	사회계열	불문독문학과군	인문학계열	사진학전공	예술학계열
보험경영전공	사회계열	불문서문학과군	인문학계열	사학, 철학과군	인문학계열
보험경영학과	사회계열	불어교육과	사범계열	사학과	인문학계열
보험금융과	사회계열	불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사학전공	인문학계열
보험금융학과	사회계열	불어불문학과	어문학계열	사회개발전공	사회계열
보험세무과	사회계열	불어불문학전공	어문학계열	사회계열	사회계열
보험증권금융전공	사회계열	불어학과	어문학계열	사회과교육전공	사범계열
보험학과	사회계열	뷰티디자인과	가정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사회계열
보험해상법무학과	사회계열	뷰티아트전공	예술학계열	사회과학과군	사회계열
보험행정학과	사회계열	뷰티코디네이션	가정학계열	사회과학군	사회계열
보호행정학과	사회계열	비교문학협동과정	인문학계열	사회과학군1	사회계열
복식디자인전공	가정학계열	비서경호	사회계열	사회과학군2	사회계열
복지보건학부	사회계열	비서과	사회계열	사회과학대학	사회계열
복지지적학부	사회계열	비서사무정보	사회계열	사회과학부	사회계열
복지행정학과	사회계열	비서실무과	사회계열	사회과학부(小)	사회계열
부동산개발과	사회계열	비서정보과	사회계열	사회교육과	사범계열
부동산경영학과	사회계열	비서학과	사회계열	사회교육전공	사범계열
부동산과	사회계열	비서학전공	사회계열	사회교육학과	사범계열
부동산관리학과	사회계열	비서행정과	사회계열	사회교육학부	사범계열
부동산정보	사회계열	비서행정학전공	사회계열	사회매체학부	사회계열
부동산학과	사회계열	비즈니스전공	사회계열	사회복지계열	사회계열
부동산학전공	사회계열	비즈니스정보계열	사회계열	사회복지과	사회계열
부동산행정전공	사회계열	< 사 >		사회복지법정학과군(야)	사회계열
북미전공	인문학계열	사료과	농림학계열	사회복지심리학과군	사회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사회복지전공	사회계열	산업경제학과	사회계열	산업심리학전공	사회계열
사회복지정책학과	사회계열	산업공예과	예술학계열	산업안전공학과	공학계열
사회복지학과	사회계열	산업공예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산업안전공학전공	공학계열
사회복지학부	사회계열	산업공예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산업안전과	공학계열
사회복지학전공	사회계열	산업공예전공	예술학계열	산업안전관리과	공학계열
사회복지행정학과	사회계열	산업공예학과	예술학계열	산업안전관리학과	사회계열
사회사업학과	사회계열	산업공학과	공학계열	산업안전보건학과	의학계열
사회사업학전공	사회계열	산업공학전공	공학계열	산업안전보건학전공	의학계열
사회상담학과	사회계열	산업과학과	공학계열	산업안전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사회생활학과	사회계열	산업관광통역과	사회계열	산업안전위생과	의학계열
사회심리학과군	사회계열	산업교육전공	사범계열	산업약학전공	약학계열
사회약학전공	약학계열	산업금속공예과	공학계열	산업영상과	이학계열
사회언론광고학부	사회계열	산업금융학과	사회계열	산업예술계열	예술학계열
사회정보계열	사회계열	산업기계공학과	공학계열	산업위생과	의학계열
사회정책학과	사회계열	산업기계공학부	공학계열	산업위생관리학과	의학계열
사회체육과	체육학계열	산업기술경영	사회계열	산업위생학과	의학계열
사회체육교육전공	사범계열	산업기술공학과	공학계열	산업유통과	사회계열
사회체육처방	체육학계열	산업기술학과	공학계열	산업응용계열	이학계열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계열	산업노동학과	사회계열	산업응용수학과	이학계열
사회체육학부	체육학계열	산업도예학과	예술학계열	산업의학과	의학계열
사회체육학전공	체육학계열	산업도자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산업일어과	어문학계열
사회학과	사회계열	산업디자인계열	예술학계열	산업재산권학과	사회계열
사회학군	사회계열	산업디자인공학과	공학계열	산업재산권학전공	사회계열
사회학전공	사회계열	산업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산업전기공학과	공학계열
사회환경건축공학부	사회계열	산업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산업전산과	공학계열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산업디자인정보계열	예술학계열	산업전산전자공학부	공학계열
산림과학과	농림학계열	산업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산업전자공학과	공학계열
산림과학부	농림학계열	산업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산업전자학과	공학계열
산림과학전공	농림학계열	산업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산업정보계열	사회계열
산림자원개발학과	농림학계열	산업미생물학과	이학계열	산업정보공학과	공학계열
산림자원과	농림학계열	산업미술과	예술학계열	산업정보공학전공	공학계열
산림자원조경학과군	농림학계열	산업미술학과	예술학계열	산업정보관리전공	사회계열
산림자원조경학부	농림학계열	산업및전기공학계열	공학계열	산업정보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산림자원학과	농림학계열	산업보건간호학과	의학계열	산업정보디자인학부	사회계열
산림자원학및조경학전공	농림학계열	산업보건학과	의학계열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산림자원학부	농림학계열	산업복지과	사회계열	산업정보전공	사회계열
산림자원학전공	농림학계열	산업복지학과	사회계열	산업정보학과	사회계열
산업개발학및산업경영학전공	이학계열	산업복지학전공	사회계열	산업정책학과	사회계열
산업건설환경공학부	공학계열	산업섬유공학과군	공학계열	산업포장과	공학계열
산업경영공학전공	공학계열	산업시스템경영	사회계열	산업환경공학부	공학계열
산업경영과	사회계열	산업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산업환경보건학과	공학계열
산업경영전공	사회계열	산업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산업환경학과	의학계열
산업경영정보	사회계열	산업시스템공학전공	사회계열	산업환경학전공	공학계열
산업경영학과	사회계열	산업시스템안전공학부	공학계열	삼림경영학과	농림학계열
산업경영학부	사회계열	산업심리교육전공	사범계열	삼림과학대학	농림학계열
산업경제과	사회계열	산업심리학과	사회계열	삼림자원보호학과	농림학계열

(상 ~ 서)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상경계열	사회계열	생물과학전공	이학계열	생체공학과	공학계열
상경매스컴학부	사회계열	생물교육과	사범계열	생태조경학과	농림학계열
상경정보학과군	사회계열	생물교육전공	사범계열	생화학과	이학계열
상경정보학부	사회계열	생물기전공학과	공학계열	생화학전공	이학계열
상경학부	사회계열	생물기전공학전공	공학계열	생활경영학전공	사회계열
상담교육전공	사범계열	생물배양	이학계열	생활과학계열	가정학계열
상담심리전공	사회계열	생물산업공학과	공학계열	생활과학과	가정학계열
상담심리학과	사회계열	생물산업공학부	공학계열	생활과학과군	가정학계열
상담학과	사회계열	생물산업생명공학부	공학계열	생활과학군	가정학계열
상업교육과	사범계열	생물생산학과	농림학계열	생활과학대학	가정학계열
상업교육전공	사범계열	생물소재공학협동과정	공학계열	생활과학부	이학계열
상업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생물식품공학부	공학계열	생활과학식품영양학부	가정학계열
상업정보교육과	사범계열	생물식품및환경화공학부	공학계열	생활과학학과군	가정학계열
생명공학과	공학계열	생물응용공학과	공학계열	생활교양과	사회계열
생명공학부	공학계열	생물자원공학과	공학계열	생활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생명공학전공	공학계열	생물자원공학부	공학계열	생활무용예술학과	예술학계열
생명공화학공학부	공학계열	생물자원공학전공	공학계열	생활문화학과군	예술학계열
생명과학과	이학계열	생물자원과학계열	이학계열	생활미술과	예술학계열
생명과학군	이학계열	생물자원과학부	이학계열	생활보육과	가정학계열
생명과학기술	이학계열	생물자원기계학과	공학계열	생활스포츠학과	체육학계열
생명과학부	이학계열	생물자원생산이용학전공	공학계열	생활스포츠학부	체육학계열
생명과학부· 화학과군	이학계열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생활원예	농림학계열
생명과학식품영양군	이학계열	생물자원이용학전공	농림학계열	생활음악과	예술학계열
생명과학식품영양학계열	이학계열	생물자원학과	공학계열	생활장식디자인	예술학계열
생명과학전공	이학계열	생물자원학부	이학계열	생활정보과	가정학계열
생명관리학과군	이학계열	생물자원학전공	공학계열	생활체육과	체육학계열
생명산업공학과	공학계열	생물전공	이학계열	생활체육과학과	체육학계열
생명시스템전공	이학계열	생물학과	이학계열	생활체육교육전공	사범계열
생명자원경제학과	사회계열	생물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생활체육무용	체육학계열
생명자원공학부	공학계열	생물학전공	이학계열	생활체육전공	체육학계열
생명자원과	이학계열	생물해양학부	이학계열	생활체육학과	체육학계열
생명자원과학과	이학계열	생물화학공학과	공학계열	생활체육학전공	체육학계열
생명자원과학부	이학계열	생물화학공학전공협동	공학계열	생활환경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생명자원과학학과군	이학계열	생물화학학과군	이학계열	생활환경학과	이학계열
생명자원산업학전공	이학계열	생물환경과학부	이학계열	생활환경학부	이학계열
생명자원수산해양학과군	이학계열	생산가공공학과	공학계열	서반아어과	어문학계열
생명자원학부	이학계열	생산공학과	공학계열	서반아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생명자원학전공	이학계열	생산공학과군	공학계열	서반아어학과	어문학계열
생명자원환경학전공군	이학계열	생산관리전공	사회계열	서비스경영전공	사회계열
생명환경공학부	공학계열	생산기계공학과	공학계열	서비스경영학과	사회계열
생명환경학부	이학계열	생산기계공학전공	공학계열	서양고전학협동과정	어문학계열
생물· 미생물학과	이학계열	생산기계과	공학계열	서양사학과	인문학계열
생물공학과	공학계열	생산기술공학과	공학계열	서양어문학부	어문학계열
생물공학전공	공학계열	생산기술관리학과	공학계열	서양어문학학과군	어문학계열
생물과학과	이학계열	생산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서양음악학전공	예술학계열
생물과학부	이학계열	생약자원학과	약학계열	서양학부	인문학계열

(서 ~ 수)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서양화과	예술학계열	섬유재료전공	공학계열	소비자인간발달학전공	가정학계열
서양화전공	예술학계열	섬유패션공학과	공학계열	소비자정보과	사회계열
서양화학과	예술학계열	섬유패션산업전공	공학계열	소비자주거학과	가정학계열
서어서문학과	어문학계열	섬유패션학부	예술학계열	소비자주거학전공	가정학계열
서어서문학전공	어문학계열	섬유학부	이학계열	소비자학과	사회계열
서예과	예술학계열	성서신학과	인문학계열	소재기술공학과	공학계열
서예전공	예술학계열	성악과	예술학계열	소재화학과	이학계열
서예학과	예술학계열	성악전공	예술학계열	소프트웨어개발과	공학계열
석유화학공업과	공학계열	성악학과	예술학계열	소프트웨어개발전공	공학계열
선거공학과	사회계열	성악학부	예술학계열	소프트웨어공학과	공학계열
선교복지	인문학계열	세계지역연구학과	사회계열	소프트웨어공학전공	공학계열
선교언어영어영문군	어문학계열	세계지역학부	사회계열	소프트웨어학과	공학계열
선교언어학과	어문학계열	세계학및무역학전공	사회계열	수리과학군	이학계열
선교언어학부	어문학계열	세라믹공업과	공학계열	수리과학부	이학계열
선교영어학과	어문학계열	세라믹공학과	공학계열	수리응용과학과군	이학계열
선교체육교육과	사범계열	세라믹공학부	공학계열	수리정보학부	이학계열
선교학과	인문학계열	세라믹공학전공	공학계열	수산가공과	수산해양학계열
선교학부	인문학계열	세라믹반도체재료전공	공학계열	수산가공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선교학전공	인문학계열	세라믹화학공학부	공학계열	수산개발과	수산해양학계열
선물금융공학	사회계열	세무경영정보	사회계열	수산경영학과	사회계열
선박공학과	공학계열	세무관리학과	사회계열	수산경영학전공	수산해양학계열
선박기계공학과	공학계열	세무금융보험학과	사회계열	수산공학, 기관공학과군	수산해양학계열
선박기관학과	공학계열	세무전공	사회계열	수산과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선박운항시스템공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세무통상정보전공	사회계열	수산교육과	사범계열
선박해양공학과	공학계열	세무학과	사회계열	수산교육전공	사범계열
선박해양공학전공	공학계열	세무학전공	사회계열	수산물리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선학과	인문학계열	세무행정학과	사회계열	수산생명과학부	수산해양학계열
섬유고분자공학과	공학계열	세무회계과	사회계열	수산생명의학과	의학계열
섬유고분자공학부	공학계열	세무회계전공	사회계열	수산생물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섬유공정전공	공학계열	세무회계정보과	사회계열	수산양식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섬유공학과	공학계열	세무회계정보학과	사회계열	수산자원개발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섬유공학전공	공학계열	세무회계학과	사회계열	수산해양생명과학과군	수산해양학계열
섬유과	공학계열	세무회계학전공	사회계열	수산해양학.연협동과정	수산해양학계열
섬유기계전공	공학계열	세정학과	사회계열	수송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섬유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센서공학과	공학계열	수안재활복지학과	사회계열
섬유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소방안전관리과	사회계열	수의예과	의학계열
섬유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소방학전공	이학계열	수의학과	의학계열
섬유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가정학계열	수족병리학과	의학계열
섬유미술과	예술학계열	소비자가족아동학과	가정학계열	수통계과	이학계열
섬유미술전공	예술학계열	소비자가족학과	가정학계열	수학계산통계학과군	이학계열
섬유미술학과	예술학계열	소비자경제학과	사회계열	수학과	이학계열
섬유산업학과	공학계열	소비자경제학전공	사회계열	수학교육과	사범계열
섬유·화학·산업공학부	공학계열	소비자아동주거학과	가정학계열	수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섬유예술과	예술학계열	소비자아동학과	가정학계열	수학교육학과	사범계열
섬유예술전공	예술학계열	소비자아동학부	가정학계열	수학물리학과군	이학계열
섬유유기재료공학과	공학계열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가정학계열	수학물리학부	이학계열

(수 ~ 실)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수학물리화학계열	이학계열	시스템제어공학부	공학계열	식품영양산업학과	가정학계열
수학및물리기술학부	이학계열	식량경제학과	사회계열	식품영양식품공학과군	가정학계열
수학전공	이학계열	식량공학과	공학계열	식품영양식품공학과부	가정학계열
수학전산통계학부	이학계열	식량원예과학전공	농림학계열	식품영양전공	가정학계열
수학전산통계학학과군	이학계열	식량자원과	농림학계열	식품영양정보관리전공	가정학계열
수학컴퓨터통계학부	이학계열	식량자원식품가공학부	공학계열	식품영양학과	가정학계열
수학통계정보과학부	이학계열	식량자원학과	공학계열	식품영양학전공	가정학계열
수학통계컴퓨터과학과군	이학계열	식량자원학부	농림학계열	식품유통과	가정학계열
수학통계학과	이학계열	식물생산과학부	이학계열	식품자원경제학과	가정학계열
수학통계학부	이학계열	식물유전공학전공	공학계열	식품제조과	농림학계열
순결학과	사회계열	식물육종학과	농림학계열	식품제조관리전공	가정학계열
순수미술학과	예술학계열	식물응용과학부	이학계열	식품조리과	가정학계열
순수미술학부	예술학계열	식물자원과학부	농림학계열	식품화학공학학과군	공학계열
스칸디나비아어과	어문학계열	식물자원원예학과군	농림학계열	식품환경계열	가정학계열
스타일리스트	예술학계열	식물자원학과	농림학계열	신경생물학과	이학계열
스튜어디스과	사회계열	식물자원학부	농림학계열	신문방송과	사회계열
스페인어과	어문학계열	식물자원환경학부	농림학계열	신문방송전공	사회계열
스페인어문학과	어문학계열	식생활과	가정학계열	신문방송학과	사회계열
스페인어문학전공	어문학계열	식품· 미생물공학전공	공학계열	신문방송학전공	사회계열
스페인중남미학전공	인문학계열	식품가공과	가정학계열	신문방송홍보학과	사회계열
스포츠경영전공	체육학계열	식품가공학과	가정학계열	신문출판전공	사회계열
스포츠과학과	체육학계열	식품가공학전공	가정학계열	신문출판학과	사회계열
스포츠과학부	체육학계열	식품개발학과	가정학계열	신문학과	사회계열
스포츠레져학과	체육학계열	식품계열	가정학계열	신발공학과	공학계열
스포츠마케팅학전공	체육학계열	식품공업과	농림학계열	신소재공정공학부	공학계열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계열	식품공업기술계열	농림학계열	신소재공학계열	공학계열
스포츠언론정보학과	체육학계열	식품공학과	가정학계열	신소재공학과	공학계열
스포츠외교과	체육학계열	식품공학영양학부	공학계열	신소재공학부	공학계열
스포츠외교정책학과	체육학계열	식품공학전공	공학계열	신소재과학부	이학계열
스포츠외교학과	체육학계열	식품과학과	가정학계열	신소재금속과	공학계열
스포츠의학전공	체육학계열	식품과학부	가정학계열	신소재물리학전공	이학계열
스포츠지도전공	체육학계열	식품과학전공	가정학계열	신소재생명공학부	공학계열
시각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식품미생물공학과	공학계열	신소재섬유	이학계열
시각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식품및화학공학부	공학계열	신소재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시각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식품산업공학과	공학계열	신소재응용화학과	이학계열
시각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식품생명공학과	공학계열	신소재화학환경공학부	공학계열
시각정보디자인, 영상디자인	예술학계열	식품생명공학부	공학계열	신용거래법학과	사회계열
시각정보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식품생명과학과	가정학계열	신학계열	인문학계열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식품생명자원학전공	가정학계열	신학과	인문학계열
시간예술	예술학계열	식품생명화학공학부	공학계열	신학부	인문학계열
시민사회단체학과	사회계열	식품생물공학계열	공학계열	신학인간개발학부	인문학계열
시설원예과	농림학계열	식품생물공학과	공학계열	신학전공	인문학계열
시스템경영공학부	공학계열	식품생물공학전공	공학계열	실내건축과	공학계열
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식품생산관리전공	가정학계열	실내건축디자인계열	예술학계열
시스템및제어전공	공학계열	식품안전성관리전공	가정학계열	실내건축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시스템응용공학부	공학계열	식품영양과	가정학계열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실내건축설계학과	공학계열	아세아선교학과	인문학계열	언론매체학과	사회계열
실내건축설계학전공	공학계열	아세아학과	인문학계열	언론심리학부	사회계열
실내건축학과	공학계열	아시아지역학과	사회계열	언론영상학부	사회계열
실내건축학전공	공학계열	아시아지역학부	사회계열	언론전공	사회계열
실내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아시아태평양지역학과	인문학계열	언론정보문화학부	사회계열
실내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아주지역전공	사회계열	언론정보전공	사회계열
실내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아주지역학과	사회계열	언론정보학과	사회계열
실내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아태북방지역협력학과	사회계열	언론정보학부	사회계열
실내설계전공	공학계열	아태어문학부	어문학계열	언론정치학부	사회계열
실내인테리어과	공학계열	아태지역연구학과	사회계열	언론학과	사회계열
실내제품디자인	예술학계열	아프리카어과	어문학계열	언론학부	사회계열
실내환경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안경광학과	공학계열	언론홍보심리학부	사회계열
실무노어과	어문학계열	안보국방정책학과	사회계열	언론홍보영상학부	예술학계열
실무영어과	어문학계열	안보정책학과	사회계열	언론홍보학과	사회계열
실무일본어과	어문학계열	안보치안학과	사회계열	언론홍보학전공	사회계열
실무일어과	어문학계열	안보학과	사회계열	언어과학과	어문학계열
실용음악과	예술학계열	안보행정학과	사회계열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의학계열
실천신학과	인문학계열	안전경호학과	체육학계열	언어예술학과	어문학계열
심리치료전공	사범계열	안전공학과	공학계열	언어치료교육전공	사범계열
심리학과	사회계열	안전공학부	공학계열	언어치료학과	의학계열
심리학전공	사회계열	안전공학전공	공학계열	언어학과	어문학계열
< 아 >		안전관리학과	사회계열	언어학전공	어문학계열
아동가족전공	가정학계열	안전산업공학과	공학계열	에너지공학과	공학계열
아동가족학과	가정학계열	애니메이션과	예술학계열	에너지학과	공학계열
아동교육상담과	사범계열	애니메이션전공	예술학계열	여가문화과	사회계열
아동문화과	사회계열	애완동물과	농림학계열	여가시설관리과	사회계열
아동미술과	예술학계열	약무행정전공	사회계열	여성교양과	사회계열
아동미술교육	사범계열	약용식품과	공학계열	여성인력개발	사회계열
아동보육학과	가정학계열	약학과	약학계열	여성정보행정과	사회계열
아동복지과	사회계열	약학부	약학계열	여성정책전공	사회계열
아동복지학과	사회계열	약학전공	약학계열	여성학과	사회계열
아동복지학과전공	사회계열	약학제약학과군	약학계열	여성학협동과정	사회계열
아동생활복지학부	사회계열	양식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여자경찰행정학과	사회계열
아동소비자주거학과	가정학계열	어문계열	어문학계열	역경학과	인문학계열
아동주거학과	사회계열	어문학과군	어문학계열	역사교육과	사범계열
아동지능개발	사회계열	어문학군	어문학계열	역사교육전공	사범계열
아동청소년학과	사회계열	어문학부	어문학계열	역사문화학부	인문학계열
아동청소년학부	사회계열	어병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역사신학과	인문학계열
아동학과	사회계열	어업과	수산해양학계열	역사지리학과군	인문학계열
아동학전공	사회계열	어업생산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역사지리학부	인문학계열
아랍아프리카어학과	어문학계열	어업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역사철학부	인문학계열
아랍어과	어문학계열	어학부	어문학계열	역사학과	인문학계열
아랍어아랍문학과	어문학계열	언론공보학과	사회계열	역사학전공	사회계열
아랍이슬람학과	사회계열	언론광고사회학부	사회계열	역학및보건통계학전공	의학계열
아랍지역학과	사회계열	언론광고학	사회계열	연극과	예술학계열
아랍학전공	인문학계열	언론광고학부	사회계열	연극영상과	예술학계열

(연 ~ 유)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연극영상학과	예술학계열	영양자원학과	가정학계열	외국어학과	어문학계열
연극영상학부	예술학계열	영양자원학전공	가정학계열	외국어학부	어문학계열
연극영화과	예술학계열	영양학과	가정학계열	외국학계열	인문학계열
연극영화방송계열	예술학계열	영양학전공	가정학계열	외국학학부	인문학계열
연극영화전공	예술학계열	영어과	어문학계열	외식벤처창업	사회계열
연극영화학과	예술학계열	영어교육과	사범계열	외식산업경영학과	사회계열
연극영화학부	예술학계열	영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외식산업과	가정학계열
연극학과	예술학계열	영어교육학과	사범계열	외식산업전공	가정학계열
연기전공	예술학계열	영어언어과학과	어문학계열	외식서비스경영	사회계열
연예연기과	예술학계열	영어영문학과	어문학계열	요업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연초학과	농림학계열	영어영문학부	어문학계열	용접공업과	공학계열
연출연기계열	예술학계열	영어영문학전공	어문학계열	용접기술과	공학계열
열냉동관리과	공학계열	영어전공	어문학계열	우주과학과	이학계열
열처리과	공학계열	영어중문학과군	어문학계열	우주항공공학과	공학계열
염색가공전공	공학계열	영어통번역	어문학계열	운동기능학과	체육학계열
염색공예과	공학계열	영어통역과	어문학계열	운동처방및특수체육전공	체육학계열
염색공학과	공학계열	영어학과	어문학계열	운동처방학과	의학계열
염직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영어학부	어문학계열	운송기기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영미언어학부	어문학계열	영유아보육학과	사회계열	운항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영미학과	인문학계열	영일어문학군	어문학계열	원불교학과	인문학계열
영미학부	인문학계열	영일어문학부	어문학계열	원불교학부	인문학계열
영상공학과	공학계열	영중어문학부	어문학계열	원예과	농림학계열
영상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영화과	예술학계열	원예과학과	농림학계열
영상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영화영상과	예술학계열	원예과학부	농림학계열
영상만화과	예술학계열	영화영상학과	예술학계열	원예과학전공	농림학계열
영상매체전공	사범계열	영화예술학과	예술학계열	원예생명과학부	농림학계열
영상문예창작과	인문학계열	영화학과	예술학계열	원예식품가공학전공군	농림학계열
영상문화과	사회계열	예능학부	예술학계열	원예육종학과	농림학계열
영상미디어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예문학부	예술학계열	원예자원과	농림학계열
영상미술학과	예술학계열	예술경영학과	사회계열	원예조경과	농림학계열
영상사진공연학부	예술학계열	예술관리학과	사회계열	원예조경삼림자원학부	농림학계열
영상연출학과	예술학계열	예술기획전공	예술학계열	원예조경학부	농림학계열
영상예술과	예술학계열	예술학과	예술학계열	원예학과	농림학계열
영상예술학과	예술학계열	예술학부	예술학계열	원예학전공	농림학계열
영상예술학부	예술학계열	예술학전공	예술학계열	원예환경조경학과군	농림학계열
영상음악과	예술학계열	예체능학부	예술학계열	원예환경학부	농림학계열
영상음악학과	예술학계열	외교국방학과	사회계열	원자력공학과	공학계열
영상정보처리과	공학계열	외교안보학과	사회계열	원자력과	공학계열
영상정보처리협동과정	공학계열	외교안보협력학과	사회계열	원자핵공학과	공학계열
영상제작과	예술학계열	외교학과	사회계열	위생과	의학계열
영상처리학과	예술학계열	외교학부	사회계열	위생제약학과	약학계열
영상편집과	예술학계열	외국어계열	어문학계열	유고어과	어문학계열
영상표시협동과정	공학계열	외국어교육과	사범계열	유교경전학과	인문학계열
영상학부	예술학계열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유교철학전공	인문학계열
영상학전공	예술학계열	외국어문계	인문학계열	유도학과	체육학계열
영성심리상담학과	사회계열	외국어문학부	어문학계열	유럽어계열	어문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유럽어문학부	어문학계열	음악학부	예술학계열	응용통계학전공	이학계열
유럽어학과군	어문학계열	음악학전공	예술학계열	응용화학공학과	공학계열
유럽연합지역학과	사회계열	음향제작과	예술학계열	응용화학공학부	공학계열
유럽연합학과	인문학계열	음향진동공학협동과정	공학계열	응용화학과	이학계열
유럽전공	인문학계열	응급구조과	의학계열	응용화학부	이학계열
유럽지역어문학부	인문학계열	응용경제학전공	사회계열	응용화학식품공학부	공학계열
유럽지역연구과	사회계열	응용공학군	공학계열	응용화학전공	이학계열
유럽지역학부	사회계열	응용공학부	공학계열	응용회화과	예술학계열
유럽학과	인문학계열	응용과학과군	이학계열	의공학과	의학계열
유아교육과	사범계열	응용과학부	이학계열	의공학협동과정	의학계열
유아교육전공	사범계열	응용기계공학과군	공학계열	의료경영학과	사회계열
유아교육학과	사범계열	응용기계및산업공학과군	공학계열	의료법학과	사회계열
유아미술음악전공	예술학계열	응용동물과학과	이학계열	의료보험관리과	사회계열
유아특수교육과	사범계열	응용동물과학부	이학계열	의료보험심사	사회계열
유아특수교육전공	사범계열	응용동물학과	농림학계열	의료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유아특수치료교육	사범계열	응용물리학과	이학계열	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계열
유전공학과	이학계열	응용물리학전공	이학계열	의료행정학과	사회계열
유전공학전공	공학계열	응용미생물학과	이학계열	의류, 식품영양학과군	가정학계열
유전자과학과	이학계열	응용미술과	예술학계열	의류과	가정학계열
유통경영과	사회계열	응용미술교육과	사범계열	의류직물과	가정학계열
유통경영정보	사회계열	응용미술학과	예술학계열	의류직물학과	가정학계열
유통경영정보관광학부	사회계열	응용미술학전공	예술학계열	의류직물학전공	가정학계열
유통경영학과	사회계열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이학계열	의류학과	가정학계열
유통과학과	이학계열	응용생물공학부	공학계열	의류학부	가정학계열
유통관리과	사회계열	응용생물과학부	이학계열	의류학전공	가정학계열
유통관리학과	사회계열	응용생물원예학부	농림학계열	의류환경전공	가정학계열
유통산업경영	사회계열	응용생물자원과학과군	농림학계열	의류환경학과	가정학계열
유통산업전공	사회계열	응용생물자원과학부	농림학계열	의무행정과	의학계열
유통산업학과	사회계열	응용생물학과	이학계열	의상· 섬유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유통정보과	사회계열	응용생물학전공	이학계열	의상과	가정학계열
유통정보학과	사회계열	응용생물화학과	이학계열	의상교육전공	사범계열
유통통상학부	사회계열	응용생물화학부	이학계열	의상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유통학과	사회계열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이학계열	의상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유학과	인문학계열	응용수리학부	이학계열	의상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유학동양학부	인문학계열	응용수학과	이학계열	의상섬유학과	가정학계열
윤리교육과	사범계열	응용수학응용물리학과군	이학계열	의상섬유학부	가정학계열
윤리교육전공	사범계열	응용수학전공	이학계열	의상아동식품영양학과군	가정학계열
윤리교육학과	사범계열	응용식물과학부	이학계열	의상예술학과	예술학계열
윤리문화학전공	인문학계열	응용식물학부	이학계열	의상학과	가정학계열
윤리학과	인문학계열	응용심리학전공	사회계열	의상학전공	가정학계열
음악과	예술학계열	응용어문정보학협동과정	어문학계열	의생활학과	가정학계열
음악교육과	사범계열	응용전산학과	공학계열	의생활학부	가정학계열
음악교육전공	사범계열	응용전자공학과	공학계열	의예과	의학계열
음악교육학과	사범계열	응용정보통계전공	이학계열	의용공학과	의학계열
음악전공	예술학계열	응용지질학과	이학계열	의용공학협동과정	의학계열
음악학과	예술학계열	응용통계학과	이학계열	의용생체공학과	의학계열

(의 ~ 자)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의용생체공학부	공학계열	인쇄과	공학계열	임산제지공학과군	농림학계열
의용생체공학전공	의학계열	인쇄정보공학과	사회계열	임상병리과	의학계열
의용전자공학과	공학계열	인적자원개발학과	사회계열	임상병리학과	의학계열
의용전자공학전공	공학계열	인지과학협동과정	사회계열	임상약학과	의학계열
의학과	의학계열	인터넷방송	공학계열	임상약학전공	의학계열
의학물리협동과정	의학계열	인터넷비즈니스전공	공학계열	임상음악치료전공	의학계열
의학부	의학계열	인터넷전공	공학계열	임학과	농림학계열
의학생물학과	이학계열	인터넷정보과	공학계열	입체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의학통계학과	의학계열	인터넷정보전공	공학계열	< 자 >	
이공학부	이학계열	인터넷통신과	공학계열	자동차계열	공학계열
이과대학	이학계열	인터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자동차공학계열	공학계열
이동통신과	공학계열	인테리어	예술학계열	자동차공학과	공학계열
이란어과	어문학계열	인테리어건축과	공학계열	자동차공학부	공학계열
이론및연출전공	인문학계열	인테리어공예과	공학계열	자동차공학전공	공학계열
이론신학과	인문학계열	인테리어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자동차과	공학계열
이론행정전공	사회계열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자동차기계	공학계열
이벤트연출과	체육학계열	일러스트레이션과	예술학계열	자동차기계계열	공학계열
이벤트예술과	예술학계열	일반공학부	공학계열	자동차기술과	공학계열
이태리어학과	어문학계열	일반사회교육과	사범계열	자동차디자인전공	이학계열
이학계열	이학계열	일반사회교육전공	사범계열	자동차산업공학부	공학계열
이학부	이학계열	일반학부	인문학계열	자동차산업기계공학부	공학계열
인간개발학부	사회계열	일반행정전공	사회계열	자동차생산공학전공	공학계열
인간복지학부	사회계열	일반행정학과	사회계열	자동차서비스과	공학계열
인간생활환경학과	이학계열	일본어과	어문학계열	자동차시험과	이학계열
인간재활학과	의학계열	일본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자동차전자과	공학계열
인도어과	어문학계열	일본어문학전공	어문학계열	자동차전자전공	공학계열
인도철학과	인문학계열	일본어전공	어문학계열	자동차전장과	공학계열
인류학과	사회계열	일본어학과	어문학계열	자동차정비과	공학계열
인문계	인문학계열	일본지역연구학전공	사회계열	자동차정비전공	공학계열
인문계열	인문학계열	일본지역통상과	사회계열	자동화계열	공학계열
인문과학계열	인문학계열	일본학과	인문학계열	자동화공학과	공학계열
인문과학대학	인문학계열	일본학전공	인문학계열	자동화기계과	공학계열
인문과학부	인문학계열	일어과	어문학계열	자동화용접	공학계열
인문대학	인문학계열	일어교육과	사범계열	자동화정보공학부	공학계열
인문문화학부	인문학계열	일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자연공학부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계열	일어일문학과	어문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이학계열
인문사회과학학부	인문학계열	일어일문학전공	어문학계열	자연과학군	이학계열
인문사회학부	인문학계열	일어일본학과	어문학계열	자연과학대학	이학계열
인문사회학학과군	인문학계열	일어전공	어문학계열	자연과학부	이학계열
인문학과군	인문학계열	일어통번역	어문학계열	자연과학부(大)	이학계열
인문학부	인문학계열	일어통역과	어문학계열	자연과학부(小)	이학계열
인사관리전공	사회계열	일어학과	어문학계열	자연과학학과군	이학계열
인사관리학과	사회계열	임산가공학과	농림학계열	자연요양복지학과	사회계열
인사노동관리전공	사회계열	임산공업과	공학계열	자연자원학과	이학계열
인사조직행정전공	사회계열	임산공학과	농림학계열	자연자원학부	이학계열
인쇄공학과	공학계열	임산공학전공	농림학계열	자원경제학과	사회계열

(자 ~ 전)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자원공학과	공학계열	재활학전공	의학계열	전략정보학과	사회계열
자원공학전공	공학계열	저작권전공	사회계열	전력전자전공	공학계열
자원과학부	이학계열	전기·전파공학과	공학계열	전산공학과	공학계열
자원동물산업과	농림학계열	전기계열	공학계열	전산과학과	이학계열
자원생명환경학부	농림학계열	전기공학과	공학계열	전산과학전공	이학계열
자원생물환경학부	농림학계열	전기공학교육과	사범계열	전산교육전공	사범계열
자원식물개발과	농림학계열	전기공학부	공학계열	전산사무자동화과	이학계열
자원식물개발학과	농림학계열	전기공학전공	공학계열	전산사무정보학부	공학계열
자원식물학과	농림학계열	전기과	공학계열	전산수학과	이학계열
자원식물학전공	농림학계열	전기교육전공	사범계열	전산수학부	이학계열
자원환경경제학전공	사회계열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계열	전산응용과	공학계열
자원환경공학과	공학계열	전기및컴퓨터공학과	공학계열	전산전자공학부	공학계열
자치행정과	사회계열	전기설비과	공학계열	전산전자물리학과	이학계열
자치행정전공	사회계열	전기전공	공학계열	전산정보계열	공학계열
자치행정학과	사회계열	전기전산공학과	공학계열	전산정보공학과	공학계열
작곡과	예술학계열	전기전자계열	공학계열	전산정보과	공학계열
작곡전공	예술학계열	전기전자공학계열	공학계열	전산정보관리학과	공학계열
작곡학과	예술학계열	전기전자공학과	공학계열	전산정보시스템전공	공학계열
작업치료과	의학계열	전기전자공학부	공학계열	전산정보응용통계학부	공학계열
장례지도	사회계열	전기전자공학전공	공학계열	전산정보처리과	공학계열
장식미술과	예술학계열	전기전자공학학연협동과정	공학계열	전산정보처리전공	공학계열
장식조형과	예술학계열	전기전자과	공학계열	전산정보통신계열	공학계열
장신구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전기전자및자동화공학부	공학계열	전산정보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장학전공	사범계열	전기전자전산계열	공학계열	전산정보통신과	공학계열
재료공학과	공학계열	전기전자전산공학과	공학계열	전산정보학과	공학계열
재료공학군	공학계열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공학계열	전산정보학부	공학계열
재료공학금속공학부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계열	공학계열	전산통계학과	이학계열
재료공학부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공학과	공학계열	전산통계학전공	이학계열
재료공학전공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공학부	공학계열	전산학과	이학계열
재료공학학연협동과정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컴퓨터제어계열	공학계열	전산학전공	이학계열
재료금속고분자화학공학과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	공학계열	전산회계정보	이학계열
재료금속공학과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전시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재료금속공학과군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계열	전자	공학계열
재료금속공학부	공학계열	전기전자제어공학과	공학계열	전자.전자계산.기계공학과군	공학계열
재료화학공학부	공학계열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공학계열	전자.전자통신.전파공학과군	공학계열
재료환경건축공학과	공학계열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공학계열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	공학계열
재무관리전공	사회계열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전자계산	공학계열
재무금융경영전공	사회계열	전기전자통신계열	공학계열	전자계산공학과	공학계열
재무금융전공	사회계열	전기전자통신공학과군	공학계열	전자계산과	공학계열
재무부동산전공	사회계열	전기정보제어공학부	공학계열	전자계산교육전공	사범계열
재정학과	사회계열	전기제어계측공학부	공학계열	전자계산기과	공학계열
재활공학과	약학계열	전기제어공학과	공학계열	전자계산학과	이학계열
재활과학과	의학계열	전기제어공학부	공학계열	전자계산학전공	이학계열
재활심리학과	사회계열	전기제어공학전공	공학계열	전자계산환경과학과군	이학계열
재활치료학과	의학계열	전기제어과	공학계열	전자공학과	공학계열
재활학과	의학계열	전기통신설비과	공학계열	전자공학교육과	사범계열

(전 ~ 정)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전자공학부	공학계열	전자통신계열	공학계열	정보과학전공	이학계열
전자공학전공	공학계열	전자통신공학계열	공학계열	정보관리전공	사회계열
전자공학컴퓨터학계	공학계열	전자통신공학과	공학계열	정보관리학과	사회계열
전자과	공학계열	전자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정보관리학과군	사회계열
전자교육전공	사범계열	전자통신공학전공군	공학계열	정보관리학부	사회계열
전자그래픽과	공학계열	전자통신과	공학계열	정보기술공학부	공학계열
전자기계공학부	공학계열	전자통신정보공학부	공학계열	정보기술학과	사회계열
전자매체공학부	공학계열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정보기술학부	사회계열
전자물리학과	이학계열	전자통신학부	공학계열	정보디자인계열	예술학계열
전자물리학전공	이학계열	전자편집디자인과	공학계열	정보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전자및정보공학부	공학계열	전자회로실무	공학계열	정보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전자및컴퓨터공학과	공학계열	전통도예과	예술학계열	정보물리학과	이학계열
전자상거래학전공	공학계열	전통무용전공	체육학계열	정보미디어학과	사회계열
전자·전산·전파공학부	공학계열	전통문화산업학과	사회계열	정보및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전자재료공학과	공학계열	전통발효식품과	농림학계열	정보방송정책전공	사회계열
전자재료공학전공	공학계열	전통복식과	가정학계열	정보방송학과	사회계열
전자전공	이학계열	전통식생활문화전공	가정학계열	정보법학과	사회계열
전자전기공학과	공학계열	전통예술과	예술학계열	정보보호학과	사회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전통음악전공	체육학계열	정보비서학과	사회계열
전자전기공학전공	공학계열	전통의상과	가정학계열	정보사무자동화과	사회계열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전통조리과	가정학계열	정보사회학과	사회계열
전자전기제어공학과	공학계열	전통종교미술학과	예술학계열	정보산업공학전공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전파공학과	공학계열	정보산업교육전공	사범계열
전자전기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전파공학전공	이학계열	정보산업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전자전산공학과	공학계열	전파방송학과	공학계열	정보산업학과	공학계열
전자전산기공학전공	공학계열	전파통신과	공학계열	정보산업학부	공학계열
전자전파계열	공학계열	전파통신전공	공학계열	정보수리과학부	공학계열
전자정보계열	공학계열	정경학과군	사회계열	정보수학전공	공학계열
전자정보공학과	공학계열	정경학부	사회계열	정보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전자정보공학부	공학계열	정밀공업화학과	공학계열	정보시스템전공	공학계열
전자정보과	공학계열	정밀기계공학과	공학계열	정보시스템학과군	공학계열
전자정보산업학부	공학계열	정밀기계공학전공	공학계열	정보시스템협동과정	공학계열
전자정보전기공학부	공학계열	정밀기계과	공학계열	정보전산학과	공학계열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공학계열	정밀기계설계과	공학계열	정보전산학부	공학계열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정밀정형협동과정	공학계열	정보전자공학과	공학계열
전자정보통신과	공학계열	정밀화학공학부	공학계열	정보전자과	공학계열
전자정보통신반도체공학부	공학계열	정밀화학과	이학계열	정보전자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전자정보학부	공학계열	정법학부	사회계열	정보전자학과군	공학계열
전자제어공학과	공학계열	정보검색과	이학계열	정보제어공학전공	공학계열
전자제어공학부	공학계열	정보경영학부	사회계열	정보처리과	이학계열
전자제어과	공학계열	정보계열	사회계열	정보처리교육전공	사범계열
전자제어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정보공학과	공학계열	정보처리전공	이학계열
전자출판과	공학계열	정보공학부	공학계열	정보처리학과	이학계열
전자컴퓨터계열	공학계열	정보공학전공	공학계열	정보처리학전공	이학계열
전자컴퓨터공학과	공학계열	정보과학과	이학계열	정보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전자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정보과학부	이학계열	정보컴퓨터학부	공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정보통계학과	이학계열	제3공학부	공학계열	조형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정보통계학전공	이학계열	제4공학부	공학계열	조형미술과	예술학계열
정보통신계열	이학계열	제5공학부	공학계열	조형미술학과	예술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공학계열	제과코디네이션	예술학계열	조형예술학과	예술학계열
정보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제약학과	약학계열	조형예술학부	예술학계열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계열	제약학전공	약학계열	조형학과	예술학계열
정보통신과	공학계열	제어계측공학과	공학계열	조형학군	예술학계열
정보통신교육전공	사범계열	제어계측공학전공	공학계열	조형학부	예술학계열
정보통신기계	공학계열	제어계측과	공학계열	종교교육전공	사범계열
정보통신및컴퓨터공학	공학계열	제어계측전공	공학계열	종교교육학과	사범계열
정보통신및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제어계측학과	이학계열	종교음악과	예술학계열
정보통신산업공학부	공학계열	제어기계공학과	공학계열	종교음악전공	예술학계열
정보통신전공	공학계열	제어시스템정보과	이학계열	종교음악학과	예술학계열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공학계열	제지공업과	공학계열	종교철학과	인문학계열
정보통신전파공학부	공학계열	제지공학과	농림학계열	종교철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정보통신정책학과	공학계열	제철금속과	공학계열	종교학과	인문학계열
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제품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종교학전공	인문학계열
정보통신학과	공학계열	제품디자인전공	공학계열	종양생물학전공	이학계열
정보통신학부	사회계열	제품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주거실내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정보통신학전공	이학계열	제품및환경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주거환경전공	가정학계열
정보통신학협동과정	공학계열	제화공업과	공학계열	주거환경학과	가정학계열
정보학과	사회계열	조각과	예술학계열	주택행정관리과	가정학계열
정보학부	사회계열	조각전공	예술학계열	중국· 경제학부	사회계열
정책개발학과	사회계열	조경과	농림학계열	중국어과	어문학계열
정책분석학과	사회계열	조경설계전공	농림학계열	중국어교육과	사범계열
정책학과	사회계열	조경학과	농림학계열	중국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정책학전공	사회계열	조경학전공	농림학계열	중국어문학전공	어문학계열
정책학학과	사회계열	조경학협동과정	농림학계열	중국어전공	어문학계열
정치· 통일전공	사회계열	조기영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중국어중국학과	어문학계열
정치경영학과	사회계열	조리과	가정학계열	중국어중국학전공	인문학계열
정치사회학부	사회계열	조리과학과	가정학계열	중국어통번역	어문학계열
정치언론학부	사회계열	조선공학과	공학계열	중국어통역과	어문학계열
정치외교학과	사회계열	조선과	공학계열	중국어학과	어문학계열
정치외교학과전공	사회계열	조선및해양공학과	공학계열	중국일본학부	인문학계열
정치외교학부	사회계열	조선해양공학과	공학계열	중국전공	인문학계열
정치외교학전공	사회계열	조선해양공학부	공학계열	중국지역통상과	사회계열
정치학과	사회계열	조선해양공학전공	공학계열	중국지역학협동과정	사회계열
정치행정언론학부	사회계열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중국철학전공	인문학계열
정치행정전공	사회계열	조선해양시스템과	공학계열	중국통상무역과	사회계열
정치행정학부	사회계열	조소과	예술학계열	중국학과	인문학계열
정치홍보학과	사회계열	조소전공	예술학계열	중국학전공	어문학계열
정행학부	사회계열	조소학과	예술학계열	중남미지역학과	사회계열
제1공학부	공학계열	조직및인사관리전공	사회계열	중남미학과	사회계열
제2공학부	공학계열	조형공학계열	예술학계열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전공	사회계열
제2외국어문학부	인문학계열	조형과	예술학계열	중동아프리카지역학과	사회계열
제2외국어학부	인문학계열	조형관리전공	예술학계열	중동아프리카학과	어문학계열

(중 ~ 철)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중등과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지능기계공학과	공학계열	지역학부	사회계열
중등교육전공	사범계열	지능기계시스템전공	공학계열	지역협력협동과정	사회계열
중등영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지능정보공학과	공학계열	지적공학과	사회계열
중등특수교육전공	사범계열	지능정보공학전공	공학계열	지적과	사회계열
중소기업개발학과	사회계열	지리교육과	사범계열	지적소유권전공	사회계열
중소기업경영과	사회계열	지리교육전공	사범계열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사회계열
중소기업경영전공	사회계열	지리정보공학과	공학계열	지적재산권법학과	사회계열
중소기업경영지도학과	사회계열	지리정보체계협동과정	사회계열	지적정보과	사회계열
중소기업경영학과	사회계열	지리정보학전공	사회계열	지적정보학과	사회계열
중소기업국제무역학과	사회계열	지리학과	사회계열	지적학과	사회계열
중소기업기술지도학과	사회계열	지리학전공	사회계열	지질공학과	공학계열
중소기업전공	사회계열	지방및도시행정전공	사회계열	지질과학과	이학계열
중소기업정책학과	사회계열	지방자치법학과	사회계열	지질학과	이학계열
중소기업학과	사회계열	지방자치전공	사회계열	지질해양학과군	이학계열
중소기업학부	사회계열	지방자치학과	사회계열	지질환경과학과	이학계열
중소기업학전공	사회계열	지방자치행정전공	사회계열	지질환경과학전공	이학계열
중앙아시아어과	어문학계열	지방자치행정학과	사회계열	지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중어중문일본학과군	어문학계열	지방재정경제전공	사회계열	지형정보과	이학계열
중어중문학과	어문학계열	지방재정과	사회계열	지형정보협동과정	사회계열
중어중문학전공	어문학계열	지방정치학과	사회계열	직업재활학과	사회계열
중어학과	어문학계열	지방행정과	사회계열	< 차 >	
증권금융과	사회계열	지방행정전공	사회계열	차량기계과	공학계열
증권금융학과	사회계열	지방행정학과	사회계열	창업경영과	사회계열
증권학과	사회계열	지식정보학부	사회계열	창업경영학과	사회계열
증식학과	수산해양학계열	지역개발·법학·자치행정학	사회계열	창작기획	사회계열
지구과학과	이학계열	지역개발신문방송학부	사회계열	창작문화과	사회계열
지구과학과군	이학계열	지역개발전공	사회계열	천문대기과학과	이학계열
지구과학교육과	사범계열	지역개발학과	사회계열	천문우주과학과	이학계열
지구과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지역개발학전공	사회계열	천문우주학과	이학계열
지구과학부	이학계열	지역개발행정학과	사회계열	천문우주학전공	이학계열
지구과학전공	이학계열	지역경제개발학과	사회계열	천문학과	이학계열
지구물리학과	이학계열	지역경제경영학과	사회계열	천연건강가족복지	가정학계열
지구시스템공학과	이학계열	지역경제전공	사회계열	천연물과학전공	이학계열
지구시스템과학과	이학계열	지역경제학과	사회계열	천연섬유학과	가정학계열
지구시스템과학전공	이학계열	지역계획학과	사회계열	철강학과	이학계열
지구해양과학과	이학계열	지역발전정책학과	사회계열	철도경영정보과	공학계열
지구환경건설공학부	공학계열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계열	철도시설토목과	공학계열
지구환경공학부	공학계열	지역사회개발산업정보학과	사회계열	철도운수경영과	공학계열
지구환경과학과	이학계열	지역사회개발학과	사회계열	철도운전기전과	공학계열
지구환경과학부	이학계열	지역사회개발학전공	사회계열	철도전기제어과	공학계열
지구환경과학전공	이학계열	지역산업경제학과	사회계열	철도차량기계과	공학계열
지구환경보전전공	이학계열	지역연구학과	사회계열	철도차량운전과	공학계열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지역연구협동과정	사회계열	철학과	인문학계열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지역정보학과	사회계열	철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공학계열	지역정책학과	사회계열	철학부	인문학계열
지구환경학전공	공학계열	지역학과	사회계열	철학윤리학부	인문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철학전공	인문학계열	축산경영학과	농림학계열	컴퓨터교육전공	사범계열
철학종교학부	인문학계열	축산과	농림학계열	컴퓨터교육학과	사범계열
첨단공학부	공학계열	축산과학부	농림학계열	컴퓨터그래픽과	예술학계열
첨단과학부	공학계열	축산농화학식품공학과군	농림학계열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첨단발효건강식품	가정학계열	축산식품공학과	농림학계열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	예술학계열
첨단산업공학부	공학계열	축산자원생산학과	농림학계열	컴퓨터그래픽스전공	공학계열
첨단정밀공학전공	공학계열	축산학과	농림학계열	컴퓨터그래픽학과	공학계열
청소년문화과	사회계열	축산학전공	농림학계열	컴퓨터기계설계	공학계열
청소년지도교육전공	사범계열	출판과	공학계열	컴퓨터네트워크과	공학계열
청소년지도학과	사회계열	출판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컴퓨터니트섬유과	가정학계열
청소년지도학전공	사회계열	출판미디어	사회계열	컴퓨터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청소년학과	사회계열	출판잡지전공	사회계열	컴퓨터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청정공학협동과정	공학계열	출판잡지학과	사회계열	컴퓨터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체육경기학부	체육학계열	출판정보학과	사회계열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공학계열
체육계열	사범계열	출판편집과	공학계열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	공학계열
체육과	체육학계열	측지공학과	공학계열	컴퓨터및정보통신공학	공학계열
체육과학과	체육학계열	치기공과	의학계열	컴퓨터및정보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체육과학부	체육학계열	치료특수교육과	사범계열	컴퓨터사이언스	공학계열
체육교육과	사범계열	치위생과	의학계열	컴퓨터서비스과	공학계열
체육교육전공	사범계열	치유선교전공	인문학계열	컴퓨터소프트웨어과	공학계열
체육레저학부	체육학계열	치의예과	의학계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공학계열
체육산업경영학과	체육학계열	치의학과	의학계열	컴퓨터시스템전공	공학계열
체육학과	체육학계열	칠공예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컴퓨터애니메이션	공학계열
체육학교육전공	사범계열	< 카 >		컴퓨터응용개발	공학계열
체육학부	체육학계열	카지노경영과	사회계열	컴퓨터응용계열	공학계열
체육학전공	체육학계열	캐릭터산업디자인전공	공학계열	컴퓨터응용과	공학계열
체코어과	어문학계열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컴퓨터응용과학부	공학계열
초등과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컴퓨터응용기계설계학과	공학계열
초등교육전공	사범계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컴퓨터응용설계과	공학계열
초등교육학	사범계열	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계열	컴퓨터응용전자	공학계열
초등교육학과	사범계열	컨벤션산업과	사회계열	컴퓨터응용제어과	공학계열
초등국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컨텐트전공	사회계열	컴퓨터전자공학부	공학계열
초등도덕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게임과	공학계열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	공학계열
초등미술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계열	공학계열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초등수학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공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계열	공학계열
초등실과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공학교육과	사범계열	컴퓨터정보공학	공학계열
초등영어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공학과	공학계열
초등음악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공학전공	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공학부	공학계열
초등체육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과	공학계열
초등컴퓨터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과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기술계열	공학계열
초등특수교육과	사범계열	컴퓨터과학부	이학계열	컴퓨터정보기술과	공학계열
초등특수교육전공	사범계열	컴퓨터과학전공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디자인학부	예술학계열
초미세표면과학협동과정	공학계열	컴퓨터과학학과	이학계열	컴퓨터정보시스템	공학계열
초음파의과학과	의학계열	컴퓨터광고디자인	예술학계열	컴퓨터정보처리	공학계열
촬영조명과	예술학계열	컴퓨터광고제작과	사회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계열	공학계열
축산가공학과	농림학계열	컴퓨터교육과	사범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공학계열

(컴 ~ 피)

학 과 명	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공학군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통신전공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통신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학부	공학계열
컴퓨터제어공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제어과	공학계열
컴퓨터창작과	예술학계열
컴퓨터텍스타일디자인과	예술학계열
컴퓨터통신과	공학계열
컴퓨터통신전공	공학계열
컴퓨터통신전자공학부	공학계열
컴퓨터통신학과	공학계열
컴퓨터학과	공학계열
컴퓨터학부	공학계열
컴퓨터학전공	공학계열
코디네이션과	가정학계열
코디메이크업과	가정학계열
큐레이터전공	예술학계열
< 타 >	
탐사공학전공	공학계열
태국어과	어문학계열
태권도전공	체육학계열
태권도체육과	체육학계열
태권도학과	체육학계열
태권도학전공	체육학계열
터어키어과	어문학계열
테크노경영전공	사회계열
텍스타일디자인과	예술학계열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텍스타일시스템계열	예술학계열
토목건축공학과	공학계열
토목건축공학부	공학계열
토목건축측지공학과군	공학계열
토목건축환경공학과군	공학계열
토목공학과	공학계열
토목공학교육과	사범계열
토목공학부	공학계열
토목공학전공	공학계열
토목과	공학계열
토목교육전공	사범계열
토목도시공학부	공학계열
토목도시환경공학부	공학계열
토목및지리정보공학부	공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토목설계과	공학계열
토목시공과	공학계열
토목조선해양공학과군	공학계열
토목환경공학과	공학계열
토목환경공학과군	공학계열
토목환경공학부	공학계열
토목환경공학전공	공학계열
토목환경과	공학계열
통계정보학전공	사회계열
통계조사학과	사회계열
통계학과	이학계열
통계학전공	이학계열
통상경영계열	사회계열
통상경영학과	사회계열
통상및경제학부	사회계열
통상산업디자인학과	공학계열
통상정보	사회계열
통상학부	사회계열
통상학전공	사회계열
통상협상학과	사회계열
통상협상협동과정	사회계열
통상회계학부	사회계열
통신공학과	공학계열
통신공학부	공학계열
통신공학전공	공학계열
통신과	공학계열
통신시스템기술협동과정	공학계열
통신컴퓨터공학부	공학계열
통신학과	공학계열
통역학과	어문학계열
통일신학과	인문학계열
통일신학부	인문학계열
통일정책전공	사회계열
통일정책학과	사회계열
특수관광산업과	사회계열
특수교육과	사범계열
특수교육전공	사범계열
특수교육학과	사범계열
특수교육행정전공	사범계열
특수법무학과	사회계열
특수유아교육전공	사범계열
특수재활전공	의학계열
특수체육학과	체육학계열
특허협동과정	사회계열
< 파 >	
파워일렉트로닉스학과	공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판매관리과	사회계열
판화과	예술학계열
판화전공	예술학계열
판화학과	예술학계열
패션계열	예술학계열
패션디자인과	예술학계열
패션디자인산업학전공	예술학계열
패션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패션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패션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패션산업전공	예술학계열
패션산업정보전공	사회계열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가정학계열
패션예술학과	예술학계열
패션예술학부	예술학계열
패션정보기획전공	가정학계열
패션코디네이션	가정학계열
패션코스튬디자인	예술학계열
편집디자인과	예술학계열
평면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평생교육전공	사범계열
평화안보학과	사회계열
포교사회학과	사회계열
포루투갈어과	어문학계열
포장과	공학계열
포장디자인과	예술학계열
포장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폴란드어과	어문학계열
표면공학과	공학계열
표면장식디자인과	예술학계열
표면처리과	공학계열
품질경영과	공학계열
품질관리과	사회계열
품질 · 환경경영전공	사회계열
프랑스어문학전공	어문학계열
프랑스어통번역	어문학계열
프랑스어학과	어문학계열
프랑스지역통상과	사회계열
프랑스지역학전공	사회계열
프랑스학전공	인문학계열
프랜차이징· 창업	사회계열
프로랄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피부관리과	가정학계열
피부미용과	가정학계열
피아노과	예술학계열
피아노전공	예술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피아노학과	예술학계열	한영중과	어문학계열	해양및조선공학부	이학계열
< 하 >		한의예과	의학계열	해양산업공학과	공학계열
학과간협동과정중국학	인문학계열	한의학과	약학계열	해양산업공학부	공학계열
학교건축전공	공학계열	한일과	어문학계열	해양산업공학협동과정	공학계열
학교경영관리전공	사회계열	한중과	어문학계열	해양산업정책학부	공학계열
학교보건교육전공	사범계열	항공경영과	사회계열	해양생명개발학과	공학계열
학교상담전공	사범계열	항공경영학과	사회계열	해양생명공학부	공학계열
학연산협동과정	공학계열	항공공학과	공학계열	해양생명과학과군	공학계열
한국경제경영학과	사회계열	항공관광과	사회계열	해양생명양식학과	공학계열
한국동양어문학부	어문학계열	항공관광서비스전공	사회계열	해양생명의학과	공학계열
한국무용과	예술학계열	항공교통학과	이학계열	해양생물공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한국문학창작학과	인문학계열	항공기계공학과	공학계열	해양생물이용학부	수산해양학계열
한국문화학부	인문학계열	항공기계공학부	공학계열	해양생물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한국사상사학과	인문학계열	항공기계공학전공	공학계열	해양생산과학부	수산해양학계열
한국사학과	인문학계열	항공기계과	공학계열	해양생산관리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한국어교육과	사범계열	항공기계산업공학부	공학계열	해양생산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한국어문학부	어문학계열	항공서비스과	사회계열	해양생산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한국어문학전공	어문학계열	항공우주공학과	공학계열	해양생산학기관공학과군	수산해양학계열
한국음악과	예술학계열	항공우주및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공학계열	해양스포츠학과	체육학계열
한국음악학과	예술학계열	항공우주법학과	사회계열	해양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한국음악학전공	예술학계열	항공우주자동화공학과군	공학계열	해양시스템과학전공	공학계열
한국철학과	인문학계열	항공운항과	공학계열	해양시스템학부	수산해양학계열
한국철학전공	인문학계열	항공운항관리학과	공학계열	해양에너지자원공학과	공학계열
한국학과	인문학계열	항공운항학과	공학계열	해양응용공학과군	수산해양학계열
한국학부	인문학계열	항공자동차정비	공학계열	해양자원과	수산해양학계열
한국학전공	인문학계열	항공재료공학과	공학계열	해양자원육성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한국화전공	예술학계열	항공전자공학과	공학계열	해양자원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한국화학과	예술학계열	항공조선공학부	공학계열	해양전자통신공학부	공학계열
한노과	어문학계열	항공통신정보공학과	공학계열	해양체육학과	체육학계열
한독과	어문학계열	해사경영학과	사회계열	해양토목공학과	공학계열
한문교육과	사범계열	해사공학과	공학계열	해양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한문교육전공	사범계열	해사법학과	사회계열	해양학전공	수산해양학계열
한문학과	어문학계열	해사수송과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해양환경공학과	공학계열
한문학전공	어문학계열	해사수송과학부	이학계열	해외개발학과	사회계열
한방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해사행정학과	사회계열	해외개발학전공	사회계열
한불과	어문학계열	해상운송시스템학과	공학계열	해외선교학과	인문학계열
한서과	어문학계열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공학계열	해외시장개발학과	사회계열
한아과	어문학계열	해양개발공학부	수산해양학계열	해외지역연구전공	사회계열
한약자원학과	농림학계열	해양개발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해외지역학과	사회계열
한약재료학과	이학계열	해양경찰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해운경영학과	사회계열
한약학과	약학계열	해양계측공학과	공학계열	해운경영학부	사회계열
한영과	어문학계열	해양공학과	공학계열	행정· 법률정책학과	사회계열
한영독과	어문학계열	해양공학부	공학계열	행정계열	사회계열
한영불과	어문학계열	해양공학전공	공학계열	행정과	사회계열
한영서과	어문학계열	해양과학과	수산해양학계열	행정관리학전공	사회계열
한영일과	어문학계열	해양과학부	수산해양학계열	행정대학	사회계열

(행 ~ 환)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행정도시계획학부	사회계열	호텔학과	사회계열	화학환경보건(보건학과)군	공학계열
행정법률정보	사회계열	홍보기획학과	사회계열	화학환경화공학부	공학계열
행정복지학과군	사회계열	화공고분자공학부	공학계열	화훼원예과	농림학계열
행정복지학부	사회계열	화공고분자생물공학부	공학계열	화훼장식	농림학계열
행정부동산학부	사회계열	화공과	공학계열	화훼학과	농림학계열
행정사무정보	사회계열	화공생명공학부	공학계열	환경건축학과	공학계열
행정세무학부	사회계열	화공재료식품공학군	공학계열	환경계열	이학계열
행정실무	사회계열	화공환경공업과	공학계열	환경계획과	사회계열
행정영어영문학과군	사회계열	화상정보공학부	공학계열	환경계획학과	사회계열
행정전산과	사회계열	화예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환경고분자화학공학부	공학계열
행정정보계열	사회계열	화장품과학	이학계열	환경공업과	공학계열
행정정보관리전공	사회계열	화학고분자공학부	공학계열	환경공업관리과	공학계열
행정정보학과	사회계열	화학고분자및섬유공학부	공학계열	환경공업교육과	사범계열
행정정보학부	사회계열	화학공고분자공정및공	공학계열	환경공업교육전공	사범계열
행정정치외교경제학과군	사회계열	화학공업공학과	공학계열	환경공업화학	공학계열
행정지역개발학계열	사회계열	화학공업과	공학계열	환경공학과	공학계열
행정학과	사회계열	화학공업학과	공학계열	환경공학및해양시스템학과	공학계열
행정학부	사회계열	화학공학· 공업화학· 섬유·	공학계열	환경공학부	공학계열
행정학전공	사회계열	세라믹· 재료· 금속공학과군		환경공학전공	공학계열
향장공업과	공학계열	화학공학· 공업화학·	공학계열	환경과	이학계열
향장산업	공학계열	섬유· 세라믹공학과군		환경과학경제학부	이학계열
헝거리어과	어문학계열	화학공학과	공학계열	환경과학과	이학계열
헤어디자인	예술학계열	화학공학과군	공학계열	환경과학전공	이학계열
현대무용전공	예술학계열	화학공학교육과	사범계열	환경관리과	이학계열
협동조합경영과	농림학계열	화학공학기계공학계	공학계열	환경관리및정책협동과정	이학계열
협동조합계열	사회계열	화학공학및공업화학과	공학계열	환경관리학과	이학계열
협동조합학과	사회계열	화학공학및공업화학부	공학계열	환경교육과	사범계열
형상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화학공학부	공학계열	환경교육전공	사범계열
호텔경영과	사회계열	화학공학전공	공학계열	환경녹지학전공	농림학계열
호텔경영전공	사회계열	화학과	이학계열	환경대기과학과	이학계열
호텔경영학과	사회계열	화학교육과	사범계열	환경대기과학전공	이학계열
호텔경영학전공	사회계열	화학교육전공	사범계열	환경도시공학부	공학계열
호텔관광	사회계열	화학기술생명과학부	이학계열	환경디자인과	예술학계열
호텔관광경영학과	사회계열	화학및신소재공학과	공학계열	환경디자인전공	예술학계열
호텔관광경영학부	사회계열	화학생명과학과군	이학계열	환경디자인학과	예술학계열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사회계열	화학생명과학부	이학계열	환경디자인학전공	예술학계열
호텔관광계열	사회계열	화학생물공학부	공학계열	환경미술학과	예술학계열
호텔관광마케팅	사회계열	화학생물학부	이학계열	환경및산업보건학전공	의학계열
호텔관리학과	사회계열	화학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환경및생명공학부	공학계열
호텔식당경영과	사회계열	화학식품생물공학과	공학계열	환경보건학과	의학계열
호텔외식산업과	가정학계열	화학식품생물공학부	공학계열	환경보전과학과	이학계열
호텔제과제빵과	가정학계열	화학신소재학과	공학계열	환경보전학과	농림학계열
호텔조리계열	가정학계열	화학응용생명과학부	공학계열	환경보호과	이학계열
호텔조리과	가정학계열	화학재료공학부	공학계열	환경보호학과	이학계열
호텔조리영양	가정학계열	화학전공	이학계열	환경산업공학과군	공학계열
호텔조리제빵과	가정학계열	화학환경공학부	공학계열	환경생명공학부	공학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학 과 명	계열
환경생물공학과	공학계열	회계전공	사회계열		
환경생물공학부	공학계열	회계전산과	이학계열		
환경생물원예학부	이학계열	회계정보과	사회계열		
환경생물학전공	이학계열	회계정보학과	사회계열		
환경설계학과	공학계열	회계정보학전공	사회계열		
환경설계학부	공학계열	회계학과	사회계열		
환경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회계학부	사회계열		
환경시스템공학전공	공학계열	회계학전공	사회계열		
환경시스템학부	이학계열	회화· 판화전공	예술학계열		
환경시스템협동과정	이학계열	회화과	예술학계열		
환경신학과	인문학계열	회화전공	예술학계열		
환경안전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회화학과	예술학계열		
환경예술학과	예술학계열	회화학부	예술학계열		
환경원예과	농림학계열	회화학전공	예술학계열		
환경원예조경학부	농림학계열	효학과	인문학계열		
환경원예학과	농림학계열	휴양산업과	사회계열		
환경위생과	의학계열	히브리학과	인문학계열		
환경위생과학과	의학계열	< S >			
환경위생화학공업	이학계열	SOC공학부	공학계열		
환경응용화학부	이학계열				
환경임산자원학부	농림학계열				
환경자원경제학과	사회계열				
환경자원학과	농림학계열				
환경정보시스템학과	공학계열				
환경정책전공	사회계열				
환경정책학과	사회계열				
환경조각과	예술학계열				
환경조각전공	예술학계열				
환경조각학과	예술학계열				
환경조경과	농림학계열				
환경조경학과	공학계열				
환경조형계열	공학계열				
환경조형과	공학계열				
환경조형학과	예술학계열				
환경지질과학전공	이학계열				
환경학과	이학계열				
환경학부	이학계열				
환경학전공	이학계열				
환경행정전공	사회계열				
환경행정학과	사회계열				
환경화학계열	이학계열				
환경화학공학과	공학계열				
환경화학공학부	공학계열				
환경화학전공	농림학계열				
회계관리학과	사회계열				
회계재무전공	사회계열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 사 례 집

통 계 청

41-4

일 러 두 기

○ 조사지침서, 지도지침서에 수록된 사례는 제외

○ 수록 순서
- □ 표시 : 대상별
- ◎ 표시 : 세부 조사 항목별
- 사례집 양식

○ 사례집 양식 구분내용
- 사　　례 : 과거 및 조사시 발생되는 사례를 수록
- 조치결과 : 조사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를 수록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착 안 점 : 조치결과를 취하기 위해 기본 개념 및 키포인트를 수록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에 응용토록 함
- 비　　고 : 파생되는 유형이나 보충설명을 수록

○ 사례집 양식 활용방법
- 사례내용은 과거에 나타난 사례와 금번 교육 시 질문한 사례를 모아 조치결과를 수록한 것임
- 따라서 수록된 사례만 조치결과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
- 이외에 발생되는 사례는 반드시 인구조사과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함

□ 조사방법

사 례	가구명부 작성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 노숙자의 경우? → 노숙자가 발견된 장소가 속한 조사구에서 조사하되 전수조사표를 사용 · 조사지침서에 수록되어 있는 가구의 종류에 따라 일반가구인지 집단가구인지를 파악하여 조사	○ 장소를 달리하며 단독으로 사는 경우 - 거처번호 → 1개 거처번호를 부여 - 가구일련번호 → 끝번호에 이어서 부여 - 가구구분 → 일반가구에 표기	· '조사표 표지' 는 반드시 작성 ·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사 · '가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가구구분 항목 → 「⑩기타 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로 거처의 종류 항목 →「⑨기타」로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사선처리 함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사선으로 처리
	○ 장소를 달리하며 집단(비혈연 6명이상)으로 사는 경우 - 거처번호 → 1개 거처번호를 부여 - 가구일련번호 → 끝번호에 이어서 1개 부여하고 조사표를 작성 - 가구구분 → 집단가구에 표기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에서 19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 독채로 사는 경우 - 거처번호 → 1개 거처번호를 부여 - 가구일련번호 → 진행순로에 따라 1개 부여하고 조사표를 작성 - 가구구분 → 집단가구에 표기	○ 독채로 사는 경우 · '조사표 표지' 는 반드시 작성 ·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사 · '가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가구구분 항목 → 「⑤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로 기입한 후 조사 주인, 대표가구 여부 항목은 →「②대표가구」로 기입하고 ·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주인가구와 함께 주택에 사는 경우 - 거처번호 → 부여하지 않고 사선 처리 - 가구일련번호 → 진행순로에 따라 1개 부여하고 조사표를 작성 - 가구구분 → 집단가구에 표기	○ 주인가구와 함께 주택에 사는 경우 : 독채와 같으나 · 주인, 대표가구 여부 항목은 →「③기타 세 들어 사는 동거가구」로 기입하고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사선으로 처리 함
○ 여관, 호텔 등 객실 투숙자의 경우?	- 거처번호 → 숙박시설 전체를 1개 부여 - 가구일련번호 → 각 객실별로 부여 - 가구구분 → 가구의 종류에 따라 표기	· '조사표 표지' 및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사 · '가구에 관한 사항'은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하되 거처의 종류 항목 →「⑦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로 기입한 후 조사 마침
○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의 가구의 경우?	- 거처번호 → 각각 1개씩 부여 - 가구일련번호 → 각 가구별로 부여 - 가구구분 → 가구의 종류에 따라 표기	· '조사표 표지' 및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사 · '가구에 관한 사항'은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하되 거처의 종류 항목 →「⑨기타」로 기입한 후 조사 마침

사 례	가구명부작성요령	조사표작성요령
○ 외국인 거주지역 경우? → 외국인 10가구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경우 외국인 조사구(특성번호 5)로 설정하였음 → 외국인이 9가구 이하 또는 19인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인 조사구에 포함시켰으므로 외국인은 별도의 외국인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	○ 독채로 사는 외국인 가구의 경우 - 거처번호 → 1개 부여 - 가구일련번호 → 1개 부여 - 가구구분 → 외국인 가구에 표기 - 주택의 종류 → 반드시 표기	○ 외국인 조사표 표지 ·사용된 언어 기입란에 하나만 표기 ·반드시 기입하고, 가구구분란은 「①주인(대표)가구」로 기입 ○ 외국인 응답자가 여러 개의 언어로 응답한 경우 ·조사원이 주된 하나의 언어로 나머지 언어로 조사된 내용을 이기 → 반드시 사용된 언어 하나로 표기한 후 이기된 언어 조사내용은 연필로 사선으로 처리(이때 조사내용을 지울 필요는 없음)
	○ 세들어 사는 외국인 가구의 경우 - 거처번호 → 사선으로 처리 - 가구일련번호 → 1개 부여 - 가구구분 → 외국인 가구에 표기 - 주택의 종류 → 사선으로 처리	○ 위의 내용과 동일하나 ·조사표 표지의 가구구분란은 「②동거가구」로 기입 ○ 전세를 준 주인가구에 주택의 종류를 표기
○ 기숙시설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조사구 설정 당시) → 한국인은 조사구 특성번호 3으로 부여하였음 → 외국인이 19인 이하는 한국인 조사구 특성번호에 포함시켰으므로 외국인을 별도 분리시켜 조사 → 외국인 20인 이상이면 외국인 조사구(특성번호 5)로 설정하였음	○ 외국인 19인 이하로 형성되어 사는 경우 → 외국인 가구로 분리 ○ 외국인이 20인 이상 형성된 경우 →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로 지정(조사구 특성번호 5번으로 부여) - 거처번호 → 사선으로 처리 - 가구일련번호 → 1개 부여 - 가구구분 → 외국인 가구에 표기	○ 위의 내용과 동일하나 ·조사표 표지의 가구구분란은 「②동거가구」로 기입 ○ 가구명부에서 한국인 기숙사에 주택의 종류를 「주택이외의 거처」에 표기하고 외국인의 주택의 종류는 사선으로 처리
○ 기숙시설, 사회시설에 외국인만 사는 경우 ·외국인 19인 이하로 형성되어 사는 경우 → 외국인 가구로 분리하였음 ·외국인이 20인 이상 형성된 경우 → 조사구 특성번호 5번으로 부여하였음	○ 외국인만 거주하므로 거처번호를 부여 - 거처번호 → 1개 부여 - 가구일련번호 → 1개 부여 - 가구구분 → 외국인 가구에 표기	○ 위의 내용과 동일하나 ·조사표 표지의 가구구분란은 「①주인(대표)가구」로 기입 ○ 가구명부에서 주택의 종류를 「주택이외의 거처」에 표기
○ 공해상에 정박하며 생활하는 선박의 경우 ·예) 금강호 등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 외국인과 한국인을 별도로 각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	○ 한국인은 집단가구로 외국인은 외국인 가구로 하여 조사 → 선박의 경우 별도의 조사구를 설정하지 않은 관계로 기숙사 시설개념으로 조사

□ 조사대상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여관 등 숙박업소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 지?	○ 주인가구가 없이 숙박업소의 객실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 → 대표가구를 선정한 후 나머지 가구는 동거가구로 조사	· '일반가구'로 표시하고 '가구구분' 항목에 표기한 다음 가구에 관한 사항을 조사	· 객실에 있는 가구는 '주택이외의 거처'로 조사 ·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인 투숙자 · 가구명부에는 '일반가구'로 표기 · 투숙하고 있는 각 객실별로 하나의 가구로 하여 조사함
	○ 주인가구가 건물 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부분에서 사는 경우 → 주인가구 '영업용 건물 내 주택'으로, 객실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표가구를 선정한 후 나머지 가구는 동거가구로 조사(각각에 거처번호 부여)	· 주인가구가 건물 내에 살고 있으므로, 객실에 있는 가구는 대표가구를 선정하여야 함	
○ 명칭은 고시원인데 내부는 각각 별도의 취사와 취침을 할 수 있게 지어진 구조건물일 경우	○ 취사와 취침을 각각 별도로 하므로 이런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가구로 하여 조사함	· 취사와 취침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생계를 달리하므로 별개가구로 봄	· 취침은 별도로 하나, 취사를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시설로 봄
○ 외교관, 대사관 등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잠시 휴가, 출장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 외교통상부에서 조사	· 국가 공무로 파견되어 있는 자는 조사함	· 잠시 출장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조사함 · 주한 미군은 미국에서 조사
○ 기업체에서 장기간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잠시 휴가, 출장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 장기간 파견되어 있는 직원 또는 그 가족은 조사대상이 아님. 해당 국가에서 조사	· 국가 공무가 아님	· 한국에 파견된 외국 증권 또는 은행 직원은 우리 나라가 조사
○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이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휴직으로 인해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므로 조사해야 함	· 휴직은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이씨는 지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부인은 남편 간호를 위해 병원에 숙식하고 있으며, 집에서는 자녀 둘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을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은?	○ 조사대상 가구원은 모두 4명이다. - 가구주, 배우자, 자녀 둘	·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간호를 위해 병원에 숙식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대상임	· 병원은 별도의 조사구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가구에서 조사되어야 함
○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주이다. 종업원 3명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주택을 마련하여 취침을 하게 하고 식사는 주인집에서 제공할 경우	○ 주인가구와 종업원 가구를 별개로 하여 조사	· 식사를 제공하지만 취침을 달리하는 별도의 주택이 있으므로 별개의 가구로 함	· 한 주택건물에서 종업원에게 별도의 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조사
○ 원양어선의 선원인 경우	○ 원양어선의 국적에 따라 조사 - 외국원양어선이면 조사대상에서 제외 - 한국원양어선이면 가구에서 조사	· 외국어선은 해외에 취업한 것으로 간주	· 원양어선은 별도의 조사구로 설정하지 않았음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경우 조사는?	○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 한국인 가구로 조사 ○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 외국인 남자는 외국인용 조사표로, 한국인 여자는 일반조사표로 조사. 이때 주택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함	· 우선 국적에 따라 분리하여 조사 ·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조사표가 틀리게 됨을 유의	· 이때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의 국적에 따라 조사함 ·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가구에 한국인이 동거인(가정부 등)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별도의 한국인 가구로 하여 조사
○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주된 삶을 이루며 생활하며 거주하는 자는 한국인으로 조사	· 이중국적자는 한국인으로 우선 간주	· 임시 귀국자는 외국인으로 조사
○ 외국인가구에 대한 조사표 작성은?	○ 외국인조사표 표지에 사용된 언어를 표기하고 외국인이 아는 언어 조사표를 기입	· 일본인과 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조사표는 1부	· 조사표에 일본인은 일본어로 미국인은 영어로 기입
○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육군대위(직업군인)가 강원도로 전출하여 혼자 강원도에서 영외거주하는 경우	○ 부산에 남아 있는 가족은 부인을 가구주로 하여 조사하고, 강원도에서 혼자 사는 군인은 국방부에서 조사함	· 직업군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 일반가구로 하여 조사함	· 군부대 막사 또는 영외에서 혼자 자취하는 직업군인은 국방부에서 조사함
	○ 이때 군인이 강원도에서 독채로 사는 경우	· 빈집으로 조사	·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해당됨
○ 영외거주를 하는 직업군인들이 방을 얻어 함께 숙식하는 경우?	○ 가족이 없이 군인들이 함께 방을 얻어 사는 경우로 조사를 하지 않음	· 국방부에서 조사	· 2 가구가 아닌 주인가구만을 조사
○ 아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데 부모를 미국에 초청하여 같이 살다가 부모가 한국에 살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부모는 국적에 따라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조사함	· 조사기준 시점 당시의 국적으로 조사	· 부모가 잠시 머무르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온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음→ 해당 국가에서 조사
○ 1층은 당구장, 2층은 다방, 3층은 한의원, 4층에는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처에 주인가구가 살고, 다방에는 2명의 종업원이 살고 있는 경우	○ 주인가구는 「영업용 건물내 주택」으로, 다방 종업원은 「주택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함	· 4층 건물이나 영업용 면적이 50% 넘으므로 영업용 건물로 구분	· 거처번호를 2개로 부여→2개 가구로 하여 조사(가구명부에는 일반가구로 표기)
○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조사구 특성번호 5)에서 외국인과 동거하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 외국인과 동거하고 있는 한국인은 일반조사표로 조사하되, 가구의 종류는 주인가구로, 외국인은 동거가구로 조사함	· 외국인은 외국인용 조사표로, 한국인은 일반조사표로 조사함	· 한국인 가구에 외국인이 세들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사
○ 특수사회시설내 모자가구 또는 구성원을 여러 명 묶어 가구가 구성되는 경우?	○ 별도 취사, 취침하지 않는 경우 → 특수사회시설 구성원으로 조사 ○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 단위별로 조사	· 생활을 같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개의 가구로 하여 조사
○ 한 울타리내에 별채를 지어 출가 자녀를 분가시키는 경우?	○ 별도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 2가구 ○ 식사를 같이하며 생활하는 경우 → 1가구	·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이때 거처번호는 1개로 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조사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부부가 모두 직업군인인 경우?	○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조사원이 조사가 가능	· 가족과 함께 생활하므로 조사대상임	
	○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 조사원이 조사하여야 함 · 혼자 살고 있는 영외 거주 직업군인은 국방부에서 조사함	· 부부가 모두 직업군인인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함	· 특별조사구 군인조사표에 부부 모두가 '가족과 함께 생활'로 표기하므로 부부 모두가 직업군인일 때는 누락될 소지가 큼
○ 시험관 아기의 경우? ·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해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 시험관에서 키우는 경우	○ 시험관 아이는 아직 통계조사 목적상 인구로 보지 않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님	· 산모의 배속에 있는 아이는 조사대상이 아님	· 총출생아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음
○ 외국 군인이 한국여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경우?	○ 한국 여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면 → 조사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은 빈집조사	· 외국 군인 및 그 가족은 조사대상이 아님	· 주택 수를 파악해야 하므로 빈집으로 처리하여 조사
	○ 한국 여자가 한국국적으로 되어있으면 → 한국인 가구로 하여 한국여자만 조사	· 국적이 한국이므로 한국인 가구로 하여 조사	· 외국 군인은 조사대상이 아님

□ **준비조사** :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관광호텔 조사구도 가구명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 가구명부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조사과정에서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	· 조사구 요도에서는 거처 건물만 나타남
○ 조사구요도와 가구명부를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기입하는 데 중간에 가구원을 만나지 못해 가구수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의 기입요령은?	○ 일단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줌 → 후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면 가구번호는 결번처리하고 거처번호는 그대로 두고 빈집으로 조사함 → 만약 2가구가 살면 조사구 요도에는 가구수를 2로 고치고, 추가되는 1가구는 맨 뒤의 가구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조사	· 사람이 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경우 비록 가구원을 못 만났더라도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부여하여 누락을 방지하여야 함 · 따라서 가구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누락을 발견하여 기재하는 요령으로 작성함	· 조사구 요도에는 누락이 발견되면 기존의 작성된 가구번호를 재 작성함 · 가구명부는 이미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작성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 없이 맨 뒤에 추가로 기입함
○ 오피스텔의 경우 거처번호 부여는?	○ 오피스텔은 「주택이외의 거처」에 해당되나, 사람이 사는 각 호별에 대해서는 각각 거처번호를 부여한 후 조사	· 빈 호실은 조사하지 않음 ·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	· 오피스텔은 조사구 요도에 전개도면이 그려져 있음. 다만, 없는 경우에는 그려서 조사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가구명부상의 주소란에 행정동 명을 기입하는 지?	○ 가구명부 상단의 기입란에는 행정동명을 기입하지만, 각 가구별로 기입하는 주소란에는 '법정동' 또는 '법정리명'과 '통·반·번지'까지 기입함	· 총조사가 완료된 후 일반조사표의 질의 조회시 필요한 사항임	·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 농업노동자(남의 논 또는 밭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 경우에 농가에 해당되는 지?	○ 농가에 해당되므로 '농·어가 구분' 란에는 농가에 표시함 ※ 남의 논이든 자기 논이든 관계없이 농가	· 가구에 한 사람이라도 농업에 종사하면 농가로 처리	· 농업총조사시 기초자료 활용 · 조사표 표지와 가구명부상의 농·어가 구분란이 일치해야 함
○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집단시설내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조사요령은?	○ 공부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가 가능한 부분(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혼인상태 등)을 조사하고 확인 불가능한 사항은 사유를 기재하고 미상으로 처리함	· 정신질환자 등과 같은 특수한 사람은 사실상 조사가 어려우므로 공부상 명부를 이용하는 것임	· 가급적 조사표의 내용은 최대한 조사토록 하여야 함
○ 외국인 등록명부의 활용방법	○ 시군구에 보관중인 외국인 등록명부를 이용하여 읍면동별로 활용	· 외국인은 불법체류를 불문하고 조사	· 공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조사에서 제외
○ 유흥업소 등 러시아인의 경우 외국인 조사표상의 언어를 모두 모를 경우?	○ 업주 등 고용주 및 주변 한국인을 통하여 조사하되, 외국인 조사표에는 한국어로 기입	· 잘 아는 한국인을 통해 조사	· 달리 조사에 특별한 방법이 없음
○ 외국 군인들이 함께 영외에서 독채를 얻어 생활하는 경우?	○ 독채에 살고 있으므로 빈집으로 조사 → 거처번호 부여, 빈집조사표 작성	· 외국 군인들이므로 조사대상이 아님	· 주택 수는 파악해야 하므로 빈집으로 조사

□ 조사표 표지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조사표 표지에서 시군구 기입란에 일반시의 경우 기입요령은?	○ 해당 시 명칭을 적고 바로 그 밑에 ( ) 를 한 다음 관할 구 명칭을 기재 · 일반구가 있는 시는 해당 구까지 표시함	· 경기도 : 수원시(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부천시(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고양시(덕양구, 일산구) · 충북 : 청주시(상당구, 흥덕구) · 전북 : 전주시(덕진구, 완산구) · 경북 : 포항시(남구, 북구) · 경남 : 마산시(합포구, 회원구)	
○ 조사표 표지에서 읍면동 기입란의 기입요령은?	○ 행정동명을 기입	· 읍면동까지는 행정구역으로 분류	· 자료는 행정구역으로 집계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조사표 표지의 통리 부호 기입요령은?	○ 통리 부호는 해당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통리의 부호를 기입 · 행정통 → 행정통번호 · 행정리 → 사용(건재순)하고 있는 번호를 기입	· 통리 부호는 해당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번호를 기입	· 추후 해당 조사표의 확인 및 보완시 활용
○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조사표 표지의 가구원수 작성요령은?	○ 가구원수가 7명인 경우 → 조사표 표지에는 2부 모두 가구원수를 7명으로 기입	· 총 2부중 1부, 총 2부중 2부, 가구원수는 7명으로 기입	· 조사표의 분실여부 및 확인하고 떨어져 있는 조사표를 찾아주기 위함
	○ 기숙사에 100명이 있는 경우 → 조사표는 20부를 사용하고 매 조사표마다 가구원수를 100명으로 기입	· 총 20부중 1부, 총 20부중 2부,…, 총 20부중 20부, 가구원수는 100명으로 기입	· 조사표의 기입은 연이어 작성 · 일부 기숙 호별로 작성시 20부가 초과될 수도 있음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성명 및 본관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성씨를 모르거나 부호집에 없는 경우?	○ 한자 성씨가 부호집에 없는 경우 → '999'으로 기재	· 성씨를 조사하였으나 부호집에 없다면 '999'로	· 아예 성씨를 몰라 기입하지 않았다면 '000'으로
○ 본관을 모르거나 부호집에 없는 경우?	○ 본관을 조사하였으나 부호집에 없다면 '999'로, 본관이 없거나 조사되지 않는다면 '000'으로 기입	· 성씨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수록하였으므로 최근에 새로 나타난 성씨도 있음	· 모르는 성씨는 반드시 지도공무원에게 보고한 후 작성

◎ 가구주와의 관계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친자녀가 아닌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시하는 지?	○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입양한 자녀, 계부, 계모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로 표시함	· 다른 곳에 부모가 있고 수양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 관계가 아니므로 '기타 동거인'으로 기재	· 총출생아수 항목에서는 친자녀가 아닌 경우 포함시키지 않음
○ 가구주가 없이 본처와 둘째 부인이 함께 사는 경우?	○ 본처 →「① 가구주」로 ○ 둘째 부인 →「⑬ 기타 동거인」으로 기입	· 본처가 '가구주'가 되므로 둘째 부인은 혈연이 아님	· 남편(가구주)이 있는 경우에는 본처와 둘째 부인 모두 '가구주의 배우자'로 기입

◎ 성 별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성별(이름)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지?	○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이름(성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동일인을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	· 추후 조사 내용을 보충질문할 경우에 식별 기준이 됨
○ 성전환한 사람(이른바 게이)의 경우	○ 주민등록상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응답하는 성별을 기재	· 성전환한 사람은 본인이 성별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	· 이런 사람을 조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 작성

◎ 교육정도 및 전공분야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맹아학교는 정규학교에 포함되는 지?	○ 맹아학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이므로 정규학교로 조사토록 함	·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교인지를 파악	·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를 파악함
○ 전공학과의 계열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가구원의 전공학과 계열을 구분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추후 전화 또는 재방문하여 반드시 계열을 기재토록 함	· 계열을 보통 구분할 수 있으므로, 혹 응답자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밀보호용봉투로 이용함	· 학력은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한 프라이버시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사시 유의하여야 함
○ 4년제 대학을 먼저 졸업하였으나, 취업 및 진로를 위해 전문대학을 다시 들어가 졸업하였을 때?	○ 교육정도 → 「⑥ 대학교」와 「① 졸업」 ○ 전공분야 → 최종으로 졸업한 전문대학의 전공분야 계열을 기입	· 교육정도는 최상의 학력수준을 기재	· 교육정도는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임 · 전공분야는 국민의 지식기반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임 · 교육정도 항목과 전공분야 항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며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다니고 있을 때?	○ 교육정도 → 「⑥ 대학교」와 「② 재학」 ○ 전공분야 → 최종으로 졸업한 전문대학의 전공분야 계열을 기입	· 전공분야는 졸업 또는 수료한 학교의 경우에 기입	
○ 방송통신대학의 학년제에 따른 구분?	○ 2년제 졸업(81년~현재)은 → 전문대학으로 ○ 5년제 졸업(81~91년)은 → 대학교로 ○ 4년제 졸업(92년~현재)은 → 대학교로	· 방송통신대의 학년편제가 바뀜에 따라 구분	· 4년제로 학제가 변경된 연도는 1992년부터임

◎ 아동보육상태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부진아이로 연령은 16세이나 특수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조사해야 하는 지?	○ 아동보육상태 항목을 조사해야 함 ※ 특수학교가 초등학교 수준일 때	· 연령으로는 초등학생이 아니나 초등학령 수준임	· 주간에 아동의 보육과 여성의 노동을 파악하기 위함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에와 놀이터나 아이들과 어울리며 오후를 보낼 때	○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경우 → 「① 자녀의 부모」	· 집에 어른이 계시므로 부모에 표기	· 학원에 다닐 경우 '학원'도 함께 표기
	○ 집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경우 → 「⑨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 혼자 집에서 보내므로	

◎ 출생지 및 1년전·5년전거주지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태어난 곳이 경상남도 울산시로 조사된 경우에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 지?	○ 울산광역시의 경우 과거에는 경상남도 관할구역이었지만 1997년에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로 기입하고 구·군명을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함	· 현행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입해야 함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입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살다가 1998년에 수원시 권선구로 이사하였을 때?	○ 1년 전 거주지 → 「②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기입 ○ 5년 전 거주지 →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 팔달구, 권선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임 · 수원시 내에서 이동은 '같은 시내 다른 집'임	· 일반구가 있는 시 → 경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마산시
○ 부인과 아들(6살), 딸(3살)이 있는 「홍길동」씨는 부산시 중구 광복동에서 계속 살아오다 95년 12월에 같은 동네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다. 이 가구원들의 5년 전 거주지는 어디인가?(아들의 생년월일은 95년 11월 2일로 조사됨)	○ 홍길동 →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부 인 →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장 남 → ① 5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장 녀 → ① 5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 조사기준 시점이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이므로, 5년 전은 95년 11월1일 0시임	· 1년 전 거주지 조사항목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함
○ 계속 살아온 집을 헐고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경우 5년 전 거주지는 어디인가?	○ 같은 울타리 안에 다른 곳에 있을 때→「②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조사함	· 같은 장소에서 신축한 것이므로 이동은 없음	· 증·개축을 반이상 했을 때→지하에서 산 경우에도 해당
	○ 공사기간 중에 다른 곳에 있었을 때 → 다른 곳에 산 거주지를 기입	·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다가 이동한 것으로 간주	· 집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이동하였기 때문임
○ 고아원 시설에 살고 있는 고아원 아이가 출생지를 모르는 경우?	○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기입	· 현재 거주하는 고아원 시설로 간주	· 고아원 또는 고아원 선생님이 모르므로 현지장소를 기입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입양한 자녀의 출생지를 모르는 경우?	○ 우선 순위 기입 1. 고아원의 시설 소재지를 기입 2. 고아원 소재지도 모르는 경우 →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기입	· 출생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순위에 따라 기입	· 출생지를 모르므로 역학으로 조사하여 확인이 가능한 곳까지를 기입
	○ 이른바 업동 아이인 경우 · 집 앞에서 얻은 아이 →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기입 · 외지 또는 다른 장소에서 얻은 아이 → 발견한 장소를 기입	· 업동 아이인 경우 출생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발견한 장소를 기입	· 출생지를 모르므로 역학으로 조사하여 확인이 가능한 곳까지를 기입

◎ 컴퓨터 · 인터넷 활용상태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부모가 어린이용 게임기를 구입하여 아이에게 게임방법을 가르쳐 주고 아이가 게임을 하였다. 이럴 경우 부모와 아이는 컴퓨터(PC)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 게임하기 까지 부모가 열어 주었더라도 그 게임을 하기 위해 아이가 키보드를 만질 줄 안다면, 부모와 아이는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컴퓨터 사용여부는 숙련도와 용도와는 관계없으며, 키보드를 사용할 줄 아느냐는 것이 중요함	· 컴퓨터로 그림 그리기를 한다면, 사용하는 것으로 봄
○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숙제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야 하나, 찾을 줄 몰라 부모가 열어준 후 아이가 찾았다. 이럴 경우 아이와 부모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 부모가 비록 인터넷을 열어주어 아이가 찾도록 한 경우, 부모와 아이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인터넷 사용여부는 숙련도와 용도와는 관계없으며, 사용할 줄 아느냐는 것이 중요함	· 인터넷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는 정도만이라도 클릭할 수 있다면 사용한 것으로 봄
○ 집에는 인터넷이 없지만 학교에서 주1일 인터넷 학습이 있을 경우?	○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장소와는 관계없음 → PC방을 이용하는 것도 해당됨	· 학생이 집에 컴퓨터가 없어 PC방 이용도 사용하는 것으로 봄
○ 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집에 컴퓨터 및 인터넷이 없으나, 직장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 회사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 어느 장소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이 주된 관건임	·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 통근·통학 여부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공익근무요원소집 근무 중인 자는 「통근·통학여부」를 조사하는 가?	○ 「① 통근함」으로 조사	·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하기 때문임	· 유동인구로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침
○ 1주일에 2~3일 정도 시군구청 또는 노인대학 등에서 PC교육 등을 받기 위해 통근학을 하는 경우?	○ 일주일에 주로(3일 이상) 교육받는 경우 → 「② 통학함」으로 조사 ○ 일주일에 2일 이하 교육받는 경우 → 「③ 안함」으로 조사	· 일주일에 3일 이상 교육받을 경우에 통학으로 · 강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일자가 중요	· 평상시 통근학으로 유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함
○ 가정주부가 저녁에 시간을 내어 컴퓨터 학원을 다닐 경우?	○ 일주일에 주로(3일 이상) 학원에 가는 경우 → 「② 통학함」으로 조사 ○ 일주일에 2일 이하 학원에 가는 경우 → 「③ 안함」으로 조사	· 일주일에 3일 이상 교육받을 경우에 통학으로 · 강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일자가 중요	· 평상시 통근학으로 유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함

◎ 통근·통학 장소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특정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배우, 음악가, 연예인 등인 경우 「통근·통학장소」는 어디로 조사하는 가?	○ 전속된 경우 → 전속된 직장(프로덕션)의 주소를 기재 ○ 전속이 아닌 경우 → 최근에 가장 많이 출연한 곳을 통근장소로 기재	· 전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통근장소가 달라짐	· 전속되지 아니한 악사로 여러 군데의 밤무대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매일 저녁 처음 출연하는 근무지를 통근장소로 함
○ 본사, 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원이나 통신원 등으로 일하는 사람의 통근장소는 어디로 조사하는 지?	○ 주재하여 일하고 있는 장소를 통근장소로 함	· 주로 어디로 통근하는 지가 중요함	· 주된 통근장소가 교통량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침
○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그날그날 일거리를 얻어 일을 다니고 있는 경우의 통근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는 가?	○ 최근 1주일간 주로 일하러 다닌 지역을 통근장소로 기재함	· 조사기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통근장소를 조사함	· 매일 통근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1주일을 기준으로 함
○ 우유 배달 또는 신문 배달을 하는 경우?	○ 보급소 장소를 기입	· 보급소에서 물품을 받아서 가정에 배달	· 통근소요시간은 집에서 보급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재

◎ 이용교통수단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서 좌석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 이용교통수단은?	○ 「② 시내·좌석·마을버스」로 기입함	· 도보는 버스를 타기 위한 보조수단임	· 주된 교통수단을 파악하기 위함
○ 서울과 경기도를 운행하는 좌석버스를 이용할 때 이용교통수단은?	○ 「② 시내·좌석·마을버스」로 기입함	· 연락구간으로 연장하여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임	· 시외버스는 순수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이용할 때 적용함
○ 학교에는 도보로 등교하고, 학교수업을 마친 후에는 학원을 시내버스로 다닐 경우	○ 등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재함 → 「① 도보로만」으로 기입	· 통학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주된 활동임	· 학원에 다니는 것은 보조활동으로 간주
○ 출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일정하지 않고 일주일간을 기준으로 4~5일은 승용차를 이용하고, 1~2일은 좌석버스를 이용할 경우	○ 주 교통수단이 승용차이므로 「⑦ 승용차」로 기입함	·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보조적인 교통수단임	·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기입함
○ 섬에 살고 있는 학생이 매일 육지에 있는 학교로 통학할 때?	○ 배를 이용하므로 반드시 「⑩ 기타」에는 기입되어야 함	· 배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기입항목이 없으므로	· 배를 이용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항목설정 안함
○ 집에서 학원을 들려서 공부한 후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 도보와 택시로 이용할 때 → 「⑧ 택시」로 기입	· 택시가 주 교통수단임	· 도보는 단지 걸어서 이용할 때
	○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 → 「②시내·좌석·마을버스」와 「⑧택시」 2군데를 기입	· 2개 이상이면 주된 교통수단 2개만 기입	· 학원버스를 이용할 때는 「③기타버스」에 기입

◎ 통근·통학 소요시간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2교대 또는 3교대를 번갈아 가면서 통근할 경우의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 11월 1일에 일하러 나간 시간을 기재	· 조사기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통근시간을 조사함	· 통근시간이 번갈아 가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의 시점으로 조사함
○ 회사 사장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개인자가용운전사일 때?	○ 본인 집에서 출발하여 회사 사장의 집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기재	· 도착 목적지가 회사 사장 집임	· 회사 사장은 승용차를 타고 회사까지 도착한 시간을 기재
○ 집에서 학원을 들려서 공부한 후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 집에서 출발하여 학원까지 소요시간과 학원에서 직장까지 소요시간을 합쳐 기입	· 학원은 중간지점 역할로 간주하여 합산시킴	· 학원에서 수업한 시간은 제외하고 교통시간만을 계상
○ 어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 본인이 승선하는 배가 정박한 곳까지의 소요시간을 기입	· 배를 승선하기 위하여 정박한 장소까지로 함	· 어업종사자의 경우에 주로 해당됨

◎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의 지위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사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1달에 70만원을 받고, 한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보수는 없을 때 각 사람의 경제활동상태는?	○ 보수(70만원)를 받는 사람 → 「① 있음」으로 기입 ○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사람 → 「③ 없음(가사, 학업 등)」으로 기입	· 반드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수입이 있을 때 일을 한 것으로 간주	·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쌀 등)도 수입 있는 것으로 봄
	○ 보수를 받는 사람은 「① 임금·봉급근로자」로 기입	· 보수를 사찰에서 받으므로 근로자임	·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불법 노점상인의 경우 경제활동 상태는?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기입	· 생계를 꾸려감	· 수입이 있어 생계를 유지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기입	· 본인이 직접 판매함	· 노름이나 매춘과는 성격이 다름
○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가는 이씨는 부인과 교대로 가게를 보고 있을 때, 이들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는?	○ 경제활동상태는 부부 모두 「① 있음」으로 기입	· 가게를 운영하여 부부가 생계를 꾸려감	· 수입이 있어 생계를 유지
	○ 가구주는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부인은 「④ 무급가족종사자」로 기입	· 부인은 보수를 받지 않고 가게일을 도와줌	· 보통 가족이 슈퍼마켓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
○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부인을 경리사원으로 고용하고 보수로 매월 부인에게 주고 있을 때?	○ 경제활동상태는 부부 모두 「① 있음」으로 기입	· 회사를 운영하여 부부가 생계를 꾸려감	· 부인을 경리사원으로 고용
	○ 가구주는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로, 부인은 「① 임금·봉급근로자」로 기입	· 부인에게 보수를 주기 때문에 부인은 근로자임	· 가족이라도 보수를 받느냐, 받지않느냐에 따라 달라짐
○ 회사에 대표이사로 있는 정씨는 매달 보수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 정씨는 「① 있음」으로 기입	· 회사에 다님	
	○ 정씨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므로 「① 임금·봉급근로자」로 기입	·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음	· 회사 대표라도 보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짐
○ 최씨는 종업원 5명을 두고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봉급을 주고 모든 공장을 총괄할 때	○ 최씨와 종업원 모두는 「① 있음」으로 기입	· 공장을 운영하고 종업원은 회사에 다님	· 일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
	○ 최씨는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로, 종업원은 「① 임금·봉급근로자」로 기입	· 최씨는 사장으로 모든 경영을 관리	
○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부에게 휴학한 아들이 있다. 아들은 가게일(일주일에 30시간)을 도와주고 있을 때	○ 부모와 아들 모두 「① 있음」으로 기입	· 가족이 모두 수입 있는 일에 종사	· 일의 대가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
	○ 가구주는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부인과 아들은 「④ 무급가족종사자」로 기입	· 아들은 1시간 이상이 되므로 일한 것으로 간주	·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준은 일주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여야 함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는 밭에 고추를 심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낼 때?	○ 할머니는 「③ 없음(가사, 학업 등)」으로 기입	· 일의 대가로 수입이 없기 때문임	· 비록 일은 하였지만 자식에게 도와주기 위한 것임
○ 퇴직후 다른 일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없음'으로 기입	·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의 연금으로 만 생활하므로	·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
○ 국내외 여행 중에 차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간당으로 일을 하였을 때?	○ 경제활동상태는 '있음'으로, 종사상 지위는 '임금 · 봉급근로자'로 기입	· 여행 중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였음	· 여행기간이 잠시이며, 장기간(3개월)일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일 없이 출퇴근만 하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없음'으로 기입	· 퇴근시간 이후도 일을 하지 않음	·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음으로 해서는 안됨
○ 공익근무요원이 밤에 레스토랑 또는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있음'으로, 종사상 지위는 '임금 · 봉급근로자'로 기입	· 퇴근시간 이후는 본인의 사용가능 시간임	· 현역병 등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군인은 활용시간이 없음
○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밤에 시간당으로, 또는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있음'으로, 종사상 지위는 '임금 · 봉급근로자'로 기입	· 학생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였음	· 가정주부도 신문배달, 우유배달할 경우 경제활동 있음
○ 10월 22일~28일 기간동안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채용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있음'으로, 종사상 지위는 '임금 · 봉급근로자'로 기입 → 조사원 교육이수로 수입이 있음	·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았으므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	· 중도에 포기하였어도 수당을 받은 사람은 해당됨
○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는 밭에 고추를 심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일부 보내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때?	○ 할머니의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기입	· 고추를 시장에 내다 팔았으므로 수입이 있음	· 이웃집에 현물로 바꾸었을 때도 일을 한 것으로 적용
	○ 할머니의 경우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기입	· 시장 노점에서 고추를 놓고 팔았기 때문임	
○ 다른 일없이 오직 통장 또는 이장이 매달 동사무소나 읍 · 면사무소에서 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사무소의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	○ 통장과 이장의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기입	· 나라에 일을 해준 대가로 수당을 받았으므로	· 보수 없이 일을 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통장과 이장의 종사상의 지위는 「① 임금 · 봉급근로자」로 기입	·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았으므로	
○ 정씨와 이씨는 서로 친구사이로 공동 출자하여 오퍼상을 운영하여 동업을 하고 있으나, 종업원을 두지 않고 둘이서 할 때?	○ 정씨와 이씨의 경제활동상태는 모두 「① 있음」으로 기입	·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 수입이 흑자이든 적자이든 상관없이 일을 한 대가가 따름
	○ 정씨와 이씨의 종사상 지위는 모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기입	· 고용원이 없이 동업을 하므로	· 동업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김씨는 얼마 전 퇴직을 하고 소일하다가 퇴직금으로 증권에 나가 주식투자를 하여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갈 때?	○ 김씨의 경제활동상태는 「③ 없음(가사, 학업 등)」으로 기입	· 주식의 투자는 일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매월 연금을 받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봄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정씨와 이씨는 서로 친구사이로 공동 출자하여 오퍼상을 운영하여 동업을 하고 있으나, 사무실에 여 종업원을 두고 있을 때?	○ 정씨와 이씨의 경제활동상태는 모두 「① 있음」으로 기입	·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 수입이 흑자이든 적자이든 상관없이 일을 한 대가가 따름
	○ 정씨와 이씨는 모두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로, 여 종업원은 「① 임금·봉급근로자」로 기입	· 고용원을 두고 동업을 하므로	· 동업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외판원인 경우에 종사상의 지위는?	○ 회사에서 봉급을 일부라도 받는 경우 → 「① 임금·봉급근로자」로 기입 ○ 봉급을 전혀 받지 않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 고용원 있으면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로 기입 → 고용원이 없으면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 기입	· 회사로부터 일부라도 봉급을 받으면 임금근로자임 · 순수하게 판매실적으로 수당을 받는 다면 본인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 됨	· 고용원을 두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종사상의 지위는?	○ 「① 임금·봉급근로자」로 기입	· 매일 또는 한달 동안 수당을 받으므로	· 산업과 직업항목은 최근의 일을 기준으로 작성

◎ 산업·직업 : 조사지침서 및 산업·직업기입요령 참조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취업시간이 우선하여 정함 → 2개 이상의 경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직업을 기입 ○ 취업시간이 동일한 경우 → 수입이 많은 직업을 기입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2개 이상의 직업이 있을 때는 조치결과의 내용에 따라 기입	· 「산업·직업분류 기입요령」 책자 8~9쪽을 참조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 다른 일 없는 조사원인 경우 산업은 → 고용된 '시군구청'으로 기입 직업은 → '통계조사 사무원'으로 기입	· 고용된 기관을 기재	· 주간에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은 조사원 채용이 불가
	○ 다른 일이 있는 조사원인 경우	· 산업과 직업은 평상시의 하고 있는 일을 기입	· 조사원은 일시적이 경제활동 상태임

◎ 경제활동·산업·직업 사례 추가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암시장에서 외화(달러)를 환전해 주는 자?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산업 →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 - 직업 → 대금업자(4154)	· 달러 등을 환전해 주며 주업무를 하는 경우로 일을 하는 것으로 봄	· 반드시 주된 일의 형태를 보아 판단해야 함
○ 경마장, 경륜장 또는 마권발매소 등에서 개인이 사람을 상대로 수표를 환전해 주며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산업 →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 - 직업 → 대금업자(4154)	·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수표를 환전해주어 주된 수입을 하는 경우로 일을 하는 것으로 봄	· 반드시 주된 일의 형태를 보아 판단해야 함
○ 가정집에 과외공부를 지도하여 시키는 학생의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산업 → 그외 기타 교육기관(8099) - 직업 → 개인지도(2522)	· 과외지도도 수입 있는 일이므로 일한 것으로 봄	·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제활동상태를 '없음'으로 해서는 안됨
○ 다방에서 배달하는 종업원의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임금·봉급근로자 - 산업 → 다방(다과점 5524) - 직업 → 음식서비스원(4221)	· 직업은 다방 배달 종업원으로 기입	· 다방에서 차를 만드는 일만 하는 경우 → 차류조리사
○ 유흥가에서 일하는 윤락여성 또는 단란주점 여성의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임금·봉급근로자 - 산업 → 주점업(5523) - 직업 → 음식서비스원(4221)	· 매춘이 아닌 술을 서비스하는 여종업원으로 분류	· 유흥업소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경우 → 음식점업일반관리자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하숙 또는 민박을 치는 주인의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종업원이 없으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종업원이 있으면 → 고용원을 둔 사업주	· 하숙 또는 민박을 운영하며 수입있는 일을 함	· 가족끼리 운영하면 가족원을 무급가족종사자로 파악
	○ 식사까지 제공하는 경우 · 산업 → 민박시설 운영업(5511) · 직업 → 기타조리사(4219)	·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일로 간주	· 기타조리사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 식사는 민박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 · 산업 → 민박시설 운영업(5511) · 직업 → 시중드는 자(4130)	· 주인의 주된 일은 민박자에게 시중드는 것으로 간주	· 방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투숙자 개인의 시중이 주업무임
○ 임대를 주어 월세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자?	○ 건물을 관리하며 운영하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종업원이 없으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종업원이 있으면 → 고용원을 둔 사업주 - 산업 → 부동산임대업(7011) - 직업 → 건물관리종사자(9121)	· 건물임대, 주택임대 등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임대를 주어 수입으로 생활함 ·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관리하는 자도 해당됨	· 그러나 주인이 회사나 다른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경우는 다른 일을 주된 것으로 봄
	○ 단지 집에서 세만 놓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없음'으로 기입	· 세만 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일을 형태를 반드시 파악
○ 사채와 관련한 자	○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하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종업원이 없으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종업원이 있으면 → 고용원을 둔 사업주 - 산업 →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 - 직업 → 대금업자(4154)	· 사채를 주 업무로 하여 수입 있는 일을 함	· 일수놀이를 하는 자도 여기에 해당됨 · 일수놀이 자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이자를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 수입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봄
	○ 가정주부가 집에서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없음'으로 기입	·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만 받으므로 일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사채의 경우 반드시 일의 형태를 보아 판단

◎ 현직업 근무연수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김씨는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옮겨 3년간 해오고 있을 때?	○ 현직업 근무연수는 13년으로 「⑥ 10년~15년 미만」에 기입	· 회사만 옮기며 자동차 조립공장 일을 계속 한 것임	· 같은 일을 계속 얼마나 했느냐가 주안점임
○ 이씨는 자동차 판매회사에 영업사원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전자대리점을 운영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1년 전에 다시 자동차 판매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오고 있을 때	○ 현직업 근무연수는 3년으로 「④ 3년~5년 미만」에 기입	· 잠시 도중에 직업을 바꾼 것으로 현직업은 과거와 동일하므로 합산시켜야 함	· 만약 전자대리점을 계속 운영하였다면, 현직업 근무연수는 전자대리점으로 계산하여야 함
○ 정씨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선생으로 10년간 근무해오다가 그만두고 3년 전부터 대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	○ 현직업 근무연수는 3년으로 「④ 3년~5년 미만」에 기입	· 전에는 고등학교 교사 직업이었으나, 현재는 입시학원 강사 직업임	· 가르치는 것은 같으나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은 직업이 다름
○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그날그날 일거리를 얻어 일을 다니고 있을 때?	○ 현직업 근무연수는 매일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매일 일거리가 달라질 경우 현직업은 그 자체임	· 현직업은 지금의 일이 과거와 이어지는 것인지를 판단
○ 공무원인 최씨는 처음 발령 받은 부처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타 부처로 자리를 옮겨 현재 2년간 근무해오고 있을 때?	○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 현직업 근무연수는 「⑦ 15년~20년 미만」에 기입	· 부처를 옮기더라도 같은 업무를 해옴	· 부서가 같으면 동일하게 적용
	○ 부서가 바뀌어 업무가 틀린 경우 → 최근에 업무를 맡은 연수를 기입	· 업무가 틀리면 최근의 업무 연수를 기입	· 직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임
○ 공무원을 5년하다가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으로 옮겨 2년간 근무해오고 있을 때?	○ 현직업 근무연수는 2년으로 「③ 1년~3년 미만」에 기입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는 별개임	· 공무원 재직기간은 호봉으로 인정받으나 근무연수와는 다름
○ 박씨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15년간 근무해오고 현재는 회사의 중역으로 있을 때?	○ 현직업 근무연수는 부서의 중역이 된 기간을 기입	·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왔으나 맡은 부서 기간기입	· 직업 숙련도의 자료로 이용
○ 전씨는 시장에서 포목장사를 해오다 그만두고 2년 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을 때?	○ 현직업 근무연수는 2년으로 「③ 1년~3년 미만」에 기입	·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름	· 현직업은 과거와 이어져있을 때만 합산함

◎ 혼인상태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② 배우자 있음」으로 기입 ○ 재결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④ 이혼」으로 기입	· 사실상의 혼인상태로 결정 → 별도의 기준은 없음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할 경우에는 '배우자 있음'에 해당함
○ 남북분단으로 북에다 부인 또는 남편을 두고 남한으로 넘어와 홀로 독신으로 살고 있을 때?	○ 북에서 살아 계신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③ 사별」로 기입	· 남북이산 이라는 특이한 경우로 사실상의 '사별'상태로 봄	· 남한에서 재혼하여 부인 또는 남편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 있음」으로 기입
○ 미혼모의 경우?	○ 「① 미혼」으로 기입	· 미혼으로 간주	

◎ 총출생아수(기혼 여성만)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부인 △씨는 결혼하여 아들 2명과 딸 1명을 출산하였다. 현재 아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아들 1명과 딸 1명은 같이 살고 있을 때?	○ 총출생아수는 딸 1명, 아들 2명, 계 3명 으로 기입	· 본인에 의해 출산한 자녀만 기입	· 출산하였으나 사산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출산한 남자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살다가 한달 후에 사망했을 때?	○ 총출생아수는 남자아이를 아들에 포함시켜 기입	· 출산할 당시 아이가 생존하였느냐에 결정	· 질문시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
○ 남북분단으로 북에다 아들 2명을 두고 남한으로 내려와 재혼하여 현재 딸 2명을 두고 살고 있을 때?	○ 총출생아수는 딸 2명, 아들 2명, 계 4명으로 기입	· 본인이 출산한 자녀이므로 포함시킴	· 출산할 당시 아이가 생존하였기 때문임
○ 부인 △씨는 결혼하였으나 아이가 없어 딸 1명을 입양하여 살고 있을 때?	○ 총출생아수는 없으므로 사선으로 처리	· 본인이 출산한 자녀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음	· 입양 자녀는 제외시킴
○ 미혼모의 경우?	○ 출생아수는 조사함	· 출산한 여자는 모두 조사	· 조사표상에 (기혼여성만)이라고 기재한 것은 응답거부를 해소차원

◎ 자녀거주장소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63세인 어머니는 아들 2명과 딸 1명을 두고 있으나, 아들 2명은 결혼하여 외지에 살고 있고, 딸 1명과 같이 살고 있을 때?	○ 자녀거주장소는 「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로 기입	· 딸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같은 집임	· 사위와 같이 살고 있어도 같은 집으로 간주
○ 할머니는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나, 모두 결혼하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있을 때?	○ 자녀거주장소는 「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로 기입	· 할머니 본인의 거처가 없으므로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봄	· 할머니의 거처가 별도로 있는 경우 11월 1일 현재 계시는 자녀의 주소를 기입
○ 할아버지는 결혼한 아들 집에서 살고 계시고, 할머니는 혼자 시골에서 살고 계실 때?	○ 할아버지는 「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로 기입 ○ 할머니는 가장 가까운 자녀의 장소를 기입	· 조사기준 시점으로 상주하는 곳이 생활장소임	· 노인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혼인상태가 별거가 아니면 이혼은 아님
○ 부부가 아이가 없어 입양한 딸이 결혼하여 외지에 살고 있을 때?	○ 입양한 딸이 결혼하여 살고 있는 장소를 자녀거주장소로 기입	· 입양한 딸도 자녀로 봄	· 총출생아수는 본인이 직접 출산한 자녀를 조사
○ 자녀가 사망하고 며느리(사위)만 있는 경우의 자녀거주장소는?	○ 며느리(사위)도 자녀로 간주하여 조사	· 장인(장모)도 부모로 간주	· 부계친족으로 형성된 가족으로 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접근

◎ 생계수단 및 주부양자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자녀들은 다 결혼하여 외지에 살고 있고 부부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 생활비는 부부 모두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으로 기입	· 남편의 연금으로 부부가 생활하므로	· 타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부부 스스로가 해결
	○ 주 부양자는 사선으로 처리		
○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계신 노인부부는 농사를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녀들이 매달 10만원씩 생활비로 보낼 때?	○ 생활비는 부부 모두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단체로부터 일부 지원받아 생활」에 기입	· 자녀에게 일부 생활비를 받으므로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들이 생활비를 줄 경우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간주
	○ 주부양자는 응답자가 대답하는 자녀로 기입하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음'으로 기입	· 자녀들이 똑같이 매달 보내므로 응답자에 맡김	· 금액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보낸 자녀로 기입
○ 할머니는 8살 손녀와 같이 살고 있으나, 현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 하여 매달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을 때?	○ 생활비는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단체로부터 전부 지원받아 생활」에 기입	·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함	·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음
	○ 주부양자는 「⑤ 정부, 사회단체」로 기입하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음'으로 기입	·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느냐로 결정	· 개인 후원이면 → '기타'로 기입 · 단체이면 → '사회단체'로 기입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노인부부가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나, 경사 또는 큰일이 있거나 가끔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 생활비는 부부 모두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으로 기입	· 주 생활비를 부부가 벌어서 꾸려가기 때문임	· 자녀들에게 매달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
	○ 주 부양자는 사선으로 처리	· 돈의 액수와는 관계없음	· 부모 스스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간주

◎ 거동불편여부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시지만 혼자 살고 계셔서 끼니정도는 손수 하실 때?	○ 집안 활동은 「① 혼자 할 수 있음」으로 기입	· 활동자체는 하시기 때문임	· 너무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혼자 할 수 없음'으로
	○ 바깥 출입은 힘드실 것으로 판단되면 「② 혼자 할 수 없음」으로 기입	·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	·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답변을 받아 처리

□ 가구에 관한 사항

◎ 가구 구분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가구주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장모, 처남으로 형성을 이루는 가구는?	○ 가구 구분은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기입	· 모두 친인척으로 구성	· 지도지침서 71쪽 참조
○ 주인이 남는 방을 이용하여 하숙생 3명을 이루고 있는 가구는?	○ 가구 구분은 「②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로 기입	· 하숙생인 '기타 동거인'과 함께 생활함	· 하숙생이 5명이하면 주인가구에 포함하나, 6명이상이면 별개가구
○ 절, 사찰, 기도원 등에 살고 있을 때?	○ 가구 구분은 「⑩ 기타 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로 기입	· 공동 집단을 이룰 수 있는 곳	· 집단가구로 1개 가구로 봄
○ 주인이 방 5개인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방 2개는 주인이 쓰고 2개방은 각각 자취생이, 1개방은 2명의 하숙생을 두었을 때?	○ 주인가구는 「②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로 기입	· 2명의 하숙생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주인가구는 주택사항도 조사
	○ 자취생은 각각 「③ 혼자서 살림하는 1인 가구」로 기입	· 자취생은 생계를 달리함	· 가구에 사항만 조사하고 주택사항은 조사하지 않음
	○ 하숙생은 주인가구에 포함시켜 조사	·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함	· 동거인으로 간주
○ 주인이 하숙생 10명을 두고 함께 생활할 때?	○ 주인 가구는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기입	· 하숙생이 10명이므로 별개	· 주인가구는 주택사항도 조사
	○ 하숙생 10명은 「⑤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하는 6인 이상의 가구」로 기입	· 하숙생만 별개 가구로 하여 조사	· 주택사항은 조사하지 않음

◎ 거주 기간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주인과 하숙생 6명이 살고 있을 때?	○ 주인 가구는 주인이 거주한 기간을 기입	· 주인 가구만 기입	
	○ 하숙생 가구는 하숙생 중에 가장 오래 거주한 하숙생의 거주기간을 기입	· 하숙생이 6명이므로 별개의 가구로 형성	· 가구원 중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이 기입
○ 주인과 하숙생 4명이 살고 있을 때?	○ 주인이 하숙생보다 오래 거주한 경우 → 주인이 거주한 기간을 기입 ○ 하숙생 중에 주인보다 오래 거주한 경우 → 가장 오래 거주한 하숙생 기간을 기입	· 거주 기간은 그 가구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기간을 기입	· 하숙생이 4명이므로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조사 → 1 가구
○ 주인과 자취생 1명 하숙생 3명이 살고 있을 때?	○ 주인가구에 하숙생 3명을 포함하여 가장 오래 거주한 가구원의 기간을 기입	· 하숙생이 3명이므로 주인 가구에 포함하여 조사	· 거주 기간은 가구원 중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자를 기입
	○ 자취생은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기입	· 자취생은 생계를 달리함	· 혼자 자취하므로

◎ 사용 방 수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주인과 하숙생 6명이 살고 있을 때?	○ 주인 가구는 주인이 사는 '사용 방 수', '거실 수',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를 기입	· 주인 가구가 사용하는 것만 기입	· 가구별로 작성
	○ 하숙생 6명이 사용하는 '사용 방 수' 만 기입	· 하숙생 6명이므로 별개 가구	· 가구별로 작성
○ 주인과 하숙생 4명이 살고 있을 때?	○ 하숙생은 주인 가구에 포함하여 조사 → 주인 가구가 '사용 방 수', '거실 수',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를 기입	· 하숙생이 4명이므로 주인 가구에 포함됨	· 1 가구이므로 주인이 작성
○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는 방 3개가 있으나 1개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가끔 자식들이 와서 나머지 방을 사용하고 있을 때?	○ 사용방수는 1개로 기입	· 평소 할머니는 방 하나에서 생활	· 나머지 방수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 사용방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인과 자취생 1명 하숙생 3명이 살고 있을 때?	○ 하숙생은 주인 가구에 포함시켜 '사용 방 수', '거실 수',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를 기입	· 하숙생이 3명이므로 주인 가구에 포함됨	· 이 집에는 2개 가구로 형성
	○ 자취생은 본인이 사용하는 '사용 방 수' 만을 기입하고 나머지는 사선 처림	· 자취생이기 때문에 생계를 달리하므로 별개 가구	· 자취생인지 하숙생인지를 파악
○ 27평형 방 3개,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는 아파트에 주인이 방 1개를 세를 놓아 사람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을 때?	○ 주인 가구는 사용 방 수 2개, 거실 수 1개, 식당 수 0개로 기입	· 주인 가구의 생활 공간을 기입	· 주인 가구와 세든 가구로 총 2 가구가 거주
	○ 세든 사람은 사용 방 수 1개로 기입	· 세든 사람은 방 밖에 없음	· 잠만 자고 외식

◎ 주거 시설 형태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27평형 방 3개,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는 아파트에 주인이 방 1개를 세를 놓아 사람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을 때?	○ 주인 가구의 기입은 · 부엌 → 「① 입식」 이며 「① 단독사용」 · 화장실→ 「①수세식」 이며 「②공동사용」 · 목욕시설→ 「①온수시설」 이며 「②공동사용」	· 세든 사람과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 화장실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샤워시설이 없으면 화장실만 조사하고 목욕시설은 '없음'으로
	○ 세든 가구의 기입은 · 부엌 → 「③ 없음」 · 화장실 → 「①수세식」 이며 「②공동사용」 · 목욕시설→ 「①온수시설」 이며 「②공동사용」	· 아파트에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하나만 있어 공동으로 사용	· 부엌시설은 이용하지 않음
○ 단독주택으로 주인은 화장실, 부엌, 거실과 방 2개가 있는 1층에 살고, 2층은 별도의 출입구로 만들어 방 3개만 있고, 화장실은 옥외로 하여 다만, 용변만 보게끔 하여 하숙생 6명을 두고 함께 살고 있을 때?	○ 주인 가구의 기입은 · 부엌 → 「① 입식」 이며 「① 단독사용」 · 화장실→ 「①수세식」 이며 「① 단독사용」 · 목욕시설 → 「①온수시설」 이며 「①단독사용」	· 주인 가구가 사는 1층은 2층과 구분되어 생활	· 주인 가구와 하숙생 6명의 별도 가구로 총 2가구임
	○ 하숙생 6명 가구의 기입은 · 부엌 → 「③ 없음」 · 화장실→ 「①수세식」 이며 「① 단독사용」 · 목욕시설 → 「③ 없음」	· 2층에 거주하는 하숙생 가구만을 기입	· 식사는 주인이 제공

◎ 취사 연료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매일 매식하여 생활하는 1인 가구의 경우?	○ 취사를 하지 않으므로 「⑦기타( )」로 표시하고 괄호에 ( ) 매식으로 기입	· 취사연료가 없음	· 다만, 조사상 조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난방 시설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연탄과 기름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보일러일 때 난방 시설은?	○ 가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를 기입	· 동일하게 사용할 때는 많이 사용한 시간으로 결정	· 기름 값 인상일 때는 연탄이 주된 사용일 수도 있음
○ 주인이 사는 집과 주로 자취생들을 위해 별채가 있는 주택이 있다. 주인 집은 전기보일러를, 별채는 연탄아궁이로 있을 때?	○ 주인 가구는 「⑥ 전기보일러」로 기입 ○ 자취생 가구는 「⑧ 연탄아궁이」로 기입	· 주인 가구와 자취생 가구가 별도이므로 각각 조사	

◎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2년 전 386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노트북 한 대를 더 구입하였을 때?	○ 개인용 컴퓨터는 2대로 기입	· 컴퓨터 기종과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보유 컴퓨터는 모두 조사	· 못 쓰게 되어 방치된 컴퓨터는 제외
○ 전화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는 경우?	○ 인터넷 회선(ISDN, ADSL,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회선에 표시	· 순수한 전용회선을 기입	·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PC를 이용하여 FAX를 보내는 경우?	○ PC를 통한 FAX 송부는 FAX기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	· FAX기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조사	· PC를 통한 것은 자료의 송부 기능이 있기 때문임
○ 케이블 TV 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고 케이블 TV를 보는 경우?	○ 「케이블TV」와 「인터넷회선」에 모두 표시하고 회선수를 기입	· 케이블TV 회선을 이용한 것은 인터넷회선으로 봄	· 케이블TV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여부를 파악
○ 케이블TV가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 매달 돈을 내며 시청할 때 → 있음 ○ 돈을 안내고 시청하지 않을 때 → 없음	· 공동으로 설치된 경우 매월 돈의 지불여부로 기준	· 케이블TV가 공동으로 설치되어 선이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음

◎ 자동차 보유대수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가구는?	○ 승용차 1대로 기입	· 개인택시는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영업함	· 가구에서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한정 · 따라서 회사용, 영업용도 본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됨
○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봉고 1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바라다 줄 때?	○ 승합차 1대로 기입	· 차량을 구입하여 학원운영에 사용	
○ 회사용 자동차를 매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때?	○ 자동차 보유대수는 「있음」으로 기입	· 회사에서 구입한 것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임	
○ 건설용 중장비, 경운기 등이 자동차에 포함되는 지?	○ 건설용 중장비, 농업기계,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포함하지 않음	· 일반적인 자동차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조사	· 교통이용수단에서는 해당되는 곳에 기입

◎ 점유형태 및 임차료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시 선수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그 이자를 가지고 매월 관리비로 충당할 때?	○ 점유형태는 '주거 전용'과 「⑥ 무상」으로 기입	· 입주시 선수금으로 관리비 충당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내지 않음	· 선수금이 없이 매월 임대료를 낼 경우 → 월세로 '③ 또는 ④'번으로 기입하고 월세금액을 기입
○ 월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의 기입요령은?	○ 월세금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1만원으로 일률 적용	· 통계표 작성시 계급구간에 포함됨	· 5만원 미만 구간에 모두 포함됨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단독주택에서 주인가구와 동거가구(세든 가구)가 살고 있는데, 세든 가구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을 때?	○ 주인가구는 「① 주거전용」과 「① 자기집」으로 기입 ○ 세든 가구는 「② 영업겸용」과 「② 전세」로 기입하고 전세금액을 기재	· 주인 가구는 비록 단독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주인가구에 대해서만 조사	· 세든 가구가 사글세이면 '사글세'에 기입하고 개월 수와 사글세 금액을 1달 기준으로 기재
○ 단독주택 전체를 5천만원에 전세금을 주고 임차하여 그 중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원을 주고 재임대하여 주었을 때 전세금은?	○ 재임대 전세금 평가액을 먼저 계산 · 10만원(월세)×12개월(1년)÷0.05(이자율) = 2천 4백 만원 ○ 조사전세금은 2천 6백 만원(5천-2천4백)	· 월세일 때 평가액을 먼저 계산하여야 함 · 이자율은 조사당시 요율로 책정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체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빼야함
○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1층이 점포, 2층은 주택)	○ 「① 주거전용」과 「② 전세」로 기입하고 임차료는 지불되는 총액을 기재	· 점포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별도로 구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적용	· 특수한 경우 조사시 고려하여 최대한 작성토록 함
○ 하숙생이 집단가구일 경우?	○ 각 하숙생의 월세금을 합산한 금액을 월세로 기입(식대포함 금액은 제외)	· 집단가구이므로 모두 합산	· 식대는 본인에게 드는 순비용이므로 제외시킴
○ 아파트에 놀이 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 주인이 거주하면서 일부 방을 놀이 방으로 전적으로 한 경우 → 「① 주거전용」으로 하고 「① 자기 집」으로 기입	· 사용방수에는 제외시키고 총 방수에는 포함시킴 · 연건평은 모두 포함시킴	· 놀이 방을 주간에만 사용하고 저녁에는 취침 등을 사용할 때 → 사용방수에 포함시킴
	○ 주인 없이 전체를 놀이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빈집으로 조사	·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빈집으로 조사	

◎ 거처의 종류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개를 사육하고 있을 때?	○ 「⑨ 기타」로 기입 · 조사표 표지 및 가구명부에는 '농가'로 표시	· 주택의 요건에 벗어남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음
○ 중국대사관 옆(중국대사관 소유) 창고 내에 36가구가 살고 있을 때?	○ 「⑨ 기타」로 기입	· 주택의 요건에 벗어남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음
○ 사찰은 거처의 종류를 무엇으로 하는 지?	○ 대사찰인 경우 →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로 기입 ○ 암자 등 작은 절인 경우 → 「⑨ 기타」로 기입	· 대사찰은 대규모 집단이 모여 사는 곳(20명 이상) · 암자 등은 소규모 인원이 사는 곳	· 대규모 기도원, 요양소 등은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로 기입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공장 건물 위에 지워진 주택 요건을 갖춘 조립식 건물에 살고 있을 때?	○ 「⑤ 영업용 건물내 주택」으로 기입	·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공장 위에 있음	· 주택의 요건에 벗어나면, 「⑨ 기타」로 조사
○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장소에 주택이 없고 목재소 내에 판자로 지은 사무실 겸용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 「⑨ 기타」로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 주택의 요건에 벗어남 → 영구성이 없음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음
○ 기존 집을 헐고 신축하여 완공되었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고 바로 옆의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 「⑨ 기타」로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 현재 창고에서 생활하는 장소가 거주지임	· 신축된 집은 '빈집'으로 하여 빈집조사표를 작성
○ 철거민이 비닐하우스 1동에서 몇 가구가 각각 생활하며 살고 있을 때?	○ 「⑨ 기타」로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 1동을 하나의 거처로 함	· 가구의 점유형태는 모두 '주거전용'으로 하고 '대표가구'는 '자기 집'으로, 나머지 가구는 '무상'으로 기입

◎ 단독주택 종류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일반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요령?	○ 다가구 주택의 요건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각 가구들이 화장실, 부엌, 방,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면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	· 화장실, 부엌, 방, 독립된 출입구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면 일반단독주택으로 분류
○ 미니 2층집으로 반지하에 부엌, 방 2개,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1층에는 주인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일 때?	○ 주인가구와 세든 가구 모두 →「② 다가구주택」으로 기입	· 반지하에 완전 독립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 거처의 종류에서 단독주택은 주인가구나 세든 가구나 모두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가 '일반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지를 파악하여 기입
○ 2층집으로 1층에는 부엌, 화장실, 방 2개가 있고, 2층은 방 2개만 있으며, 2층으로는 1층을 통하여 올라가야 할 때?	○ 주인가구와 세든 가구 모두 →「① 일반 단독주택」으로 기입	· 내부로 통한 2층은 일반단독주택에 해당함	

◎ 주인, 대표 가구 여부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32평형 아파트를 독채로 전세 들어 살고 있는 가구일 때?	○ 「② 대표 가구」로 기입	· 아파트를 독채로 살고 있어도 세든 가구임	· 점유형태에서 '자기 집' 또는 '무상'이외의 유형에 해당됨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다가구 주택에 5가구가 살고 있다. 5가구 모두 세 들어 살고 있고, 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때?	○ 「② 대표 가구」 선정 → 세 들어 살고 있는 5가구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 온 가구 ○ 나머지 가구 → 「③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동거 가구」	· 가장 오래 살아 온 가구가 그 집 주택사정을 잘 알기 때문임	· 대표가구만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나머지 가구는 사선으로 처리
○ 공장 울타리에 기숙사와 비슷하게 울타리 1층을 둘러싸서 27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슬래브 건물일 때?	○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 · 주인은 → 「① 주인 가구」로 기입	· 거주기간과는 상관없이 주인은 주택소유권이 있음	·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
	○ 주인이 없는 세든 가구만 있는 경우 · 「② 대표 가구」 선정 → 세 들어 살고 있는 27가구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 온 가구 · 나머지 가구 → 「③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동거 가구」	· 가장 오래 살아 온 가구가 그 집 주택사정을 잘 알기 때문임 · '다가구 주택'	· 대표가구만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나머지 가구는 사선으로 처리

□ 주택에 관한 사항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일반주택(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내에 6인 이상의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모여 살 경우(주인가구 없이)일 때?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함 ※ 이들이 사는 곳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조사되어야 함	· 주택에 살고 있으면 반드시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되어야 함	· 기숙사나 특수사회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음
○ 공장 건물 위에 지워진 주택 요건을 갖춘 조립식 건물에 살고 있을 때?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함	·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영업용 건물 내 주택'에 해당	· '대지 면적'은 조사하지 않음
○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는 별장 주택의 경우?	○ 주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부여	· 만약 빈집이면 '빈집조사표'로 조사(가구번호는 부여안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서 옆집, 윗층, 아래층 등을 터서 사용하는 경우?	○ 1개 거처로 하여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주택을 터서 하나의 생활거주지로 활용	· 아파트에서 앞집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별개의 거처로 함
○ 공동주택에서 옆집, 앞집, 윗층, 아래층을 터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	○ 주된 거주생활 호실을 1거처, 1가구번호를 부여하고 나머지 호실을 1거처 빈집으로	· 호실을 터지 않았으므로→ 빈집으로 하여 주택수 파악	· 사용방수, 총방수 등은 주된 거주생활 호실만을 기입
○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사람이 살도록 개조한 경우?	○ 지하실을 매매가 가능한 경우 → 별도 거처로 분류하여 조사	· 매매가 되므로 거처로 분리하여 주택을 조사	·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은 조사하지 않고 사선 처리
	○ 매매가 되지 않고 지하실을 관리하는 주인가구에 포함되는 경우 → 관리하는 가구에서 주택사항을 조사	· 지하실을 세를 주므로 세든 가구는 주택사항을 조사하지 않음	· 지하실을 관리하는 가구가 주인가구로 하여 조사

◎ 연건평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2층집 단독주택으로 1층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할 때?	○ 연건평은 1층 상점을 제외한 2층 연건평만을 기입	· 주거전용 연건평만 기입	· 평수 기입은 반올림하여 소수점이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연건평이 50평인 단독주택에서 방 한 개를 가구 및 집기 등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이때 창고용 방은 5평임)	○ 연건평은 45평으로 기입 · 창고용 방은 제외	· 순수하게 주거전용 부분만을 기입	· 주거전용 연건평은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면적을 의미
○ 32평형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 평형 기준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기입 · 전용면적이 25.7평이면 26평으로 기입	· 실 주거전용 면적을 기입 · 연립, 다세대, 빌라 등	·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를 활용
○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사람이 살도록 개조하여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연건평에 포함시켜 조사	·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연건평에 포함시킴	· 영업용 창고 등은 제외

◎ 대지 면적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2층집 단독주택으로 1층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할 때?	○ 슈퍼마켓의 연면적이 더 클 경우 → 대지면적(바닥면적)은 사선으로 처리	· 영업용 연면적이 더 크므로 '영업용 건물 내 주택'에 해당됨	· 단독주택이라도 영업을 겸용하는 주택은 반드시 '거처의 종류'를 확인
	○ 주거용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큰 경우 → 담장 안의 바닥면적(대지면적)을 기입	· 주거용 연면적이 더 크므로 '단독주택'에 해당됨	· 주거용과 영업용의 연면적으로 구분
○ 단독주택에서 방 한 개를 가구 및 집기 등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이때 창고용 방의 면적은 5평임)	○ 담장 안으로 둘러싸인 대지면적을 기입	· 대지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는 상관없이 모두 포함	· 대지면적은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파악
○ 담장 안에 있는 텃밭도 대지면적에 포함시키는 지?	○ 텃밭의 면적은 제외함	· 텃밭은 주거부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임	· 담장 안의 정원은 포함시킴
○ 울타리 안에 공장건물, 주택건물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 울타리 안에 총대지면적 중에서 공장건물 부지 대지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을 기입	· 공장건물은 영업용이므로 제외시킴	· 실제 살고 있는 주거용 대지면적을 파악
○ 농촌에서 집 울타리 안에 소 등 가축용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축사용 건물이 있는 경우?	○ 울타리 안에 축사용 건물의 대지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을 기입	· 가축용 면적은 영업용으로 간주	· 실제 살고 있는 주거용 대지면적을 파악
○ 농촌 등에서 집 울타리 안에 농업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울타리 안에 창고용 건물의 대지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을 기입	· 창고용 면적은 영업용으로 간주	· 실제 살고 있는 주거용 대지면적을 파악

◎ 총 방수, 건축연도, 편익 시설 수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 2층집(내부로 통해 올라가는 계단) 단독주택이 있다. 1층에는 방 3개, 부엌(거실과 차단하는 미닫이 창문이 있음), 화장실, 거실이 있고, 2층에는 거실과 방 2개, 화장실이 있을 때?(단, 현재 1층 방은 가구 등 창고로 사용함)	○ 총 방수의 기입 · 방 수 → 5개 · 거실 수 → 2개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 1개	· 방수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도 포함시킴 · 식당은 별도로 차단된 문이 있어 완전 분리	·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방이라도 언제든지 방으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임
	○ 건축연도는 이 집의 완공 시점을 기입	· 입주시점이 아닌 지어진 시점임	· 증축. 개축이 전체 연면적에 절반이상이면 증·개축 완료시점을 건축연도로 기입
	○ 편익 시설 수 기입 · 부엌 수 → 1개 · 화장실 수 → 2개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 부엌 수는 차단된 것과는 상관없이 부엌 시설이 갖춘 것은 모두 해당됨	· 독립된 출입구 수는 대문은 포함하지 않고 실내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해당됨
○ 다가구 주택에 5가구가 살고 있다. 5가구 모두 세들어 살고 있고, 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때?	○ 대표가구가 주택 사항을 기입 ○ 총 방수의 기입 · 방 수 → 다가구 주택의 모든 방 · 거실 수 → 다가구 주택의 모든 거실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 모든 식당	· 식당은 반드시 별도 차단되어 있어야 함	· 나머지 가구는 '주택에 관한 사항'은 사선으로 처리
	○ 건축연도는 이 집을 지은 연도를 아는 가구를 통해 기입(대표가구가 아닐 경우)	· 모르는 경우 이웃 또는 부동산을 통해 알아 봄	· 아예 모르는 경우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을 통해 추정 기입
	○ 편익 시설 수 기입 · 부엌 수 → 다가구 주택의 모든 부엌 수 · 화장실 수 → 담장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 · 독립된 출입구 수 → 옥외 계단을 통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출입구 수를 기입	· 2가구는 내부 화장실이 있어 사용하고, 나머지 3가구는 옥외 화장실을 사용할 때 → 화장실 수는 3개	· 부엌은 틔어 있어도 상관없이 기재 · 각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현관문이 있을 때 현관문수가 출입구 수임
○ 27평형 아파트에 방 3개, 화장실, 부엌, 거실이 있을 때?	○ 총 방수의 기입 · 방 수 : 3개 · 거실 수 : 1개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 0개	· 식당은 거실과 틔어져 있기 때문임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부엌이 거실과 틔어져 있는 경우에는 식당은 없는 것으로 봄
	○ 편익 시설 수 기입 · 부엌 수 : 1개 · 화장실 수 : 1개,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 부엌은 취사할 수 있도록 구비됨	· 부엌은 식당과 별개 개념임

◎ 독립된 출입구 수 : 외부와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의 출입구를 말하며, 임시적인 출입문은 제외함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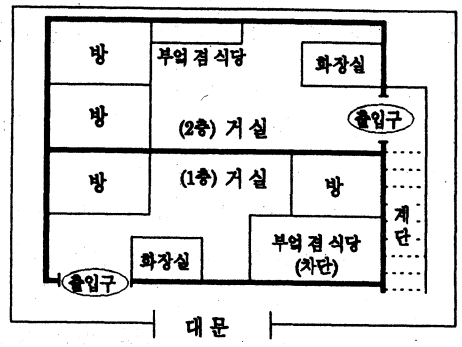	○ 총 방수의 기입 · 방 수 : 4개 · 거실 수 : 2개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 1개	· 1층 식당은 차단되어 있어 식당역할을 함 · 2층은 거실과 틔어져 있어 식당으로 보지 않음	· 2층집인 다가구 주택임
	○ 편익 시설 수 기입 · 부엌 수 : 2개 · 화장실 수 : 2개 · 독립된 출입구 수 : 2개	· 부엌은 취사할 수 있도록 구비됨 · 2층은 옥외계단을 통해 별도의 출입구가 있음	· 부엌은 식당과 별개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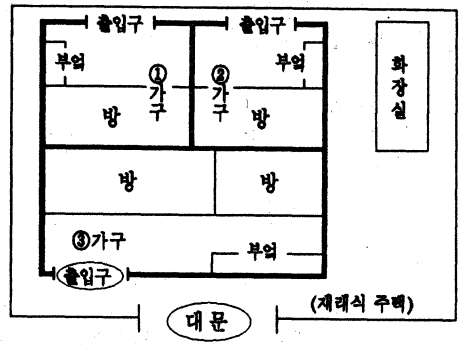	○ 총 방수의 기입 · 방 수 : 4개 · 거실 수 : 0개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 0개	· 부엌으로만 역할	· 재래식 주택형태로 3가구가 살수 있도록 지어진 일반 단독주택임 · 내부는 거실 없이 바닥으로 이어지는 부엌과 방만 있음
	○ 편익 시설 수 기입 · 부엌 수 : 3개 · 화장실 수 : 1개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 부엌은 취사할 수 있도록 구비됨	· 화장실은 옥외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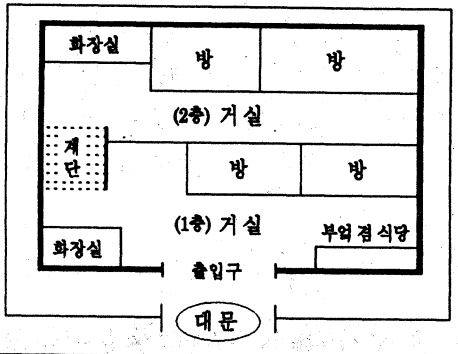	○ 총 방수의 기입 · 방 수 : 4개 · 거실 수 : 2개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 0개	· 식당은 거실과 틔어져 있기 때문임	· 2층집인 일반 단독주택임
	○ 편익 시설 수 기입 · 부엌 수 : 1개 · 화장실 수 : 2개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 부엌은 취사할 수 있도록 구비됨 · 2층은 내부로 통해 올라가도록 설계	

가구와 주택에 관한 사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사례

사 례	연 관 관 련 항 목 및 조 치 결 과	길 잡 이
○ 1층은 가게, 2층은 주택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이 있다. 연면적은 주택이 더 크다고 한다. - 1층은 가게로만 된 매장이고 - 2층은 주인가구가 산다고 할 때 작성요령은? 단, 매매는 한 건물 전체로 이루어진다.	○ 주인가구의 작성요령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① 주거전용」과 「① 자기 집」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① 단독주택」과 「① 일반단독주택」 · 주인, 대표가구 여부 → 「① 주인가구」 · 연건평 → 주인이 거주하는 2층의 연건평을 기입 · 대지면적 → 바닥면적을 기재 · 총 방수 → 2층의 방수, 거실 수, 식당 수를 기입 · 이 주택의 건축연도를 기입 · 편익 시설 수 → 2층의 부엌 수, 화장실 수, 독립된 출입구 수를 기입	· 거처와 가구번호 각 1개 · 거주부문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항목임 · 연면적이 주택이 더 큼 · 1층은 영업용이므로 제외시킴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 1층은 가게, 2층은 주택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이 있다. 연면적은 주택이 더 크다고 한다. - 1층은 가게 안에 부엌, 방, 화장실이 있다. - 1층은 세든 가구가 2층은 주인가구가 산다고 할 때 각 가구의 작성요령은? 단, 매매는 한 건물 전체로 이루어지며, 가게는 보증금 있는 월세라고 한다.	○ 주인가구의 작성요령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① 주거전용」과 「① 자기 집」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① 단독주택」과 「① 일반단독주택」 · 주인, 대표가구 여부 → 「① 주인가구」 · 연건평 → 주인이 거주하는 2층과 1층의 매장 건평을 제외한 연건평을 기입 · 대지면적 → 바닥면적을 기재 · 총 방수 → 2층과 1층의 방수, 거실 수, 식당 수를 기입 · 이 주택의 건축연도를 기입 · 편익 시설 수 → 2층과 1층의 부엌 수, 화장실 수, 독립된 출입구 수를 기입	· 거처번호는 1개로 하고 가구번호는 2개 부여
	○ 세든 가구의 작성요령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② 영업겸용」과 「③ 보증금 있는 월세」에 표기하고 → 전세·보증금 란과 월세(사글세) 란을 기입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① 단독주택」과 「① 일반단독주택」 · 주인, 대표가구 여부 → 「③ 가타 세 들어 살고 있는 동거가구」에 표기하고 주택에 관한 사항은 사선으로 처리하여 작성을 마침	· 세 들어 사는 동거가구이므로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인가구에서 조사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으로 처리

사 례	연관관련항목및조치결과	길잡이
○ 4층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전체로 하여 매매가 된다고 한다. 1층은 전자대리점, 2층은 다방, 3층은 당구장, 4층은 주인이 사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층 다방에는 여 종업원이 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을 때, 작성요령은? 단, 주인은 점포를 전세로 놓았다고 한다.	○ 거처번호 부여 요령 : 주인가구와 2층 다방을 별도로 각각 부여 → 동일 건물에 있다고 하여 1개 거처로 부여하면, 2층 다방의 방이 주인가구에 포함되어 조사됨 → 이럴 경우 '주택이외의 거처'에 해당되는 다방의 방이 포함되는 모순이 생김 → 따라서 이를 분리고자 거처번호를 각각 부여	· 실제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계하기 위함 · 영업용 건물이므로 별도 거처로 분리
	○ 4층에 사는 주인가구의 작성요령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① 주거전용」과 「① 자기 집」	· 거주부문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항목임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 영업용 면적이 더 큼
	· 주인, 대표가구 여부 → 「① 주인가구」	
	· 연건평 → 주인이 거주하는 4층의 연건평을 기입	· 1~3층은 영업용임
	· 대지면적 → 사선처리	· 단독주택이 아님
	· 총 방수 → 4층의 방수, 거실 수, 식당 수를 기입	
	· 편익 시설 수 → 4층의 부엌 수, 화장실 수, 독립된 출입구 수를 기입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 2층에 사는 다방 여 종업원 가구의 작성요령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② 영업겸용」과 「② 전세」에 표기하고 → 전세·보증금 란을 기입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⑨ 기타」에 표기	· 주택이외의 거처
○ 4층 건물이 있다. 1층은 전자대리점, 2층은 다방, 3층은 당구장,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단, 각 층별로 매매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2층 다방에는 여 종업원이 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을 때, 작성요령은?	○ 거처번호 부여 요령 : 사람이 거주하는 4층과 2층에 각각 부여	· 각 층별로 매매가 됨
	○ 4층에 사는 주인가구의 작성요령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① 주거전용」과 「① 자기 집」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① 단독주택」과 「① 일반단독주택」	· 매매가 되므로
	· 주인, 대표가구 여부 → 「① 주인가구」	
	· 연건평 → 주인이 거주하는 4층의 연건평을 기입	
	· 대지면적 → 바닥면적을 기입	
	· 총 방수 → 4층의 방수, 거실 수, 식당 수를 기입	
	· 이 건물의 건축연도를 기입	
	· 편익 시설 수 → 4층의 부엌 수, 화장실 수, 독립된 출입구 수를 기입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 2층에 사는 다방 여 종업원 가구의 작성요령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② 영업겸용」과 「① 자기 집」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⑨ 기타」에 표기	· 주택이외의 거처

사 례	연관관련항목및조치결과	길잡이
○ 4층 건물이 있다. 1층은 우유대리점, 2층은 학원, 3층과 4층은 주인이 사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층에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살림하는 가구가 있을 때, 작성요령은?	○ 풀어 가는 순서요령 1) 가장 먼저 건물이 전체로 매매가 되는지, 아니면 층별로 매매가 되는지 2) 영업용 연면적과 주거용 연면적의 크기를 파악하여 '단독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내 주택'인지를 결정 3) 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주택이냐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	
	○ 건물 전체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거처번호는 1개를 부여하고 가구번호는 2개로 부여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주인가구 → 「① 주거전용」과 「① 자기 집」 · 세든 가구 → 「② 영업겸용」과 「② 전세」(전세 또는 월세 등)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주인가구 → 「① 단독주택」으로 기입하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 때 내부(3층)를 통할 경우 → '일반단독주택' ··3층과 4층이 각각 분리되고 독립된 출입구가 있을 경우 → '다가구주택' · 세든 가구 → 건물 전체로 보아 거처의 종류를 기입	· 1개의 거처에는 반드시 세든 가구나 동거가구도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야 함
	○ 건물의 층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각각 1개씩 부여 : 거처번호 2개, 가구번호 2개 표기 - 점유형태 및 임차료 · 주인가구 → 「① 주거전용」과 「① 자기 집」 · 1층 대리점 가구 → 「② 영업겸용」과 「① 자기 집」 - 거처의 종류 및 단독주택 종류 · 주인가구 → 「① 단독주택」으로 기입하고 ··3층과 4층을 터서 사용할 경우 → '일반단독주택' ··3층과 4층을 터지 않고 사용할 경우 → '일반단독주택'으로 표기한 다음 → 주된 거주를 하는 층만 조사하고 남은 층은 빈집으로 조사 · 1층 대리점 가구 →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 층별로 각각 매매가 되므로 거처번호를 각각 부여 · 주인이 3층과 4층을 모두 사용한다고 해서 거처번호를 1개만 부여해서는 안됨→ 이럴 때에는 1개 거처를 빈집으로 조사(주택 수를 파악하기 위함)

가구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표본)

사 례	1~4번 항목	5~8번 항목	9~11번 항목	12~15번 항목
○ **오피스텔**	○ 가구 구분 : ①~⑤ 중에 표기 ○ 거주 기간 : 해당란에 표기 ○ 사용 방수 · 사용 방수 : 1개 · 거실 수, 식당 수 : 0개 ○ 주거시설 형태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은 해당되는 곳에 표기	○ 취사 연료 : 사용 연료 기입 ○ 난방 시설 : 주된 사용 난방을 기입 ○ 상수도 시설·식수사용 형태 · 오피스텔의 상수도 시설을 기입 · 식수는 주된 음용 식수를 기입	○ 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 오피스텔에 설치된 것과 가구가 보유한 기기를 표기 ○ 자동차 보유대수 · 해당란에 기입 ○ 주차 시설 : 해당란에 기입	○ 점유 형태 : 「② 영업 겸용」 → 사무실이 주된 용도 ○ 임차료 : 해당란에 기입 ○ 거처의 종류 : 「⑥ 오피스텔」에 기입
○ **다방** ★ 방만 있고, 취침을 하는 경우이 때, 부엌하고 화장실을 영업용을 사용	○ 가구 구분 : ①~⑤ 중에 표기 ○ 거주 기간 : 해당란에 표기 ○ 사용 방수 · 사용 방수 : 1개 · 거실 수, 식당 수 : 0개 ○ 주거시설 형태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은 「③ 없음」에 표기 →영업용이므로 제외시킴	○ 취사 연료 : 사용(영업용도 포함) 연료 기입 ○ 난방 시설 : 주된 사용 난방을 기입(다방 건물에 설치된 시설) ○ 상수도 시설·식수사용 형태 · 다방 건물의 상수도 시설을 기입 · 식수는 주된 음용 식수를 기입	○ 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 가구(방안에)가 보유한 기기를 표기 → 다방 영업용으로 설치한 기기는 제외함 ○ 자동차 보유대수 · 가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기입 ○ 주차 시설 : 해당란에 기입	○ 점유 형태 : 「② 영업 겸용」 → 영업 내에 방을 사용 ○ 임차료 : 해당란에 기입 ○ 거처의 종류 : 「⑨ 기타」에 기입 → 주택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방만 있음)
○ **여관·숙박업소의 객실 투숙자** ★ 취침만 하면서 생활	○ 가구 구분 : ①~⑤ 중에 표기 ○ 거주 기간 : 해당란에 표기 ○ 사용 방수 · 사용 방수 : 사용 방을 기입 · 거실 수, 식당 수 : 여관, 숙박업소에서 설치된 형태를 기입 ○ 주거시설 형태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은 설치된 형태에 표기 → 돈을 내고 시설을 사용함	○ 취사 연료 : 사용(영업용도 포함) 연료 기입 · 부엌이 없는 경우 → 「⑦ 기타」로 ( )에 '매식'으로 기입 ○ 난방 시설 : 주된 사용 난방을 기입(설치된 시설) ○ 상수도 시설·식수사용 형태 · 건물의 상수도 시설을 기입 · 식수는 주된 음용 식수를 기입	○ 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 가구가 보유한 기기를 표기 → 업소에서 설치한 기기도 포함(돈을 내고 사용) ○ 자동차 보유대수 · 가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기입 ○ 주차 시설 : 해당란에 기입	○ 점유 형태 : 「① 주거 전용」 → 객실을 돈을 내고 사용 ○ 임차료 : 해당란에 기입 예) 매달 숙박료를 지불하면 → 「⑤ 사글세(1개월)」로 기입 ○ 거처의 종류 : 「⑦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 기입 → 주택이외의 거처임

사 례	1~4번 항목	5~8번 항목	9~11번 항목	12~15번 항목
○ 음막, 판잣집 등의 가구	○ 가구 구분 : ①~⑤ 중에 표기 ○ 거주 기간 : 해당란에 표기 ○ 사용 방수 : 개념에 따라 기입 ○ 주거시설 형태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은 해당되는 곳에 표기	○ 취사 연료 : 사용 연료 기입 ○ 난방 시설 : 주된 사용 난방 ○ 상수도 시설·식수사용 형태 ·상수도 시설을 기입 ·식수는 주된 음용 식수를 기입	○ 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가구가 보유한 기기를 표기 ○ 자동차 보유대수 ·해당란에 기입 ○ 주차 시설 : 해당란에 기입	○ 점유 형태 : 「① 주거 전용」 ○ 임차료 : 해당란에 기입 ○ 거처의 종류 : 「⑨ 기타」에 기입
○ 원룸	○ 가구 구분 : ①~⑤ 중에 표기 ○ 거주 기간 : 해당란에 표기 ○ 사용 방수 : 개념에 따라 기입 ·사용 방수 : 1개 ·거실 수, 식당 수 : 0개 ○ 주거시설 형태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은 해당되는 곳에 표기	○ 취사 연료 : 사용 연료 기입 ○ 난방 시설 : 주된 사용 난방 ○ 상수도 시설·식수사용 형태 ·원룸 건물의 상수도 시설을 기입 ·식수는 주된 음용 식수를 기입	○ 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원룸에서 설치한 것과 가구가 보유한 기기를 표기 ○ 자동차 보유대수 ·해당란에 기입 ○ 주차 시설 : 해당란에 기입	○ 점유 형태 : 「① 주거 전용」 ○ 임차료 : 해당란에 기입 ○ 거처의 종류 1) 매매가 안 되는 경우 → 「① 단독주택」과 「② 다가구주택」으로 기입 2) 매매가 되는 경우 → 「④ 다세대주택」으로 기입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

사 례	조 치 결 과	착 안 점	비 고